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콜롬비아 공화국 정부(콜롬비아)(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및 협력의 특별한 결속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을 창출하고,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양 당사국 간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수준의 차이에 비추어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양국 영역 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역에서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영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고,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 영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하기로 결의하며,

이 협정이 환경 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행되어야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 1 절 최초규정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2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 2 절 일반 정의

제 1.3 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중앙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국가정부¹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제8.28조(정의)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반덤핑, 상계, 또는 긴급수입제한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라. 수입수량제한 또는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대해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그리고

마.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상 행해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데파르타멘토스(*Departamentos*)는 지방정부의 일부이다.

기존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이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19.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란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적법」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콜롬비아 헌법 제96조에 따라,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한

콜롬비아인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²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한국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대륙 및 섬으로 된 콜롬비아의 영토, 콜롬비아의 상공과 해양 및 해저, 그리고 콜롬비아가 콜롬비아 헌법, 콜롬비아의 법 및 적용가능한 국제조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그 밖의 요소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소유지분을 통한 지배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³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WTO)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에 발효 중인 모든 면제를 포함한다.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2.1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 대우

제 2.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방정부 또는 당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의, 각 경우에 맞게,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지방정부 또는 당국이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2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관세 철폐

제 2.3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 최혜국 실행관세를 감축할 경우, 그 관세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그 관세가 적용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6. 어느 한쪽 당사국은 부록 2-가-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설정된 쿼터내 수입을 할당하는 수입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관세율할당의 부과에 의해 야기되는 것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수입에 대한 무역제한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3 절 특별 제도

제 2.4 조 관세 면제

1. 어떠한 당사국도, 관세 면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새로운 관세 면제를 채택하거나, 또는 기존의 관세 면제의 적용을 기존의 수혜자에 대하여 확장하거나 새로운 수혜자에게 확대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존의 관세 면제의 지속에 대하여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출국 이전,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 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이외의 다른 통관항구를 통하여 수출되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수입자 또는 다른 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하여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이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를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국의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8. 어떠한 당사국도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차량 또는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로를 통하여 자국 영역에서 나가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나.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항구와 출항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의 해제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 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 2.7 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러한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 나. 그러한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러한 광고물 또는 포장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제 4 절 비관세조치

제 2.8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은 부속서 2.2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양 당사국은 제1항에 의해 통합된 1994년도 GATT상의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
 -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 다.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협정 제8.1조에 의하여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4.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규제당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6. 제4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제 2.9 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2.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 또는 단일의 관보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그렇게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2항에 따라 통보하지 아니한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10 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상의 의무와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제 2.11 조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부속서 2.1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도 관세, 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2.12 조
국영무역기업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의해 규율된다.

제 5 절
그 밖의 조치

제 2.13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어느 해의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나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의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와 합치하게 부속서 2-나에 규정된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열거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더 높은 수입관세 형태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더 높은 수입관세는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나.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다. 부속서 2-나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제7장(무역구제)상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4. 당사국은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수출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5.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는 이 조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

6. 부속서 2-나에 규정된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 2.14 조 농업 수출 보조금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수출 보조금을 도입하거나 재도입하지 아니한다.¹

제 2.15 조 안데스 가격밴드제도

콜롬비아는 부속서 2-다에 열거된 상품에 대하여, 안데스 공동시장 결정 제371호 및 그 개정에 따라 1994년 수립된 안데스 가격밴드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 6 절 제도 규정

¹ 양 당사국은 보조금을 받은 어떠한 농산물도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출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농업수출보조금과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이다.

제 2.16 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 및 제7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 나.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 다. 이 협정상의 각 당사국의 의무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다음 사항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것
 - 1)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그러한 개정과 부속서 2-가, 또는
 - 2) 부속서 2-가와 국가상품분류체계, 그리고
 - 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4. 양 당사국은 농산물 무역 임시작업반을 설치한다. 양 당사국 간 농산물 무역에 대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작업반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임시작업반은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7 절 정의

제 2.17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그리고/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 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파열·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해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스포츠용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수입허가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이행요건이란 다음 요건을 말한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출될 것

나.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다.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

라.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외환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그러나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될 것

사.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관측·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2.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1. 콜롬비아의 경우, 제2.2조 및 제2.8조는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1991년 1월 17일에 제정된 법률 제9호에 따른 커피 수출 통제

나. 2013년 8월 1일까지 2002년 12월 27일에 제정된 법률 제788호 및 1995년 12월 22일에 제정된 법률 제223호에 따른 알코올 음료 과세

다. 재제조품²을 제외하고, 2006년 10월에 제정된 법령 제3803호의 제3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상품에 대한 수입 통제, 그리고

라. 2006년 10월에 제정된 법령 제3803호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고차와 제조일 후 2년을 초과한 뒤 수입된 신차를 포함한 차량에 대한 수입 통제

2. 제1항다호 및 라호에 언급된 조치들을 유지할 필요성은 이 협정 발효 10년 후 재검토된다.

²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된 후 재제조품의 교역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제2.16조에 의해 설치되는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부속서 2.2에 포함된 재제조품의 정의에 대하여 공동결정을 하기로 합의한다.

부속서 2.11 수출세

1. 콜롬비아의 경우, 제2.11조는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1993년도에 제정된 법률 제101호에 따라 커피의 수출에 요구되는 분담금,
그리고

나. 1998년도에 제정된 법률 제488호에 따라 에메랄드의 수출에 요구되는
분담금

2.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콜롬비아가 비당사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자국의
수출 분담금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경우, 콜롬비아는 한국에게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 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3”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5”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라.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7”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마.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2”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사.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5”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아.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6”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9”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9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차.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2. 상품에 대한 각 관세 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퍼센트 포인트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한국의 경우,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가장 근접한 원 단위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22.4조(발효)에서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감축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 주해 한국 관세양허표

1. 한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제2.3조제2항에 따라 연속적인 감축이 적용될 기준관세율은 이 부속서에 명시된 것이다.

3. 양허단계. 부속서 2-가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12-A, 13, 16-A, 16-S 그리고 X를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12-A”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12년에 걸쳐 철폐된다.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2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13”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16-A”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16년에 걸쳐 철폐된다.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2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단계별 양허유형 “16-S”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2)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16단계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마. 단계별 양허유형 “X” 로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개정에 규정된 약속의 이행에 대한 한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록 2-가-1 한국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TRQs")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한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콜롬비아의 원산지 상품에는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콜롬비아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한국은 제0402101010호, 제0402101090호, 제0402109000호, 제0402211000호, 그리고 제0402219000호에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연간 총 물량 100 미터톤의 무관세수입을 허용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분기별 공매를 통하여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차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일반 주해 콜롬비아 관세양허표

1. 콜롬비아 공화국의 관세표("AACOL³")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AACOL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AACOL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AACOL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AACOL의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제2.3조제2항에 따라 연속적인 감축이 적용될 기준관세율은 이 부속서에 명시된 것이다.

3. 양허단계. 부속서 2-가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9, 18, 18-A 및 20을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9”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9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18”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18-A”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5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18년에 걸쳐 철폐된다.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5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6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라. 단계별 양허유형 “2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4.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동안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 발효일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은 특혜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원칙에 따라, 콜롬비아는 2012년 8월 13일 기준

³ 이 협정의 목적상, AACOL은 영어로 콜롬비아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TSC")를 말한다.

최혜국 관세율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그러한 특혜 관세율을 적용한다.⁴

- 가. 콜롬비아 양허표상 “a” 로 표시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다.
- 나. 콜롬비아 양허표상 “b” 로 표시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 및 이행 2년차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다.
- 다. 콜롬비아 양허표상 “c” 로 표시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 이행 2년차 그리고 이행 3년차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다. 그리고
- 라. 콜롬비아 양허표상 “d” 로 표시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 이행 2년차, 이행 3년차 그리고 이행 4년차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다.

⁴ 이 협정 발효일의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2012년 8월 13일의 최혜국 실행관세율과 다를 경우, 콜롬비아는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동안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 발효일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은 특혜 관세율을 적용한다. 양 당사국은 제22.4조(발효)에 따라 결정되는 이 협정 발효일에 이 협정의 관세철폐 계획안을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부록 2-가-1 콜롬비아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TRQs)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콜롬비아가 적용할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콜롬비아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TSC")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한국의 원산지 상품은 HTSC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TSC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한국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콜롬비아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TSC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콜롬비아는 제04021010호, 제04021090호, 제04022111호, 제04022119호, 제04022191호 그리고 제04022199호에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연간 총 물량 100 미터톤의 무관세수입을 허용한다. 농업지역개발부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차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한국 양허표

대상품목, 발동수준 및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 이 부속서는 제2.13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을 규정한다.

2.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아래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가.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0201.30.0000, 0202.3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7
발동수준 (미터톤)	9,900	10,098	10,299	10,505	10,716	10,930	11,149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40.0	40.0	40.0	40.0	40.0	40.0	30.0

이행년도	8	9	10	11	12	13	14
발동수준 (미터톤)	11,371	11,599	11,831	12,068	12,309	12,555	12,806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30.0	30.0	30.0	30.0	30.0	24.0	24.0

이행년도	15	16	17	18	19	20
발동수준 (미터톤)	13,062	13,324	13,591	13,862	14,140	해당 없음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24.0	24.0	24.0	24.0	24.0	0

나. 아래에 포함된 만다린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0805.20.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7
발동수준 (미터톤)	7,223	7,367	7,514	7,665	7,818	7,974	8,134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144.0	144.0	144.0	144.0	144.0	144.0	144.0

이행년도	8	9	10	11	12	13	14
발동수준 (미터톤)	8,297	8,462	8,632	8,804	8,980	9,160	9,343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이행년도	15	16	17	18	19	20	21
발동수준 (미터톤)	9,530	9,721	9,915	10,113	10,316	10,522	해당 없음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86.4	86.4	86.4	86.4	86.4	86.4	0

콜롬비아 양허표

대상품목, 발동수준 및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 이 부속서는 제2.13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해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을 규정한다.

2.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아래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가.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 HTSC 0201.30.00, 0202.30.00

이행년도	1	2	3	4	5	6	7
발동수준 (미터톤)	9,900	10,098	10,299	10,505	10,716	10,930	11,149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80	80	80	80	80	80	60
-------------------------	----	----	----	----	----	----	----

이행년도	8	9	10	11	12	13	14
발동수준 (미터톤)	11,371	11,599	11,831	12,068	12,309	12,555	12,806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60	60	60	60	60	48	48

이행년도	15	16	17	18	19	20
발동수준 (미터톤)	13,062	13,324	13,591	13,862	14,140	해당 없음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세율 (%)	48	48	48	48	48	0

부속서 2-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⁵

HTSC2007	품목명
02031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2031200	-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02031900	- - 기타
02032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2071100	- -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101200	- -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02101900	- - 기타
04011000	-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퍼센트 이하인 것
0401200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퍼센트 초과 6퍼센트 이하인 것
04051000	- 버터
10059011	- - - 노란색의 것
10059012	- - - 흰색의 것
10059030	- - 흰 옥수수(자메이스 아밀라세아류의 자이겐트)
10059040	- - 보라 옥수수(자메이스 아밀라세아류의 모라도)
10059090	- - 기타
10070090	- 기타
11022000	- 옥수수 가루
11081200	- - 옥수수 전분
11081900	- - 기타 전분
12010090	- 기타
12021090	- - 기타
12022000	- 탈각한 것(과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051090	- - 기타
12059090	- - 기타
12060090	- 기타
12074090	- - 기타
12079991	- - - - 캐리트 종자
12079999	- - - - 기타
12081000	- 대두의 것
12089000	- 기타

⁵ 이 부속서에 열거된 상품에 대해서는, 기준세율인 안데스 가격밴드(“APB”)제도의 고정요소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양허표에 따라 철폐된다. APB제도의 변동요소는 유지된다.

HTSC2007	품목명
15010010	- 돈지(라드를 포함한다)
15010030	- 가금지
15020011	- - 변성된 것
15020019	- - 기타
15020090	- 기타
15030000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및 텔로우유(유화 또는 혼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5060010	- 우족유
15060090	- 기타
15071000	-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079010	- - 첨가된 변성 물질의 함유량이 1퍼센트 이하인 것
15079090	- - 기타
15081000	- 조유
15089000	- 기타
15111000	- 조유
15119000	- 기타
15121110	- - - 해바라기의 것
15121120	- - - 잇꽃의 것
15121910	- - - 해바라기의 것
15121920	- - - 잇꽃의 것
15122100	- - 조유(고시폴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122900	- - 기타
15131100	- - 조유
15131900	- - 기타
15132110	- - - 팜핵의 것
15132910	- - - 팜핵의 것
15141100	- - 조유
15141900	- - 기타
15149100	- - 조유
15149900	- - 기타
15152100	- - 조유
15152900	- - 기타
1515300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1515500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159000	- 기타
15162000	-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HTSC2007	품목명
15171000	- 마가린(액상마가린은 제외한다)
15179000	- 기타
15180010	- 리눅신
15180090	- 기타
16010000	소시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의 것에 한한다),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16023210	- - - 조미한 냉동 조각
16023910	- - - 조미한 냉동 조각
16024100	-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16024200	- - 어깨살과 그 절단육
17019100	- -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17023020	- - 포도당 시럽
17023090	- - 기타
23012011	- - -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23012019	- - -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퍼센트 이하인 것
23021000	- 옥수수의 것
23024000	- - 기타 곡물의 것
23040000	대두유의 추출 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3061000	- 면실의 것
23063000	- 해바라기 씨의 것
23069000	- 기타
23080090	- 기타
23091090	- - 기타
35051000	-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35052000	- 글루
38231100	- - 스테아린산
38231200	- - 올레인산
38231900	- - 기타

부속서 2-가
대한민국의 양허표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101101000	말(농가 사육용의 것에 한한다)	0	0	
0101109000	기타	8	5	
0101901010	경주말	8	5	
0101901090	기타	8	5	
0101909000	기타	8	5	
0102101000	젖소	89.1	0	
0102102000	육우	89.1	0	
0102109000	기타	89.1	0	
0102901000	젖소	40	16	
0102902000	육우	40	16	
0102909000	기타	0	0	
0103100000	번식용의 것	18	0	
0103910000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18	16	
0103920000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8	16	
0104101000	번식용의 것	0	0	
0104109000	기타	8	5	
0104201000	유용산양	8	5	
0104209000	기타	8	5	
0105111000	번식용의 것	9	0	
0105119000	기타	9	5	
0105120000	칠면조	9	5	
0105191010	번식용의 것	0	0	
0105191090	기타	18	10	
0105199000	기타	9	5	
0105941000	번식용의 것	9	0	
0105949000	기타	9	5	
0105991010	번식용의 것	0	0	
0105991090	기타	18	10	
0105992000	칠면조	9	5	
0105999000	기타	9	5	
0106110000	영장류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106120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8	3	
0106191000	개	8	5	
0106192010	번식용의 것	0	0	
0106192090	기타	8	5	
0106193000	사슴	8	5	
0106194000	곰	8	5	
0106195010	번식용의 것	0	0	
0106195090	기타	8	5	
0106196010	번식용의 것	0	0	
0106196090	기타	8	5	
0106199000	기타	8	5	
0106201000	뱀	8	5	
0106202000	자라	8	5	
0106203000	거북	8	5	
0106209000	기타	8	5	
0106310000	맹금류	8	5	
0106320000	앵무류(패로트류, 파라키트류, 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8	5	
0106390000	기타	8	5	
0106901000	양서류	8	5	
0106902010	꿀벌	8	5	
0106902090	기타	8	5	
0106903010	갯지렁이	8	0	
0106903020	실지렁이	8	0	
0106903090	기타	8	5	
0106909000	기타	8	5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E	
0201201000	갈비	40	E	
0201209000	기타	40	E	
0201300000	뼈 없는 것	40	19	부속서 2- 나 참조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E	
0202201000	갈비	40	E	
0202209000	기타	40	E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202300000	뼈 없는 것	40	19	부속서 2- 나 참조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E	
0203120000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2.5	E	
0203191000	삼겹살	22.5	E	
0203199000	기타	22.5	E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5	E	
0203220000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5	10	
0203291000	삼겹살	25	16	
0203299000	기타	25	10	
0204100000	어린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2.5	10	
0204210000	도체와 이분도체	22.5	10	
020422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10	
0204230000	뼈 없는 것	22.5	10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에 한한다)	22.5	5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10	
0204420000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5	
0204430000	뼈 없는 것	22.5	10	
02045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2.5	10	
0204502000	냉동한 것	22.5	10	
02050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7	10	
0205002000	냉동한 것	27	10	
0206100000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	E	
0206210000	허	18	E	
0206220000	간(肝)	18	E	
0206291000	꼬리	18	19	
0206292000	족	18	19	
0206299000	기타	18	19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	16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206410000	간	18	16	
0206491000	족	18	16	
0206499000	기타	18	16	
0206800000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	10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18	10	
0207111000	중량이 550 그램 이하인 것	18	16	
0207119000	기타	18	16	
0207121000	중량이 550 그램 이하인 것	20	12	
0207129000	기타	20	12	
0207131010	다리	18	16	
0207131020	가슴	18	16	
0207131030	날개	18	16	
0207131090	기타	18	16	
0207132010	간	22.5	16	
0207132090	기타	27	16	
0207141010	다리	20	12	
0207141020	가슴	20	13	
0207141030	날개	20	13	
0207141090	기타	20	12	
0207142010	간	22.5	10	
0207142090	기타	27	12	
0207240000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	10	
0207250000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18	7	
0207261000	절단육	18	10	
0207262010	간	22.5	10	
0207262090	기타	27	10	
0207271000	절단육	18	7	
0207272010	간	22.5	7	
0207272090	기타	27	7	
0207320000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8	16	
0207330000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18	16	
0207340000	지방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2.5	16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207351000	절단육	18	16	
0207352010	간	22.5	16	
0207352090	기타	27	16	
0207361000	절단육	18	12	
0207362010	간	22.5	10	
0207362090	기타	27	16	
0208100000	토끼의 것	22.5	10	
0208300000	영장류의 것	18	10	
0208400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듀공 및 매너티(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30	3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8	10	
0208901000	사슴의 것	27	10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30	3	
0208909090	기타	18	10	
0209001000	돼지 비계	3	0	
0209002000	가금의 비계	3	0	
0210110000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5	E	
02101200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30	E	
0210190000	기타	25	E	
0210201000	건조 또는 훈제한 것	27	E	
0210209000	기타	27	E	
0210910000	영장류의 것	22.5	10	
0210920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듀공 및 매너티(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10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2.5	10	
0210991010	소의 것	22.5	16	
0210991020	돼지의 것	22.5	16	
0210991030	가금류의 것	22.5	10	
0210991090	기타	22.5	16	
0210999010	면양 또는 산양의 것	22.5	10	
0210999020	가금류의 것	22.5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210999090	기타	22.5	10	
0301101000	비단잉어	10	5	
0301102000	열대어	10	5	
0301109000	기타	10	5	
0301911000	살모 트루타, 양코링쿠스 미키스, 양코링쿠스 클라키,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양코링쿠스 길래	10	7	
0301912000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10	7	
0301921000	실뱀장어(양식용에 한한다)	0	0	
0301929000	기타	27% 또는 1,879 원/kg, 양자 중 고액(율)	10	
0301930000	잉어	10	3	
03019400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10	7	
030195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10	7	
0301992000	방어	10	0	
0301994010	치어(양식용에 한한다)	0	0	
0301994090	기타	31% 또는 2,272 원/kg, 양자 중 고액(율)	10	
0301995000	붕장어	10	10	
0301996000	갯장어	10	10	
0301997000	먹장어	10	5	
0301998000	넙치류	10	3	
0301999010	능성어	10	10	
0301999020	복어	10	0	
0301999030	틸라피아	10	3	
030199904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	3	
0301999051	치어(양식용에 한한다)	0	0	
0301999059	기타	31	10	
0301999060	숭어	10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301999070	미꾸라지	10	3	
0301999080	메기	10	0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종, 아그라무스종)	10	3	
0301999092	붕어	10	3	
0301999093	연어	10	5	
0301999094	초어	10	0	
0301999095	민어	31	10	
0301999099	기타	10	10	
0302111000	살모 트루타, 양코링쿠스 미키스, 양코링쿠스 클라키,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양코링쿠스 길래	20	7	
0302112000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20	5	
0302120000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넬카,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케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츠,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0	3	
0302190000	기타	20	3	
030221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20	10	
0302220000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20	10	
0302230000	서대(솔레아종)	20	7	
0302290000	기타	20	10	
03023100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	20	7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20	7	
03023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20	10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20	7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3023500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20	7	
030236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20	7	
0302390000	기타	20	7	
030240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다만, 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20	3	
030250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다만, 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20	10	
030261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20	5	
03026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20	0	
0302630000	검정대구(플라치우스 비렌스)	20	5	
0302640000	고등어(스콤버 스킴브루스, 스킴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킴버 자포니쿠스)	20	10	
030265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20	5	
0302660000	뱀장어(앵귈라종)	20	7	
03026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0	7	
030268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20	5	
0302691000	명태	20	0	
0302692000	방어	20	10	
0302693000	갈치	20	10	
0302694000	돔	20	10	
0302695000	붕장어	20	7	
0302696000	갯장어	20	7	
0302697000	전갱이	20	10	
0302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	10	
0302699010	삼치	20	5	
0302699020	복어	20	10	
0302699030	병어	20	10	
0302699040	아귀	20	10	
0302699090	기타	20	10	
0302701000	간	20	3	
0302702000	어란	20	5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양코링쿠스	10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벨카)			
0303190000	기타	10	5	
0303210000	송어(살모 트루타, 양코링쿠스 미키스, 양코링쿠스 클라키,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양코링쿠스 길래,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10	10	
030322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10	5	
0303290000	기타	10	5	
030331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10	10	
0303320000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10	10	
0303330000	서대(솔레아종)	10	10	
0303390000	기타	10	10	
0303410000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	10	7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10	7	
03034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투우	10	7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10	7	
03034500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10	7	
030346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10	7	
0303490000	기타	10	7	
03035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10	5	
03035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10	7	
03036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0	10	
030362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10	5	
030371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10	10	
0303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303730000	검정대구(플라치우스 비렌스)	10	5	
0303740000	고등어(스콤버 스킴브루스, 스킴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킴버 자포니쿠스)	10	10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10	5	
0303760000	뱀장어(앵귈라종)	10	7	
0303770000	농어(디센트라쿠스 라브락스, 디센트라쿠스 폰크타투스)	10	10	
0303780000	민대구(메루키우스종, 유르피키스종)	10	10	
0303791000	명태	30	E	
0303792000	은대구	10	10	
0303793000	갈치	10	10	
0303794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쿠스)	10	10	
0303794090	기타	10	10	
0303795000	붕장어	10	10	
0303796000	조기	10	10	
0303797000	전갱이	10	10	
03037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31	10	
0303799010	삼치	10	10	
0303799020	복어	10	10	
0303799030	보리멸	10	5	
0303799040	홍살치	10	0	
0303799050	달고기	10	0	
0303799060	임연수어	10	10	
030379907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	10	
0303799080	새꼬리 민태	10	10	
0303799091	아귀	10	10	
0303799092	먹장어(대서양, 태평양)	10	10	
0303799093	홍어	10	10	
0303799094	밀크피쉬	10	0	
0303799095	민어	50	E	
0303799096	가오리	10	10	
0303799097	까나리	10	10	
0303799098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은 제외한다)	10	5	
0303799099	기타	10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303801000	간	10	3	
0303802010	명란	10	7	
0303802090	기타	10	7	
0304111000	피레트	20	5	
0304112000	연육	20	5	
0304119000	기타	20	5	
0304121000	피레트	20	5	
0304122000	연육	20	5	
0304129000	기타	20	5	
0304191010	피레트	20	7	
0304191020	연육	20	10	
0304191090	기타	20	7	
0304192010	피레트	20	7	
0304192020	연육	20	5	
0304192090	기타	20	5	
0304193010	피레트	20	5	
0304193020	연육	20	5	
0304193090	기타	20	5	
0304199010	피레트	20	5	
0304199020	연육	20	5	
0304199090	기타	20	5	
03042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0	7	
030422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10	5	
0304291000	명태의 것	10	10	
0304292000	붕장어의 것	10	10	
0304293000	대구의 것	10	10	
0304294000	가자미의 것	10	10	
0304295000	참다랑어의 것	10	10	
0304296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은 제외한다)의 것	10	5	
0304297000	틸라피아의 것	10	10	
0304298000	쥐치의 것	10	5	
0304299000	기타	10	7	
0304911000	냉동 연육	10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304919000	기타	10	10	
0304921000	냉동 연육	10	5	
0304929000	기타	10	5	
0304991010	냉동 연육	10	0	
0304991090	기타	10	10	
0304999010	냉동 연육	10	0	
0304999090	기타	10	10	
0305100000	어류의 분,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	7	
0305201000	간	20	3	
0305202000	건조어란	20	3	
0305203000	훈제어란	20	3	
0305204010	명태의 것	20	10	
0305204020	조기의 것	20	3	
0305204030	청어의 것	20	0	
0305204090	기타	20	7	
0305301000	건조한 것	20	7	
0305302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5	
0305410000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넬카,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케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츠,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0	5	
030542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20	0	
0305491000	멸치	20	5	
0305492000	명태	20	5	
0305499000	기타	20	5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0	10	
0305591000	상어 지느러미	20	5	
0305592000	멸치	20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305593000	명태(북어)	20	0	
0305594000	조기(굴비)	20	7	
0305595000	북어	20	10	
0305596000	갯장어	20	5	
0305597000	까나리	20	5	
0305598000	베도라치(실치)	20	10	
0305599000	기타	20	5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20	0	
03056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0	5	
0305631000	멸치젓	20	10	
0305639000	기타	20	5	
0305691000	연어	20	5	
0305692000	송어	20	10	
0305693000	갈치	20	5	
0305694000	정어리	20	3	
0305695000	고등어	20	10	
0305696000	조기	20	10	
0305697000	전갱이	20	10	
0305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	0	
0305699000	기타	20	5	
03061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파누리루스종, 자수스종)	20	5	
03061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종)	20	7	
0306131000	새우살	20	0	
0306139000	기타	20	0	
0306141000	게살	20	10	
0306142000	왕게	20	10	
0306143000	꽃게	14	10	
0306149000	기타	14	10	
0306190000	기타[분,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	7	
03062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 파누리루스종, 자수스종)	20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3062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종)	20	7	
0306231000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10	
0306232000	건조한 것	20	10	
030623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42% 또는 283 원/kg, 양자 중 고액(율)	10	
0306241010	꽃게	20	10	
0306241020	대게	20	10	
0306241090	기타	20	10	
0306242000	건조한 것	20	5	
030624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10	
0306291000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7	
0306292000	건조한 것	20	7	
030629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7	
0307101011	종패용	0	0	
0307101019	기타	5	3	
0307101090	기타	20	3	
0307102000	냉동한 것	20	5	
0307103000	건조한 것	20	5	
0307104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3	
0307210000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10	
0307291000	냉동한 것	20	10	
0307292000	건조한 것	20	10	
030729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10	
0307310000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10	
0307391000	냉동한 것	20	7	
0307392000	건조한 것	20	7	
0307399000	기타	20	5	
0307411000	갑오징어	10	10	
0307412000	오징어	10	7	
0307491010	갑오징어	10	10	
0307491020	오징어	22	16	
0307492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10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307493000	건조한 것	10	10	
0307511000	낙지	20	10	
0307512000	주꾸미	20	7	
0307519000	기타	20	10	
0307591010	문어	20	10	
0307591020	낙지	20	10	
0307591030	주꾸미	20	10	
0307591090	기타	20	10	
0307592000	건조한 것	20	10	
0307599000	기타	20	7	
030760000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20	0	
0307911110	치패	20	5	
0307911190	기타	20	10	
0307911200	전복	20	10	
0307911300	소라	20	10	
0307911410	종패용	0	0	
0307911490	기타	20	7	
0307911510	종패용	0	0	
0307911590	기타	20	10	
0307911600	새조개	20	10	
0307911700	개아지살	20	10	
0307911800	바지락	20	10	
0307911910	재첩	20	5	
0307911990	기타	20	10	
0307919010	성게	20	10	
0307919020	해삼	20	3	
0307919031	종묘	0	0	
0307919039	기타	20	10	
0307919040	해파리	20	10	
0307919090	기타	20	7	
0307991110	새조개	20	10	
0307991120	개량조개	20	10	
0307991130	바지락	20	10	
0307991140	개아지살	20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307991150	피조개	20	10	
0307991160	소라(냉동)	20	10	
0307991190	기타	20	10	
0307991910	해삼	20	3	
0307991920	우렁챙이	20	10	
0307991990	기타	20	10	
0307992110	개량조개	20	10	
0307992120	개아지살	20	10	
0307992130	바지락	20	10	
0307992190	기타	20	10	
0307992920	해삼	20	3	
0307992930	우렁챙이	20	10	
0307992990	기타	20	7	
0307993110	개량조개	20	7	
0307993120	바지락	20	10	
0307993130	소라(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5	
0307993190	기타	20	10	
0307993910	성게	20	7	
0307993920	해삼	20	3	
0307993930	해파리	20	5	
0307993990	기타	20	7	
040110000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퍼센트 이하인 것	36	E	
040120000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퍼센트 초과 6 퍼센트 이하인 것	36	E	
0401301000	냉동크림	36	16	
0401309000	기타	36	16	
0402101010	탈지분유	176	부록 2- 가-1 참조	
0402101090	기타	176	부록 2- 가-1 참조	
0402109000	기타	176	부록 2- 가-1 참조	
0402211000	전지분유	176	부록 2- 가-1 참조	
0402219000	기타	176	부록 2- 가-1 참조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402290000	기타	176	E	
0402911000	무당연유	89	E	
0402919000	기타	89	E	
0402991000	가당연유	89	E	
0402999000	기타	89	E	
0403101000	액상의 것	36	10	
0403102000	냉동한 것	36	10	
0403109000	기타	36	10	
0403901000	버터밀크	89	E	
0403902000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36	16	
0403903000	케피어	36	16	
0403909000	기타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36	16	
0404101011	사료용	49.5	10	
0404101019	기타	49.5	10	
0404101091	사료용	49.5	E	
0404101099	기타	49.5	E	
0404102111	사료용	49.5	E	
0404102119	기타	49.5	E	
0404102121	사료용	49.5	10	
0404102129	기타	49.5	10	
0404102131	사료용	49.5	10	
0404102139	기타	49.5	10	
0404102191	사료용	49.5	16	
0404102199	기타	49.5	16	
0404102910	사료용	49.5	16	
0404102990	기타	49.5	16	
040490100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 퍼센트 이하인 것	36	E	
040490200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36	E	
0405100000	버터	89	E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	8	16	
0405900000	기타	89	16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	36	16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406101020	크림 치즈	36	16	
0406101090	기타	36	16	
0406102000	커드	36	16	
040620000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36	16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6	16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36	16	
0406901000	체더 치즈	36	16	
0406902000	가우더 치즈	36	10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	36	10	
0406904000	에멘탈 치즈	36	16	
0406909000	기타	36	16	
0407001010	종란	27	10	
0407001090	기타	27	10	
0407009000	기타	27	10	
0408110000	건조한 것	27	12-A	
0408190000	기타	27	12-A	
0408910000	건조한 것	27	10	
040899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41.6	12-A	
0408999000	기타	27	12-A	
0409000000	천연꿀	243% 또는 1,864 원/kg, 양자 중 고액(율)	16	
0410001000	거북알	8	5	
0410002000	살랑개 동우리	8	5	
0410003000	로열젤리	8	5	
0410009000	기타	8	5	
0501000000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 웨이스트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502100000	돼지털, 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3	0	
0502902000	염소털	3	0	
0502909000	기타	3	0	
0504001010	소의 것	27	10	
0504001090	기타	27	10	
0504002000	방광	27	10	
0504003000	위	27	10	
0505100000	송털, 충전재용 깃털	3	5	
0505901000	우모분	5	5	
0505909000	기타	5	5	
0506100000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에 한한다)	3	0	
0506901010	호랑이의 것	3	0	
0506901020	소의 것	9	5	
0506901090	기타	3	0	
0506902000	골분	25.6	16	
0506909000	기타	3	0	
0507101000	상아	8	5	
0507102000	서각	8	5	
0507109000	기타	8	5	
0507901110	전지	20	16	
0507901190	기타	20	16	
0507901200	녹각	20	16	
0507902010	귀갑과 귀판	8	5	
0507902020	고래수염과 그 털	8	3	
0507902030	천산갑	8	5	
0507902040	발굽과 발톱	8	5	
0507902090	기타	8	5	
0508001000	산호	8	0	
0508002010	진주패각	8	0	
0508002020	청패각(전복)	8	0	
0508002030	첩패각과 지첩패각	8	0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8	0	
0508002050	트로커스 패각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508002060	아고야 패각	8	0	
0508002070	민물패각(메가로나리아스네보사, 엠브레마프리카타, 콰드루라 콰드루라종)	8	0	
0508002090	기타	8	0	
0508009000	기타	8	0	
0510001000	용연향	8	5	
0510002000	해리향	8	5	
0510003000	사향	8	5	
0510004000	우황	8	5	
0510005000	오령지	8	5	
0510009010	취장	8	5	
0510009020	담즙	8	5	
0510009030	합개	8	5	
0510009090	기타	8	5	
0511100000	소의 정액	0	0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알	8	7	
0511911090	기타	8	5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	5	5	
0511919000	기타	8	10	
0511991000	동물의 피	8	5	
0511992010	돼지의 정액	0	0	
0511992090	기타	0	0	
0511993010	소의 것	18	0	
0511993020	돼지의 것	18	0	
0511993090	기타	0	0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18	10	
0511995011	정돈한 것	3	0	
0511995019	기타	3	0	
0511995020	마모의 웨이스트	3	0	
0511996000	동물성의 천연해면	8	0	
0511999010	잠종	18	10	
0511999020	누에번데기	8	5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 3 류 물품의 사체를 제외한다)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 및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	8	5	
0511999090	기타	8	5	
0601101000	튤립의 것	8	5	
0601102000	백합의 것	4	3	
0601103000	다리아의 것	8	5	
0601104000	히아신스의 것	8	5	
06011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5	
0601106000	아이리스의 것	8	5	
0601107000	후리지아의 것	8	5	
0601108000	수선의 것	8	5	
0601109000	기타	8	5	
0601201000	튤립의 것	8	5	
0601202000	백합의 것	8	5	
0601203000	다리아의 것	8	5	
0601204000	히아신스의 것	8	5	
06012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5	
0601206000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8	5	
0601207000	아이리스의 것	8	5	
0601208000	후리지아의 것	8	5	
0601209010	수선의 것	8	5	
0601209090	기타	8	5	
0602101000	과수의 것	8	5	
0602109000	기타	8	10	
0602201000	사과나무	18	5	
0602202000	배나무	18	5	
0602203000	복숭아나무	18	5	
0602204000	포도나무	8	5	
0602205000	감나무	8	5	
0602206000	쿨나무	18	5	
0602207010	밤나무	8	10	
0602207020	호두나무	8	10	
0602207030	잣나무	8	10	
0602209000	기타	8	5	
0602300000	진달래 속의 식물 및 철쭉(접목한	8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602400000	장미(접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5	
0602901010	난초	8	5	
0602901020	카네이션	8	5	
0602901030	구즈마니아	8	5	
0602901040	안개초	8	5	
0602901050	국화	8	5	
0602901060	선인장류	8	5	
0602901090	기타	8	5	
0602902011	분재용	8	10	
0602902019	기타	8	10	
0602902020	낙엽송	8	10	
0602902030	삼나무	8	10	
0602902040	편백	8	10	
0602902050	리기테다	8	10	
0602902061	분재용	8	10	
0602902069	기타	8	10	
0602902071	분재용	8	10	
0602902079	기타	8	10	
0602902081	분재용	8	10	
0602902089	기타	8	10	
0602902091	분재용	8	10	
0602902099	기타	8	10	
0602909010	목단	8	10	
0602909020	동백	8	10	
0602909030	뽕나무	18	5	
0602909040	버섯의 종균	8	5	
0602909090	기타	8	5	
0603110000	장미	25	5	
0603120000	카네이션	25	3	
0603131000	심비디움	25	5	
0603132000	팔레놉시스	25	5	
0603139000	기타	25	5	
0603140000	국화	25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603191000	튬립	25	10	
0603192000	글라디올러스	25	5	
0603193000	백합	25	5	
0603194000	안개초	25	5	
0603199000	기타	25	7	
0603900000	기타	25	7	
0604100000	이끼와 지의	8	10	
0604911010	은행잎	8	10	
0604911090	기타	8	10	
0604919000	기타	8	5	
0604990000	기타	8	5	
0701100000	종자용	304	E	
0701900000	기타	304	E	
07020000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45	7	
0703101000	양파	135% 또는 18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3102000	쪽파	27	10	
0703201000	탈피한 것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3209000	기타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3901000	리크	27	10	
0703909000	기타	27	10	
0704100000	꽃양배추 및 절구된 브로콜리	27	10	
070420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27	10	
0704901000	양배추	27	5	
0704902000	배추	27	10	
0704909000	기타	27	10	
0705110000	절구상추	45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705190000	기타	45	10	
0705210000	위트루우프치커리(시코리엄 인티버스 변종, 포리오섬)	8	10	
0705290000	기타	8	5	
0706101000	당근	30% 또는 134 원/kg, 양자 중 고액(율)	7	
0706102000	순무	27	10	
0706901000	무	30	10	
0706902000	고추냉이와 겨자무	27	5	
0706903000	더덕	27	16	
0706904000	도라지	27	16	
0706909000	기타	27	5	
0707000000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7	10	
0708100000	완두(피섬 새티범)	27	10	
0708200000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27	10	
0708900000	기타 채두류	27	16	
0709200000	아스파라거스	27	5	
0709300000	가지(에그플랜트)	27	10	
0709400000	셀러리(셀러리약은 제외한다)	27	10	
0709517000	양송이버섯	30	10	
0709519000	기타	30	10	
0709591000	송이버섯	30	16	
0709592000	표고버섯	40% 또는 1,625 원/kg, 양자 중 고액(율)	12	
0709593000	영지버섯	30	10	
0709594010	큰느타리버섯	30	10	
0709594090	기타	30	10	
0709595000	팽이버섯	30	10	
0709596000	송로	27	16	
0709599000	기타	30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에 한한다)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9609000	기타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9700000	시금치류	27	10	
0709901000	고사리	30	16	
0709902000	고비	27	16	
0709903000	호박	27	10	
0709909000	기타	27	10	
0710100000	감자	27	10	
0710210000	완두(피성 새티범)	27	7	
0710220000	콩(비그나종, 파세러스종)	27	7	
0710290000	기타	27	7	
0710300000	시금치류	27	10	
0710400000	스위트콘	30	7	
0710801000	양파	27	16	
0710802000	마늘	27	10	
0710803000	죽순	27	16	
0710804000	당근	27	10	
0710805000	고사리	30	16	
0710806000	송이버섯	27	16	
0710807000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27	E	
0710809000	기타	27	7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10	
0711200000	올리브	27	5	
0711400000	오이류	30	10	
0711510000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30	5	
0711591000	송로	27	16	
0711599000	기타	30	5	
0711901000	마늘	360% 또는 1,800 원/kg,	E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양자 중 고액(율)		
0711903000	죽순	27	16	
0711904000	당근	30	10	
0711905010	고사리	30	16	
0711905020	고비	27	16	
0711905091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1905099	기타	27	5	
0711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5	
0712200000	양파	135% 또는 18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311000	양송이버섯	30	10	
0712319000	기타	30% 또는 1,218 원/kg, 양자 중 고액(율)	10	
0712320000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30% 또는 1,218 원/kg, 양자 중 고액(율)	16	
0712330000	젤리균류(트레멜라종)	30% 또는 1,218 원/kg, 양자 중 고액(율)	10	
0712391010	송이버섯	30	16	
0712391020	표고버섯	40% 또는 1,625 원/kg, 양자 중 고액(율)	15	
0712391030	영지버섯	30% 또는 842 원/kg, 양자 중 고액(율)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712391040	느타리버섯	30	10	
0712391050	팽이버섯	30	10	
0712391090	기타	30% 또는 1,218 원/kg, 양자 중 고액(율)	10	
0712392000	송로	27	16	
0712901000	마늘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902010	고사리	30% 또는 1,807 원/kg, 양자 중 고액(율)	16	
0712902020	무	30	16	
0712902030	파	30% 또는 1,159 원/kg, 양자 중 고액(율)	16	
0712902040	당근	30% 또는 864 원/kg, 양자 중 고액(율)	10	
0712902050	호박	30	16	
0712902060	양배추	30	10	
0712902070	토란줄기	30	5	
0712902080	고구마줄기	30	5	
0712902091	스위트콘(종자용)	370	16	
0712902092	스위트콘(종자용은 제외한다)	370	16	
0712902093	감자	27	16	
0712902094	고비	30% 또는 1,446 원/kg, 양자 중 고액(율)	16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712902095	더덕	30	16	
0712902099	기타	30	16	
0712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7	
0713101000	종자용	27	10	
0713102000	사료용	0	0	
0713109000	기타	27	10	
0713200000	이집트 콩(가반조스)	27	10	
0713311000	종자용	607.5	E	
0713319000	기타	607.5	E	
0713321000	종자용	420.8	E	
0713329000	기타	420.8	E	
0713331000	종자용	27	10	
0713339000	기타	27	10	
0713390000	기타	27	10	
0713400000	렌즈콩	27	10	
0713500000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메이저) 및 말먹이용의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에쿠나 비시아 파바변종, 마이너)	27	10	
0713900000	기타	27	10	
0714101000	신선한 것	887.4	10	
0714102010	칩	887.4	10	
0714102020	펠리트	887.4	10	
0714102090	기타	887.4	5	
0714103000	냉장한 것	887.4	5	
0714104000	냉동한 것	45	5	
0714201000	신선한 것	385% 또는 338 원/kg, 양자 중 고액(율)	16	
0714202000	건조한 것	385	16	
0714203000	냉장한 것	385	16	
0714204000	냉동한 것	45	16	
0714209000	기타	385	16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714901010	냉동한 것	45	16	
0714901090	기타	18	16	
0714909010	냉동한 것	45	16	
0714909090	기타	385	16	
0801110000	말린 것	30	16	
0801190000	기타	30	16	
08012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30	16	
0801220000	탈각한 것	30	16	
08013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8	10	
0801320000	탈각한 것	8	10	
08021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8	10	
0802120000	탈각한 것	8	10	
08022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8	10	
0802220000	탈각한 것	8	10	
080231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45	E	
0802320000	탈각한 것	30	E	
0802401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219.4% 또는 1,47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02402000	탈각한 것	219.4% 또는 1,470 원/k g, 양자 중 고액(율)	E	
0802500000	피스타치오	30	10	
0802600000	마카다미아 너트	30	7	
0802901010	탈각하지 아니한 것	566.8% 또는 2,664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02901020	탈각한 것	566.8% 또는 2,664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02902010	탈각하지 아니한 것	27.0% 또는 803 원/kg, 양자 중 고액(율)	16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802902020	탈각한 것	27.0% 또는 803 원/kg, 양자 중 고액(을)	16	
0802909000	기타	30	16	
0803000000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30	5	
0804100000	대추야자	30	5	
0804200000	무화과	30	10	
0804300000	파인애플	30	7	
0804400000	아보카도	30	5	
0804501000	구아버	30	5	
0804502000	망고	30	7	
0804503000	망고스틴	30	7	
0805100000	오렌지	50	E	
0805201000	감귤	144	E	
0805209000	기타	144	16	부속서 2- 나 참조
0805400000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한다)	30	10	
0805501000	레몬(시트러스 리몬 및 시트러스 리머눔)	30	7	
0805502010	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	30	7	
0805502020	시트러스 라티폴리아	144	10	
0805900000	기타	144	E	
0806100000	신선한 것	45	16-S	
0806200000	건조한 것	21	10	
0807110000	수박	45	7	
0807190000	기타	45	10	
0807200000	포포우(파파야)	30	7	
0808100000	사과	45	E	
0808201000	배	45	E	
0808202000	마르멜로	45	10	
0809100000	살구	45	10	
0809200000	버찌	24	10	
0809300000	복숭아(벡터린을 포함한다)	45	16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809401000	자두	45	10	
0809402000	슬로우	45	10	
0810100000	초본류 딸기	45	7	
081020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및 로간베리	45	10	
0810400000	크랜베리, 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속의 과실	45	7	
0810500000	키위프루트	45	10	
0810600000	두리언	45	7	
0810901000	감	50	12	
0810902000	단감	45	16	
0810903000	대추	611.5% 또는 5,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10905000	매실	50	E	
0810909000	기타	45	10	
0811100000	초본류 딸기	30	16	
081120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및 구즈베리	30	7	
0811901000	밤	30	E	
0811902000	대추	30	E	
0811903000	잣	30	16-A	
0811909000	기타	30	7	
0812100000	버찌	30	10	
0812901000	초본류 딸기	30	E	
0812909000	기타	30	10	
0813100000	살구	45	10	
0813200000	프룬	18	5	
0813300000	사과	45	16	
0813401000	감	50	E	
0813402000	대추	611.5% 또는 5,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813409000	기타	45	10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45	E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30	7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30	5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2	0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2	0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8	0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8	0	
0901901000	커피의 각과 피	3	0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8	0	
0902100000	녹차(발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	513.6	16	
0902200000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13.6	16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	40	10	
0902400000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40	10	
0903000000	마태	25	10	
09041100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8	5	
09041200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8	5	
0904201000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042020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05000000	바닐라	8	5	
0906110000	계피(신나모뎀 제이라니쿰 블룸)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0906191000	계피(신나모뎀 제이라니콤 블룸은 제외한다)	8	5	
0906192000	계피나무의 꽃	8	5	
0906201000	계피	8	5	
0906202000	계피나무의 꽃	8	5	
0907000000	정향[과실, 꽃 및 화경(花莖)에 한한다]	8	5	
0908100000	육두구	8	5	
0908200000	메이스	8	5	
0908300000	소두구	8	5	
0909100000	아니스 또는 대회향의 씨	8	5	
0909200000	코리앤더의 씨	8	5	
0909300000	커민의 씨	8	5	
0909400000	캐러웨이의 씨	8	5	
0909500000	회향의 씨, 쥬니퍼의 열매	8	5	
09101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16	
0910102000	건조한 것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16	
0910109000	기타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16	
0910200000	샤프란	8	5	
0910300000	심황(강황)	8	5	
0910910000	혼합물(이 류의 주 제 1 호나목의 것에 한한다)	8	5	
0910991000	타임, 월계수의 잎	8	5	
0910992000	카레	8	5	
0910999000	기타	8	5	
1001100000	듀럼종의 밀	3	3	
1001901000	메슬린	3	3	
1001909010	종자용	1.8	0	
1001909020	사료용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001909030	제분용	1.8	0	
1001909090	기타	1.8	0	
1002001000	종자용	108.7	10	
1002009000	기타	3	0	
1003001000	맥주맥	513	E	
1003009010	겉보리	324% 또는 326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003009020	쌀보리	299.7% 또는 361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003009090	기타	299.7	E	
1004001000	종자용	554.8	10	
1004009000	기타	3	0	
1005100000	종자용	328	16	
1005901000	사료용	328	10	
1005902000	팝콘	630	16	
1005909000	기타	328	10	
1006100000	벼	-	X	
1006201000	메현미	-	X	
1006202000	찰현미	-	X	
1006301000	멥쌀	-	X	
1006302000	찹쌀	-	X	
1006400000	쇄미	-	X	
1007001000	종자용	779.4	16	
1007009000	기타	3	0	
1008100000	메밀	256.1	16	
1008201010	종자용	18	10	
1008201090	기타	3	0	
1008209000	기타	3	0	
1008300000	카나리시드	3	0	
1008900000	기타 곡물	800.3	16	
1101001000	밀가루	4.2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101002000	메슬린 가루	5	3	
1102100000	호밀가루	5	3	
1102200000	옥수수가루	5	3	
1102901000	보리가루	260	16	
1102902000	쌀가루	-	X	
1102909000	기타	800.3	16	
1103110000	밀의 것	288.2	16	
1103130000	옥수수의 것	162.9	16	
1103191000	보리의 것	260	16	
1103192000	귀리의 것	554.8	16	
1103193000	쌀의 것	-	X	
1103199000	기타	800.3	16	
1103201000	밀의 것	288.2	16	
1103202000	쌀의 것	-	X	
1103203000	보리의 것	260	16	
1103209000	기타	800.3	16	
1104120000	귀리의 것	554.8	16	
1104191000	쌀의 것	-	X	
1104192000	보리의 것	233	16	
1104199000	기타	800.3	E	
1104220000	귀리의 것	554.8	16	
1104230000	옥수수의 것	167	16	
1104291000	율무의 것	800.3	16	
1104292000	보리의 것	126	16	
1104299000	기타	800.3	16	
1104301000	쌀의 것	5	E	
1104309000	기타	5	16	
1105100000	분, 조분과 분말	304	16	
1105200000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304	16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 0713 호의 것에 한한다)	8	5	
1106201000	참깨리의 것	8	10	
1106209000	기타	8	10	
1106300000	제 8 류 물품의 것	8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107100000	볶지 아니한 것	269	E	
1107201000	훈연한 것	269	E	
1107209000	기타	27	10	
1108110000	밀의 것	50.9	16	
1108121000	식품용	226	E	
1108129000	기타	226	16	
1108130000	감자의 것	455	16	
1108141000	식품용	455	E	
1108149000	기타	455	E	
1108191000	고구마의 것	241.2	E	
1108199000	기타	800.3	E	
1108200000	이눌린	800.3	E	
1109000000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5	
1201001010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16	
1201001020	사료용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201009010	콩나물용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201009090	기타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202100000	탈각하지 아니한 것	230.5	E	
1202200000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30.5	E	
1203000000	코프라	3	0	
1204000000	아마인(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	0	
12051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0	
1205109000	기타	10	10	
12059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205909000	기타	10	10	
1206000000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5	7	
1207200000	면실	3	0	
1207400000	참깨	630% 또는 6,66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207500000	겨자씨	3	0	
1207910000	양귀비씨	3	0	
1207991000	들깨	40% 또는 4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207992000	시어넛(캐리트넛)	3	0	
1207993000	팜넛과 핵	3	0	
1207994000	피마자	3	0	
1207995000	잇꽃씨	3	0	
1207999000	기타	3	0	
1208100000	대두의 것	3	0	
1208900000	기타	3	0	
1209100000	사탕무 종자	0	0	
1209210000	루우산(알팔파) 종자	0	0	
1209220000	클로버(트리폴리엄종) 종자	0	0	
1209230000	페스큐 종자	0	0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시스 엘) 종자	0	0	
1209250000	라이그래스 종자(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랭, 로오리엄 페레네 엘)	0	0	
1209291000	루핀 종자	0	0	
1209292000	수단그래스 종자	0	0	
1209293000	오차드그래스 종자	0	0	
1209294000	티모디그래스 종자	0	0	
1209299000	기타	0	0	
120930000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209911010	양파 종자	0	0	
1209911090	기타	0	0	
1209912000	무 종자	0	0	
1209919000	기타	0	0	
1209991010	참나무의 종자	0	0	
1209991090	기타	0	0	
1209992000	과수목의 종자	0	0	
1209993000	연초 종자	0	0	
1209994000	잔디 종자	0	0	
1209999000	기타	0	0	
1210100000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은 제외한다)	30	16	
1210201000	호프	30	16	
1210202000	루플린	30	16	
1211201100	수삼	222.8	E	
1211201210	본삼	222.8	E	
1211201290	기타	222.8	E	
1211201310	본삼	754.3	E	
1211201390	기타	754.3	E	
1211202110	분	18	E	
1211202120	타브렛 또는 캡슐	18	E	
1211202190	기타	18	E	
1211202210	분	754.3	E	
1211202220	타브렛 또는 캡슐	754.3	E	
1211202290	기타	754.3	E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754.3	E	
1211209200	종자	754.3	E	
1211209900	기타	754.3	E	
1211300000	코카잎	8	5	
1211400000	양귀비줄기	8	5	
1211901000	부자	8	5	
1211902000	황련	8	5	
1211903000	원지	8	5	
1211904000	패모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211905000	두충	8	5	
1211906000	감초	8	5	
1211909010	사인	8	5	
1211909020	산조인	8	5	
1211909030	사군자	8	5	
1211909040	용안육	8	5	
1211909050	산사자	8	5	
1211909060	연자육	8	5	
1211909070	박하	8	5	
1211909080	초피	8	10	
1211909091	건조한 도라지	8	16	
1211909099	기타	8	5	
1212201010	건조한 것	20	3	
1212201020	냉장한 것	20	3	
1212201030	냉동한 것	10	3	
1212201090	기타	20	3	
1212202010	건조한 것	20	10	
1212202020	염장한 것	20	5	
1212202030	냉장한 것	20	5	
1212202040	냉동한 것	45	5	
1212202090	기타	20	3	
1212203010	건조한 것	20	5	
1212203020	냉장한 것	20	3	
1212203030	냉동한 것	45	5	
1212203090	기타	20	3	
1212204010	신선한 것	20	3	
1212204020	냉장한 것	20	3	
1212204030	냉동한 것	45	5	
1212204090	기타	20	3	
1212205010	염장한 것	20	5	
1212205020	냉장한 것	20	3	
1212205030	냉동한 것	45	5	
1212205090	기타	20	3	
1212206010	냉동한 것	45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212206090	기타	20	7	
1212207011	냉동한 것	45	7	
1212207019	기타	20	5	
1212207021	냉동한 것	45	5	
1212207029	기타	20	5	
1212207031	냉동한 것	45	3	
1212207039	기타	20	3	
1212208011	냉동한 것	45	3	
1212208019	기타	20	3	
1212208021	냉동한 것	45	3	
1212208029	기타	20	3	
1212208031	냉동한 것	45	5	
1212208039	기타	20	3	
1212209011	냉동한 것	45	5	
1212209019	기타	20	5	
1212209091	냉동한 것	45	3	
1212209099	기타	20	5	
1212910000	사탕무	3	0	
1212991000	치커리뿌리(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것으로서 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5	
1212992000	구약구의 뿌리	8	5	
1212993000	화분	8	5	
1212994000	사탕수수	3	0	
1212995000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를 포함한다)	20	16	
1212996000	살구, 복숭아(백터린을 포함한다) 또는 자두의 핵	8	5	
1212999000	기타	8	5	
1213000000	곡물의 껍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5	
1214101000	사료용	1	0	
1214109000	기타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00.5	16	
1214909011	사료용	1	0	
1214909019	기타	18	0	
1214909090	기타	100.5	16	
1301200000	아라비아 검	3	0	
1301901000	올레오레진	3	5	
1301902010	셀락	3	0	
1301902090	기타	3	0	
1301909000	기타	3	5	
1302110000	아편	8	5	
1302120000	감초의 것	8	5	
1302130000	호프의 것	30	16	
1302191110	백삼엑스	20	16	
1302191120	백삼엑스분	20	16	
1302191190	기타	20	16	
1302191210	홍삼엑스	754.3	E	
1302191220	홍삼엑스분	754.3	E	
1302191290	기타	754.3	E	
1302191900	기타	20	16	
1302192000	캐슈넛셀액	8	5	
1302193000	생칠	8	10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엑스	8	5	
1302199020	콜라엑스	8	5	
130219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 또는 바닐라 엑스	8	5	
1302199099	기타	8	5	
1302200000	펙틴질, 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8	5	
1302311000	실한천	8	5	
1302312000	분한천	8	5	
1302319000	기타	8	5	
1302320000	로우커스트두, 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5	
1302390000	기타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401101000	맹종죽	8	10	
1401102000	청환죽	8	10	
1401109000	기타	8	10	
1401201000	쫄개거나 인발한 것	8	10	
1401209000	기타	8	10	
1401901000	취줄기껍질	8	10	
1401909000	기타	8	10	
1404200000	면린터	3	0	
1404901000	조각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종자, 껍질 및 너트(예: 상아야자)	3	5	
1404902010	저피	3	5	
1404902020	삼아피	3	5	
1404902090	기타	3	7	
1404903010	떡갈잎	5	10	
1404903020	청미래덩굴잎	5	10	
1404903090	기타	5	10	
1404904000	총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 식물성 헤어 및 거머리말)(총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3	5	
1404905000	비 또는 브러시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 피아사바, 카우치 그라스 및 이스틸리)(다발 또는 꾸러미 상태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	0	
1404906010	오배자	3	5	
1404906020	아몬드 핵	3	5	
1404906090	기타	3	5	
1404909000	기타	3	5	
1501001010	산가가 1 이하인 것	3	0	
1501001090	기타	3	0	
1501002000	가금지	3	0	
1502001010	산가가 2 이하인 것	2	0	
1502001090	기타	2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502009000	기타	3	0	
1503002000	라드유	3	0	
1503009000	기타	3	0	
1504101000	상어의 간유와 그 분획물	3	3	
1504109000	기타	3	3	
1504200000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한다)	3	7	
1504301000	경유와 그 분획물	3	0	
1504309000	기타	3	3	
1505001000	조상의 울그리스	3	0	
1505009000	기타	3	0	
1506001000	우각유와 그 분획물	3	0	
1506009000	기타	3	0	
1507101000	식품용	5.4	10	
1507102000	바이오디젤 제조용의 것	5.4	10	
1507109000	기타	5.4	10	
1507901010	식품용	5.4	10	
1507901020	바이오디젤 제조용의 것	5.4	10	
1507901090	기타	5.4	10	
1507909000	기타	8	10	
1508100000	조유	27	16	
1508901000	정제유	27	16	
1508909000	기타	27	16	
1509100000	버어진	8	5	
1509900000	기타	8	5	
1510000000	기타 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만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8	5	
1511100000	조유	3	0	
1511901000	팜올레인	2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511902000	팜스테아린	2	0	
1511909000	기타	2	0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	10	5	
1512112000	잇꽃유	8	5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10	5	
1512191020	잇꽃유	8	5	
1512199010	해바라기씨유	10	5	
1512199020	잇꽃유	8	5	
1512210000	조유(고시폴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4	5	
1512291000	정제유	5.4	5	
1512299000	기타	8	5	
1513110000	조유	3	0	
1513191000	정제유	3	0	
1513199000	기타	3	0	
1513211000	팜핵유	5	5	
1513212000	바바수유	8	5	
1513291010	팜핵유	5	5	
1513291020	바바수유	8	5	
1513299000	기타	8	5	
1514110000	조유	8	16	
1514191000	정제유	10	16	
1514199000	기타	10	10	
1514911000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8	16	
1514912000	겨자유	30	10	
1514991010	기타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10	10	
1514991020	겨자유	30	10	
1514999000	기타	10	10	
1515110000	조유	8	5	
1515190000	기타	8	5	
1515210000	조유	8	10	
1515290000	기타	8	5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8	5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630% 또는 12,060 원/kg,	E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양자 중 고액(율)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16	
1515909010	미강유와 그 분획물	8	5	
1515909020	동백유와 그 분획물	8	5	
1515909030	호호바유와 그 분획물	8	5	
1515909040	동유와 그 분획물	8	5	
1515909090	기타	8	5	
1516101000	우지와 그 분획물	8	5	
1516102000	경유와 그 분획물	8	0	
1516109000	기타	8	5	
1516201010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	36	16	
151620102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36	16	
1516201030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획물	36	16	
151620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16	
151620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36	16	
1516202010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8	5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8	5	
151620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8	5	
1516202040	면실유와 그 분획물	8	5	
1516202050	대두유와 그 분획물	8	5	
1516202090	기타	8	5	
1517100000	마가린(액상마가린은 제외한다)	8	5	
1517901000	이미테이션라드	8	5	
1517902000	쇼트닝	8	5	
1517909000	기타	8	5	
1518001000	탈수피마자유	8	5	
1518002000	에폭시화한 대두유	8	5	
1518009000	기타	8	5	
152000000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페액	8	5	
1521101000	카나버 왁스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521102000	팜왁스	8	5	
1521109000	기타	8	5	
1521901000	경납	8	3	
1521902000	밀납	8	5	
1521909000	기타	8	5	
1522001010	천연의 것	8	5	
1522001090	기타	8	5	
1522009000	기타	8	5	
1601001000	소시지	18	10	
1601009000	기타	30	10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E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10	
1602209000	기타	30	10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7	
1602319000	기타	30	7	
1602321010	삼계탕	30	10	
1602321090	기타	30	16	
1602329000	기타	30	16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10	
1602399000	기타	30	10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16	
1602419000	기타	27	16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16	
1602429000	기타	27	16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16	
1602499000	기타	27	16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72	E	
1602509000	기타	72	E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909000	기타	30	E	
1603001000	육 엑스	30	16	
1603002000	육즙	30	16	
1603003000	어류의 엑스	30	3	
1603004000	어류의 즙	30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603009000	기타	30	5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4119000	기타	20	3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3	
1604129000	기타	20	3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3	
1604139000	기타	20	3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20	7	
1604141012	보일드한 것	20	7	
1604141019	기타	20	7	
1604141021	기름에 담근 것	20	7	
1604141022	보일드한 것	20	7	
1604141029	기타	20	7	
1604141031	기름에 담근 것	20	5	
1604141032	보일드한 것	20	5	
1604141039	기타	20	7	
1604149000	기타	20	7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4159000	기타	20	5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7	
1604169000	기타	20	10	
1604191010	공치	20	10	
1604191020	전갱이	20	5	
1604191030	뱀장어(앵귌라종)	20	5	
1604191090	기타	20	5	
1604199010	쥐치포	20	5	
1604199090	기타	20	7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	20	5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	20	5	
1604203000	생선 소시지	20	5	
1604204010	게맛의 것	20	5	
1604204090	기타	20	5	
1604209000	기타	20	5	
1604301000	캐비아	2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604302000	캐비아 대용물	20	7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101020	훈제한 것(밀폐용기에 넣은 것은 제외한다)	20	5	
1605101091	붉은대게살	20	5	
1605101099	기타	20	5	
1605109000	기타	20	5	
1605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3	
1605209010	훈제한 것	20	3	
1605209020	브레드한 것	20	3	
1605209090	기타	20	7	
16053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	
1605309000	기타	20	5	
16054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3	
1605409000	기타	20	3	
1605901010	굴	20	3	
1605901020	홍합	20	5	
1605901030	바지락	20	5	
1605901040	새조개	20	10	
1605901070	골뱅이	20	7	
1605901080	오징어	20	7	
1605901091	전복	20	5	
1605901092	소라	20	5	
1605901099	기타	20	5	
1605902010	오징어	20	7	
1605902020	골뱅이	20	5	
1605902030	새조개	20	5	
1605902090	기타	20	5	
1605909010	조미오징어	20	16	
1605909020	해삼	20	5	
1605909030	골뱅이	20	7	
1605909040	홍합	20	7	
1605909090	기타	20	16	
1701111000	당도가 98.5 도 이하인 것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701112000	당도가 98.5 도를 초과하는 것	3	0	
1701121000	당도가 98.5 도 이하인 것	3	0	
1701122000	당도가 98.5 도를 초과하는 것	3	0	
1701910000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35	E	
1701990000	기타	35	16	
1702111000	유당	49.5	16	
1702119000	유당시럽	20	16	
1702191000	유당	49.5	16	
1702199000	유당시럽	20	16	
1702201000	단풍당	8	5	
1702202000	단풍당시럽	8	5	
1702301000	포도당	8	10	
1702302000	포도당시럽	8	10	
1702401000	포도당	8	10	
1702402000	포도당시럽	8	10	
1702500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8	10	
1702601000	과당	8	10	
1702602000	과당시럽	8	10	
1702901000	인조꿀	243	16	
1702902000	캐러멜당	8	5	
1702903000	맥아당	8	5	
1702909000	기타	8	5	
1703101000	주정 제조용의 것	3	0	
1703109000	기타	3	0	
1703901000	주정 제조용의 것	3	0	
1703909000	기타	3	0	
1704100000	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	3	
1704901000	감초엑스(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8	5	
1704902010	드롭프스	8	5	
1704902020	캐러멜	8	5	
1704902090	기타	8	5	
1704909000	기타	8	5	
1801001000	생 것	2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801002000	볶은 것	8	5	
1802001000	코코아의 각과 피	8	5	
1802009000	기타	8	5	
1803100000	탈지하지 아니한 것	5	3	
1803200000	전부 또는 일부 탈지한 것	5	3	
1804000000	코코아 버터(지 및 유)	5	3	
1805000000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5	3	
1806100000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8	3	
180620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	3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8	3	
1806209090	기타	8	3	
180631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	3	
1806319000	기타	8	3	
180632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	3	
1806329000	기타	8	3	
1806901000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8	3	
1806902111	조제분유의 것	36	10	
1806902119	기타	40	10	
1806902191	오트밀의 것	8	5	
1806902199	기타	8	5	
1806902210	보리가루의 것	8	5	
1806902290	기타	-	X	
1806902910	맥아엑스의 것	30	5	
1806902920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36	10	
1806902991	오트밀의 것	8	5	
1806902992	보리가루의 것	8	5	
1806902999	기타	-	X	
1806903010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5.4	5	
1806903091	날알상의 쌀	8	E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806903099	기타	8	5	
18069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 이상인 것)	8	5	
1806909090	기타	8	5	
1901101010	조제분유	36	10	
1901101090	기타	40	10	
1901109010	오트밀의 것	8	5	
1901109090	기타	8	5	
1901201000	쌀가루의 것	-	X	
1901202000	보리가루의 것	8	10	
1901209000	기타	-	X	
1901901000	맥아엑스	30	10	
190190201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30 퍼센트 이하인 것	36	E	
1901902020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3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36	16	
1901909010	오트밀	8	5	
1901909091	쌀가루의 것	-	X	
1901909092	보리가루의 것	8	10	
1901909099	기타	-	X	
1902111000	스파게티	8	5	
1902112000	마카로니	8	5	
1902119000	기타	8	5	
1902191000	국수	8	5	
1902192000	당면	32% 또는 253 원/kg, 양자 중 고액(율)	16	
1902193000	냉면	8	5	
1902199000	기타	8	5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5	
1902301010	라면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902301090	기타	8	5	
1902309000	기타	8	5	
1902400000	쿠우스쿠우스	8	0	
1903001000	타피오카	8	5	
1903009000	기타	8	5	
1904101000	콘 플레이크	5.4	5	
1904102000	콘 칩	5.4	5	
1904103000	퍼프드 라이스	5.4	10	
1904109000	기타	5.4	0	
1904201000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의 것	45	16	
1904209000	기타	5.4	10	
1904300000	불거소맥	8	10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50	E	
1904901090	기타	8	E	
1904909000	기타	8	10	
1905100000	귀리빵	8	5	
1905200000	진저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것	8	5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8	5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8	5	
1905400000	러스크, 토우스트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8	5	
1905901010	빵	8	5	
1905901020	건빵	8	5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8	5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8	5	
1905901050	미과	8	5	
1905901090	기타	8	5	
1905909010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8	5	
1905909020	ライス 페이퍼	8	5	
1905909090	기타	8	5	
2001100000	오이류	30	10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30	5	
2001909010	쪽파	30	10	
2001909020	토마토	30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001909030	꽃양배추	30	5	
2001909040	스위트콘	30	10	
2001909050	영교	30	16	
2001909060	마늘	30	E	
2001909070	양파	30	E	
2001909090	기타	30	5	
2002100000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8	5	
2002901000	토마토페이스트(가용성 고형분이 24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0	
2002909000	기타	8	10	
2003104000	양송이버섯	20	5	
2003109000	기타	20	5	
2003200000	송로	20	12	
2003901000	표고버섯	20	E	
2003902000	송이버섯	20	16	
2003909000	기타	20	5	
2004100000	감자	18	E	
2004901000	스위트콘	30	7	
2004909000	기타	30	7	
2005101000	유아용 퓨레콘	20	7	
2005109000	기타	20	7	
200520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20	16	
2005209000	기타	20	16	
2005400000	완두(피섬 새티범)	20	16	
2005511000	녹두의 것	20	16	
2005512000	팥의 것	20	16	
2005519000	기타	20	16	
2005591000	녹두의 것	20	16	
2005592000	팥의 것	20	16	
2005599000	기타	20	16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	20	16	
2005700000	올리브	20	10	
2005800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15	10	
2005910000	죽순	20	16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005991000	김치	20	5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	20	16	
2005999000	기타	20	16	
2006001000	마롱 글라세	30	E	
2006002000	파인애플	30	16	
2006003000	생강	30	5	
2006004000	연뿌리	30	5	
2006005000	완두(피섬 새티범)	20	5	
2006006010	탈각한 콩	20	5	
2006006090	기타	20	5	
2006007000	아스파라거스	20	5	
2006008000	올리브	20	5	
200600901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15	5	
2006009020	죽순	20	16	
2006009030	기타 채소의 것	20	5	
2006009090	기타	30	5	
2007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7	
2007911000	잼, 과일젤리 및 마말레이드	30	10	
2007919000	기타	30	16	
2007991000	잼, 과일젤리 및 마말레이드	30	7	
2007999000	기타	30	5	
2008111000	피넛 버터	50	16	
2008119000	기타	63.9	E	
2008191000	밤	50	E	
2008192000	코코넛	45	E	
2008199000	기타	45	7	
2008200000	파인애플	45	10	
2008301000	유자	45	16	
2008309000	기타	45	E	
2008400000	배	45	E	
2008500000	살구	45	10	
2008600000	버찌	45	7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16	
2008709000	기타	45	16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008800000	초본류 딸기	45	16	
2008910000	팜 하트	45	16	
200892101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10	
2008921090	기타	45	10	
2008922000	과실 샐러드	45	10	
2008929000	기타	45	10	
2008991000	포도	45	10	
2008992000	사과	45	E	
2008993000	팍콘	45	10	
2008994000	염장초피	45	16	
2008999000	기타	45	7	
2009110000	냉동한 것	54	10	
2009120000	냉동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54	16	
2009190000	기타	54	16	
2009210000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30	10	
2009290000	기타	30	15	
2009311000	레몬주스	50	7	
2009312000	라임주스	50	7	
2009319000	기타	54	16	
2009391000	레몬주스	50	10	
2009392000	라임주스	50	7	
2009399000	기타	54	16	
2009410000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50	10	
2009490000	기타	50	10	
2009500000	토마토주스	30	10	
2009610000	브릭스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5	10	
2009690000	기타	45	10	
2009710000	브릭스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5	16	
2009790000	기타	45	16	
2009801010	복숭아주스	50	10	
2009801020	딸기주스	50	7	
2009801090	기타	50	7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009802000	채소주스	30	7	
2009901010	오렌지주스를 주기제로 한 것	50	16	
2009901020	사과주스를 주기제로 한 것	50	10	
2009901030	포도주스를 주기제로 한 것	50	10	
2009901090	기타	50	10	
2009902000	채소의 것	30	10	
2009909000	기타	50	10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8	3	
2101119000	기타	8	3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8	3	
2101129010	밀크, 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8	0	
2101129090	기타	8	3	
2101201000	설탕, 레몬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40	10	
2101209011	티백 포장의 것	40	10	
2101209019	기타	40	10	
2101209090	기타	40	10	
2101301000	보리의 것	8	5	
2101309000	기타	8	5	
2102101000	양조효모	8	5	
2102102000	증류효모	8	5	
2102103000	제빵효모	8	5	
2102104000	배양효모	8	5	
2102109000	기타	8	5	
2102201000	불활성 효모	8	5	
2102202000	누룩	8	5	
2102203010	정제상의 것	8	5	
2102203090	기타	8	5	
2102204010	정제상의 것	8	5	
2102204090	기타	8	5	
2102209000	기타	8	5	
2102300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8	5	
2103100000	간장	8	16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103201000	토마토 케찹	8	10	
2103202000	토마토 소스	45	10	
2103301000	겨자의 분과 조분	8	5	
2103302000	조제한 겨자	8	5	
2103901010	된장	8	5	
2103901020	춘장	8	5	
2103901030	고추장	45	10	
2103901090	기타	45	16	
2103909010	마요네스	8	5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45	5	
2103909030	혼합조미료	45	10	
2103909040	메주	14	16	
2103909090	기타	45	10	
2104101000	육류의 것	18	7	
2104102000	어류의 것	30	7	
2104103000	야채의 것	18	7	
2104109000	기타	18	7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30	7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8	5	
2105001090	기타	8	5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8	5	
2105009090	기타	8	5	
2106101000	두부	8	5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8	5	
2106109030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8	5	
2106901010	콜라 베이스	8	0	
210690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8	5	
2106901090	기타	8	5	
2106902000	당시럽(향미 또는 착색제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8	5	
2106903011	인삼차	8	16	
2106903019	기타	8	16	
2106903021	홍삼차	754.3	E	
2106903029	기타	754.3	E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106904010	김	8	3	
2106904090	기타	8	5	
2106909010	커피크리머	8	5	
2106909021	버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30 퍼센트 이하인 것	8	10	
2106909022	버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30 퍼센트 초과 70 퍼센트 이하인 것	8	10	
2106909023	버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8	10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8	5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8	5	
2106909050	향미용 조제품	8	5	
2106909060	도토리분	8	10	
2106909070	알로에를 기제로 한 조제품	8	5	
2106909080	음료제조용의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용량이 전용량의 0.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0	7	
2106909091	로열젤리 및 벌꿀조제품	8	10	
2106909099	기타	8	5	
2201100000	광수와 탄산수	8	5	
2201901000	얼음과 눈	8	5	
2201909000	기타	8	5	
2202101000	착색한 것	8	5	
2202109000	기타	8	5	
2202901000	인삼음료	8	16	
2202902000	과즙음료	9	7	
2202903000	식혜	8	5	
2202909000	기타	8	0	
2203000000	맥주	30	7	
2204100000	발포성 포도주	15	16	
2204211000	붉은 포도주	15	16	
2204212000	흰 포도주	15	16	
2204219000	기타	15	16	
2204291000	붉은 포도주	15	16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204292000	흰 포도주	15	16	
2204299000	기타	15	16	
2204300000	기타 포도즙	30	10	
220510000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5	16	
2205900000	기타	15	16	
2206001010	사과주	15	10	
2206001020	배술	15	10	
2206001090	기타	15	10	
2206002010	청주	15	5	
2206002020	약주	15	5	
2206002030	탁주	15	5	
2206002090	기타	15	5	
2206009010	와인쿨러(제 2009 호 또는 제 2202 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에 한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15	5	
2206009090	기타	15	5	
2207101000	조주정	10	5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270	16-A	
2207109090	기타	30	5	
2207200000	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8	5	
2208201000	꼬냇	15	5	
2208209000	기타	15	5	
2208301000	스카시 위스키	20	5	
2208302000	버본 위스키	20	5	
2208303000	라이 위스키	20	5	
2208309000	기타	20	5	
2208400000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기타 증류주	20	3	
2208500000	진 및 제네바	20	5	
2208600000	보드카	20	5	
2208701000	인삼주	20	5	
2208702000	오가피주	20	16	
2208709000	기타	20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208901000	브랜디류(소호 제 2208.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20	5	
2208904000	소주	30	3	
2208906000	고량주	30	5	
2208907000	데킬라	20	5	
2208909000	기타	30	5	
2209001000	양조식초	8	5	
2209009000	기타	8	5	
2301101000	육 또는 설육의 분, 조분 및 펠리트	9	16	
2301102000	수지박	5	3	
2301201000	어류의 분, 조분 및 펠리트	5	5	
2301209000	기타	5	7	
2302100000	옥수수의 것	5	3	
2302300000	밀의 것	2	0	
2302401000	쌀의 것	5	3	
2302409000	기타	5	3	
2302500000	채두류의 것	5	3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0	0	
2303200000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5	3	
2303300000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5	3	
23040000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 케이크 및 기타 고품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8	0	
2305000000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 케이크 및 기타 고품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3	
2306100000	면실의 것	2	0	
2306200000	아마인의 것	5	3	
2306300000	해바라기씨의 것	5	3	
2306410000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0	0	
2306490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30650000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2	0	
2306600000	팜넛 또는 핵의 것	2	0	
2306901000	참깨의 것	63% 또는 72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2306902000	들깨의 것	5	3	
2306903000	옥수수 배(胚)의 것	5	3	
2306909000	기타	5	3	
2307000000	포도주박, 생주석	5	3	
2308001000	도토리	5	10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5	10	
2308003000	면실피	5	3	
2308009000	기타	46.4	16	
2309101000	개사료	5	3	
2309102000	고양이 사료	5	3	
2309901010	양돈용의 것	4.2	0	
2309901020	양계용의 것	4.2	0	
2309901030	어류용의 것	5	0	
2309901040	축우용의 것	4.2	0	
2309901091	대용유의 것	71	16	
2309901099	기타	5	0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50.6	16	
2309902020	향미제를 주로 한 것	50.6	16	
2309902091	19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5	0	
2309902099	기타	50.6	16	
2309903010	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309903030	미량광물질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90	기타	5	0	
2309909000	기타	50.6	16	
2401101000	황색종	20	10	
2401102000	버어리종	20	10	
2401103000	오리엔트종	20	16	
2401109000	기타	20	10	
2401201000	황색종	20	10	
2401202000	버어리종	20	10	
2401203000	오리엔트종	20	10	
2401209000	기타	20	10	
2401301000	잎의 주맥	20	10	
2401302000	잎 부스러기	20	10	
2401309000	기타	20	10	
2402101000	시가	40	10	
2402102000	셔루트	40	10	
2402103000	시가릴로	40	10	
2402201000	필터담배	40	15	
2402209000	기타	40	15	
2402900000	기타	40	10	
2403101000	파이프 담배	40	16	
2403109000	기타	40	10	
2403911000	판상엽	32.8	16	
2403919000	기타	40	16	
2403991000	씹는 담배	40	16	
2403992000	코 담배	40	16	
2403993000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	40	16	
2403999000	기타	40	16	
2501001010	암염	1	0	
2501001020	천일염	1	0	
2501009010	식염	8	0	
2501009020	순염화나트륨	8	0	
2501009090	기타	8	0	
2502000000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503000000	황(승화황, 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	0	
2504101000	인상흑연	3	0	
2504102000	토상흑연	3	0	
2504109000	기타	3	0	
2504901000	인상흑연	3	0	
2504902000	토상흑연	3	0	
2504909000	기타	3	0	
2505100000	규사	3	0	
2505901010	점토사	3	0	
2505901020	장석사	3	0	
2505901090	기타	3	0	
2505909000	기타	3	0	
2506101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0.06 퍼센트 미만인 것	3	0	
2506102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0.06 퍼센트 이상 0.1 퍼센트 이하인 것	3	0	
2506103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0.1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3	0	
2506201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	0	
2506209000	기타	3	0	
2507001010	하소하지 아니한 것	3	0	
2507001090	기타	3	0	
2507002010	가이로메	3	0	
2507002020	기부시	3	0	
2507002090	기타	3	0	
2507009000	기타	3	0	
2508100000	벤토나이트	3	0	
2508300000	내화점토	3	0	
2508401000	산성백토	3	0	
2508402000	탈색토와 표포토	3	0	
2508409000	기타	3	0	
2508501000	홍주석	3	0	
2508502000	남정석	3	0	
2508503000	규선석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508600000	물라이트	3	0	
2508701000	샤모트	3	0	
2508702000	다이나스어드	3	0	
2509000000	초크	3	0	
2510101000	천연인산칼슘	0	0	
2510102000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1	0	
2510109000	기타	1	0	
2510201000	천연인산칼슘	3	0	
2510202000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	3	0	
2510209000	기타	3	0	
2511100000	천연황산바름(중정석)	3	0	
2511200000	천연탄산바름(독중석)	3	0	
2512000000	규조토(예: 키이젤겨어, 트리플라이트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0	
2513101000	조상의 것 또는 불규칙한 조각[분쇄한 부석("빔스키")을 포함한다]	3	0	
2513109000	기타	3	0	
2513201010	금강사	3	0	
2513201020	천연커런덤	3	0	
2513201030	천연석류석	3	0	
2513201090	기타	3	0	
2513202010	금강사	3	0	
2513202020	천연커런덤	3	0	
2513202030	천연석류석	3	0	
2513202090	기타	3	0	
2514001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	0	
2514009000	기타	3	0	
2515111000	대리석	3	0	
2515112000	트래버틴	3	0	
2515121000	대리석	3	0	
2515122000	트래버틴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515200000	에코신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 앨러바스터	3	0	
2516110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	0	
2516120000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3	0	
2516201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	0	
2516209000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3	0	
2516901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3	0	
2516909000	기타	3	0	
2517101000	자갈	3	0	
2517102000	쇄석	3	0	
2517109000	기타	3	0	
2517200000	슬랙, 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	0	
2517300000	타르매카담	3	0	
2517410000	대리석의 것	3	0	
2517491000	현무암의 것	3	0	
2517492000	화강암의 것	3	0	
2517499000	기타	3	0	
2518100000	하소 또는 소결하지 아니한 백운석	3	0	
2518200000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3	0	
2518300000	응결백운석	3	0	
2519100000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3	0	
2519901000	용융 또는 소결한 마그네시아	3	0	
2519902000	천연산화마그네슘	3	0	
2519909000	기타	3	0	
2520101000	석고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520102000	무수석고	5	0	
2520201000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것	5	0	
2520209000	기타	5	0	
2521001000	석회석	3	0	
2521009000	기타	3	0	
2522100000	생석회	3	0	
2522200000	소석회	3	0	
2522300000	수경성 석회	3	0	
2523100000	시멘트클링커	5	0	
2523210000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0	
2523290000	기타	5	0	
2523300000	알루미나시멘트	8	0	
2523901000	슬랙시멘트	5	0	
2523909000	기타	5	0	
2524100000	청석면	5	0	
2524901000	갈석면	5	0	
2524902000	백석면	5	0	
2524909000	기타	5	0	
2525100000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갠 운모	3	0	
2525200000	운모분	3	0	
2525300000	운모 웨이스트	3	0	
2526101000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3	0	
2526109000	기타	3	0	
2526200000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	5	0	
2528100000	천연붕산나트륨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	0	
2528901000	붕산칼슘	3	0	
2528902000	염화붕산마그네슘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528903000	천연붕산	3	0	
2528909000	기타	3	0	
2529100000	장석	3	0	
2529211000	분말의 것	2	0	
2529219000	기타	2	0	
2529221000	분말의 것	2	0	
2529229000	기타	2	0	
2529301000	백류석	2	0	
2529302000	하석	2	0	
2529303000	하석섬장암	2	0	
2530101000	질석	3	0	
2530102000	진주암과 녹니석	3	0	
253020000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슘)	3	0	
2530901000	천연 황화비소	3	0	
2530902000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망간광	3	0	
2530903000	스트론티아나이트	3	0	
2530904000	주사	3	0	
2530905000	납석	3	0	
2530906000	불석	3	0	
2530907000	명반석	3	0	
2530908000	규회석	3	0	
2530909010	도석	3	0	
2530909020	견운모	3	0	
2530909030	어드컬러	8	0	
2530909040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8	0	
2530909050	천연빙정석과 천연치올라이트	3	0	
2530909091	천연탄산칼슘	3	0	
2530909099	기타	3	0	
2601111000	적철광	0	0	
2601112000	자철광	0	0	
2601119000	기타	0	0	
2601121000	적철광	0	0	
2601122000	자철광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601129000	기타	0	0	
2601200000	배소한 황화철광	1	0	
2602000000	망간광과 그 정광(건조상태에서 측정된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 퍼센트 이상인 철 망간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0	0	
2603000000	동광과 그 정광	0	0	
2604000000	니켈광과 그 정광	0	0	
260500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	0	0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0	0	
2607000000	연광과 그 정광	0	0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	0	0	
2609000000	주석광과 그 정광	0	0	
26100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	0	0	
2611001000	흑중석	0	0	
2611002000	회중석	0	0	
2611009000	기타	0	0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	0	0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	0	0	
2613100000	배소한 것	0	0	
2613900000	기타	0	0	
2614001000	루틸(금홍석)	0	0	
2614002000	아나타스(예추석)	0	0	
2614009000	기타	0	0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0	0	
2615901000	니오븀광과 그 정광	0	0	
2615902000	탄탈륨광과 그 정광	0	0	
2615903000	바나듐광과 그 정광	0	0	
2616100000	은광과 그 정광	0	0	
2616901000	금광과 그 정광	0	0	
2616902000	백금광과 그 정광(백금족의 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0	0	
2617100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0	0	
2617901000	수은광과 그 정광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617902000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	0	0	
2617903000	베릴륨광과 그 정광	0	0	
2617904000	비스머드광과 그 정광	0	0	
2617909000	기타	0	0	
26180000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입상의 슬랙(슬랙샌드)	2	0	
2619001010	용광로 슬랙	2	0	
2619001090	기타	2	0	
2619002000	드로스	2	0	
2619003000	스케일링	2	0	
2619009000	기타	2	0	
2620110000	경아연 스피타	2	0	
2620190000	기타	2	0	
2620210000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	2	0	
2620290000	기타	2	0	
2620300000	주로 동을 함유하는 것	2	0	
2620400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2	0	
2620600000	비소, 수은, 탈륨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의 채취 또는 그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2	0	
26209100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 또는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	2	0	
2620990000	기타	2	0	
2621100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2	0	
2621900000	기타	2	0	
2701110000	무연탄	0	0	
2701121000	강점결성 코크스용탄	0	0	
2701122000	기타 코크스용탄	0	0	
2701129010	휘발성물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2 퍼센트 미만인 것(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 기준에 의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701129090	기타	0	0	
2701190000	기타 석탄	0	0	
2701201000	연탄	1	0	
2701202000	마젤탄	1	0	
2701209000	기타	1	0	
2702100000	갈탄(분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은 제외한다)	1	0	
2702200000	응결한 갈탄	1	0	
2703001000	응결하지 아니한 것	1	0	
2703002000	응결한 것	1	0	
2704001010	석탄에서 제조한 것	3	0	
2704001090	기타	3	0	
2704002000	반성코크스	3	0	
2704003000	레토르트 카본	3	0	
2705000000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5	0	
2706001000	콜타르	5	0	
2706002000	갈탄타르 또는 토탄타르	5	0	
2706009000	기타	5	0	
2707100000	벤조올(벤젠)	3	0	
2707200000	톨루올(톨루엔)	3	0	
2707300000	크실올(크실렌)	3	0	
2707400000	나프탈렌	5	0	
2707500000	기타 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에이·에스·티·엠·디(ASTM 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65 퍼센트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에 한한다]	5	0	
2707910000	크레오소트유	5	0	
2707991000	솔벤트 나프타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707992000	안트라센	5	0	
2707993000	페놀(석탄산)	8	0	
2707999000	기타	5	0	
2708100000	피치	5	0	
2708200000	피치코크스	5	0	
270900101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3	3	
270900102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3	3	
270900103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3	3	
270900104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3	3	
270900105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3	3	
270900106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3	3	
270900107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3	3	
270900108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3	3	
2709001090	기타	3	3	
2709002000	역청유	3	3	
2710111000	자동차 휘발유	5	0	
2710112000	항공 휘발유	5	0	
2710113000	프로필렌테트라머	5	0	
2710114000	나프타	0	0	
2710115000	엔·지·엘(NGL)	0	0	
2710119000	기타	5	0	
2710191010	제트 연료유	5	0	
2710191090	기타	5	0	
2710192010	등유	5	0	
2710192020	제트 연료유	5	0	
2710192030	노르말 파라핀	5	0	
2710192090	기타	5	0	
2710193000	경유	5	0	
2710194010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5	0	
2710194020	중유(방카 비유)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710194030	방카 씨유	5	0	
2710194090	기타	5	0	
2710195010	조유	7	0	
2710195020	윤활유기유	7	0	
2710196000	신전유	8	0	
2710197110	항공기용 기관오일	7	0	
2710197120	자동차용 기관오일	7	0	
2710197130	선박용 기관오일	7	0	
2710197210	실린더오일	7	0	
2710197220	스핀들오일	7	0	
2710197230	기어오일	7	0	
2710197240	터빈오일	7	0	
2710197250	냉동기오일	7	0	
2710197310	콤파운드오일	7	0	
2710197320	유동파라핀	7	0	
2710197330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7	0	
2710197410	방청유	7	0	
2710197420	절삭유	7	0	
2710197430	세척유	7	0	
2710197440	주형이형유	7	0	
2710197450	유압브레이크유	7	0	
2710197510	프로세스유	7	0	
2710197520	전기전열유	7	0	
2710197530	열처리유	7	0	
2710197540	열매체유	7	0	
2710197900	기타	7	0	
27101980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20	칼슘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40	리튬을 첨가한 것	8	0	
2710198090	기타	8	0	
2710199000	기타	8	0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 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710911020	나프타 및 엔·지·엘의 것	0	0	
2710911090	기타	5	0	
2710912010	등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	0	
2710912090	기타	5	0	
2710913000	경유의 것	5	0	
2710914010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중유(방카 비유) 및 방카 씨유의 것	5	0	
2710914090	기타	5	0	
2710915000	조유, 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기유의 것	7	0	
2710919000	기타	8	0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 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	0	
2710991020	나프타 및 엔·지·엘의 것	0	0	
2710991090	기타	5	0	
2710992010	등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5	0	
2710992090	기타	5	0	
2710993000	경유의 것	5	0	
2710994010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중유(방카 비유) 및 방카 씨유의 것	5	0	
2710994090	기타	5	0	
2710995000	조유, 윤활유(신전유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기유의 것	7	0	
2710999000	기타	8	0	
2711110000	천연가스	3	0	
2711120000	프로판	3	0	
2711130000	부탄	3	0	
2711141000	에틸렌	5	0	
2711142000	프로필렌	5	0	
2711143000	부틸렌	5	0	
2711144000	부타디엔	5	0	
2711190000	기타	5	0	
2711210000	천연가스	3	0	
2711290000	기타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712101000	바셀린	8	0	
2712109000	기타	8	0	
2712200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75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0	
2712901010	슬랙왁스 및 스케일왁스	8	0	
2712901020	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	8	0	
2712901090	기타	8	0	
2712909010	몬탄왁스	8	0	
2712909020	토탄왁스	8	0	
2712909030	세레신왁스	8	0	
2712909040	합성 파라핀왁스	8	0	
2712909090	기타	8	0	
2713110000	하소하지 아니한 것	5	0	
2713120000	하소한 것	5	0	
2713200000	석유아스팔트	5	0	
2713900000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5	0	
2714100000	역청질혈암 또는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5	0	
2714901000	천연의 역청 및 아스팔트	5	0	
2714902000	아스팔타이트	5	0	
2714903000	아스팔트질의 암석	5	0	
2715001000	컷백	5	0	
2715002000	아스팔트, 역청, 피치 또는 타르의 에멜전 또는 안정분산액	5	0	
2715003000	매스틱	5	0	
2715009000	기타	5	0	
2716000000	전기에너지	5	0	
2801100000	염소	5.5	0	
2801200000	요드	5.5	0	
2801301000	플루오르	5.5	0	
2801302000	브롬	5.5	0	
2802001000	승화황	5	0	
2802002000	침강황	5	0	
2802003000	콜로이드황	5	0	
2803001000	아세틸렌 블랙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03009010	카본 블랙	5.5	0	
2803009090	기타	5.5	0	
2804100000	수소	5.5	0	
2804210000	아르곤	5.5	0	
2804291000	헬륨	5.5	0	
2804292000	네온	5.5	0	
2804293000	크립톤	5.5	0	
2804294000	크세논	5.5	0	
2804299000	기타	5.5	0	
2804300000	질소	5.5	0	
2804400000	산소	5.5	0	
2804501000	붕소	5.5	0	
2804502000	텔루르	5.5	0	
2804610000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3	0	
2804690000	기타	5.5	0	
2804701000	황린	5	0	
2804709000	기타	5.5	0	
2804800000	비소	5.5	0	
2804900000	셀렌	5.5	0	
2805110000	나트륨	5.5	0	
2805120000	칼슘	5.5	0	
2805190000	기타	5.5	0	
2805301000	세륨그룹	5.5	0	
2805302000	테르븀그룹	5.5	0	
2805303000	에르븀그룹	5.5	0	
2805304000	이트륨	5.5	0	
2805305000	스칸듐	5.5	0	
2805309000	기타	5.5	0	
2805400000	수은	5.5	0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5.5	0	
2806200000	클로로황산	5.5	0	
28070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07001090	기타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07002000	발연황산	5.5	0	
28080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08001090	기타	5.5	0	
2808002000	황질산	5.5	0	
2809100000	오산화인	5.5	0	
28092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09201090	기타	5.5	0	
2809202010	메타인산	5.5	0	
2809202020	피로인산	5.5	0	
2809202090	기타	5.5	0	
2810001010	삼산화 이붕소	5.5	0	
2810001090	기타	5.5	0	
2810002000	오르토붕산	5.5	0	
2810003000	메타붕산	5.5	0	
2810009000	기타	5.5	0	
28111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11119000	기타	5.5	0	
2811191000	황화수소	5.5	0	
2811192000	브롬화수소산	5.5	0	
2811193000	술파민산	5.5	0	
2811194000	과염소산	5.5	0	
2811195000	염소산	5.5	0	
2811196000	하이포아인산	5.5	0	
2811197000	아인산	5.5	0	
2811198000	비산	5.5	0	
2811199010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청산)	5.5	0	
2811199090	기타	5.5	0	
2811210000	이산화탄소	5.5	0	
2811221000	화이트카본	5.5	0	
2811229010	실리카겔	5.5	0	
2811229090	기타	5.5	0	
2811291000	일산화탄소	5.5	0	
2811292000	아산화질소	5.5	0	
2811293000	이산화질소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11294000	삼산화비소	5.5	0	
2811295000	오산화비소	5.5	0	
2811299000	기타	5.5	0	
2812101010	삼염화요드	5	0	
2812101020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5	0	
2812101030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5	0	
2812101040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	5	0	
2812101050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5	0	
2812101060	설퍼 디클로라이드	5	0	
2812101090	기타	5	0	
2812102010	티오닐 클로라이드	5	0	
281210202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5	0	
281210203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5	0	
2812102090	기타	5	0	
2812901000	삼플루오르붕소	5.5	0	
2812902000	설퍼헥사플루오라이드	5.5	0	
2812909000	기타	5.5	0	
2813100000	이황화탄소	5.5	0	
2813901020	오황화인	5.5	0	
2813901090	기타	5.5	0	
2813902010	오황화비소	5.5	0	
2813902090	기타	5.5	0	
2813903000	황화규소	5.5	0	
2813909000	기타	5.5	0	
2814100000	무수암모니아	1	0	
2814200000	암모니아수	2	0	
2815110000	고체의 것	5.5	0	
2815120000	수용액의 것(소다액 또는 액상소다)	8	0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칼륨)	5.5	0	
2815301000	과산화나트륨	5.5	0	
2815302000	과산화칼륨	5.5	0	
2816101000	수산화마그네슘	5.5	0	
2816102000	과산화마그네슘	5.5	0	
2816400000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17001000	산화아연	5.5	0	
2817002000	과산화아연	5.5	0	
2818101000	선별된 입상의 것	3	0	
2818109000	기타	3	0	
281820000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은 제외한다)	1	0	
2818301000	알루미나겔	5.5	0	
2818309000	기타	5.5	0	
2819100000	삼산화크로뮴	5.5	0	
2819901010	산화제이크로뮴	5.5	0	
2819901090	기타	5.5	0	
2819902000	수산화크로뮴	5.5	0	
2820100000	이산화망간	5.5	0	
2820901000	일산화망간	5.5	0	
2820902000	삼산화제이망간	5.5	0	
2820909000	기타	5.5	0	
2821101000	산화철	5.5	0	
2821102000	수산화철	5.5	0	
2821200000	어드컬러	5.5	0	
2822001010	산화제이코발트	5.5	0	
2822001091	2 차전지 제조용의 것	4	0	
2822001099	기타	5.5	0	
2822002010	수산화제일코발트	5.5	0	
2822002090	기타	5.5	0	
2823001000	아나타스형	5.5	0	
2823009000	기타	5.5	0	
2824100000	일산화연(리타지, 메시코트)	5.5	0	
2824901000	연단 및 오렌지연	5.5	0	
2824909000	기타	5.5	0	
282510100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5.5	0	
2825109010	히드라진	5.5	0	
2825109020	히드라진의 무기염	5.5	0	
2825109030	히드록실아민	5.5	0	
2825109041	히드록실 암모늄클로라이드(히드록실아민염산염)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25109049	기타	5.5	0	
2825201000	산화리튬	5.5	0	
2825202000	수산화리튬	5.5	0	
2825301000	오산화바나듐	2	0	
2825309000	기타	3	0	
2825401000	산화니켈	5.5	0	
2825402000	수산화니켈	5.5	0	
2825501000	산화동	5.5	0	
2825502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825502090	기타	5.5	0	
2825601000	산화게르마늄	5.5	0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5.5	0	
2825701000	산화몰리브덴	3	0	
2825702000	수산화몰리브덴	5.5	0	
2825800000	산화안티몬	5.5	0	
2825901010	산화칼슘	5.5	0	
2825901020	산화텅스텐	1	0	
2825901030	산화석	5.5	0	
2825901090	기타	5.5	0	
2825902010	수산화칼슘	5.5	0	
2825902020	수산화망간	5.5	0	
2825902030	수산화텅스텐	5.5	0	
2825902040	수산화석	5.5	0	
2825902090	기타	5.5	0	
2825903010	과산화니켈	5.5	0	
2825903090	기타	5.5	0	
2825909000	기타	5.5	0	
28261200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5.5	0	
2826191000	플루오르화칼슘	5.5	0	
2826193010	산성플루오르화칼슘	5.5	0	
2826193090	기타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26194000	플루오르화암모늄 또는 플루오르화나트륨	5.5	0	
2826195000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WF6)	5.5	0	
2826199000	기타	5.5	0	
2826300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빙 정석)	5.5	0	
2826901000	인조치올라이트	5.5	0	
2826902000	플루오르화규산칼슘	5.5	0	
2826903000	플루오르화붕산염	5.5	0	
2826904000	플루오르화인산염	5.5	0	
2826905000	플루오르화황산염	5.5	0	
2826906000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 또는 플루오르화규산칼륨	5.5	0	
2826909000	기타	5.5	0	
2827100000	염화암모늄	5.5	0	
2827200000	염화칼슘	5.5	0	
2827310000	마그네슘 염화물	5.5	0	
2827320000	알루미늄 염화물	5.5	0	
2827350000	니켈 염화물	5.5	0	
2827391000	동 염화물	5.5	0	
2827399000	기타	5.5	0	
2827411000	산화염화동	5.5	0	
2827412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827412090	기타	5.5	0	
2827491000	산화염화물	5.5	0	
2827492000	수산화염화물	5.5	0	
2827511000	브롬화나트륨	5.5	0	
2827512000	브롬화칼륨	5.5	0	
2827591000	브롬화칼슘	5.5	0	
2827599000	기타	5.5	0	
2827601000	산화요드화물	5.5	0	
2827609010	요드화칼륨	5.5	0	
2827609090	기타	5.5	0	
2828100000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기타 하이포아염소산칼슘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28901010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5.5	0	
2828901020	하이포아염소산칼륨	5.5	0	
2828901090	기타	5.5	0	
2828902010	아염소산나트륨	5.5	0	
2828902020	아염소산알루미늄	5.5	0	
2828902090	기타	5.5	0	
2828903000	하이포아브롬산염	5.5	0	
2829110000	염소산나트륨	5.5	0	
2829191000	염소산칼륨	5.5	0	
2829192000	염소산바륨	5.5	0	
2829199000	기타	5.5	0	
2829901010	과염소산나트륨	5.5	0	
2829901020	과염소산암모늄	5.5	0	
2829901090	기타	5.5	0	
2829902010	브롬산염	5.5	0	
2829902020	과브롬산염	5.5	0	
2829902030	요오드산염	5.5	0	
2829902040	과요오드산염	5.5	0	
2830101000	황화수소나트륨	5.5	0	
2830109000	기타	5.5	0	
2830901000	황화물	5.5	0	
2830902000	폴리황화물	5.5	0	
2831101000	아이티온산나트륨	5.5	0	
2831102000	숯폭실산나트륨(포름알데히드 숯폭실산나트륨)	5.5	0	
2831901000	아이티온산염	5.5	0	
2831902000	숯폭실산염	5.5	0	
2832101000	아황산수소나트륨	5.5	0	
2832109000	기타	5.5	0	
2832201000	아황산 암모늄	5.5	0	
2832202000	아황산 칼륨	5.5	0	
2832203000	아황산 칼슘	5.5	0	
2832209000	기타	5.5	0	
2832301000	티오황산 암모늄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32302000	티오향산 나트륨	5.5	0	
2832303000	티오향산 칼륨	5.5	0	
2832309000	기타	5.5	0	
2833110000	황산이나트륨	5.5	0	
2833191000	황산수소나트륨	5.5	0	
2833192000	이황산이나트륨	5.5	0	
2833199000	기타	5.5	0	
2833210000	황산마그네슘	5.5	0	
2833220000	황산알루미늄	5.5	0	
2833240000	황산니켈	5.5	0	
283325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833259000	기타	5.5	0	
2833270000	황산바륨	5.5	0	
2833291000	황산철	5.5	0	
2833299000	기타	5.5	0	
2833300000	명반	5.5	0	
2833401000	과황산암모늄	5.5	0	
2833402000	과황산나트륨	5.5	0	
2833403000	과황산칼슘	5.5	0	
2833409000	기타	5.5	0	
2834101000	아질산나트륨	5.5	0	
2834109000	기타	5.5	0	
2834210000	질산칼륨	5.5	0	
2834291000	질산바륨	5.5	0	
2834299000	기타	5.5	0	
2835101010	하이포아인산나트륨	5.5	0	
2835101020	하이포아인산칼슘	5.5	0	
2835101090	기타	5.5	0	
2835102000	아인산염	5.5	0	
2835221000	인산일나트륨	5.5	0	
2835222000	인산이나트륨	5.5	0	
2835240000	인산칼륨	5.5	0	
2835250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35260000	기타 인산칼슘	5.5	0	
2835291000	인산알루미늄	5.5	0	
2835299000	기타 인산	5.5	0	
2835310000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5.5	0	
2835391000	메타인산나트륨	5.5	0	
2835392000	피로인산나트륨	5.5	0	
2835399000	기타	5.5	0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4	0	
2836300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5.5	0	
2836400000	탄산칼륨	5.5	0	
2836500000	탄산칼슘	5.5	0	
2836600000	탄산바륨	5.5	0	
2836910000	탄산리튬	5.5	0	
2836920000	탄산스트론튬	5.5	0	
2836991010	탄산마그네슘	5.5	0	
283699102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기타 탄산암모늄	5.5	0	
2836991090	기타	5.5	0	
2836992000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5.5	0	
2837111000	시아나화나트륨	5.5	0	
2837112000	산화시아나화나트륨	5.5	0	
2837191010	시아나화칼륨	5.5	0	
2837191020	시아나화동	5.5	0	
2837191030	시아나화아연	5.5	0	
2837191090	기타	5.5	0	
2837192000	산화시아나화물	5.5	0	
2837201000	페로시아나화물	5.5	0	
2837202000	페리시아나화물	5.5	0	
2837209000	기타	5.5	0	
2839110000	메타규산나트륨	5.5	0	
2839190000	기타	5.5	0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5.5	0	
2839902000	규산바륨	5.5	0	
2839909000	기타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40110000	무수물	5	0	
2840190000	기타	5	0	
2840200000	기타 붕산염	5	0	
2840300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5	0	
2841300000	중크롬산나트륨	5.5	0	
2841501000	크롬산칼륨	5.5	0	
2841509000	기타	5.5	0	
2841610000	과망간산칼륨	5.5	0	
2841691000	아망간산염	5.5	0	
2841692000	망간산염	5.5	0	
2841693000	과망간산염	5.5	0	
2841700000	몰리브덴산염	5.5	0	
2841800000	텅스텐산염(올프라메이트)	5	0	
2841901000	주석산염	5.5	0	
2841902010	티탄산바륨	5.5	0	
2841902020	티탄산스트론튬	5.5	0	
2841902030	티탄산납	5.5	0	
2841902090	기타	5.5	0	
2841903000	안티몬산염	5.5	0	
2841904000	철산염 및 아철산염	5.5	0	
2841905000	바나듐산염	5.5	0	
2841906000	비스머드산염	5.5	0	
2841909000	기타	5.5	0	
2842101000	알루미늄노실리케이트	6.5	0	
2842109000	기타	5.5	0	
2842901000	셀렌산염	5.5	0	
2842903000	황을 함유하는 겐염 또는 착염	5.5	0	
2842905000	셀렌의 겐염 또는 착염	5.5	0	
2842909000	기타	5.5	0	
2843101000	콜로이드 은	5.5	0	
2843102000	콜로이드 금	5.5	0	
2843103000	콜로이드 백금	5.5	0	
2843109000	기타	5.5	0	
28432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43219000	기타	5.5	0	
28432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43299000	기타	5.5	0	
2843301000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5.5	0	
2843309000	기타	5.5	0	
2843901000	아말감	5.5	0	
2843909010	백금 화합물	5.5	0	
2843909090	기타	5.5	0	
2844101000	천연우라늄	0	0	
2844102000	분산물(천연우라늄 또는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	0	
2844109000	기타	0	0	
2844201000	우라늄 235 로 농축된 우라늄	0	0	
2844202000	분산물(우라늄 235, 플루토늄 또는 이들 생성물질의 화합물로 농축된 우라늄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	0	
2844209000	기타	0	0	
2844301000	분산물(우라늄 235 로 열화시킨 우라늄, 토륨 또는 이들 물품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	0	
2844309000	기타	0	0	
2844401000	방사성원소	0	0	
2844402000	방사성동위원소	0	0	
2844403000	분산물(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0	0	
2844409000	기타	0	0	
2844500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요소(카트리지)	0	0	
2845100000	중수(산화 중수소)	0	0	
2845901000	중수소	0	0	
2845902000	탄소의 동위원소	0	0	
2845909000	기타	0	0	
2846100000	세륨화합물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46901000	산화이트륨	5	0	
2846909000	기타	5	0	
2847002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847009000	기타	5.5	0	
2848001000	인동(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5	0	
2848002000	인화알루미늄	5.5	0	
2848009000	기타	5.5	0	
2849100000	탄화칼슘	5.5	0	
2849200000	탄화규소	5	0	
2849901000	복탄화물	5.5	0	
2849909010	탄화텅스텐	5.5	0	
2849909090	기타	5.5	0	
2850001000	수소화물	5.5	0	
2850002000	질화물	5.5	0	
2850003000	아지드화물	5.5	0	
2850004000	규화물	5.5	0	
2850005000	붕화물	5.5	0	
2852001000	소호 제 2825.90 호, 제 2827.39 호, 제 2827.49 호, 제 2827.60 호, 제 2830.90 호, 제 2833.29 호, 제 2834.29 호, 제 2835.39 호, 제 2837.19 호, 제 2837.20 호, 제 2841.50 호, 제 2842.10 호, 제 2842.90 호, 제 2843.90 호, 제 2848.00 호, 제 2849.90 호, 제 2850.00 호 또는 제 2853.00 호의 것	5.5	0	
2852002000	소호 제 2918.11 호, 제 2931.00 호, 제 2932.99 호, 제 2934.99.9090 호, 제 3201.90.2000 호, 제 3201.90.4000 호, 제 3206.50 호, 제 3707.90 호, 제 3822.00.1091 호 또는 제 3822.00.2091 호의 것	6.5	0	
2852003000	소호 제 2934.99.2000 호, 제 3822.00.1092 호 또는 제 3822.00.2092 호의 것	6.5	0	
2852004000	소호 제 3502.90 호 또는 제 3504.00 호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852005000	소호 제 3822.00.101 호, 제 3822.00.102 호, 제 3822.00.1093 호, 제 3822.00.201 호, 제 3822.00.202 호 또는 제 3822.00.2093 호의 것	0	0	
2852006000	소호 제 3822.00.1099 호 또는 제 3822.00.2099 호의 것	8	0	
2853001000	증류수 또는 전도도수 및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5.5	0	
2853002000	압축공기	5.5	0	
2853003000	아말감	5.5	0	
285300401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5.5	0	
2853004090	기타	5.5	0	
2853005000	알칼리 아미드	5.5	0	
2853009000	기타	5.5	0	
2901101000	부탄	0	0	
2901102000	헥산	0	0	
2901103000	헵탄	0	0	
2901109000	기타	0	0	
2901210000	에틸렌	0	0	
2901220000	프로펜(프로필렌)	0	0	
2901230000	부텐(부틸렌) 및 이들의 이성체	0	0	
2901241000	1,3-부타디엔	0	0	
2901242000	이소프렌	0	0	
2901291000	헥센	0	0	
2901292000	옥텐	0	0	
2901299000	기타	0	0	
2902110000	시클로헥산	5	0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5	0	
2902199000	기타	5	0	
2902200000	벤젠	3	0	
2902300000	톨루엔	3	0	
2902410000	오르토-크실렌	5	0	
2902420000	메타-크실렌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02430000	파라-크실렌	3	0	
2902440000	혼합크실렌이성체	3	0	
2902500000	스티렌	0	0	
2902600000	에틸벤젠	5	0	
2902700000	큐멘	3	0	
2902901000	나프탈렌	0	0	
2902902000	메틸나프탈렌	0	0	
2902903000	메틸스티렌	0	0	
2902909000	기타	0	0	
2903111000	염화메탄(염화메틸)	5.5	0	
2903112000	염화에탄(염화에틸)	5.5	0	
29031200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5.5	0	
29031300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5.5	0	
2903140000	사염화탄소	5.5	0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5	0	
2903191000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5.5	0	
2903199000	기타	5.5	0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5	0	
2903220000	삼염화에틸렌	5.5	0	
29032300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5.5	0	
2903290000	기타	5.5	0	
2903310000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5.5	0	
2903391000	브로모메탄(메틸 브로마이드)	5.5	0	
2903392000	브로모에탄(1,2-디브로모에탄은 제외한다)	5.5	0	
2903393000	요드메탄	5.5	0	
2903394000	헥사플루오르에탄(CFC-116)	5.5	0	
2903395000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5.5	0	
2903396000	1,1,1,2-테트라 플루오르에탄(HFC-134a)	5.5	0	
2903397000	1,1,3,3,3-펜타플루오르-2-(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	5.5	0	
2903399000	기타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03410000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5.5	0	
2903420000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5	0	
2903430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5.5	0	
2903441000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메탄(CFC-114)	5.5	0	
2903442000	클로로펜타플루오르메탄(CFC-115)	5.5	0	
2903451010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13)	5.5	0	
2903451090	기타	5.5	0	
2903452010	펜타클로로플루오르메탄(CFC-111)	5.5	0	
2903452020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CFC-112)	5.5	0	
2903452090	기타	5.5	0	
2903453010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CFC-211)	5.5	0	
2903453020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CFC-212)	5.5	0	
2903453030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CFC-213)	5.5	0	
2903453040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CFC-214)	5.5	0	
2903453050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CFC-215)	5.5	0	
2903453060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CFC-216)	5.5	0	
2903453070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CFC-217)	5.5	0	
2903453090	기타	5.5	0	
2903461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하론-1211)	5.5	0	
2903462000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하론-1301)	5.5	0	
2903463000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하론-2402)	5.5	0	
2903471000	하이드로브로모플루오르카본	5.5	0	
2903479000	기타	5.5	0	
2903491110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21)	5.5	0	
290349112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5.5	0	
2903491130	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31)	5.5	0	
2903491190	기타	5.5	0	
290349121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HCFC-123)	5.5	0	
2903491220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메탄(HCFC-124)	5.5	0	
2903491230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141)	5.5	0	
290349124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142)	5.5	0	
2903491290	기타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0349131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	5.5	0	
2903491390	기타	5.5	0	
2903492000	불소 및 브롬만을 가지는 할로겐화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유도체	5.5	0	
2903499000	기타	5.5	0	
290351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hex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5.5	0	
29035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5.5	0	
2903590000	기타	5.5	0	
2903611000	클로로벤젠	5.5	0	
2903619000	기타	5.5	0	
2903621000	헥사클로로벤젠(ISO)	5.5	0	
2903622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5.5	0	
2903691000	염화벤질	5.5	0	
2903692010	1,2,4-트리클로로벤젠	5.5	0	
2903692090	기타	5.5	0	
2903693000	벤조트리클로라이드	5.5	0	
2903699000	기타	5.5	0	
2904101000	벤젠 술폰산	5.5	0	
2904109000	기타	5.5	0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5.5	0	
2904209010	니트로벤젠	5.5	0	
2904209020	4-니트로비페닐과 그 염	5.5	0	
2904209090	기타	5.5	0	
2904901000	2,4-디니트로클로로벤젠	5.5	0	
2904902000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5.5	0	
2904903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5.5	0	
2904909000	기타	5.5	0	
2905110000	메탄올(메틸알코올)	2	0	
290512100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05122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905122090	기타	5.5	0	
29051300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	0	
2905140000	기타 부탄올	5.5	0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5.5	0	
2905169000	기타	5.5	0	
2905171000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5.5	0	
2905172000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5.5	0	
2905173000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5.5	0	
2905191000	헵틸알코올	5.5	0	
2905192000	노닐알코올	5.5	0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	0	
2905194000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5.5	0	
2905199010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5	0	
2905199020	2-프로필 헵틸 알코올	5	0	
2905199030	이소데실 알코올	3	0	
2905199090	기타	5	0	
2905221000	게라니올, 시트로네올, 리날롤, 로디놀 및 네올	5	0	
2905229000	기타	5	0	
2905290000	기타	5	0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3	0	
29053200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5.5	0	
2905391000	1,4-부탄디올	5.5	0	
2905392000	네오펜틸 글리콜	5.5	0	
2905399000	기타	5.5	0	
2905410000	2-에틸-2-(하이드록시메틸)프로판- 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5.5	0	
2905420000	펜타에리트리톨	5.5	0	
2905430000	만니톨	8	5	
29054400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8	5	
2905450000	글리세롤	8	0	
2905490000	기타	5.5	0	
2905510000	에스클로비놀(INN)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05590000	기타	5.5	0	
2906110000	멘톨	5.5	0	
2906120000	시클로헥산올,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5.5	0	
2906131000	스테롤	5.5	0	
2906132000	이노시톨	5.5	0	
2906191000	보르네올	5.5	0	
2906192000	테르피네올	5.5	0	
2906199000	기타	5.5	0	
2906210000	벤질알코올	5.5	0	
2906291000	페닐에틸알코올	5.5	0	
2906292000	페닐프로필알코올	5.5	0	
2906293000	신나밀알코올	5.5	0	
2906299000	기타	5.5	0	
2907111000	페놀	5.5	0	
2907112000	페놀의 염	5.5	0	
2907121000	크레졸	5.5	0	
2907122000	크레졸의 염	5.5	0	
2907131000	옥틸페놀	5.5	0	
2907132000	노닐페놀	5	0	
2907139000	기타	5.5	0	
2907151000	나프톨	5.5	0	
2907152000	나프톨의 염	5.5	0	
2907191000	티몰	5.5	0	
2907192000	크실레놀과 그들의 염	5.5	0	
2907199000	기타	5.5	0	
2907211000	레소르시놀	5.5	0	
2907212000	레소르시놀의 염	5.5	0	
2907221000	히드로퀴논	5.5	0	
2907222000	히드로퀴논의 염	5.5	0	
2907231000	4,4'-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5.5	0	
2907232000	4,4'-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의 염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07291000	카테콜	5.5	0	
2907299000	기타	5.5	0	
2908110000	펜타클로로페놀(ISO)	5	0	
2908191000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은 제외한다)	5	0	
2908192000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5	0	
2908193000	트리브로모페놀	5	0	
2908199000	기타	5	0	
2908910000	디노셉(ISO)과 그 염	5.5	0	
2908991000	나프톨술폰산과 그들의 염	5.5	0	
2908992000	페놀술폰산	5.5	0	
2908993000	니트로화유도체 및 그들의 염	5.5	0	
2908994000	니트로소화유도체 및 그들의 염	5.5	0	
2908999000	기타	5.5	0	
2909110000	디에틸에테르	5.5	0	
2909191000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5.5	0	
2909192000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5.5	0	
2909199000	기타	5.5	0	
2909201000	시네올	5.5	0	
2909209000	기타	5.5	0	
2909301000	아니솔	5.5	0	
2909302000	아네톨	5.5	0	
2909303000	디페닐 에테르	5.5	0	
2909304000	엠브렛 머스크	5.5	0	
2909305000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5.5	0	
29093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09309090	기타	5.5	0	
2909410000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5.5	0	
290943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5.5	0	
2909441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메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메틸 에테르	5.5	0	
2909449000	기타	5.5	0	
2909491000	트리에틸렌 글리콜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09499000	기타	5.5	0	
2909501000	오이게놀	5.5	0	
2909502000	이소오이게놀	5.5	0	
2909503000	에테르알코올페놀	5.5	0	
2909509000	기타	5.5	0	
2909601000	과산화알코올	5.5	0	
2909602000	디쿠밀퍼록사이드	5.5	0	
2909603000	메틸에틸케톤퍼록사이드	5.5	0	
2909609000	기타	5.5	0	
2910100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5	0	
2910200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5.5	0	
2910300000	1-클로로-2,3- 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5.5	0	
2910400000	디엘드린(ISO, INN)	5.5	0	
2910900000	기타	5.5	0	
2911001010	아세탈	5.5	0	
2911001020	헤미아세탈	5.5	0	
2911009000	기타	5.5	0	
29121100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5.5	0	
29121200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5.5	0	
2912191000	시트로넬알데히드	5.5	0	
2912192000	시트랄	5.5	0	
2912193000	부탄알(부티르알데히드, 노르말 이성체)	5.5	0	
2912199000	기타	5.5	0	
2912210000	벤즈알데히드	5.5	0	
2912292000	페닐아세트알데히드	5.5	0	
2912293000	신남알데히드	5.5	0	
2912294000	알파-아밀신남알데히드	5.5	0	
2912295000	시클라멘알데히드	5.5	0	
2912299000	기타	5.5	0	
2912301000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데히드	5.5	0	
2912309000	기타	5.5	0	
2912410000	바닐린(4-하이드록시-3- 메톡시벤즈알데히드)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12420000	에틸바닐린(3-에톡시-4-하이드록시벤즈알데히드)	5.5	0	
2912491000	3,4,5-트리메톡시벤즈알데히드	5.5	0	
2912499000	기타	5.5	0	
2912501000	트리옥산	5.5	0	
2912502000	파라알데히드	5.5	0	
2912503000	메타알데히드	5.5	0	
2912509000	기타	5.5	0	
2912600000	파라포름알데히드	5.5	0	
29130000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5.5	0	
2914110000	아세톤	5.5	0	
29141200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3	0	
2914130000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5.5	0	
2914191000	3,3-디메틸-2-부타논(피나콜론)	5.5	0	
2914199000	기타	5.5	0	
2914210000	장뇌	5	0	
2914221000	시클로헥사논	5	0	
2914222000	메틸시클로헥사논	5	0	
2914231000	이오논	5	0	
2914232000	메틸이오논	5	0	
2914291000	자스몬	5	0	
2914299000	기타	5	0	
29143100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5.5	0	
2914390000	기타	5.5	0	
2914401000	디아세톤 알코올(4-하이드록시-4-메틸펜탄-2-온)	5.5	0	
2914409000	기타	5.5	0	
2914501000	케톤-페놀	5.5	0	
2914509000	기타	5.5	0	
2914610000	안트라퀴논	5.5	0	
2914691000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5.5	0	
2914699010	퀴논-알코올, 퀴논페놀과 퀴논-알데히드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14699090	기타	5.5	0	
2914701000	케톤 머스크	5	0	
29147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14709090	기타	5	0	
2915110000	포름산	5.5	0	
2915121000	포름산 칼슘	5.5	0	
2915122000	포름산 암모늄	5.5	0	
2915129000	기타	5.5	0	
2915131000	포름산 메틸	5.5	0	
2915132000	2-에틸헥실클로로포메이트	5.5	0	
2915139000	기타	5.5	0	
2915210000	초산	5.5	0	
2915240000	무수초산	5.5	0	
2915291000	초산칼슘	5.5	0	
2915292000	초산나트륨	5.5	0	
2915293000	초산코발트	5.5	0	
2915299000	기타	5.5	0	
2915310000	초산에틸	5.5	0	
2915320000	초산비닐	5.5	0	
291533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5	0	
2915339000	기타	5.5	0	
2915360000	초산디노셉(ISO)	5.5	0	
2915391000	초산아밀	5.5	0	
2915392000	초산이소아밀	5.5	0	
2915393000	초산메틸	5.5	0	
2915394000	초산이소부틸	5.5	0	
2915395000	초산 2-에톡시에틸	5.5	0	
2915399000	기타	5.5	0	
2915401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5.5	0	
2915409000	기타	5.5	0	
2915500000	프로피온산, 그 염 및 에스테르	5.5	0	
2915600000	부탄산, 펜탄산,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5.5	0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 및 에스테르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15702010	스테아르산	5.5	0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5	0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5.5	0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5.5	0	
2915702050	스테아르산 바륨	5.5	0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5.5	0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5.5	0	
2915702080	스테아르산 부틸	5.5	0	
2915702090	기타	5.5	0	
291590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5.5	0	
2915909010	2-에틸헥소산	5.5	0	
2915909090	기타	5.5	0	
2916111000	아크릴산	6.5	0	
2916119000	기타	6.5	0	
2916121000	아크릴산에틸	6.5	0	
2916122000	아크릴산메틸	6.5	0	
2916123000	아크릴산부틸	6.5	0	
2916124000	아크릴산 2-에틸헥실	6.5	0	
2916129000	기타	6.5	0	
2916131000	메타아크릴산	6.5	0	
2916139000	기타	6.5	0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6.5	0	
2916149000	기타	6.5	0	
2916151000	올레산,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6152000	리놀레산,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6153000	리놀렌산,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6190000	기타	6.5	0	
2916201000	시클로 헥산카르복시산	6.5	0	
2916202000	시클로 펜테닐 초산	6.5	0	
29162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16209090	기타	6.5	0	
2916311000	벤조산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16312000	벤조산나트륨	6.5	0	
2916313000	벤조산벤질	6.5	0	
291631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16319090	기타	6.5	0	
2916321000	과산화벤조일	6.5	0	
2916322000	염화벤조일	6.5	0	
2916341000	페닐아세트산	6.5	0	
2916342000	페닐아세트산의 염	6.5	0	
2916351000	페닐아세트산에틸	6.5	0	
2916352000	페닐아세트산이소부틸	6.5	0	
2916353000	페닐아세트산이소아밀	6.5	0	
2916359000	기타	6.5	0	
2916360000	비나파크릴(ISO)	6.5	0	
2916391000	계피산	6.5	0	
29163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16399090	기타	6.5	0	
2917111000	옥살산	6.5	0	
2917112000	옥살산의 염	6.5	0	
2917113000	옥살산의 에스테르	6.5	0	
2917121000	아디프산	6.5	0	
2917122000	아디프산의 염	6.5	0	
2917123010	아디프산 디옥틸	6.5	0	
2917123090	기타	6.5	0	
2917131000	아젤라산,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7132000	세바스산,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7140000	무수말레산	6.5	0	
2917191000	말레산	6.5	0	
2917192000	숙신산	6.5	0	
2917193000	숙신산 나트륨	6.5	0	
2917194000	말론산 디에틸	6.5	0	
2917195000	말론산 디이소프로필	6.5	0	
2917199000	기타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17200000	포화지환식,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6.5	0	
2917321000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6.5	0	
2917329000	기타	6.5	0	
2917331000	오르토프탈산 디노닐	6.5	0	
2917332000	오르토프탈산 디데실	6.5	0	
2917341000	오르토프탈산 디헵틸	6.5	0	
2917342000	오르토프탈산 디이소데실	6.5	0	
2917343000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6.5	0	
2917349000	기타	6.5	0	
2917350000	무수프탈산	6.5	0	
2917361000	테레프탈산	3	0	
2917369000	기타	6.5	0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6.5	0	
2917391000	이소프탈산	6.5	0	
2917392000	트리옥틸트리메리테이트(T.O.T.M)	6.5	0	
2917393000	무수트리멜리트산	6.5	0	
2917399000	기타	6.5	0	
2918111000	락트산	6.5	0	
2918112000	락트산의 염	6.5	0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20000	타르타르산	6.5	0	
2918131000	타르타르산의 염	6.5	0	
2918132000	타르타르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40000	시트르산	6.5	0	
2918151010	시트르산 칼슘	6.5	0	
2918151090	기타	6.5	0	
2918152000	시트르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61000	글루콘산	6.5	0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6.5	0	
2918163000	글루콘산의 에스테르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6.5	0	
2918191010	말산	6.5	0	
2918191090	기타	6.5	0	
2918192010	말산의 염	6.5	0	
2918192090	기타	6.5	0	
2918193010	말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93020	메틸벤질레이트	6.5	0	
2918193090	기타	6.5	0	
2918194000	2,2-디페닐-2- 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6.5	0	
2918199000	기타	6.5	0	
2918211000	살리실산	6.5	0	
2918212010	살리실산 나트륨	6.5	0	
2918212090	기타	6.5	0	
2918221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6.5	0	
2918222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염	6.5	0	
2918223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에스테르	6.5	0	
2918231010	살리실산 메틸	6.5	0	
2918231020	살리실산 에틸	6.5	0	
2918231090	기타	6.5	0	
2918232000	기타 살리실산에스테르의 염	6.5	0	
2918291000	베타-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6.5	0	
2918299010	갈산	6.5	0	
2918299020	파라하이드록시 나프토산	6.5	0	
2918299030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산	6.5	0	
2918299040	갈산의 염과 에스테르	6.5	0	
2918299090	기타	6.5	0	
291830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18309000	기타	6.5	0	
2918910000	2,4,5-티(ISO)(2,4,5- 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899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18999000	기타	6.5	0	
291910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6.5	0	
291990101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19901019	기타	6.5	0	
2919901020	글리세로인산	6.5	0	
2919901090	기타	6.5	0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6.5	0	
2919909000	기타	6.5	0	
292011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0119000	기타	6.5	0	
292019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0199010	0, 0-디메틸-0-(3-메틸-4- 니트로페닐)티오포스페이트	6.5	0	
2920199090	기타	6.5	0	
2920901010	황산디메틸	6.5	0	
2920901020	황산디에틸	6.5	0	
2920901090	기타	6.5	0	
2920902000	아질산에스테르 및 질산에스테르의 것	6.5	0	
2920903000	탄산에스테르의 것	6.5	0	
2920904010	디메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20	디에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30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4040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6.5	0	
29209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0909090	기타	6.5	0	
2921111010	메틸아민	6.5	0	
2921111020	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12010	디메틸아민	6.5	0	
2921112020	디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13010	트리메틸아민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21113020	트리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91000	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5	0	
2921192000	디에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199010	디메틸라우릴아민	6.5	0	
2921199020	클로르메틴(INN)[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	6.5	0	
2921199030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6.5	0	
2921199040	트리클로르메틴(INN)[트리스(2-클로로에틸)아민]	6.5	0	
2921199050	디-이소프로필아민	6.5	0	
2921199060	엔,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6.5	0	
292119907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21199090	기타	6.5	0	
2921211000	에틸렌디아민	6.5	0	
2921212000	에틸렌디아민의 염	6.5	0	
2921221000	헥사메틸렌디아민	6.5	0	
2921222000	헥사메틸렌디아민아디페이트	6.5	0	
2921229000	기타	6.5	0	
2921291000	디에틸렌 트리아민	5	0	
2921292000	트리에틸렌 테트라아민	5	0	
2921299000	기타	5	0	
2921301000	시클로 헥실아민	6.5	0	
2921309000	기타	6.5	0	
2921411000	아닐린	6.5	0	
2921412000	아닐린의 염	6.5	0	
2921421000	아닐린의 니트로할로겐화 유도체	6.5	0	
2921422000	2,4,5-트리클로로아닐린	6.5	0	
292142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1429090	기타	6.5	0	
2921431000	파라-톨루이딘-메타-술폰산과 그 염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21432000	2-클로로-파라-톨루이딘-5-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3000	3-아미노-6-클로로톨루엔-4-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9010	톨루이딘	6.5	0	
292143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1439099	기타	6.5	0	
2921441000	디페닐아민	6.5	0	
2921449000	기타	6.5	0	
2921451000	1-나프틸아민-4-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59010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459020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459030	2-나프틸아민-3,6,8-트리술폰산과 그 염	5	0	
2921459090	기타	6.5	0	
2921460000	암페타민(INN), 벤즈페타민(INN), 덱스암페타민(INN), 에틸암페타민(INN), 펜캄파민(INN), 레페타민(INN),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 및 펜터민(INN), 그들의 염	6.5	0	
292149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1499000	기타	6.5	0	
2921511000	엔-페닐-엔-이소프로필-파라- 페닐렌디아민	6.5	0	
2921512000	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 페닐렌디아민	6.5	0	
2921519010	오르토-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20	메타-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30	파라-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40	디아미노톨루엔	6.5	0	
2921519090	기타	6.5	0	
2921591000	3,3-디클로로벤지딘술폰산염	6.5	0	
2921599010	벤지딘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21599020	벤지딘 디히드로 클로라이드	6.5	0	
2921599030	4,4'디아미노스틸벤-2,2'-디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599040	벤지딘의 염(벤지딘디히드로클로라이드는 제외한다)	6.5	0	
2921599050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6.5	0	
2921599090	기타	6.5	0	
2922111000	모노에탄올아민	6.5	0	
2922112000	모노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21000	디에탄올아민	6.5	0	
2922122000	디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31000	트리에탄올아민	3	0	
2922132000	트리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40000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6.5	0	
2922191000	아릴에탄올아민	6.5	0	
2922193010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22193020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22193090	기타	6.5	0	
2922194000	에틸디에탄올아민	6.5	0	
2922195000	메틸디에탄올아민	6.5	0	
2922196000	디에틸아미노에탄올	6.5	0	
2922199000	기타	6.5	0	
2922211000	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 에시드)과 그 염	6.5	0	
2922212000	8-아미노-1-나프톨-3, 6- 디술폰산(에이치 에시드)과 그 염	3	0	
2922213000	2-아미노-5-나프톨-7-디술폰산(제이 에시드)과 그 염	6.5	0	
2922219000	기타	6.5	0	
2922291000	파라-아미노페놀	6.5	0	
2922299010	메타-아미노페놀	6.5	0	
2922299020	오르토-아미노페놀	6.5	0	
2922299030	아미노 크레졸	6.5	0	
2922299040	페네티딘과 그들의 염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22299090	기타	6.5	0	
2922310000	암페프라몬(INN), 메타돈(INN) 및 노르메타돈(INN), 그들의 염	6.5	0	
2922392000	아미노 안트라퀴논과 그들의 염	6.5	0	
2922393000	아미노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6.5	0	
2922399000	기타	6.5	0	
2922411000	리신	6.5	0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6.5	0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6.5	0	
2922421000	글루탐산	5	0	
2922422000	글루탐산 나트륨	6.5	0	
2922423000	기타 글루탐산의 염	6.5	0	
2922431000	안트라닐산	6.5	0	
2922439000	안트라닐산의 염	6.5	0	
2922440000	틸리딘(INN)과 그 염	6.5	0	
2922491000	글리신	6.5	0	
2922492000	알라닌	6.5	0	
2922493000	류우신	6.5	0	
2922494000	바린	6.5	0	
2922495000	아스파르트산	6.5	0	
2922496000	페닐글리신	6.5	0	
2922497000	에틸파라아미노 벤조에이트	6.5	0	
2922499000	기타	6.5	0	
2922501000	세린	6.5	0	
2922502000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6.5	0	
2922503000	1-파라-니트로 페놀-2-아미노-1,3- 프로판디올	6.5	0	
2922504000	디알파히드록시페닐글리신	6.5	0	
29225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2509090	기타	6.5	0	
2923101000	콜린	6.5	0	
2923102000	콜린의 염	6.5	0	
2923201000	레시틴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23202000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	6.5	0	
2923900000	기타	6.5	0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6.5	0	
2924121000	플루오르아세트아미드(ISO)	6.5	0	
2924122000	모노크로토포스(ISO)	6.5	0	
2924123000	포스파미돈(ISO)	6.5	0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6.5	0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5	0	
29241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4199090	기타	6.5	0	
292421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4219000	기타	6.5	0	
29242300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 및 그 염	6.5	0	
2924240000	에티나메이트(INN)	6.5	0	
2924291010	아미노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6.5	0	
2924291020	아세트아미노펜	6.5	0	
2924291090	기타	6.5	0	
2924292000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	5	0	
2924299010	염산리도카인	6.5	0	
2924299091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및 이오메프롤	0	0	
2924299092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4299099	기타	6.5	0	
2925111000	사카린	6.5	0	
2925112000	사카린의 염	6.5	0	
2925120000	글루테티미드(INN)	6.5	0	
2925191000	프탈아미드	6.5	0	
29251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5199090	기타	6.5	0	
2925210000	클로르디메포름(ISO)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25291000	디페닐구아니딘	6.5	0	
29252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5299090	기타	6.5	0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6.5	0	
292620000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6.5	0	
2926300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타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 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6.5	0	
2926901000	아세토니트릴	6.5	0	
2926902000	1,4-디아미노-2,3-디시아노안트라퀴논	6.5	0	
2926909010	말로노니트릴	6.5	0	
29269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6909099	기타	6.5	0	
2927001100	6-니트로-1-디아조-2-나프톨-4- 술폰산	6.5	0	
2927001900	기타	6.5	0	
2927002100	아조디카본아미드	6.5	0	
2927002910	아조이소부티로니트릴	6.5	0	
2927002990	기타	6.5	0	
2927003000	아족시-화합물	6.5	0	
2928001000	페닐히드라진	6.5	0	
2928009010	페릴랄틴	6.5	0	
2928009020	메틸에틸 케토옥심	6.5	0	
29280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28009099	기타	6.5	0	
292910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6.5	0	
2929102000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6.5	0	
2929109000	기타	6.5	0	
2929901000	이소시아나화물	6.5	0	
29299030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29904000	디에틸-노르말, 노르말-디에틸 포스포라미데이트	6.5	0	
2929905000	오르토-에틸-2-디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6.5	0	
2929906000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6.5	0	
2929909000	기타	6.5	0	
2930201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0201090	기타	6.5	0	
2930202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0202090	기타	6.5	0	
2930301000	티우람모노-숄파이드	6.5	0	
2930302000	티우람-디숄파이드	6.5	0	
2930303000	티우람-테트라숄파이드	6.5	0	
2930400000	메티오닌	6.5	0	
2930501000	캡타폴(ISO)	6.5	0	
2930502000	메타미도포스(ISO)	6.5	0	
2930901000	2-아미노-4-메틸티오부티르산나트륨	6.5	0	
2930902010	티오우레아	6.5	0	
2930902020	티오카르바닐리드	6.5	0	
2930902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0902099	기타	6.5	0	
2930903010	티오알코올	6.5	0	
2930903020	티오페놀	6.5	0	
2930903030	엔, 엔-디이소프로필-베타- 아미노에탄티올	6.5	0	
2930903040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 2-티올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4010	티오디글리콜(INN)[비스(2- 하이드록시에틸) 숄파이드]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0904020	티오아닐린	6.5	0	
2930904090	기타	6.5	0	
2930905010	2-클로로 에틸클로로메틸술파이드	6.5	0	
2930905020	비스(2-클로로에틸)술파이드	6.5	0	
2930905030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탄	6.5	0	
2930905040	1,2-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탄	6.5	0	
2930905050	1,3-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프로판	6.5	0	
2930905060	1,4-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부탄	6.5	0	
2930905070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6.5	0	
2930905081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	6.5	0	
2930905082	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틸)에테르	6.5	0	
2930905090	기타	6.5	0	
29309060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그들의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7000	오, 오-디에틸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8000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트(포노포스)	6.5	0	
2930909010	티오산	6.5	0	
2930909020	이소티오시아네이트	6.5	0	
2930909030	시스테인	6.5	0	
2930909040	시스틴	6.5	0	
2930909050	글루타티온	6.5	0	
2930909060	8-클로로-6-토실로틴산에틸에스테르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0909070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그룹 이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인원자를 함유하는 것	6.5	0	
2930909080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	6.5	0	
29309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0909099	기타	6.5	3	
2931002010	2-클로로비닐 디클로로아르신	6.5	0	
2931002020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6.5	0	
2931002030	트리스(2-클로로비닐) 아르신	6.5	0	
2931002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1002099	기타	6.5	0	
2931003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그들의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들	6.5	0	
2931003300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0	
2931003400	오-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0	
29310035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6.5	0	
29310037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1003911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003912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003913	디에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003914	디메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003915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1003919	기타	6.5	0	
293100401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닐 디플루오라이드	6.5	0	
2931004090	기타	6.5	0	
2931005010	메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005020	메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005030	에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005040	에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005090	기타	6.5	0	
2931009010	디부틸 틴 옥사이드	6.5	0	
2931009020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6.5	0	
29310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1009099	기타	6.5	0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6.5	0	
293212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6.5	0	
2932131000	푸르푸릴 알코올	6.5	0	
2932132000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	6.5	0	
293219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2199000	기타	6.5	0	
2932211000	쿠마린	5	0	
2932212000	메틸쿠마린	5	0	
2932213000	에틸쿠마린	5	0	
2932291000	노나락톤	5	0	
2932292000	운데카락톤	5	0	
2932293000	부티로락톤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2294000	산토닌	5	0	
2932295000	페놀프탈레인	5	0	
2932296000	글루쿠로노락톤	5	0	
2932297000	탈수소초산과 그 염	5	0	
2932298000	아세틸케텐(디케텐)	5	0	
29322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2299090	기타	5	0	
2932910000	이소사프롤	6.5	0	
29329200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5	0	
2932930000	피페로날	6.5	0	
2932940000	사프롤	6.5	0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5	0	
2932991000	디옥산	6.5	0	
2932992000	벤조푸란(쿠마론)	6.5	0	
29329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2999090	기타	6.5	0	
2933111000	메틸렌비스(1-페닐-2,3-디메틸-4- 메틸아미노피라조론-5)	6.5	0	
2933119010	페나존(안티피린)	6.5	0	
2933119030	설피린	6.5	0	
2933119040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6.5	0	
293311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119099	기타	6.5	0	
2933191000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6.5	0	
2933199010	페닐부타존	6.5	0	
2933199020	피라졸레이트	6.5	0	
293319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199099	기타	6.5	0	
2933211000	히단토인	6.5	0	
293321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6.5	0	
2933291000	리시딘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32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299090	기타	6.5	0	
2933311000	피리딘	6.5	0	
2933312000	피리딘의 염	6.5	0	
2933321000	피페리딘	6.5	0	
2933329000	피페리딘의 염	6.5	0	
2933330000	알펜타닐(INN), 아닐레리딘(INN), 베지트라미드(INN), 브로마제팜(INN), 디페녹신(INN), 디펜옥실레이트(INN), 디피파논(INN), 펜타닐(INN), 케토베미돈(INN), 메탈페니데이트(INN), 펜타조신(INN), 페티딘(INN), 페티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펜사이클리딘(INN)(PCP), 페노페리딘(INN), 피프라드롤(INN), 피리트라미드(INN), 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INN), 그들의 염	6.5	0	
2933391000	이소니코틴산 히드라지드	6.5	0	
2933393000	3-하이드록시-1-메틸피페리딘	6.5	0	
2933394000	3-퀴뉴클리디닐 벤질레이트	6.5	0	
2933395000	퀴뉴클리딘-3-올	6.5	0	
29333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399090	기타	6.5	0	
2933410000	레보파놀(INN) 및 그 염	6.5	0	
2933491000	피비니움파모에이트	6.5	0	
29334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499090	기타	6.5	0	
29335200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3530000	아로바르비탈(INN), 아모바르비탈(INN), 바르비탈(INN), 부탈비탈(INN), 부도바르비탈(INN), 싸이클로바르비탈(INN), 메틸페노바르비탈(INN), 펜도바르비탈(INN), 페노바르비탈(INN), 섹부타바르비탈(INN), 세코바르비탈(INN) 및 비닐비탈(INN), 그들의 염	6.5	0	
2933540000	기타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 그들의 염	6.5	0	
2933550000	로프라졸람(INN), 메크로과론(INN), 메타과론(INN) 및 지페프롤(INN), 그들의 염	6.5	0	
2933591100	5-플루오르우라실	6.5	0	
2933591910	피리미딘	6.5	0	
29335919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591999	기타	6.5	0	
2933592010	피페라진	6.5	0	
2933592020	시트르산 피페라진	6.5	0	
2933592030	아디프산 피페라진	6.5	0	
2933592040	1-아미노-4-메틸피페라진	6.5	0	
2933592090	기타	6.5	0	
2933599000	기타	6.5	0	
2933610000	멜라민	6.5	0	
2933691000	염화시아놀	3	0	
2933692000	핵사메틸렌테트라민	6.5	0	
2933699010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6.5	0	
293369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699099	기타	6.5	0	
2933710000	6-핵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3	0	
2933720000	클로바잠(INN)과 메티프리론(INN)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3791000	이사틴	6.5	0	
2933792000	2-하이드록시퀴놀린	6.5	0	
2933793000	1-비닐-2-피롤리돈	6.5	0	
2933799000	기타	6.5	0	
2933910000	알프라졸람(INN), 카마제팜(INN),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클로나제팜(INN), 클로라제페이트, 델로라제팜(INN), 디아제팜(INN), 에스타졸람(INN),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플루디아제팜(INN), 플루니트라제팜(INN), 플루라제팜(INN), 할라제팜(INN), 로라제팜(INN), 로르메타제팜(INN), 마진돌(INN), 메다제팜(INN), 미다졸람(INN), 니메타제팜(INN), 니트라제팜(INN), 놀다제팜(INN), 옥사제팜(INN), 피나제팜(INN), 프라제팜(INN), 피로발레론(INN), 테마제팜(INN), 테트라제팜(INN) 및 트리아졸람(INN), 그들의 염	6.5	0	
2933991000	인돌과 그 유도체	6.5	0	
29339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999090	기타	6.5	3	
2934101000	아미노티아졸 및 그 유도체	6.5	0	
29341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4109090	기타	6.5	0	
2934201000	벤조티아졸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4202000	머캡토 벤조티아졸	6.5	0	
2934203000	디벤조티아졸릴 디술파이드	6.5	0	
29342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4209090	기타	6.5	0	
2934301000	페노티아진(티오디페닐아민)	6.5	0	
2934309000	기타	6.5	0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덱스트로모라미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 페몰린(INN),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닐(INN), 그들의 염	6.5	0	
2934991000	모르포린	6.5	0	
2934992000	핵산, 그들의 염 및 유도체	6.5	0	
2934993000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6.5	0	
29349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4999090	기타	6.5	0	
2935002000	5-아미노-2-메틸-엔-페닐벤젠 술폰아미드	6.5	0	
2935003000	파라-톨루이딘-3-술폰아닐리드	6.5	0	
2935004000	2-아미노-엔-에틸벤젠 술폰아닐리드	6.5	0	
2935006000	술파메톡사졸	6.5	0	
2935007000	술파메톡신	6.5	0	
2935008010	술파민	6.5	0	
2935008020	술파피리딘	6.5	0	
2935008030	술파디아진	6.5	0	
2935008040	술파메라진	6.5	0	
2935008050	술파티아졸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5008090	기타	6.5	0	
293500902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5009090	기타	6.5	0	
2936210000	비타민 A 와 그들의 유도체	6.5	0	
2936220000	비타민 B1 과 그 유도체	6.5	0	
2936230000	비타민 B2 와 그 유도체	6.5	0	
2936240000	디 또는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또는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6.5	0	
2936250000	비타민 B6 와 그 유도체	6.5	0	
2936260000	비타민 B12 와 그 유도체	6.5	0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6.5	0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6.5	0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6.5	0	
2936279000	기타	6.5	0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6.5	0	
2936289000	기타	6.5	0	
2936291010	비타민 B9	6.5	0	
2936291090	기타	6.5	0	
2936292000	비타민 D 와 그들의 유도체	6.5	0	
2936293000	비타민 H 와 그 유도체	6.5	0	
2936294000	비타민 K 와 그들의 유도체	6.5	0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그 유도체	6.5	0	
2936299000	기타	6.5	0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5	0	
2936909000	기타	6.5	0	
2937111000	소호 제 2933.9 호 또는 제 2934.9 호의 것	6.5	0	
2937119000	기타	0	0	
2937120000	인슐린과 그 염	0	0	
2937191000	소호 제 2933.9 호 또는 제 2934.9 호의 것	6.5	0	
2937199000	기타	0	0	
2937211000	코르티손	0	0	
2937212000	히드로코르티손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7213000	프레드니손	0	0	
2937214000	프레드니손론	0	0	
29372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	0	
293723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그에스토겐	0	0	
2937292000	소호 제 2914.50 호의 것	5.5	0	
2937299000	기타	0	0	
2937310000	에피네프린	0	0	
2937391000	소호 제 2922.50 호의 것	6.5	0	
2937399000	기타	0	0	
2937400000	아미노산 유도체	0	0	
2937501000	소호 제 2918.19 호 또는 제 2918.9 호의 것	6.5	0	
2937502000	소호 제 2934.9 호의 것	6.5	0	
2937509000	기타	0	0	
2937901000	소호 제 2933.9 호 또는 제 2934.9 호의 것	6.5	0	
2937909000	기타	0	0	
2938101000	루토시드(루틴)	6.5	0	
2938102000	루토시드의 유도체	6.5	0	
2938901000	디기탈리스 글리코시드	6.5	0	
2938902000	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6.5	0	
2938903000	사포닌	6.5	0	
2938904000	스테비오사이드	6.5	0	
2938909000	기타	6.5	0	
2939111000	모르핀	0	0	
2939112000	에틸모르핀	0	0	
2939113000	코데인	0	0	
2939114000	양귀비 줄기 농축물(알칼로이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8	0	
2939119000	기타	0	0	
2939190000	기타	0	0	
2939200000	기타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39300000	카페인과 그 염	0	0	
2939411000	에페드린	0	0	
2939419000	에페드린의 염	0	0	
2939421000	슈도에페드린(INN)	0	0	
293942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0	0	
2939430000	캐틴(INN)과 그 염	0	0	
2939491000	놀에페드린	0	0	
2939499000	기타	0	0	
29395100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0	0	
2939590000	기타	0	0	
2939611000	엘고메트린(INN)	0	0	
2939619000	엘고메트린(INN)의 염	0	0	
2939621000	엘고타민(INN)	0	0	
2939629000	엘고타민(INN)의 염	0	0	
2939631000	리세르그산	0	0	
2939639000	리세르그산의 염	0	0	
2939690000	기타	0	0	
2939910000	코카인, 에크코닌, 레보메탐페타민, 메탐페타민(INN),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그들의 염, 그들의 에스테르와 기타 그들의 유도체	0	0	
29399910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	0	0	
2939992000	아레코린	0	0	
2939993000	피페린	0	0	
2939994000	니코틴과 그 염	0	0	
2939999000	기타	0	0	
2940001010	갈락토오스	6.5	0	
2940001020	소르보오스	6.5	0	
2940001030	크실로오스	6.5	0	
2940001090	기타	6.5	0	
2940002010	하이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	6.5	0	
2940002090	기타	6.5	0	
2941101000	페니실린 지 칼륨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2941109010	페니실린 지 나트륨	6.5	0	
2941109020	페니실린 브이	6.5	0	
2941109090	기타	6.5	0	
294120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41209000	기타	6.5	0	
2941301000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2000	염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3000	염산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9000	기타	6.5	0	
2941400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그들의 염	6.5	0	
2941501000	에리트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6.5	0	
2941509000	기타	6.5	0	
2941902000	11-알파-클로로-6-데옥시-6-데메틸- 6-메틸렌-5-옥시테트라사이클린- 파라톨루엔술포네이트	6.5	0	
2941909010	황산 카나마이신	6.5	0	
2941909020	레더마이신	6.5	0	
2941909030	황산 겐타마이신	6.5	0	
2941909040	류코마이신	6.5	0	
294190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41909099	기타	6.5	5	
2942001000	케텐	6.5	0	
2942009010	아세트 아비산 동	6.5	0	
2942009090	기타	6.5	0	
3001201000	선추출물	0	0	
3001202000	간장추출물	0	0	
3001203000	담낭추출물	0	0	
3001204000	췌장추출물	0	0	
3001205000	위장추출물	0	0	
3001209000	기타	0	0	
3001901010	인체의 것	0	0	
300190109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001902010	웅담	0	0	
3001902090	기타	0	0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0	0	
3001909020	인체의 것	0	0	
3001909090	기타	0	0	
3002101000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0	0	
3002102010	헤모글로빈	0	0	
3002102020	글로부린	0	0	
3002103000	트롬빈과 프로트롬비나제	0	0	
3002109010	면역혈청	0	0	
3002109020	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은 제외한다)	0	0	
3002109090	기타	0	0	
3002200000	백신(인체의약품의 것에 한한다)	0	0	
3002301000	구제역 백신	0	0	
3002309000	기타	0	0	
3002901000	인혈	0	0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 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	0	0	
3002903010	색시톡신	6.5	0	
3002903020	라이신	8	0	
3002903090	기타	0	0	
3002904000	미생물배양체	0	0	
3002905000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	0	0	
3002906000	살균소	0	0	
3002909000	기타	0	0	
3003101000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하는 것	8	0	
3003102000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0	
3003201000	항결핵제 및 항암제	8	0	
3003209010	클로람 페니콜제제	8	0	
3003209090	기타	8	0	
3003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003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0	
3003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0	
3003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8	0	
3003393000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8	0	
3003394000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8	0	
3003395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8	0	
3003396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8	0	
3003397000	남성 호르몬제제	8	0	
3003398000	난포 및 황체 호르몬제제	8	0	
3003399000	기타	8	0	
3003401000	항암제	8	0	
3003409110	모르핀제제	8	0	
3003409120	키닌제제	8	0	
3003409130	테오브로민제제	8	0	
3003409210	카페인제제	8	0	
3003409220	스트리키닌제제	8	0	
3003409230	에페드린제제	8	0	
3003409310	코카인제제	8	0	
300340932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8	0	
3003409330	니코틴제제	8	0	
30034094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	0	
3003409500	아레코린제제	8	0	
3003409600	피페린제제	8	0	
3003409900	기타	8	0	
3003901000	항결핵제, 구충제 및 항암제	8	0	
3003909100	아스피린제제	8	0	
3003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0	
3003909300	비타민제제	8	0	
3003909400	녹용제제	8	0	
3003909500	인삼제제	8	0	
3003909600	로얄제리제제	8	0	
3003909900	기타	8	3	
3004101000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에 한한다)를 함유한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004102000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0	
3004201000	항결핵제, 구충제 및 항암제	8	0	
3004209100	클로람페니콜제제	8	0	
3004209200	에리트로마이신제제	8	0	
3004209300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제제	8	0	
3004209400	카나마이신제제	8	0	
3004209900	기타	8	0	
3004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0	
30043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들의 유도체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을 함유하는 것	8	0	
3004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0	
3004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0	
3004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8	0	
3004393000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8	0	
3004394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8	0	
3004395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8	0	
3004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8	0	
3004397000	난포 및 황체 호르몬제제	8	0	
3004399000	기타	8	0	
3004401000	항암제	8	0	
3004409110	모르핀제제	8	0	
3004409120	키닌제제	8	0	
3004409130	테오브로민제제	8	0	
3004409210	카페인제제	8	0	
3004409220	스트리크닌제제	8	0	
3004409230	에페드린제제	8	0	
3004409310	코카인제제	8	0	
300440932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8	0	
3004409330	니코틴제제	8	0	
30044094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	0	
3004409500	아레코린제제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004409600	피페린제제	8	0	
3004409900	기타	8	0	
3004501000	비타민 A 제제	8	0	
3004502010	비타민 B1 제제	8	0	
3004502090	기타	8	0	
3004503000	비타민 C 제제	8	0	
3004504000	비타민 D 제제	8	0	
3004505000	비타민 E 제제	8	0	
3004506000	비타민 H 제제	8	0	
3004507000	비타민 K 제제	8	0	
3004509000	기타	8	0	
3004901000	항결핵제, 구충제 및 항암제	8	3	
3004909100	아스피린제제	8	0	
3004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0	
3004909300	녹용제제	8	0	
3004909400	인삼제제	8	0	
3004909500	로얄제리제제	8	0	
3004909900	기타	8	3	
3005101000	반창고	0	0	
3005109000	기타	0	0	
3005901000	탈지면	0	0	
3005902000	거어즈	0	0	
3005903000	붕대	0	0	
3005904000	조제드레싱과 습포제	0	0	
3005909000	기타	0	0	
3006101010	살균한 외과용의 컷거트	0	0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사(絲)를 포함한다]	0	0	
300610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0	0	
3006103000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0	0	
3006104000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0	0	
3006105010	플라스틱제의 것	6.5	0	
300610502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006105090	기타	0	0	
3006200000	혈액형 분류용 시약	0	0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0	0	
3006302000	진단용 시약(환자투여용의 것)	0	0	
3006401000	치과용 시멘트	0	0	
3006402000	치과용 충전제	0	0	
3006403000	뼈형성용 시멘트	0	0	
3006500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0	0	
3006600000	호르몬, 제 2937 호의 기타 제품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	0	
3006700000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촉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6.5	0	
3006910000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6.5	0	
3006921010	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0	0	
3006921090	기타	0	0	
3006922010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0	0	
3006922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부린	0	0	
3006922031	색시토신	6.5	0	
3006922032	라이신	8	0	
3006922090	기타	0	0	
3006923000	제 3003 호 또는 제 3004 호의 것	8	0	
3006924000	제 3005 호 또는 제 3006 호의 것	0	0	
3006925000	소호 제 3824.90 호의 것	6.5	0	
3101001010	구아노	6.5	0	
3101001090	기타	6.5	0	
3101002000	식물성 비료	6.5	0	
3101003000	동물성 또는 식물성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6.5	0	
3102101000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의 것	2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102109000	기타	6.5	0	
3102210000	황산암모늄	6.5	0	
3102291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6.5	0	
310229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6.5	0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	0	
310240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가한 것에 한한다)	6.5	0	
3102501000	천연의 것	6.5	0	
3102509000	기타	6.5	0	
310260000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및 혼합물	6.5	0	
3102800000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것에 한한다)	6.5	0	
3102901000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	6.5	0	
3102909000	기타	6.5	0	
3103100000	과인산석회	6.5	0	
3103901000	소성인산석회	6.5	0	
3103902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6.5	0	
3103903000	기타 인산석회	6.5	0	
3103904000	혼합 인산질비료	6.5	0	
3103909000	기타	6.5	0	
3104200000	염화칼륨	0	0	
310430100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2 퍼센트 이하인 것	1	0	
3104309000	기타	6.5	0	
310490101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30 퍼센트 이하인 것	1	0	
3104901090	기타	6.5	0	
3104909000	기타	1	0	
3105100000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이 류의 물품			
3105200000	질소, 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6.5	0	
3105300000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6.5	0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와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의 혼합물	6.5	0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6.5	0	
3105590000	기타	6.5	0	
3105600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6.5	0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비료	6.5	0	
3105909000	기타	6.5	0	
3201100000	퀘브라쵸 엑스	6.5	0	
3201200000	왓틀엑스	6.5	0	
3201901010	망그로브 엑스	6.5	0	
3201901020	미로보란 엑스	6.5	0	
3201901030	수마크 엑스	6.5	0	
3201901040	감비어 엑스	6.5	0	
3201901090	기타	6.5	0	
3201902000	탄닌산과 그 염	6.5	0	
3201903000	탄닌의 에테르 또는 에스테르	6.5	0	
3201904000	기타 탄닌의 유도체	6.5	0	
3202101000	방향족 신탄스	6.5	0	
3202102000	영화 알킬술폰	6.5	0	
3202103000	수지성 유연제	6.5	0	
3202109000	기타	6.5	0	
3202901000	무기유연제	6.5	0	
3202902000	인조 탈회제	6.5	0	
3202909000	기타	6.5	0	
3203001100	천연 인디고	6.5	0	
3203001910	로그우드	6.5	0	
3203001920	백단향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203001930	엽록소	6.5	0	
3203001990	기타	6.5	0	
3203002010	코치니엘	6.5	0	
3203002020	커미즈	6.5	0	
3203002030	세피아	6.5	0	
3203002090	기타	6.5	0	
3203003000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를 기제로 한 조제품	6.5	0	
3204111000	분산성 염료 중간체(프레스케익에 한한다)	4	0	
3204119000	기타	8	0	
3204121000	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22000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30000	염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40000	직접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50000	건염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60000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70000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91000	유기용제 용해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92000	래피드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93000	황화염료와 황화 건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8	0	
3204199000	기타	8	0	
3204200000	합성유기형광증백제	6.5	0	
3204901000	합성유기루미노퍼	6.5	0	
3204909000	기타	6.5	0	
3205001000	플라스틱 안료색소	6.5	0	
3205009000	기타	6.5	0	
3206110000	건조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0 퍼센트 이상인 것	6.5	0	
3206190000	기타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206200000	크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6.5	0	
3206411000	군청	6.5	0	
3206419000	기타	6.5	0	
3206421000	리도폰	6.5	0	
3206429000	기타	6.5	0	
3206491000	아연회	6.5	0	
3206492000	광물성블랙	6.5	0	
3206493000	어드칼러	6.5	0	
3206494000	용해성 반다이케브라운	6.5	0	
3206495000	코발트 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6.5	0	
3206496000	카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	6.5	0	
3206499000	기타	6.5	0	
3206500000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무기물	6.5	0	
3207100000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그림물감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3207201000	법랑과 유약	6.5	0	
3207202000	슬립	6.5	0	
3207209000	기타	6.5	0	
3207301000	금의 것	6.5	0	
3207302000	백금의 것	6.5	0	
3207303000	팔라듐의 것	6.5	0	
3207304000	은의 것	6.5	0	
3207309000	기타	6.5	0	
3207400000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 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6.5	0	
3208101010	에나멜	6.5	0	
3208101090	기타	6.5	0	
320810200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810300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6.5	0	
3208201011	에나멜	6.5	0	
3208201019	기타	6.5	0	
32082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8201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208202011	에나멜	6.5	0	
3208202019	기타	6.5	0	
3208202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8202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6.5	0	
3208901011	에나멜	6.5	0	
3208901019	기타	6.5	0	
32089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8901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6.5	0	
3208909011	에나멜	6.5	0	
3208909019	기타	6.5	0	
3208909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8909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6.5	0	
3209101011	에나멜	6.5	0	
3209101019	기타	6.5	0	
32091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9102010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6.5	0	
3209102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9901011	에나멜	6.5	0	
3209901019	기타	6.5	0	
32099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9909011	에나멜	6.5	0	
3209909019	기타	6.5	0	
3209909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10001011	에나멜	6.5	0	
3210001019	기타	6.5	0	
3210001091	에나멜	6.5	0	
3210001099	기타	6.5	0	
3210002010	오일 바니시	6.5	0	
3210002020	락, 천연검 또는 천연수지를 기제로 한 바니시와 래커	6.5	0	
3210002030	역청질, 피치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제로 한 바니시	6.5	0	
3210002040	용제를 함유하지 아니한 액상 바니시	6.5	0	
3210003010	디스토퍼	6.5	0	
3210003090	기타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211000000	조제드라이어	6.5	0	
3212100000	스탬프용의 박	6.5	0	
3212901000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6.5	0	
3212909000	기타	6.5	0	
3213101000	유성 회구류	6.5	0	
3213102000	수성 회구류	6.5	0	
3213109000	기타	6.5	0	
3213901000	유성 회구류	6.5	0	
3213902000	수성 회구류	6.5	0	
3213909000	기타	6.5	0	
3214101060	고무를 기제로 한 것	6.5	0	
3214101080	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6.5	0	
3214101090	기타	6.5	0	
3214102000	도장용 충전제	6.5	0	
3214109000	기타	6.5	0	
3214900000	기타	6.5	0	
3215110000	흑색의 것	6.5	0	
3215190000	기타	6.5	0	
3215901000	필기용 잉크	6.5	0	
3215902000	제도용 잉크	6.5	0	
3215903000	복사용 잉크	6.5	0	
3215904010	유성의 것	6.5	0	
3215904020	수성의 것	6.5	0	
3215904030	유성 및 수성 겸용의 것	6.5	0	
3215905000	금속성 잉크	6.5	0	
3215906010	유성의 것	6.5	0	
3215906020	수성의 것	6.5	0	
3215906030	유성 및 수성 겸용의 것	6.5	0	
3215909000	기타	6.5	0	
3301120000	오렌지유	5	3	
3301130000	레몬유	5	3	
3301190000	기타	5	3	
33012400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	5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301250000	기타 민트류의 것	5	3	
3301291000	바닐라유	5	3	
3301292000	시트로넬라유	5	3	
3301293000	신나몬바크유	5	3	
3301294000	신나몬리프유	5	3	
3301299000	기타	5	3	
3301300000	레지노이드	8	5	
3301901000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8	5	
3301902000	정유의 농축물	8	5	
3301903000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8	5	
3301904100	아편의 것	8	5	
3301904200	감초의 것	8	5	
3301904300	호프의 것	30	10	
3301904400	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뿌리의 것	8	5	
3301904510	백삼의 것	20	16	
3301904520	홍삼의 것	754.3	E	
3301904530	기타의 인삼의 것	20	16	
3301904600	캐슈넛 쉼액의 것	8	5	
3301904700	생칠의 것	8	5	
3301904800	기타	8	5	
3302101000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6.5	0	
3302102011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30	0	
3302102019	기타	8	0	
3302102090	기타	6.5	0	
3302900000	기타	6.5	0	
3303001000	향수	6.5	0	
3303002000	화장수	6.5	0	
3304101000	립스틱	6.5	0	
3304109000	기타	6.5	0	
3304201000	아이샤도우	6.5	0	
3304209000	기타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304301000	네일에나멜	6.5	0	
3304309000	기타	6.5	0	
3304911000	페이스파우다	6.5	0	
3304912000	베이비파우다(탈쿰파우다를 포함한다)	6.5	0	
3304919000	기타	6.5	0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6.5	0	
330499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6.5	0	
3304993000	어린이용 제품류	6.5	0	
3304999000	기타	6.5	0	
3305100000	삼푸	6.5	0	
3305200000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6.5	0	
3305300000	헤어래커	6.5	0	
3305901000	헤어린스	6.5	0	
3305902000	헤어크림	6.5	0	
3305909000	기타	6.5	0	
3306100000	치약	6.5	0	
3306201011	70 텍시텍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8	0	
3306201019	기타	8	0	
3306201020	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를 초과하는 것	8	0	
3306209000	기타	8	0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6.5	0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6.5	0	
3307101000	아프터 세이빙로손	6.5	0	
3307109000	기타	6.5	0	
3307200000	인체탈취제 및 내발한제	6.5	0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6.5	0	
3307302000	기타 목욕용 제품류	6.5	0	
3307410000	“아가바티”와 기타 분향(焚香)	6.5	0	
3307490000	기타	6.5	0	
3307901000	탈모제	6.5	0	
3307902000	향낭	6.5	0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 또는 의안의 액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307909000	기타	6.5	0	
3401111000	약용비누	6.5	0	
3401119000	기타	6.5	0	
3401191010	세탁비누	6.5	0	
3401191090	기타	6.5	0	
3401192000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 워딩, 펄트와 부직포	6.5	0	
3401200000	기타 형상의 비누	6.5	0	
3401300000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5	0	
3402110000	음이온성의 것	8	0	
3402120000	양이온성의 것	8	0	
340213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3402139000	기타	8	0	
3402190000	기타	8	0	
3402201000	조제세제	6.5	0	
3402202000	조제청정제	6.5	0	
3402209000	기타	6.5	0	
3402901000	조제계면활성제	6.5	0	
3402902000	조제세제	6.5	0	
3402903000	조제청정제	6.5	0	
34031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112000	가죽 또는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119000	기타	6.5	0	
3403191000	조제절삭유	6.5	0	
3403192000	볼트 또는 너트 방출제	6.5	0	
3403193000	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6.5	0	
3403194000	이형조제품	6.5	0	
3403195000	신선용 조제유탈제	6.5	0	
3403199000	기타	6.5	0	
34039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403912000	가죽 또는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919000	기타	6.5	0	
3403991000	조제절삭유	6.5	0	
3403992000	신선용 조제윤활유	6.5	0	
3403999000	기타	6.5	0	
3404200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6.5	0	
3404901010	클로로 파라핀왁스	6.5	0	
3404901020	오팔왁스	6.5	0	
3404901030	폴리알킬렌왁스	6.5	0	
3404901040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6.5	0	
3404901090	기타	6.5	0	
3404902000	조제왁스	6.5	0	
3405100000	신발 또는 가죽용의 광택제,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3405200000	목제가구, 마루 또는 기타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3405300000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6.5	0	
3405400000	조제연마페이스트와 조제연마분 및 기타 연마조제품	6.5	0	
3405901010	초크를 기제로 한 것	6.5	0	
3405901020	규조토를 기제로 한 것	6.5	0	
3405901030	다이아몬드분 또는 더스트를 기제로 한 것	6.5	0	
3405901090	기타	6.5	0	
3405909000	기타	6.5	0	
3406000000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407001000	조형용 페이스트	6.5	0	
3407002000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6.5	0	
3407003000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6.5	0	
3501101000	커피 크림 제조용의 것	8	10	
3501109000	기타	20	10	
3501901110	커피 크림 제조용의 것	8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501901190	기타	20	10	
3501901200	기타 카세인 유도체	20	10	
3501902000	카세인 글루	20	10	
3502110000	건조한 것	8	10	
3502190000	기타	8	10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8	10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8	5	
3502909000	기타	8	5	
3503001010	젤라틴	8	5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8	5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	8	5	
3503003000	기타 동물성 글루	8	5	
3504001010	펩톤	8	5	
3504001020	펩톤 유도체	8	5	
3504002010	케라틴	8	5	
3504002020	핵산단백질	8	5	
3504002030	유리단백질	8	5	
3504002090	기타	8	5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	8	5	
3505101000	덱스트린	8	5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8	5	
3505103000	배소전분	385.7	16	
3505104010	식품용의 것	385.7	16	
3505104090	기타	385.7	16	
3505105010	식품용의 것	385.7	16	
3505105090	기타	385.7	16	
3505109010	식품용의 것	385.7	16	
3505109090	기타	385.7	16	
3505201000	전분 글루	201.2	16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201.2	16	
3505209000	기타	201.2	16	
3506101000	고무를 기제로 한 것	6.5	0	
3506102000	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제로 한 것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506109000	기타	6.5	0	
3506910000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접착제	6.5	0	
3506991000	비엔나 글루	6.5	0	
3506992000	화학처리한 천연검에서 얻은 글루	6.5	0	
3506993000	규산염을 기제로 한 글루	6.5	0	
3506999000	기타	6.5	0	
3507100000	레네트와 이들의 농축물	6.5	0	
3507901010	트립신	6.5	0	
3507901020	키모트립신	6.5	0	
3507901030	알파아밀라제	6.5	0	
3507901040	리파제	6.5	0	
3507901090	기타	6.5	0	
3507902000	펍신	6.5	0	
3507903000	맥아효소	6.5	0	
3507904010	파파인	6.5	0	
3507904020	브로멜라인	6.5	0	
3507904030	피신	6.5	0	
3507906010	아밀라제	6.5	0	
3507906020	프로테아제	6.5	0	
3507907000	펙틱효소	6.5	0	
3507908000	시토크롬 씨 산화효소	6.5	0	
3507909000	기타	6.5	0	
3601001000	흑색화약	6.5	0	
3601002000	무연화약	6.5	0	
360200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6.5	0	
3603001000	도화선	6.5	0	
3603002000	도폭선	6.5	0	
3603003000	뇌관	6.5	0	
3603004000	점화기	6.5	0	
3603005000	전기뇌관	6.5	0	
3604100000	불꽃제품	6.5	0	
3604901000	신호용 조명탄	6.5	0	
3604909000	기타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605001000	황린성냥	6.5	0	
3605009000	기타	6.5	0	
3606100000	꼭연용ライター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의 충전 또는 재충전에 사용되는 종류의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6.5	0	
3606901010	메탄연료	6.5	0	
3606901020	핵사민	6.5	0	
3606901030	고체알코올	6.5	0	
3606901090	기타	6.5	0	
3606902010	라이터돌	6.5	0	
3606902090	기타	6.5	0	
3606909010	라이터돌	6.5	0	
3606909090	기타	6.5	0	
370110000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1200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0	
37013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7013091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13092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1309910	천문용의 것	6.5	0	
37013099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1309991	평판디스플레이(블랭크마스크에 한한다)용의 것	3	0	
3701309999	기타	6.5	0	
37019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7019191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19192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1919910	천문용의 것	6.5	0	
37019199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1919990	기타	6.5	0	
37019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7019991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19992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1999910	천문용의 것	6.5	0	
37019999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1999990	기타	6.5	0	
370210000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2311110	네가티브	6.5	0	
3702311120	포지티브	6.5	0	
3702311210	네가티브	6.5	0	
3702311220	포지티브	6.5	0	
3702311910	네가티브	6.5	0	
3702311920	포지티브	6.5	0	
370231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31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31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31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319090	기타	6.5	0	
3702321110	네가티브	6.5	0	
3702321120	포지티브	6.5	0	
3702321210	네가티브	6.5	0	
3702321220	포지티브	6.5	0	
3702321910	네가티브	6.5	0	
3702321920	포지티브	6.5	0	
370232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32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32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32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32903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0	
3702329090	기타	6.5	0	
3702391110	네가티브	6.5	0	
3702391120	포지티브	6.5	0	
3702391210	네가티브	6.5	0	
3702391220	포지티브	6.5	0	
3702391910	네가티브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702391920	포지티브	6.5	0	
370239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39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39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39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399090	기타	6.5	0	
3702411010	네가티브	6.5	0	
3702411020	포지티브	6.5	0	
370241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41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41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41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419090	기타	6.5	0	
3702421010	네가티브	6.5	0	
3702421020	포지티브	6.5	0	
370242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42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42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42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429090	기타	6.5	0	
3702431010	네가티브	6.5	0	
3702431020	포지티브	6.5	0	
370243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43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43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43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439090	기타	6.5	0	
3702441010	네가티브	6.5	0	
3702441020	포지티브	6.5	0	
370244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44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44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44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449090	기타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702511010	네가티브	6.5	0	
3702511020	포지티브	6.5	0	
370251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51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51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51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519090	기타	6.5	0	
3702521010	네가티브	6.5	0	
3702521020	포지티브	6.5	0	
370252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52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52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52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529090	기타	6.5	0	
3702530000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에 한한다)	6.5	0	
3702541010	네가티브	6.5	0	
3702541020	포지티브	6.5	0	
370254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54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54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54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549090	기타	6.5	0	
3702551010	네가티브	6.5	0	
3702551020	포지티브	6.5	0	
370255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55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55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55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559090	기타	6.5	0	
3702561010	네가티브	6.5	0	
3702561020	포지티브	6.5	0	
370256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70256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56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56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569090	기타	6.5	0	
3702911010	네가티브	6.5	0	
3702911020	포지티브	6.5	0	
370291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91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91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91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919090	기타	6.5	0	
3702931010	네가티브	6.5	0	
3702931020	포지티브	6.5	0	
370293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93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93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93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939090	기타	6.5	0	
3702941010	네가티브	6.5	0	
3702941020	포지티브	6.5	0	
370294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94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94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94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949090	기타	6.5	0	
3702951010	네가티브	6.5	0	
3702951020	포지티브	6.5	0	
370295200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2953000	인쇄회로기판용의 것	6.5	0	
3702959010	광전녹음용의 것	6.5	0	
3702959020	항공촬영용의 것	6.5	0	
3702959090	기타	6.5	0	
370310101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3101020	심전계용의 것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703101030	사진복사용의 것	6.5	0	
3703101040	기록용의 것	6.5	0	
3703101090	기타	6.5	0	
370310901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3109020	심전계용의 것	6.5	0	
3703109030	사진복사용의 것	6.5	0	
3703109040	기록용의 것	6.5	0	
3703109090	기타	6.5	0	
370320100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3202000	심전계용의 것	6.5	0	
3703203000	사진복사용의 것	6.5	0	
3703204000	기록용의 것	6.5	0	
3703209000	기타	6.5	0	
370390100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3902000	심전계용의 것	6.5	0	
3703903000	사진복사용의 것	6.5	0	
3703904000	기록용의 것	6.5	0	
3703909000	기타	6.5	0	
3704001110	뉴스용의 것	0	0	
370400112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영화용 필름(대한민국 배우만 출연하는 것에 한한다)	0	0	
3704001190	기타	0	0	
3704001200	오프셋 복사용의 것(엽서, 그림엽서, 카드 및 캘린더 제작용의 것에 한한다)	0	0	
37040013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3704001900	기타	0	0	
3704002000	사진인화지, 판지 및 직물	6.5	0	
3705101000	엽서, 그림엽서, 카드 및 캘린더 제작용의 것	6.5	0	
3705109000	기타	0	0	
3705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3	0	
3705902010	엑스선 촬영한 것	0	0	
3705902020	도서를 복사한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705902030	서류를 복사한 것	0	0	
3705903000	마이크로 필름	0	0	
3705909010	학술연구용의 것	0	0	
3705909020	천문용의 것	0	0	
3705909030	항공촬영용의 것	0	0	
3705909090	기타	0	0	
3706101000	사운드트랙만의 것	6.5% 또는 195 원/m	0	
3706102000	뉴스용의 것	6.5% 또는 4 원/m	0	
3706103010	랏슈	6.5% 또는 26 원/m	0	
3706103020	기타 네가티브 합작영화	6.5% 또는 468 원/m	0	
3706103030	기타 포지티브 합작영화	6.5% 또는 78 원/m	0	
37061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영화용 필름(단순히 외국풍물만 촬영한 것 또는 대한민국 배우만 출연한 것에 한한다)과 방화	6.5% 또는 26 원/m	0	
3706105010	네가티브	6.5% 또는 1,092 원/m	0	
3706105020	포지티브	6.5% 또는 182 원/m	0	
3706106010	네가티브	6.5% 또는 1,560/m	0	
3706106020	포지티브	6.5% 또는 260 원/m	0	
3706901000	사운드트랙만의 것	6.5% 또는 9 원/m	0	
3706902000	뉴스용의 것	6.5% 또는 5 원/m	0	
3706903010	랏슈	6.5% 또는 26 원/m	0	
3706903020	기타 네가티브 합작영화	6.5% 또는 468 원/m	0	
3706903030	기타 포지티브 합작영화	6.5% 또는 78 원/m	0	
37069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영화용 필름(단순히 외국풍물만 촬영한 것 또는 대한민국 배우만 출연한 것에 한한다)과 방화	6.5% 또는 26 원/m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706905010	네가티브	6.5% 또는 25 원/m	0	
3706905020	포지티브	6.5% 또는 8 원/m	0	
3706906010	네가티브	6.5% 또는 1,092 원/m	0	
3706906020	포지티브	6.5% 또는 182 원/m	0	
3707100000	감광유제	6.5	0	
37079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707901090	기타	6.5	0	
3707902100	천연색 사진용의 것	6.5	0	
370790291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790292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7902990	기타	6.5	0	
3707903100	천연색 사진용의 것	6.5	0	
3707903910	엑스선용의 것	6.5	0	
3707903920	인쇄제판용의 것	6.5	0	
3707903990	기타	6.5	0	
3707909100	증도제와 감도제	6.5	0	
3707909200	조색제	6.5	0	
3707909300	세정제	6.5	0	
3707909400	섬광재료	6.5	0	
3707909900	기타	6.5	0	
3801101000	2 차전지 제조용의 것	4	0	
3801109000	기타	6.5	0	
3801200000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6.5	0	
3801300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및 노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6.5	0	
3801900000	기타	6.5	0	
3802100000	활성탄	6.5	0	
3802901010	활성 규조토	6.5	0	
3802901020	활성토	6.5	0	
3802901090	기타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802902000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6.5	0	
3803000000	토올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5	0	
3804001000	액상의 것	6.5	0	
3804009000	기타	6.5	0	
3805101000	검테레빈유	6.5	0	
3805102000	우드테레빈유	6.5	0	
3805103000	황산테레빈유	6.5	0	
3805900000	기타	6.5	0	
3806101000	로진	6.5	5	
3806102000	수지산	6.5	0	
3806201000	로진염	6.5	0	
3806202000	수지산염	6.5	0	
3806209000	기타	6.5	0	
3806300000	에스테르 검	6.5	0	
3806902000	런검	6.5	0	
3806903000	로진스프릿 및 로진유	6.5	0	
3806909000	기타	6.5	0	
3807001000	목타르, 목타르유 및 목크레오소트	6.5	0	
3807002000	목나프타	6.5	0	
3807003000	식물성피치	6.5	0	
3807009010	목초액	6.5	5	
3807009090	기타	6.5	0	
380850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3808509000	기타	6.5	0	
380891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3808919000	기타	6.5	0	
380892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3808929000	기타	6.5	3	
3808931000	제초제	6.5	0	
3808932000	발아억제제	6.5	0	
3808933000	식물성장조절제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808940000	소독제	6.5	3	
3808991000	살서제(취약)	6.5	0	
3808999000	기타	6.5	0	
3809100000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8	5	
3809910000	섬유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6.5	0	
3809920000	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6.5	0	
3809930000	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6.5	0	
381010100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6.5	0	
3810109000	기타	6.5	0	
3810901000	납붙임, 땀질 또는 용접용 용제와 기타 보조 조제품	6.5	0	
3810909000	기타	6.5	0	
3811110000	납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	6.5	0	
3811190000	기타	6.5	0	
3811210000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것	5	0	
3811290000	기타	5	0	
3811900000	기타	6.5	0	
3812101000	디페닐구아니딘을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2000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3000	티우람 술폜아이드를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4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을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5000	머캡토 벤조티아졸을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6000	디벤조티아질 디술폜아이드(DM)를 기제로 한 것	6.5	0	
3812109000	기타	6.5	0	
381220000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6.5	0	
3812301000	산화방지 조제품	6.5	0	
3812302000	기타 복합안정제	6.5	0	
3813001000	소화기용의 조제품	6.5	0	
3813002000	소화기용의 충전물	6.5	0	
3813003000	충전된 소화탄	6.5	0	
3814001010	아세톤·초산메틸 및 메틸알코올 혼합물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814001020	초산에틸·부틸알코올 및 톨루엔 혼합물	6.5	0	
3814001090	기타	6.5	0	
38140021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814002190	기타	6.5	0	
3814002900	기타	6.5	0	
3815110000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6.5	0	
3815121000	백금 또는 백금화합물의 것	6.5	0	
3815122000	팔라듐 또는 팔라듐화합물의 것	6.5	0	
3815129000	기타	6.5	0	
3815191000	활성물질로서 철 또는 철화합물의 것	6.5	0	
3815192000	티타늄 또는 티타늄화합물의 것	6.5	0	
3815199000	기타	6.5	0	
3815901000	반응시작제	6.5	0	
3815909000	기타	6.5	0	
3816001000	내화시멘트	6.5	0	
3816002000	내화모르타르	6.5	0	
3816003000	내화콘크리트	6.5	0	
3816009000	기타	6.5	0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2707 호 또는 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0	
3818001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0	0	
3818002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0	0	
3819001000	유압제동액	6.5	0	
3819002000	기타 조제유압전동액	6.5	0	
3820001000	부동조제품	6.5	0	
3820002000	조제제빙액	6.5	0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성장 또는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6.5	0	
382200101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822001012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0	0	
3822001013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외 웨브(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상 또는 슈트상의 것에 한한다)	0	0	
3822001014	리트머스 시험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0	
3822001019	기타	0	0	
3822001020	조제된 것(뒤편을 보강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382200109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슈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것	6.5	0	
3822001092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6.5	0	
3822001093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외 웨브(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상 또는 슈트상의 것에 한한다)	0	0	
3822001099	기타	8	0	
382200201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슈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것	0	0	
3822002012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0	0	
3822002013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외 웨브(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상 또는 슈트상의 것에 한한다)	0	0	
3822002014	리트머스 시험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0	
3822002019	기타	0	0	
3822002020	조제된 것(뒤편을 보강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3822002091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슈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의 것	6.5	0	
3822002092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6.5	0	
3822002093	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외 웨브(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상 또는 슈트상의 것에 한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822002099	기타	8	5	
3822003041	이 표에서 세율이 무세인 것	0	0	
3822003042	이 표에서 세율이 1 퍼센트인 것	1	0	
3822003043	이 표에서 세율이 2 퍼센트인 것	2	0	
3822003044	이 표에서 세율이 3 퍼센트인 것	3	0	
3822003045	이 표에서 세율이 4 퍼센트인 것	4	0	
3822003046	이 표에서 세율이 5 퍼센트인 것	5	0	
3822003047	이 표에서 세율이 5.4 퍼센트인 것	5.4	0	
3822003048	이 표에서 세율이 6.5 퍼센트인 것	6.5	0	
3822003049	이 표에서 세율이 7 퍼센트인 것	7	0	
3822003050	이 표에서 세율이 8 퍼센트인 것	8	0	
3822003051	이 표에서 세율이 10 퍼센트인 것	10	0	
3822003052	이 표에서 세율이 20 퍼센트인 것	20	0	
3822003053	이 표에서 세율이 27 퍼센트인 것	27	0	
3822003054	이 표에서 세율이 30 퍼센트인 것	30	0	
3822003055	이 표에서 세율이 36 퍼센트인 것	36	0	
3822003056	이 표에서 세율이 40 퍼센트인 것	40	0	
3822003057	이 표에서 세율이 50 퍼센트인 것	50	0	
3822003058	소호 제 3706.10.1000 호, 제 3706.10.5020 호 및 제 3706.90.6020 호의 것	6.5% 또는 182 원/m	0	
3822003059	소호 제 3706.10.2000 호 및 제 3706.90.2000 호의 것	6.5% 또는 4 원/m	0	
3822003060	소호 제 3706.10.3010 호, 제 3706.10.4000 호, 제 3706.90.3010 호 및 제 3706.90.4000 호의 것	6.5% 또는 26 원/m	0	
3822003061	소호 제 3706.10.3020 호 및 제 3706.90.3020 호의 것	6.5% 또는 468 원/m	0	
3822003062	소호 제 3706.10.3030 호 및 제 3706.90.3030 호의 것	6.5% 또는 78 원/m	0	
3822003063	소호 제 3706.10.5010 호 및 제 3706.90.6010 호의 것	6.5% 또는 1,092 원/m	0	
3822003064	소호 제 3706.10.6010 호의 것	6.5% 또는 1,560 원/m	0	
3822003065	소호 제 3706.10.6020 호의 것	6.5% 또는 260 원/m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822003066	소호 제 3706.90.1000 호 및 제 3706.90.5020 호의 것	6.5% 또는 8 원/m	0	
3822003067	소호 제 3706.90.5010 호의 것	6.5% 또는 25 원/m	0	
3823110000	스테아린산	8	0	
3823120000	올레인산	8	0	
3823130000	튤유 지방산	8	0	
3823191000	팔미틴산	8	0	
3823192000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8	0	
3823199000	기타	8	0	
3823701000	세틸 알코올	5	0	
3823702000	스테아릴 알코올	5	0	
3823703000	올레일 알코올	5	0	
3823704000	라우릴 알코올	5	0	
382370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3823709090	기타	5	0	
3824100000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6.5	0	
3824300000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6.5	0	
3824400000	시멘트용, 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6.5	0	
3824500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5	0	
3824600000	솔비톨(소호 제 2905.44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8	5	
3824711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을 기제로 한 세정제	6.5	0	
3824719000	기타	6.5	0	
382472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30000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8247400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함유 여부는 불문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5	0	
38247500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5	0	
38247600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70000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4780000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 [염화불화탄소(CFCs) 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5	0	
3824790000	기타	6.5	0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5	0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6.5	0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5	0	
3824901000	크롬광 배소물	5	0	
3824902100	진공관의 겿타	6.5	0	
3824902200	탄소저항 또는 세라믹솔리드 저항조제품	6.5	0	
38249024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3824902490	기타	6.5	0	
38249031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8249032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3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그들의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40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5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그들의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6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7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8249038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 또는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911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 또는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 또는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919	기타	6.5	0	
382490392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티올 또는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930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그룹 이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인원자를 함유하는 화합물로 주로 구성된 기타 혼합물	6.5	0	
3824903990	기타	6.5	0	
3824904100	혼합폴리에틸렌글리콜	6.5	0	
3824904200	이온교환체	6.5	0	
3824904300	스케일방지제	6.5	0	
3824904400	바니시 또는 글루의 경화제	6.5	0	
3824905100	잉크제거제	6.5	0	
3824905200	등사판 원지수정제	6.5	0	
3824905300	수정액	6.5	0	
3824906100	페인트용 혼합증량제	6.5	0	
3824906200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	6.5	0	
3824906300	소다석회	6.5	0	
3824906400	수화실리카겔	6.5	0	
3824906500	방청제	6.5	0	
3824906600	세라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6.5	0	
3824907100	도금용 조제품	6.5	0	
3824907200	염화파라핀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824907300	소포제	6.5	0	
3824907400	발포제	6.5	0	
3824907500	조제탄산칼슘	6.5	0	
3824907600	액정용 조제품	6.5	0	
3824907700	암모니아성 가스액	6.5	0	
3824908010	메틸에틸케톤 퍼옥사이드를 기제로 한 것	6.5	0	
3824908090	기타	6.5	0	
3824909010	미량요소비료(제 31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0	
3824909020	폴리디페닐 메탄 폴리디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6.5	0	
3824909030	추잉검 베이스	6.5	0	
3824909050	나프텐산, 그들의 수불용성염과 그들의 에스테르	6.5	0	
3824909090	기타	6.5	0	
3825100000	생활폐기물	6.5	0	
3825200000	하수 찌꺼기	6.5	0	
3825301000	제 3005 호의 것	0	0	
3825302000	소호 제 3824.90 호의 것	6.5	0	
3825303000	소호 제 4015.11 호의 것	8	0	
3825304000	소호 제 9018.3 호의 것	8	0	
38254100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6.5	0	
3825490000	기타	6.5	0	
382550000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6.5	0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5690000	기타	6.5	0	
3825900000	기타	6.5	0	
3901101000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6.5	0	
3901109000	기타	6.5	0	
3901201000	펄프의 것	6.5	0	
3901209000	기타	6.5	0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6.5	0	
3901900000	기타	6.5	0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902200000	폴리이소부틸렌	6.5	0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6.5	0	
3902900000	기타	6.5	0	
3903110000	발포성의 것	6.5	0	
3903190000	기타	6.5	0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	6.5	0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	6.5	0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6.5	0	
3903909000	기타	6.5	0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5	0	
3904210000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6.5	0	
3904220000	가소화한 것	6.5	0	
390430000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6.5	0	
3904400000	기타 염화비닐 공중합체	6.5	0	
3904500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6.5	0	
390461000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6.5	0	
3904690000	기타	6.5	0	
3904900000	기타	6.5	0	
3905120000	물에 분산된 것	6.5	0	
3905190000	기타	6.5	0	
3905210000	물에 분산된 것	6.5	0	
3905290000	기타	6.5	0	
390530000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8	0	
3905910000	공중합체	6.5	0	
3905990000	기타	6.5	0	
3906100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6.5	0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8	0	
3906909000	기타	8	0	
3907100000	폴리아세탈수지	6.5	0	
3907201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6.5	0	
390720200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907203000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6.5	0	
3907209000	기타	6.5	0	
39073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907309000	기타	6.5	0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6.5	0	
3907500000	알키드수지	6.5	0	
3907600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0	
3907700000	폴리(락트산)	6.5	0	
3907910000	불포화의 것	6.5	0	
3907991000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0	
3907999000	기타	6.5	0	
3908101000	폴리아미드-6	6.5	0	
3908102000	폴리아미드-6,6	6.5	0	
3908103000	폴리아미드-11, -12, -6,9, -6,10, - 6,12	6.5	0	
3908900000	기타	6.5	0	
3909101000	요소수지	6.5	0	
3909102000	티오요소수지	6.5	0	
3909200000	멜라민수지	6.5	0	
3909300000	기타 아미노수지	6.5	0	
3909400000	페놀수지	6.5	0	
3909500000	폴리우레탄	6.5	0	
39100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6.5	0	
3910009010	실리콘오일	6.5	0	
3910009020	실리콘고무	6.5	0	
3910009090	기타	6.5	0	
3911101000	석유수지	8	0	
3911102000	쿠마론, 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8	0	
3911103000	폴리테르펜	8	0	
3911901000	폴리숄파이드	6.5	0	
3911902000	폴리숄폰	6.5	0	
3911903000	푸란수지	6.5	0	
3911909000	기타	6.5	0	
3912110000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5	0	
3912120000	가소화한 것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912200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6.5	0	
39123110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6.5	0	
3912319000	기타	6.5	0	
3912391000	메틸셀룰로오스	6.5	0	
3912399000	기타	6.5	0	
3912901000	재생셀룰로오스	6.5	0	
3912909000	기타	6.5	0	
3913101000	알긴산 나트륨	6.5	0	
3913102000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	6.5	0	
3913109000	기타	6.5	0	
3913901000	경화단백질	6.5	0	
3913902010	염화고무	6.5	0	
3913902020	염산고무	6.5	0	
3913902030	산화고무	6.5	0	
3913902040	환화고무	6.5	0	
3913902090	기타	6.5	0	
3913909010	덱스트란	6.5	0	
3913909090	기타	6.5	0	
3914001000	양이온성의 것	6.5	0	
3914009000	기타	6.5	0	
3915101000	제조당시 필름, 쉬트, 판 및 박 상태의 것	6.5	0	
3915102000	제조당시 파이프 및 호스 상태의 것	6.5	0	
3915109000	기타	6.5	0	
3915200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53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5901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5902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6.5	0	
3915903000	폴리아세탈수지의 것	6.5	0	
391590400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0	
391590500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15909000	기타	6.5	0	
3916100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62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6901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916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690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6.5	0	
391690400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16909000	기타	6.5	0	
3917101000	경화 단백질의 것	6.5	0	
3917102000	셀룰로오스 물질의 것	6.5	0	
3917210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22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23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291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29200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17299000	기타	6.5	0	
391731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1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19000	기타	6.5	0	
391732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2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29000	기타	6.5	0	
391733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3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39000	기타	6.5	0	
391739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9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17399000	기타	6.5	0	
3917400000	연결구류	6.5	0	
3918101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6.5	0	
3918102000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의 것	6.5	0	
3918109000	기타	6.5	0	
3918900000	기타 플라스틱의 것	6.5	0	
3919100000	롤상의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6.5	0	
3919900000	기타	6.5	0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920300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0430000	가소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이상인 것	6.5	0	
3920490000	기타	6.5	0	
392051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의 것	6.5	0	
3920590000	기타	6.5	0	
392061000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0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6.5	0	
39206300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3920690000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392071000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079100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0	
3920799000	기타	6.5	0	
3920910000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6.5	0	
392092000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20930000	아미노수지의 것	6.5	0	
3920940000	페놀수지의 것	6.5	0	
3920991000	항공기용의 것	6.5	0	
3920999010	폴리이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에 한한다)	4	0	
3920999090	기타	6.5	0	
3921110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112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6.5	0	
3921130000	폴리우레탄의 것	6.5	0	
392114000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1191010	격리막(2 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4	0	
3921191090	기타	6.5	0	
3921192010	격리막(2 차전지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4	0	
3921192090	기타	6.5	0	
392119301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의 것	6.5	0	
3921193090	기타	6.5	0	
392119401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0	
392119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92119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3921194090	기타	6.5	0	
392119501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0	
392119502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1195090	기타	6.5	0	
3921199010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6.5	0	
392119902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21199030	아미노수지의 것	6.5	0	
3921199040	페놀수지의 것	6.5	0	
3921199090	기타	6.5	0	
392190100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1903000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6.5	0	
3921904010	경질의 것	6.5	0	
3921904020	연질의 것	6.5	0	
392190501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의 것	6.5	0	
3921905090	기타	6.5	0	
3921906010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6.5	0	
392190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것	6.5	0	
392190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6.5	0	
3921906090	기타	6.5	0	
392190701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190702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0	
392190703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6.5	0	
3921907090	기타	6.5	0	
3921909010	폴리비닐 부티랄의 것	6.5	0	
3921909020	폴리아미드의 것	6.5	0	
3921909030	아미노수지의 것	6.5	0	
3921909040	페놀수지의 것	6.5	0	
3921909050	폴리우레탄의 것	6.5	0	
3921909090	기타	6.5	0	
3922101000	목욕통과 샤워통	6.5	0	
3922102000	세면대	6.5	0	
3922103000	설거지통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922200000	변기용 시트와 커버	6.5	0	
3922901000	비데	6.5	0	
3922909000	기타	6.5	0	
3923100000	상자, 케이스, 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의 것	6.5	0	
3923290000	기타 플라스틱의 것	6.5	0	
3923300000	카보이병, 병, 플라스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923400000	스플, 콧, 보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923500000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923900000	기타	6.5	0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6.5	0	
3924901000	비누접시와 통	6.5	0	
3924902000	탁상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5	0	
3924909000	기타	6.5	0	
3925100000	저장기, 탱크, 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6.5	0	
3925200000	문, 창과 그들의 틀 및 문지방	6.5	0	
3925300000	셔터,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들의 부분품	6.5	0	
3925900000	기타	6.5	0	
3926101000	필통 및 지우개	6.5	0	
3926102000	바인더 및 앨범	6.5	0	
3926109000	기타	6.5	0	
3926200000	의류 및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6.5	0	
3926300000	가구, 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6.5	0	
3926400000	소상 및 기타 장식용품	6.5	0	
3926901000	기계용의 부분품	6.5	0	
3926902000	부채 및 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과 그들의 살 및 자루(살 및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3926903000	레이블 및 태그	6.5	0	
392690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6.5	0	
3926905000	그림틀, 사진틀, 거울틀 및 이와 유사한 틀	6.5	0	
3926909000	기타	6.5	0	
4001100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4001211000	알 · 에스 · 에스 1 엑스	0	0	
4001212000	알 · 에스 · 에스 1 호	0	0	
4001213000	알 · 에스 · 에스 2 호	0	0	
4001214000	알 · 에스 · 에스 3 호	0	0	
4001215000	알 · 에스 · 에스 4 호	0	0	
4001216000	알 · 에스 · 에스 5 호	0	0	
40012200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	0	
4001290000	기타	0	0	
4001301000	치클검	2	0	
4001309000	기타	2	0	
4002110000	라텍스	8	0	
4002190000	기타	8	0	
4002201000	라텍스	8	0	
4002209000	기타	8	0	
4002311000	라텍스	5	0	
4002319000	기타	5	0	
4002391000	라텍스	5	0	
4002399010	염화부틸고무(CIIR)의 것	5	0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5	0	
4002410000	라텍스	8	0	
4002490000	기타	8	0	
4002510000	라텍스	8	0	
4002590000	기타	8	0	
4002601000	라텍스	8	0	
4002609000	기타	8	0	
4002701000	라텍스	8	0	
400270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002801000	라텍스	8	0	
4002809000	기타	8	0	
4002910000	라텍스	8	0	
4002991000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무(XNBR)의 것	8	0	
4002992000	아크릴로니트릴 이소프렌고무(NIR)의 것	8	0	
4002993000	티오플라스트(TM)	8	0	
4002999000	기타	8	0	
4003000000	재생고무(일차제품 또는 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8	0	
4004000000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경질고무의 것은 제외한다)과 그들의 분 및 입	3	0	
4005101000	판, 쉬트 및 스트립	8	0	
4005109000	기타	8	0	
4005200000	용액,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8	0	
4005910000	판, 쉬트 및 스트립	8	0	
4005991000	배합고무 라텍스	8	0	
4005999000	기타	8	0	
4006100000	고무타이어 재생용의 "캐멀-백" 스트립	8	0	
4006901000	고무봉	8	0	
4006902000	고무관	8	0	
4006903000	고무형재	8	0	
4006904000	고무디스크, 링 및 와셔	8	0	
4006905000	고무사	8	0	
4006909000	기타	8	0	
4007001000	고무사	8	0	
4007002000	고무끈	8	0	
400811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119000	기타	8	0	
400819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199000	기타	8	0	
400821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것			
4008219000	기타	8	0	
400829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299000	기타	8	0	
40091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8	0	
40091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2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8	0	
40092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3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8	0	
40093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4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8	0	
40094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101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8	0	
40101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8	0	
4010191000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8	0	
4010199000	기타	8	0	
401031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홀이 패인 것에 한한다)	8	0	
401032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홀이 패인 것은 제외한다)	8	0	
401033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홀이 패인 것에 한한다)	8	0	
401034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홀이 패인 것은 제외한다)	8	0	
401035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01036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 초과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0390000	기타	8	0	
4011101000	래디알 구조의 것	8	0	
401110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8	0	
4011109000	기타	8	0	
4011201010	림의 지름이 49.53 센티미터 미만인 것	8	0	
4011201090	기타	8	0	
4011202010	림의 지름이 49.53 센티미터 미만인 것	8	0	
4011202090	기타	8	0	
4011209000	기타	8	0	
4011300000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0	
4011400000	모터사이클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1500000	자전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1610000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162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163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4011690000	기타	8	0	
4011920000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193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1940000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4011990000	기타	8	0	
4012110000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012120000	버스 또는 화물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2130000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0	
4012190000	기타	8	0	
4012201000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0	
4012209010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2209020	버스용 또는 화물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2209090	기타	8	0	
4012901010	솔리드 타이어	5	0	
4012901020	쿠션 타이어	5	0	
4012901030	타이어 트래드	5	0	
4012901040	타이어 플랩	5	0	
4012909010	솔리드 타이어	8	0	
4012909020	쿠션 타이어	8	0	
4012909030	타이어 트래드	8	0	
4012909040	타이어 플랩	8	0	
4012909090	기타	8	0	
4013101000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3102000	버스 또는 화물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3200000	자전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3901000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0	
4013909010	모터사이클 또는 모터스쿠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3909020	산업용 차량 또는 농경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4013909090	기타	8	0	
4014100000	콘돔	8	0	
4014901000	젓꼭지	8	0	
4014909000	기타	8	0	
4015110000	외과용의 것	8	0	
4015190000	기타	8	3	
4015901000	잠수복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015902000	방사선 방호복	8	3	
4015909000	기타	8	0	
4016100000	셀룰라 고무의 것	8	0	
4016910000	바닥 깔개와 매트	8	0	
4016920000	지우개	8	0	
4016930000	개스킷, 와셔 및 기타 실	8	0	
4016940000	보트 또는 도크펜더(팽창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4016951000	공기 매트리스	8	0	
4016952000	베개	8	0	
4016953000	쿠션	8	0	
4016959000	기타	8	0	
4016991010	기구, 비행선, 비행기계류, 글라이더, 연 및 로토슈트의 부품	0	0	
4016991090	기타	8	0	
4016992000	고무밴드	8	0	
4016993000	병마개	8	0	
4016999000	기타	8	0	
4017001000	경질고무	8	0	
4017002000	경질고무의 제품	8	0	
4101201000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1	0	
4101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1501011	카우하이드	1	0	
4101501012	스티어하이드	1	0	
4101501013	옥스하이드	1	0	
4101501014	불하이드	1	0	
4101501019	기타	1	0	
4101501021	카우하이드	1	0	
4101501022	스티어하이드	1	0	
4101501023	옥스하이드	1	0	
4101501024	불하이드	1	0	
4101501029	기타	1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101501090	기타	1	0	
41015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1901011	송아지 원피의 것	1	0	
4101901019	기타	1	0	
4101901091	송아지 원피의 것	1	0	
4101901099	기타	1	0	
4101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2100000	탈모하지 아니한 것	1	0	
4102211000	유연처리하지 아니한 원피	1	0	
410221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2291000	유연처리하지 아니한 원피	1	0	
410229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3201010	뱀의 것	1	0	
4103201020	도마뱀의 것	1	0	
4103201030	악어의 것	1	0	
4103201090	기타	1	0	
4103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3301000	유연처리하지 아니한 원피	1	0	
41033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0	
4103901010	장어류의 것	1	0	
4103901020	강가루의 것	1	0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것	1	0	
4103901090	기타	1	0	
410390201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것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103902090	기타	5	0	
4104110000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5	0	
4104190000	기타	5	0	
4104410000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5	0	
4104490000	기타	5	0	
41051000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	0	
4105300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2100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	0	
4106220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3100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	0	
4106320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400000	파충류의 것	5	0	
4106910000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	0	
4106920000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7110000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5	0	
4107120000	그레인 스플릿	5	0	
4107190000	기타	5	0	
4107910000	스플릿하지 아니한 풀 그레인	5	0	
4107920000	그레인 스플릿	5	0	
4107990000	기타	5	0	
41120000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더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5	0	
4113100000	산양의 것	5	0	
4113200000	돼지의 것	5	0	
4113300000	파충류의 것	5	0	
4113900000	기타	5	0	
4114100000	새미가죽(콤비네이션 새미가죽을 포함한다)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	5	0	
4114202000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5	0	
4114203000	메탈라이즈드 레더	5	0	
4115100000	컴퍼지션 레더(가죽 또는 가죽성유를 기제로 한 것으로서 슬래브상, 슈트상 또는 스트립상인 것에 한하며, 롤상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4115200000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죽의 더스트와 분	3	0	
4201001000	파충류제의 것	8	0	
4201009010	안장 및 안장용 방석	8	0	
4201009020	고삐줄	8	0	
4201009030	끈	8	0	
4201009040	재갈	8	0	
4201009090	기타	8	0	
4202111010	뱀의 것	8	0	
4202111020	도마뱀의 것	8	0	
4202111030	악어의 것	8	0	
4202111040	장어류의 것	8	0	
4202111050	강가루의 것	8	0	
4202111090	기타	8	0	
4202112000	컴퍼지션 레더제의 것	8	0	
4202113000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	8	0	
4202121010	폴리염화비닐의 것	8	0	
4202121020	폴리우레탄의 것	8	0	
4202121090	기타	8	0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0	
4202191000	판지제의 것	8	0	
4202199000	기타	8	0	
4202211010	뱀의 것	8	0	
4202211020	도마뱀의 것	8	0	
4202211030	악어의 것	8	0	
4202211040	장어류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202211050	강가루의 것	8	0	
4202211090	기타	8	0	
4202212000	컴퍼지션 레더제의 것	8	0	
4202213000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	8	0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의 것	8	0	
4202221020	폴리우레탄의 것	8	0	
4202221090	기타	8	0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0	
4202291000	판지제의 것	8	0	
4202299000	기타	8	0	
4202311010	뱀의 것	8	0	
4202311020	도마뱀의 것	8	0	
4202311030	악어의 것	8	0	
4202311040	장어류의 것	8	0	
4202311050	강가루의 것	8	0	
4202311090	기타	8	0	
4202312000	컴퍼지션 레더제의 것	8	0	
4202313000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	8	0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의 것	8	0	
4202321020	폴리우레탄의 것	8	0	
4202321090	기타	8	0	
42023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0	
4202391000	판지제의 것	8	0	
4202399000	기타	8	0	
4202911010	뱀의 것	8	0	
4202911020	도마뱀의 것	8	0	
4202911030	악어의 것	8	0	
4202911040	장어류의 것	8	0	
4202911050	강가루의 것	8	0	
4202911090	기타	8	0	
4202912000	컴퍼지션 레더제의 것	8	0	
4202913000	페이턴트 레더제의 것	8	0	
4202921010	폴리염화비닐의 것	8	0	
4202921020	폴리우레탄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202921090	기타	8	0	
4202922000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	8	0	
4202991000	판지제의 것	8	0	
4202999000	기타	8	0	
4203101010	코트류	13	0	
4203101020	재킷, 블레이저 및 잠바류	13	0	
4203101050	조끼류	13	0	
4203101060	바지류	13	0	
4203101070	스커트류	13	0	
4203101080	오버롤류	13	0	
4203101090	기타	13	0	
4203102010	코트류	13	0	
4203102020	재킷, 블레이저 및 잠바류	13	0	
4203102050	조끼류	13	0	
4203102060	바지류	13	0	
4203102070	스커트류	13	0	
4203102080	오버롤류	13	0	
4203102090	기타	13	0	
4203103010	코트류	13	0	
4203103020	재킷, 블레이저 및 잠바류	13	0	
4203103050	조끼류	13	0	
4203103060	바지류	13	0	
4203103070	스커트류	13	0	
4203103080	오버롤류	13	0	
4203103090	기타	13	0	
4203109010	코트류	13	0	
4203109020	재킷, 블레이저 및 잠바류	13	0	
4203109050	조끼류	13	0	
4203109060	바지류	13	0	
4203109070	스커트류	13	0	
4203109080	오버롤류	13	0	
4203109090	기타	13	0	
4203211000	야구장갑	13	0	
4203212000	골프장갑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203213000	스키장갑	13	0	
4203214000	모터싸이클장갑	13	0	
4203215000	배팅장갑	13	0	
4203216000	테니스장갑	13	0	
4203217000	아이스하키장갑	13	0	
4203219000	기타	13	0	
4203291000	작업용 장갑	13	0	
4203292000	방한용 장갑	13	0	
4203293000	운전용 장갑	13	0	
4203299000	기타	13	0	
4203301010	뱀의 것	13	0	
4203301020	도마뱀의 것	13	0	
4203301030	악어의 것	13	0	
4203301040	장어류의 것	13	0	
4203301090	기타	13	0	
4203309000	기타	13	0	
4203400000	기타의 의류부속품	13	0	
4205001110	벨트	8	0	
4205001190	기타	8	0	
4205001900	기타의 가죽제품	8	0	
4205002110	벨트	8	0	
4205002190	기타	8	0	
4205002900	기타의 컴퓨터시선 리더제품	8	0	
4206001000	캣거트	8	0	
4206009000	기타	8	0	
4301100000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3	0	
4301300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 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3	0	
4301801000	친칠라의 것	3	0	
4301802000	오파섬의 것	3	0	
4301803000	라쿤의 것	3	0	
4301804000	코요테의 것	3	0	
4301805000	토끼의 것	3	0	
4301806000	사향뒤쥐의 것	3	0	
4301809000	기타	3	0	
4301900000	머리부분, 꼬리부분, 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3	0	
4302110000	밍크의 것	5	0	
4302191000	해리의 것	5	0	
4302192000	사향뒤쥐의 것	5	0	
4302193000	여우의 것	5	0	
4302195000	친칠라의 것	5	0	
4302196000	오파섬의 것	5	0	
4302197000	라쿤의 것	5	0	
4302198000	코요테의 것	5	0	
4302199010	면양의 것	5	0	
430219902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 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에 한한다)	5	0	
4302199090	기타	5	0	
4302201000	밍크의 것	5	0	
4302202000	토끼의 것	5	0	
4302203000	해리의 것	5	0	
4302204000	사향뒤쥐의 것	5	0	
4302205000	여우의 것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302207000	친칠라의 것	5	0	
4302209010	오파섬의 것	5	0	
4302209020	라쿤의 것	5	0	
4302209030	코요테의 것	5	0	
4302209090	기타	5	0	
430230000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5	0	
4303101100	밍크의 것	16	0	
4303101200	토끼의 것	16	0	
4303101300	어린 양의 것	16	0	
4303101400	해리의 것	16	0	
4303101500	사향뒤쥐의 것	16	0	
4303101600	여우의 것	16	0	
4303101800	친칠라의 것	16	0	
4303101910	오파섬의 것	16	0	
4303101920	라쿤의 것	16	0	
4303101930	코요테의 것	16	0	
4303101990	기타	16	0	
4303102100	밍크의 것	16	0	
4303102200	토끼의 것	16	0	
4303102300	어린 양의 것	16	0	
4303102400	해리의 것	16	0	
4303102500	사향뒤쥐의 것	16	0	
4303102600	여우의 것	16	0	
4303102800	친칠라의 것	16	0	
4303102910	오파섬의 것	16	0	
4303102920	라쿤의 것	16	0	
4303102930	코요테의 것	16	0	
4303102990	기타	16	0	
4303900000	기타	16	0	
4304001000	인조모피	8	0	
4304002000	인조모피의 제품	8	0	
4401100000	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2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401210000	침엽수류	2	0	
4401221000	펄프 제조용의 것	0	0	
4401229000	기타	2	0	
4401301000	목재 펄리트	2	0	
4401309000	기타	2	0	
4402101000	성형목탄	2	3	
4402109000	기타	2	3	
4402901000	성형목탄	2	3	
4402909000	기타	2	3	
4403101000	열대산 목재	0	0	
4403102000	활엽수	0	0	
4403109000	침엽수	0	0	
4403201000	삼나무	0	0	
4403202010	더글러스퍼	0	0	
4403202020	헴록	0	0	
4403203000	적송	0	0	
4403204000	전나무	0	0	
4403205000	낙엽송	0	0	
4403207000	가문비나무	0	0	
4403208000	라디에타소나무	0	0	
4403209000	기타	0	0	
4403410000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0	0	
4403491000	화이트라왕, 화이트메란티, 화이트세라야, 옐로메란티 및 아란	0	0	
4403492010	티크	0	0	
4403492020	케루잉	0	0	
4403492030	카폴	0	0	
4403492040	제루통	0	0	
4403492090	기타	0	0	
4403493000	오꾸메, 오베체, 사펠리, 시뵘, 아까쥬다푸리케, 마코레 및 이로코	0	0	
4403494000	티아마, 만소니아, 이롬바, 디벤투우, 림바 및 아조베	0	0	
4403495000	마호가니 및 발사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403499000	기타	0	0	
4403910000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0	0	
4403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0	0	
4403991010	자단	0	0	
4403991020	흑단	0	0	
4403991040	물푸레나무	0	0	
4403991050	호두나무	0	0	
4403991090	기타	0	0	
4403992000	리그넘바이트	0	0	
4403993010	사시나무	0	0	
4403993020	포플러	0	0	
4403993030	단풍나무	0	0	
4403993040	느릅나무	0	0	
4403993050	자작나무	0	0	
4403993060	피나무	0	0	
4403994000	오동나무	0	0	
4403999011	말라스	0	0	
4403999012	타운	0	0	
4403999019	기타	0	0	
4403999090	기타	0	0	
4404102000	목재의 봉	5	5	
4404109000	기타	5	5	
4404202000	목재의 봉	5	5	
4404209000	기타	5	5	
4405000000	목모, 목분	5	5	
4406100000	주약처리하지 아니한 것	5	5	
4406900000	기타	5	5	
4407101000	삼나무	5	5	
4407102000	미송	5	5	
4407103000	적송	5	5	
4407104000	전나무	5	5	
4407105000	낙엽송	5	5	
4407107000	가문비나무	5	5	
4407108000	라디에타소나무	5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407109000	기타	5	5	
4407210000	마호가니(스웨테니아종)	5	5	
4407220000	비롤라, 임부아 및 발사	5	5	
4407250000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5	5	
4407260000	화이트라왕, 화이트메란티, 화이트세라야, 옐로메란티 및 아란	5	5	
4407270000	사펠리	5	5	
4407280000	이로코	5	5	
4407291000	케루잉, 라민, 카폴, 종콩, 멜바우, 제루통 및 캄파스	5	5	
4407292000	티크	5	5	
4407293000	오꾸메, 오베체, 시뵘, 아까쥬다푸리케, 마코레, 티아마, 만소니아, 이롬바, 디벤토우 림바 및 아조베	5	5	
4407299000	기타	5	5	
4407910000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5	5	
4407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5	5	
4407930000	단풍나무(아세르종)의 것	5	5	
4407940000	체리나무(프루누스종)의 것	5	5	
44079500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종)의 것	5	5	
4407991010	자단	5	5	
4407991020	흑단	5	5	
4407991040	호두나무	5	5	
4407991090	기타	5	5	
4407992000	리그넴바이트	5	5	
4407993010	사시나무	5	5	
4407993020	포플러	5	5	
4407993040	느릅나무	5	5	
4407993050	자작나무	5	5	
4407993060	피나무	5	5	
4407994000	오동나무	5	5	
4407999010	열대산 목재(앞에서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5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407999090	기타	5	5	
4408106000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8	5	
4408109100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109200	무늬목	3	5	
4408109910	삼나무	5	5	
4408109920	미송	5	5	
4408109930	적송	5	5	
4408109940	전나무	5	5	
4408109950	낙엽송	5	5	
4408109960	가문비나무	5	5	
4408109970	라디에타소나무	5	5	
4408109990	기타	5	5	
4408313000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8	5	
440831901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319012	무늬목	3	5	
4408319019	기타	5	5	
440831902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319022	무늬목	3	5	
4408319029	기타	5	5	
4408396000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8	5	
440839901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399012	무늬목	3	5	
4408399019	기타	5	5	
440839902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399022	무늬목	3	5	
4408399029	기타	5	5	
440839903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399032	무늬목	3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408399039	기타	5	5	
440839904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399042	무늬목	3	5	
4408399049	기타	5	5	
440839905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399052	무늬목	3	5	
4408399059	기타	5	5	
440839909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399092	무늬목	3	5	
4408399099	기타	5	5	
4408901000	적층목재품을 평삭한 베니어용의 것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의 것	8	5	
4408909150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909160	무늬목	3	5	
4408909191	자단	5	5	
4408909192	흑단	5	5	
4408909193	울푸레나무	5	5	
4408909194	호두나무	5	5	
4408909195	참나무	5	5	
4408909199	기타	5	5	
4408909210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909220	무늬목	3	5	
4408909290	기타	5	5	
4408909370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909380	무늬목	3	5	
4408909391	사시나무	5	5	
4408909392	포플러	5	5	
4408909393	단풍나무	5	5	
4408909394	느릅나무	5	5	
4408909395	자작나무	5	5	
4408909396	피나무	5	5	
4408909410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909420	무늬목	3	5	
4408909490	기타	5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408909912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909913	무늬목	3	5	
4408909914	바보엔	5	5	
4408909919	기타	5	5	
4408909991	합판 제조용의 것	3	0	
4408909992	무늬목	3	5	
4408909999	기타	5	5	
4409100000	침엽수류	8	12	
4409210000	대나무제의 것	8	12	
4409290000	기타	8	12	
4410111000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12	
4410112000	멜라민으로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0	
441011300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0	
4410119000	기타	8	12	
4410121000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10	
4410129000	기타	8	12	
4410191010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10	
4410191090	기타	8	10	
4410199010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10	
4410199020	멜라민으로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0	
441019903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10	
4410199090	기타	8	10	
4410900000	기타	8	10	
4411121000	기계적 가공 또는 표면 피복을 하지 아니한 것	8	12	
441112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8	10	
4411129000	기타	8	10	
4411131000	기계적 가공 또는 표면 피복을 하지 아니한 것	8	12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41113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8	10	
4411139000	기타	8	10	
4411141000	기계적 가공 또는 표면 피복을 하지 아니한 것	8	12	
4411142010	마루판	8	10	
4411142090	기타	8	10	
4411149000	기타	8	10	
4411921000	기계적 가공 또는 표면 피복을 하지 아니한 것	8	12	
4411922010	마루판	8	10	
4411922090	기타	8	10	
4411929000	기타	8	10	
4411931000	기계적 가공 또는 표면 피복을 하지 아니한 것	8	12	
4411932010	마루판	8	10	
4411932090	기타	8	10	
4411939000	기타	8	10	
4411941000	기계적 가공 또는 표면 피복을 하지 아니한 것	8	10	
4411949000	기타	8	10	
4412101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1010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8	10	
4412102000	마루판	8	10	
4412109010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10	
4412109090	기타	8	10	
441231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1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1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1400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0	
441231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2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412316000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2	
4412317000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2	
4412321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22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이상 4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23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24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0	
4412325000	두께가 10 밀리미터 이상 12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2	
4412326000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12	
4412327000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12	
4412391010	두께가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91090	기타	10	10	
4412399010	두께가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10	
4412399090	기타	10	10	
4412941000	블록보드	8	10	
4412942000	라민보드	8	10	
4412943000	배튼보드	8	10	
4412991011	전체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0	
4412991019	기타	8	10	
4412991021	전체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0	
4412991029	기타	8	10	
4412991031	전체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0	
4412991039	기타	8	10	
4412991041	마루판(전체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412991042	마루판(기타의 것에 한한다)	8	10	
4412991043	기타(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10	
4412991049	기타	8	10	
4412992010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0	
4412992090	기타	8	10	
4412993010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0	
4412993090	기타	8	10	
4412999111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2	
4412999119	기타	8	10	
4412999191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0	
4412999199	기타	8	10	
4412999211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2	
4412999219	기타	8	10	
4412999291	전체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각 플라이의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0	
4412999299	기타	8	10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상, 플레이트상, 스트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8	10	
4414000000	목재의 그림틀, 사진틀, 거울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8	10	
4415100000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8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415200000	페렛·박스페렛 및 기타의 깔판류, 페렛칼러	8	10	
4416000000	목재의 통, 배럴, 배트, 텀 및 기타의 용기와 그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한다)	8	10	
4417000000	목재의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신발의 목제골	8	10	
4418100000	창, 프랑스 창 및 그들의 틀	8	10	
4418200000	문과 문틀 및 문지방	8	10	
4418400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의 거푸집널	8	10	
4418500000	지붕이는 판자	8	10	
4418600000	기둥 및 들보	8	10	
4418711000	파아켓트패널	8	10	
4418719000	기타	8	10	
4418721000	파아켓트패널	8	10	
4418729000	기타	8	10	
4418791000	파아켓트패널	8	10	
4418799000	기타	8	10	
4418901000	셀룰라우드패널	8	10	
4418909000	기타	8	10	
4419001000	대접(공기)	8	10	
4419002010	대나무제의 것	8	10	
4419002090	기타	8	10	
4419009000	기타	8	10	
4420101000	조상	8	10	
4420109000	기타	8	10	
4420901000	마르퀘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8	10	
4420902010	담배상자	8	10	
4420902020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10	
4420902030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가구	8	10	
4420902090	기타	8	10	
4420909010	담배,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10	
4420909020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가구	8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420909090	기타	8	10	
4421100000	옷걸이	8	10	
4421901010	보빈	8	10	
4421901090	기타	8	10	
4421902000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 못	8	10	
4421903000	이쑤시개	8	10	
442190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8	10	
4421905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에 한한다), 그들의 살 및 자루(살 및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8	10	
4421909000	기타	8	10	
4501100000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에 한한다)	8	10	
4501900000	기타	8	10	
4502000000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 또는 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상·판상·슈트상이나 스트립상의 것에 한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한다]	8	10	
4503100000	마개	8	10	
4503900000	기타	8	10	
4504100000	블록·판·슈트 및 스트립, 타일(형상을 불문한다), 솔리드실린더(디스크를 포함한다)	8	10	
4504900000	기타	8	10	
4601211000	매트류	8	0	
4601212000	발	8	0	
4601221000	매트류	8	0	
4601222000	발	8	0	
4601291000	매트류	8	0	
4601292000	발	8	0	
4601921000	은족발장(폭이 35 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한한다)			
4601929000	기타	8	0	
4601930000	등나무제의 것	8	0	
4601941000	은죽발장(폭이 35 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0	
4601949000	기타	8	0	
4601991000	플라스틱재료로 엮은 슈트상의 물품	8	0	
4601999000	기타	8	0	
4602111000	바구니	8	10	
4602112000	쟁반, 접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 또는 식탁용품	8	10	
4602119000	기타	8	10	
4602120000	등나무제의 것	8	10	
4602191000	골풀제품	8	0	
4602199000	기타	8	0	
4602900000	기타	8	0	
470100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701002000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0	0	
470200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의 것에 한한다)	0	0	
4703110000	침엽수류의 것	0	0	
4703190000	활엽수류의 것	0	0	
4703211000	반표백한 것	0	0	
4703212000	표백한 것	0	0	
4703291000	반표백한 것	0	0	
4703292000	표백한 것	0	0	
4704110000	침엽수류의 것	0	0	
4704190000	활엽수류의 것	0	0	
4704210000	침엽수류의 것	0	0	
4704290000	활엽수류의 것	0	0	
4705000000	기계적 및 화학적 펄핑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0	0	
4706100000	면린터펄프	0	0	
4706200000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706301000	기계펄프	0	0	
4706302000	화학펄프	0	0	
4706303000	반화학펄프	0	0	
47069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706912000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0	0	
470692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706922000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0	0	
470693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706932000	반표백 또는 표백한 것	0	0	
4707100000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판지의 것	0	0	
4707200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기타의 지 또는 판지의 것(전체를 착색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4707300000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등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의 것	0	0	
4707900000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0	0	
4801000000	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	0	
4802100000	수제지와 판지	0	0	
4802200000	사진감광성·열 감응성 또는 전자 감광성 지 또는 판지용 기제로 사용되는 종류의지와 판지	0	0	
4802400000	벽지용의 원지	0	0	
4802541010	여러 층의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41090	기타	0	0	
4802549010	여러 층의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49090	기타	0	0	
4802551010	여러 층의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51020	복사용지	0	0	
480255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802551040	팬시지	0	0	
4802551090	기타	0	0	
480255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59090	기타	0	0	
480256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61020	복사용지	0	0	
480256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61040	팬시지	0	0	
4802561090	기타	0	0	
480256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69090	기타	0	0	
480257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71020	복사용지	0	0	
480257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71040	팬시지	0	0	
4802571090	기타	0	0	
480257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79090	기타	0	0	
480258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1020	팬시지	0	0	
4802581090	기타	0	0	
4802582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802582090	기타	0	0	
480258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9090	기타	0	0	
480261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11020	복사용지	0	0	
480261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11040	팬시지	0	0	
4802611090	기타	0	0	
480261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19090	기타	0	0	
480262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21020	복사용지	0	0	
480262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21040	팬시지	0	0	
4802621090	기타	0	0	
480262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29090	기타	0	0	
4802691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91020	복사용지	0	0	
480269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컴퓨터용지 및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91040	팬시지	0	0	
4802691090	기타	0	0	
480269901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표백한 것			
4802699090	기타	0	0	
4803001000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것에 한한다)	0	0	
4803002000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	0	0	
4803009000	기타	0	0	
4804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804190000	기타	0	0	
4804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804290000	기타	0	0	
480431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0	
4804312000	콘텐사지와 판지	0	0	
4804313000	포장지와 판지	0	0	
4804319000	기타	0	0	
480439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0	
4804392000	콘텐사지와 판지	0	0	
4804393000	포장지와 판지	0	0	
4804399000	기타	0	0	
4804411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11090	기타	0	0	
4804419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19090	기타	0	0	
4804421010	밀크카톤 및 기타 음료용기용 원지	0	0	
4804421020	카톤용 원지(화장품, 의약품, 담배포장 및 이와 유사한 것용을 포함한다)	0	0	
4804421030	쟁반, 접시, 플레이트, 컵 및 이와 유사한 것용 원지	0	0	
4804421090	기타	0	0	
4804429010	밀크카톤 및 기타 음료용기용 원지	0	0	
4804429020	카톤용 원지(화장품, 의약품, 담배포장 및 이와 유사한 것용을 포함한다)	0	0	
4804429030	쟁반, 접시, 플레이트, 컵 및 이와 유사한 것용 원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804429090	기타	0	0	
4804491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99000	기타	0	0	
48045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0	0	
4804521000	밀크카톤 및 기타 음료용기용 원지	0	0	
4804522000	카톤용 원지(화장품, 의약품, 담배포장 및 이와 유사한 것용을 포함한다)	0	0	
4804523000	쟁반, 접시, 플레이트, 컵 및 이와 유사한 것용 원지	0	0	
4804529000	기타	0	0	
4804590000	기타	0	0	
4805110000	반화학 후로팅지	0	0	
4805120000	스트로 후로팅지	0	0	
4805190000	기타	0	0	
480524100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249000	기타	0	0	
480525100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259000	기타	0	0	
4805300000	아황산포장지	0	0	
4805400000	여과지와 판지	0	0	
4805500000	펠트지와 판지	0	0	
480591100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19010	콘덴사지와 판지	0	0	
4805919090	기타	0	0	
480592100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29000	기타	0	0	
4805931000	여러 층의 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39000	기타	0	0	
4806100000	황산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806200000	내지	0	0	
4806300000	트래싱지	0	0	
4806401000	그라신지	0	0	
4806409000	기타	0	0	
4807000000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4808100000	파형의 지와 판지(천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4808200000	지대용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4808300000	기타의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4808900000	기타	0	0	
4809201000	한겹의 것	0	0	
4809202000	두겹 이상의 것	0	0	
4809901000	전사지	0	0	
4809902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 그램 이상인 것	0	0	
4809902090	기타	0	0	
4809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0	
4809904000	카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4809909000	기타	0	0	
481013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지와 판지	0	0	
4810139000	기타	0	0	
481014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지와 판지	0	0	
4810149000	기타	0	0	
481019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지와 판지	0	0	
4810199000	기타	0	0	
4810220000	경량(輕量)의 도포한 지	0	0	
4810290000	기타	0	0	
4810311000	카톤용 원지(화장품, 의약품, 담배포장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4810312000	쟁반, 접시, 플레이트, 컵 및 이와 유사한 것용 원지	0	0	
4810319000	기타	0	0	
4810321000	카톤용 원지(화장품, 의약품, 담배포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10322000	쟁반, 접시, 플레이트, 컵 및 이와 유사한 것용 원지	0	0	
4810329000	기타	0	0	
4810390000	기타	0	0	
4810921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이하인 것	0	0	
4810921090	기타	0	0	
4810922000	아이보리 판지	0	0	
4810929000	기타	0	0	
4810991000	지형지	0	0	
4810992000	여과지	0	0	
4810999000	기타	0	0	
4811101000	루핑지	0	0	
4811109000	기타	0	0	
4811410000	셀프접착지	0	0	
4811490000	기타	0	0	
4811511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 265 그램 이하인 것	0	0	
481151901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깔개	0	0	
4811519019	기타	0	0	
4811519090	기타	0	0	
4811590000	기타	0	0	
481160000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유 또는 글리세롤로 도포·침투 또는 피복한 지와 판지	0	0	
4811901010	괘선, 선 또는 방안선을 그은 것	0	0	
4811901090	기타	0	0	
4811902010	셀룰로오스워딩	0	0	
481190209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812000000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트	0	0	
4813100000	소책자상 또는 튜브상의 것	0	0	
4813200000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의 롤상의 것	0	0	
4813900000	기타	0	0	
4814100000	“인그레인지”	0	0	
4814201000	벽지	0	0	
4814202000	링크라스타	0	0	
4814209000	기타	0	0	
4814901010	갈포섬유제의 것	0	0	
4814901090	기타	0	0	
4814909000	기타	0	0	
4816201000	한겹의 것	0	0	
4816202000	두겹 이상의 것	0	0	
4816901000	전사지	0	0	
481690201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 그램 이상인 것	0	0	
4816902090	기타	0	0	
4816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0	
4816904000	카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4816905000	등사원지	0	0	
4816909000	기타	0	0	
4817100000	봉투	0	0	
4817200000	봉함엽서, 우편엽서 및 통신용카드	0	0	
4817300000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0	0	
4818100000	화장지	0	0	
4818200000	지제의 손수건, 크렌싱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 및 타올	0	0	
4818300000	책상보 및 서비에트	0	0	
481840100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	0	0	
4818409000	기타	0	0	
4818500000	의류 및 의류부속품	0	0	
4818900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81910000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0	0	
4819200000	지제 또는 판지제의 접는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은 제외한다)	0	0	
4819300000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0	0	
4819400000	기타 포장대(콘을 포함한다)	0	0	
4819501000	액체포장에 적합한 것	0	0	
4819509000	기타	0	0	
4819600000	서류상자, 서류받침, 보관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0	0	
4820100000	장부, 회계부, 노트북, 주문장, 영수장, 편지지철, 메모철, 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0	0	
4820200000	연습장	0	0	
482030000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 폴더 및 서철표지	0	0	
4820400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삼입식 카본세트	0	0	
4820500000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	0	0	
4820900000	기타	0	0	
4821100000	인쇄한 것	0	0	
4821900000	기타	0	0	
4822100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데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4822900000	기타	0	0	
4823200000	여과용의 지와 판지	0	0	
482340000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 슈트 및 다이알	0	0	
4823610000	대나무제의 것	0	0	
4823690000	기타	0	0	
4823700000	제지용 펄프제의 몰드 또는 압형한 제품	0	0	
4823901010	천공된 카드	0	0	
4823901090	기타	0	0	
4823902000	전기절연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82390301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깔개	0	0	
4823903019	기타	0	0	
482390302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깔개	0	0	
4823903029	기타	0	0	
4823903090	기타	0	0	
4823905000	자카드 직기용의 천공지	0	0	
4823909011	지 또는 판지를 기제로 한 바닥 깔개	0	0	
4823909019	기타	0	0	
4823909090	기타	0	0	
4901101000	국문판	0	0	
4901109000	기타	0	0	
4901911000	국문판	0	0	
4901919000	기타	0	0	
4901991000	국문판	0	0	
4901999000	기타	0	0	
4902101010	신문	0	0	
4902101090	기타	0	0	
4902109000	기타	0	0	
4902901010	잡지	0	0	
4902901090	기타	0	0	
4902909010	잡지	0	0	
4902909090	기타	0	0	
4903000000	아동용의 그림책, 습화책	0	0	
4904000000	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4905100000	지구의	0	0	
4905911000	지도와 해도	0	0	
4905919000	기타	0	0	
4905990000	기타	0	0	
4906001000	설계도	0	0	
4906002000	도안	0	0	
4906009000	기타	0	0	
4907001000	우표(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907002000	항공화물증권	0	0	
4907009000	기타	0	0	
4908100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로서 유리화 할 수 있는 것	0	0	
490890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로서 쿠션 후로링 슈트용의 것	0	0	
4908909000	기타	0	0	
49090000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4910001000	지제 또는 판지제의 것	0	0	
4910009000	기타	0	0	
4911100000	광고선전물, 상업용 카달로그 및 이와 유사한 것	0	0	
4911911000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0	0	
4911919000	기타	0	0	
4911990000	기타	0	0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51% 또는 5,276 원/kg,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1010	20 데시텍스 이하인 것	3	0	
5002001020	20 데시텍스 초과 25.56 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 원/kg,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1030	25.56 데시텍스 초과 28.89 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 원/kg,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1040	28.89 데시텍스 초과 36.67 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 원/kg, 양자 중 고액(율)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002001050	36.67 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51.7% 또는 17,215 원/kg,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2000	옥사	3	0	
5002009000	기타	8	0	
5003001100	누에고치 웨이스트	2	0	
5003001200	폴솜	2	0	
5003001300	비수	2	0	
5003001400	생피저	2	0	
5003001900	기타	2	0	
5003009100	페니	2	0	
5003009200	견노일(부렛)	2	0	
5003009900	기타	2	0	
50040000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8	0	
5005001000	견수방사	8	0	
5005002000	견방사	8	0	
5005003000	견방주사	8	0	
5006001000	견사	8	0	
5006002000	견수방사	8	0	
5006003000	견방사	8	0	
5006004000	견방주사	8	0	
5006005000	누에의 거트	8	0	
5007100000	견 노일직물	13	0	
5007201000	생지견직물	13	0	
5007202010	흘치기가공	13	0	
5007202020	사틴	13	0	
5007202030	크레이프 드 신	13	0	
5007202090	기타	13	0	
5007209000	기타	13	0	
5007901000	생지견직물	13	0	
5007902000	아세테이트사와 혼방한 견직물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007903000	기타 인조섬유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4000	양모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9000	기타	13	0	
5101110000	깎은 양모	0	0	
5101190000	기타	0	0	
5101210000	깎은 양모	0	0	
5101290000	기타	0	0	
5101300000	탄화처리한 것	0	0	
51021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5102190000	기타	0	0	
5102200000	조수모	0	0	
5103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0	0	
51032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0	0	
5103300000	조수모의 웨이스트	0	0	
5104000000	양모 또는 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0	0	
5105100000	카드한 양모	0	0	
5105210000	코옴한 양모(단편상의 것에 한한다)	0	0	
5105291000	순모울툽	0	0	
5105292000	혼방울툽	0	0	
5105293000	조사	0	0	
5105299000	기타	0	0	
51053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5105390000	기타	0	0	
5105400000	조수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한다)	0	0	
5106101000	순모의 것	8	0	
5106109000	기타	8	0	
5106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4000	기타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9000	기타	8	0	
5107101000	순모의 것	8	10	
5107102000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107109000	기타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4000	기타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9000	기타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8100000	카드한 것	8	10	
5108200000	코움한 것	8	10	
5109101000	양모사	8	5	
5109109000	섬수모사	8	5	
5109901000	양모사	8	5	
5109909000	섬수모사	8	5	
5110000000	조수모사 또는 마모사(짐프한 마모사를 포함하며, 소매용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5111111000	양모의 것	13	0	
5111112000	섬수모의 것	13	0	
5111191000	양모의 것	13	0	
5111192000	섬수모의 것	13	0	
5111200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3	0	
5111300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3	0	
5111900000	기타	13	0	
5112111000	양모의 것	13	10	
5112112000	섬수모의 것	13	0	
5112191000	양모의 것	13	10	
5112192000	섬수모의 것	13	10	
5112200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3	0	
5112300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의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3	0	
5112900000	기타	13	10	
5113000000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13	0	
5201001000	실면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201009010	섬유길이 2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20	섬유길이 23.2 밀리미터 이상 25.4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30	섬유길이 25.4 밀리미터 이상 28.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50	섬유길이 28.5 밀리미터 이상 34.9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60	섬유길이 34.9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5202100000	사웨이스트(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0	0	
5202910000	가아넷스톡	0	0	
5202990000	기타	0	0	
520300000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한다)	0	0	
5204110000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8	0	
5204190000	기타	8	0	
5204200000	소매용의 것	8	0	
52051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119000	기타	8	0	
5205121010	232.56 데시텍스 이상 370.37 데시텍스 이하(미터식 번수 27 수 이상 43 수 이하)의 것. 다만, 오픈 엔드사는 제외한다	4	0	
5205121090	기타	8	0	
5205129000	기타	8	0	
52051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139000	기타	8	0	
52051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149000	기타	8	0	
52051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159000	기타	8	0	
52052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219000	기타	8	0	
52052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22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2052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239000	기타	8	0	
52052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249000	기타	8	0	
520526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269000	기타	8	0	
520527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279000	기타	8	0	
520528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289000	기타	8	0	
52053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319000	기타	8	0	
5205321010	232.56 데시텍스 이상 370.37 데시텍스 이하 (미터식 번수 27 수 이상 43 수 이하)의 것. 다만, 오픈 엔드사는 제외한다	4	0	
5205321090	기타	8	0	
5205329000	기타	8	0	
52053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339000	기타	8	0	
52053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349000	기타	8	0	
52053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359000	기타	8	0	
52054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419000	기타	8	0	
52054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429000	기타	8	0	
52054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439000	기타	8	0	
52054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449000	기타	8	0	
520546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205469000	기타	8	0	
520547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479000	기타	8	0	
520548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5489000	기타	8	0	
52061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119000	기타	8	0	
52061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129000	기타	8	0	
52061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139000	기타	8	0	
52061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149000	기타	8	0	
52061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159000	기타	8	0	
52062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219000	기타	8	0	
52062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229000	기타	8	0	
52062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239000	기타	8	0	
52062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249000	기타	8	0	
52062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259000	기타	8	0	
52063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319000	기타	8	0	
52063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329000	기타	8	0	
52063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339000	기타	8	0	
52063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349000	기타	8	0	
52063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206359000	기타	8	0	
520641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419000	기타	8	0	
520642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429000	기타	8	0	
520643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439000	기타	8	0	
520644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449000	기타	8	0	
520645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6459000	기타	8	0	
520710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7109000	기타	8	0	
5207901000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8	0	
5207909000	기타	8	0	
520811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12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13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190000	기타 직물	10	0	
520821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22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23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290000	기타 직물	10	0	
520831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32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33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208390000	기타 직물	10	0	
520841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42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43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490000	기타 직물	10	0	
520851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520000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에 한한다)	10	0	
5208591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599000	기타	10	0	
5209110000	평직물	10	0	
520912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190000	기타 직물	10	0	
5209210000	평직물	10	0	
520922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290000	기타 직물	10	0	
5209310000	평직물	10	0	
520932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390000	기타 직물	10	0	
5209410000	평직물	10	0	
5209420000	데님	10	0	
5209430000	3 올 또는 4 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490000	기타 직물	10	0	
5209510000	평직물	10	0	
520952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것을 포함한다)			
5209590000	기타 직물	10	0	
5210110000	평직물	10	0	
5210191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199000	기타	10	0	
5210210000	평직물	10	0	
5210291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299000	기타	10	0	
5210310000	평직물	10	0	
521032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390000	기타 직물	10	0	
5210410000	평직물	10	0	
5210491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499000	기타	10	0	
5210510000	평직물	10	0	
5210590000	기타 직물	10	0	
5211110000	평직물	10	0	
521112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190000	기타 직물	10	0	
5211200000	표백한 것	10	0	
5211310000	평직물	10	0	
521132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390000	기타 직물	10	0	
5211410000	평직물	10	0	
5211420000	데님	10	0	
5211430000	3 올 또는 4 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211490000	기타 직물	10	0	
5211510000	평직물	10	0	
5211520000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590000	기타 직물	10	0	
5212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10	0	
5212120000	표백한 것	10	0	
5212130000	염색한 것	10	0	
521214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	0	
5212150000	날염한 것	10	0	
5212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10	0	
5212220000	표백한 것	10	0	
5212230000	염색한 것	10	0	
521224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	0	
5212250000	날염한 것	10	0	
5301100000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2	0	
5301210000	쇄경 또는 타마한 것	2	0	
5301290000	기타	2	0	
5301301000	아마의 토우	2	0	
5301302000	아마의 웨이스트	2	0	
5302100000	생대마 또는 침지대마	2	0	
5302901000	쇄경, 타마, 핵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방직용 것은 제외한다)	2	0	
5302902010	대마의 토우	2	0	
5302902020	대마의 웨이스트	2	0	
5303101000	황마	2	0	
5303102000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2	0	
5303901010	황마	2	0	
5303901090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2	0	
5303909010	황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	2	0	
5303909090	기타의 방직용 인피섬유의 토우 및 웨이스트	2	0	
5305001010	생 것	2	0	
5305001090	기타	2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305002010	생 것	2	0	
5305002090	기타	2	0	
5305003010	생 것	2	0	
5305003090	기타	2	0	
5305009010	생 것	2	0	
5305009090	기타	2	0	
5306101000	순아마사	8	0	
5306102000	혼방아마사	8	0	
5306201000	순아마사	8	0	
5306202000	혼방아마사	8	0	
5307101000	황마사	8	0	
5307109000	기타	8	0	
5307201000	황마사	8	0	
5307209000	기타	8	0	
5308100000	코이어사	8	0	
5308200000	대마사	8	0	
5308901000	라미사	8	0	
5308909000	기타	8	0	
5309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	0	
5309190000	기타	2	0	
5309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	0	
5309290000	기타	2	0	
5310101000	황마직물	8	0	
5310109000	기타	8	0	
5310901000	황마직물	8	0	
5310909000	기타	8	0	
5311001000	라미의 것	8	0	
5311002000	대마의 것	8	0	
5311003000	지사의 것	8	0	
5311009000	기타	8	0	
54011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110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110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4012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	0	
5401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401209000	기타	8	0	
5402110000	아라미드의 것	8	0	
5402191011	타이어 코드사	8	0	
5402191012	어망사	8	0	
5402191019	기타	8	0	
5402191021	타이어 코드사	8	0	
5402191022	어망사	8	0	
5402191029	기타 사	8	0	
5402191090	기타	8	0	
5402199000	기타	8	0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8	0	
5402311010	나일론 6 의 것	8	0	
5402311020	나일론 66 의 것	8	0	
5402311090	기타	8	0	
5402319000	기타	8	0	
5402321010	나일론 6 의 것	8	0	
5402321020	나일론 66 의 것	8	0	
5402321090	기타	8	0	
5402329000	기타	8	0	
540233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402339000	기타	8	0	
540234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402390000	기타	8	0	
5402440000	탄성사	8	0	
5402451010	나일론 6 의 것	8	0	
5402451020	나일론 66 의 것	8	0	
5402451090	기타	8	0	
5402459000	기타	8	0	
540246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402469000	기타	8	0	
540247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40247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40248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8	0	
54024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499000	기타	8	0	
540251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25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25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599000	기타	8	0	
540261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26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26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692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0	
5402699000	기타	8	0	
5403100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2	0	
5403311000	텍스처드사	2	0	
5403319000	기타	2	0	
5403321000	텍스처드사	2	0	
5403329000	기타	2	0	
5403331000	텍스처드사	8	0	
5403339000	기타	8	0	
5403391000	텍스처드사	8	0	
5403399000	기타	8	0	
5403411000	텍스처드사	2	0	
5403419000	기타	2	0	
5403421000	텍스처드사	8	0	
5403429000	기타	8	0	
5403491000	텍스처드사	8	0	
5403499000	기타	8	0	
5404110000	탄성사	8	0	
540412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8	0	
54041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4192000	폴리우레탄의 것	8	0	
5404193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0	
5404199000	기타	8	0	
5404901000	스트립상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404909000	기타	8	0	
5405001000	모노필라멘트	8	0	
5405009000	기타	8	0	
5406001000	합성필라멘트사	8	0	
54060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의 필라멘트사	8	0	
54071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200000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8	0	
540730000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8	0	
54074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420000	염색한 것	8	0	
540743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440000	날염한 것	8	0	
54075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520000	염색한 것	8	0	
540753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540000	날염한 것	8	0	
54076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612000	염색한 것	8	0	
5407613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614000	날염한 것	8	0	
540769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7692000	염색한 것	8	0	
5407693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7694000	날염한 것	8	0	
540771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19000	기타	8	0	
540772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29000	기타	8	0	
540773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39000	기타	8	0	
540774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4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40781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19000	기타	8	0	
540782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29000	기타	8	0	
540783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39000	기타	8	0	
540784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49000	기타	8	0	
540791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19000	기타	8	0	
540792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29000	기타	8	0	
540793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39000	기타	8	0	
540794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49000	기타	8	0	
5408100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8	0	
5408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408220000	염색한 것	8	0	
540823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8240000	날염한 것	8	0	
54083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8	0	
5408320000	염색한 것	8	0	
540833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8	0	
5408340000	날염한 것	8	0	
550110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120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01301000	아크릴의 것	8	0	
5501302000	모다크릴의 것	8	0	
5501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501900000	기타	8	0	
55020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7.5	0	
5502002010	44,000 데시텍스 미만의 것	7.5	0	
5502002020	44,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7.5	0	
5502009000	기타	7.5	0	
5503111000	이형단면의 것	8	0	
5503119000	기타	8	0	
5503191000	이형단면의 것	8	0	
5503199000	기타	8	0	
5503201000	이형단면의 것	8	0	
550320901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503209090	기타	8	0	
5503301010	이형단면의 것	8	0	
5503301020	콘쥬게이트 단면의 것	8	0	
5503301090	기타	8	0	
5503302010	이형단면의 것	8	0	
5503302020	콘쥬게이트 단면의 것	8	0	
5503302090	기타	8	0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503900000	기타	8	0	
5504101000	이형단면의 것	2	0	
5504102000	폴리노직 단면의 것	2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504109000	기타	2	0	
5504901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4902000	리오셀의 것	4	0	
5504909000	기타	8	0	
5505100000	합성섬유의 것	2	0	
5505200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것	2	0	
5506101000	이형단면의 것	8	0	
5506109000	기타	8	0	
5506201000	이형단면의 것	8	0	
5506209000	기타	8	0	
5506301010	이형단면의 것	8	0	
5506301020	콘주게이트 단면의 것	8	0	
5506301090	기타	8	0	
5506302010	이형단면의 것	8	0	
5506302020	콘주게이트 단면의 것	8	0	
5506302090	기타	8	0	
5506900000	기타	8	0	
5507001010	이형단면의 것	8	0	
5507001020	폴리노직 단면의 것	8	0	
5507001090	기타	8	0	
55070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7009000	기타	8	0	
55081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8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0810300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8	0	
5508109000	기타	8	0	
55082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0	
5508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8209000	기타	8	0	
5509111000	강력사	8	0	
5509119000	기타	8	0	
5509121000	강력사	8	0	
5509129000	기타	8	0	
5509211000	강력사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509219000	기타	8	0	
5509221000	강력사	8	0	
5509229000	기타	8	0	
5509311000	아크릴의 것	8	0	
5509312000	모다크릴의 것	8	0	
5509321000	아크릴의 것	8	0	
5509322000	모다크릴의 것	8	0	
5509410000	단사	8	0	
550942000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8	0	
55095100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인플섬유와 혼방한 것	8	0	
55095200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8	0	
55095300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8	0	
5509590000	기타	8	0	
5509611000	아크릴의 것	8	0	
5509612000	모다크릴의 것	8	0	
5509621000	아크릴의 것	8	0	
5509622000	모다크릴의 것	8	0	
5509691010	아크릴의 것	8	0	
5509691020	모다크릴의 것	8	0	
5509692010	아크릴의 것	8	0	
5509692020	모다크릴의 것	8	0	
550991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9919000	기타	8	0	
550992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9929000	기타	8	0	
5509990000	기타	8	0	
55101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0	
5510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119000	기타	8	0	
55101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0	
5510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129000	기타	8	0	
55102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510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209000	기타	8	0	
55103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0	
5510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309000	기타	8	0	
55109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0	
55109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909000	기타	8	0	
55111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1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1110300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8	0	
5511109000	기타	8	0	
551120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112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1120300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8	0	
5511209000	기타	8	0	
551130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0	
5511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1309000	기타	8	0	
5512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2191000	염색한 것	10	0	
5512192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	0	
5512193000	날염한 것	10	0	
5512211000	아크릴의 것	10	0	
551221200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2290000	기타	10	0	
551291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2919000	기타	10	0	
55129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2999000	기타	10	0	
5513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3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5131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0	0	
55131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1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1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3199000	기타	10	0	
5513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3231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	0	
5513239000	기타	10	0	
5513291000	나일론 또는 기타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2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2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3299000	기타	10	0	
55133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33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3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3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3399000	기타	10	0	
5513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34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4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4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3499000	기타	10	0	
5514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4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	0	
55141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192010	아크릴의 것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5141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4193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직물	10	0	
5514199000	기타	10	0	
5514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42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	0	
55142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0	0	
55142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2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2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4299000	기타	10	0	
5514300000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10	0	
5514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10	0	
55144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10	0	
55144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10	0	
5514491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4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492020	모다크릴의 것	10	0	
5514499000	기타	10	0	
55151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119000	기타	10	0	
551512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129000	기타	10	0	
551513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139000	기타	10	0	
551519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199000	기타	10	0	
55152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219000	기타	10	0	
551522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515229000	기타	10	0	
551529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299000	기타	10	0	
551591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919000	기타	10	0	
5515991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5515999000	기타	10	0	
55161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19000	기타	10	0	
55161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29000	기타	10	0	
55161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1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39000	기타	10	0	
55161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1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49000	기타	10	0	
55162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2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19000	기타	10	0	
55162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2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29000	기타	10	0	
55162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2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39000	기타	10	0	
55162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2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49000	기타	10	0	
55163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3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19000	기타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5163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3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29000	기타	10	0	
55163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3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39000	기타	10	0	
55163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3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49000	기타	10	0	
55164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4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19000	기타	10	0	
55164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4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29000	기타	10	0	
55164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4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39000	기타	10	0	
55164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4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49000	기타	10	0	
551691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9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19000	기타	10	0	
551692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9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29000	기타	10	0	
551693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9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39000	기타	10	0	
5516941000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0	0	
55169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49000	기타	10	0	
5601100000	워딩제의 위생타올 및 탐폰, 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위생용품			
5601210000	면제의 것	8	0	
5601220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5601290000	기타	8	0	
5601301000	섬유의 플록	8	0	
5601309000	기타	8	0	
5602101000	니들룸 펠트	8	0	
5602102000	스티치 본드 섬유직물	8	0	
5602211000	피아노 펠트	8	0	
5602219000	기타	8	0	
5602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	0	
5602900000	기타	8	0	
5603111000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603119000	기타	8	0	
5603121000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603129000	기타	8	0	
5603131000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603139000	기타	8	0	
5603141000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0	
5603149000	기타	8	0	
560391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2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3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4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8	0	
5604100000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8	0	
5604901000	모조켓거트(방직용 섬유사로 만든 것에 한한다)	8	0	
560490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으로서 침투 또는 도포한 것)	8	0	
5604909000	기타	8	0	
5605000000	금속드리사(징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또는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제 5404 호 또는 제 5405 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 스트립 또는 분상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으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5606001000	징프사	8	0	
5606002000	셔닐사	8	0	
5606003000	루프웨일사	8	0	
5606009000	기타	8	0	
5607210000	포장용 끈	10	0	
5607290000	기타	10	0	
5607410000	포장용 끈	10	0	
5607490000	기타	10	0	
5607500000	기타 합성섬유의 것	10	0	
5607901000	제 5303 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것	10	0	
5607909000	기타	10	0	
5608111000	합성섬유제의 것	10	0	
5608119000	기타	10	0	
5608191000	합성섬유제의 것	10	0	
5608199000	기타	10	0	
5608901000	면제의 것	10	0	
5608909000	기타	10	0	
5609001000	면제의 것	8	0	
5609002000	식물성섬유제의 것(면제의 것은 제외한다)	8	0	
5609003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5609009000	기타	8	0	
570110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0	0	
5701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5702100000	"켈럼", "슈맥", "카라마니" 및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된 러그	10	0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제의 바닥깔개	10	0	
570231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7023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5702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570241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0	0	
57024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5702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5702500000	기타(파일직물의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10	0	
570291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0	0	
57029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5702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570310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0	0	
5703200000	나일론 또는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703300000	기타 인조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5703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5704100000	타일(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에 한한다)	10	0	
5704900000	기타	10	0	
5705000000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0	0	
5801101000	파일직물	13	0	
5801102000	셔닐직물	13	0	
5801210000	절단되지 아니한 위(緯)파일 직물	13	0	
5801220000	절단된 코르덴	13	0	
5801230000	기타 위(緯)파일 직물	13	0	
5801240000	절단되지 아니한 경파일 직물	13	0	
5801250000	절단된 경파일 직물	13	0	
5801260000	셔닐직물	13	0	
5801310000	절단되지 아니한 위(緯)파일 직물	13	0	
5801320000	절단된 코르덴	13	0	
5801330000	기타 위(緯)파일 직물	13	0	
5801340000	절단되지 아니한 경파일 직물	13	0	
5801350000	절단된 경파일 직물	13	0	
5801360000	셔닐직물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801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58021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8	0	
5802190000	기타	8	0	
58022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8	0	
5802300000	터후트 직물	8	0	
58030000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직물은 제외한다)	8	0	
5804101000	견제의 것	13	0	
5804102000	면제의 것	13	0	
5804103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5804109000	기타	13	0	
580421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5804291000	견제의 것	13	0	
5804292000	면제의 것	13	0	
5804299000	기타	13	0	
5804300000	수제의 레이스	13	0	
580500101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5805001090	기타	8	0	
5805002000	자수의 태피스트리	8	0	
580610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5806102000	면제의 것	8	0	
5806103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5806109000	기타	8	0	
5806200000	기타 직물(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8	0	
5806310000	면제의 것	8	0	
5806320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58063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5806392000	식물성섬유제의 것(면제의 것은 제외한다)	8	0	
5806399000	기타	8	0	
5806400000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의 세폭직물(볼덕)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807101000	레이블	8	0	
5807109000	기타	8	0	
5807901000	레이블	8	0	
5807909000	기타	8	0	
5808100000	브레이드(원단상의 것에 한한다)	8	0	
5808901000	장식용 트리밍	8	0	
5808909000	기타	8	0	
580900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의 직물(의류·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5810100000	자수포(기본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13	0	
5810910000	면제의 것	13	0	
58109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5810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5811001000	견제의 것	8	0	
5811002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8	0	
5811003000	면제의 것	8	0	
5811004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5811009000	기타	8	0	
5901100000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으로 도포한 것으로서, 서적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8	0	
5901901000	트레이싱포	8	0	
5901902000	회화용 캔버스	8	0	
5901903000	버크럼 및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8	0	
590210000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제의 것	8	0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제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902900000	기타	8	0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10	0	
5903200000	폴리우레탄의 것	10	0	
5903900000	기타	10	0	
5904100000	리놀륨	8	0	
5904900000	기타	8	0	
5905000000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8	0	
590610000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8	0	
5906910000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8	0	
5906990000	기타	8	0	
5907001000	기름으로 도포 또는 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또는 건성유의 조제품	8	0	
5907002000	극장용,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8	0	
5907009000	기타	8	0	
5908001000	심지	8	0	
5908009000	기타	8	0	
5909000000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다른 재료로 내장, 보강했는지 또는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5910000000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로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5911101000	세폭직물의 것	8	0	
5911109000	기타	8	0	
5911200000	볼팅클로드(제품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591131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8	0	
591132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8	0	
5911400000	착유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5911900000	기타	8	0	
6001101000	면제의 것	10	0	
6001102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6001109000	기타	10	0	
6001210000	면제의 것	10	0	
60012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6001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6001910000	면제의 것	10	0	
60019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0	0	
6001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0	0	
6002400000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	10	0	
6002900000	기타	10	0	
600310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0	0	
6003200000	면제의 것	10	0	
6003300000	합성 섬유제의 것	10	0	
600340000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10	0	
6003900000	기타	10	0	
6004100000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	10	0	
6004900000	기타	10	0	
6005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5220000	염색한 것	10	0	
60052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5240000	날염한 것	10	0	
60053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5320000	염색한 것	10	0	
60053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5340000	날염한 것	10	0	
60054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5420000	염색한 것	10	0	
60054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005440000	날염한 것	10	0	
6005900000	기타	10	0	
6006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0	0	
60062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6220000	염색한 것	10	0	
60062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6240000	날염한 것	10	0	
60063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6320000	염색한 것	10	0	
60063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6340000	날염한 것	10	0	
6006410000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10	0	
6006420000	염색한 것	10	0	
6006430000	서로 다른 색사의 것	10	0	
6006440000	날염한 것	10	0	
6006900000	기타	10	0	
6101200000	면제의 것	13	0	
6101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1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1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21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2200000	면제의 것	13	0	
6102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2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2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310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3102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3109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3220000	면제의 것	13	0	
61032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3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3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3320000	면제의 것	13	0	
61033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103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341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3	0	
6103420000	면제의 것	13	0	
6103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3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41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191000	면제의 것	13	0	
6104199000	기타	13	0	
6104220000	면제의 것	13	0	
61042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431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3	0	
6104320000	면제의 것	13	0	
61043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441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3	0	
6104420000	면제의 것	13	0	
6104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440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491000	견제의 것	13	0	
6104499000	기타	13	0	
610451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3	0	
6104520000	면제의 것	13	0	
61045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5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461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3	0	
6104620000	면제의 것	13	0	
61046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46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5100000	면제의 것	13	0	
61052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52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5901000	견제의 것	13	0	
6105902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105909000	기타	13	0	
6106100000	면제의 것	13	0	
61062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62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6901000	견제의 것	13	0	
61069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6909000	기타	13	0	
6107110000	면제의 것	13	0	
61071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71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7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7210000	면제의 것	13	0	
61072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72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7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7910000	면제의 것	13	0	
61079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107999000	기타	13	0	
610811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11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191000	면제의 것	13	0	
6108199000	기타	13	0	
6108210000	면제의 것	13	0	
61082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2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8310000	면제의 것	13	0	
61083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3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08910000	면제의 것	13	5	
61089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9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089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108999000	기타	13	0	
6109101000	티셔츠	13	7	
6109109000	기타	13	0	
6109901010	티셔츠	13	5	
6109901090	기타	13	0	
6109902010	티셔츠	13	0	
6109902090	기타	13	0	
6109903010	티셔츠	13	0	
6109903090	기타	13	0	
6109909010	티셔츠	13	0	
6109909090	기타	13	0	
6110110000	양모의 것	13	0	
611012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13	0	
6110190000	기타	13	0	
6110200000	면제의 것	13	3	
6110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7	
6110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0901000	견제의 것	13	0	
6110909000	기타	13	0	
6111201000	의류	13	0	
6111202000	부속품	13	0	
6111301000	의류	13	0	
6111302000	부속품	13	0	
6111901000	의류	13	0	
6111902000	부속품	13	0	
6112110000	면제의 것	13	0	
61121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2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1220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112209000	기타	13	0	
611231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2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1241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2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113001000	제 5903 호의 것	13	0	
6113002000	제 5906 호의 것	13	0	
6113003000	제 5907 호의 것	13	0	
6114200000	면제의 것	13	3	
6114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4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4901000	견제의 것	13	0	
6114909000	기타	13	0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13	0	
6115210000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13	0	
6115220000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에 한한다)	13	0	
6115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1530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115309000	기타	13	0	
611594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3	0	
6115950000	면제의 것	13	0	
611596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115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116100000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	8	0	
611691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8	0	
6116921000	작업용 장갑	8	0	
6116929000	기타	8	0	
6116930000	합성섬유제의 것	8	0	
6116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	0	
6117101000	견제의 것	13	0	
6117102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3	0	
6117103000	면제의 것	13	0	
6117104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117109000	기타	13	0	
6117801000	벡타이류	13	0	
6117809000	기타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117900000	부분품	13	0	
62011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1120000	면제의 것	13	0	
62011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11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1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19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1920000	면제의 것	13	0	
62019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19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1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21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2120000	면제의 것	13	0	
62021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21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2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29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2920000	면제의 것	13	0	
62029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29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2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31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31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3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3220000	면제의 것	13	0	
62032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32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3299000	기타	13	0	
62033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3320000	면제의 것	13	0	
62033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3	
6203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3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34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7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203429000	기타	13	7	
6203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7	
6203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411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3	0	
6204120000	면제의 것	13	0	
62041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191000	견제의 것	13	0	
6204199000	기타	13	0	
620421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3	0	
6204220000	면제의 것	13	0	
62042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291000	견제의 것	13	0	
6204299000	기타	13	0	
620431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3	0	
6204320000	면제의 것	13	0	
62043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391000	견제의 것	13	0	
6204399000	기타	13	0	
620441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3	0	
6204420000	면제의 것	13	0	
62044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440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491000	견제의 것	13	0	
6204499000	기타	13	0	
620451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3	0	
6204520000	면제의 것	13	0	
62045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591000	견제의 것	13	0	
6204599000	기타	13	0	
620461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3	0	
62046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7	
6204629000	기타	13	3	
620463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4691000	견제의 것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204699000	기타	13	5	
6205200000	면제의 것	13	0	
62053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53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5901000	견제의 것	13	0	
620590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5909000	기타	13	0	
620610000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13	0	
62062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6300000	면제의 것	13	3	
620640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640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6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7110000	면제의 것	13	0	
620719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207199000	기타	13	0	
6207210000	면제의 것	13	0	
62072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72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7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7910000	면제의 것	13	0	
6207991000	견제의 것	13	0	
6207992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0799301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799302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7999000	기타	13	0	
620811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811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8191000	견제의 것	13	0	
6208192000	면제의 것	13	0	
6208199000	기타	13	0	
6208210000	면제의 것	13	0	
62082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82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208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08910000	면제의 것	13	0	
620892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892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08991000	견제의 것	13	0	
6208992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3	0	
6208999000	기타	13	0	
6209201000	의류	13	5	
6209202000	부속품	13	0	
6209301000	의류	13	0	
6209302000	부속품	13	0	
620990101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3	0	
6209901090	기타	13	0	
6209902000	부속품	13	0	
6210101000	제 5602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102000	제 5603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201000	제 5903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202000	제 5906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203000	제 5907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301000	제 5903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302000	제 5906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303000	제 5907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401000	제 5903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402000	제 5906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403000	제 5907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501000	제 5903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502000	제 5906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0503000	제 5907 호의 직물제의 것	13	0	
621111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211119000	기타	13	0	
621112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211129000	기타	13	0	
6211201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211209000	기타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211321000	유도, 태권도 및 기타 동양 무술복	13	0	
6211329000	기타	13	0	
62113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113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11391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11399000	기타	13	5	
621141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13	0	
6211421000	유도, 태권도 및 기타 동양 무술복	13	0	
6211429000	기타	13	0	
621143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11432000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의 것	13	0	
62114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212101000	면제의 것	13	0	
6212102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212109000	기타	13	0	
6212201000	면제의 것	13	0	
6212202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212209000	기타	13	0	
6212300000	콜세렛트	13	0	
6212900000	기타	13	3	
6213200000	면제의 것	8	0	
6213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	0	
621410000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8	0	
6214200000	양모제 또는 섬수모제의 것	8	0	
6214300000	합성섬유제의 것	8	0	
621440000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8	0	
6214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	0	
621510000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8	0	
6215200000	인조섬유제의 것	8	0	
6215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	0	
6216001000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것	8	0	
6216009000	기타	8	0	
6217100000	부속품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217900000	부분품	13	0	
6301100000	전기모포	10	0	
6301200000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0	0	
6301300000	면제의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0	0	
6301400000	합성섬유제의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10	0	
6301900000	기타 모포와 여행용 러그	10	0	
6302101000	면제의 것	13	0	
6302109000	기타	13	0	
6302210000	면제의 것	13	0	
63022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302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302310000	면제의 것	13	0	
630232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3023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302400000	테이블린넨(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13	0	
6302510000	면제의 것	13	0	
630253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3025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302600000	면제의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테리타올지 또는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의 것에 한한다)	13	0	
6302910000	면제의 것	13	0	
6302930000	인조섬유제의 것	13	0	
6302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3031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303191000	면제의 것	13	0	
6303199000	기타	13	0	
6303910000	면제의 것	13	0	
63039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303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30411000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304190000	기타	13	0	
630491000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3	0	
6304920000	면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13	0	
6304930000	합성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13	0	
63049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13	0	
6305100000	황마 또는 제 5303 호의 기타 방직용 인피(靱皮) 섬유제의 것	8	0	
6305200000	면제의 것	8	0	
6305320000	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8	0	
6305330000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것에 한한다)	8	0	
6305390000	기타	8	0	
6305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8	0	
63061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3061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306220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30629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306300000	뿔	13	0	
6306401000	면제의 것	13	0	
6306409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3	0	
6306910000	면제의 것	13	0	
6306991000	합성섬유제의 것	13	0	
6306999000	기타	13	0	
6307100000	마루닥이포, 접시닥이포,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10	0	
6307200000	구멍재킷 및 구멍벨트	10	0	
6307901000	신발류 끈	10	0	
6307902000	보자기	10	0	
6307903000	드레스 패턴	10	0	
6307909000	기타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308000000	러그·태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 한한다)	13	0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8	0	
6310100000	선별한 것	8	0	
6310900000	기타	8	0	
6401100000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8	0	
6401921000	스키부츠	8	0	
6401929010	고무제의 것	8	0	
6401929090	기타	8	0	
6401991010	고무제의 것	8	0	
6401991090	기타	8	0	
6401999000	기타	8	0	
6402120000	스키부츠,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13	0	
6402190000	기타	13	0	
6402200000	신발(감피끈을 플렉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에 한한다)	13	0	
6402911000	방한화	13	0	
6402912000	정구화, 농구화, 체조화,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2919000	기타	13	0	
6402991000	샌달 또는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구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13	0	
6402992000	정구화, 농구화, 체조화,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2999000	기타	13	0	
6403120000	스키부츠,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13	0	
6403190000	기타	13	0	
640320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감피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6403400000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한다)	13	0	
6403511000	드레스화	13	0	
6403519000	기타	13	0	
6403591000	드레스화	13	0	
6403599000	기타	13	0	
6403911000	드레스화	13	0	
6403912000	등산화	13	0	
6403913000	편상화	13	0	
6403914000	정구화, 농구화, 체조화,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3919000	기타	13	0	
6403991000	드레스화	13	0	
6403992000	등산화	13	0	
6403993000	편상화	13	0	
6403994000	정구화, 농구화, 체조화,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3999000	기타	13	0	
6404110000	스포츠용 신발류, 정구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4191000	실내화	13	0	
6404199000	기타	13	0	
6404201000	실내화	13	0	
6404209000	기타	13	0	
6405100000	갑피가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인 것	13	0	
6405200000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13	0	
6405900000	기타	13	0	
6406101000	갑피	8	0	
6406102000	부분품	8	0	
6406201000	바깥바닥	8	0	
6406202000	뒷굽	8	0	
6406910000	목재제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406991000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	8	0	
6406992000	힐 쿠션	8	0	
6406993000	각반	8	0	
6406994000	레깅	8	0	
6406999000	기타	8	0	
6501000000	모체(펠트제의 것으로서 성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펠트제의 플래도우 및 망송(슬릿망송을 포함한다)	8	0	
6502000000	모체(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성형하지 아니한 것,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 안을 대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장식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6504000000	모자(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6505100000	헤어네트	8	0	
6505901010	합성섬유제의 것	8	0	
6505901090	기타 섬유제의 것	8	0	
6505902010	운동모	8	0	
6505902020	베레모	8	0	
6505902090	기타	8	0	
6505909000	기타	8	0	
6506100000	안전모자	8	0	
6506910000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8	0	
6506991000	가죽제의 것	8	0	
6506992000	금속제의 것	8	0	
6506999000	기타	8	0	
6507000000	모자용의 밴드 · 내장재 · 커버 · 햇트파운데이션 · 햇트프레임 · 챙 및 턱끈	8	0	
6601100000	정원용 또는 이와 유사한 산류	13	0	
6601910000	대가 절첩식의 것	13	0	
6601991000	지팡이겸용 우산	1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601992000	양산	13	0	
6601999000	기타	13	0	
6602001000	지팡이	8	0	
6602002000	시트스틱	8	0	
6602003000	채찍, 승마용 채찍	8	0	
6602009000	기타	8	0	
6603200000	산류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13	0	
6603900000	기타	13	0	
6701000000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분, 우모, 우모의 부분, 솜털 및 그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우축 및 우경은 제외한다)	8	0	
6702100000	플라스틱제의 것	8	0	
6702901000	직물제의 것	8	0	
6702902000	지제의 것	8	0	
6702909000	기타	8	0	
6703001010	세척, 정돈한 것	8	0	
6703001090	기타	8	0	
6703009000	기타	8	0	
6704110000	전체가발	8	0	
6704191000	부분가발	8	0	
6704192000	가수염	8	0	
6704193000	가눈썹	8	0	
6704194000	가속눈썹	8	0	
6704199000	기타	8	0	
6704201000	전체가발	8	0	
6704202000	부분가발	8	0	
6704203000	가수염	8	0	
6704204000	가눈썹	8	0	
6704205000	가속눈썹	8	0	
6704209000	기타	8	0	
6704900000	기타 재료제의 것	8	0	
6801000000	포석, 연석 및 판석(천연석재의 것에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한하며, 슬레이트의 것은 제외한다)			
6802100000	타일·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 표면적이 일변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입·세편 및 분	8	0	
6802211000	대리석	8	0	
6802212000	트래버틴	8	0	
6802213000	앨러바스터	8	0	
6802230000	화강암	8	5	
6802291000	기타 석회질 암석	8	0	
6802299000	기타	8	5	
6802911000	대리석	8	0	
6802912000	트래버틴	8	0	
6802913000	앨러바스터	8	0	
6802920000	기타 석회질 암석	8	0	
6802930000	화강암	8	5	
6802990000	기타 석	8	5	
6803001000	벼루	8	5	
6803009000	기타	8	5	
6804100000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밀링용, 그라인딩용 또는 펄핑용의 것에 한한다)	8	0	
6804210000	합성 또는 천연다이아몬드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8	0	
6804220000	기타 연마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또는 도자제의 것	8	0	
6804230000	천연석제의 것	8	0	
6804300000	수지석(手砥石)	8	0	
6805100000	방직용 섬유직의 직물만을 기제로 한 것	8	0	
6805200000	지 또는 판지만을 기제로 한 것	8	0	
6805300000	기타 재료를 기제로 한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806101000	슬랙을	8	0	
6806102000	록을	8	0	
6806103000	세라믹 파이버	8	0	
6806109000	기타	8	0	
6806201000	박리한 버미큐라이트	8	0	
6806202000	팽창점토	8	0	
6806204000	팽창퍼라이트	8	0	
6806209000	기타	8	0	
6806901000	내화피복재	8	0	
6806909000	기타	8	0	
6807100000	롤상의 것	8	0	
6807900000	기타	8	0	
6808000000	패널, 보드, 타일, 블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짚 또는 목재의 대패밥·칩·파티클·톱밥 또는 기타 웨이스트를 시멘트·플라스터 또는 기타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에 한한다)	8	0	
6809110000	지 또는 판지만으로 입혔거나 보강한 것	8	0	
6809190000	기타	8	0	
6809900000	기타 제품	8	0	
6810111000	블록	8	0	
6810112000	벽돌	8	0	
6810191000	타일	8	0	
6810192000	판석	8	0	
6810193000	기와(지붕타일)	8	0	
6810199000	기타	8	0	
6810910000	조립식 건축자재(건축 또는 토목 공사용에 한한다)	8	0	
6810991000	빔 및 거더	8	0	
6810992000	파일	8	0	
6810993000	전주	8	0	
6810994000	철도침목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810995000	관	8	0	
6810999000	기타	8	0	
6811401010	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8	0	
6811401090	기타	8	0	
6811402010	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8	0	
6811402090	기타	8	0	
6811403000	관 및 관의 연결구류	8	0	
6811409010	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8	0	
6811409090	기타	8	0	
6811810000	파형의 쉬트	8	0	
6811820000	기타 쉬트, 패널,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8	0	
6811830000	관 및 관의 연결구류	8	0	
6811890000	기타 제품	8	0	
6812801000	의류, 의류부속품, 신발 및 모자류	8	0	
6812802000	지, 표지용의 판지 및 펄트	8	0	
6812803000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8	0	
6812809000	기타	8	0	
6812910000	의류, 의류부속품, 신발 및 모자류	8	0	
6812920000	지, 표지용의 판지 및 펄트	8	0	
6812930000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8	0	
6812990000	기타	8	0	
6813201010	자동차용	8	0	
6813201090	기타	8	0	
6813202010	자동차용	8	0	
6813202090	기타	8	0	
6813209010	자동차용	8	0	
6813209090	기타	8	0	
6813810000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8	0	
6813891000	클러치 페이싱	8	0	
6813899000	기타	8	0	
6814100000	판, 쉬트 및 스트립(응결 또는 재생한 운모의 것에 한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6814900000	기타	8	0	
6815101000	비전기용 흑연제품	8	0	
6815102000	탄소섬유	8	0	
6815109000	기타	8	0	
6815200000	이탄제품	8	0	
6815910000	마그네사이트, 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8	0	
6815990000	기타	8	5	
6901001000	벽돌	8	0	
6901002000	블록	8	0	
6901003000	타일	8	0	
6901009010	슬래브와 패널	8	0	
6901009090	기타	8	0	
6902100000	마그네슘, 칼슘 또는 크로뮴원소(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시하기도 한다)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8	0	
6902200000	알루미나, 실리카 또는 그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8	0	
6902901000	탄화규소 또는 지르콘을 기제로 한 것	8	0	
6902909000	기타	8	0	
6903101000	레토트	8	0	
6903102010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노용의 것	3	0	
6903102090	기타	8	0	
6903103000	반응그릇	8	0	
6903104000	머플	8	0	
6903105000	노즐	8	0	
6903106000	플러그	8	0	
6903107000	관	8	0	
6903108000	봉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903109000	기타	8	0	
6903201000	레토트	8	0	
6903202000	도가니	8	0	
6903203000	반응그릇	8	0	
6903204000	머플	8	0	
6903205000	노즐	8	0	
6903206000	플러그	8	0	
6903207000	관	8	0	
6903208000	봉	8	0	
6903209000	기타	8	0	
6903901000	탄화규소 또는 지르콘을 기제로 한 것	8	0	
6903909010	레토트	8	0	
6903909020	도가니	8	0	
6903909030	반응그릇	8	0	
6903909040	머플	8	0	
6903909050	노즐	8	0	
6903909060	플러그	8	0	
6903909070	관	8	0	
6903909080	봉	8	0	
6903909090	기타	8	0	
6904100000	건축용 벽돌	8	0	
6904900000	기타	8	0	
6905100000	기와(지붕타일)	8	0	
6905901000	굴뚝통, 굴뚝갓 및 굴뚝용 내장재	8	0	
6905902000	건축용 장식품	8	0	
6905909000	기타	8	0	
6906001000	관, 도관 및 흠통	8	0	
6906002000	관의 연결구류	8	0	
6907101000	자기제의 것	8	0	
6907109000	기타	8	0	
6907901000	자기제의 것	8	0	
6907909000	기타	8	0	
6908101000	자기제의 것	8	0	
690810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6908901000	자기제의 것	8	0	
6908909000	기타	8	0	
6909110000	자기제의 것	8	0	
69091200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8	0	
6909190000	기타	8	0	
6909900000	기타	8	0	
6910101000	세면대	8	0	
6910102000	목욕통	8	0	
6910103000	수세식변기통	8	0	
6910104000	소변기	8	0	
6910109000	기타	8	0	
6910900000	기타	8	0	
6911101000	커피 세트 또는 티세트	8	0	
6911102000	공기, 대접 및 접시	8	0	
6911109000	기타	8	0	
6911901000	가정용품	8	0	
6911902000	화장용품	8	0	
6911909000	기타	8	0	
6912001010	커피세트 또는 티세트	8	0	
6912001020	공기, 대접 및 접시	8	0	
6912001090	기타	8	0	
6912002000	가정용품	8	0	
6912003000	화장용품	8	0	
6912009000	기타	8	0	
6913101000	상, 소상 및 흉상	8	0	
6913109020	장식용 식탁용품	8	0	
6913109090	기타	8	0	
6913901000	상, 소상 및 흉상	8	0	
6913909020	장식용 식탁용품	8	0	
6913909090	기타	8	0	
6914101000	화분	8	0	
6914109000	기타	8	0	
6914901000	화분	8	0	
691490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001001000	괴	5	0	
7001002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파유리	3	0	
7002100000	구	8	0	
700220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02209000	기타	8	0	
700231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02319000	기타	8	0	
70023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섭씨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타 유리체의 것	8	0	
7002390000	기타	8	0	
700312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7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319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7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003200000	망입 슈트유리	8	0	
7003300000	프로파일	8	0	
70042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49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101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1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1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1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102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2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2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2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109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9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이하인 것			
7005109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109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21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701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7020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521703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291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	0	
7005291020	반도체 또는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3	0	
7005291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용의 것	4	0	
7005291091	맑은 유리	8	0	
7005291092	저철분 유리	8	0	
7005291099	기타	8	0	
7005292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	0	
7005292020	반도체 또는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3	0	
7005292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용의 것	4	0	
7005292091	맑은 유리	8	0	
7005292092	저철분 유리	8	0	
7005292099	기타	8	0	
7005293010	맑은 유리	8	0	
7005293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3090	기타	8	0	
7005294010	맑은 유리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005294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4090	기타	8	0	
7005295010	맑은 유리	8	0	
7005295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5090	기타	8	0	
7005296010	맑은 유리	8	0	
7005296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6090	기타	8	0	
7005297010	맑은 유리	8	0	
7005297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7090	기타	8	0	
7005298010	맑은 유리	8	0	
7005298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8090	기타	8	0	
7005299010	맑은 유리	8	0	
7005299020	저철분 유리	8	0	
7005299090	기타	8	0	
7005300000	망입유리	8	0	
700600100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4	0	
7006002000	반도체 또는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3	0	
700600300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용의 것	4	0	
7006009000	기타	8	0	
70071110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7112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71910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7192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7211000	총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0	
7007212000	총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0	
7007291000	총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0	
7007292000	총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0	
7008000000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009100000	백미러(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8	0	
7009910000	틀이 붙지 아니한 것	8	0	
7009920000	틀이 붙은 것	8	0	
7010100000	앰플	8	0	
7010200000	마개, 뚜껑 및 기타 마개류	8	0	
7010900000	기타	8	0	
7011100000	전등용의 것	8	0	
7011201000	천연색용의 것	8	0	
7011209000	기타	8	0	
7011900000	기타	8	0	
7013100000	유리 도자제의 것	8	0	
701322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8	0	
7013280000	기타	8	0	
701333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8	0	
7013370000	기타	8	0	
701341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8	0	
70134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섭씨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것	8	0	
7013490000	기타	8	0	
7013910000	납 크리스탈제의 것	8	0	
7013990000	기타	8	0	
7014001000	실드빔 램프의 것	8	0	
7014009010	신호용 유리제품	8	0	
7014009020	유리제의 광학용품	8	0	
701510000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8	0	
7015901000	선글라스용의 것	8	0	
7015902000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7015909000	기타	8	0	
7016100000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016901000	압축 또는 주형 유리제의 포장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타일 및 기타 제품(망입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건축용 또는 건설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8	0	
7016909010	레드라이트	8	0	
7016909020	스테인드그라스	8	0	
7016909090	기타	8	0	
7017100000	석영유리제의 것	8	0	
701720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타 유리제의 것	8	0	
7017900000	기타	8	0	
7018101000	비드	8	0	
7018102000	모조진주	8	0	
7018103000	모조귀석과 반귀석	8	0	
7018104000	모조산호	8	0	
7018109000	기타	8	0	
7018200000	지름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8	0	
7018901000	유리안구(인체용은 제외한다)	8	0	
7018909000	기타	8	0	
7019110000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0	
7019120000	로빙	8	0	
7019190000	기타	8	0	
7019310000	매트	8	0	
7019320000	얇은 쉬트(보일)	8	0	
7019390000	기타	8	0	
7019400000	로빙직물	8	0	
70195100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7019520000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에 한한다)			
7019590000	기타	8	0	
7019901000	글라스울	8	0	
7019909000	기타	8	0	
7020001011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으로 확산 및 산화로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리액터 튜브와 홀더	0	0	
7020001012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노용의 석영도가니	3	0	
7020001013	반도체용으로 퀴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20001019	기타	8	0	
7020001090	기타	8	0	
7020009000	기타	8	0	
7101101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8	0	
7101102000	가공한 것	8	0	
71012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8	0	
7101220000	가공한 것	8	0	
7102100000	선별하지 아니한 것	1	0	
710221000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1	0	
7102290000	기타	5	0	
710231000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1	0	
7102390000	기타	5	0	
710310000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	1	0	
7103911000	공업용의 것	5	0	
7103919010	루비	5	0	
7103919020	사파이어	5	0	
7103919030	에메랄드	5	0	
7103991000	공업용의 것	5	0	
7103999010	오팔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103999020	비취	5	0	
7103999030	옥수	5	0	
7103999040	수정	5	0	
7103999090	기타	5	0	
7104100000	압전기용 석영	5	0	
7104201000	다이아몬드	5	0	
7104209000	기타	5	0	
7104901010	다이아몬드	5	0	
7104901020	인조수정	5	0	
7104901090	기타	5	0	
7104909010	다이아몬드	5	0	
7104909090	기타	5	0	
7105101000	천연의 것	5	0	
7105102000	합성의 것	5	0	
7105901000	석류석의 것	5	0	
7105909000	기타	5	0	
7106100000	분	3	0	
7106911000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3	0	
7106919000	기타	3	0	
7106921000	봉 및 형재	3	0	
7106922000	판, 쉬트 및 스트립	3	0	
7106923000	선	3	0	
7106929000	기타	3	0	
7107001000	봉 및 형재	3	0	
7107002000	판, 쉬트 및 스트립	3	0	
7107003000	선	3	0	
7107004000	관 및 중공봉	3	0	
7107009000	기타	3	0	
7108110000	분	3	0	
7108121000	럼프, 빌레트 및 입	3	0	
7108129000	기타	3	0	
710813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3	0	
7108131090	기타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108139010	봉 및 형재	3	0	
7108139020	판, 스위트 및 스트립	3	0	
7108139090	기타	3	0	
7108200000	화폐용의 것	0	0	
7109000000	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은(반가공의 것 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0	
71101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3	0	
7110190000	기타	3	0	
71102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3	0	
7110290000	기타	3	0	
71103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3	0	
7110390000	기타	3	0	
7110410000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3	0	
7110490000	기타	3	0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卑)금속, 은 또는 금(반가공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0	
7112300000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회	2	0	
711291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19000	기타	3	0	
711292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29000	기타	3	0	
711299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92000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의 것	6.5	0	
7112999000	기타	3	0	
7113110000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5	
7113191000	백금제의 것	8	5	
7113192000	금제의 것	8	5	
7113199000	기타	8	5	
7113201000	백금을 입힌 것	8	5	
7113202000	금을 입힌 것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113203000	은을 입힌 것	8	5	
7113209000	기타	8	3	
7114111000	식탁용의 것	8	3	
7114112000	화장실용의 것	8	3	
7114113000	사무실 및 책상용의 것	8	3	
7114114000	깍연용의 것	8	3	
7114119000	기타	8	3	
7114191000	식탁용의 것	8	3	
7114192000	화장실용의 것	8	3	
7114193000	사무실 및 책상용의 것	8	3	
7114194000	깍연용의 것	8	3	
7114199000	기타	8	3	
7114201000	식탁용의 것	8	3	
7114202000	화장실용의 것	8	3	
7114203000	사무실 및 책상용의 것	8	3	
7114204000	깍연용의 것	8	3	
7114209000	기타	8	3	
7115100000	촉매제(백금제의 와이어 클로드 또는 그릴상의 것에 한한다)	8	3	
7115901010	백금도가니	8	3	
7115901090	기타	8	3	
7115909010	금제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3	
7115909020	은제의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3	
7115909090	기타	8	3	
7116101000	천연진주의 것	8	3	
7116102000	양식진주의 것	8	3	
7116201000	공업용의 것	8	3	
7116209010	신변장식용의 것	8	3	
7116209090	기타	8	3	
7117110000	커프링크 및 장식용 단추	8	5	
7117191000	목걸이	8	5	
7117192000	팔찌	8	5	
7117193000	귀걸이	8	5	
7117194000	브로우치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117195000	반지	8	5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8	5	
7117199000	기타	8	5	
7117900000	기타	8	5	
711810000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	0	
7118901000	금화	0	0	
7118902000	은화	0	0	
7118909000	기타	0	0	
7201101000	주물용의 것	0	0	
7201102000	제강용의 것	0	0	
7201109000	기타	0	0	
7201200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0	0	
7201501000	합금선철	2	0	
7201502000	스피그라이즌	2	0	
72021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0	
7202190000	기타	5	0	
7202210000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3	0	
72022910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 퍼센트 이상인 것	3	0	
7202299000	기타	3	0	
7202300000	페로실리코망간	5	0	
72024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3	0	
7202490000	기타	3	0	
7202500000	페로실리코크로뮴	3	0	
7202600000	페로니켈	3	5	
7202700000	페로몰리브데늄	3	0	
7202800000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3	0	
7202910000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3	0	
7202920000	페로바나듐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202930000	페로니오븀	3	0	
7202991000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0	
7202999000	기타	3	0	
7203100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	0	
7203900000	기타	1	0	
7204100000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	0	
7204290000	기타	0	0	
7204300000	주석으로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204410000	선삭, 세이빙, 칩, 밀링웨이스트, 톱밥, 파일링, 트리밍 및 스탬핑(번들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04490000	기타	0	0	
7204500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0	0	
7205101000	쇼트	5	0	
7205102000	그리트	5	0	
7205109000	기타	5	0	
7205210000	합금강의 것	5	0	
7205290000	기타	5	0	
7206100000	잉곳	0	0	
7206900000	기타	0	0	
7207111000	블룸	0	0	
7207112000	빌레트	0	0	
7207121000	슬래브	0	0	
7207122000	슈트바	0	0	
7207190000	기타	0	0	
7207201000	블룸	0	0	
7207202000	빌레트	0	0	
7207203000	슬래브	0	0	
7207204000	슈트바	0	0	
7207209000	기타	0	0	
72081010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2081090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0825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59000	기타	0	0	
720826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69000	기타	0	0	
720827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79000	기타	0	0	
720836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69000	기타	0	0	
720837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79000	기타	0	0	
720838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89000	기타	0	0	
720839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99000	기타	0	0	
7208400000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0	0	
720851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19000	기타	0	0	
720852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29000	기타	0	0	
720853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39000	기타	0	0	
720854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49000	기타	0	0	
7208900000	기타	0	0	
720915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59000	기타	0	0	
720916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69000	기타	0	0	
720917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79000	기타	0	0	
720918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8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20925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59000	기타	0	0	
720926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69000	기타	0	0	
720927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79000	기타	0	0	
720928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89000	기타	0	0	
7209900000	기타	0	0	
7210110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10120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0200000	납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0	0	
72103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309000	기타	0	0	
7210410000	파형의 것	0	0	
7210491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491090	기타	0	0	
721049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499090	기타	0	0	
7210500000	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0690000	기타	0	0	
7210700000	페인트한 것, 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0	
7210901000	니켈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0902000	동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0909000	기타	0	0	
7211130000	4 면을 압연한 것 또는 클로즈드박스패스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하며, 코일상의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21114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149000	기타	0	0	
721119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199000	기타	0	0	
721123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239000	기타	0	0	
721129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299000	기타	0	0	
72119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909000	기타	0	0	
7212101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12102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22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209000	기타	0	0	
7212301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301090	기타	0	0	
721230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309090	기타	0	0	
7212400000	페인트한 것, 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0	
7212501000	니켈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2502000	동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2509000	기타	0	0	
7212600000	클래드한 것	0	0	
7213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리브, 홈 또는 기타 변형이 있는 것	0	0	
7213200000	기타(괘삭강의 것에 한한다)	0	0	
721391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5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3911090	기타	0	0	
721391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21399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5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3991090	기타	0	0	
7213999000	기타	0	0	
7214100000	단조한 것	0	0	
7214201000	철근	0	0	
7214209000	기타	0	0	
7214300000	기타(괘삭강의 것에 한한다)	0	0	
721491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것	0	0	
7214991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6 퍼센트 미만인 것	0	0	
7214999000	기타	0	0	
7215100000	괘삭강의 것(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15500000	기타(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15900000	기타	0	0	
7216101000	유형강	0	0	
7216102000	아이형강	0	0	
7216103000	에이치형강	0	0	
7216210000	엘형강	0	0	
7216220000	티형강	0	0	
7216310000	유형강	0	0	
7216320000	아이형강	0	0	
7216333000	높이가 300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6334000	높이가 300 밀리미터 이상 6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216335000	높이가 60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216401000	엘형강	0	0	
7216402000	티형강	0	0	
7216500000	기타 형강(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2166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0	0	
7216690000	기타	0	0	
72169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	0	0	
7216990000	기타	0	0	
7217100000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연마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7217200000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7301000	동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17309000	기타	0	0	
7217900000	기타	0	0	
7218101000	잉곳	0	0	
7218109000	기타	0	0	
7218911000	슬래브	0	0	
7218912000	슈트바	0	0	
7218919000	기타	0	0	
7218991000	블룸	0	0	
7218992000	빌레트	0	0	
7218999000	기타	0	0	
721911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111090	기타	0	0	
7219119000	기타	0	0	
721912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121090	기타	0	0	
7219129000	기타	0	0	
721913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131090	기타	0	0	
721913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21914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141090	기타	0	0	
7219149000	기타	0	0	
721921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211090	기타	0	0	
7219219000	기타	0	0	
721922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221090	기타	0	0	
7219229000	기타	0	0	
721923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231090	기타	0	0	
7219239000	기타	0	0	
721924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241090	기타	0	0	
7219249000	기타	0	0	
721931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311090	기타	0	0	
7219319000	기타	0	0	
721932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321090	기타	0	0	
7219329000	기타	0	0	
721933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219331090	기타	0	0	
7219339000	기타	0	0	
721934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341090	기타	0	0	
7219349000	기타	0	0	
721935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351090	기타	0	0	
7219359000	기타	0	0	
72199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19901090	기타	0	0	
7219909000	기타	0	0	
722011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20111090	기타	0	0	
7220119000	기타	0	0	
722012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20121090	기타	0	0	
7220129000	기타	0	0	
72202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20201090	기타	0	0	
7220209000	기타	0	0	
72209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퍼센트 이상인 것	0	0	
722090109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220909000	기타	0	0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0	0	
72221100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7222190000	기타	0	0	
7222200000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22300000	기타 봉	0	0	
7222400000	형강	0	0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	0	0	
7224101000	잉곳	0	0	
7224109000	기타	0	0	
7224901000	블룸	0	0	
7224902000	빌레트	0	0	
7224903000	슬래브	0	0	
7224904000	슈트바	0	0	
7224909000	기타	0	0	
7225110000	방향성의 것	0	0	
7225190000	기타	0	0	
72253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30901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309090	기타	0	0	
72254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40901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409090	기타	0	0	
72255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509000	기타	0	0	
722591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1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19090	기타	0	0	
722592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29011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29019	기타	0	0	
7225929091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225929099	기타	0	0	
722599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99000	기타	0	0	
7226110000	방향성의 것	0	0	
7226190000	기타	0	0	
7226200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6910000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0	0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0	0	
7226991000	비정질 합금 박판(두께가 100 미크론 미만인 것에 한한다)	0	0	
7226992000	아연을 전해도금 또는 전해 도포한 것	0	0	
7226993000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226999000	기타	0	0	
7227100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7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7227901000	내열강의 것	0	0	
7227909000	기타	0	0	
7228100000	고속도강의 봉	0	0	
7228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0	0	
7228300000	기타의 봉(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28400000	기타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28500000	기타의 봉(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228600000	기타의 봉	0	0	
7228700000	형강	0	0	
7228800000	중공드릴봉	0	0	
7229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7229901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1090	기타	0	0	
7229902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209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229909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9090	기타	0	0	
7301101000	유형	0	0	
7301109000	기타	0	0	
7301201000	유형강	0	0	
7301202000	에이치형강	0	0	
7301203000	아이형강	0	0	
7301209000	기타	0	0	
7302101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1090	기타	0	0	
7302102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2090	기타	0	0	
7302103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3090	기타	0	0	
7302104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4090	기타	0	0	
7302300000	침단케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	8	0	
7302400000	계목판과 저판	0	0	
7302900000	기타	0	0	
7303001010	구상흑연 주철제의 것	8	0	
7303001090	기타	8	0	
7303002000	중공 프로파일	8	0	
7304110000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0	0	
7304190000	기타	0	0	
7304220000	스테인리스강제의 드릴파이프	0	0	
7304230000	기타 드릴파이프	0	0	
7304240000	기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04290000	기타	0	0	
73043100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390000	기타	0	0	
73044100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490000	기타	0	0	
7304510000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304590000	기타	0	0	
7304900000	기타	0	0	
7305111000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 초과 1,422.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305112000	바깥지름이 1,422.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3051200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에 한한다)	0	0	
7305190000	기타	0	0	
7305200000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케이싱	0	0	
7305311000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0	0	
7305312000	전기저항 용접한 것	0	0	
7305319000	기타	0	0	
7305390000	기타	0	0	
7305900000	기타	0	0	
730611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06190000	기타	0	0	
7306211000	케이싱	0	0	
7306212000	튜브	0	0	
7306291000	케이싱	0	0	
7306292000	튜브	0	0	
730630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301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 또는 클래드한 것	0	0	
7306301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0	
7306301090	기타	0	0	
7306302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302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 또는 클래드한 것	0	0	
7306302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0	
7306302090	기타	0	0	
7306401000	바깥지름이 114.3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306402000	바깥지름이 114.3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306500000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에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한한다)			
730661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611090	기타	0	0	
7306612000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0	0	
7306613000	기타 합금강제의 것	0	0	
730669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691090	기타	0	0	
7306692000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0	0	
7306693000	기타 합금강제의 것	0	0	
7306901000	이중권 강관	0	0	
7306909000	기타	0	0	
7307110000	비가단주철제의 것	8	0	
7307190000	기타	8	0	
7307210000	플랜지	8	0	
73072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07229000	기타	8	0	
7307230000	바트용접용 연결구	8	0	
7307290000	기타	8	0	
7307910000	플랜지	8	0	
7307921000	나선가공한 슬리브(철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07929000	기타	8	0	
7307930000	바트용접용 연결구	8	0	
7307991000	나선가공한 것(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	0	
7307999000	기타	8	0	
7308100000	다리와 교량	0	0	
7308200000	탐과 격자주	8	0	
7308300000	문, 창 및 그들의 틀과 문지방	8	0	
7308400000	비계, 차단기, 지주 또는 광도받침용 기구	8	0	
7308901000	수문	0	0	
7308909000	기타	0	0	
730900000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제외하고,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31010000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8	0	
7310210000	납땀 또는 크림핑으로 봉합되는 통	8	0	
7310290000	기타	8	0	
7311001000	용적이 30 리터 이하인 것	8	0	
7311002000	용적이 30 리터 초과 100 리터 이하인 것	8	0	
7311003000	용적이 1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8	0	
7312101011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0	
7312101019	기타	0	0	
7312101091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0	
7312101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7312101099	기타	0	0	
7312102011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0	
7312102019	기타	0	0	
7312102091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0	
7312102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7312102099	기타	0	0	
7312900000	기타	0	0	
7313001000	유자선	0	0	
7313009000	기타	0	0	
7314120000	기계용 엔드리스밴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14140000	기타 직조한 클로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14190000	기타	0	0	
7314200000	그릴, 망 및 울다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314310000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314390000	기타	0	0	
7314410000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0	0	
73144200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0	
7314490000	기타	0	0	
7314500000	익스팬디드메탈	0	0	
7315110000	롤러체인	8	0	
7315120000	기타체인	8	0	
7315190000	부분품	8	0	
7315200000	스키드체인	8	0	
7315810000	스터드링크	8	0	
7315820000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에 한한다)	8	0	
7315890000	기타	8	0	
7315900000	기타 부분품	8	0	
7316001000	닳	8	0	
7316002000	부분품	8	0	
7317001011	도금, 도포 또는 페인트한 것	0	0	
7317001019	기타	0	0	
7317001021	도금, 도포 또는 페인트한 것	0	0	
7317001029	기타	0	0	
7317002000	압정	0	0	
7317003000	제도용 또는 사무용 핀	0	0	
7317004000	파형 못	0	0	
7317005000	스테인플	0	0	
7317009000	기타	0	0	
7318110000	코치스크루	8	0	
7318120000	기타 목재용 스크루	8	0	
7318130000	스크루혹과 스크루링	8	0	
7318140000	셀프태핑 스크루	8	0	
7318151000	머신스크루	8	0	
7318152000	볼트	8	0	
7318153000	볼트와 너트(세트로 된 것에 한한다)	8	0	
7318159000	기타	8	0	
7318160000	너트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318190000	기타	8	0	
7318210000	스프링와셔와 기타 록와셔	8	0	
7318220000	기타 와셔	8	0	
7318230000	리벳	8	0	
7318240000	코터와 코터핀	8	0	
7318290000	기타	8	0	
7319200000	안전핀	8	0	
7319301000	반도체 웨이퍼 또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측정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핀	8	0	
7319309000	기타	8	0	
7319901010	수봉침	8	0	
7319901020	수편침	8	0	
7319901090	기타	8	0	
7319909000	기타	8	0	
7320101000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8	3	
7320102000	철도용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판상스프링	8	0	
7320109000	기타	8	0	
7320201000	자동차용의 것	8	3	
7320202000	충격 흡수용의 것	8	0	
7320203000	철도차량 연계완충기용의 것	8	0	
7320204000	가구용의 것	8	0	
7320209000	기타	8	0	
7320901000	평나선형 스프링	8	0	
7320909000	기타 스프링	8	0	
7321110000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8	0	
7321120000	액체연료용의 것	8	0	
7321190000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8	0	
7321810000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8	0	
7321820000	액체연료용의 것	8	0	
7321890000	기타(고체연료용의 기구를 포함한다)	8	0	
7321900000	부분품	8	0	
7322111000	방열기	8	0	
7322112000	부분품	8	0	
7322191000	방열기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322192000	부분품	8	0	
732290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8	0	
7322909010	공기가열기	8	0	
7322909020	온풍배분기	8	0	
7322909030	부분품	8	0	
7323100000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패드,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7323910000	주철제의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8	0	
7323920000	주철제의 것으로 법랑제의 것	8	0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8	0	
73239400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제의 것으로 법랑제의 것	8	0	
7323990000	기타	8	0	
7324101000	설거지통	8	0	
7324102000	세면대	8	0	
7324210000	주철제의 것(법랑제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7324291000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8	0	
7324299000	기타	8	0	
7324901000	화장용세트	8	0	
7324908000	기타	8	0	
7324909000	부분품	8	0	
7325100000	비가단주철제의 것	8	0	
7325910000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325991000	주철제의 것	8	0	
7325992000	주강제의 것	8	0	
7325993000	합금강제의 것	8	0	
7325999000	기타	8	0	
7326110000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326190000	기타	8	0	
7326200000	철강선제의 제품	8	0	
7326901000	방직기계용 보빈	8	0	
732690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401001000	동의 매트	0	0	
7401002000	시멘트동(침전동)	0	0	
7402001000	정제하지 아니한 동	0	0	
7402002000	전해정제용의 동 양극	0	0	
7403110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3	0	
7403120000	와이어바	5	0	
7403130000	빌레트	5	0	
7403191000	슬래브	5	0	
7403192000	잉곳	5	0	
7403199000	기타	5	0	
7403210000	동-아연의 합금(황동)	5	0	
7403220000	동-주석의 합금(청동)	5	0	
7403291010	동-니켈의 합금(백동)	5	0	
7403291020	동-니켈-아연의 합금(양백)	5	0	
7403299000	기타	5	0	
7404000000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405000000	동의 마스터얼로이	5	0	
7406100000	비층상조직의 분	8	0	
7406201000	층상조직의 분	8	0	
7406202000	플레이크	8	0	
7407100000	정제한 동의 것	8	0	
7407210000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8	0	
7407291000	동-주석 합금의 것(청동)	8	0	
7407292010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8	0	
7407292020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8	0	
7407299000	기타	8	0	
7408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408190000	기타	8	0	
7408210000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8	0	
7408221000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8	0	
7408222000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8	0	
7408291000	동-주석 합금의 것(청동)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408299000	기타	8	0	
74091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119000	기타	8	0	
74091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199000	기타	8	0	
74092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219000	기타	8	0	
74092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299000	기타	8	0	
74093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319000	기타	8	0	
74093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399000	기타	8	0	
740940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401090	기타	8	0	
7409402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402090	기타	8	0	
7409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5	0	
7409909000	기타	8	0	
7410110000	정제한 동의 것	8	0	
7410120000	동합금의 것	8	0	
741021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형상의 것	8	0	
7410219000	기타	8	0	
741022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형상의 것	8	0	
7410229000	기타	8	0	
7411100000	정제한 동제의 것	8	0	
7411210000	동-아연 합금제의 것(황동)	8	0	
7411221000	동-니켈 합금제의 것(백동)	8	0	
7411222000	동-니켈-아연 합금제의 것(양백)	8	0	
7411291000	동-주석 합금제의 것(청동)	8	0	
7411299000	기타	8	0	
7412100000	정제한 동제의 것	3	0	
7412200000	동 합금제의 것	3	0	
7413000000	동제의 연선, 케이블,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415101000	귀금속으로 도금, 피복 또는 도포한 것	8	0	
7415109000	기타	8	0	
7415210000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8	0	
7415290000	기타	8	0	
7415330000	스크루, 볼트와 너트	8	0	
7415390000	기타	8	0	
7418110000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 클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7418191000	식탁용품, 주방용품	8	0	
741819201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비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5	0	
7418192090	기타	8	0	
741819901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비전기식의 것에 한한다)의 것	5	0	
7418199090	기타	8	0	
7418201000	위생용품	8	0	
7418202000	부분품	8	0	
7419101000	체인	8	0	
7419102000	부분품	8	0	
7419910000	주조, 주형, 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들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7419991010	클로드	8	0	
7419991090	기타	8	0	
7419992000	동제의 스프링	8	0	
7419999000	기타	8	0	
7501100000	니켈의 매트	0	0	
75012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8 퍼센트 이상인 것	2	0	
7501201090	기타	0	0	
7501209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8 퍼센트 이상인 것	2	0	
7501209090	기타	0	0	
7502101000	음극	3	10	
7502109000	기타	3	10	
7502200000	니켈 합금	3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504001000	분	5	0	
7504002000	플레이크	5	0	
75051100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5	0	
7505120000	니켈 합금의 것	5	0	
75052100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5	0	
7505220000	니켈 합금의 것	5	0	
7506101000	판, 쉬트 및 스트립	5	0	
7506102000	박	5	0	
7506201000	판, 쉬트 및 스트립	5	0	
7506202000	박	5	0	
750711000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제의 것	8	0	
7507120000	니켈 합금제의 것	8	0	
7507200000	관연결구류	8	0	
7508100000	니켈선제의 클로드, 그릴 및 망	8	0	
75089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50890201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제의 것	8	0	
7508902020	니켈 합금제의 것	8	0	
7508909000	기타	8	0	
760110000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1	0	
7601201000	캐스팅 얼로이	1	0	
7601202000	빌레트	3	0	
7601209000	기타	1	0	
760200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603100000	비층상조직의 분	8	0	
7603201000	분	8	0	
7603202000	플레이크	8	0	
7604101000	봉	8	0	
7604102010	중공프로파일	8	0	
7604102090	기타	8	0	
7604210000	중공프로파일	8	0	
7604291000	봉	8	0	
7604299000	기타 프로파일	8	0	
7605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605190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6052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605290000	기타	8	0	
7606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8	0	
7606119000	기타	8	0	
7606120000	알루미늄 합금의 것	8	0	
76069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8	0	
7606919000	기타	8	0	
7606920000	알루미늄 합금의 것	8	0	
7607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8	0	
7607119000	기타	8	0	
760719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8	0	
7607199000	기타	8	0	
760720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8	0	
7607209000	기타	8	0	
760810000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제의 것	8	0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제의 것	8	0	
76090000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8	0	
7610100000	문, 창 및 그들의 틀과 문지방	8	0	
7610901000	구조물	8	0	
7610908000	기타	8	0	
7610909000	부분품	8	0	
7611000000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612100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8	0	
7612901000	경질의 튜브형 용기	8	0	
7612909010	용적이 1 리터 미만인 것	8	0	
7612909020	용적이 1 리터 이상 20 리터 미만인 것	8	0	
7612909030	용적이 20 리터 이상인 것	8	0	
7613001000	압축가스용의 것	8	0	
7613002000	액화가스용의 것	8	0	
761410000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8	0	
7614900000	기타	8	0	
7615110000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 클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761519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5	0	
7615192000	식탁용품, 주방용품	8	0	
7615193000	기타 가정용 물품	8	0	
7615199000	부분품	8	0	
7615201000	위생용품	8	0	
7615202000	부분품	8	0	
7616100000	못, 압정, 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크루, 볼트, 너트, 스크루축,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616910000	알루미늄선제의 클로드, 그릴, 망 및 울타리	8	0	
7616991000	보빈	8	0	
7616999010	알루미늄 파우치	8	0	
7616999020	알루미늄 노브	8	0	
7616999090	기타	8	0	
7801101000	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3	0	
7801109000	기타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78019100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	3	0	
7801991000	정제하지 아니한 연	1	0	
7801992010	연-주석 합금	3	0	
7801992090	기타	3	0	
7802000000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804111000	슈트 및 스트립	8	0	
7804112000	박	8	0	
7804190000	기타	8	0	
7804201000	분	8	0	
7804202000	플레이크	8	0	
7806001000	연제용기	8	0	
7806002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806003010	봉	8	0	
7806003020	프로파일	8	0	
7806003030	선	8	0	
7806004010	관	8	0	
7806004020	관연결구류	8	0	
7806009000	기타	8	0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3	0	
790112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미만인 것	3	0	
7901201000	아연-알루미늄 합금	3	0	
7901202000	아연-동 합금	3	0	
7901209000	기타	3	0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7903100000	아연더스트	8	0	
7903901000	분	8	0	
7903902000	플레이크	8	0	
7904001000	봉	8	0	
7904002000	프로파일	8	0	
7904003000	선	8	0	
7905001000	판, 슈트 및 스트립	8	0	
7905002000	박	8	0	
7907001000	아연제의 홀통, 지붕덮개, 채광 창틀 및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기타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7907002010	관	8	0	
7907002020	관연결구류	8	0	
790700901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907009090	기타	8	0	
8001100000	합금하지 아니한 주석	3	0	
8001200000	주석 합금	3	0	
8002000000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003001010	합금하지 아니한 것	8	0	
8003001090	기타	8	0	
8003002010	합금하지 아니한 것	8	0	
8003002090	기타	8	0	
80070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8007002000	판, 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0	
8007003010	박	8	0	
8007003021	분	8	0	
8007003022	플레이크	8	0	
8007004000	관과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8	0	
8007009000	기타	8	0	
8101100000	분	3	0	
8101940000	텅스텐의 과(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3	0	
8101961000	전구 또는 전자관용의 스파이럴 필라멘트	8	0	
8101969000	기타	8	0	
810197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1991010	봉	8	0	
8101991020	프로파일	8	0	
8101991030	판, 쉬트 및 스트립	8	0	
8101991040	박	8	0	
8101999000	기타	8	0	
8102100000	분	3	0	
8102940000	몰리브데늄의 과(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3	0	
8102951000	봉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102952000	프로파일	8	0	
8102953000	판, 쉬트 및 스트립	8	0	
8102954000	박	8	0	
8102961000	전구 또는 전자관용의 스파이럴 필라멘트	8	0	
8102969000	기타	8	0	
810297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2990000	기타	8	0	
8103201000	괴	3	0	
8103202000	분	3	0	
8103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3900000	기타	8	0	
81041100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8 퍼센트 이상인 것	3	0	
8104190000	기타	3	0	
81042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8104301000	출밥, 연삭설 및 입	8	0	
8104302000	분	8	0	
8104901000	봉	8	0	
8104909000	기타	8	0	
8105201000	코발트의 괴	3	0	
8105202000	코발트 매트와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 생산물	3	0	
8105203000	분	3	0	
8105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05900000	기타	3	0	
8106001010	비스머드의 괴	3	0	
810600102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06001030	분	3	0	
8106009000	기타	3	0	
8107201000	카드뮴의 괴	3	0	
8107202000	분	3	0	
8107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07900000	기타	3	0	
8108201000	괴	3	0	
8108202000	분	3	0	
8108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108901000	판과 스트립	8	0	
8108902000	관	8	0	
8108909000	기타	8	0	
8109201000	괴	3	0	
8109202000	분	3	0	
81093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09901010	관	0	0	
8109901020	판, 쉬트 및 스트립	0	0	
8109901030	봉	0	0	
8109901090	기타	0	0	
8109909000	기타	3	0	
8110100000	안티모니의 괴, 분	3	0	
811020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10900000	기타	3	0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3	0	
8112120000	괴, 분	3	0	
811213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12190000	기타	3	0	
8112210000	괴, 분	3	0	
811222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12290000	기타	3	0	
8112510000	괴, 분	3	0	
8112520000	웨이스트와 스크랩	3	0	
8112590000	기타	3	0	
8112921000	게르마늄	3	0	
8112922000	바나듐	3	0	
8112923000	갈륨	3	0	
8112924000	하프늄	3	0	
8112925000	인듐	3	0	
8112926000	니오븀(컬럼븀)	3	0	
8112927000	레늄	3	0	
8112929000	기타	3	0	
8112991000	게르마늄	3	0	
8112992000	바나듐	3	0	
8112993000	갈륨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112994000	하프늄	3	0	
8112995000	인듐	3	0	
8112996000	니오븀(컬럼븀)	3	0	
8112997000	레늄	3	0	
8112999000	기타	3	0	
8113000000	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3	0	
8201100000	가래 및 삽	8	0	
8201200000	포크	8	0	
8201300000	곡괭이, 픽스, 괭이와 쇠스랑	8	0	
8201400000	도끼, 빌축 및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8	0	
820150000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용 가위를 포함한다)	8	0	
8201600000	물타리전단기, 양손용 전지가위 및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8	0	
8201901000	낫	8	0	
8201902000	초절기	8	0	
8201903000	제재용 썰기	8	0	
8201909000	기타	8	0	
8202101000	목재용의 것	8	0	
8202102000	금속용의 것	8	0	
8202109000	기타	8	0	
8202200000	띠톱의 날	8	0	
8202310000	작용하는 부분이 강제의 것	8	0	
8202391000	작용하는 부분이 텅스텐 카바이드제의 것	8	0	
8202392010	반도체 웨이퍼 또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개별 단위로 절단하는 기기에 사용되는 것	8	0	
8202392090	기타	8	0	
8202393000	작용하는 부분이 기타 재료제의 것	8	0	
8202399000	부분품	8	0	
8202400000	체인톱의 날	8	0	
8202911000	쇠톱의 날	8	0	
8202919000	기타	8	0	
8202990000	기타	8	0	
8203101000	톱날용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203109000	기타	8	0	
8203201000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	8	0	
8203202000	집게	8	0	
8203203000	핀셋	8	0	
8203204000	못뽑기	8	0	
8203209000	기타	8	0	
8203300000	금속 절단용의 가위와 유사한 공구	8	0	
8203401000	파이프커터	8	0	
8203402000	볼트크로퍼 및 클리퍼	8	0	
8203403000	천공편치	8	0	
8203409000	기타	8	0	
8204110000	조정할 수 없는 것	8	0	
8204120000	조정할 수 있는 것	8	0	
8204200000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8205101000	드릴링용의 것	8	0	
8205102000	드레딩용의 것	8	0	
8205103000	태핑용의 것	8	0	
8205109000	기타	8	0	
8205200000	해머와 슬레즈해머	8	0	
8205300000	목재가공용의 대패, 끌, 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8	0	
8205400000	스크루드라이버	8	0	
8205510000	가정용공구	8	0	
8205591000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8	0	
8205592000	땀인두	8	0	
8205593000	그리스 건	8	0	
8205595000	광산용과 토목공사용 공구	8	0	
8205596000	미장 및 도장용 공구	8	0	
8205597000	시계제조용 공구	8	0	
8205599000	기타	8	0	
8205600000	블로램프	8	0	
8205701000	바이스	8	0	
8205702000	클램프	8	0	
8205709000	기타	8	0	
8205801000	모루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205802000	가반식 화덕	8	0	
8205803000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담식 그라인딩휠	8	0	
8205809000	기타	8	0	
820590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8	0	
82060000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8	0	
8207130000	작용하는 부분이 서메트제인 것	8	0	
8207191000	작용하는 부분이 기타 재료제의 것	8	0	
8207199000	부분품	8	0	
8207201000	인발용의 것	8	0	
8207202000	압출용의 것	8	0	
8207301000	프레싱용의 것	8	0	
8207302000	스탬핑용의 것	8	0	
8207303000	편칭용의 것	8	0	
8207309000	기타	8	0	
8207401000	태핑용의 것	8	0	
8207402000	드레딩용의 것	8	0	
8207409000	기타	8	0	
8207501010	고속도강제의 것	8	0	
8207501090	기타	8	0	
8207502000	브레이크비트	8	0	
8207509000	기타	8	0	
8207601000	리머	8	0	
8207602000	랩	8	0	
8207603000	브로치	8	0	
8207609000	기타	8	0	
8207701000	기어커터	8	0	
8207702000	밀링커터	8	0	
8207703000	기어커팅 호브	8	0	
8207704000	로타리파일	8	0	
8207709000	기타	8	0	
8207801000	선반용 공구	8	0	
820780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207901000	다이아몬드 공구	8	0	
8207909000	기타	8	0	
8208100000	금속 가공용의 것	8	0	
8208200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208300000	주방용 기구 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의 것	8	0	
8208400000	농업, 원예 또는 임업용 기계의 것	8	0	
8208900000	기타	8	0	
8209001010	텅스텐 카바이드제의 것으로 감마코팅 처리된 것	8	0	
8209001040	서메트제의 것	8	0	
8209001090	기타	8	0	
8209002010	텅스텐 카바이드제의 것	8	0	
8209002040	서메트제의 것	8	0	
8209002090	기타	8	0	
8210001000	분쇄기 및 마쇄기	8	0	
8210002000	추출기 및 압착기	8	0	
8210003000	비터 및 믹서	8	0	
8210004000	세절기 및 커터	8	0	
8210005000	오프너, 코르크 및 실러	8	0	
8210008000	기타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8	0	
8210009000	부분품	8	0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8	0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	0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기타의 칼	8	0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8	0	
8211940000	칼날	8	0	
8211950000	비(卑)금속제의 손잡이	8	0	
8212100000	면도기	8	0	
8212200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8	0	
8212900000	기타의 부분품	8	0	
8213001000	가정용 또는 사무용 가위	8	0	
8213002010	재단용의 것	8	0	
8213002020	이발용의 것	8	0	
821300209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213003000	매니큐어용 가위	8	0	
8213004000	가위날	8	0	
8213009000	기타	8	0	
8214101000	연필깎이	8	0	
8214109000	기타	8	0	
8214200000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	0	
8214901000	조발기	8	0	
8214902000	정육점 또는 주방용 칼붙이, 초퍼 및 민심용 칼	8	0	
8214909000	기타	8	0	
8215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에 한한다)	8	0	
82152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기타의 세트	8	0	
8215911000	스푼	8	0	
8215912000	포크	8	0	
8215913000	국자와 스키머	8	0	
821591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	0	
8215915000	각종 집게	8	0	
8215919000	기타	8	0	
8215991000	스푼	8	0	
8215992000	포크	8	0	
8215993000	국자와 스키머	8	0	
821599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	0	
8215995000	각종 집게	8	0	
8215999000	기타	8	0	
8301100000	자물쇠	8	0	
8301200000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자물쇠	8	0	
8301300000	가구에 사용되는 종류의 자물쇠	8	0	
8301401010	디지털 도어 록	8	0	
8301401090	기타	8	0	
8301409000	기타	8	0	
8301500000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서 자물쇠가 결합된 것	8	0	
8301600000	부분품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30170000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8	0	
8302100000	경첩	8	0	
8302200000	카스터	8	0	
8302300000	자동차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	0	
8302411000	문 또는 창에 적합한 것	8	0	
8302419000	기타	8	0	
8302420000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8	0	
8302491000	트렁크, 슈트케이스 또는 이와 유사한 여행용구에 적합한 것	8	0	
8302499000	기타	8	0	
8302500000	모자걸이,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	0	
8302600000	자동도어 폐지기	8	0	
8303001000	금고	8	0	
8303009000	기타	8	0	
8304000000	비(卑)금속제의 서류정리함, 카드인덱스함, 페이퍼트레이, 페이퍼레스트, 펜트레이,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	0	
8305100000	루스-리프식 바인더 또는 서류철용 피팅	8	0	
8305200000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8	0	
8305900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	0	
8306100000	벨, 징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83062100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	0	
8306290000	기타	8	0	
8306301000	사진틀, 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8	0	
8306302000	비금속제의 거울	8	0	
8307100000	철강제의 것	8	0	
8307900000	기타 비(卑)금속제의 것	8	0	
8308101000	흑	8	0	
8308102000	아이 및 아이릿	8	0	
8308200000	관리벳 또는 이고리벳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308901000	유금 및 유금이 붙은 프레임	8	0	
8308902000	버클 및 버클유금	8	0	
8308903000	구슬	8	0	
8308904000	스팽글	8	0	
8308909000	기타	8	0	
8309100000	크라운코르크	8	0	
8309901000	캔뚜껑(E.O.E)	8	0	
8309909000	기타	8	0	
8310000000	비(卑)금속제의 사인판, 명판, 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 숫자, 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	0	
83111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	0	
8311109000	기타	8	0	
83112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	0	
8311209000	기타	8	0	
83113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	0	
8311309010	납-주석 합금의 땀납	8	0	
8311309090	기타	8	0	
8311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	0	
8311909000	기타	8	0	
8401100000	원자로	0	0	
8401200000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와 그 부분품	0	0	
8401300000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카트리지)	0	0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0	0	
840211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보일러	8	0	
840212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보일러	8	0	
8402191000	열매체보일러	8	0	
8402199000	기타	8	0	
8402200000	과열수보일러	8	0	
840290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8	0	
8402902000	과열수보일러의 것	8	0	
8403101000	중앙난방용의 보일러로서 유류사용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03102000	중양난방용의 보일러로서 석탄사용의 것	8	0	
8403103000	중양난방용의 보일러로서 가스사용의 것	8	0	
8403109000	기타	8	0	
8403900000	부분품	8	0	
8404101000	연료절약기	8	0	
8404102000	과열기	8	0	
8404103000	그을음제거기	8	0	
8404104000	가스회수기	8	0	
8404109000	기타	8	0	
8404200000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8	0	
8404901000	보일러용의 응축기의 것	8	0	
8404902000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의 것	8	0	
8404909000	기타	8	0	
84051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8	0	
8405102000	수성가스 발생기	8	0	
84051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8	0	
8405104000	산소 발생기	8	0	
8405109000	기타	8	0	
84059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2000	수성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4000	산소 발생기의 것	8	0	
8405909000	기타	8	0	
8406103000	출력이 2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0	
8406109000	기타	5	0	
8406811000	출력이 40 메가와트 초과 100 메가와트 이하인 것	5	0	
8406812000	출력이 100 메가와트 초과 300 메가와트 이하인 것	5	0	
8406813000	출력이 30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0	
8406820000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5	0	
8406901000	선박추진용 증기터빈의 것	8	0	
8406909000	기타	8	0	
8407100000	항공기용 엔진	0	0	
8407210000	아웃보드 모터	8	0	
8407290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0731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19000	기타	8	0	
840732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29000	기타	8	0	
840733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39000	기타	8	0	
840734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49000	기타	8	0	
8407901000	철도용 기관차의 것	0	0	
8407909000	기타	8	0	
840810100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40810200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초과 2,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408103000	출력이 2,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408201000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2000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초과 2,000 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3000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초과 4,000 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4000	실린더용량이 4,000 시시 초과 10,000 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5000	실린더용량이 10,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8	0	
8408901010	철도용 기관차의 내연기관	0	0	
8408901090	기타	5	0	
8408909010	선박용 내연기관	8	0	
8408909021	400 킬로와트 이상 출력의 발전기용의 것[분당 회전수(알피엠)가 1,500 또는 1,800 인 것에 한한다]	4	0	
8408909029	기타	8	0	
8408909030	제 8429 호용의 내연기관	8	0	
8408909090	기타	8	0	
8409100000	항공기 엔진용의 것	5	0	
8409911000	제 87 류의 차량용의 것	8	0	
8409912000	아웃보드 모터의 것	8	0	
8409919000	기타	8	0	
8409991000	철도용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5	0	
8409992000	제 87 류의 차량용의 것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0999301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0	
840999302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초과 2,000 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0	
8409993030	출력이 2,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것	8	0	
8409999010	발전용의 것	8	0	
8409999090	기타	8	0	
8410111000	수력터빈	0	0	
8410119000	기타	8	0	
8410120000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8410130000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8410901010	수력터빈의 것	0	0	
8410901090	기타	8	0	
8410909010	수력터빈의 것	0	0	
8410909090	기타	8	0	
841111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119010	선박용의 것	8	0	
8411119090	기타	8	0	
841112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129010	선박용의 것	8	0	
8411129090	기타	8	0	
841121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219010	선박용의 것	8	0	
8411219090	기타	8	0	
841122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229010	선박용의 것	8	0	
8411229090	기타	8	0	
841181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819010	선박용의 것	8	0	
8411819090	기타	8	0	
841182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829010	선박용의 것	8	0	
8411829090	기타	8	0	
841191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91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1199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11999000	기타	8	0	
8412101010	램제트 또는 펄스제트 엔진	5	0	
8412101090	기타	5	0	
8412109000	기타	8	0	
8412211000	액압실린더	8	0	
8412219000	기타	8	0	
8412290000	기타	8	0	
8412310000	리니어 액팅식의 것(실린더)	8	0	
8412390000	기타	8	0	
8412800000	기타	8	0	
8412901010	램제트 또는 펄스제트 엔진의 것	5	0	
8412901090	기타	5	0	
8412902000	수력엔진의 것	0	0	
8412909000	기타	8	0	
8413110000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것에 한한다)	8	0	
8413190000	기타	8	0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 또는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8	0	
8413301000	항공기의 것	8	0	
8413302000	철도용 기관차의 것	8	0	
8413303000	선박의 것	8	0	
8413304000	제 87 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것	8	3	
8413309000	기타	8	0	
8413400000	콘크리트 펌프	8	0	
8413504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509010	플러저펌프	8	0	
8413509020	피스톤펌프	8	0	
8413509030	다이아프램펌프	8	0	
8413509090	기타	8	0	
8413604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609010	기어펌프	8	0	
8413609020	베인펌프	8	0	
8413609030	스크루펌프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13609090	기타	8	0	
8413703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709010	터빈펌프	8	0	
8413709020	볼류트 펌프	8	0	
8413709090	기타	8	0	
8413811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819000	기타	8	0	
8413820000	액체엘리베이터	8	0	
8413911000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 펌프의 것	8	0	
8413912000	내연기관의 것	8	0	
8413913000	왕복펌프의 것	8	0	
8413914000	원심펌프의 것	8	0	
8413915000	로타리펌프의 것	8	0	
8413919000	기타	8	0	
8413920000	액체 엘리베이터의 것	8	0	
84141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141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도달진공도가 9×10^{-3} 토르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0	
8414109090	기타	8	0	
8414200000	손 또는 발작동식의 기체펌프	8	0	
841430100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430200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4400000	예인용의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8	0	
841451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14519000	기타	8	0	
841459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14599000	기타	8	0	
84146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14609000	기타	8	0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0	
8414809110	항공기용의 것	8	0	
8414809190	기타	8	0	
8414809210	사용동력이 74.6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4809220	사용동력이 74.6 킬로와트 이상 373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14809230	사용동력이 373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4809900	기타	8	0	
8414901000	팬과 후드의 것	8	0	
8414909010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의 것	8	0	
84149090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것은 제외한다)	8	0	
8414909090	기타	8	0	
8415101011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5101012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101021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5101022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10201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510202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200000	자동차용의 것(탑승자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8	0	
8415810000	냉장 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	8	0	
8415820000	기타(냉장 유닛을 결합한 것에 한한다)	8	0	
8415830000	냉장 유닛을 결합하지 아니한 것	8	0	
8415900000	부분품	8	0	
8416101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 리터 이하인 것	8	0	
8416102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 리터 초과 1,500 리터 미만인 것	8	0	
8416103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 리터 이상인 것	8	0	
8416201000	노용 버너로서 분쇄한 고체연료용의 것	8	0	
8416202000	노용 버너로서 기체연료용의 것	8	0	
8416209000	기타	8	0	
8416300000	기계식 스토커(그들의 기계식 불판, 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	0	
8416901000	노용 버너의 것	8	0	
8416909000	기타	8	0	
8417101010	철광석용의 것	8	0	
841710109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17102010	철강용의 것	8	0	
8417102090	기타	8	0	
841720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의 오븐을 포함한다)	8	0	
8417801010	시멘트용의 것	8	0	
8417801020	유리용의 것	8	0	
8417801030	도자기용의 것	8	0	
8417801090	기타	8	0	
8417802000	이화학용의 것	8	0	
8417809000	기타	8	0	
8417900000	부분품	8	0	
8418101010	용량이 200 리터 이하인 것	8	0	
8418101020	용량이 200 리터 초과 400 리터 이하인 것	8	0	
8418101030	용량이 4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8	0	
8418109000	기타	8	0	
8418211000	용량이 200 리터 미만인 것	8	0	
8418212000	용량이 200 리터 이상 400 리터 미만인 것	8	0	
8418213000	용량이 400 리터 이상인 것	8	0	
8418291000	흡수식의 것(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8	0	
8418299000	기타	8	0	
8418300000	체스트형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0	
841840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0	
8418501000	쇼케이스	8	0	
8418509000	기타	8	0	
8418610000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	0	
841869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8	0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8	0	
8418692020	아이스큐버	8	0	
8418692030	냉수기	8	0	
8418692090	기타	8	0	
8418693000	열펌프	8	0	
8418910000	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가구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8	0	
8418999000	기타	8	0	
8419110000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	8	0	
8419190000	기타	8	0	
8419200000	내과용, 외과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0	0	
8419310000	농산물용의 것	8	0	
8419320000	목재,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용의 것	8	0	
8419391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핀 드라이어	3	0	
8419399000	기타	8	0	
8419400000	증류기 또는 정류기	8	0	
84195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19509000	기타	8	0	
8419600000	기체 액화용의 기기	8	0	
8419810000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	8	0	
8419891000	인조섬유 제조용 종합기	8	0	
8419899010	가열기	8	0	
8419899020	냉각기	8	0	
8419899030	증발기	8	0	
8419899040	응축기	8	0	
8419899050	태양열 집열기 및 그 장치	8	0	
8419899060	고온 또는 저온향온기	8	0	
8419899070	항온항습기	8	0	
8419899080	공기조절기	8	0	
8419899090	기타	8	0	
8419901000	인조섬유 제조용 종합기의 것	8	0	
8419909010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8	0	
841990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8	0	
8419909030	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8	0	
8419909040	내과용, 외과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의 것	0	0	
8419909090	기타	8	0	
8420101000	제지용의 것	8	0	
8420102000	직물용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20103000	가죽용의 것	8	0	
8420104000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것	8	0	
8420109000	기타	8	0	
8420910000	실린더	8	0	
8420990000	기타	8	0	
8421110000	크림분리기	8	0	
8421120000	의류탈수기	8	0	
8421191000	내과용, 외과용 또는 이화학용의 것	8	0	
8421192000	식품공업용의 것	8	0	
8421193000	석유화학공업용의 것	8	0	
8421199000	기타	8	0	
8421211000	가정형의 것	8	0	
8421219010	수영장용 여과 또는 청정기	8	0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3	0	
8421219090	기타	8	0	
84212200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8	0	
8421231000	제 87 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	3	
8421232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21239000	기타	8	0	
8421291000	낙농용의 것	8	0	
8421292000	유해성 폐수처리용의 것	8	0	
8421293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21294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21299000	기타	8	0	
8421311000	제 87 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	0	
8421312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21319000	기타	8	0	
8421391000	가정형의 것	8	0	
8421392000	제 87 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의 것	8	0	
8421399010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것	8	0	
842139902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21399030	항공기용의 것	8	0	
8421399090	기타	8	0	
8421910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8	0	
8421991000	제 87 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의 것	8	0	
8421999010	내연기관용의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21999020	정수기 필터	8	0	
842199903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21999090	기타	8	0	
8422110000	가정형의 것	8	0	
8422190000	기타	8	0	
842220000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8	0	
842230100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충전용 기계	8	0	
842230200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봉합용 또는 봉지용 기계	8	0	
842230300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캡슐 취부용 또는 레이블 첨부용 기계	8	0	
8422304000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8	0	
8422309000	기타	8	0	
8422404000	열수축포장기계	8	0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8	0	
8422409020	자동결속기	8	0	
8422409030	진공포장기	8	0	
8422409090	기타	8	0	
8422901000	접시세척기의 것	8	0	
8422902000	기타 포장기계의 것	8	0	
8422909000	기타	8	0	
8423100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의 저울	8	0	
8423201000	컨베이어 스케일	8	0	
8423202000	휠리드 미터 또는 휠리드웨어	8	0	
8423209000	기타	8	0	
842330000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을 포함한다)	8	0	
8423810000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8423820000	최대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초과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8423891000	트럭 스케일	8	0	
842389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23901010	정도등급을 가진 분동	8	0	
8423901090	기타	8	0	
8423909000	저울의 부분품	8	0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8424201000	스프레이 건	8	0	
8424202010	로봇형의 것	8	0	
8424202090	기타	8	0	
8424209000	기타	8	0	
8424301000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	8	0	
8424302000	고압증기 세척기	8	0	
8424309000	기타	8	0	
8424811000	자주식 방제기	8	0	
8424812000	기타 방제기	8	0	
8424819000	기타	8	0	
842489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24899000	기타	8	0	
8424901000	소화기의 것	8	0	
8424902000	스프레이 건의 것	8	0	
8424903000	방제기의 것	8	0	
8424909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24909090	기타	8	0	
8425111010	체인블록	0	0	
8425111090	기타	0	0	
8425112010	체인블록	0	0	
8425112090	기타	0	0	
8425190000	기타	0	0	
8425311000	광구용 와인딩 기어, 원치(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에 한한다)	0	0	
8425319000	기타	0	0	
8425391000	광구용 와인딩 기어, 원치(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에 한한다)	0	0	
842539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254100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	0	0	
8425421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8425422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8425491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8425492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8426110000	고정식의 천장주행 크레인	0	0	
84261210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0	0	
8426122000	스트래들 캐리어	0	0	
8426190000	기타	0	0	
8426200000	타워크레인	0	0	
8426301000	문형 크레인	0	0	
8426302000	정치형 지브 크레인	0	0	
8426410000	타이어가 달린 것	0	0	
8426491000	신축봉식의 것	0	0	
8426492000	앵글식의 것	0	0	
8426499000	기타	0	0	
8426910000	도로주행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0	0	
8426991000	선박의 데릭	0	0	
8426999000	기타	0	0	
8427101000	카운트 밸런스식의 것	8	0	
8427102000	카운트 밸런스식이 아닌 것	8	0	
8427109000	기타	8	0	
8427201010	적재중량이 3 톤 이하인 것	8	0	
8427201020	적재중량이 3 톤을 초과하는 것	8	0	
8427209000	기타	8	0	
8427901000	수동식 팰리트 트럭	8	0	
8427909000	기타	8	0	
8428101000	리프트	0	0	
8428102000	스킵호이스트	0	0	
8428201000	뉴매틱 엘리베이터	0	0	
8428202000	뉴매틱 컨베이어	0	0	
8428310000	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	0	0	
8428320000	기타 버켓형의 것	0	0	
8428331010	분당속도가 240 미터 미만인 것	0	0	
8428331020	분당속도가 240 미터 이상인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28332000	컨베이어	0	0	
8428390000	기타	0	0	
8428401000	에스컬레이터	0	0	
8428402000	무빙 워크웨이(이동식 보도)	0	0	
8428600000	텔레페릭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 퓨니쿨러용의 견인장치	0	0	
8428901000	광산용 왜건푸셔, 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 화차 경사기 및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0	0	
8428909000	기타	0	0	
8429111000	불도우저	0	0	
8429112000	앵글도저	0	0	
8429190000	기타	0	0	
8429200000	그레이더와 레벨러	0	0	
8429300000	스크레이퍼	0	0	
8429401000	탬핑머신	0	0	
8429402000	로드롤러	0	0	
8429511010	로우더	0	0	
8429511020	백호우 로우더	0	0	
8429511030	스키드스티어 로우더	0	0	
8429511090	기타	0	0	
8429519000	기타	0	0	
8429521010	휠 타입의 것	0	0	
8429521020	무한궤도식의 것	0	0	
8429521090	기타	0	0	
8429529000	기타	0	0	
8429591000	메커니컬 셔블	0	0	
8429599000	기타	0	0	
8430100000	항타기와 항발기	0	0	
8430200000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0	0	
8430310000	자주식의 것	0	0	
8430390000	기타	0	0	
8430411000	천공용 기계	0	0	
8430412000	시굴용 기계	0	0	
8430491000	시추기	0	0	
843049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30500000	기타의 기계(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30610000	탬핑용 또는 콤팩팅용의 기계	0	0	
8430690000	기타	0	0	
8431100000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0	0	
8431200000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8	0	
8431310000	리프트, 스킵호이스트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0	0	
8431390000	기타	0	0	
8431411000	엑스커베이터의 것	0	0	
8431419000	기타	0	0	
8431420000	불도저 또는 앵글도저의 블레이드	0	0	
8431430000	소호 제 8430.41 호 또는 제 8430.49 호의 천공 또는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0	0	
8431491000	유압브레이크	0	0	
8431492000	크라샤	0	0	
8431499000	기타	0	0	
8432100000	플라우(쟁기)	0	0	
84322100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	0	
8432291000	스카리파이어	0	0	
8432292000	제초기	0	0	
8432299000	기타	0	0	
8432301000	파종기	0	0	
8432302000	식부기	0	0	
8432303000	이식기	0	0	
8432309000	기타	0	0	
8432401000	퇴비살포기	0	0	
8432402000	비료살포기	0	0	
8432800000	기타의 기계	0	0	
8432901000	플라우(쟁기)의 것	0	0	
8432902000	자동경운기의 것	0	0	
8432909000	기타	0	0	
8433110000	동력식의 것(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0	0	
8433190000	기타	0	0	
8433200000	기타의 풀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의 커터바를 포함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33300000	기타의 건조제조용 기계	0	0	
8433400000	짚 또는 건조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0	0	
8433510000	수확·탈곡 겸용기	0	0	
8433520000	기타의 탈곡기	0	0	
8433530000	구경 또는 괴경의 수확기(근채 수확기)	0	0	
8433590000	기타	0	0	
8433601000	조란 선별기	0	0	
8433609010	농산물 선별기	0	0	
8433609090	기타	0	0	
8433901000	수확·탈곡 겸용기의 것	0	0	
8433902000	풀베는 기계의 것	0	0	
8433909000	기타	0	0	
8434100000	착유기	0	0	
8434201000	균질기	0	0	
8434209000	기타	0	0	
8434901000	착유기의 것	0	0	
8434902000	균질기의 것	0	0	
8434909000	기타	0	0	
8435101000	과즙 추출용의 프레스	8	0	
8435102000	과즙 추출용의 크러셔	8	0	
8435103000	과즙음료 제조용의 균질기	8	0	
8435109000	기타	8	0	
8435900000	부분품	8	0	
8436101000	사료절단기	8	0	
8436102000	사료분쇄기	8	0	
8436103000	사료배합기	8	0	
8436109000	기타	8	0	
8436211000	부란기	8	0	
8436219000	기타	8	0	
8436290000	기타	8	0	
8436800000	기타의 기계	8	0	
8436910000	가금 사육용 기계 또는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8	0	
8436990000	기타	8	0	
8437101000	목초종자 정선기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37109000	기타	8	0	
8437801000	제분업용 기계	8	0	
8437802000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기계	8	0	
8437901000	종자,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 분류 또는 선별기의 것	8	0	
8437909000	기타	8	0	
8438101000	베이커리 기계	8	0	
8438109000	기타	8	0	
8438200000	과자, 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의 기계	8	0	
8438300000	설탕 제조용 기계	8	0	
8438400000	양조용 기계	8	0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8	0	
8438509000	기타	8	0	
8438600000	과실, 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8	0	
843880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8	0	
8438809000	기타	8	0	
8438900000	부분품	8	0	
8439101000	쇄목기	8	0	
8439102000	절단기	8	0	
8439103000	스트레이너	8	0	
8439104000	프레스파아트기	8	0	
8439105000	비이터어	8	0	
8439109000	기타	8	0	
8439201000	초지 준비기	8	0	
8439202000	초지기	8	0	
8439209000	기타	8	0	
8439301000	권취기	8	0	
8439302000	표면 가공기	8	0	
8439303000	지 또는 판지의 침투 가공기	8	0	
8439309000	기타	8	0	
84399100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8	0	
8439990000	기타	8	0	
8440101000	제본용 재봉기	8	0	
8440102000	제본용 접는 기계	8	0	
844010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40901000	제본용 재봉기의 것	8	0	
8440909000	기타	8	0	
8441100000	절단기	8	0	
8441201000	종이백 또는 봉지 제조용 기계	8	0	
8441202000	봉투 제조기	8	0	
8441300000	카톤, 박스, 케이스, 튜브, 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8	0	
8441400000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용 기계	8	0	
8441801000	지 또는 판지의 트리밍기	8	0	
8441809000	기타	8	0	
8441900000	부분품	8	0	
8442301000	활자 주조용 기계류 및 장치	8	0	
8442302000	특수 성형 프레스	8	0	
8442303000	산 부식용 기기	8	0	
8442304000	사진 식자기	8	0	
8442305000	다른 공정에 의한 식자용의 기계류, 장치 및 장비(활자 주조용 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8442309000	기타	8	0	
8442401000	식자용 기계류 및 장치의 것	8	0	
8442402000	활자주조용 기계류 및 장치의 것	8	0	
8442409000	기타	8	0	
8442500000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 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	0	
8443110000	오프셋 인쇄기계(릴식의 것에 한한다)	8	0	
8443120000	오프셋 인쇄기계(슈이트식 사무실용의 것으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아니한 상태의 슈이트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43130000	기타 오프셋 인쇄기계	8	0	
844314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8	0	
844315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8	0	
8443160000	곡면인쇄용 기계	8	0	
8443170000	그라비아인쇄용 기계	8	0	
8443191000	직물날염기	8	0	
8443192000	기타의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노름 또는 기타 재료에 동일한 모양, 동일한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인쇄기	8	0	
8443199000	기타	8	0	
8443311010	레이저 프린터	0	0	
8443311020	도트 프린터	0	0	
8443311030	잉크젯 프린터	0	0	
8443311090	기타	0	0	
8443312000	팩시밀리(프린터 또는 복사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한한다)	0	0	
8443313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43313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8	0	
8443314000	잉크젯방식 인쇄기(소호 제 8443.31.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	0	
8443321010	레이저 프린터	0	0	
8443321020	도트 프린터	0	0	
8443321030	잉크젯 프린터	0	0	
8443321090	기타	0	0	
8443322000	팩시밀리	0	0	
8443323000	텔레프린터	0	0	
8443324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43324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8	0	
8443325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43325090	기타	8	0	
8443391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443391090	기타	8	0	
8443392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43392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에 한한다)	8	0	
8443393010	광학기구를 갖춘 것	0	0	
8443393020	밀착식의 것	8	0	
8443394000	열식복사기	8	0	
8443399000	기타	8	0	
8443911010	자동급지기	8	0	
8443911020	접기, 풀칠, 천공 및 지철용의 기계	8	0	
8443911030	연속번호기	8	0	
8443911090	기타	8	0	
8443919000	기타	8	0	
8443991000	소호 제 8443.31.10 호 또는 제 8443.32.10 호의 것	0	0	
8443992000	팩시밀리의 것	0	0	
8443993000	텔레프린터의 것	0	0	
8443994010	자동 문서공급기	0	0	
8443994020	지공급기	0	0	
8443994030	분류기	0	0	
8443994090	기타	0	0	
8443995000	소호 제 8443.31.4000 호, 제 8443.32.5010 호, 제 8443.32.5090 호, 제 8443.39.1010 호 또는 제 8443.39.1090 호의 것	8	0	
8443999000	기타	8	0	
8444001000	인조섬유 방사기	5	0	
8444002000	인조섬유 연신기	5	0	
8444003000	인조섬유 텍스처기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44004000	인조섬유 절단기	5	0	
8444009000	기타	5	0	
8445110000	카드기	5	0	
8445120000	코밍기	5	0	
8445130000	연조기 또는 조방기	5	0	
8445191000	훈타면기	5	0	
8445192000	래프성형기	5	0	
8445193000	조면기	8	0	
8445199000	기타	5	0	
8445201010	정방기	5	0	
8445201090	기타	5	0	
8445202010	정방기	5	0	
8445202090	기타	5	0	
8445203000	견방의 것	5	0	
8445209000	기타	5	0	
8445301000	휠라멘트사용의 것	5	0	
8445302000	방적사용의 것	5	0	
8445309000	기타	5	0	
8445401000	콘 와인더	5	0	
8445402000	치이즈 와인더	5	0	
8445409000	기타	5	0	
8445901000	정경기	8	0	
8445902000	정경호부기	8	0	
8445903000	통경기	8	0	
8445904000	연경기	8	0	
8445909000	기타	8	0	
84461000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8	0	
8446211000	면직기	8	0	
8446212000	모직기	8	0	
8446213000	견직기	8	0	
8446219000	기타	8	0	
8446290000	기타	8	0	
8446301010	면직기	8	0	
8446301020	견직기	8	0	
8446301030	타올직기	8	0	
844630109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46302010	면직기	8	0	
8446302020	견직기	8	0	
8446302030	타올직기	8	0	
8446302090	기타	8	0	
8446303010	면직기	8	0	
8446303020	견직기	8	0	
8446303030	타올직기	8	0	
8446303090	기타	8	0	
8446309010	면직기	8	0	
8446309020	견직기	8	0	
8446309030	타올직기	8	0	
8446309090	기타	8	0	
8447111000	양말편기	8	0	
8447119000	기타	8	0	
8447120000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8447201010	수편기(반자동 횡편기를 포함한다)	8	0	
8447201020	자동횡편기	8	0	
8447201090	기타	8	0	
8447202010	랏셀기	8	0	
8447202020	트리코트기	8	0	
8447202090	기타	8	0	
8447209000	기타	8	0	
8447901000	레이스기	8	0	
8447902010	자동자수기	8	0	
8447902090	기타	8	0	
8447903000	결망기	8	0	
8447909000	기타	8	0	
8448111000	도비기	8	0	
8448112000	자카드기	8	0	
8448113000	카드 천공기	8	0	
8448119000	기타	8	0	
8448191000	경사용 비임스탠드 또는 크리얼	8	0	
8448192000	자동정지기	8	0	
8448193000	경사연접기	8	0	
8448199010	사(絲) 제조용 보조기계(조면기는 제외한다)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48199090	기타	8	0	
8448201000	방사 니플	5	0	
8448209000	기타	5	0	
8448310000	침포	8	0	
8448321000	소면기의 것(가닛와이어는 제외한다)	5	0	
8448329000	기타	8	0	
8448331000	스핀들플라이어	5	0	
8448339010	스핀들	8	0	
8448339020	스피닝링	8	0	
8448339030	링트래블러	8	0	
8448391000	경사비임	8	0	
8448399000	기타	8	0	
8448420000	직조기용의 바디, 종광과 종광 프레임	8	0	
8448491000	셔틀	8	0	
8448499000	기타	8	0	
8448511000	메리야스용 바늘	8	0	
8448512000	자수기용 바늘	8	0	
8448513000	레이스기용 바늘	8	0	
8448519000	기타	8	0	
8448590000	기타	8	0	
8449001010	펠트모자 제조용 기계	8	0	
8449001090	기타	8	0	
8449002000	모자제조용의 형	8	0	
8449009000	부분품	8	0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8	0	
8450120000	기타 세탁기(원심 탈수기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8	0	
8450190000	기타	8	0	
8450200000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8	0	
8450900000	부분품	8	0	
8451100000	드라이클리닝기	8	0	
8451210000	1 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8451290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51301000	스티엄 프레스	8	0	
8451309000	기타	8	0	
8451401000	세척기	8	0	
8451402000	표백기	8	0	
8451403000	염색기	8	0	
8451501000	권취기, 재권취기	8	0	
8451502000	절단기	8	0	
8451509000	기타	8	0	
8451801000	열처리기	8	0	
8451802000	폭출기	8	0	
8451803000	머서라이징기	8	0	
8451809010	방축가공기	8	0	
8451809020	도포 또는 칠투기	8	0	
8451809030	기모기	8	0	
8451809040	패딩기	8	0	
8451809090	기타	8	0	
8451901000	드라이크리닝기의 것	8	0	
8451902000	건조기의 것	8	0	
8451909000	기타	8	0	
8452101010	직진형의 것	8	0	
8452101020	지그재그형의 것	8	0	
8452101030	프리아암식의 것	8	0	
8452101090	기타	8	0	
8452102000	수동식의 것	8	0	
8452211000	신발제조용의 것	8	0	
8452212000	포장대 봉합용의 것	8	0	
8452213000	피혁 또는 기타 후물용의 것	8	0	
8452214000	모피용의 것	8	0	
8452219000	기타	8	0	
8452291000	신발 제조용의 것	8	0	
8452292000	포장대 봉합용의 것	8	0	
8452293000	피혁 또는 기타 후물용의 것	8	0	
8452294000	모피용의 것	8	0	
8452299000	기타	8	0	
8452300000	재봉기용 바늘	8	0	
8452400000	재봉기용의 가구, 밀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52900000	재봉기의 기타 부분품	8	0	
8453101000	원피, 모피 또는 피혁의 유평준비기계	8	0	
8453102000	원피, 모피 또는 피혁의 유평기계	8	0	
8453103000	원피, 모피 또는 피혁의 가공기계	8	0	
8453201000	신발제조기계	8	0	
8453202000	신발수선기계	8	0	
8453800000	기타의 기계	8	0	
8453900000	부분품	8	0	
8454100000	전로	8	0	
8454200000	잉곳용의 주형과 레이들	8	0	
8454301010	다이캐스팅기	8	0	
8454301090	기타	8	0	
8454309000	기타	8	0	
8454901000	전로의 것	8	0	
8454909000	기타	8	0	
8455100000	관 압연기	8	0	
8455210000	열간 또는 열·냉간 겸용의 압연기	8	0	
8455220000	냉간 압연기	8	0	
8455301000	주조제의 것	8	0	
8455302000	단조제의 것	8	0	
8455309000	기타	8	0	
8455900000	기타 부분품	8	0	
8456103000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8	0	
8456109000	기타	8	0	
8456200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8	0	
8456301010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	8	0	
8456301090	기타	8	0	
8456309000	기타	8	0	
8456900000	기타	8	0	
8457101000	수직형	8	0	
8457102000	수평형	8	0	
8457103000	문형	8	0	
8457109000	기타	8	0	
8457200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57300000	멀티스테이션용의 트랜스퍼 머신	8	0	
84581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58190000	기타	8	0	
84589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58990000	기타	8	0	
8459100000	웨이타임 유닛 헤드머신	8	0	
84592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59291000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8	0	
8459292000	직립 드릴링 머신	8	0	
8459293000	다축 드릴링 머신	8	0	
8459299000	기타	8	0	
84593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59390000	기타	8	0	
8459401000	지그 보링머신	8	0	
8459402000	수평 보링머신	8	0	
8459409000	기타	8	0	
84595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59590000	기타	8	0	
845961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0	
8459612000	평삭 밀링머신	8	0	
8459619000	기타	8	0	
845969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0	
8459692000	평삭 밀링머신	8	0	
8459693000	만능공구 밀링머신	8	0	
8459694000	프로필 밀링머신	8	0	
8459699000	기타	8	0	
8459701000	태핑머신	8	0	
8459709000	기타의 나사절삭기	8	0	
84601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60190000	기타	8	0	
8460211000	원통연삭기	8	0	
8460212000	내면연삭기	8	0	
8460213000	무심연삭기	8	0	
8460214000	프로파일연삭기	8	0	
8460219000	기타	8	0	
8460291000	원통연삭기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60292000	내면연삭기	8	0	
8460293000	무심연삭기	8	0	
8460294000	프로파일연삭기	8	0	
8460299000	기타	8	0	
84603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60390000	기타	8	0	
8460401000	호닝머신	8	0	
8460402000	래핑머신	8	0	
8460900000	기타	8	0	
8461200000	셰이핑머신 또는 슬로팅머신	8	0	
8461300000	부로칭머신	8	0	
846140101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61401090	기타	8	0	
8461402000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8	0	
8461500000	톱기계 또는 절단기	8	0	
8461900000	기타	8	0	
8462101000	에어해머	8	0	
8462109000	기타	8	0	
84622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62290000	기타	8	0	
8462310000	수치제어식의 것	8	0	
8462390000	기타	8	0	
8462411000	편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8462412000	낫칭기	8	0	
8462491000	편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8462492000	낫칭기	8	0	
846291100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200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 초과 3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3000	최고가압이 300 메트릭톤 초과 1,0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4000	최고가압이 1,00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8	0	
8462991010	최고가압이 3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20	최고가압이 30 메트릭톤 초과 1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3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 초과 3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62991040	최고가압이 300 메트릭톤 초과 6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50	최고가압이 600 메트릭톤 초과 1,5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90	기타	8	0	
8462999000	기타	8	0	
8463100000	드로우 벤치(봉, 관, 프로파일, 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하는 것에 한한다)	8	0	
8463200000	나사전조기	8	0	
8463300000	선가공기	8	0	
8463900000	기타	8	0	
8464100000	톱기계	8	0	
8464201000	광학용 또는 안경용 유리용의 것	8	0	
8464202000	기타 유리용의 것	8	0	
8464209000	기타	8	0	
8464901000	유리 냉간 가공기계	8	0	
8464902000	콘크리트 가공기계	8	0	
8464903000	도자기 가공기계	8	0	
8464909000	기타	8	0	
846510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109000	기타	8	0	
846591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19000	기타	8	0	
846592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29000	기타	8	0	
846593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39000	기타	8	0	
846594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49000	기타	8	0	
846595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59000	기타	8	0	
846596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69000	기타	8	0	
8465991000	목재 가공용의 것	8	0	
8465999000	기타	8	0	
8466100000	틀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662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66209000	기타	8	0	
8466300000	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8	0	
8466910000	제 8464 호의 기계용의 것	8	0	
8466920000	제 8465 호의 기계용의 것	8	0	
8466930000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의 것	8	0	
8466940000	제 8462 호 또는 제 8463 호의 기계용의 것	8	0	
8467111000	착암기	8	0	
8467112000	스크루 드라이버	8	0	
8467113000	그라인더	8	0	
8467114000	임팩트 렌치	8	0	
8467115000	드릴	8	0	
8467119000	기타	8	0	
8467191000	착암기	8	0	
8467199000	기타	8	0	
8467210000	각종의 드릴	8	0	
8467220000	톱	8	0	
8467290000	기타	8	0	
8467810000	체인톱	8	0	
8467891010	소호 제 8430.49 호 또는 제 8479.10 호의 것	0	0	
8467891020	소호 제 8479.89.9010 호, 제 8479.89.9030 호 또는 제 8479.89.9091 호의 것	8	0	
8467891090	기타	8	0	
8467899000	기타	8	0	
8467910000	체인톱의 것	8	0	
84679200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8	0	
8467990000	기타	8	0	
8468100000	수지식 취관	8	0	
8468201000	가스 용접기	8	0	
8468202000	가스 자동절단기	8	0	
8468209000	기타	8	0	
8468800000	기타의 기기	8	0	
8468900000	부분품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69001010	워드프로세싱 머신	0	0	
8469001020	자동타자기	8	0	
8469002000	기타의 전동식 타자기	8	0	
8469003000	기타의 수동식 타자기	8	0	
8470103010	17 단위 미만인 것	0	0	
8470103020	17 단위 이상인 것	0	0	
8470104010	소호 제 8472.90.9000 호의 것	0	0	
8470104090	기타	0	0	
8470211000	17 단위 미만인 것	0	0	
8470212000	17 단위 이상인 것	0	0	
8470290000	기타	0	0	
8470300000	기타의 계산기	0	0	
8470500000	금전 등록기	0	0	
8470901000	우편요금계기	0	0	
8470902000	표권 발행기	0	0	
8470903000	회계기	0	0	
8470909000	기타	0	0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0	0	
847141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1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19000	기타	0	0	
84714910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9102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91090	기타	0	0	
847149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7150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50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509000	기타	0	0	
8471601010	문자(표식)독취장치	0	0	
8471601020	키 입력장치	0	0	
8471601030	마우스	0	0	
8471601040	스캐너	0	0	
8471601090	기타	0	0	
8471602000	출력장치	0	0	
8471603020	비디오텍스 또는 텔레텍스	0	0	
8471603030	음성 입출력장치	0	0	
8471603090	기타	0	0	
8471701000	주기억장치(램 및 롬)	0	0	
8471702010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31	씨디(CD) 드라이브	0	0	
8471702032	디브이디(DVD) 드라이브	0	0	
8471702033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39	기타	0	0	
8471702090	기타	0	0	
8471709000	기타	0	0	
847180000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0	0	
8471900000	기타	0	0	
8472100000	등사기	8	0	
8472301000	편지 분류기	8	0	
8472302000	소인기	8	0	
8472309000	기타	8	0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0	0	
8472901020	현금자동입금기	0	0	
8472901040	현금자동지불 및 입금기	0	0	
8472901050	주화계수 또는 포장기	8	0	
8472901090	기타	8	0	
8472902000	등사용 및 인쇄용 자동제판기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72903000	표권발행기	8	0	
8472904000	연필절삭기	8	0	
8472905000	서류절단기	8	0	
8472906000	주소인쇄기와 주소판 엠보싱기	8	0	
8472909000	기타	8	0	
8473101000	워드프로세싱머신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및 기타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473102000	워드프로세싱머신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473109000	기타	8	0	
8473210000	소호 제 8470.10 호, 제 8470.21 호 또는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	0	
8473291000	소호 제 8470.30 호의 기계의 것	0	0	
8473293000	소호 제 8470.50 호의 기계의 것	0	0	
8473294000	소호 제 8470.90 호의 기계의 것	0	0	
8473301000	자기헤드	0	0	
8473302000	주기관(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0	0	
8473303000	컴퓨터 케이스	0	0	
8473304010	사운드 카드	0	0	
8473304020	비디오 카드	0	0	
8473304030	멀티미디어 카드	0	0	
8473304050	통신접속 카드	0	0	
8473304060	디램 모듈	0	0	
8473304090	기타	0	0	
8473309010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 8542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	0	0	
8473309090	기타	0	0	
8473401000	현금자동처리기(소호 제 8472.90.1050 호와 제 8472.90.1090 호는 제외한다)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및 기타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8473402000	현금자동처리기(소호 제 8472.90.1050 호와 제 8472.90.1090 호는 제외한다)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473409000	기타	8	0	
8473501000	소호 제 8470.10 호, 제 8470.21 호 또는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에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	0	0	
8473509000	기타	0	0	
8474100000	선별기, 기계식 체, 분리기 또는 세척기	0	0	
8474201000	파쇄 또는 분쇄능력이 시간당 20 톤 이하인 것	0	0	
8474209000	기타	0	0	
8474311000	배처 플랜트	0	0	
8474319000	기타	0	0	
8474321000	아스팔트 플랜트	0	0	
8474329000	기타	0	0	
8474390000	기타	0	0	
8474801000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0	0	
8474802000	조괴기, 형입기 또는 성형기	0	0	
8474809000	기타	0	0	
8474900000	부분품	0	0	
8475100000	전기 또는 전자램프, 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밸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8	0	
8475210000	광섬유 및 광섬유예비 성형품제조용의 기계	8	0	
8475291000	판유리 제조용의 것	8	0	
8475292000	유리병 제조용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75299000	기타	8	0	
8475901000	판유리 제조용 기계의 것	8	0	
8475909000	기타	8	0	
8476210000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8	0	
8476290000	기타	8	0	
8476811000	식품 자동판매기	8	0	
8476819000	기타	8	0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8	0	
8476893000	담배 자동판매기	8	0	
8476894000	화폐 교환기	8	0	
8476899000	기타	8	0	
8476900000	부분품	8	0	
8477101000	고무 공업용의 것	8	0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의 것	8	0	
8477201000	고무 공업용의 것	8	0	
8477202000	플라스틱 공업용의 것	8	0	
8477300000	취입 성형기	8	0	
8477400000	진공성형기 및 기타의 열성형기	8	0	
84775100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 또는 재생기 또는 기타의 이너튜브 성형기	8	0	
8477590000	기타	8	0	
8477800000	기타의 기계	8	0	
8477900000	부분품	8	0	
8478100000	기계	8	0	
8478900000	부분품	8	0	
8479101000	모울타르 또는 콘크리트 살포기	0	0	
8479102000	기타	0	0	
8479109000	기타	0	0	
8479200000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 기계류	8	0	
8479300000	파티클보드 또는 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및 목재 또는 코르크 처리용의 기타의 기계	8	0	
8479400000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79501000	소호 제 8479.81 호, 제 8479.82 호, 제 8479.89.9010 호, 제 8479.89.9030 호, 제 8479.89.9040 호, 제 8479.89.9060 호 또는 제 8479.89.9091 호의 것	8	0	
8479502000	소호 제 8479.89.9080 호의 것	8	0	
8479509000	기타	8	0	
8479600000	증발식 에어컨	8	0	
8479811000	금속 세척기	8	0	
8479812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3	0	
8479812090	기타	8	0	
8479813000	권선기	8	0	
8479814000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8	0	
8479819000	기타	8	0	
8479821000	혼합기	8	0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8	0	
8479823000	균질기	8	0	
8479824000	교반기	8	0	
8479829000	기타	8	0	
8479891010	공기청정기(가습 및 제습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	8	0	
8479891090	기타	8	0	
8479899010	프레스 또는 압출기	8	0	
8479899020	선박용 또는 어업용기기	8	0	
8479899030	아일레팅기 또는 튜우볼러리베팅기	8	0	
8479899040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	8	0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8	0	
8479899060	자동도어 작동기	8	0	
8479899080	조상기	8	0	
8479899091	제 87 류의 차량용의 것	8	3	
8479899092	전자부품장착기	8	0	
8479899099	기타	8	0	
8479901010	냉방기기의 것(카쿨러의 것을 포함한다)	8	0	
8479901020	가정형 기기의 것	8	0	
8479901030	제 87 류의 차량용의 것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79902000	소호 제 8479.89.9080 호의 것	8	0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8	0	
8479909010	토목공사, 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8	0	
8479909020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의 식물성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 기계의 것	8	0	
8479909030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용의 것	8	0	
8479909040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8	0	
8479909050	혼합기, 반죽기, 파쇄기, 분쇄기, 기계식체, 시프팅기, 균질기, 유화기 또는 교반기의 것	8	0	
8479909060	프레스 또는 압출기의 것	8	0	
8479909070	선박용 또는 어업용 기기의 것	8	0	
8479909080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의 것	8	0	
8479909090	기타	8	0	
8480100000	금속주조용의 주형틀	8	0	
8480200000	주형 베이스	8	0	
8480300000	주형 제조용의 모형	8	0	
84804100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8	0	
8480490000	기타	8	0	
8480500000	유리 성형용의 주형	8	0	
8480600000	광물성물질 성형용의 주형	8	0	
848071000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8	0	
8480790000	기타	8	0	
8481100000	감압밸브	8	0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8	0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8	0	
8481300000	체크(논리턴) 밸브	8	0	
8481400000	안전밸브	8	0	
8481801010	전기 작동식의 것	8	0	
8481801020	액압 작동식의 것	8	0	
8481801030	기타 자동제어식의 것	8	0	
8481801090	기타	8	0	
8481802000	탭, 코크와 트랩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81809000	기타	8	0	
8481901000	액츄에이터	8	0	
8481909000	기타	8	0	
8482101000	내경이 10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8482102000	내경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3	0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을 포함한다)	8	0	
8482300000	구형 롤러베어링	8	0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	8	0	
8482500000	기타의 원통형 롤러베어링	8	0	
8482800000	기타의 베어링(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8482910000	볼, 니들 및 롤러	8	0	
8482990000	기타	8	0	
84831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83109010	제 87 류 차량용의 것	8	3	
8483109090	기타	8	0	
84832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83209000	기타	8	0	
84833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83309000	기타	8	0	
8483401010	롤러 스크루	3	0	
8483401090	기타	3	0	
8483409010	기어	8	0	
8483409020	기어박스	8	0	
8483409030	무단변속기	8	0	
8483409041	제 87 류 차량용의 것	8	3	
8483409049	기타	8	0	
8483409090	기타	8	0	
84835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483509000	기타	8	0	
84836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83609000	기타	8	0	
84839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483909000	기타	8	0	
8484101000	제 87 류 차량용의 것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84109000	기타	8	0	
8484200000	메커니컬 실	8	0	
8484900000	기타	8	0	
84861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86102000	단결정 보울을 성장시키는 기계	0	0	
8486103010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	0	0	
8486103020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0	
8486103090	기타	8	0	
8486104011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상에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0	
8486104019	기타	8	0	
8486104021	웨이퍼를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0	0	
8486104029	기타	8	0	
84861050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0	0	
84861050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0	0	
8486105030	기타의 노와 오븐	0	0	
8486109000	기타	8	0	
84862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의 것에 한한다)	0	0	
848620210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0	0	
8486202210	반도체 웨이퍼상의 반도체 소자 제조용의 것	0	0	
8486202290	기타	8	0	
8486202310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	0	0	
8486202390	기타	0	0	
8486203000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0	0	
8486204000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0	0	
8486205110	반도체 리드의 것	0	0	
8486205190	기타	8	0	
8486205910	반도체 리드의 것	0	0	
8486205990	기타	8	0	
8486206010	반도체웨이퍼상에 직접 그리는 기기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86206020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	0	0	
8486206090	기타	0	0	
8486207000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계	0	0	
8486208110	반도체 제조공정중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0	0	
8486208120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상에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0	
8486208190	기타	8	0	
8486208410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0	0	
8486208420	반도체웨이퍼를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0	0	
8486208490	기타	8	0	
8486209110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 스트리핑 또는 세척을 위한 분사기	0	0	
8486209120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 및 오염물질제거기	0	0	
8486209190	기타	0	0	
8486209200	포토리지스트를 도포 및 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	0	0	
84862093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 또는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0	
8486209320	반도체 웨이퍼의 스크라이빙 또는 스코어링을 위한 다이싱기	0	0	
8486209390	기타	8	0	
8486209400	웨이퍼, 캐리어 또는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0	
8486209500	반도체웨이퍼상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0	0	
8486209600	반도체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	0	0	
8486209900	기타	8	0	
8486301000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0	0	
8486302000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관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	0	0	
8486303010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에 의한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86303020	초음파 방식에 의한 것	8	0	
8486303030	방전 방식에 의한 것	8	0	
8486303041	건식식각기	8	0	
8486303049	기타	8	0	
8486304010	연마기 또는 광택기	8	0	
8486304090	기타	8	0	
8486305010	도포기	8	0	
8486305020	도포 및 현상기	8	0	
8486305031	물리적방식의 것	8	0	
8486305032	화학적방식의 것	8	0	
8486305039	기타	8	0	
8486306010	실, 슛트, 스페이서 또는 액정 디스펜서	8	0	
8486306020	스크라이빙 머신	8	0	
8486306030	패널 어셈블러	8	0	
8486306090	기타	8	0	
8486307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	0	
8486308000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8	0	
84863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로봇트	8	0	
8486309090	기타	8	0	
8486401010	패턴형성기(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 또는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48640102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 또는 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0	0	
8486401030	포토리지스트를 도포 및 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	0	0	
8486401040	마스크와 레티클을 식각, 세척 또는 스트리핑하는 기계와 기기	8	0	
8486401090	기타	8	0	
8486402010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 테이프자동접착기 및 와이어접착기	0	0	
8486402020	반도체 디바이스를 삼입 또는 제거시키는 기계	8	0	
8486402031	반도체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0	0	
8486402039	기타	8	0	
8486402040	납볼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 또는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86402050	웨이퍼를 세라믹판에 부착 또는 분리하는 기계	8	0	
848640207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0	0	
8486402080	반도체 다이를 부착하거나 웨이퍼, 캐리어 또는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0	
8486402091	굽힘, 접음, 교정, 펼침용의 금속가공기계(반도체 리드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0	0	
8486402092	굽힘, 접음, 교정, 펼침용의 금속가공기계(반도체 리드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8	0	
8486402093	웨이퍼의 절단 이전에 전체 웨이퍼에 연결점점(범프)을 형성하는 웨이퍼 범핑용 기기	8	0	
8486402094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 및 오염물질제거기(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에 한한다)	0	0	
8486402095	저항가열식의 전기식 노와 오븐	0	0	
8486402099	기타	8	0	
8486403010	반도체 소자 제조용 웨이퍼, 웨이퍼카세트, 상자 및 기타 물품을 이송, 핸들링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것	0	0	
8486403090	기타	0	0	
8486901010	소호 제 8486.10.1000 호, 제 8486.10.2000 호, 제 8486.10.3010 호, 제 8486.10.3020 호, 제 8486.10.4011 호, 제 8486.10.4021 호, 제 8486.10.5010 호, 제 8486.10.5020 호 또는 제 8486.10.5030 호의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86901020	소호 제 8486.10.3090 호, 제 8486.10.4019 호, 제 8486.10.4029 호 또는 제 8486.10.9000 호의 것	8	0	
8486902010	소호 제 8486.20.1000 호, 제 8486.20.2100 호, 제 8486.20.2210 호, 제 8486.20.2310 호, 제 8486.20.2390 호, 제 8486.20.3000 호, 제 8486.20.4000 호, 제 8486.20.5110 호, 제 8486.20.5910 호, 제 8486.20.6010 호, 제 8486.20.6020 호, 제 8486.20.6090 호, 제 8486.20.7000 호, 제 8486.20.8110 호, 제 8486.20.8120 호, 제 8486.20.8410 호, 제 8486.20.8420 호, 제 8486.20.9110 호, 제 8486.20.9120 호, 제 8486.20.9190 호, 제 8486.20.9200 호, 제 8486.20.9310 호, 제 8486.20.9320 호, 제 8486.20.9400 호, 제 8486.20.9500 호 또는 제 8486.20.9600 호의 것	0	0	
8486902020	소호 제 8486.20.2290 호, 제 8486.20.5190 호, 제 8486.20.5990 호, 제 8486.20.8190 호, 제 8486.20.8490 호, 제 8486.20.9390 호 또는 제 8486.20.9900 호의 것	8	0	
8486903010	소호 제 8486.30.1000 호 또는 제 8486.30.2000 호의 것	0	0	
8486903020	소호 제 8486.30.3010 호, 제 8486.30.3020 호, 제 8486.30.3030 호,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제 8486.30.3041 호, 제 8486.30.3049 호, 제 8486.30.4010 호, 제 8486.30.4090 호, 제 8486.30.6020 호, 제 8486.30.7000 호, 제 8486.30.8000 호, 제 8486.30.9020 호 또는 제 8486.30.9090 호의 것			
8486903030	소호 제 8486.30.5010 호, 제 8486.30.5020 호, 제 8486.30.5031 호, 제 8486.30.5032 호, 제 8486.30.5039 호, 제 8486.30.6010 호, 제 8486.30.6030 호 또는 제 8486.30.6090 호의 것	8	0	
8486904010	소호 제 8486.40.1010 호, 제 8486.40.1020 호, 제 8486.40.1030 호, 제 8486.40.2010 호, 제 8486.40.2031 호, 제 8486.40.2070 호, 제 8486.40.2080 호, 제 8486.40.2091 호, 제 8486.40.2094 호, 제 8486.40.2095 호, 제 8486.40.3010 호, 제 8486.40.3090 호, 제 8486.40.4011 호, 제 8486.40.4012 호 또는 제 8486.40.4020 호의 것	0	0	
8486904020	소호 제 8486.40.1040 호, 제 8486.40.1090 호, 제 8486.40.2020 호, 제 8486.40.2039 호, 제 8486.40.2040 호, 제 8486.40.2050 호, 제 8486.40.2061 호, 제 8486.40.2062 호, 제 8486.40.2063 호, 제 8486.40.2092 호, 제 8486.40.2093 호, 제 8486.40.2099 호 또는 제 8486.40.9000 호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487100000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그들의 블레이드	8	0	
8487901000	제 87 류 차량용의 것	8	3	
8487909010	오일 실링	8	0	
8487909090	기타	8	0	
8501101000	직류 전동기	8	3	
8501102000	교류 전동기	8	0	
850110300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8	0	
8501201000	출력이 37.5 와트 초과 10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202000	출력이 100 와트 초과 75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203000	출력이 750 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01311010	출력이 10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311090	기타	8	0	
8501312000	직류발전기	8	0	
8501321000	직류전동기	8	0	
8501322000	직류발전기	8	0	
8501331000	직류전동기	8	3	
8501332000	직류발전기	8	3	
8501341000	직류전동기	8	0	
8501342000	직류발전기	8	0	
8501401000	출력이 10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2000	출력이 100 와트 초과 75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3000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4000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01510000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20000	출력이 750 와트 초과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31000	출력이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3	
8501532000	출력이 375 킬로와트 초과 1,5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3	
8501534000	출력이 1,5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01611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12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초과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20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3100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1639000	기타	8	3	
8501640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111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112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초과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120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3	
850213101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2131090	기타	8	0	
8502132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8502134000	출력이 3,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20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20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20301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2203090	기타	8	0	
850220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31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1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13000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1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239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9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02393000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39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2400000	회전변환기	8	3	
8503001000	전동기의 것	8	3	
8503002000	발전기의 것과 발전세트의 것	8	0	
8503003000	회전변환기의 것	8	0	
8504101010	전류가 1 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101020	전류가 1 암페어 초과 20 암페어 이하인 것	8	3	
8504102000	전류가 20 암페어 초과 60 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103000	전류가 60 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21901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1902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229010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9020	용량이 1,0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9030	용량이 5,0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30000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431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1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19010	용량이 10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19020	용량이 100 볼트암페어 초과 50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19040	용량이 500 볼트암페어 초과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2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2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29010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29020	용량이 5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0433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3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39010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9020	용량이 3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904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4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4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49010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2,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49030	용량이 2,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44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1090	기타	8	0	
850440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2019	기타	8	3	
850440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2099	기타	8	0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3090	기타	8	0	
850440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4090	기타	8	3	
850440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5090	기타	8	0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0	0	
8504409019	기타	0	0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9099	기타	8	0	
85045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04501090	기타	8	0	
8504502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502090	기타	8	0	
850450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509090	기타	8	0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 8504.40 호, 제 8504.50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504909000	기타	8	3	
8505111000	알니코의 것	8	0	
8505119000	기타	8	0	
8505191000	산화철의 것	8	0	
8505199000	기타	8	0	
8505200000	전자석 커플링, 클러치와 브레이크	8	0	
8505901000	전자석	8	0	
8505902000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 클램프, 바이스 및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8	0	
8505903000	전자석 리프팅 헤드	8	0	
8505909000	부분품	8	0	
8506101000	망간건전지	13	0	
8506102000	알칼리망간건전지	13	0	
8506109000	기타	8	0	
8506300000	산화수은제의 것	8	0	
8506400000	산화은제의 것	8	0	
8506500000	리튬제의 것	8	0	
8506600000	에어징크제의 것	8	0	
8506801000	산화아연제의 것	8	0	
850680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06900000	부분품	8	0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에 사용되는 종류의 연산(鉛酸) 축전지	8	0	
8507200000	기타의 연산 축전지	8	0	
8507300000	니켈-카드뮴 축전지	8	0	
8507400000	니켈-철 축전지	8	0	
8507801000	니켈-수소 합금 축전지	8	0	
8507802000	리튬이온 축전지	8	0	
8507803000	리튬폴리머 축전지	8	0	
8507809000	기타	8	0	
8507901000	격리판	8	0	
8507909000	기타	8	0	
8508110000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기타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8	0	
8508191000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8	0	
8508199000	기타	8	0	
8508600000	기타의 진공청소기	8	0	
8508701000	소호 제 8508.11.0000 호 또는 제 8508.19.1000 호의 것	8	0	
8508702000	소호 제 8508.19.9000 호 또는 제 8508.60.0000 호의 것	8	0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8	0	
8509801000	커피분쇄기	8	0	
8509802000	얼음분쇄기	8	0	
8509803000	바닥광택기	8	0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8	0	
8509809000	기타	8	0	
8509900000	부분품	8	0	
8510100000	면도기	8	0	
8510200000	이발기	8	0	
8510300000	모발제거기	8	0	
8510901000	면도기의 것	8	0	
8510902000	이발기의 것	8	0	
8510903000	모발제거기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111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109000	기타	8	3	
85112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209000	기타	8	3	
85113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309000	기타	8	3	
85114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409000	기타	8	3	
85115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509000	기타	8	3	
85118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809000	기타	8	3	
8511901000	항공기용의 것	3	0	
8511909000	기타	8	3	
8512100000	자전거에 사용되는 종류의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 기구	8	0	
8512201000	조명용 기구	8	0	
8512202000	시각신호용 기구	8	0	
8512300000	음향신호용 기구	8	3	
8512400000	윈드스크린와이퍼, 제상기와 제무기	8	3	
8512900000	부분품	8	3	
8513101000	광산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안전등	8	0	
8513102000	손전등	8	0	
8513109000	기타	8	0	
8513900000	부분품	8	0	
8514101000	이화학용의 것	8	0	
8514102000	금속공업용의 것	8	0	
8514103000	식품공업용의 것	8	0	
8514109000	기타	8	0	
8514201000	이화학용의 것	8	0	
8514202000	금속공업용의 것	8	0	
8514203000	식품공업용의 것	8	0	
8514209000	기타	8	0	
8514300000	기타의 노와 오븐	8	3	
85144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51440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14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8514909000	기타	8	0	
8515110000	납땀용의 인두와 건	8	0	
8515190000	기타	8	0	
8515211010	로봇형의 것	8	0	
8515211090	기타	8	0	
8515212010	로봇형의 것	8	0	
8515212090	기타	8	0	
8515213010	로봇형의 것	8	0	
8515213090	기타	8	0	
8515219010	로봇형의 것	8	0	
8515219090	기타	8	0	
8515291000	점 용접기기	8	0	
8515292000	봉합 용접기기	8	0	
8515293000	바트 용접기기	8	0	
8515299000	기타	8	0	
8515311010	로봇형의 것	8	0	
8515311090	기타	8	0	
8515319010	로봇형의 것	8	0	
8515319090	기타	8	0	
8515391000	교류아크 용접기기	8	0	
8515399000	기타	8	0	
8515801000	초음파 응용기기	8	0	
8515802000	전자빔용기기	8	0	
8515803000	레이저 작동식기기	8	0	
8515809000	기타	8	0	
8515901000	용접기의 것	8	0	
8515909000	기타	8	0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가열기	8	0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8	0	
8516290000	기타	8	0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8	0	
8516320000	기타의 이용기기	8	0	
8516330000	손 건조기	8	0	
8516400000	전기다리미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8	0	
8516601000	전기오븐	8	0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8	0	
8516609000	기타	8	0	
8516710000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8	0	
8516720000	토스터	8	0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8	0	
8516799000	기타	8	0	
8516800000	전열용 저항체	8	0	
8516900000	부분품	8	0	
8517110000	유선전화기 세트(코드리스 핸드셋이 있는 것에 한한다)	0	0	
8517121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1090	기타	0	0	
8517122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2090	기타	0	0	
8517123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3090	기타	0	0	
8517124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4090	기타	0	0	
8517129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9090	기타	0	0	
8517181000	푸쉬 버튼식 전화기	0	0	
8517189000	기타	0	0	
8517611000	기지국용 송수신기	0	0	
8517619000	기타	0	0	
8517621000	텔레프린터	0	0	
8517622010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0	0	
8517622020	사설통신용 교환기	0	0	
8517622090	기타	0	0	
8517623110	단국장치	0	0	
8517623120	중계장치	0	0	
8517623190	기타	0	0	
8517623210	단국장치	0	0	
8517623220	중계장치	0	0	
851762329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17623310	광중계장치	0	0	
8517623320	광단국장치	0	0	
8517623390	기타	0	0	
8517623410	에이/디, 디/에이변환기	0	0	
8517623420	코덱	0	0	
8517623430	모뎀(모뎀카드를 포함한다)	0	0	
8517623490	기타	0	0	
8517623510	아날로그 신호전송 방식인 것	0	0	
8517623520	디지털 신호전송 방식인 것	0	0	
8517623590	기타	0	0	
8517623900	기타	0	0	
8517624010	키-폰	0	0	
8517624020	영상전신기기	0	0	
8517624090	기타	0	0	
8517625000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0	0	
8517626010	인쇄전신기기	0	0	
8517626020	영상전신기기	0	0	
8517626031	워키토키 세트	0	0	
8517626039	기타	0	0	
8517626040	모사전송기기	0	0	
8517626050	무선통신용교환기	0	0	
8517626060	무선통신용중계기	0	0	
8517626090	기타	0	0	
851762700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0	0	
8517629000	기타	0	0	
8517691100	장중단파 수신기	8	0	
8517691211	호출, 경보 또는 페이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	0	0	
8517691219	기타	8	0	
8517691290	기타	8	0	
8517691900	기타	8	0	
8517692000	영상전화기	0	0	
8517699000	기타	0	0	
8517701010	유선전화기의 것	0	0	
8517701021	키패드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17701022	케이스	0	0	
8517701029	기타	0	0	
8517701090	기타	0	0	
8517702000	소호 제 8517.61 호의 것	0	0	
8517703010	텔레프린터의 것	0	0	
8517703021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의 것	0	0	
8517703022	사설통신용 교환기의 것	0	0	
8517703029	기타	0	0	
8517703031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것	0	0	
8517703032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0	0	
8517703039	기타	0	0	
8517703041	영상전신기기의 것	0	0	
8517703049	기타	0	0	
8517703050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송신기기의 것	0	0	
8517703060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것(소호 제 8517.70.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517703070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0	0	
8517703090	기타	0	0	
8517704011	호출, 경보 또는페이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의 것	0	0	
8517704019	기타	8	0	
8517704020	영상전화기의 것	0	0	
8517704090	기타	8	0	
8518101000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 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 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 킬로헤르츠까지인 것에 한한다)	0	0	
8518109000	기타	8	0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8	0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 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 키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에 한한다)	0	0	
8518299000	기타	8	0	
8518304000	유선전화 핸드셋	0	0	
8518309000	기타	8	0	
8518400000	가청주파증폭기	8	0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8	0	
8518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 8518.10.1000 호, 제 8518.29.1000 호의 것에 한한다)	0	0	
8518909000	기타	8	0	
8519201000	코인 혹은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8519209000	기타(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8519301000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8	0	
8519309000	기타	8	0	
8519500000	전화응답기	0	0	
8519811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8519812100	카세트 플레이어(제 85 류 소호주 제 1 호에서 규정한 것에 한한다)	8	0	
8519812210	자동차용의 것	8	0	
8519812220	휴대용의 것(제 85 류 소호주 제 1 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8	0	
8519812290	기타	8	0	
8519812310	자동차용의 것	8	0	
8519812320	휴대용의 것	8	0	
8519812390	기타	8	0	
8519812900	기타	8	0	
8519813000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19814111	자동차용의 것	8	0	
8519814112	휴대용의 것	8	0	
8519814119	기타	8	0	
8519814190	기타	8	0	
8519814210	자동차용의 것	8	0	
8519814220	휴대용의 것	8	0	
8519814290	기타	8	0	
8519814310	릴형의 것	8	0	
8519814390	기타	8	0	
8519815010	릴형의 것	8	0	
8519815020	디스크형의 것	8	0	
8519815030	카세트형의 것	8	0	
8519815090	기타	8	0	
8519819000	기타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8519891010	확성기를 갖추지 아니한 것	8	0	
8519891090	기타	8	0	
8519892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8519893000	데크(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8519899010	기타의 음성재생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8519899020	기타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8521101000	폭이 12.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8521102000	폭이 12.7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8521901000	디스크형의 것	8	0	
8521909000	기타	8	0	
8522100000	픽업 카트리지	8	0	
8522901010	오디오 녹음용	8	0	
8522901020	비디오 녹화용	8	0	
8522901090	기타	8	0	
8522902000	레이저 픽업	8	0	
8522909010	전화응답기용 평판 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및 기타 다른 기술을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8522909020	전화응답기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522909090	기타	8	0	
85232100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저장한 카드(기록여부를 불문한다)	8	0	
8523291110	폭이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523291120	폭이 4 밀리미터 초과 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523291130	폭이 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8523291210	플로피 디스크	0	0	
8523291290	기타	0	0	
8523291900	기타	0	0	
852329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19	기타	0	0	
852329212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29	기타	0	0	
852329213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39	기타	0	0	
852329221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219	기타	8	0	
852329222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229	기타	8	0	
8523292231	비디오 녹화된 것	13.0% 또는 34 원/분(표준 속도)	0	
8523292239	기타	8	0	
852329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919	기타	0	0	
852329299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292992	명령, 데이터, 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23292999	기타	8	0	
8523401000	기록이 안된 매체	0	0	
852340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402119	기타	0	0	
8523402120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8	0	
8523402131	명령, 데이터, 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8523402139	기타	8	0	
852340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402919	기타	0	0	
8523402991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402992	명령, 데이터, 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8523402999	기타	8	0	
8523511000	기록이 안된 매체	0	0	
852351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512190	기타	0	0	
852351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512920	명령, 데이터, 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852351299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23521000	카드로서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한 것 및 그 부분품	0	0	
8523529000	기타 및 그 부분품	8	0	
8523591000	기록이 안된 매체	0	0	
852359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592190	기타	0	0	
852359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592920	명령, 데이터, 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8523592990	기타	8	0	
8523593000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	0	0	
8523801000	기록이 안된 매체	0	0	
8523802100	축음기용의 레코드판	8	0	
85238022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802290	기타	0	0	
8523802910	비디오 녹화된 것	8	0	
8523802920	명령, 데이터, 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거나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0	0	
8523802990	기타	8	0	
8525501000	라디오방송용의 것	8	0	
8525502000	텔레비전용의 것	8	0	
8525509000	기타	8	0	
8525601000	라디오방송용의 것	0	0	
8525602000	텔레비전용의 것	0	0	
8525609000	기타	0	0	
8525801010	녹화기용의 것	8	0	
8525801020	모니터용의 것	8	0	
8525801090	기타	8	0	
852580201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25802090	기타	0	0	
8525803000	비디오카메라레코더	0	0	
85261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8526109000	기타	8	0	
8526911010	항공기용의 것	8	0	
8526911090	기타	8	0	
8526912010	항공기용의 것	8	0	
8526912090	기타	8	0	
8526913010	항공기용의 것	8	0	
8526913020	자동차용의 것	8	0	
8526913090	기타	8	0	
8526914000	로오랑 리이시버	8	0	
8526919010	항공기용의 것	8	0	
8526919020	자동차용의 것	8	0	
8526919090	기타	8	0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8	0	
85271200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8	0	
8527131000	카세트형의 것	8	0	
8527132000	디스크형의 것	8	0	
852713300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139000	기타	8	0	
8527190000	기타	8	0	
8527211000	카세트형의 것	8	0	
8527212000	디스크형의 것	8	0	
852721300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219000	기타	8	0	
8527290000	기타	8	0	
8527911010	카세트형의 것	8	0	
8527911020	디스크형의 것	8	0	
852791103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8	0	
8527911090	기타	8	0	
8527919000	기타	8	0	
852792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	0	
8527990000	기타	8	0	
85284100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28491010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8	0	
8528491090	기타	8	0	
8528492010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8	0	
8528492090	기타	8	0	
8528511000	액정모니터	0	0	
8528519000	기타	0	0	
8528591010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8	0	
8528591090	기타	8	0	
8528592010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한한다)	8	0	
8528592090	기타	8	0	
85286100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528690000	기타	8	0	
8528711010	천연색의 것	8	0	
8528711020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8	0	
8528712010	수직해상도 720 선 이상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	8	0	
8528712090	기타	8	0	
8528719010	천연색의 것	8	0	
8528719020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8	0	
8528721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1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2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2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3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3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4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4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9000	기타	8	0	
8528731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 센티미터 미만인 것	8	0	
8528732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 센티미터 이상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45.72 센티미터 미만인 것			
8528733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할 길이가 45.72 센티미터 이상인 것	8	0	
8528739000	기타	8	0	
8529101000	레이더기기용의 것	8	0	
8529109100	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용의 것	8	0	
8529109210	위성방송 수신용의 것	8	0	
8529109290	기타	8	0	
8529109300	무선전화용 및 무선전신용 기기와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529109900	기타	8	0	
8529901000	레이더기기의 것	8	0	
8529909100	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 조절기의 것	8	0	
8529909200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	8	0	
85299094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것	8	0	
8529909500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	8	0	
8529909610	천연색튜너	8	0	
8529909620	흑백 또는 단색튜너	8	0	
8529909630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8	0	
852990964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의 것	8	0	
8529909649	기타	8	0	
8529909650	기타 흑백 또는 단색용의 것	8	0	
8529909910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의 것 또는 디지털카메라의 것(디지털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것을 포함한다)	0	0	
8529909920	소호 제 8528.51 호, 제 8528.41.0000 호 또는 제 8528.61.0000 호의 것	0	0	
8529909990	기타	8	0	
8530101010	지상장치용의 것	8	0	
8530101090	기타	8	0	
8530109000	기타	8	0	
8530800000	기타의 기기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30900000	부분품	8	0	
8531101000	도난경보기	8	0	
8531102000	화재경보기	8	0	
8531103000	가스경보기	8	0	
8531104000	전기식의 벨	8	0	
8531105000	사이렌	8	0	
8531109000	기타의 신호기기	8	0	
8531201010	셀룰러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용의 것	0	0	
8531201090	기타	0	0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	0	0	
8531801010	셀룰러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용의 것	8	0	
8531801090	기타	8	0	
8531809000	기타	8	0	
8531901000	소호 제 8531.10 호의 것	8	0	
8531902000	소호 제 8531.20 호의 것	0	0	
8531909000	기타	8	0	
8532100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0	
8532210000	탄탈륨	0	0	
8532220000	알루미늄 전해	0	0	
8532230000	세라믹 유전체(단층)	0	0	
8532240000	세라믹 유전체(다층)	0	0	
8532250000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	0	0	
8532290000	기타	0	0	
8532301000	폴리에틸렌 가변식 축전기	0	0	
8532309000	기타	0	0	
8532901000	축전기로서 고정식의 것	0	0	
8532902000	축전기로서 가변식의 것	0	0	
8532909000	기타	0	0	
8533100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 또는 필름형의 것에 한한다)	0	0	
8533211000	칩형의 것	0	0	
853321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33291000	침형의 것	0	0	
8533299000	기타	0	0	
8533310000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0	0	
8533390000	기타	0	0	
8533401000	탄소가변의 것	0	0	
8533402000	써머스터	0	0	
8533403000	바리스터	0	0	
8533409000	기타	0	0	
8533901000	가변식 저항기의 것	0	0	
8533909000	기타의 것	0	0	
8534001000	수동소자 부분(인덕턴스, 저항기 및 축전기)이 형성된 것	0	0	
8534002000	테이프형 또는 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것	0	0	
8534009000	기타	0	0	
8535100000	퓨즈	8	0	
8535211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12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91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92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이상인 것	8	0	
8535301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2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3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200 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4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이상인 것	8	0	
8535400000	피뢰기, 전압제한기와 서지억제기	8	0	
8535901000	커패터	8	0	
8535902000	전기 터미널	8	0	
8535909000	기타	8	0	
8536101000	관형의 것	8	0	
8536109000	기타	8	0	
8536200000	자동차단기	8	3	
8536300000	전기회로보호용의 기타의 기기	8	0	
8536410000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36490000	기타	8	0	
8536501000	회전형의 것	8	0	
8536502000	푸쉬 버튼형의 것	8	0	
8536503000	마이크로형의 것	8	0	
8536504000	전자개폐형의 것(전자접속기를 포함한다)	8	0	
8536509010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11 암페어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0	
8536509020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에 한한다)	0	0	
8536509030	온도보호용의 것(1,000 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536509090	기타	8	0	
8536610000	램프홀더	8	0	
8536691000	동축케이블 및 인쇄회로용의 것	0	0	
8536699000	기타	8	0	
8536701000	플라스틱제의 것	6.5	0	
8536702000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의 것	8	0	
8536703010	주조, 주형, 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들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8536703090	기타	8	0	
8536901000	접속함	0	0	
8536909010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0	0	
8536909090	기타	8	0	
8537101000	배전반	8	0	
8537102000	자동제어반	8	0	
8537109000	기타	8	0	
8537201000	배전반	8	3	
8537202000	자동제어반	8	0	
8537209000	기타	8	0	
8538100000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 8537 호의 물품용에 한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38901000	개폐기의 것	8	0	
8538902000	자동차단기의 것	8	0	
8538903000	계전기의 것	8	0	
8538904000	자동제어반의 것	8	0	
8538909000	기타	8	0	
8539100000	실드빔 램프유닛	8	0	
8539210000	팅스텐 할로겐의 것	8	0	
8539221000	백열램프	8	0	
8539222000	장식용 램프	8	0	
8539223000	빔 램프	8	0	
8539224000	집어용 램프	8	0	
8539229000	기타	8	0	
8539290000	기타	8	0	
8539310000	형광램프(열 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8	0	
8539321000	수은램프	8	0	
8539322000	나트륨 증기 램프	8	0	
8539323000	메탈할라이드램프	8	0	
8539391000	냉음극 형광램프	8	0	
8539399000	기타	8	0	
8539410000	아크 램프	8	0	
8539491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8539491090	기타	8	0	
8539492000	적외선 램프	8	0	
85399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0	
8539902000	방전램프의 것	8	0	
8539909000	기타	8	0	
8540110000	천연색의 것	8	0	
8540120000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	8	0	
8540201000	텔레비전용 촬상관	8	0	
8540209000	기타	8	0	
8540400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인 것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0	
8540500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에 한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40601000	천연색의 것	8	0	
8540609000	기타	8	0	
8540710000	자전관	8	0	
8540720000	속도변조관	8	0	
8540790000	기타	8	0	
8540810000	수신관 또는 증폭관	8	0	
8540891000	송신기용의 열전자관	8	0	
8540892000	방전관	8	0	
8540893000	디지트론	8	0	
8540899000	기타	8	0	
8540911000	디플렉션 코일	8	0	
8540912000	전자총	8	0	
8540913000	새도우마스크	8	0	
8540919000	기타	8	0	
8540990000	기타	8	0	
85411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109000	기타	0	0	
854121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219000	기타	0	0	
854129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299000	기타	0	0	
85413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302000	사이리스터	0	0	
8541303000	다이액	0	0	
8541304000	트라이액	0	0	
85414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402010	레이저소자	0	0	
8541402090	기타	0	0	
8541409010	광전도 셀	0	0	
8541409020	광전지(태양전지, 포토다이오드,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를 포함한다)	0	0	
8541409030	전하결합소자	0	0	
8541409090	기타	0	0	
85415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아니한 웨이퍼	0	0	
8541502000	정류소자	0	0	
854150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41601000	수정진동자	0	0	
8541609000	기타	0	0	
8541901000	리드프레임	0	0	
8541902000	다이오드의 것	0	0	
8541903000	트랜지스터의 것	0	0	
8541909000	기타	0	0	
8542311000	모노리식 집적회로	0	0	
854231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1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21010	디램	0	0	
8542321020	에스램	0	0	
8542321030	플래시 메모리	0	0	
8542321090	기타	0	0	
854232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2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31000	모노리식 집적회로	0	0	
854233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3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91000	모노리식 집적회로	0	0	
854239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9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901010	리드프레임	0	0	
8542901090	기타	0	0	
8542902010	리드프레임	0	0	
8542902090	기타	0	0	
8542903010	리드프레임	0	0	
8542903090	기타	0	0	
8543100000	입자가속기	8	0	
8543200000	신호발생기	8	0	
8543300000	전기도금, 전기분해 또는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8	0	
8543701000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저장	8	0	
8543702010	이온정수기	8	0	
8543702020	전기식 미용기기	8	0	
8543702030	오디오믹서	8	0	
8543702040	이퀄라이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43702050	오존 발생기	8	0	
8543702090	기타	8	0	
8543703000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	0	0	
8543709010	고주파증폭기	8	0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	8	0	
8543709030	전기신경자극기	0	0	
8543709090	기타	8	0	
8543901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3909011	유기발광다이오드	0	0	
8543909019	기타	0	0	
8543909020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8543909090	기타	8	3	
8544111000	절연도료 피복전선	8	0	
8544119000	기타	8	0	
8544190000	기타	8	0	
8544200000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 도체	8	0	
8544300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8	0	
8544421010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544421090	기타	8	0	
8544422010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544422090	기타	8	3	
8544429010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544429090	기타	8	3	
8544491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1012	전압이 80 볼트 초과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1090	기타	8	3	
8544492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2012	전압이 80 볼트 초과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2090	기타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44499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9012	전압이 80 볼트 초과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9090	기타	8	3	
8544601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1090	기타	8	3	
8544602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2090	기타	8	0	
854460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3090	기타	8	0	
8544700000	광섬유 케이블	0	0	
8545110000	노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0	
8545190000	기타	5	0	
8545200000	브러시	8	0	
8545901000	탄소봉	8	0	
8545909000	기타	8	0	
8546101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6102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46201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2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 초과 10 킬로볼트 이하인 것	8	3	
8546203000	정격전압이 10 킬로볼트 초과 100 킬로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4000	정격전압이 100 킬로볼트 초과 300 킬로볼트 이하인 것	8	0	
8546205000	정격전압이 300 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46901000	플라스틱제의 애자	8	0	
8546909000	기타	8	3	
854710000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8	3	
8547200000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	8	0	
8547900000	기타	8	0	
8548101000	소호 제 3824.90 호의 것	6.5	0	
8548102000	소호 제 7204.21 호, 제 7204.29 호, 제 7204.30 호 또는 제 7204.49 호의 것	0	0	
8548103000	소호 제 7404.00 호의 것	0	0	
8548104010	소호 제 7503.00 호의 것	0	0	
8548104020	소호 제 7902.00 호의 것	0	0	
8548105000	소호 제 7802.00 호의 것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548106010	소호 제 8107.30 호의 것	3	0	
8548106020	소호 제 8111.00 호의 것	3	0	
8548107000	소호 제 8506.10 호, 제 8506.30 호, 제 8506.40 호, 제 8506.50 호, 제 8506.60 호 또는 제 8506.80 호의 것	8	0	
8548109000	기타	8	0	
8548901000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8909000	기타	8	0	
8601100000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0	
860120000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5	0	
8602100000	디젤 전기기관차	0	0	
8602900000	기타	0	0	
8603101000	객차	5	0	
8603102000	화차	5	0	
8603901000	객차	5	0	
8603902000	화차	5	0	
8604001000	공작차	5	0	
8604002000	기중기차	5	0	
8604003000	검사차	5	0	
8604004000	궤도검사차	5	0	
8604009000	기타	5	0	
8605001010	침대차	5	0	
8605001090	기타	5	0	
8605002000	수하물차	5	0	
8605003000	우편차	5	0	
8605004000	병원차	5	0	
8605009000	기타	5	0	
8606100000	탱크차 및 이와 유사한 차	0	0	
8606300000	자기양하식의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606911000	단열 또는 냉장용의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606919000	기타	0	0	
8606920000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8606990000	기타	0	0	
8607110000	구동식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607120000	기타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5	0	
8607191000	차축	5	0	
8607192000	차륜	5	0	
8607193000	윤축	5	0	
8607199000	기타	5	3	
8607210000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3	
8607290000	기타	5	3	
8607301000	축	5	0	
8607302000	연결장치	5	3	
8607303000	완충장치	5	3	
8607309000	기타	5	0	
8607910000	기관차용의 것	5	0	
8607990000	기타	5	3	
8608001000	철도 또는 궤도선로용 장치물	8	0	
8608002000	기계식의 신호, 안전 또는 교통 관제용의 기기	8	0	
8608009000	부분품	8	0	
8609001000	액체 운반용의 것	0	0	
8609002000	압축가스 운반용의 것	0	0	
8609003000	일반화물 운반용의 것	0	0	
8609004000	동물 운반용의 것	0	0	
8609005000	냉동 및 냉장용의 것	0	0	
8609009000	기타	0	0	
8701100000	보행운전형 트랙터	8	0	
8701201000	신차	8	0	
8701202000	중고차	8	0	
8701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0	0	
8701901010	신차	8	0	
8701901020	중고차	8	0	
8701909110	50 마력 미만인 것	0	0	
8701909190	기타	0	0	
8701909900	기타	8	0	
8702101010	신차	10	0	
8702101020	중고차	10	0	
8702102010	신차	10	0	
8702102020	중고차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702103010	신차	10	0	
8702103020	중고차	10	0	
8702901010	신차	10	0	
8702901020	중고차	10	0	
8702902010	신차	10	0	
8702902020	중고차	10	0	
8702903010	신차	10	0	
8702903020	중고차	10	0	
8703101000	설상주행용의 것	8	0	
8703102000	골프용차	8	0	
8703109000	기타	8	0	
8703217000	신차	8	0	
8703218000	중고차	8	0	
8703227000	신차	8	0	
8703228000	중고차	8	0	
8703231010	신차	8	0	
8703231020	중고차	8	0	
8703239010	신차	8	0	
8703239020	중고차	8	0	
8703241010	신차	8	0	
8703241020	중고차	8	0	
8703249010	신차	8	0	
8703249020	중고차	8	0	
8703317000	신차	8	0	
8703318000	중고차	8	0	
8703321010	신차	8	0	
8703321020	중고차	8	0	
8703329010	신차	8	0	
8703329020	중고차	8	0	
8703337000	신차	8	0	
8703338000	중고차	8	0	
8703907000	전기자동차	8	0	
8703909000	기타	8	0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0	0	
8704211010	신차	1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704211020	중고차	10	0	
870421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219020	탱크차	10	0	
8704219090	기타	10	0	
8704221011	신차	10	0	
8704221012	중고차	10	0	
8704221091	신차	10	0	
8704221092	중고차	10	0	
870422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229020	탱크차	10	0	
8704229090	기타	10	0	
8704231010	신차	10	0	
8704231020	중고차	10	0	
870423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239020	탱크차	10	0	
8704239090	기타	10	0	
8704311010	신차	10	0	
8704311020	중고차	10	0	
870431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319020	탱크차	10	0	
8704319090	기타	10	0	
8704321010	신차	10	0	
8704321020	중고차	10	0	
870432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329020	탱크차	10	0	
8704329090	기타	10	0	
8704901010	신차	10	0	
8704901020	중고차	10	0	
8704909010	냉동 및 냉장차	10	0	
8704909020	탱크차	10	0	
8704909090	기타	10	0	
8705101000	신축봄식의 것	8	0	
8705102000	앵글식의 것	8	0	
8705109000	기타	8	0	
8705200000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8	0	
8705300000	소방차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705400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8	0	
8705901010	농업용 살포차	8	0	
8705901090	기타	8	0	
8705909010	구난차	8	0	
8705909020	도로청소차	8	0	
8705909030	이동공작차	8	0	
8705909040	이동방송차	8	0	
8705909050	이동진료차	8	0	
8705909060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8	0	
8705909070	제설차	8	0	
8705909090	기타	8	0	
8706001010	소호 제 8701.20 호 또는 제 8701.90.10 호의 것	8	0	
8706001090	기타	8	0	
8706002000	제 8702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6003000	제 8703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6004000	제 8704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6005000	제 8705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7100000	제 8703 호의 차량용의 것	8	0	
8707901010	소호 제 8701.20 호 또는 제 8701.90.10 호의 것	8	0	
8707901090	기타	8	0	
8707902000	제 8702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7903000	제 8704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7904000	제 8705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0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	3	
8708210000	안전벨트	8	3	
8708290000	기타	8	3	
870830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8	3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8	3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8	3	
8708309000	기타	8	3	
870840000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8	3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기타 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부분품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	3	
8708700000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	3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8	3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8	3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8	3	
870893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8	3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 그 부분품	8	3	
8708951000	에어백	8	3	
8708959000	기타	8	3	
8708991010	제 8701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3	
8708991020	제 8702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3	
8708991030	제 8703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3	
8708991040	제 8704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3	
8708991050	제 8705 호의 자동차용의 것	8	3	
8708999000	기타	8	3	
8709110000	전기식의 것	8	0	
8709190000	기타	8	0	
8709900000	부분품	8	3	
8710001000	전차	0	0	
8710002000	기타의 자주식 장갑차량	0	0	
8710009000	부분품	0	0	
87111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102000	모페드	8	0	
8711103000	사이드카	8	0	
8711109000	기타	8	0	
87112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202000	사이드카	8	0	
8711209000	기타	8	0	
87113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302000	사이드카	8	0	
8711309000	기타	8	0	
87114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402000	사이드카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711409000	기타	8	0	
87115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502000	사이드카	8	0	
8711509000	기타	8	0	
87119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902000	사이드카	8	0	
8711909000	기타	8	0	
8712001000	경기용의 것	8	0	
8712009010	화물운반용의 것	8	0	
8712009020	삼륜자전거	8	0	
8712009090	기타	8	0	
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0	
8713900000	기타	0	0	
8714110000	안장	8	0	
8714190000	기타	8	0	
871420000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0	0	
8714911000	프레임	8	0	
8714912000	포크	8	0	
8714919000	기타 부분품	8	0	
8714921000	휠 림	8	0	
8714922000	스포크	8	0	
8714931000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는 제외한다)	8	0	
8714932000	프리휠 스프로킷 휠	8	0	
8714941000	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	8	0	
8714942000	기타 브레이크	8	0	
8714949000	그 부분품	8	0	
8714950000	안장	8	0	
8714961000	페달	8	0	
8714962000	크랭크 기어	8	0	
8714969000	그 부분품	8	0	
8714990000	기타	8	0	
871500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8	0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거 또는 캠핑용의 것에 한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716200000	농업용의 자동적재식 또는 자동 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0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러	8	0	
8716390000	기타	8	0	
8716400000	기타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0	
8716801000	손수레	8	0	
8716802000	우마차	8	0	
8716803000	썰매	8	0	
8716809000	기타	8	0	
8716901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것	8	3	
8716909000	기타	8	3	
8801001010	글라이더	0	0	
8801001020	행글라이더	0	0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8	0	
8801009090	기타	0	0	
8802111000	군용의 것	0	0	
8802119000	기타	0	0	
8802121000	군용의 것	0	0	
8802129000	기타	0	0	
8802201000	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202000	터보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203000	터보제트식의 것	0	0	
8802209000	기타	0	0	
8802301000	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302000	터보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303000	터보제트식의 것	0	0	
8802309000	기타	0	0	
8802401000	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402000	터보프로펠러식의 것	0	0	
8802403000	터보제트식의 것	0	0	
8802409000	기타	0	0	
8802601010	인공위성	0	0	
8802601090	기타	0	0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0	0	
8802603000	서보비틀	0	0	
8803100000	프로펠러와 로터 및 그 부분품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803200000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0	0	
8803301000	비행기용의 것	0	0	
8803302000	헬리콥터용의 것	0	0	
8803901000	글라이더 및 행글라이더용의 것	0	0	
88039020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용의 것	0	0	
8803909000	기타	0	0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	0	0	
8804002000	로토슈트	0	0	
880400901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의 것	0	0	
8804009020	로토슈트의 것	0	0	
8805101010	군 및 경찰용의 것	0	0	
8805101090	기타	5	0	
8805102010	군 및 경찰용의 것	0	0	
8805102090	기타	5	0	
8805109010	군 및 경찰용의 것	0	0	
8805109090	기타	5	0	
8805211010	군 및 경찰용의 것	0	0	
8805211090	기타	5	0	
8805212010	군 및 경찰용의 것	0	0	
8805212090	기타	5	0	
8805291010	군 및 경찰용의 것	0	0	
8805291090	기타	5	0	
8805292010	군 및 경찰용의 것	0	0	
8805292090	기타	5	0	
890110000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각종의 페리보트	0	0	
8901200000	탱커	0	0	
8901300000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901901000	화물선	0	0	
8901902000	화객선	0	0	
8902001010	철강선	0	0	
8902001020	에프·알·피선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902001030	목조선	0	0	
8902001090	기타	0	0	
8902002010	어획물의 가공선·저장선	0	0	
8902002090	기타	0	0	
8903100000	인플랫터블식의 것	8	0	
8903910000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8903920000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는 제외한다)	8	0	
8903991000	아웃보드 모터보트	8	0	
8903999000	기타	8	0	
8904001000	예인선	5	0	
8904002000	푸셔크라프트	5	0	
8904009000	기타	5	0	
8905100000	준설선	5	0	
8905201000	시추대	5	0	
8905202000	작업대	5	0	
8905209000	기타	5	0	
8905901000	조명선	5	0	
8905902000	소방선	5	0	
8905903000	기중기선	5	0	
8905904000	발전선	5	0	
8905905000	해난구조선	5	0	
8905906000	공작선	5	0	
8905907000	시추선	5	0	
8905908000	부선거	5	0	
8905909000	기타	5	0	
8906100000	군함	0	0	
8906900000	기타	0	0	
8907100000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5	0	
8907901000	부교(소호 제 8907.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5	0	
8907902000	탱크	5	0	
8907903000	코퍼댐	5	0	
8907904000	부잔교	5	0	
8907905000	부표	5	0	
8907906000	수로부표	5	0	
8907909000	기타	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8908001000	해체용 선박	0	0	
8908009000	기타	0	0	
9001101000	광섬유	8	3	
9001102000	광섬유다발	8	0	
9001103000	광섬유 케이블	8	3	
9001200000	편광재료제의 판	8	0	
9001300000	콘택트렌즈	8	0	
9001401000	시력 교정용의 것	8	0	
9001409000	기타	8	0	
9001501000	시력 교정용의 것	8	0	
9001509000	기타	8	0	
9001901000	프리즘	8	0	
9001902000	반사경	8	0	
9001903000	기타의 렌즈	8	0	
9001909000	기타	8	0	
9002111000	사진기용의 것	8	0	
9002119010	촬영기 및 비디오카메라용의 것	8	0	
9002119020	영사기용의 것	8	0	
9002119090	기타	8	0	
9002191000	현미경용의 것	8	0	
9002192000	천체망원경용의 것	8	0	
9002199000	기타	8	0	
9002201000	사진기용의 것	8	0	
9002209000	기타	8	0	
9002901000	사진기용의 것	8	0	
90029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9002909090	기타	8	0	
9003110000	플라스틱제의 것	8	0	
900319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3199000	기타	8	0	
9003900000	부분품	8	0	
900410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109000	기타	8	0	
9004901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901090	기타	8	0	
9004909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04909090	기타	8	0	
9005100000	쌍안경	8	0	
9005801000	단안경	8	0	
9005802010	반사망원경	8	0	
9005802020	굴절식 천체망원경	8	0	
9005802030	자오의, 적도의 또는 천정의와 경위의	8	0	
9005802090	기타	8	0	
9005809000	기타	8	0	
900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8	0	
9006100000	인쇄제판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사진기	8	0	
9006301000	수중촬영용 사진기	8	0	
9006302000	공중측량용 사진기	8	0	
9006303000	내부기관의 내과용 또는 외과용 검진용 사진기	8	0	
9006304000	법정비교용 사진기	8	0	
9006401000	폴라로이드 사진기	8	0	
9006402000	스티커 사진기	8	0	
9006409000	기타	8	0	
9006511000	특수용도사진기	8	0	
9006519000	기타	8	0	
9006521000	특수용도사진기	8	0	
9006529010	문서수룩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8	0	
9006529090	기타	8	0	
9006531000	특수용도사진기	8	0	
9006539010	일회용사진기	8	0	
9006539020	문서수룩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8	0	
9006539090	기타	8	0	
9006591000	특수용도사진기	8	0	
9006599010	문서수룩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폼용의 것에 한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06599090	기타	8	0	
90066100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	8	0	
9006691000	섬광전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0	
9006699000	기타	8	0	
9006910000	카메라용의 것	8	0	
9006990000	기타	8	0	
9007110000	폭이 16 밀리미터 미만 또는 더블 8 밀리미터의 필름용인 것	8	0	
9007191000	폭이 30 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의 것	8	0	
9007199000	기타	8	0	
9007201000	폭이 16 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의 것	8	0	
9007209010	폭이 20 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의 것	8	0	
9007209020	폭이 20 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용의 것	8	0	
9007910000	촬영기용의 것	8	0	
9007920000	영사기용의 것	8	0	
9008100000	환등기	8	0	
9008200000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를 불문한다)	8	0	
9008300000	기타의 투영기	8	0	
9008401000	인쇄제판 조정용의 것	8	0	
9008402000	마이크로 필름용의 것	8	0	
9008409000	기타	8	0	
900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0101000	인쇄 제판용의 것	8	0	
9010102000	마이크로 필름용의 것	8	0	
9010109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10109090	기타	8	0	
9010501000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0	0	
9010509000	기타	8	0	
9010600000	영사용 스크린	8	0	
9010901010	소호 제 9010.50.1000 호의 기기용의 것	0	0	
901090109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10909000	기타	8	0	
9011101000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0	
9011109000	기타	8	0	
9011201010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0	
9011201090	기타	8	0	
9011209000	기타	8	0	
9011801000	편광 현미경	8	0	
9011802000	금속 현미경	8	0	
9011803000	위상차 현미경	8	0	
9011804000	생물 현미경	8	0	
9011805000	비교 현미경	8	0	
9011809000	기타	8	0	
9011901000	소호 제 9011.10.1000 호, 제 9011.20.1010 호의 것	0	0	
9011909000	기타	8	0	
901210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0	0	
9012101090	기타	8	0	
9012102000	회절기기	8	0	
9012901000	소호 제 9012.10.1010 호의 것	0	0	
9012909000	기타	8	0	
9013100000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 또는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의 망원경	8	0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8	0	
9013801110	광전자식 시계용의 것	8	0	
9013801120	전자계산기용의 것	0	0	
9013801130	텔레비전용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13801140	모니터용의 것	8	0	
9013801190	기타	8	0	
9013801910	광전자식 시계용의 것	8	0	
9013801920	전자계산기용의 것	0	0	
9013801930	텔레비전용의 것	8	0	
9013801990	기타	8	0	
9013802000	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	8	0	
9013803000	도어아이	8	0	
9013809000	기타	8	0	
9013901000	소호 제 9013.80.1120 호, 제 9013.80.1920 호의 것	0	0	
9013909000	기타	8	0	
9014101010	항공기용의 것	8	0	
9014101090	기타	8	0	
9014102010	항공기용의 것	8	0	
9014102090	기타	8	0	
9014109000	기타	8	0	
9014200000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	8	0	
9014800000	기타의 항행용 기기	8	0	
9014901000	항공기용의 것	8	0	
9014909000	기타	8	0	
9015100000	거리측정기	8	0	
9015200000	경위의와 시거리(태코미터)	8	0	
9015300000	수준기	8	0	
9015400000	사진측량기기	8	0	
9015801000	토지 측량용의 것	8	0	
9015802000	수로 측량용의 것	8	0	
9015803000	해양 측량용의 것	8	0	
9015804000	수리 계측용의 것	8	0	
9015805000	기상 관측용의 것	8	0	
9015809000	기타	8	0	
901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6001000	직시식의 것	8	0	
9016002000	전자식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16008000	기타	8	0	
9016009000	부분품 또는 부속품	8	0	
9017101000	플로터	0	0	
9017109000	기타	8	0	
9017201010	플로터	0	0	
9017201090	기타	8	0	
9017202010	플로터	0	0	
9017202090	기타	8	0	
9017203000	계산용구	8	0	
9017209000	기타	8	0	
9017301000	마이크로미터	8	0	
9017302000	다이알 게이지류	8	0	
9017303000	버어니어 캘리퍼스	8	0	
9017309000	기타	8	0	
9017801000	눈금이 든 골은 자와 줄자	8	0	
9017809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17809090	기타	8	0	
9017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17909010	플로터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9017909020	플로터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및 기타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9017909090	기타	8	0	
9018111000	심전계	8	0	
9018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120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8	0	
9018130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8	0	
9018140000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8	0	
9018191000	뇌파계	8	0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8	0	
9018194000	혈압측정기기	8	0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8	0	
9018198000	기타	8	0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201000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18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310000	주사기(바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8	0	
9018321000	주사침	8	0	
9018322000	봉합침	8	0	
9018329000	기타	8	0	
9018391000	수혈세트 또는 수액세트	8	0	
9018392000	카테터	8	0	
9018398000	기타	8	0	
90183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411000	치과용 드릴 엔진	8	0	
90184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491000	치과용 바아	8	0	
9018492000	치과용 유닛	8	0	
9018493000	치석 제거기	8	0	
9018498000	기타	8	0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501000	안과용 기기	8	0	
90185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8901000	임신진단기	8	0	
9018909010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	8	3	
9018909020	산부인과용 기기	8	0	
901890903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8	0	
9018909040	인공신장기	8	0	
9018909050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8	0	
9018909060	수의용 기기	8	0	
9018909080	기타	8	0	
9018909090	부분품과 부속품	8	3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0	0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0	0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0	0	
90191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9201000	오존 흡입기	0	0	
9019202000	산소 흡입기	0	0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0	0	
9019204000	인공호흡기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19208000	기타	0	0	
9019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0001000	가스마스크	8	0	
9020008000	기타의 호흡용 기기	8	0	
9020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21100000	정형외과용 또는 골절치료용의 기기	0	0	
9021210000	의치	0	0	
9021290000	기타	0	0	
9021310000	인조관절	0	0	
9021390000	기타	0	0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902150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9021901000	스크루, 스테이플, 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0	0	
9021908000	기타	0	0	
9021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8	3	
9022130000	기타(치과용의 것에 한한다)	8	0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8	0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8	0	
9022141090	기타	8	0	
9022142000	수익용의 것	8	0	
9022191000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것	8	0	
9022192000	공업용의 것	8	0	
9022199000	기타	8	0	
9022211010	감마사진기	8	0	
902221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8	0	
9022211030	코발트 치료기	8	0	
9022211090	기타	8	0	
9022212000	수익용의 것	8	0	
9022291000	물리 또는 화학시험용의 것	8	0	
9022292000	공업용의 것	8	0	
9022299000	기타	8	0	
9022300000	엑스선관	8	0	
9022901010	엑스선 발생기	8	0	
9022901020	엑스선의 스크린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2290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8	0	
9022901090	기타	8	0	
9022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23001000	인체 또는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	8	0	
9023009000	기타	8	0	
9024101000	경도시험기	8	0	
9024102000	항장력(인장)시험기	8	0	
9024103000	압축시험기	8	0	
9024104000	피로시험기	8	0	
9024105000	만능시험기	8	0	
9024106000	인쇄회로기판, 반도체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의 볼 또는 와이어의 접착력 또는 전단력 측정을 위한 기기	8	0	
9024109000	기타	8	0	
9024801010	신축시험기	8	0	
9024801020	마모시험기	8	0	
9024801090	기타	8	0	
9024809010	탄성시험기	8	0	
9024809020	소성시험기	8	0	
9024809090	기타	8	0	
9024901000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9024909000	기타	8	0	
9025111000	의료용 또는 수의용 온도계	0	0	
9025119000	기타	8	0	
9025191000	온도계	8	3	
9025192010	광학식 고온계	8	0	
9025192090	기타	8	0	
9025801000	액체 비중계 및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8	0	
9025802010	수은 기압계	8	0	
902580209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25803010	건습구 습도계	8	0	
9025803020	모발 습도계	8	0	
9025803090	기타	8	0	
9025809000	기타	8	0	
9025901100	온도센서	8	0	
9025901200	습도센서	8	0	
9025901900	기타센서	8	0	
9025909000	기타	8	0	
9026101000	유량계	0	0	
9026102000	액면계	0	0	
9026109000	기타	0	0	
9026201110	액체형의 것	0	0	
9026201120	금속형의 것	0	0	
9026201190	기타	0	0	
9026201900	기타	0	0	
9026209000	기타	0	0	
9026801000	열측정계	0	0	
9026802000	풍력계	0	0	
9026809000	기타	0	0	
9026901100	레벨센서	0	0	
9026901200	유량 또는 유속센서	0	0	
9026901300	압력센서	0	0	
9026901400	열센서(온도센서 및 열량센서는 제외한다)	0	0	
9026901900	기타센서	0	0	
9026909000	기타	0	0	
9027100000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8	0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	0	
9027301000	분광계	0	0	
9027302000	분광광도계	0	0	
9027303000	분광사진기	0	0	
9027501000	편광계	0	0	
9027502000	굴절계	0	0	
9027503000	비색계	0	0	
9027504000	조도계	0	0	
9027509000	기타	0	0	
9027801000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기기			
9027802010	피·에이치 미터	0	0	
9027802020	열량계	0	0	
9027802030	점도계	0	0	
9027802040	팽창계	0	0	
9027802050	노출계	8	0	
9027802090	기타	0	0	
9027901000	마이크로통	8	0	
9027909110	가스센서	8	0	
9027909121	분진센서	0	0	
9027909122	매연센서	8	0	
9027909130	열량센서	0	0	
9027909190	기타	0	0	
90279099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27909991	가스 또는 매연분석기기와 마이크로통의 것	8	0	
9027909999	기타	0	0	
9028101010	디지털식의 것	8	0	
9028101090	기타	8	0	
90281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201010	디지털식의 것	8	0	
9028201090	기타	8	0	
90282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301010	전류가 50 암페어 이상인 것	8	0	
9028301020	전류가 50 암페어 미만인 것	8	0	
90283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29101000	적산회전계	8	0	
9029102000	생산량계	8	0	
9029103000	택시미터	8	0	
9029104000	주행거리계	8	0	
9029105000	기계의 작동시간 지시용 적산계기	8	0	
9029109000	기타	8	0	
9029201010	시계식의 것	8	0	
9029201090	기타	8	0	
9029202000	스트로보스코우프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29901100	속도센서	8	0	
9029901200	회전센서	8	0	
9029901900	기타센서	8	0	
9029909000	기타	8	0	
9030100000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0	0	
9030201010	음극선관의 것	8	0	
9030201090	기타	8	0	
9030202010	음극선관의 것	8	0	
9030202090	기타	8	0	
90303100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8	0	
90303200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8	0	
9030331000	전압계	8	0	
9030332000	전류계	8	0	
9030333000	회로계	8	0	
9030334000	저항계	8	0	
9030335000	검류계	8	0	
9030336000	주파수 측정기	8	0	
9030339000	기타	8	0	
9030391000	전압계	8	0	
9030392000	전류계	8	0	
9030393000	회로계	8	0	
9030394000	저항계	8	0	
9030395000	검류계	8	0	
9030396000	주파수 측정기	8	0	
9030399000	기타	8	0	
9030401000	누화계	0	0	
9030402000	계인측정계	0	0	
9030403000	만곡률계	0	0	
9030404000	잡음전압계	0	0	
9030409000	기타	0	0	
9030820000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0	0	
90308400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8	0	
9030890000	기타	8	0	
9030901100	전자기센서	8	0	
9030901200	방사선센서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30901900	기타센서	8	0	
9030909010	소호 제 9030.82 호의 것(소호 제 9030.90 호의 센서를 포함한다)	0	0	
9030909090	기타	8	0	
9031100000	균형시험기	8	0	
9031200000	테스트벤치	8	0	
9031411000	포시미터	0	0	
9031419000	기타	0	0	
9031491000	광학식 표면 테스터	8	0	
9031492000	광학식 각도계 또는 앵글게이지	8	0	
9031493000	포시미터	8	0	
9031494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31494090	기타	8	0	
9031499010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오염상태 측정용의 것	0	0	
9031499090	기타	8	0	
9031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8	0	
9031802000	로드셀	8	0	
9031809010	내연기관특성 시험기	8	0	
9031809020	기어 테스터	8	0	
9031809030	면적계	8	0	
9031809040	구면계	8	0	
9031809050	방직용 섬유 재료 검사장치	8	0	
90318090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8	0	
9031809070	흙, 균열 또는 기타 결함 측정기	8	0	
9031809080	동력시험기	8	0	
9031809091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31809099	기타	8	0	
9031901111	소호 제 9031.41 호, 제 9031.49.9010 호의 것	0	0	
9031901119	기타의 것	0	0	
9031901190	기타	8	0	
9031901291	소호 제 9031.41 호, 제 9031.49.9010 호의 것	0	0	
9031901292	기타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9031901299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031901911	소호 제 9031.41 호, 제 9031.49.9010 호의 것	0	0	
9031901919	기타의 것	0	0	
9031901990	기타	8	0	
9031909011	소호 제 9031.41 호, 제 9031.49.9010 호의 것	0	0	
9031909019	기타의 것	0	0	
9031909090	기타	8	0	
9032101010	냉장고용의 것	8	0	
903210102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101090	기타	8	0	
9032102000	고정식의 것	8	0	
9032200000	매노우스타트	8	0	
9032811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11090	기타	8	0	
9032812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1209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9032812099	기타	8	0	
9032819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19090	기타	8	0	
9032891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91090	기타	8	0	
9032892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92090	기타	8	0	
9032893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93090	기타	8	0	
903289901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899090	기타	8	0	
9032901000	항공기용의 것	5	0	
9032909000	기타	8	0	
9033000000	제 90 류의 기계, 기기, 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9101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0	
9101191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101199000	기타	8	0	
9101210000	자동권식의 것	8	0	
9101290000	기타	8	0	
9101910000	전기구동식의 것	8	0	
9101990000	기타	8	0	
9102111000	맹인용의 것	8	0	
9102112000	문자판, 밴드 또는 유사한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02119010	бат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02119090	기타	8	0	
9102121000	бат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02129010	맹인용의 것	8	0	
9102129020	문자판, 밴드 또는 유사한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02129090	기타	8	0	
9102191000	бат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02199010	맹인용의 것	8	0	
9102199020	문자판, 밴드 또는 유사한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02199090	기타	8	0	
9102211000	맹인용의 것	8	0	
9102212000	문자판, 밴드 또는 유사한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02219000	기타	8	0	
9102291000	맹인용의 것	8	0	
9102292000	문자판, 밴드 또는 유사한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02299000	기타	8	0	
9102911000	스톱워치	8	0	
9102912000	맹인용의 것	8	0	
9102919010	бат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02919090	기타	8	0	
9102991000	스톱워치	8	0	
9102992000	맹인용의 것	8	0	
9102999000	기타	8	0	
9103101000	여행용시계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103109000	기타	8	0	
9103901000	여행용시계	8	0	
9103909000	기타	8	0	
9104001000	차량용의 것	8	3	
9104002000	항공기용의 것	8	0	
9104004000	선박용의 것	8	0	
9104009000	기타	8	0	
9105110000	전기구동식의 것	8	0	
9105190000	기타	8	0	
9105210000	전기구동식의 것	8	0	
9105290000	기타	8	0	
9105910000	전기구동식의 것	8	0	
9105990000	기타	8	0	
9106100000	타임레지스터, 타임레코더	8	0	
9106901000	순찰시계	8	0	
9106902000	타이머	8	0	
9106903000	주차시간 기록계	8	0	
9106909000	기타	8	0	
9107001000	동기 전동기를 갖춘 것	8	0	
9107009000	기타	8	0	
9108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5	0	
9108120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0	
9108190000	기타	5	0	
9108200000	자동권식의 것	5	0	
9108900000	기타	5	0	
9109110000	자명종 시계의 것	8	0	
9109190000	기타	8	0	
9109900000	기타	8	0	
9110111000	باتدري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10112000	자동권식의 것	8	0	
9110119000	기타	8	0	
9110121000	باتدري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10122000	자동권식의 것	8	0	
9110129000	기타	8	0	
9110191000	باتدري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110192000	자동권식의 것	8	0	
9110199000	기타	8	0	
9110901000	бат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	8	0	
9110909000	기타	8	0	
911110000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8	0	
9111200000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	0	
9111800000	기타의 케이스	8	0	
911190100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11909000	기타	8	0	
9112200000	케이스	8	0	
9112900000	부분품	8	0	
9113100000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8	0	
9113200000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	0	
9113901000	플라스틱제의 것	8	0	
9113902000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것	8	0	
9113909000	기타	8	0	
911410000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8	0	
9114200000	시계용 보석	8	0	
9114300000	문자판	8	0	
9114400000	지판과 브리지	8	0	
9114900000	기타	8	0	
9201101000	자동식의 것	8	0	
9201109000	기타	8	0	
9201200000	그랜드 피아노	8	0	
9201901000	하프시코드	8	0	
9201909000	기타	8	0	
9202101000	바이올린	8	0	
9202102000	첼로	8	0	
9202109000	기타	8	0	
9202901000	기타	8	0	
9202902000	하프	8	0	
9202903000	만도린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202904000	밴조우	8	0	
9202909000	기타	8	0	
9205101000	트럼펫	8	0	
9205102000	트럼본	8	0	
9205109000	기타	8	0	
9205901010	플루트	8	0	
9205901020	클라리넷	8	0	
9205901030	색소폰	8	0	
9205901040	리코오더	8	0	
9205901090	기타	8	0	
9205902010	파이프 오르간	8	0	
9205902020	리드 오르간	8	0	
9205902090	기타	8	0	
9205903010	아코디언	8	0	
9205903020	멜로디카	8	0	
9205903090	기타	8	0	
9205904000	하모니카	8	0	
9205909000	기타	8	0	
9206001000	북	8	0	
9206002000	목금	8	0	
9206003000	심벌	8	0	
9206004000	캐스터네츠	8	0	
9206005000	마라카스	8	0	
9206006000	탬버린	8	0	
9206009000	기타	8	0	
9207101000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한다)	8	0	
9207103000	피아노	8	0	
9207109000	기타	8	0	
9207901000	기타	8	0	
9207902000	아코디언	8	0	
9207903000	리듬박스	8	0	
9207909000	기타	8	0	
9208100000	유지컬박스	8	0	
9208901000	페어그라운드 오르간	8	0	
9208902000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	8	0	
9208903000	기계식 자명조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208904000	유지컬 소오	8	0	
9208909000	기타	8	0	
9209301000	금속선제의 것	8	0	
9209309000	기타	8	0	
92099100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20000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40000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91000	유지컬 무브먼트의 것	8	0	
9209992000	박절기, 음차와 각종의 조율관(調律管)	8	0	
9209993000	유지컬 박스용의 메커니즘	8	0	
9209999000	기타	8	0	
9301110000	자주식의 것	0	0	
9301190000	기타	0	0	
9301200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 및 그와 유사한 발사장치	0	0	
9301901000	완전자동 산탄총	0	0	
9301902010	노리쇠작동	0	0	
9301902020	반자동	0	0	
9301902030	완전자동	0	0	
9301902090	기타	0	0	
9301903000	기관총	0	0	
9301904010	완전자동 피스톨	0	0	
9301904090	기타	0	0	
9301909000	기타	0	0	
9302001010	리볼버	0	0	
9302001021	반자동	0	0	
9302001029	기타	0	0	
9302001030	피스톨(다열총열)	0	0	
9302001090	기타	0	0	
9302009010	리볼버	0	0	
9302009021	반자동	0	0	
9302009029	기타	0	0	
9302009030	피스톨(다열총열)	0	0	
9302009090	기타	0	0	
9303100000	총구장전화기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303201011	펌프작동	8	0	
9303201012	반자동	8	0	
9303201019	기타	8	0	
9303201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9303201090	기타	8	0	
9303209011	펌프작동	8	0	
9303209012	반자동	8	0	
9303209019	기타	8	0	
9303209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9303209090	기타	8	0	
9303301010	단발	8	0	
9303301020	반자동	8	0	
9303301090	기타	8	0	
9303309010	단발	8	0	
9303309020	반자동	8	0	
9303309090	기타	8	0	
9303900000	기타	8	0	
9304001000	공기총	8	0	
9304009000	기타	8	0	
9305101010	격발장치	0	0	
9305101020	프레임과 총몸	0	0	
9305101030	총열	0	0	
9305101040	피스톤, 잠금러그 및 가스완충기	0	0	
9305101050	탄알집 및 그 부분품	0	0	
930510106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0	0	
9305101070	개머리판, 손잡이 및 플레이트	0	0	
9305101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0	0	
9305101090	기타	0	0	
9305109010	격발장치	8	0	
9305109020	프레임과 총몸	8	0	
9305109030	총열	8	0	
9305109040	피스톤, 잠금러그 및 가스완충기	8	0	
9305109050	탄알집 및 그 부분품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30510906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8	0	
9305109070	개머리판, 손잡이 및 플레이트	8	0	
9305109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8	0	
9305109090	기타	8	0	
9305210000	산탄총의 총열	8	0	
9305291000	격발장치	8	0	
9305292000	프레임과 총몸	8	0	
9305293000	라이플 총열	8	0	
9305294000	피스톤, 잠금러그 및 가스완충기	8	0	
9305295000	탄알집 및 그 부분품	8	0	
930529600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8	0	
9305297000	소염기 및 그 부분품	8	0	
9305298000	브리치, 노리쇠 및 노리쇠집	8	0	
9305299000	기타	8	0	
9305911010	격발장치	0	0	
9305911020	프레임과 총몸	0	0	
9305911030	총열	0	0	
9305911040	피스톤, 잠금러그 및 가스완충기	0	0	
9305911050	탄알집 및 그 부분품	0	0	
9305911060	소음기 및 그 부분품	0	0	
9305911070	소염기 및 그 부분품	0	0	
9305911080	브리치, 노리쇠 및 노리쇠집	0	0	
9305911090	기타	0	0	
9305919000	기타	0	0	
9305990000	기타	8	0	
9306210000	탄약	0	0	
9306290000	기타	0	0	
9306301000	리베팅용 또는 이와 유사한 공구용 또는 무통 도살기용의 탄약 및 그들의 부분품	0	0	
9306309000	기타	0	0	
9306900000	기타	0	0	
9307000000	검류,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그들의 부분품과 집			
9401100000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의자	0	0	
9401200000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의자	8	3	
9401302000	등나무제의 것	0	0	
9401303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309000	기타	0	0	
9401401000	등나무제의 것	0	0	
9401402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409000	기타	0	0	
9401510000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0	0	
9401591000	등나무제의 것	0	0	
9401599000	기타	0	0	
9401611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619000	기타	0	0	
9401691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699000	기타	0	0	
9401711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719000	기타	0	0	
9401791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799000	기타	0	0	
9401801000	석재의 것	0	0	
9401809000	기타	0	0	
9401901000	목재의 것	8	0	
9401902000	금속제의 것	8	0	
9401909000	기타	8	0	
9402101010	치과용 의자	0	0	
9402101020	안과용 의자	0	0	
9402101090	기타	0	0	
9402109010	이발용 또는 미용실용 의자	0	0	
9402109090	기타	0	0	
9402901000	수술대	0	0	
9402902000	산부인과용 검진대	0	0	
9402903000	분만대	0	0	
9402908000	기타	0	0	
9402909000	부분품	0	0	
9403100000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금속제가구			
9403201000	침대	0	0	
9403209000	기타	0	0	
9403301000	책상	0	0	
9403309000	기타	0	0	
9403401000	식탁	8	0	
9403409000	기타	8	0	
9403501000	침대	0	0	
9403509000	기타	0	0	
9403601010	문갑	0	0	
9403601020	화장대	0	0	
9403601030	장롱	0	0	
9403601090	기타	0	0	
9403609010	문갑	0	0	
9403609020	화장대	0	0	
9403609030	장롱	0	0	
9403609090	기타	0	0	
9403701000	보행기	0	0	
9403709000	기타	0	0	
9403810000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0	0	
9403890000	기타	0	0	
9403900000	부분품	8	0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	8	0	
9404210000	셀룰로오스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8	0	
9404290000	기타 재료의 것	8	0	
9404300000	슬리핑 백	8	0	
9404900000	기타	8	0	
94051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0	
9405102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109000	기타	8	0	
9405201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0	
9405202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209000	기타	8	0	
9405301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0	
940530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405401000	방폭형의 것	8	0	
9405402000	투광형의 것	8	0	
9405403000	가로등의 것	8	0	
9405409000	기타	8	0	
940550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	0	
9405601000	네온관의 것	8	0	
9405602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0	
9405603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609000	기타	8	0	
9405911000	산데리아용의 것	8	0	
9405919000	기타	8	0	
9405921000	산데리아용의 것	8	0	
9405929000	기타	8	0	
9405991000	산데리아용의 것	8	0	
9405999000	기타	8	0	
9406001000	목재의 것	8	12	
9406009010	플라스틱제의 것	8	0	
9406009020	철강제의 것	8	0	
9406009030	알루미늄제의 것	8	0	
9406009090	기타	8	0	
950300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0	0	
9503001200	스쿠터	0	0	
9503001300	페달차	0	0	
9503001400	인형용의 차	0	0	
9503001800	기타	0	0	
95030019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503002110	직물제의 것	8	0	
9503002120	고무제의 것	0	0	
9503002130	플라스틱제의 것	8	0	
9503002140	도자제의 것	0	0	
9503002150	유리제의 것	0	0	
9503002160	목재의 것	0	0	
9503002190	기타	8	0	
9503002910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8	0	
9503002990	기타	0	0	
9503003110	전기식 기차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503003190	부속품	0	0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소호 제 9503.00.31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9503003300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0	0	
9503003411	방직용 섬유 재료의 것	8	0	
9503003419	기타	8	0	
9503003491	방직용 섬유 재료의 것	8	0	
9503003492	고무제의 것	0	0	
9503003493	플라스틱제의 것	8	0	
9503003494	금속제의 것	8	0	
9503003495	도자제의 것	0	0	
9503003496	유리제의 것	0	0	
9503003497	목제의 것	0	0	
9503003499	기타	8	0	
9503003500	완구용 악기류	8	0	
9503003600	퍼즐	0	0	
9503003700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0	
9503003800	기타의 완구 및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8	0	
9503003911	풍선, 완구용 공, 연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9503003919	기타	8	0	
9503003990	부분품과 부속품(소호 제 9503.00.3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9504100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0	0	
9504201000	당구대	0	0	
9504202000	당구공	0	0	
9504209000	기타	0	0	
9504300000	기타의 게임(코인, 은행권, 은행카드, 토큰 또는 기타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에 한하며 볼링 유희장 용구는 제외한다)	0	0	
9504400000	유희용 카드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504901010	핀 테이블	0	0	
9504901020	핀 세터	0	0	
9504901030	볼링 볼	0	0	
9504901040	레인	0	0	
9504901050	볼링 핀	0	0	
9504901090	기타	0	0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0	0	
9504903000	기타의 용구	0	0	
9504909010	비디오 게임기의 것	0	0	
9504909020	전자식 게임기의 것	0	0	
9504909090	기타	0	0	
9505100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8	0	
9505900000	기타	8	0	
9506110000	스키	8	0	
9506120000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8	0	
9506190000	기타	8	0	
9506210000	세일보드	8	0	
9506290000	기타	8	0	
9506310000	골프채(완제품의 것에 한한다)	8	0	
9506320000	골프공	8	0	
9506391000	골프채의 부분품	8	0	
9506399000	기타	8	0	
9506401000	탁구대	8	0	
9506402000	탁구라켓	8	0	
9506403000	탁구공	8	0	
9506409000	기타	8	0	
9506510000	로온테니스 라켓(줄을 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9506591000	배드민턴 라켓	8	0	
9506599000	기타	8	0	
9506610000	로온테니스 공	8	0	
9506621000	축구공	8	0	
9506622000	농구공	8	0	
9506623000	배구공	8	0	
9506624000	송구공	8	0	
9506625000	미식축구공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506629000	기타	8	0	
9506691000	배드민턴공	8	0	
9506692000	야구공	8	0	
9506699000	기타	8	0	
9506700000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0	
9506910000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체조 또는 육상경기용품	8	0	
9506990000	기타	8	0	
9507101000	유리섬유제의 것	8	0	
9507102000	카본제의 것	8	0	
9507109000	기타	8	0	
9507200000	낙시바늘(낙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9507300000	낙시 릴	8	0	
9507901000	낙시용 망과 기타의 낙시용구	8	0	
9507909000	기타	8	0	
9508100000	순회서커스용과 순회동물원용의 용품	8	0	
9508900000	기타	8	0	
9601100000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8	0	
9601901010	진주양식용 핵	0	0	
9601901090	기타	8	0	
9601902000	뿔로 된 것	8	0	
9601903000	뼈로 된 것	8	0	
9601904000	산호제의 것	8	0	
9601909010	진주양식용 핵	0	0	
9601909090	기타	8	0	
9602001000	젤라틴 캡슐	8	0	
9602009010	가공한 식물성의 조각용재료(예: 상아야자)와 식물성의 조각용재료의 제품	8	0	
9602009020	흑옥(광물성의 흑옥 유사품을 포함한다), 호박, 해포석, 응결한 호박 및 응결한 해포석의 가공품과 그 제품	8	0	
960200909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 또는 기타의 식물성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에 한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9603210000	칫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를 포함한다)	8	0	
9603290000	기타	8	0	
9603300000	회화용의 붓, 필기용의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의 붓	8	0	
9603400000	페인트용·디스토퍼용·바니시용 또는 이와 유사한 브러시(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8	0	
9603500000	기타의 브러시(기계, 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8	0	
9603900000	기타	8	0	
9604000000	수동식의 체 및 에레미	8	0	
9605000000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 바느질용 또는 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8	0	
9606100000	프레스파스너, 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및 그들의 부분품	8	0	
9606210000	플라스틱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8	0	
9606220000	비(卑)금속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8	0	
9606291000	조개껍질제의 것	8	0	
9606299000	기타	8	0	
9606300000	단추의 몰드와 기타 단추의 부분품, 단추블랭크	8	0	
9607110000	체인스쿠프가 비(卑)금속제의 것	8	0	
9607191000	플라스틱제의 것	8	0	
9607199000	기타	8	0	
9607201000	비금속제의 것	8	0	
9607202000	플라스틱제의 것	8	0	
9607209000	기타	8	0	
9608100000	볼펜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608200000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8	0	
9608310000	인디언 잉크용의 드로잉 펜	8	0	
9608391000	만년필	8	0	
9608399000	기타	8	0	
9608401000	프로펠링 펜슬	8	0	
9608402010	메커니컬 타입의 것	8	0	
9608402090	기타	8	0	
960850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8	0	
9608600000	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에 한한다)	8	0	
9608911000	펜촉	8	0	
9608912000	납포인트	8	0	
9608991000	부분품	8	0	
9608999000	기타	8	0	
9609101000	연필	8	0	
9609102000	색연필	8	0	
9609103000	크레용	8	0	
9609200000	연필심(검은색 또는 색깔이 있는 것에 한한다)	8	0	
9609901000	크레용 및 오일파스텔	8	0	
9609902000	파스텔	8	0	
9609903010	필기용의 것	8	0	
9609903090	기타	8	0	
9609909000	기타	8	0	
9610001000	석판	8	0	
9610002000	흑판	8	0	
9610009000	기타	8	0	
9611001000	스탬프	8	0	
9611002000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8	0	
9611009000	기타	8	0	
9612101000	타자기용의 것	8	0	
961210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의 것	8	0	
9612109000	기타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612200000	잉크 패드	8	0	
961310000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에 한한다)	8	0	
9613200000	포켓용ライター(가스 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8	0	
9613800000	기타의ライター	8	0	
9613901000	압전식 점화 유닛	8	0	
9613909000	기타	8	0	
9614001000	파이프와 파이프 볼	8	0	
9614009000	기타	8	0	
9615111000	빗	8	0	
9615119000	기타	8	0	
9615191000	빗	8	0	
9615199000	기타	8	0	
9615901000	머리핀	8	0	
9615909000	기타	8	0	
9616100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그들의 마운트와 두부	8	0	
9616200000	화장용 분첩과 패드	8	0	
9617001000	보온병	8	0	
9617002000	보온 도시락	8	0	
9617008000	기타	8	0	
9617009000	부분품	8	0	
9618001000	마네킹 인형	8	0	
9618002000	자동 인형	8	0	
9618009000	기타	8	0	
9701101000	회화	0	0	
9701102000	데생	0	0	
9701103000	파스텔	0	0	
9701900000	기타	0	0	
9702001000	판화	0	0	
9702002000	인쇄화	0	0	
9702003000	석판화	0	0	
9703001000	조각	0	0	
9703002000	조상	0	0	
9704001000	우표	0	0	
9704009000	기타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 제한조치
970500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해부학, 사학, 고고학, 고생물학, 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에 한한다]	0	0	
9706001000	도자기류	0	0	
9706002000	악기류	0	0	
9706009000	기타	0	0	

부속서 2-가

콜롬비아의 양허표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테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1011010	-- 말	5	5	0			
01011020	-- 당나귀	10	10	0			
01019011	---- 경주용의 것	10	10	0			
01019019	---- 기타	10	10	0			
01019090	-- 기타	10	10	0			
01021000	- 번식용의 것	5	5	0			
01029010	-- 싸움용의 것	10	10	0			
01029090	-- 기타	10	10	0			
01031000	- 번식용의 것	5	5	0			
01039100	--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10	10	0			
01039200	--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0	10	0			
01041010	-- 번식용의 것	5	5	0			
01041090	-- 기타	10	10	0			
01042010	-- 번식용의 것	5	5	0			
01042090	-- 기타	10	10	0			
01051100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것에 한한다)	5	5	0			
01051200	-- 칠면조	5	5	0			
01051900	-- 기타	5	5	0			
01059400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것에 한한다)	10	10	0			
01059900	-- 기타	10	10	0			
01061100	-- 영장류	10	10	0			
01061200	--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10	10	0			
01061911	----- 과나코를 포함한 라마(라마 글라마)	10	10	0			
01061912	----- 알파카(라마 파쿠스)	10	1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1061919	- - - - 기타	10	10	0			
01061990	- - - 기타	10	10	0			
0106200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0	10	0			
01063100	- - 앵금류	10	10	0			
01063200	- - 앵무류(패로트류, 파라키트류, 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10	10	0			
01063900	- - 기타	10	10	0			
01069010	- - 곤충류	10	10	0			
01069090	- - 기타	10	10	0			
02011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80	80	E			
02012000	-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 절단한 것	80	80	E			
02013000	- 뼈 없는 것	80	80	19		부속서 2-나 참조	
02021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80	80	E			
02022000	-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 절단한 것	80	80	E			
02023000	- 뼈 없는 것	80	80	19		부속서 2-나 참조	
02031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0	안데스가격밴드	10	부속서 2-다 참조		
02031200	- -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0	안데스가격밴드	10	부속서 2-다 참조		
02031900	- - 기타	20	안데스가격밴드	10	부속서 2-다 참조		
02032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0	안데스가격밴드	10	부속서 2-다 참조		
02032200	- -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째 절단한 것에 한한다)	30	안데스가격밴드	10			
02032900	- - 기타	30	안데스가격밴드	16			
02041000	- 어린 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5	15	1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20421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15	15	10			
02042200	--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 절단한 것	15	15	10			
02042300	-- 뼈 없는 것	15	15	10			
02043000	- 어린 면양의 도체와 이분도체(냉동한 것에 한한다)	15	15	0			
020441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15	15	10			
02044200	-- 기타의 것으로서 뼈째 절단한 것	15	15	0			
02044300	-- 뼈 없는 것	15	15	10			
02045000	- 산양의 고기	15	15	10			
02050000	말, 당나귀, 노새 또는 버새의 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15	15	10			
02061000	- 소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80	80	E			
02062100	-- 혀	80	80	E			
02062200	-- 간(肝)	80	80	E			
02062900	-- 기타	80	80	19			
02063000	- 돼지의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0	15	10			
02064100	-- 간	20	15	10			
02064900	-- 기타	20	15	10			
02068000	-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5	15	10			
02069000	-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15	15	10			
02071100	--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0	안데스가격밴드	20	부속서 2-다 참조		
02071200	--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45	안데스가격밴드	18			
02071300	-- 절단육 및 설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64. 4	안데스가격밴드	18-A			
02071400	-- 절단육 및 설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164. 4	안데스가격밴드	18-A			
02072400	--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0	안데스가격밴드	5			
02072500	--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20	안데스가격밴드	0			
02072600	-- 절단육 및 설육(신선	20	안데스가격밴드	5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72700	-- 절단육 및 설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20	안데스가격밴드	5			
02073200	--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0	안데스가격밴드	5			
02073300	--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20	안데스가격밴드	5			
02073400	-- 지방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0	안데스가격밴드	5			
02073500	--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20	안데스가격밴드	5			
02073600	--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20	안데스가격밴드	12			
02081000	- 토끼의 것	15	15	0			
02083000	- 영장류의 것	15	15	0			
0208400000	-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의 것,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20	15	5			a
02085000	- 파충류(뱀과 거북류 포함)의 것	15	15	0			
02089000	- 기타	15	15	10			
02090010	- 베이컨	15	15	10			
02090090	- 기타	20	10	10			
02101100	-- 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째 절단한 것에 한한다)	20	15	10			
02101200	--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20	안데스가격밴드	10	부속서 2-다 참조		
02101900	-- 기타	20	안데스가격밴드	10	부속서 2-다 참조		
02102000	- 쇠고기	80	80	E			
02109100	--영장류의 것	15	15	10			
02109200	--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의 것, 매너티 및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15	15	10			
02109300	-- 파충류(뱀과 거북류 포함)의 것	15	15	10			
02109910	---- 육과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15	15	1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2109990	--- 기타	15	15	0, (단, 제 0105 호의 가금류의 영장 또는 영수장한 식용설육으 로, 전체를 소금으로 균질하게 절인 것으로서, 소금의 비율이 전중량의 1.2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은 10)			
0301100000	- 관상용 어류	10	10	5			
0301911000	--- 번식용 또는 산업양식용의 것	5	5	7			
0301919000	--- 기타	5	5	7			
0301920000	-- 뱀장어(앵귌라종)	5	5	0			
0301930000	-- 잉어	5	5	5			
0301940000	--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10	5	5			b
0301950000	--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10	5	5			b
0301991000	--- 번식용 또는 산업양식용의 것	5	5	0			
0301999000	--- 기타	10	5	0			
0302110000	-- 송어(살모 트루타, 양코링쿠스 미키스, 양코링쿠스 클라키, 양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양코링쿠스 길래,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20	15	7			a
0302120000	--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넬카,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케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츠,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0	15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302190000	-- 기타	20	15	5			a
0302210000	-- 넵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20	15	10			b
0302220000	--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20	15	10			b
0302230000	-- 서대(솔레아종)	20	15	7			a
0302290000	-- 기타	20	15	10			b
0302310000	--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	20	15	7			a
0302320000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20	15	7			a
0302330000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도우	20	15	10			b
0302340000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20	15	7			a
0302350000	--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20	15	7			a
0302360000	--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20	15	7			a
0302390000	-- 기타	20	15	7			a
03024000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20	15	5			a
0302500000	-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20	15	10			b
0302610000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렛(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20	15	5			a
0302620000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20	15	0			
0302630000	-- 검정대구(플라치우스 비렌스)	20	15	5			a
0302640000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스키움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키움버 자포니쿠스)	20	15	10			b
0302650000	-- 곱상어와 기타 상어	20	15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302660000	-- 뱀장어(앵귌라종)	20	15	7			a
03026700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0	15	7			a
0302680000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20	15	5			a
0302690010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니로티쿠스, 오레오크로미스 아우레우스, 오레오크로미스 모잠비크, 오레오크로미스종)	20	15	0			
0302690090	---- 기타	20	15	10			b
0302700000	- 간과 어란	20	15	5			a
0303110000	--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양코링쿠스 넬카)	20	15	5			a
0303190000	-- 기타	20	15	5			a
0303210000	-- 송어(살모 트루타, 양코리쿠스 미키스, 양코리쿠스 클라키, 양코리쿠스 아구아보니타, 양코리쿠스 길래, 양코링쿠스 아파케 및 양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20	15	10			b
0303220000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0	15	5			a
0303290000	-- 기타	20	15	5			a
0303310000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	20	15	10			b
0303320000	--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20	15	10			b
0303330000	-- 서대(솔레아종)	20	15	10			b
0303390000	-- 기타	20	15	10			b
0303410000	-- 날개다랑어 또는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	20	15	7			a
0303420000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20	15	7			a
0303430000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	20	15	7			a
0303440000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20	15	7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303450000	--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20	15	7			a
0303460000	--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20	15	7			a
0303490000	-- 기타	20	15	7			a
03035100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20	15	5			a
0303520000	--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0	15	7			a
03036100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0	15	10			b
0303620000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20	15	5			a
0303710000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발라(사르디발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렛(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20	15	10			b
0303720000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20	15	0			
0303730000	-- 검정대구(플라치우스 비렌스)	20	15	5			a
0303740000	-- 고등어(스콤버 스킴브루스, 스킴버 오스트랄라시쿠스, 스킴버 자포니쿠스)	20	15	10			b
0303750000	-- 곱상어와 기타 상어	20	15	5			a
0303760000	-- 뱀장어(앵귈라종)	20	15	7			a
0303770000	-- 농어(디센트라쿠스 라브락스, 디센트라쿠스 푼크타투스)	20	15	10			b
0303780000	-- 민대구(메루키우스종, 유로피키스종)	20	15	10			b
0303790010	---- 텔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니로티쿠스, 오레오크로미스 아우레우스, 오레오크로미스 모잠비쿠스, 오레오크로미스 종)	20	15	10			b
0303790090	---- 기타	20	15	10			b
0303800000	- 간과 어란	20	15	5			a
03041100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0	15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304120000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20	15	5			a
0304190010	---- 탈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니로티쿠스, 오레오크로미스 아우레우스, 오레오크로미스 모잠비쿠스, 오레오크로미스 종)	20	15	7			a
0304190090	---- 기타	20	15	10			b
03042100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0	15	7			a
0304220000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20	15	5			a
0304291000	---- 민대구(메루키우스종, 유로피키스종)	20	15	10			b
0304299010	----- 탈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니로티쿠스, 오레오크로미스 아우레우스, 오레오크로미스 모잠비쿠스, 오레오크로미스 종)	20	15	10			b
0304299090	----- 기타	20	15	10			b
0304910000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20	15	10			b
0304920000	--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20	15	5			a
0304990000	-- 기타	20	15	0			
0305100000	- 어류의 분, 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	15	7			a
0305200000	- 어류의 간과 어란(건조, 훈제,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20	15	5			a
0305301000	--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의 것	20	15	7			a
0305309000	-- 기타	20	15	5			a
0305410000	-- 태평양연어(양코링쿠스 넬카, 양코링쿠스 고르부스카, 양코링쿠스 게타, 양코링쿠스 차비차, 양코링쿠스 키수츠, 양코링쿠스 마소 및 양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0	15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3054200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20	15	0			
0305490000	-- 기타	20	15	5			a
0305510000	--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0	15	10			b
0305591000	--- 상어지느러미와 기타 곱상어	20	15	5			a
0305592000	--- 민대구(메루키우스종, 유로피키스종)	20	15	10			b
0305599000	---기타	20	15	0			
030561000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 클루페아 팔라시)	20	15	0			
0305620000	-- 대구(가두스 모르화, 가두스 오각,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0	15	5			a
0305630000	-- 멸치(엔그로리스종)	20	15	10			b
0305690000	-- 기타	20	15	5			a
0306110000	-- 닭새우류 및 기타 바닷가재(팔리누루스종, 파누리루스종, 자수스종)	20	15	5			a
0306120000	-- 바닷가재(호마루스종)	20	15	7			a
0306131100	----- 전체상의 것	20	15	0			
0306131200	----- 꼬리(꺾데기가 없는 것에 한한다)	20	15	0			
0306131300	----- 꼬리(꺾데기가 붙어 있는 것으로서, 찌거나 끓는 물로 조리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	15	0			
0306131400	----- 꼬리(꺾데기가 붙어 있는 것으로서, 찌거나 끓는 물로 조리한 것에 한한다)	20	15	0			
0306131900	----- 기타	20	15	0			
0306139110	----- 양식한 것	20	15	0			
0306139120	----- 어획한 것	20	15	0			
0306139190	----- 기타	20	15	0			
0306139900	----- 기타	20	15	0			
0306140000	-- 게	20	15	10			b
0306190000	-- 기타[갑각류의 분, 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	15	7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306210000	-- 닭새우류 및 기타 바닷가재(팔리누루스종, 파누리루스종, 자수스종)	20	15	5			a
0306220000	-- 바닷가재(호마루스종)	20	15	7			a
0306231100	----- 번식용 또는 산업양식용의 것	5	5	10			
0306231900	----- 기타	20	15	10			b
0306239100	----- 번식용 또는 산업양식용의 것	5	5	10			
0306239900	----- 기타	20	15	10			b
0306240000	-- 계	20	15	10			b
0306291000	---- 분, 조분 및 펠리트	20	15	7			a
0306299000	---- 기타	20	15	7			a
0307100000	- 굴	20	15	0			
0307211000	---- 가리비과의 조개("부채꼴의 조개")	20	15	10			b
0307219000	---- 기타	20	15	10			b
0307291000	---- 가리비과의 조개("부채꼴의 조개")	20	15	10			b
0307299000	---- 기타	20	15	10			b
0307310000	--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15	10			b
0307390000	-- 기타	20	15	7			a
0307410000	--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15	10			b
0307490000	-- 기타	20	15	10			b
0307510000	--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15	10			b
0307590000	-- 기타	20	15	10			b
0307600000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20	15	0			
0307911000	---- 성게	20	15	5			a
0307919000	---- 기타	20	15	10			b
0307992000	---- "로코스"(곶출레빠스 곶출레빠스)	20	15	10			b
0307993000	---- 해삼(이소스티초푸스 푸스쿠스)	20	15	10			b
0307994000	---- 바다달팽이	20	15	10			b
0307995000	---- "라파스"	20	15	10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307999000	- - - 기타	20	15	10			b
04011000	-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퍼센트 이하인 것	15	안데스가격밴드	E	부속서 2-다 참조		
04012000	-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 퍼센트 초과 6 퍼센트 이하인 것	15	안데스가격밴드	E	부속서 2-다 참조		
04013000	-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초과인 것	33	안데스가격밴드	16			
04021010	- - 실함량이 2.5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98	98	부록 2-가-1 참조			
04021090	- - 기타	98	98	부록 2-가-1 참조			
04022111	- - - - 실함량이 2.5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98	98	부록 2-가-1 참조			
04022119	- - - - 기타	98	98	부록 2-가-1 참조			
04022191	- - - - 실함량이 2.5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98	98	부록 2-가-1 참조			
04022199	- - - - 기타	98	98	부록 2-가-1 참조			
04022911	- - - - 실함량이 2.5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98	98	E			
04022919	- - - - 기타	98	98	E			
04022991	- - - - 실함량이 2.5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	98	98	E			
04022999	- - - - 기타	98	98	E			
04029110	- - - - 무당연유	98	98	E			
04029190	- - - - 기타	98	98	E			
04029910	- - - - 가당연유	98	98	E			
04029990	- - - - 기타	98	98	E			
04031000	- 요구르트	20	15	15			
04039010	- - 버터밀크	15	15	E			
04039090	- - 기타	20	15	10			
04041010	- - 무기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한 유장	94	94	10			
04041090	- - 기타	94	94	1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4049000	- 기타	94	94	E			
04051000	- 버터	20	안데스가격밴드	E	부속서 2-다 참조		
04052000	- 데어리 스프레드	33	안데스가격밴드	16			
04059020	-- 무수 데어리 유(«버터오일»)	33	안데스가격밴드	16			
04059090	-- 기타	33	안데스가격밴드	16			
04061000	-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20	15	16			
04062000	-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20	15	16			
04063000	-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한다)	33	안데스가격밴드	16			
04064000	-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20	15	16			
04069040	-- 완전히 탈지된 상태에서 계산하여 수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 미만인 것	33	안데스가격밴드	16			
04069050	-- 완전히 탈지된 상태에서 계산하여 수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 이상 56 퍼센트 미만인 것	33	안데스가격밴드	16			
04069060	-- 완전히 탈지된 상태에서 계산하여 수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6 퍼센트 이상 69 퍼센트 미만인 것	33	안데스가격밴드	16			
04069090	-- 기타	33	안데스가격밴드	16			
04070010	- 종란	5	5	0			
04070020	- 백신 생산용의 것(특정 병원균이 없는 것에 한한다)	5	5	0			
04070090	- 기타	20	15	10			
04081100	-- 건조한 것	20	15	5			
04081900	-- 기타	20	15	10			
04089100	-- 건조한 것	20	15	10			
04089900	-- 기타	20	15	10			
04090010	- 용량이 300 킬로그램을	15	15	1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초과하는 용기에 넣은 것						
04090090	- 기타	15	15	10			
0410000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15	15	0			
05010000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 웨이스트	10	10	0			
05021000	- 돼지털, 멧돼지털 및 그 웨이스트	10	10	0			
05029000	- 기타	10	10	0			
05040010	- 위	70	70	10			
05040020	- 장	70	70	10			
05040030	- 방광	70	70	10			
05051000	- 송털, 충전재용 깃털	10	10	0			
05059000	- 기타	10	10	0			
05061000	- 골소와 뼈(산처리한 것)	10	10	0			
05069000	- 기타	10	10	0			
05071000	- 아이보리, 아이보리의 분과 웨이스트	10	10	0			
05079000	- 기타	10	10	0			
05080000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10	10	0			
05100010	- 담즙(건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의약품 제조용의 선(腺)과 기타 동물성 생산품	10	10	0			
05100090	- 기타	10	10	0			
05111000	- 소의 정액	5	5	0			
0511911000	- - - 어란	5	5	7			
0511912000	- - - 어류의 웨이스트	10	10	5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511919000	--- 기타	10	10	5			
05119910	---- 코치니엘 및 이와 유사한 곤충류	5	5	0			
05119930	---- 동물의 정액(소의 정액은 제외한다)	5	5	0			
05119940	---- 배아	5	5	0			
05119990	---- 기타	10	10	0			
06011000	- 인경, 괴경, 괴근, 구경 및 근경(휴면상태의 것에 한한다)	5	5	0			
06012000	-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에 한한다),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5	5	0			
06021010	-- 난	5	5	0			
06021090	-- 기타	5	5	0			
06022000	- 수목 및 관목(접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식용의 과일 또는 견과류를 맺는 것에 한한다)	5	5	0			
06023000	- 진달래 속의 식물 및 철쭉(접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06024000	- 장미(접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06029010	-- 난(뿌리내린 묘를 포함한다)	5	5	0			
06029090	-- 기타	5	5	0			
06031100	-- 장미	5	5	5			
06031210	---- 미니어처	5	5	3			
06031290	---- 기타	5	5	3			
06031300	-- 난	5	5	0			
06031410	---- 품퐁	5	5	5			
06031490	---- 기타	5	5	5			
06031910	---- 안개초(일루전)(집소필라 파니큐라타 엘)	5	5	5			
06031920	---- 애스터	5	5	7			
06031930	---- 알스트로메리아	5	5	7			
06031940	---- 거베라	5	5	7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6031990	- - - 기타	5	5	10			
06039000	- 기타	5	5	7			
06041000	- - 이끼와 지의	10	10	0			
06049100	- - 신선한 것	10	10	0			
06049900	- - 기타	10	10	0			
07011000	- 종자	5	5	0			
07019000	- 기타	15	15	E			
070200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5	15	0			
07031000	- 양파와 쪽파	15	15	E			
07032010	- - 종자	15	15	0			
07032090	- - 기타	15	15	E			
07039000	-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	15	15	0			
07041000	- 꽃양배추 및 결구된 브로콜리	15	15	0			
07042000	- 방울다다기 양배추	15	15	0			
07049000	- 기타	15	15	0			
07051100	- - 결구상추	15	15	0			
07051900	- - 기타	15	15	0			
07052100	- - 위트루우프치커리(시코리엄 인티버스 변종, 포리오섬)	15	15	0			
07052900	- - 기타	15	15	0			
07061000	- 당근과 순무	15	15	7			
07069000	- 기타	15	15	0			
07070000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5	15	0			
07081000	- 완두(피섬 새티범)	15	15	0			
07082000	-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15	15	15			
07089000	- 기타 채두류	15	15	0			
07092000	- 아스파라거스	15	15	0			
07093000	- 가지(에그플랜트)	15	15	0			
07094000	- 셀러리(셀러리악은 제외한다)	15	15	0			
07095100	-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15	1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7095900	- - 기타	15	15	10			
07096000	- 고추류(캡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15	15	E			
07097000	- 시금치류[뉴질랜드 시금치 및 오라체 시금치(가든 시금치)]	15	15	10			
07099010	-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15	15	10			
07099020	- - 올리브	15	15	0			
07099030	- - 양영경귀	15	15	0			
07099090	- - 기타	15	15	0			
07101000	- 감자	15	15	5			
07102100	- - 완두(피섬 새티범)	15	15	10			
07102200	- -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	15	15	15			
07102900	- - 기타	15	15	10			
07103000	- 시금치류(가든 시금치)	15	15	0			
07104000	- 스위트콘	15	15	0			
07108010	- - 아스파라거스	15	15	0			
07108090	- - 기타	15	15	16			
07109000	- 채소류의 혼합물	15	15	10			
07112000	- 올리브	10	10	0			
07114000	- 오이류	10	10	0			
07115100	-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10	10	0			
07115900	- - 기타	10	10	0			
07119000	- 기타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10	10	E			
07122000	- 양파	15	15	E			
07123100	-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15	15	10			
07123200	- - 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종)	15	15	0			
07123300	- - 젤리균류(트레멜라종)	15	15	0			
07123900	- - 기타	15	15	10			
07129010	- - 마늘	15	15	E			
07129020	- - 스위트콘(파종용에 한한다)	15	15	16			
07129090	- - 기타	15	15	16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7131010	-- 종자	5	5	0			
07131090	-- 기타	15	15	0			
07132010	-- 종자	5	5	0			
07132090	-- 기타	15	15	0			
07133110	---- 종자	5	5	E			
07133190	---- 기타	60	60	E			
07133210	---- 종자	5	5	E			
07133290	---- 기타	60	60	E			
07133311	----- 검은색의 것	5	5	0			
07133319	----- 기타	60	60	0			
07133391	----- 검은색의 것	60	60	10			
07133392	----- "카나리오"	60	60	10			
07133399	----- 기타	60	60	10			
07133910	---- 종자	5	5	0			
07133991	----- 리마 콩(파세러스 루나투스)	60	60	10			
07133992	----- 검은눈 콩(비그나 운구이콜라타)	60	60	10			
07133999	----- 기타	60	60	10			
07134010	-- 종자	5	5	0			
07134090	-- 기타	15	15	10			
07135010	-- 종자	5	5	0			
07135090	-- 기타	15	15	0			
07139010	-- 종자	5	5	0			
07139090	-- 기타	15	15	0			
07141000	- 매니옥(카사바)	10	10	10			
07142010	-- 종자	10	10	0			
07142090	-- 기타	10	10	0			
07149010	-- 마카(레피디움 메예니이)	10	10	0			
07149090	-- 기타	10	10	0			
08011110	---- 종자	15	15	0			
08011190	---- 기타	15	15	0			
08011900	-- 기타	10	1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80121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10	10	0			
08012200	-- 탈각한 것	15	15	0			
080131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10	10	0			
08013200	-- 탈각한 것	15	15	0			
080211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15	15	0			
08021210	---- 종자	15	15	0			
08021290	---- 기타	15	15	0			
080221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15	15	0			
08022200	-- 탈각한 것	15	15	0			
08023100	-- 탈각하지 아니한 것	15	15	0			
08023200	-- 탈각한 것	15	15	0			
08024000	- 밤(카스타네아종)	15	15	0			
08025000	- 피스타치오	15	15	0			
08026000	- 마카다미아 너트	15	15	0			
08029000	- 기타	15	15	0			
08030011	-- "플랜틴" 종류의 것	15	15	5			
08030012	-- "카벤디쉬 벨러리" 종류의 것	15	15	5			
08030013	-- (드와프 카벤디쉬, 오리토)(무사 아쿠미나타)	15	15	5			
08030019	-- 기타	15	15	5			
08030020	- 건조한 것	15	15	5			
08041000	- 대추야자	15	15	5			
08042000	- 무화과	15	15	0			
08043000	- 파인애플	15	15	7			
08044000	- 아보카도	15	15	5			
08045010	-- 구아버	15	15	5			
08045020	-- 망고 및 망고스틴	15	15	7			
08051000	- 오렌지	15	15	E			
08052010	-- 맨더린(탄제린 및 세트수머를 포함한다)	15	15	16			
08052020	-- 탄젤로(시트러스 레티쿨라테 x 시트러스 파라디시스)	15	15	16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8052090	- - 기타	15	15	E			
08054000	-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를 포함한다)	15	15	0			
08055010	- - 레몬(시트러스 리몬, 시트러스 리모눔)	15	15	0			
08055021	- - - 레몬(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리몬수틸, 리몬코문, 리몬 크리올로)	15	15	0			
08055022	- - - 라임 (타히티 레몬)(시트러스 라티폴리아)	15	15	10			
08059000	- 기타	15	15	E			
08061000	- 신선한 것	15	15	0			
08062000	- 건조한 것	15	15	0			
08071100	- - 수박	15	15	7			
08071900	- - 기타	15	15	10			
08072000	- 포포우(파파야)	15	15	7			
08081000	- 사과	15	15	0			
08082010	- - 배	15	15	0			
08082020	- - 마르멜로	15	15	0			
08091000	- 살구	15	15	0			
08092000	- 버찌	15	15	0			
08093000	- 복숭아(벡터린을 포함한다)	15	15	0			
08094000	- 자두와 슬로우	15	15	0			
08101000	- 초본류 딸기	15	15	7			
0810200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및 로간베리	15	15	10			
08104000	- 크랜베리, 빌베리와 기타 박시니엄속의 과실	15	15	0			
08105000	- 키위프루트	15	15	10			
08106000	- 두리언	15	15	0			
08109010	- 기타	15	15	10			
08109020	- - 가시여지, 번여지 및 기타 어노나(어노나종)	15	15	10			
08109030	- - 나무 토마토("리마 토메이트", "타마리요")(시포만드라 베타시아)	15	15	10			
08109040	- - 피타야(세레우스종)	15	15	1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8109050	-- 우추바("우빌라스")(피살리스 페루비아나)	15	15	10			
08109090	-- 기타	15	15	12			
08111010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10	10	16			
08111090	-- 기타	10	10	16			
08112000	-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 로간베리,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및 구즈베리	10	10	0			
08119010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	10	10	0			
08119091	---- 망고(망기페라 인디카 엘)	10	10	0			
08119092	---- 카무 카무(미르시아리아 두비아)	10	10	0			
08119093	---- 루쿠마(루쿠마 오보바타)	10	10	0			
08119094	---- «패션프루트» (파아치타)(파시플로라 에들리스)	10	10	0			
08119095	---- 가시여지(아노나 무리카타)	10	10	0			
08119096	---- 포포우	10	10	0			
08119099	---- 기타	10	10	E			
08121000	- 버찌	10	10	0			
08129020	-- 복숭아(벡터린을 포함한다)	10	10	0			
08129090	-- 기타	10	10	0			
08131000	- 살구	15	15	0			
08132000	- 프룬	15	15	0			
08133000	- 사과	15	15	0			
08134000	- 기타 과일	15	15	0			
08135000	-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15	15	0			
08140010	- 레몬(시트러스 리모눔, 커먼 레몬, 크레올레 레몬)(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의 것	10	10	0			
08140090	- 기타	10	1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9011110	- - - 종자	10	10	10			
09011190	- - - 기타	10	10	10			
09011200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15	10	10			
09012110	- - - 콩	15	15	0			
09012120	- - - 분쇄한 것	20	15	5			
09012200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20	15	5			
09019000	- 기타	20	10	5			
09021000	-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	15	15	0			
09022000	-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	10	0			
09023000	-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에 한한다)	15	15	0			
09024000	- 기타 홍차(발효차)와 기타 부분발효차	10	10	0			
09030000	마태	10	10	0			
09041100	- -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10	10	0			
09041200	-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15	15	0			
09042010	- - - 원상(原像)의 것	15	15	0			
09042090	- - 기타	15	15	0			
09050000	바닐라	10	10	0			
09061100	- - 계피(신나모뎀 제이라니쿰 블룸)	10	10	0			
09061900	- - 기타	10	10	0			
09062000	- 파쇄 또는 분쇄한 것	15	15	0			
09070000	정향[과실, 꽃 및 화경(花莖)에 한한다]	10	10	0			
09081000	- 육두구	10	10	0			
09082000	- 메이스	10	10	0			
09083000	- 소두구	10	1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09091000	- 아니스 또는 대회향의 종자	10	10	0			
09092010	-- 종자	10	10	0			
09092090	-- 기타	10	10	10			
09093000	- 커민의 씨	10	10	0			
09094000	- 캐러웨이의 씨	10	10	0			
09095000	- 회향의 씨, 주니퍼의 열매	10	10	0			
09101000	- 생강	10	10	0			
09102000	- 샤프란	10	10	0			
09103000	- 심황(강황)	10	10	0			
09109100	-- 혼합물(이 류의 주 제 1 호나목의 것에 한한다)	10	10	0			
09109910	---- 월계수의 잎	10	10	0			
09109990	---- 기타	10	10	0			
10011010	-- 종자	5	5	0			
10011090	-- 기타	13	안데스가격밴드	0			
10019010	-- 파종용 밀	5	5	0			
10019020	-- 기타 밀	13	안데스가격밴드	0			
10019030	-- 메슬린	13	안데스가격밴드	0			
10020010	- 종자	5	5	0			
10020090	- 기타	10	10	0			
10030010	- 종자	5	5	0			
10030090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5			
10040010	- 종자	5	5	0			
10040090	- 기타	5	5	0			
10051000	- 종자용의 것	5	5	0			
10059011	---- 노란색의 것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0059012	---- 흰색의 것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0059020	-- 버스팅 옥수수(자메이스류의 마이크로스퍼마 또는 자메이스 변종, 에버타)	10	10	5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10059030	-- 흰 옥수수(자메이스 아밀라세아류의 자이겐트)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0059040	-- 보라 옥수수(자메이스 아밀라세아류의 모라도)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0059090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0061010	-- 종자	5	5	0			
10061090	-- 기타	80	80	E			
10062000	- 현미	80	80	E			
10063000	- 반도정미 또는 완전도정미 (백미 또는 광택 여부를 불문한다)	80	80	E			
10064000	- 쌀미	80	80	E			
10070010	- 종자	5	5	0			
10070090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0081010	-- 종자	10	10	0			
10081090	-- 기타	10	10	0			
10082010	-- 종자	10	10	0			
10082090	-- 기타	10	10	0			
10083010	-- 종자	10	10	0			
10083090	-- 기타	10	10	0			
10089011	---- 종자	10	10	0			
10089019	---- 기타	10	10	0			
10089091	---- 종자	10	10	0			
10089092	---- 키위차(줄맨드라미) (파종용은 제외한다)	10	10	0			
10089099	---- 기타	10	10	0			
110100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3	안데스가격밴드	0			
11021000	- 호밀가루	10	10	0			
11022000	- 옥수수가루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1029000	- 기타	20	10	5 (단, 쌀은 E)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11031100	-- 밀의 것	13	안데스가격밴드	5			
11031300	-- 옥수수의 것	20	15	15			
11031900	-- 기타 곡물의 것	15	15	5 (단, 쌀은 E)			
11032000	- 펄리트	15	15	5 (단, 쌀은 E)			
11041200	-- 귀리의 것	15	15	5			
11041900	-- 기타 곡물의 것	15	15	5 (단, 쌀은 E)			
11042200	-- 귀리의 것	15	15	5			
11042300	-- 옥수수의 것	20	15	15			
11042910	--- 보리의 것	15	15	5			
11042990	--- 기타	15	15	5			
11043000	- 곡물의 배아[원상(原像)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에 한한다]	15	15	5 (단, 쌀은 E)			
11051000	- 분·조분과 분말	15	15	16			
11052000	- 플레이크·입 및 펄리트	15	15	16			
11061000	- 건조한 채두류의 것(제 0713 호의 것에 한한다)	15	15	0			
11062010	-- 마카(레피디움 메예니아)	15	15	0			
11062090	-- 기타	15	15	0			
11063010	-- 바나나의 것	10	10	0			
11063020	-- "루쿠마"의 것	10	10	0			
11063090	-- 기타	10	10	0			
11071000	- 볶지 아니한 것	15	안데스가격밴드	5			
11072000	- 볶은 것	15	안데스가격밴드	5			
11081100	-- 밀의 전분	13	안데스가격밴드	5			
11081200	-- 옥수수의 전분	20	안데스가격밴드	10	부속서 2-다 참조		
11081300	-- 감자의 전분	20	10	5			
11081400	-- 매니옥(카사바)의 것	10	10	E			
11081900	-- 기타 전분	20	안데스가격밴드	E	부속서 2-다 참조		
11082000	- 이눌린	10	1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11090000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0	10	0			
12010010	- 종자	5	5	0			
12010090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2021010	-- 종자	5	5	0			
12021090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2022000	- 탈각한 것(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2030000	코프라	10	10	0			
12040010	- 종자	5	5	0			
12040090	- 기타	10	10	15			
12051010	-- 종자	10	10	0			
12051090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2059010	-- 종자	5	5	0			
12059090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2060010	- 종자	5	5	0			
12060090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2072010	-- 종자	5	5	0			
12072090	-- 기타	15	10	15			
12074010	-- 종자	5	5	0			
12074090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2075010	-- 종자	5	5	0			
12075090	-- 기타	10	10	15			
12079100	-- 양귀비씨	10	10	0			
12079911	----- 팜과 아몬드 핵	5	5	0			
12079919	----- 기타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12079991	----- 캐리트 종자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2079999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2081000	- 대두의 것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2089000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2091000	- 사탕무 종자	5	5	0			
12092100	-- 루우산(알팔파) 종자	5	5	0			
12092200	-- 클로버(트리폴리엄종) 종자	5	5	0			
12092300	-- 페스큐 종자	5	5	0			
12092400	-- 켄터키블루그래스(포아프래텐 시스 엘) 종자	5	5	0			
12092500	-- 라이그래스(로오리엄 멀티플로럼 램 및 로오리엄 페레네 엘) 종자	5	5	0			
12092900	-- 기타	5	5	0			
12093000	-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5	5	0			
12099110	---- 양파, 리크, 마늘 및 알리움 속의 기타 채소의 것	5	5	0			
12099120	---- 스프라우트, 꽃양배추, 브로콜리, 순무와 기타 브라시카속의 것	5	5	0			
12099130	---- 당근(다우쿠스 카로타)의 것	5	5	0			
12099140	---- 상추(락투카 사티바)의 것	5	5	0			
12099150	---- 토마토(리코퍼시쿰 종)의 것	5	5	0			
12099190	---- 기타	5	5	0			
12099910	---- 과수 또는 산림수의 종자	5	5	0			
12099920	---- 담배의 종자	5	5	0			
12099930	---- 타라(캐살피네아 스피노사)의 종자	5	5	0			
12099940	---- 안나토(오노토, 비자)의 종자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12099990	- - - 기타	5	5	0			
12101000	- 호프(분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상이나 펠리트상의 것도 아닌 것에 한한다)	10	10	0			
12102000	- 호프(분쇄한 것, 분상 또는 펠리트상의 것에 한한다), 루플린	10	10	0			
12112000	- 인삼근	10	10	0			
12113000	- 코카잎	10	10	0			
12114000	- 양귀비 줄기	10	10	0			
12119030	- - 야생 마조람(오레가눔속의 것)	10	10	0			
12119050	- - 고양이의 발톱(운카리아 토멘토사)	10	10	0			
12119060	- - 방취목("이에르바루이사")(심 보포곤 시트라투스)	10	10	0			
12119090	- - - 제충국(펠리터)	10	10	0			
12122000	- 해초와 기타 조류	10	10	0			
12129100	- - 사탕무	10	10	0			
12129910	- - - 사탕수수	10	10	0			
12129990	- - - - 로우커스트두와 그 종자	10	10	0			
12130000	곡물의 껍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0	10	0			
12141000	-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펠리트	10	10	0			
12149000	- 기타	10	10	0			
13012000	- 아라비아 검	5	5	0			
13019040	- - 트래거캔스 검	5	5	0			
13019090	- - - 락	5	5	0			
13021110	- - - 양귀비 줄기의 농축물	10	10	0			
13021190	- - - 기타	10	10	0			
13021200	- - 감초의 것	10	10	0			
13021300	- - 호프의 것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13021911	----- 소매용으로 제시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	10	10	0			
13021919	----- 기타	10	10	0			
13021920	---- 대두의 추출물(분상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0	10	0			
13021991	----- 소매용으로 제시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	10	10	0			
13021999	----- 기타	10	10	0			
13022000	- 펙틴질, 펙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5	5	0			
13023100	-- 한천	10	10	0			
13023200	--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0	10	0			
13023910	--- 타라(캐살피니아 스피노사) 종자의 점질물	10	10	0			
13023990	--- 기타	10	10	0			
14011000	- 대	10	10	0			
14012000	- 등	10	10	0			
14019000	- 기타	10	10	0			
14042000	- 면린터	10	10	0			
14049010	-- 아나토의 분말	10	10	0			
14049020	-- 타라(캐살피니아 스피노사)의 분말	10	10	0			
14049090	----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기타 재료의 지지물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하여 총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케이폭"은 제외한다)	10	10	0			
15010010	- 돈지(라드를 포함한다)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010030	- 가금지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020011	-- 변성의 것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참조		
15020019	-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020090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030000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및 탈로우유(유화 또는 혼합 또는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04101000	- - 대구 간의 것	5	5	5			
1504102100	- - - 조유	15	10	5			a
1504102900	- - - 기타	15	10	5			a
1504201000	- - 조유	15	10	7			b
1504209000	- - 기타	15	10	7			b
1504300000	-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	15	10	0			
15050010	- 조상의 울그리스	10	10	0			
15050091	- - 라놀린	10	10	0			
15050099	- - 기타	10	10	0			
15060010	- 우족유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060090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071000	-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079010	- - 첨가된 변성 물질의 함유량이 1 퍼센트 이하인 것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079090	- - 기타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081000	- 조유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089000	- 기타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15091000	- 버어진	15	15	0			
15099000	- 기타	15	15	0			
15100000	기타 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만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하며,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	15	0			
15111000	- 조유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19000	- 기타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21110	- - - 해바라기의 것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21120	- - - 잇꽃의 것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21910	- - - 해바라기의 것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21920	- - - 잇꽃의 것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22100	- - 조유(고시폴을 제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22900	- - 기타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31100	- - 조유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31900	- - 기타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32110	- - - 팜핵의 것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32120	- - - 바바수의 것	10	1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15132910	--- 팜핵의 것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32920	--- 바바수의 것	15	15	0			
15141100	-- 조유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41900	-- 기타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49100	-- 조유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49900	-- 기타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51100	-- 조유	10	10	0			
15151900	-- 기타	10	10	0			
15152100	-- 조유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52900	-- 기타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5300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5500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59000	- 기타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61000	- 동물성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	20	10	15			
15162000	-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71000	- 마가린(액상마가린은 제외한다)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79000	- 기타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180010	- 리놀신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HTSC 2007	품목명	기준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참조		
15180090	- 기타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520000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페액	10	10	0			
15211010	-- 카나버 왁스	5	5	0			
15211020	-- 칸데릴라 왁스	5	5	0			
15211090	-- 기타	10	10	0			
15219010	-- 밀랍 또는 기타 곤충납	10	10	0			
1521902000	-- 경납	5	5	5			
15220000	데그라스, 지방성 물질이나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10	10	15			
16010000	소시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의 것에 한한다),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20	안데스가격밴드	10	부속서 2-다 참조		
16021000	- 균질화한 조제품	15	15	E			
16022000	- 동물간의 것	20	15	15			
16023110	---- 조미한 냉동 조각	20	안데스가격밴드	0			
16023190	---- 기타	15	15	0			
16023210	---- 조미한 냉동 조각	20	안데스가격밴드	20	부속서 2-다 참조		
16023290	---- 기타	15	15	16			
16023910	---- 조미한 냉동 조각	20	안데스가격밴드	10	부속서 2-다 참조		
16023990	---- 기타	20	15	10			
16024100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20	안데스가격밴드	10	부속서 2-다 참조		
16024200	-- 어깨살과 그 절단육	20	안데스가격밴드	10	부속서 2-다 참조		
16024900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0	15	10			
16025000	- 소의 것	15	15	E			
16029000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15	15	E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포함한다)						
16030000	육,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15	15	0			
1604110000	-- 연어	20	15	5			a
1604120000	-- 청어	20	15	5			a
1604131000	---- 토마토 소스에 담긴 것	20	15	5			a
1604132000	---- 기름에 담긴 것	20	15	5			a
1604133000	---- 물과 소금에 보일드한 것	20	15	5			a
1604139000	---- 기타	20	15	5			a
1604141000	---- 다랑어	20	15	7			a
1604142000	---- 가다랑어 및 버니투우	20	15	7			a
1604150000	-- 고등어	20	15	5			a
1604160000	-- 멸치	20	15	7			a
1604190000	-- 기타	20	15	10			b
160420000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20	15	5			a
1604300000	-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20	15	0			
1605100000	- 계	20	15	5			a
1605200000	- 새우와 보리새우	20	15	5			a
1605300000	- 바닷가재	20	15	5			a
1605400000	- 기타 갑각류	20	15	5			a
1605901000	-- 조개, 전복과 맛조개	20	15	10			b
1605909000	-- 기타	20	15	10			b
17011110	---- 갈색의 설탕덩어리 "찬카카"	15	15	0			
17011190	---- 기타	47	안데스가격밴드	15			
17011200	-- 사탕무당	47	안데스가격밴드	15			
17019100	--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15	안데스가격밴드	E	부속서 2-다 참조		
17019910	----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47	안데스가격밴드	16			
17019990	---- 기타	47	안데스가격밴드	16			
17021100	-- 건조상태에서 계산하여 유당(무수유당으로	10	10	5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표시한다)의 함유량이 99 퍼센트 이상인 것						
17021910	--- 유당	10	10	5			
17021920	--- 유당시럽	10	10	5			
17022000	- 단풍당과 단풍나무시럽	15	10	10			
17023010	-- 건조상태에서 계산하여 포도당(무수포도당으로 표시한다)의 함유량이 99 퍼센트 이상인 것(덱스트로스)	5	5	10			
17023020	-- 포도당 시럽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7023090	-- 기타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17024010	-- 포도당	47	안데스가격밴드	15			
17024020	-- 포도당 시럽	47	안데스가격밴드	10			
1702500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5	5	10			
17026000	- 기타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전화당은 제외한다)	47	안데스가격밴드	10			
17029010	-- 인조꿀 대용물(천연꿀과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0	16			
17029020	-- 캐러멜	47	안데스가격밴드	10			
17029030	-- 향미나 착색제를 첨가한 설탕	47	안데스가격밴드	10			
17029040	-- 기타 시럽	47	안데스가격밴드	10			
17029090	-- 기타	47	안데스가격밴드	10			
17031000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47	안데스가격밴드	5			
17039000	- 기타	47	안데스가격밴드	5			
17041010	-- 당으로 도포한 것	15	15	0			
17041090	-- 기타	15	15	0			
17049010	-- 막대사탕, 캔디류, 드롭프스를 포함하는 토피와 사탕과자	15	15	0			
17049090	-- 기타	15	1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18010011	-- 종자	10	10	0			
18010019	-- 기타	10	10	0			
18010020	- 볶은 것	15	15	0			
18020000	코코아의 각, 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10	10	0			
18031000	- 탈지하지 아니한 것	10	10	0			
18032000	- 전부 또는 일부 탈지한 것	10	10	0			
18040011	-- 산성도 지수(올레산으로 표시한다)가 1 퍼센트 이하인 것	10	10	0			
18040012	-- 산성도 지수(올레산으로 표시한다)가 1 퍼센트 1 초과 1.65 퍼센트 이하인 것	10	10	0			
18040013	-- 산성도 지수(올레산으로 표시한다)가 1.6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10	10	0			
18040020	- 코코아 지와 유	10	10	0			
18050000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10	10	0			
18061000	- 코코아 분말(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20	15	5			
18062010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20	15	5			
18062090	-- 기타	20	15	5			
18063110	---- 속을 채운 것(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5	15	0			
18063190	---- 기타	15	15	0			
18063200	-- 속을 채우지 아니한 것	20	15	5			
18069000	- 기타	15	15	0			
19011010	-- 모유로부터 얻은 조제유	20	15	15			
19011091	----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로부터 얻은 유아용 조제식료품	20	15	15			
19011099	---- 기타	20	15	15			
19012000	- 제 1905 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15	15	5 (단, 쌀은 E)			
19019010	-- 맥아엑스	10	1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19019020	-- 밀크캐러멜 또는 밀크스위트(만자 블랑코)	10	10	16			
19019090	-- 기타	15	15	16			
19021100	-- 조란을 함유하는 것	15	15	0			
19021900	-- 기타	13	안데스가격밴드	0			
19022000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15	0			
19023000	- 기타 파스타	15	15	0			
19024000	- 쿠우스쿠우스	15	15	0			
19030000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 날알상, 진주상, 무거리상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15	15	0			
19041000	-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15	15	0			
19042000	-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로 만든 조제식료품 또는 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15	15	16			
19043000	- 불거소맥	15	15	0			
19049000	- 기타	5	5	0(단, 쌀은 E)			
19051000	- 귀리빵	15	15	0			
19052000	- 진저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것	15	15	0			
19053100	-- 스위트 비스킷	15	15	0			
19053200	-- 와플과 웨이퍼	15	15	0			
19054000	- 러스크, 토우스트브레드 및 이와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15	15	0			
19059010	-- 소금과 향미가 첨가된 비스킷	15	15	0			
19059090	-- 기타	15	15	0			
20011000	- 오이류	15	15	10			
20019010	-- 올리브	15	15	0			
20019090	-- 기타	15	15	5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0021000	-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15	15	0			
20029000	- 기타	15	15	0			
20031000	- 아가리쿠스속의 버섯	15	15	0			
20032000	- 송로	15	15	0			
20039000	- 기타	15	15	10 (단, 표고버섯은 E)			
20041000	- 감자	20	20	10			
20049000	-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15	15	0			
20051000	- 균질화한 채소	15	15	0			
20052000	- 감자	15	15	10			
20054000	- 완두(피섬 새티범)	20	15	10			
20055100	- - - 탈각한 콩	20	15	15			
20055900	- - - 기타	20	15	15			
20056000	- 아스파라거스	15	15	10			
20057000	- 올리브	15	15	10			
2005800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15	15	10			
20059100	- - - - - 죽순	15	15	10			
20059910	- - - - - 양영경귀	15	15	0			
20059920	- - - - - 피큐요고추(캡시컴 아눔)	15	15	0			
20059990	- - - - - 기타	15	15	0			
20060000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에 한한다)	15	15	0 (단, 마롱글라세 는 E)			
20071000	- 균질화한 조제품	15	15	0			
20079110	- - - - - 잼·과실젤리, 마말레이드	15	15	10			
20079120	- - - - - 퓨레 및 페이스트	15	15	16			
20079911	- - - - - 잼·과실젤리, 마말레이드	15	15	0			
20079912	- - - - - 퓨레 및 페이스트	15	15	0			
20079991	- - - - - 잼·과실젤리,	15	1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마말레이드						
20079992	---- 퓨레 및 페이스트	15	15	0			
20081110	---- 버터	15	15	0			
20081190	---- 기타	15	15	10			
20081910	---- 캐슈넛	15	15	10			
20081920	---- 피스타치오	15	15	0			
20081990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15	15	10			
20082010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시럽을 포함한다)를 함유한 물에 넣은 것	15	15	10			
20082090	-- 기타	15	15	10			
20083000	- 감귤류 과일	15	15	5			
20084000	- 배	15	15	0			
20085000	- 살구	15	15	0			
20086010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시럽을 포함한다)를 함유한 물에 넣은 것	15	15	0			
20086090	-- 기타	15	15	0			
20087020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시럽을 포함한다)를 함유한 물에 넣은 것	15	15	16			
20087090	-- 기타	15	15	16			
20088000	- 초분류 딸기	15	15	10			
20089100	-- 팜 하트	15	15	16			
20089200	-- 혼합물	15	15	10			
20089920	---- 포포우(파파야)	15	15	0			
20089930	---- 망고	15	15	0			
20089990	---- 기타	15	15	10			
20091100	-- 냉동한 것	15	15	10			
20091200	-- 냉동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15	15	E			
20091900	-- 기타	15	15	16			
20092100	--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15	15	10			
20092900	-- 기타	15	15	15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0093100	--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15	15	0			
20093910	---- 소호 제 0805.50.21 호의 레몬의 것	15	15	10			
20093990	---- 기타	15	15	16			
20094100	--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15	15	10			
20094900	-- 기타	15	15	10			
20095000	- 토마토주스	15	15	10			
20096100	-- 브릭스 값이 30 이하인 것	10	10	10			
20096900	-- 기타	10	10	10			
20097100	--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15	15	16			
20097900	-- 기타	15	15	16			
20098011	---- 포포우의 것	15	15	0			
20098012	---- "마라꾸야"(파시플로라 에둘리스)의 것	15	15	0			
20098013	---- 가시여지(안노나 무리카타)의 것	15	15	0			
20098014	---- 망고의 것	15	15	0			
20098015	---- 카무 카무(미르시아리아 두비아)의 것	15	15	0			
20098019	---- 기타	15	15	0			
20098020	-- 기타 단일 채소의 주스	15	15	0			
20099000	- 혼합주스	15	15	16			
21011100	--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20	15	5			
21011200	--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20	15	5			
21012000	-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들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차나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20	15	10			
21013000	- 볶은 치커리와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 및 그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15	15	0			
21021010	-- 배양효모	10	10	0			
21021090	-- 기타	10	1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1022000	- 불활성 효모, 기타 죽은 단세포 미생물	10	10	0			
21023000	-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10	10	0			
21031000	- 간장	15	15	0			
21032000	- 토마토 케찹과 기타 토마토 소스	15	15	10			
21033010	- - - 겨자의 분	15	15	0			
21033020	- - - 조제한 겨자	15	15	0			
21039010	- - - 마요네스	20	15	10			
21039020	- - - 혼합조미료	15	15	0			
21039090	- - - 기타	15	15	0			
21041010	- - - 수프와 브로드용 조제품	15	15	10			
21041020	- - - 조제한 수프와 브로드	15	15	10			
21042000	-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15	15	7			
21050010	- 아이스크림(유지방을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0	15	12			
21050090	- 기타	20	15	12			
21061011	- - - - 대두(건조상태에서 단백질의 함유량이 65 퍼센트와 75 퍼센트 사이인 것에 한한다)의 것	10	10	0			
21061019	- - - - 기타	10	10	0			
21061020	- - -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10	10	0			
21069010	- - 분말 크림, 아이스크림, 푸딩, 플랜, 젤리 및 이와 유사한 것	10	10	0			
21069021	- - - -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10	10	5			
21069029	- - - - 기타	10	10	5			
21069030	- - 단백질 가수분해물	10	10	0			
21069040	- - 자기소화 효모	10	10	0			
21069050	- - 제빵 개량제	10	10	0			
21069060	- - 식품 감미료	20	10	5			
21069071	- - - - 식물, 식물의 부분, 종자 또는 과실의 혼합물이나 엑스를 함유하는 것	10	10	0			
21069072	- - - - 식물, 식물의 부분,	10	1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종자 또는 과실의 혼합물이나 엑스를 함유하는 것(비타민, 미네랄 또는 기타 물질을 첨가한 것에 한한다)						
21069073	---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는 것	10	10	0			
21069074	--- - - - 비타민을 함유하는 것	10	10	0			
21069079	--- - - - 기타	10	10	0			
21069080	- - 12 개월까지의 유아용 비유(乳)성 모유 대용물	10	10	0			
21069090	- - 기타	15	15	5			
22011000	- 광수 및 탄산수	15	15	0			
22019000	- 기타	15	15	0			
22021000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15	15	0			
22029000	- 기타	15	15	0			
22030000	맥주	15	15	0			
22041000	- 발포성 포도주	15	15	5			
22042100	- -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5	15	5			
22042910	--- - - - 포도즙(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가 차단 또는 중지된 것에 한한다)	15	15	5			
22042990	--- - - - 기타	15	15	5			
22043000	- 기타 포도즙	10	10	0			
22051000	-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5	15	5			
22059000	- 기타	15	15	5			
22060000	기타의 발효주(예: 사과술, 배술, 미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5	15	0			
22071000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80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10	10	5			
22072000	- 변성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15	10	5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2082021	- - - "피스코"	15	15	0			
22082022	- - - "신가니"	15	15	0			
22082029	- - - 기타	15	15	0			
22082030	- -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15	15	0			
22083000	- 위스키류	20	15	15			
22084000	-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기타 증류주	20	15	10			
22085000	- 진 및 제네바	15	15	5			
22086000	- 보드카	20	15	15			
22087010	- - - 아니스의 것	15	15	5			
22087020	- - 크림	15	15	5			
22087090	- - 기타	15	15	5			
22089010	-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80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15	15	10			
22089020	- - 용설란의 증류주	5	5	0			
22089042	- - - 아니스의 것	15	15	0			
22089049	- - - 기타	20	15	5			
22089090	- - 기타	15	15	5			
22090000	식초 및 초산에서 얻은 식초대용물	15	15	0			
23011010	- - 수지박	15	15	10			
23011090	- - 기타	15	10	10			
23012011	- - -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23012019	- - - 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 퍼센트 이하인 것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23012090	- - 기타	10	10	0			
23021000	- 옥수수의 것	15	안데스가격밴드	10	부속서 2-다 참조		
23023000	- 밀의 것	15	안데스가격밴드	0			
23024000	- 쌀의 것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참조		
23025000	- 채두류의 것	10	10	0			
23031000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10	10	0			
23032000	-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15	10	15			
23033000	-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10	10	0			
230400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23050000	낙화생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0	10	0			
23061000	- 면실의 것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23062000	- 아마인의 것	10	10	0			
23063000	- 해바라기 씨의 것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23064100	- -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	15	10	15			
23064900	- - 기타	15	10	15			
23065000	-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10	10	0			
23066000	- 팜넛 또는 핵의 것	10	10	0			
23069000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23070000	포도주박, 생주석	10	10	0			
23080010	- 마리골드 꽃의 가루	10	10	0			
23080090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10	부속서 2-다 참조		
23091010	- - 밀봉캔으로 제시된 것	20	10	5			
23091090	- - 기타	20	안데스가격밴드	10	부속서 2-다 참조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3099010	-- 가당사료	25	안데스가격밴드	12			
23099020	-- 프리믹스	10	10	12			
23099030	-- 송아지 사료용 밀크 대용물	5	5	0			
23099090	-- 기타	25	안데스가격밴드	12			
24011010	-- 블랙 담배	10	10	15			
24011020	-- 블론드 담배	10	10	15			
24012010	-- 블랙 담배	10	10	10			
24012020	-- 블론드 담배	10	10	10			
24013000	- 담배 부산물	10	10	15			
24021000	- 시가, 셔루트 및 시가릴로(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15	15	15			
24022010	-- 블랙 담배의 것	15	15	15			
24022020	-- 블론드 담배의 것	15	15	15			
24029000	- 기타	15	15	15			
24031000	- 흡연용 담배(담배대용물의 포함비율을 불문한다)	15	15	15			
24039100	--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15	15	15			
24039900	-- 기타	15	15	15			
2501001000	- 식탁염	5	5	0			
2501002000	- 순도가 99.5 퍼센트 이상인 염화나트륨(수용액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2501009100	-- 변성한 것	5	5	0			
2501009200	-- 가축 사료용의 것	5	5	0			
2501009900	-- 기타	5	5	0			
2502000000	황화철광(배소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5	0			
2503000000	모든 종류의 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5	5	0			
2504100000	- 분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	5	5	0			
2504900000	- 기타	5	5	0			
2505100000	- 규사	5	5	0			
2505900000	- 기타	5	5	0			
2506100000	- 석영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506200000	- 규암	5	5	0			
2507001000	- 고령토(하소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2507009000	- 기타	5	5	0			
2508100000	- 벤토나이트	5	5	0			
2508300000	- 내화점토	5	5	0			
2508400000	- 기타 점토	5	5	0			
2508500000	- 홍주석, 남정석 및 규선석	5	5	0			
2508600000	- 몰라이트	5	5	0			
2508700000	-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드	5	5	0			
2509000000	초크	5	5	0			
2510100000	- 분쇄하지 아니한 것	5	5	0			
2510200000	- 분쇄한 것	5	5	0			
2511100000	- 천연황산바름(중정석)	5	5	0			
2511200000	- 천연탄산바름(독중석)	5	5	0			
2512000000	규조토(예: 키이젤거여, 트리플라이트 및 다이아토마이트)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5	0			
2513100000	- 부석	5	5	0			
2513200000	- 금강사, 천연커런덤, 천연석류석과 기타 천연연마재료	5	5	0			
2514000000	슬레이트[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2515110000	--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5	5	0			
2515120000	--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515200000	- 에코신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석회질의 암석, 앨러바스터	5	5	0			
2516110000	- -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5	5	0			
2516120000	- -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5	5	0			
2516200000	- 사암	5	5	0			
2516900000	-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5	5	0			
2517100000	- 자갈, 왕자갈, 쇠석(콘크리트용, 도로포장용 또는 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2517200000	- 슬래그, 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소호 제 2517.10 호에 언급된 재료를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2517300000	- 타르매카담	5	5	0			
2517410000	- - 대리석의 것	5	5	0			
2517490000	- -기타	5	5	0			
2518100000	- 하소 또는 소결하지 아니한 백운석	5	5	0			
2518200000	-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5	5	0			
2518300000	- 응결백운석	5	5	0			
2519100000	-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5	5	0			
2519901000	- - 용융마그네시아	5	5	0			
2519902000	- -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2519903000	- - 소결한 마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기타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520100000	- 석고, 무수석고	5	5	0			
2520200000	- 플라스터	5	5	0			
2521000000	석회석용제, 석회석과 기타 석회질의 암석(석회 또는 시멘트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5	5	0			
2522100000	- 생석회	5	5	0			
2522200000	- 소석회	5	5	0			
2522300000	- 수경성 석회	5	5	0			
2523100000	- 시멘트클링커	10	5	5			b
2523210000	- - 백시멘트(인공적으로 착색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0	5	5			b
2523290000	- - 기타	10	5	5			b
2523300000	- 알루미나 시멘트	5	5	0			
2523900000	- 기타 수경성 시멘트	10	5	5			b
2524101000	- - 섬유	5	5	0			
2524109000	- - 기타	5	5	0			
2524900000	- 기타	5	5	0			
2525100000	- 조운모 및 판상 또는 쪼갬 운모	5	5	0			
2525200000	- 운모분	5	5	0			
2525300000	- 운모 웨이스트	5	5	0			
2526100000	- 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상도 아닌 것	5	5	0			
2526200000	- 파쇄 또는 분상의 것	5	5	0			
2528100000	- 천연봉산나트륨과 그 정광(하소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2528900000	- 기타	5	5	0			
2529100000	- 장식	5	5	0			
2529210000	-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7 퍼센트 이하인 것	5	5	0			
2529220000	-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7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5	0			
2529300000	-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530100000	- 질석, 진주암과 녹니석(팽창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5	0			
2530200000	-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황산마그네 슘)	5	5	0			
2530900000	- 기타	5	5	0			
2601110000	-- 응결하지 아니한 것	5	5	0			
2601120000	-- 응결한 것	5	5	0			
2601200000	- 배소한 황화철광	5	5	0			
2602000000	망간광과 그 정광(건조상태에서 측정하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 퍼센트 이상인 철 망간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5	5	0			
2603000000	동광과 그 정광	5	5	0			
2604000000	니켈광과 그 정광	5	5	0			
260500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	5	5	0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	5	5	0			
2607000000	연광과 그 정광	5	5	0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	5	5	0			
2609000000	주석광과 그 정광	5	5	0			
26100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	5	5	0			
2611000000	텅스텐광과 그 정광	5	5	0			
2612100000	- 우라늄광과 그 정광	5	5	0			
2612200000	- 토륨광과 그 정광	5	5	0			
2613100000	- 배소한 것	5	5	0			
2613900000	- 기타	5	5	0			
2614000000	티타늄광과 그 정광	5	5	0			
2615100000	-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5	5	0			
2615900000	- 기타	5	5	0			
2616100000	- 은광과 그 정광	5	5	0			
2616901000	-- 금광과 그 정광	5	5	0			
2616909000	-- 기타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617100000	-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5	5	0			
2617900000	- 기타	5	5	0			
26180000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입상의 슬랙(슬랙샌드)	5	5	0			
2619000000	철강의 제조시에 생기는 슬랙·드로스(입상의 슬랙은 제외한다)·스케일링 및 기타 웨이스트	5	5	0			
2620110000	- - 경아연 스피타	5	5	0			
2620190000	- - 기타	5	5	0			
2620210000	- -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	5	5	0			
2620290000	- - 기타	5	5	0			
2620300000	- 주로 동을 함유하는 것	5	5	0			
2620400000	-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5	5	0			
2620600000	- 비소, 수은, 탈륨 또는 그들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의 채취 또는 그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0			
2620910000	- -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 또는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5	5	0			
2620990000	- - 기타	5	5	0			
2621100000	-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5	5	0			
2621900000	- 기타	5	5	0			
2701110000	- - 무연탄	5	5	0			
2701120010	- - - 화력발전용 연료탄	5	5	0			
2701120090	- - - 기타	5	5	0			
2701190000	- - 기타 석탄	5	5	0			
2701200000	-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 마찌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5	5	0			
2702100000	- 갈탄(분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응결한 것은 제외한다)	5	5	0			
2702200000	- 응결한 갈탄	5	5	0			
2703000000	토탄(토탄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한 것인지 여부를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불문한다)						
2704001000	- 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5	5	0			
2704002000	- 코크스와 반성코크스(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5	5	0			
2704003000	- 레토르트 카본	5	5	0			
2705000000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5	5	0			
2706000000	석탄·갈탄 또는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기타의 광물성 타르(탈수 또는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5	5	0			
2707100000	- 벤조올(벤젠)	5	5	0			
2707200000	- 톨루올(톨루엔)	5	5	0			
2707300000	- 크실올(크실렌)	5	5	0			
2707400000	- 나프탈렌	5	5	0			
2707501000	-- 솔벤트 나프타	5	5	0			
2707509000	-- 기타	5	5	0			
2707910000	-- 크레오소트유	5	5	0			
2707991000	---- 안트라센	5	5	0			
2707999000	---- 기타	5	5	0			
2708100000	- 피치	10	5	5			b
2708200000	- 피치코크스	5	5	0			
27090000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10	5	5			b
2710111100	----- 항공기 엔진용의 것	15	5	0			
2710111300	----- 모터차량 엔진용의 것	15	5	0			
2710111900	----- 기타	15	5	0			
2710112000	---- 테트라에틸납을 함유한 휘발유	15	5	0			
2710119100	----- 화이트 스피릿	10	5	0			
2710119200	----- 리액터용의 연료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710119300	----- 테트라프로필렌	10	5	0			
2710119400	----- 노르말 파라핀의 혼합물	5	5	0			
2710119500	----- 노르말 올레핀의 혼합물	10	5	0			
2710119900	----- 기타	10	5	5			b
2710191200	----- 노르말 파라핀의 혼합물	5	5	0			
2710191300	----- 노르말 올레핀의 혼합물	10	5	0			
2710191400	----- 등유	10	5	0			
2710191500	----- 리액터 및 터빈용의 등유형 제트 연료유	10	5	0			
2710191900	----- 기타	10	5	5			b
2710192100	----- 경유(디젤)	10	5	0			
2710192200	----- 중유(연료유)	10	5	0			
2710192900	----- 기타	10	5	0			
2710193100	----- 노르말 파라핀의 혼합물	5	5	0			
2710193200	----- 노르말 올레핀의 혼합물	10	5	0			
2710193300	----- 전기절연유	10	5	0			
2710193400	----- 윤활용 그리스	10	5	0			
2710193500	----- 윤활기유	5	5	0			
2710193600	----- 유압 전송용 오일	10	5	0			
2710193700	----- 화이트 오일(석유젤리 또는 파라핀왁스의 것에 한한다)	10	5	0			
2710193800	----- 기타 윤활유	10	5	5			b
2710193900	----- 기타	10	5	0			
2710910000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로민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10	5	0			
2710990000	-- 기타	10	5	0			
2711110000	-- 천연가스	5	5	0			
2711120000	-- 프로판	5	5	0			
2711130000	-- 부탄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711140000	--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및 부타디엔	5	5	0			
2711190000	-- 기타	5	5	0			
2711210000	-- 천연가스	5	5	0			
2711290000	-- 기타	5	5	0			
2712101000	-- 조상의 것	5	5	0			
2712109000	-- 기타	10	5	0			
2712200000	-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75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10	5	0			
2712901000	--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석유왁스	10	5	0			
2712902000	-- 오우조커라이트와 세레신	5	5	0			
2712903000	-- 파라핀(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7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10	5	0			
2712909000	-- 기타	10	5	0			
2713110000	-- 하소하지 아니한 것	10	5	0			
2713120000	-- 하소한 것	10	5	0			
2713200000	- 석유아스팔트	10	5	0			
2713900000	-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재물	10	5	0			
2714100000	- 역청질혈암 또는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10	5	0			
2714900000	- 기타	10	5	0			
2715001000	- 역청질매스틱	10	5	0			
2715009000	- 기타	10	5	0			
2716000000	전기에너지	0	0	0			
2801100000	- 염소	5	5	0			
2801200000	- 요드	5	5	0			
2801300000	- 플루오르, 브롬	5	5	0			
2802000000	승화황 또는 침강황, 콜로이드황	5	5	0			
2803001000	- 아세틸렌 블랙	5	5	0			
2803009000	- 기타	10	5	0			
2804100000	- 수소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804210000	-- 아르곤	5	5	0			
2804290000	-- 기타	5	5	0			
2804300000	- 질소	5	5	0			
2804400000	- 산소	5	5	0			
2804501000	-- 붕소	5	5	0			
2804502000	-- 텔루르	5	5	0			
2804610000	--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5	5	0			
2804690000	-- 기타	5	5	0			
2804701000	-- 적린 또는 비정질	5	5	0			
2804709000	-- 기타	5	5	0			
2804800000	- 비소	5	5	0			
2804901000	-- 분상의 셀레늄	5	5	0			
2804909000	-- 기타	5	5	0			
2805110000	-- 나트륨	5	5	0			
2805120000	-- 칼슘	5	5	0			
2805190000	-- 기타	5	5	0			
2805300000	- 희토류금속, 스칸듐 및 이트륨(상호 혼합되거나 상호 합금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2805400000	- 수은	5	5	0			
2806100000	- 염화수소(염산)	10	5	5			b
2806200000	- 클로로황산	5	5	0			
2807001000	- 황산	10	5	5			b
2807002000	- 발연황산	10	5	5			b
2808001000	- 질산	10	5	0			
2808002000	- 황질산	10	5	0			
2809100000	- 오산화인	5	5	0			
2809201010	---- 인산의 농도가 75 퍼센트 이상인 것	10	5	0			
2809201090	---- 기타	5	5	0			
2809202000	-- 폴리인산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810001000	- 오르토 붕산	5	5	0			
2810009000	- 기타	5	5	0			
2811110000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 소산)	5	5	0			
2811191000	---- 아미노술포산(술파민산)	5	5	0			
2811193000	---- 인 유도체	5	5	0			
2811194000	---- 시안화수소	5	5	0			
2811199000	---- 기타	5	5	0			
2811210000	-- 이산화탄소	10	5	5			b
2811221000	---- 실리카겔	10	5	0			
2811229000	---- 기타	10	5	0			
2811292000	---- 산화이질소(아산화질소)	10	5	5			b
2811294000	---- 삼산화이비소(세스퀴산화비소, 아비산화물, 흰색 비소)	10	5	0			
2811299010	----- 이산화황	10	5	0			
2811299090	----- 기타	5	5	0			
2812101000	-- 삼염화비소	5	5	0			
2812102000	-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5	5	0			
2812103100	- 포스포르스 옥시클로라이드	5	5	0			
2812103200	---- 삼염화인	5	5	0			
2812103300	---- 오염화인	5	5	0			
2812103900	---- 기타	5	5	0			
2812104100	---- 일염화황	5	5	0			
2812104200	---- 이염화황	5	5	0			
2812104900	---- 기타	5	5	0			
2812105000	-- 염화티오닐	5	5	0			
2812109000	-- 기타	5	5	0			
2812900000	- 기타	5	5	0			
2813100000	- 이황화탄소	10	5	0			
2813902000	-- 황화인	5	5	0			
2813909000	-- 기타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814100000	- 무수암모니아	5	5	0			
2814200000	- 암모니아수	5	5	0			
2815110000	-- 고체의 것	5	5	0			
2815120000	-- 수용액의 것(소다액 또는 액상소다)	5	5	0			
2815200000	- 수산화칼륨(가성칼륨)	5	5	0			
2815300000	-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5	5	0			
2816100000	-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10	5	0			
2816400000	- 스트론튬 또는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5	5	0			
2817001000	- 산화아연	10	5	0			
2817002000	- 과산화아연	5	5	0			
2818100000	-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0	5	0			
2818200000	-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은 제외한다)	10	5	0			
2818300000	- 수산화알루미늄	10	5	0			
2819100000	- 삼산화크로뮴	5	5	0			
2819901000	-- 삼산화이크로뮴(세스퀴산화크 로뮴 또는 "녹색산화물")	10	5	5			b
2819909000	-- 기타	5	5	0			
2820100000	- 이산화망간	5	5	0			
2820900000	- 기타	5	5	0			
2821101000	-- 산화물	10	5	5			b
2821102000	-- 수산화물	10	5	0			
2821200000	- 어드칼러	5	5	0			
2822000000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상관습상의 산화코발트	10	5	0			
2823001000	- 이산화티타늄(산화티타늄 또는 무수티타늄)	5	5	0			
2823009000	- 기타	5	5	0			
2824100000	- 일산화연(리타지, 메시코트)	10	5	0			
2824900010	-- 연단 및 오렌지연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824900090	- - 기타	5	5	0			
2825100000	- 히드라진 및 히드록실아민 및 그들의 무기염	10	5	0			
2825200000	- 산화리튬 및 수산화리튬	5	5	0			
2825300000	- 산화바나듐 및 수산화바나듐	5	5	0			
2825400000	- 산화니켈 및 수산화니켈	5	5	0			
2825500000	- 산화동 및 수산화동	10	5	0			
2825600000	- 산화게르마늄 및 이산화지르코늄	5	5	0			
2825700000	- 산화몰리브덴 및 수산화몰리브덴	5	5	0			
2825800000	- 산화안티몬	10	5	0			
2825901000	- - 산화주석 및 수산화주석	10	5	0			
2825904000	- - 산화칼슘 및 수산화칼슘	10	5	5			b
2825909000	- - 기타	5	5	0			
2826120000	- - 플루오르화알루미늄의 것	5	5	0			
2826191000	- - - - 플루오르화나트륨의 것	5	5	0			
2826199000	- - - - 기타	5	5	0			
2826300000	-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 륨(인조빙정석)	5	5	0			
2826900000	- 기타	5	5	0			
2827100000	- 염화암모늄	10	5	0			
2827200000	- 염화칼슘	10	5	0			
2827310000	- - 마그네슘의 것	5	5	0			
2827320000	- - 알루미늄의 것	5	5	0			
2827350000	- - 니켈의 것	5	5	0			
2827391000	- - - - 동의 것	5	5	0			
2827393000	- - - - 주석의 것	10	5	0			
2827394000	- - - - 철의 것	10	5	5			b
2827395000	- - - - 아연의 것	10	5	0			
2827399010	- - - - 코발트의 것	10	5	0			
2827399090	- - - - - 기타	5	5	0			
2827410000	- - 동의 것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827491000	--- 알루미늄의 것	10	5	5			b
2827499000	--- 기타	5	5	0			
2827510000	-- 브롬화나트륨 또는 브롬화칼륨	5	5	0			
2827590000	-- 기타	5	5	0			
2827601000	-- 요드화나트륨의 것 또는 요드화칼륨의 것	5	5	0			
2827609000	-- 기타	5	5	0			
2828100000	- 상관습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기타 하이포아염소산칼슘	5	5	0			
2828901100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10	5	5			b
2828901900	---- 기타	10	5	0			
2828902000	-- 염소산염	5	5	0			
2828903000	-- 하이포아브롬산염	5	5	0			
2829110000	-- 염소산나트륨	5	5	0			
2829191000	---- 염소산칼륨	5	5	0			
2829199000	---- 기타	5	5	0			
2829901000	-- 과염소산	5	5	0			
2829902000	-- 요오드산칼륨	5	5	0			
2829909000	-- 기타	5	5	0			
2830101000	-- 황화나트륨	10	5	0			
2830102000	-- 황화수소나트륨	5	5	0			
2830901000	-- 황화칼륨	5	5	0			
2830909000	-- 기타	5	5	0			
2831100000	- 아이티온산나트륨	10	5	0			
2831900000	- 기타	5	5	0			
2832100000	- 아황산나트륨	10	5	0			
2832201000	-- 암모늄의 것	10	5	0			
2832209000	-- 기타	5	5	0			
2832301000	-- 나트륨의 것	10	5	0			
2832309000	-- 기타	5	5	0			
2833110000	-- 황산이나트륨	10	5	0			
2833190000	-- 기타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833210000	-- 마그네슘의 것	10	5	5			b
2833220000	-- 알루미늄의 것	10	5	5			b
2833240000	-- 니켈의 것	10	5	0			
2833250000	-- 동의 것	10	5	5			b
2833270000	-- 바륨의 것	10	5	0			
2833291000	---- 철의 것	10	5	5			b
2833293000	---- 납의 것	10	5	0			
2833295000	---- 크롬의 것	10	5	5			b
2833296000	---- 아연의 것	10	5	5			b
2833299000	---- 기타	10	5	0			
2833301000	-- 알루미늄의 것	10	5	5			b
2833309000	-- 기타	5	5	0			
2833401000	-- 나트륨의 것	5	5	0			
2833409000	-- 기타	5	5	0			
2834100000	- 아질산염	5	5	0			
2834210000	-- 칼륨의 것	10	5	0			
2834291000	---- 마그네슘의 것	10	5	5			b
2834299000	---- 기타	5	5	0			
2835100000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및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5	5	0			
2835220000	-- 인산일나트륨 또는 인산이나트륨	10	5	5			b
2835240000	-- 인산칼륨	10	5	5			b
2835250000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 슘")	10	5	5			b
2835260000	-- 기타 인산칼슘	10	5	5			b
2835291000	---- 철의 것	5	5	0			
2835292000	---- 삼암모늄의 것	5	5	0			
2835299000	---- 기타	10	5	0			
2835310000	--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 트륨)	10	5	0			
2835391000	---- 피로인산나트륨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835399000	- - - 기타	5	5	0			
2836200000	- 탄산이나트륨	0	0	0			
2836300000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10	5	0			
2836400000	- 탄산칼륨	5	5	0			
2836500000	- 탄산칼슘	10	5	5			b
2836600000	- 탄산바륨	5	5	0			
2836910000	- - 탄산리튬	5	5	0			
2836920000	- - 탄산스트론튬	5	5	0			
2836991000	- - - 침강성 탄산마그네슘	5	5	0			
2836992000	- - - 탄산암모늄	5	5	0			
2836993000	- - - 탄산코발트	10	5	0			
2836994000	- - - 탄산니켈	5	5	0			
2836995000	- - - 세스퀴탄산나트륨	5	5	0			
2836999000	- - - 기타	5	5	0			
2837111000	- - - 시안화물	5	5	0			
2837112000	- - - 산화시안화물	5	5	0			
2837190000	- - 기타	5	5	0			
2837200000	- 시안착염	5	5	0			
2839110000	- - 메타규산나트륨	10	5	0			
2839190000	- - 기타	10	5	5			b
2839901000	- - 알루미늄의 것	10	5	0			
2839902000	- - 침강성 칼슘의 것	5	5	0			
2839903000	- - 마그네슘의 것	10	5	0			
2839904000	- - 칼륨의 것	10	5	5			b
2839909000	- - 기타	5	5	0			
2840110000	- - 무수물	5	5	0			
2840190000	- - 기타	5	5	0			
2840200000	- 기타 붕산염	5	5	0			
2840300000	-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5	5	0			
2841300000	- 중크롬산나트륨	5	5	0			
2841501000	- - 아연의 크롬산염 또는 납의 크롬산염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841502000	-- 크롬산칼륨	5	5	0			
2841503000	-- 크롬산나트륨	5	5	0			
2841504000	-- 중크롬산칼륨	5	5	0			
2841505000	-- 중크롬산탈륨	5	5	0			
2841509000	-- 기타	5	5	0			
2841610000	-- 과망간산칼륨	5	5	0			
2841690000	-- 기타	5	5	0			
2841700000	- 몰리브덴산염	10	5	0			
2841800000	- 텅스텐산염(올프라메이트)	5	5	0			
2841901000	-- 알루미늄산염	10	5	0			
2841909000	-- 기타	5	5	0			
2842100000	- 규산의 겹염 또는 착염(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하며,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2842901000	-- 아비산염과 비산염	5	5	0			
2842902100	---- 암모늄과 아연의 것	10	5	0			
2842902900	---- 기타	5	5	0			
2842903000	-- 인산의 겹염 또는 착염(인산염)	5	5	0			
2842909000	-- 기타	5	5	0			
2843100000	- 콜로이드 귀금속	5	5	0			
2843210000	-- 질산은	10	5	5			b
2843290000	-- 기타	5	5	0			
2843300000	- 금 화합물	5	5	0			
2843900000	- 기타 화합물, 아말감	5	5	0			
2844100000	-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천연우라늄 또는 천연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5	5	0			
2844200000	-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2844300000	-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 및 그 화합물, 토륨 및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 또는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5	5	0			
2844401000	-- 방사성 잔재물	5	5	0			
2844409000	-- 기타	5	5	0			
2844500000	-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요소(카트리지)	5	5	0			
2845100000	- 중수(산화 중수소)	5	5	0			
2845900000	- 기타	5	5	0			
2846100000	- 세륨화합물	5	5	0			
2846900000	- 기타	5	5	0			
2847000000	과산화수소(요소로 교체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0	5	0			
2848000000	인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인철은 제외한다)	5	5	0			
2849100000	- 칼슘의 것	10	5	0			
2849200000	- 규소의 것	10	5	0			
2849901000	-- 텅스텐의 것	5	5	0			
2849909000	-- 기타	5	5	0			
2850001000	- 납 아지화물	5	5	0			
2850002000	- 아지화물	5	5	0			
2850009000	- 기타	5	5	0			
2852001000	- 수은 황화물	10	5	0			
2852002100	-- 메르브로민(DCI)(머큐로크롬)	5	5	0			
2852002900	-- 기타	10	5	0			
2852009000	- 기타	5	5	0			
2853001000	-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853003000	- 증류수 또는 전도도수 및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액체 공기와 정화 공기	10	5	0			
2853009000	- 기타	5	5	0			
2901100000	- 포화된 것	5	5	0			
2901210000	-- 에틸렌	0	0	0			
2901220000	-- 프로펜(프로필렌)	0	0	0			
2901230000	-- 부텐(부틸렌) 및 그 이성체	5	5	0			
2901240000	-- 1, 3-부타디엔 및 이소프렌	5	5	0			
2901290000	-- 기타	5	5	0			
2902110000	-- 시클로헥산	5	5	0			
2902190000	-- 기타	5	5	0			
2902200000	- 벤젠	5	5	0			
2902300000	- 톨루엔	5	5	0			
2902410000	-- 오르토-크실렌	5	5	0			
2902420000	-- 메타-크실렌	5	5	0			
2902430000	-- 파라-크실렌	5	5	0			
2902440000	-- 혼합크실렌이성체	5	5	0			
2902500000	- 스티렌	0	0	0			
2902600000	- 에틸벤젠	5	5	0			
2902700000	- 큐멘	10	5	0			
2902901000	-- 나프탈렌	5	5	0			
2902909000	-- 기타	5	5	0			
2903111000	--- 염화메탄(염화메틸)	5	5	0			
2903112000	--- 염화에탄(염화에틸)	5	5	0			
2903120000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5	5	0			
2903130000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5	5	0			
2903140000	-- 사염화탄소	5	5	0			
2903150000	--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10	5	0			
2903191000	---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03199000	- - - 기타	5	5	0			
2903210000	- - 영화비닐(영화에틸렌)	5	5	0			
2903220000	- - 삼염화에틸렌	5	5	0			
2903230000	- -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5	5	0			
2903291000	- - - - 영화비닐리덴(단량체)	5	5	0			
2903299000	- - - - 기타	5	5	0			
2903310000	- - 이브롬화에틸렌(ISO)(1,2- 이브로모에탄)	5	5	0			
2903391000	- - - - 브로모에탄(메틸 브로마이드)	5	5	0			
2903392100	- - - - - 디플루오르메탄	5	5	0			
2903392200	- - - - - 트리플루오르메탄	5	5	0			
2903392300	- - - - - 디플루오르메탄	5	5	0			
2903392400	- - - - - 트리플루오르메탄	5	5	0			
2903392500	- - - - - 테트라플루오르메탄	0	0	0			
2903392600	- - - - - 펜타플루오르메탄	5	5	0			
2903393000	- - - - 1,1,3,3,3- 펜타플루오르-2- (트리플루오르메틸)-1-프로펜	10	5	0			
2903399000	- - - - 기타	5	5	0			
2903410000	-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10	5	0			
2903420000	- -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10	5	0			
2903430000	- -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5	5	0			
2903440000	- -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메탄 과 클로로펜타플루오르메탄	5	5	0			
2903451000	- - - -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10	5	0			
2903452000	- - - - 펜타클로로플루오르메탄	5	5	0			
2903453000	- - - -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	5	0			
2903454100	- - - - -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5	5	0			
2903454200	- - - - -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5	5	0			
2903454300	- - - - -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						
2903454400	-----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 프로판	5	5	0			
2903454500	-----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 판	5	5	0			
2903454600	-----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	5	5	0			
2903454700	-----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	5	5	0			
2903459000	---- 기타	10	5	0			
2903460000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과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	5	5	0			
2903470000	-- 기타 퍼할로겐화유도체	5	5	0			
2903491100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0	0	0			
2903491300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5	5	0			
2903491400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5	5	0			
2903491500	-----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메탄	5	5	0			
2903491600	-----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	0	0	0			
2903491700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	5	0			
2903491800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5	5	0			
2903491900	---- 기타	5	5	0			
2903492000	---- 불소 및 브롬만을 가지는 할로겐화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유도체	5	5	0			
2903499000	---- 기타	5	5	0			
2903511000	---- 린데인(ISO) 감마 이성체	0	0	0			
2903512000	---- 알파, 베타 및 델타 이성체	0	0	0			
2903519000	---- 기타	0	0	0			
2903521000	---- 엘드린(ISO)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03522000	--- 클로르덴(ISO)	5	5	0			
2903523000	--- 헵타클로르(ISO)	0	0	0			
2903591000	--- 캄페클로르(톡사펜)	0	0	0			
2903592000	--- 미렉스	0	0	0			
2903599000	--- 기타	0	0	0			
2903610000	-- 클로로벤젠, 오르토- 디클로로벤젠 및 파라- 디클로로벤젠	5	5	0			
2903621000	--- 헥사클로로벤젠(ISO)	5	5	0			
2903622000	---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 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5	5	0			
2903690000	-- 기타	5	5	0			
2904101000	-- 나프탈렌술폰산	10	5	0			
2904109000	-- 기타	10	5	5			b
2904201000	-- 디니트로톨루엔	10	5	0			
2904202000	-- 트리니트로톨루엔(TNT)	10	5	0			
2904203000	-- 트리니트로부틸메타크실렌과 디니트로부틸파라시멘	5	5	0			
2904204000	-- 니트로벤젠	5	5	0			
2904209000	-- 기타	5	5	0			
2904901000	--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 피크린)	0	0	0			
2904909000	-- 기타	0	0	0			
2905110000	-- 메탄올(메틸알코올)	5	5	0			
2905121000	--- 프로필알코올	5	5	0			
2905122000	--- 이소프로필알코올	5	5	0			
2905130000	-- 1-부탄올(노르말- 부틸알코올)	5	5	0			
2905141000	--- 이소부틸	5	5	0			
2905149000	--- 기타	5	5	0			
2905161000	--- 2-에틸헥산올	0	0	0			
2905169000	--- 기타 옥틸알코올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05170000	-- 1- 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 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및 1- 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5	5	0			
2905191000	--- 메틸아밀	5	5	0			
2905192000	---- 기타 헥실알코올(헥산올), 헵틸알코올(헵탄올)	5	5	0			
2905193000	---- 노닐알코올(노난올)	5	5	0			
2905194000	---- 데실알코올(데칸올)	5	5	0			
2905195000	---- 3,3-디메틸부탄-2- 올(피나코릴알코올)	5	5	0			
2905196000	---- 펜탄올(아밀알코올)과 이성체	5	5	0			
2905199000	---- 기타	5	5	0			
2905220000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5	5	0			
2905290000	-- 기타	5	5	0			
2905310000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0	0	0			
2905320000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 1,2-디올)	5	5	0			
2905391000	---- 부틸렌글리콜(부탄디올)	5	5	0			
2905399000	---- 기타	5	5	0			
2905410000	-- 2-에틸-2- (히드록시메틸)프로판-1,3- 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5	5	0			
2905420000	-- 펜타에리트리톨	5	5	0			
29054300	-- 만니톨	5	5	0			
29054400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10	10	0			
2905450000	-- 글리세롤	10	5	5			b
2905490000	-- 기타	5	5	0			
2905510000	-- 에스클로비놀(INN)	5	5	0			
2905590000	-- 기타	5	5	0			
2906110000	-- 멘톨	5	5	0			
2906120000	-- 시클로헥산올,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10	5	0			
2906130000	-- 스테롤과 이노시톨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06190000	-- 기타	5	5	0			
2906210000	-- 벤질알코올	5	5	0			
2906290000	-- 기타	5	5	0			
2907111000	---- 페놀(석탄산)	5	5	0			
2907112000	---- 염	5	5	0			
2907120000	-- 크레졸과 그들의 염	5	5	0			
2907131000	---- 노닐페놀	10	5	0			
2907139000	---- 기타	5	5	0			
2907150000	-- 나프톨과 그들의 염	5	5	0			
2907190000	-- 기타	5	5	0			
2907210000	-- 레소르시놀과 그 염	5	5	0			
2907220000	--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5	5	0			
2907230000	-- 4,4'-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 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5	5	0			
2907291000	---- 페놀알코올	5	5	0			
2907299000	---- 기타	5	5	0			
2908110000	-- 펜타클로로페놀(ISO)	5	5	0			
2908190000	-- 기타	5	5	0			
2908910000	-- 디노셉(ISO)과 그 염	5	5	0			
2908991000	---- 술폰화만 된 유도체, 그 염과 에스테르	10	5	0			
2908992100	---- 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 (DNOC)	5	5	0			
2908992200	---- 디니트로페놀	5	5	0			
2908992300	---- 피크르산(트리니트로페닐)	5	5	0			
2908992900	---- 기타	5	5	0			
2908999000	---- 기타	5	5	0			
2909110000	-- 디에틸에테르	5	5	0			
2909191000	---- 메틸테르트-부틸에테르	10	5	0			
2909199000	---- 기타	5	5	0			
290920000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또는 시클로테르펜에테르 및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301000	-- 아네톨	5	5	0			
2909309000	-- 기타	5	5	0			
2909410000	--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5	5	0			
2909430000	--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5	5	0			
2909440000	-- 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기타 모노알킬에테르	5	5	0			
2909491000	---- 디프로필렌글리콜	15	5	0			
2909492000	---- 트리에틸렌글리콜	5	5	0			
2909493000	---- 글리세릴구아이어콜	5	5	0			
2909494000	---- 프로필렌글리콜의 메틸에테르	5	5	0			
2909495000	---- 프로필렌글리콜의 기타 에테르	5	5	0			
2909496000	---- 에틸렌글리콜의 기타 에테르	5	5	0			
2909499000	---- 기타	5	5	0			
2909501000	-- 구아이어콜·오이게놀 및 이소오이게놀, 구아이어콜술폰화칼륨	5	5	0			
2909509000	-- 기타	0	0	0			
2909601000	--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10	5	0			
2909609000	-- 기타	5	5	0			
2910100000	-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10	5	0			
2910200000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5	5	0			
2910300000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0	0	0			
2910400000	- 디엘드린(ISO, INN)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10902000	-- 엔드린(ISO)	5	5	0			
2910909000	-- 기타	5	5	0			
2911000000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기타 산소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5	5	0			
2912110000	-- 메탄알(포름알데히드)	10	5	0			
2912120000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5	5	0			
2912192000	---- 시틀알과 시트로넬알	5	5	0			
2912193000	---- 글루테르알데히드	10	5	0			
2912199000	---- 기타	5	5	0			
2912210000	-- 벤즈알데히드	5	5	0			
2912291000	---- 신남알데히드와 페닐아세트알데히드	5	5	0			
2912299000	---- 기타	5	5	0			
2912300000	- 알데히드-알코올	5	5	0			
2912410000	--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5	5	0			
2912420000	--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5	5	0			
2912490000	-- 기타	5	5	0			
2912500000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5	5	0			
2912600000	- 파라포름알데히드	5	5	0			
2913000000	제 2912 호의 제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5	5	0			
2914110000	-- 아세톤	10	5	0			
2914120000	-- 부탄온(메틸에틸케톤)	5	5	0			
2914130000	--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0	0	0			
2914190000	-- 기타	5	5	0			
2914210000	-- 장뇌	5	5	0			
2914221000	---- 시클로헥사논	5	5	0			
2914222000	---- 메틸시클로헥사논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14230000	--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5	5	0			
2914292000	---- 이소포론	0	0	0			
2914299000	---- 기타	5	5	0			
2914310000	--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5	5	0			
2914390000	-- 기타	5	5	0			
2914401000	-- 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디아세톤알코올)	5	5	0			
2914409000	-- 기타	5	5	0			
2914500000	- 케톤-페놀과 기타 산소관능의 케톤	5	5	0			
2914610000	-- 안트라퀴논	5	5	0			
2914690000	-- 기타	5	5	0			
2914700000	-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5	5	0			
2915110000	-- 포름산	5	5	0			
2915121000	---- 포름산나트륨	5	5	0			
2915129000	---- 기타	5	5	0			
2915130000	-- 포름산의 에스테르	5	5	0			
2915210000	-- 초산	10	5	0			
2915240000	-- 무수초산	0	0	0			
2915291000	---- 초산칼슘, 초산납, 초산동, 초산크로뮴, 초산알루미늄과 초산철	10	5	0			
2915292000	---- 초산나트륨	10	5	0			
2915299010	----- 초산코발트	10	5	0			
2915299090	----- 기타	5	5	0			
2915310000	-- 초산에틸	10	5	5			b
2915320000	-- 초산비닐	5	5	0			
2915330000	-- 초산노르말부틸	10	5	0			
2915360000	-- 초산디노셉(ISO)	10	5	0			
2915391000	---- 초산 2-에톡시에틸	5	5	0			
2915392100	----- 초산프로필	10	5	5			b
2915392200	----- 초산이소프로필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15393000	--- 초산아밀과 초산이소아밀	10	5	5			b
2915399010	----- 초산이소부틸	10	5	0			
2915399090	----- 기타	10	5	5			b
2915401000	-- 산	5	5	0			
2915402000	-- 염 및 에스테르	5	5	0			
2915501000	-- 프로피온산	0	0	0			
2915502100	--- 염	10	5	5			b
2915502200	--- 에스테르	5	5	0			
2915601100	--- 부탄산	5	5	0			
2915601900	--- 기타	5	5	0			
2915602000	-- 펜탄산, 그 염 및 에스테르	5	5	0			
2915701000	-- 팔미트산,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10	5	0			
2915702100	--- 스테아르산	10	5	0			
2915702200	--- 염	10	5	5			b
2915702900	--- 에스테르	10	5	5			b
2915902000	-- 브로모아세트산	5	5	0			
2915903100	--- 염화아세틸	5	5	0			
2915903900	--- 기타	5	5	0			
2915904000	-- 틴옥타노에이트	10	5	0			
2915905000	-- 라우르산	5	5	0			
2915909000	-- 기타	5	5	0			
2916111000	--- 아크릴산	5	5	0			
2916112000	--- 염	5	5	0			
2916121000	--- 아크릴산부틸	5	5	0			
2916129000	--- 기타	5	5	0			
2916130000	--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5	5	0			
2916141000	--- 메타아크릴산메틸	5	5	0			
2916149000	--- 기타	5	5	0			
2916151000	--- 올레산	10	5	0			
2916152000	--- 올레산 염 및 에스테르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16159000	--- 기타	5	5	0			
2916191000	--- 소르브산과 그들의 염	5	5	0			
2916192000	--- 아크릴산 유도체	5	5	0			
2916199000	--- 기타	5	5	0			
2916201000	-- 알레트린(ISO)	10	5	0			
2916202000	-- 페메트린(ISO)(INN)	10	5	0			
2916209000	-- 기타	0	0	0			
2916311000	--- 벤조산	10	5	0			
2916313000	--- 벤조산나트륨	10	5	0			
2916314000	--- 벤조산나프틸, 벤조산암모늄, 벤조산칼륨, 벤조산칼슘, 벤조산메틸 및 벤조산에틸	5	5	0			
2916319000	--- 기타	0	0	0			
2916321000	--- 과산화벤조일	10	5	5			b
2916322000	--- 염화벤조일	5	5	0			
2916340000	-- 페닐아세트산 및 그 염	5	5	0			
2916350000	-- 페닐아세트산의 에스테르	5	5	0			
2916360000	-- 비나파크랄(ISO)	5	5	0			
2916390000	-- 기타	5	5	0			
2917111000	--- 옥살산	10	5	0			
2917112000	--- 염과 에스테르	5	5	0			
2917121000	--- 아디프산	5	5	0			
2917122000	--- 염과 에스테르	10	5	5			b
2917131000	--- 아젤라산(INN),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5	5	0			
2917132000	--- 세바스산, 그들의 염 및 에스테르	5	5	0			
2917140000	-- 무수말레산	5	5	0			
2917191000	--- 말레산	5	5	0			
2917192000	--- 말레산의 염,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10	5	5			b
2917193000	--- 푸마르산	10	5	5			b
2917199000	--- 기타	5	5	0			
291720000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2917320000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15	10	7			b
2917330000	-- 오르토프탈산디노닐 또는 오르토프탈산디데실	15	10	7			b
2917341000	---- 오르토프탈산디메틸 또는 오르토프탈산디에틸	15	10	7			b
2917342000	----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15	10	7			b
2917349000	---- 기타	15	10	5			a
2917350000	-- 무수프탈산	15	10	7			b
2917361000	---- 테레프탈산	5	5	0			
2917362000	---- 염	5	5	0			
2917370000	-- 테레프탈산디메틸	0	0	0			
2917392000	---- 오르토프탈산과 그들의 염	10	5	0			
2917393000	---- 이소프탈산, 그 에스테르와 염	5	5	0			
2917394000	---- 무수트리멜리트산	5	5	0			
2917399000	---- 기타	10	5	5			b
2918111000	---- 락트산	5	5	0			
2918112000	---- 락트산칼슘	5	5	0			
2918119000	---- 기타	5	5	0			
2918120000	-- 타르타르산	5	5	0			
2918130000	--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5	5	0			
2918140000	-- 시트르산	10	5	5			b
2918153000	---- 시트르산나트륨	10	5	5			b
2918159000	---- 기타	5	5	0			
2918161000	---- 글루콘산	5	5	0			
2918162000	---- 글루콘산칼슘	5	5	0			
2918163000	---- 글루콘산나트륨	5	5	0			
2918169000	---- 기타	5	5	0			
2918180000	-- 클로로벤질레이트(ISO)	0	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18191000	--- 2,2-디페닐-2- 히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0	0	0			
2918192000	--- 글루콘산 유도체	5	5	0			
2918199000	--- 기타	0	0	0			
2918211000	--- 살리실산	10	5	5			b
2918212000	--- 염	5	5	0			
2918221000	---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10	5	5			b
2918222000	--- 염과 에스테르	5	5	0			
2918230000	-- 기타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그들의 염	10	5	0			
2918291100	----- 파라- 히드록시벤조산메틸	10	5	0			
2918291200	----- 파라- 히드록시벤조산프로필	10	5	0			
2918291900	----- 기타	5	5	0			
2918299000	--- 기타	5	5	0			
2918300000	-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	5	5	0			
2918910000	-- 2,4,5-티(ISO)(2,4,5- 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 및 에스테르	5	5	0			
2918991100	----- 2,4-디(ISO)	0	0	0			
2918991200	----- 염	0	0	0			
2918992000	--- 2,4-디 에스테르	10	5	0			
2918993000	--- 디캄바(ISO)	0	0	0			
2918994000	--- 엠시피에이(ISO)	5	5	0			
2918995000	--- 2,4-디비 4-(2,4- 디클로로페녹시)부티르산	5	5	0			
2918996000	--- 디클로르프로프(ISO)	10	5	0			
2918997000	--- 디클로포프-메틸, 메틸 (2-(4-(2,4-디클로로페녹시) 프로피오네이트	0	0	0			
2918999100	----- 나프록센나트륨	10	5	0			
2918999200	----- 2,4 디클로로페녹시프로피온산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18999900	- - - - 기타	10	5	0			
2919100000	- 트리스(2,3- 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	5	5	0			
2919901100	- - - 글리세로인산나트륨	10	5	0			
2919901900	- - - 기타	5	5	0			
2919902000	- - 디메틸-디클로로- 비닐포스페이트(DDVP)	5	5	0			
2919903000	- - 클로르펜빈포스(ISO)	0	0	0			
2919909000	- - 기타	5	5	0			
2920111000	- - - 파라티온(ISO)	0	0	0			
2920112000	- - - 파라티온- 메틸(ISO)(메틸-파라티온)	0	0	0			
2920191000	- - - 에틸파라티온	0	0	0			
2920192000	- - - 오-에틸-오-피- 니트로페닐벤조티오포스페이 트(EPN)	5	5	0			
2920199000	- - - 기타	0	0	0			
2920901000	- -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세 롤)	10	5	0			
2920902000	- - 펜트라이트(테트라니트로펜타 에리트리톨)	5	5	0			
2920903100	- - - 디메틸과 트리메틸	0	0	0			
2920903200	- - - 디에틸과 트리에틸	0	0	0			
2920903900	- - - 기타	0	0	0			
2920909000	- - 기타	0	0	0			
2921110000	- - 메틸아민, 디메틸아민 또는 트리메틸아민과 그들의 염	5	5	0			
2921191000	- - - 비스-(2- 클로로에틸)에틸아민	5	5	0			
2921192000	- - - 클로르메틴(INN)[비스(2- 클로로에틸)메틸아민]	5	5	0			
2921193000	- - - 트리클로르메틴(INN)[트리스(2-클로로에틸)아민]	5	5	0			
2921194000	- - -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클로르에틸아민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						
2921195000	--- 디에틸아민과 그 염	5	5	0			
2921199000	--- 기타	5	5	0			
2921210000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0	0	0			
2921220000	-- hexamethylenediamine과 그 염	5	5	0			
2921290000	-- 기타	5	5	0			
2921300000	- 포화지환식아민·불포화지환식 아민 또는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또는 폴리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5	5	0			
2921410000	-- 아닐린과 그 염	5	5	0			
2921421000	--- 클로로아닐린	0	0	0			
2921422000	--- 엔-메틸-엔,2,4,6- 테트라니트로아닐린(테트라리 트)	0	0	0			
2921429000	--- 기타	0	0	0			
2921430000	-- 톨루이딘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0	0	0			
2921440000	--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그들의 염	5	5	0			
2921450000	-- 1-나프틸아민(알파- 나프틸아민), 2- 나프틸아민(베타- 나프틸아민)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5	5	0			
2921461000	--- 암페타민(INN)	0	0	0			
2921462000	--- 벤즈페타민(INN), 덱스암페타민(INN), 에틸암페타민(INN)과 펜캄파민(INN)	0	0	0			
2921463000	--- 레페타민(INN), 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와 펜터민(INN)	0	0	0			
2921469000	--- 기타	0	0	0			
2921491000	--- 크실리딘	5	5	0			
2921499000	--- 기타	0	0	0			
2921510000	-- 오르토- 페닐렌디아민·메타-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페닐렌디아민·파라- 페닐렌디아민·디아미노톨루엔 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2921590000	-- 기타	5	5	0			
2922111000	--- 모노에탄올아민	5	5	0			
2922112000	---- 염	5	5	0			
2922121000	---- 디에탄올아민	0	0	0			
2922122000	---- 염	5	5	0			
2922131000	---- 트리에탄올아민	0	0	0			
2922132000	---- 염	5	5	0			
2922141000	---- 덱스트로프로폭시펜 (INN)	0	0	0			
2922142000	---- 염	0	0	0			
2922192100	----- 엔,엔-디메틸-2- 아미노에탄올과 그 수소화된 염	0	0	0			
2922192200	----- 엔,엔-디에틸-2- 아미노에탄올과 그 수소화된 염	0	0	0			
2922192900	----- 기타	0	0	0			
2922193000	---- 에틸디에탄올아민	0	0	0			
2922194000	---- 메틸디에탄올아민	0	0	0			
2922199000	---- 기타	0	0	0			
2922210000	-- 아미노히드록시나프탈렌술폰 산과 그들의 염	5	5	0			
2922290000	-- 기타	5	5	0			
2922311000	---- 암페프라몬(INN)	5	5	0			
2922312000	---- 메타돈(INN)	5	5	0			
2922313000	---- 노르메타돈(INN)	5	5	0			
2922319000	---- 기타	5	5	0			
2922390000	-- 기타	5	5	0			
2922410000	-- 리신과 그 에스테르, 그들의 염	5	5	0			
2922421000	---- 글루탐산모노나트륨	10	5	0			
2922429000	---- 기타	5	5	0			
2922430000	-- 안트라닐산과 그 염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22441000	--- 탈리딘(INN)	0	0	0			
2922449000	--- 기타	0	0	0			
2922491000	--- 글리신(INN), 그 염 및 에스테르	5	5	0			
2922493000	---- 알라닌(INN), 페닐알라닌(INN), 류우신(INN), 이소류우신(INN)과 아스파르트산(INN)	5	5	0			
2922494100	-----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EDTA)	0	0	0			
2922494200	----- 염	10	5	0			
2922499000	--- 기타	0	0	0			
2922503000	-- 2-아미노-1-(2,5- 디메톡시-4-메틸)-페닐프로판 (STP,DOM)	0	0	0			
2922504000	-- 아미노산페놀, 그들의 염 및 유도체	5	5	0			
2922509000	-- 기타	0	0	0			
2923100000	- 콜린과 그 염	5	5	0			
2923200000	- 레시틴 및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	10	5	0			
2923901000	-- 콜린 유도체	5	5	0			
2923909000	-- 기타	10	5	0			
2924110000	-- 메프로바메이트(INN)	5	5	0			
2924120000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및 포스파미돈(ISO)	0	0	0			
2924190000	-- 기타	0	0	0			
2924211000	--- 디우론(ISO)	10	5	0			
2924219000	---- 기타	0	0	0			
2924230000	-- 2- 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 아세틸 안트라닐산) 및 그 염	5	5	0			
2924240000	-- 에티나메이트(INN)	0	0	0			
2924291000	---- 파라- 아세트아미도페놀(파라세타몰) (INN)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24292000	- - - 리도카인(INN)	5	5	0			
2924293000	- - - 카르바릴(ISO)(INN)	0	0	0			
2924294000	- - - 프로파닐(ISO)	10	5	0			
2924295000	- - - 메타락실(ISO)	0	0	0			
2924296000	- - - 아스파르테임(INN)	0	0	0			
2924297000	- - - 아테놀올(INN)	0	0	0			
2924298000	- - - 부타클로르(2'-클로로- 2',6' 디에틸-엔- (부톡시메틸)아세트아닐리드)	0	0	0			
2924299100	- - - - 2'-클로로-2',6' 디에틸- 엔(메톡시메틸)아세트아닐리드	0	0	0			
2924299900	- - - - 기타	0	0	0			
2925110000	- - 사카린과 그 염	10	5	0			
2925120000	- - 구루테치미드(INN)	5	5	0			
2925190000	- - 기타	5	5	0			
2925210000	- - 클로르디메포름(ISO)	5	5	0			
2925291000	- - - 구아니딘, 유도체와 염	5	5	0			
2925299000	- - - 기타	0	0	0			
2926100000	- 아크릴로니트릴	5	5	0			
2926200000	- 1- 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5	5	0			
2926301000	- -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0	0	0			
2926302000	- - 메타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 디메틸아미노-4,4- 디페닐부탄)	0	0	0			
2926902000	- - 아세토니트릴	5	5	0			
2926903000	- - 아세톤시안히드린	5	5	0			
2926904000	- - 2-시아노- 엔[(에틸아미노)카르보닐]-2- (메톡시아미노)아세트아미드(사이옥사닐)	5	5	0			
2926905000	- - 사이퍼메트린	10	5	0			
2926909000	- - 기타	0	0	0			
2927000000	디아조화합물, 아조화합물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또는 아족시화합물						
2928001000	- 에틸-메틸- 케톡심(부탄온옥심)	10	5	5			b
2928002000	- 폭심(ISO)(INN)	5	5	0			
2928009000	- 기타	5	5	0			
2929101000	-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5	5	0			
2929109000	- - 기타	0	0	0			
2929901000	- -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5	5	0			
2929902000	- -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엔,엔-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5	5	0			
2929903000	- - 시클라멘산나트륨(INN)	5	5	0			
2929909000	- - 기타	5	5	0			
2930201000	- - 에틸디프로필티오카르바메이 트	0	0	0			
2930209000	- - 기타	0	0	0			
2930301000	- - 테트라메틸티우람디술파이드(I SO)(INN)	0	0	0			
2930309000	- - 기타	5	5	0			
2930400000	- 메티오닌	5	5	0			
2930500000	- 캅타폴(ISO)과 메타미도포스(ISO)	0	0	0			
2930901100	- - - 티오파네이트 - 메틸(ISO)	0	0	0			
2930901900	- - - 기타	5	5	0			
2930902100	- - -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 티올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	5	5	0			
2930902900	- - - 기타	5	5	0			
2930903000	- - 말라티온(ISO)	0	0	0			
2930904000	- - 부티레이트(ISO), 티오벤카브, 베노레이트	0	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30905100	--- 이소프로필 크산틴산나트륨(ISO)	10	5	0			
2930905900	--- 기타	10	5	0			
2930906000	-- 티오디글리콜(INN)[비스(2- 하이드록시에틸) 술파이드]	0	0	0			
2930907000	-- 오, 오-디에틸에스-[2- (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로 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	0	0	0			
2930908000	--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 트(포노포스)	0	0	0			
2930909200	--- 메티오닌의 염, 에스테르 및 유도체	5	5	0			
2930909300	--- 디메토에이트(ISO), 펜티온(ISO)	0	0	0			
2930909400	---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 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 트와 그들의 오- 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그들의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들	0	0	0			
2930909500	--- 2-클로로에틸과 클로로메틸술파이드, 비스(2- 클로로에틸)술파이드	0	0	0			
2930909600	--- 비스(2- 클로로에틸티오)메탄, 1,2- 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탄, 1,3-비스(2-클로로에틸티오)- 노르말-프로판, 1,4-비스(2- 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 부탄, 1,5-비스(2- 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0	0	0			
2930909700	--- 비스-(2- 클로로에틸티오메틸)옥사이드, 비스-(2- 클로로에틸티오에틸)옥사이드	0	0	0			
2930909800	--- 기타의 것으로서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 결합된 인원자를 포함하는 것(더	0	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이상의 탄소원자가 없는 것에 한한다)						
2930909900	- - - 기타	0	0	0			
2931001000	- 테트라에틸납	5	5	0			
2931003100	- - 글리포세이트(ISO)	0	0	0			
2931003200	- - 염	0	0	0			
2931004000	-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미만으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 데이트	0	0	0			
2931009200	- - 트리클로르폰(ISO)	0	0	0			
2931009300	- - -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미만으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 데이트	0	0	0			
2931009400	- - 2- 클로로비닐디클로로아르신, 비스(2- 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트리스(2-클로로비닐)아르신	0	0	0			
2931009500	- -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 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닐디플루오 라이드	0	0	0			
2931009600	- -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 드로젠알킬포스포나이트, 그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미만으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의 에스테르,그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	0	0	0			
2931009700	- -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오-피나코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0	0	0			
2931009800	- - 기타의 것으로서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 결합된 인원자를 포함하는 것(더	0	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이상의 탄소원자가 없는 것에 한한다)						
2931009900	-- 기타	0	0	0			
2932110000	-- 테트라히드로푸란	5	5	0			
2932120000	-- 2- 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 드)	5	5	0			
2932131000	---- 푸르푸릴알코올	5	5	0			
2932132000	----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알코올	5	5	0			
2932190000	-- 기타	5	5	0			
2932210000	-- 쿠마린, 메틸쿠마린과 에틸쿠마린	5	5	0			
2932291000	---- 와르파린(ISO)(INN)	5	5	0			
2932292000	---- 페놀프탈레인(INN)	5	5	0			
2932299000	---- 기타	0	0	0			
2932910000	-- 이소사프롤	5	5	0			
2932920000	-- 1-(1,3-벤조디옥솔-5- 일)프로판-2-온	5	5	0			
2932930000	-- 피페로날	5	5	0			
2932940000	-- 사프롤	5	5	0			
2932950000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0	0	0			
2932991000	-- 피페로닐부톡사이드	5	5	0			
2932992000	---- 유칼립톨	10	5	0			
2932994000	---- 카보퓨란(ISO)	0	0	0			
2932999000	---- 기타	0	0	0			
2933111000	---- 페나존(INN)(안티피린)	5	5	0			
2933113000	---- 디피로나(4- 메틸아미노-1,5 디메틸-2- 페닐-3-피라조론 메탄술폰산 나트륨	5	5	0			
2933119000	---- 기타	5	5	0			
2933191000	---- 페닐부타존(INN)	5	5	0			
2933199000	---- 기타	5	5	0			
2933210000	--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33290000	-- 기타	0	0	0			
2933310000	-- 피리딘과 그 염	5	5	0			
2933320000	-- 피페리딘과 그 염	10	5	0			
2933331000	--- 브로마제팜(INN)	0	0	0			
2933332000	--- 펜타닐(INN)	0	0	0			
2933333000	--- 페티딘(INN)	0	0	0			
2933334000	--- 페티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4-시아노- 1-메틸-4-페닐-피페리딘 또는 1-메틸-4-페닐-4- 시아노피페리딘)	0	0	0			
2933335000	--- 알펜타닐(INN), 아닐레리딘(INN), 베지트라마이드(INN), 디페녹신(INN), 디펜옥살레이트(INN), 디피파논(INN), 케토베미돈(INN), 메틸페니데이트(INN), 펜타조신(INN), 펜사이클리딘(INN)(PCP), 페노페리딘(INN), 피프라드롤(INN), 피리트라미드(INN), 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INN)	0	0	0			
2933339000	--- 기타	0	0	0			
2933391100	---- 피클로람(ISO)	0	0	0			
2933391200	---- 염	0	0	0			
2933392000	--- 파라콰트디클로라이드	0	0	0			
2933393000	--- 이소니코틴산 하이드라지드	0	0	0			
2933396000	--- 3-퀴뉴클리디닐 벤질레이트	0	0	0			
2933397000	--- 퀴뉴클리딘-3-올	0	0	0			
2933399000	--- 기타	0	0	0			
2933410000	-- 레보파놀(INN) 및 그 염	0	0	0			
2933491000	--- 6-에톡시-1,2- 디히드로-2,2,4- 트리메틸퀴놀린(에톡시퀸)	0	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33499000	--- 기타	0	0	0			
2933520000	--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5	5	0			
2933531000	--- 페노바르비탈(INN)	5	5	0			
2933532000	---- 아로바르비탈(INN), 아모바르비탈(INN), 바르비탈(INN), 부탈비탈(INN)과 부토바르비탈(INN)	5	5	0			
2933533000	---- 싸이클로바르비탈(INN), 메틸페노바르비탈(INN)과 펜토바르비탈(INN)	5	5	0			
2933534000	---- 섹부타바르비탈(INN), 세코바르비탈(INN)과 비닐비탈(INN)	5	5	0			
2933539000	--- 기타	5	5	0			
2933540000	-- 기타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 유도체, 그들의 염	5	5	0			
2933551000	---- 로프라졸람(INN)	5	5	0			
2933552000	---- 메크로과론(INN)	10	5	0			
2933553000	---- 메타과론(INN)	0	0	0			
2933554000	---- 지페프롤(INN)	5	5	0			
2933559000	---- 기타	5	5	0			
2933591000	---- 피페라진(디에틸렌디아민)과 2,5-디메틸피페라진(디메틸- 2,5-디에틸렌디아민)	5	5	0			
2933592000	---- 앙프롤룸(INN)	5	5	0			
2933593000	---- 기타 피페라진 유도체	5	5	0			
2933594000	---- 티오펜탈나트륨(INN)	0	0	0			
2933595000	---- 시프로플록사신(INN)과 그 염	0	0	0			
2933596000	---- 히드록시진(INN)	0	0	0			
2933599000	--- 기타	0	0	0			
2933610000	-- 멜라민	0	0	0			
2933691000	---- 아트라진(ISO)	0	0	0			
2933699000	--- 기타	0	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33710000	-- 6-헥산락탐(엡실론- 카프로락탐)	10	5	5			b
2933720000	-- 클로바잠(INN)과 메티프릴론(INN)	0	0	0			
2933791000	--- 프리미돈(INN)	0	0	0			
2933799000	--- 기타	0	0	0			
2933911000	--- 알프라졸람(INN)	0	0	0			
2933912000	--- 디아제팜(INN)	0	0	0			
2933913000	--- 로라제팜(INN)	0	0	0			
2933914000	--- 트리아졸람(INN)	0	0	0			
2933915000	--- 카마제팜(INN),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클로나제팜(INN), 클로라제페이트, 델로라제팜(INN), 에스타졸람(INN), 플루디아제팜(INN), 플루니트라제팜(INN)	0	0	0			
2933916000	--- 플루라제팜(INN), 할라제팜(INN),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로르메타제팜(INN), 마진돌(INN), 메다제팜(INN), 미다졸람(INN)과 니메타제팜(INN)	0	0	0			
2933917000	--- 니트라제팜(INN), 노르다제팜(INN), 옥사제팜(INN), 피나제팜(INN), 프라제팜(INN), 피로발레로나(INN), 테마제팜(INN)과 테트라제팜(INN)	0	0	0			
2933919000	--- 기타	0	0	0			
2933991000	--- 파르벤다졸(INN)	5	5	0			
2933992000	--- 알벤다졸(INN)	5	5	0			
2933999000	--- 기타	0	0	0			
2934101000	-- 티아벤다졸(ISO)	0	0	0			
2934109000	-- 기타	5	5	0			
2934200000	- 벤조티아졸 고리구조를 포함하는 화합물(수소첨가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여부는 불문하며, 고리가 더이상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934300000	- 페노티아진 고리구조를 포함하는 화합물(수소첨가 여부는 불문하며, 고리가 더이상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5	0			
2934911000	- - - - -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과 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	0	0	0			
2934912000	- - -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과 페몰린(INN)	0	0	0			
2934913000	- - - 펜메트라진(INN), 펜디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닐(INN)	0	0	0			
2934919000	- - - 기타	0	0	0			
2934991000	- - - 솔톤과 솔탐	5	5	0			
2934992000	- - - (6-아미노 페니실란)산	5	5	0			
2934993000	- - - 핵산과 그들의 염	0	0	0			
2934994000	- - - 레바미솔(INN)	5	5	0			
2934999000	- - - 기타	0	0	0			
2935001000	- 설피라이드(INN)	0	0	0			
2935009000	- 기타	0	0	0			
2936210000	- - 비타민 A 와 그들의 유도체	5	5	0			
2936220000	- - 비타민 B1 과 그 유도체	5	5	0			
2936230000	- - 비타민 B2 와 그 유도체	5	5	0			
2936240000	- - 디- 또는 디엘- 판토텐산(비타민 B3 또는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5	5	0			
2936250000	- - 비타민 B6 와 그 유도체	5	5	0			
2936260000	- - 비타민 B12 와 그 유도체	5	5	0			
2936270000	- - 비타민 C 와 그 유도체	5	5	0			
2936280000	- - 비타민 E 와 그 유도체	5	5	0			
2936291000	- - - 비타민 B9 과 그들의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유도체						
2936292000	--- 비타민 K와 그 유도체	5	5	0			
2936293000	--- 비타민 PP와 그 유도체	5	5	0			
2936299000	--- 기타 비타민과 그들의 유도체	5	5	0			
2936900000	- 기타(천연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5	5	0			
2937110000	--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5	5	0			
2937120000	-- 인슐린과 그 염	0	0	0			
2937191000	--- 옥시토신(INN)	5	5	0			
2937199000	--- 기타	5	5	0			
2937211000	--- 히드로코르티손	5	5	0			
2937212000	--- 프레드니손(INN)(데히드로히 드로코르티손)	5	5	0			
2937219000	--- 기타	5	5	0			
2937221000	--- 베타메타손(INN)	5	5	0			
2937222000	--- 덱사메타손(INN)	5	5	0			
2937223000	--- 트리암시놀론(INN)	5	5	0			
2937224000	--- 플루오시노나이드(INN)	5	5	0			
2937229000	--- 기타	5	5	0			
2937231000	--- 프로게스테론(INN)과 그 유도체	5	5	0			
2937232000	--- 에스트리올(폴리클린하이드레 이트)	5	5	0			
2937239000	--- 기타	5	5	0			
2937291000	--- 사이프로테론(INN)	5	5	0			
2937292000	--- 피나스테라이드(INN)	5	5	0			
2937299000	--- 기타	5	5	0			
2937310000	-- 에피네프린	5	5	0			
2937390000	-- 기타	5	5	0			
2937400000	- 아미노산 유도체	5	5	0			
2937500000	-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 및 류코트리엔, 그들의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900000	- 기타	5	5	0			
2938100000	-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5	5	0			
2938902000	-- 사포닌	5	5	0			
2938909000	-- 기타	5	5	0			
2939111000	---- 양귀비 줄기 농축물과 그 염	5	5	0			
2939112000	---- 코데인과 그 염	5	5	0			
2939113000	---- 디히드로코데인(INN)과 그 염	5	5	0			
2939114000	---- 헤로인과 그 염	5	5	0			
2939115000	---- 모르핀과 그 염	5	5	0			
2939116000	---- 버프레노핀(INN)·에틸모르핀· 에토르핀(INN)·히드로코돈(IN N)·히드로모르폰(INN), 그들의 염	5	5	0			
2939117000	---- 폴코딘(INN)·니코모르핀(INN)· 옥시코돈(INN)·옥시모르폰(IN N)·테바콘(INN) 및 테바인, 그들의 염	5	5	0			
2939191000	---- 파파버린, 그 염과 유도체	5	5	0			
2939199000	---- 기타	5	5	0			
2939200000	-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5	5	0			
2939300000	- 카페인과 그 염	5	5	0			
2939410000	-- 에페드린과 그 염	5	5	0			
2939420000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5	5	0			
2939430000	-- 캐친(INN)과 그 염	5	5	0			
2939492000	---- 디엘- 노르에페드린(페닐프로판올아 민)과 그 염	5	5	0			
2939499000	---- 기타	5	5	0			
2939510000	-- 페네틸린(INN)과 그 염	5	5	0			
2939590000	-- 기타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39610000	--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5	5	0			
2939620000	-- 엘고타민(INN)과 그 염	5	5	0			
2939630000	-- 리세르그산과 그 염	5	5	0			
2939690000	-- 기타	5	5	0			
2939911000	---- 코카인, 그 염·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5	5	0			
2939912000	---- 에크코닌, 그 염·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5	5	0			
2939914000	---- 메탐페타민(INN), 그 염·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5	5	0			
2939915000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그 염,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5	5	0			
2939916000	---- 레보메탐페타민, 그 염·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5	5	0			
2939991000	---- 스코폴아민, 그 염 및 유도체	10	5	0			
2939999000	---- 기타	5	5	0			
2940000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과 당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제 2937 호·제 2938 호 또는 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5	5	0			
2941101000	-- 암피실린(INN)과 그 염	10	5	0			
2941102000	-- 아목시실린(INN)과 그 염	10	5	0			
2941103000	-- 옥사실린(INN), 클록사실린(INN), 디클록사실린(INN)과 그 염	10	5	0			
2941104000	-- 암피실린, 아목시실린과 디클록사실린 유도체	10	5	0			
2941109000	-- 기타	5	5	0			
2941200000	- 스트렙토마이신과 그들의 유도체, 그들의 염	5	5	0			
2941301000	---- 옥시테트라사이클린(ISO)(INN)과 그 유도체, 그 염	5	5	0			
2941302000	--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과 그 유도체, 그 염	5	5	0			
2941309000	-- 기타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941400000	-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그 염	5	5	0			
2941500000	- 에리트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그 염	5	5	0			
2941901000	-- 네오마이신(INN)과 그 유도체, 그 염	5	5	0			
2941902000	-- 액티노마이신과 그 유도체, 그 염	5	5	0			
2941903000	-- 바시트라신(INN)과 그 유도체, 그 염	5	5	0			
2941904000	-- 그라미시딘(INN)과 그 유도체, 그 염	5	5	0			
2941905010	---- 티로트리신(INN)	0	0	0			
2941905090	---- 기타	0	0	0			
2941906000	--세파렉신(INN)과 그 유도체, 그 염	10	5	0			
2941909000	-- 기타	5	5	0			
2942000000	기타 유기화합물	5	5	0			
3001201000	-- 간의 것	5	5	0			
3001202000	-- 담즙의 것	10	5	0			
3001209000	-- 기타	5	5	0			
3001901000	-- 헤파린과 그 염	5	5	0			
3001909000	-- 기타	5	5	0			
3002101100	---- 항사독제	5	5	0			
3002101200	---- 항디프테리아제	5	5	0			
3002101300	---- 항파상풍제	5	5	0			
3002101900	---- 기타	5	5	0			
3002103100	---- 인간의 혈장 및 기타 인간의 혈액분획물	5	5	0			
3002103200	---- 종양학 또는 에이즈 치료용의 것	5	5	0			
3002103300	----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에 한한다)	5	5	0			
3002103900	---- 기타	5	5	0			
3002201000	-- 소아마비 백신	5	5	0			
3002202000	-- 광견병 백신	5	5	0			
3002203000	-- 홍역 백신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002209000	-- 기타	5	5	0			
3002301000	--항아프타제	5	5	0			
3002309000	-- 기타	5	5	0			
3002901000	-- 미생물의 배양체	5	5	0			
3002902000	--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에 한한다)	5	5	0			
3002903000	-- 인혈	5	5	0			
3002904000	-- 색시톡신	5	5	0			
3002905000	-- 라이신	5	5	0			
3002909000	-- 기타	5	5	0			
3003100000	- 페니실린 또는 그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에 한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5	5	0			
3003200000	- 기타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5	5	0			
3003310000	-- 인슐린을 함유한 것	5	5	0			
3003390000	-- 기타	5	5	0			
3003400000	- 알칼로이드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또는 제 2937 호의 기타 물품 또는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5	5	0			
3003901000	-- 인체용의 것	5	5	0			
3003902000	-- 수의용의 것	5	5	0			
3004101000	-- 인체용의 것	10	10	5			
3004102000	-- 수의용의 것	10	10	5			
3004201100	---- 종양학 또는 에이즈 치료용의 것	5	5	0			
3004201900	---- 기타	10	10	5			
3004202000	-- 수의용의 것	10	10	5			
3004310000	-- 인슐린을 함유한 것	0	0	0			
3004321100	----- 종양학 또는 에이즈 치료용의 것	5	5	0			
3004321900	----- 기타	10	10	5			
3004322000	---- 수의용의 것	10	10	5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004391100	----- 종양학 또는 에이즈 치료용의 것	5	5	0			
3004391900	----- 기타	10	10	5			
3004392000	---- 수의용의 것	10	10	5			
3004401100	--- 마취제	10	10	5			
3004401200	--- 종양학 또는 에이즈 치료용의 것	5	5	0			
3004401900	--- 기타	10	10	5			
3004402000	-- 수의용의 것	10	10	5			
3004501000	-- 인체용의 것	10	10	5			
3004502000	-- 수의용의 것	10	10	5			
3004901000	-- 인간 혈장의 합성 대용물	5	5	0			
3004902100	--- 마취제	10	10	5			
3004902200	--- 니트로글리세린이 침투된 파치	10	10	0			
3004902300	--- 비경구적 수유용의 것	5	5	0			
3004902400	--- 종양학 또는 에이즈 치료용의 것	5	5	0			
3004902900	--- 기타	10	10	5			
3004903000	-- 수의용 기타 의약품	10	10	5			
3005101000	-- 접착성 테이프 및 접착성 붕대	10	10	5			
3005109000	-- 기타	10	10	5			
3005901000	-- 탈지면	15	15	7			
3005902000	-- 붕대	15	15	7			
3005903100	--- 석고 또는 기타 물질(골절 치료에 적절한 것에 한한다)이 침투된 것	15	15	0			
3005903900	--- 기타	15	15	7			
3005909000	-- 기타	15	15	7			
3006101000	-- 살균한 외과용의 냇거트,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	15	10	7			b
3006102000	-- 살균한 접착제(외과적 상처 봉합용의 것에 한한다)	15	5	0			
3006109000	-- 기타	5	5	0			
3006200000	- 혈액형 분류용 시약	5	5	0			
3006301000	-- 바륨 황산염을 기제로 한 조영제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006302000	-- 기타 조영제	5	5	0			
3006303000	-- 진단용 시약	5	5	0			
3006401000	--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15	10	7			b
3006402000	-- 뼈형성용 시멘트	10	5	0			
3006500000	- 구급상자와 구급대	15	15	7			
3006600000	- 호르몬, 제 2937 호의 기타 제품 또는 살정자제를 기제로 하는 피임성 화학조제품	10	5	5			b
3006700000	- 외과 수술이나 신체검사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촉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 조제품	10	5	0			
3006910000	-- 장루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20	5	0			
3006920000	-- 폐의료용품	15	5	0			
3101001000	- 해조 구아노	5	5	0			
3101009000	- 기타	5	5	0			
3102101000	-- 질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5 퍼센트 이상 46 퍼센트 이하인 것(비료 품질)	5	5	0			
3102109000	-- 기타	5	5	0			
3102210000	-- 황산암모늄	5	5	0			
3102290000	-- 기타	5	5	0			
3102300000	-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3102400000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가한 것에 한한다)	5	5	0			
3102500000	- 질산나트륨	5	5	0			
3102600000	-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결염 및 혼합물	5	5	0			
3102800000	-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 또는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것에 한한다)	5	5	0			
3102901000	--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혼합물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102909000	- - 기타	5	5	0			
3103100000	- 과인산석회	5	5	0			
3103900000	- 기타	5	5	0			
3104201000	- - 칼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2 퍼센트 이상 62 퍼센트 이하인 것(산화칼륨으로 표시한다)(비료 품질)	5	5	0			
3104209000	- - 기타	5	5	0			
3104300000	- 황산칼륨	5	5	0			
3104901000	- - 황산마그네슘과 황산칼륨	5	5	0			
3104909000	- - 기타	5	5	0			
3105100000	- 이 류의 제품[정상(錠像)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 또는 총중량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한다]	5	5	0			
3105200000	- 3 종의 비료요소(질소, 인 및 칼륨)를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10	5	5			b
3105300000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5	5	0			
3105400000	-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 일암모늄) 및 이와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 이암모늄)의 혼합물	5	5	0			
3105510000	- -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하는 것	10	5	5			b
3105590000	- - 기타	5	5	0			
3105600000	- 2 종의 비료요소(인과 칼륨)를 함유한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5	5	0			
3105901000	- - 질산칼륨나트륨(질산칼륨)	5	5	0			
3105902000	- - 2 종의 비료물질(인과 칼륨)을 함유한 기타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5	5	0			
3105909000	- - 기타	5	5	0			
3201100000	- 퀘브라초 엑스	5	5	0			
3201200000	- 왓틀 엑스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201902000	-- 케브라초 유연제	5	5	0			
3201903000	-- 참나무의 엑스 또는 밤나무의 엑스	5	5	0			
3201909000	-- 기타	10	5	0			
3202100000	- 합성유기유연제	10	5	0			
3202901000	-- 유연 전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10	5	5			b
3202909000	-- 기타	10	5	5			b
3203001100	-- 로그우드의 것	5	5	0			
3203001200	-- 염록소	5	5	0			
3203001300	-- 천연인디고	5	5	0			
3203001400	-- 안나토의 것	10	5	0			
3203001500	-- 마리골드(크산토피)의 것	10	5	0			
3203001600	-- 퍼플 콘(안토시아닌)의 것	10	5	0			
3203001700	-- 커큐민의 것	10	5	0			
3203001900	-- 기타	10	5	0			
3203002100	-- 코치니엘 카민	10	5	0			
3203002900	-- 기타	5	5	0			
3204110000	-- 분산성염료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10	5	0			
3204120000	-- 산성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매염염료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5	5	0			
3204130000	-- 염기성염료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5	5	0			
3204140000	-- 직접염료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5	5	0			
3204151000	---- 합성인디고	0	0	0			
3204159000	---- 기타	0	0	0			
3204160000	-- 반응성염료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0	0	0			
3204170000	-- 안료색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10	5	5			b
3204191000	---- 합성 카로티노이드를 기제로 한 조제품	5	5	0			
3204199000	---- 기타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204200000	- 합성유기형광증백제	5	5	0			
3204900000	- 기타	10	5	5			b
3205000000	레이크안료, 레이크안료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에 한한다)	10	5	5			b
3206110000	- - 건조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0 퍼센트 이상인 것	5	5	0			
3206190000	- - 기타	10	5	5			b
3206200000	- 크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와 조제품	10	5	5			b
3206410000	- - 군청 및 이를 기제로 한 조제품	5	5	5			
3206420000	- - 황아연을 기제로 한 리도폰 및 기타 안료와 조제품	5	5	0			
3206491000	- - - - 플라스틱, 고무 또는 기타 매체에 의한 기타 안료의 농축 분산물	10	5	5			b
3206492000	- - - - 카드뮴화합물을 기제로 한 안료 및 조제품	10	5	0			
3206493000	- - - - 육시안산철염(페로시아나이드 또는 페리시아나이드)을 기제로 한 안료 및 조제품	5	5	0			
3206499100	- - - - - 광물성블랙	5	5	0			
3206499900	- - - - - 기타	10	5	5			b
3206500000	-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무기물	10	5	0			
3207100000	- 조제안료, 조제유백제, 조제그림물감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10	5	5			b
3207201000	- - 법랑	10	5	5			b
3207209000	- - 기타	10	5	5			b
3207300000	- 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10	5	5			b
3207401000	- - 유리프리트	10	5	5			b
3207409000	- - 기타	10	5	0			
3208100000	- 폴리에스테르를 기제로 한 것	15	10	7			b
3208200000	-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	15	10	7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208900000	- 기타	15	10	7			b
3209100000	-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	15	10	7			b
3209900000	- 기타	15	10	7			b
3210001000	- 부식과 결정을 막는 해양 페인트	15	10	5			a
3210002000	- 피혁의 완성가공용 수성안료	15	10	7			b
3210009000	- 기타	15	10	7			b
3211000000	조제 드라이어	15	10	7			b
3212100000	- 스탬프용의 박	5	5	0			
3212901000	- - 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안료(금속분과 금속플레이크를 포함하며,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으로, 페인트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10	5	5			b
3212902000	- -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으로 한 염료와 기타 착색제	15	10	7			b
3213101000	- - 수성 물감(수채화)	15	15	10			
3213109000	- - 기타	15	15	10			
3213900000	- 기타	15	15	10			
3214101000	- - 퍼티, 수지시멘트 및 기타 퍼티	15	10	7			b
3214102000	- - 그림용 플라스틱	15	10	7			b
3214900000	- 기타	15	10	7			b
3215110000	- - 흑색의 것	15	10	7			b
3215190000	- - 기타	15	10	7			b
3215901000	- - 핵토그래프 또는 스텐실 복사기용의 것	15	5	0			
3215902000	- - 볼펜용의 것	15	5	0			
3215909000	- - 기타	15	10	7			b
33011200	- - 오렌지의 것	5	5	0			
33011300	- - 레몬의 것	10	10	0			
33011910	- - - 라임의 것	5	5	0			
33011990	- - - 기타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3012400	-- 박하(멘타 피페리타)의 것	5	5	0			
33012500	-- 기타 민트류의 것	5	5	0			
33012910	---- 아니스의 것	5	5	0			
33012920	---- 유칼립투스의 것	10	10	0			
33012930	---- 라벤더의 것	5	5	0			
33012990	---- 기타	5	5	0			
33013000	- 레지노이드	5	5	0			
33019010	-- 정유의 방향족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10	10	0			
33019020	-- 추출한 올레오레진	10	10	0			
33019090	-- 기타	5	5	0			
33021010	-- 알코올 농도가 전용량의 0.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5	0			
33021090	-- 기타	5	5	0			
3302900000	- 기타	10	5	5			b
3303000000	향수 및 화장수	20	15	7			a
3304100000	- 입술화장용 제품류	20	15	7			a
3304200000	- 눈화장용 제품류	20	15	7			a
3304300000	- 매니큐어용 제품류 또는 페디큐어용 제품류	20	15	7			a
3304910000	-- 파우더(압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7			a
3304990000	-- 기타	20	15	7			a
3305100000	- 샴푸	20	15	7			a
3305200000	-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20	15	7			a
3305300000	- 헤어 래커	20	15	7			a
3305900000	- 기타	20	15	7			a
3306100000	- 치약	20	15	7			a
3306200000	- 치간 청결용 사(덴탈 플로스)	20	15	7			a
3306900000	- 기타	20	15	7			a
3307100000	- 프리셰이브, 셰이빙 또는 애프터셰이브 제품류	20	15	7			a
3307200000	- 인체탈취제 및 내발한제	20	15	7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307300000	- 가향한 목욕용 염과 기타 목욕용 제품류	20	15	7			a
3307410000	-- «아가바티»와 기타 분향(焚香)	20	15	7			a
3307490000	-- 기타	20	15	7			a
3307901000	-- 콘택트 렌즈용 또는 의안용 액	20	15	7			a
3307909000	-- 기타	20	15	7			a
3401110000	--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	20	15	7			a
3401191000	---- 봉상, 케이크상, 주형상의 것	20	15	7			a
3401199000	---- 기타	20	15	7			a
3401200000	- 기타 형상의 비누	20	15	7			a
3401300000	-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7			a
3402111000	---- 지방성 알코올에서 얻어진 황산염과 술포산염	15	15	5			
3402119000	---- 기타	15	15	5			
3402121000	---- 지방성 아민의 염	15	15	0			
3402129000	---- 기타	15	15	5			
3402131000	---- 산화에틸렌과 11 개 이상의 탄소의 선형 알코올의 혼합물을 농축해서 얻은 것	15	15	5			
3402139000	---- 기타(비이온성의 것에 한한다)	15	15	5			
3402191000	---- 알킬베타인 또는 술포베타인 단백질	15	15	0			
3402199000	---- 기타	15	15	5			
3402200000	- 소매용 조제품	20	15	5			a
3402901000	-- 섬유 산업용 세제	15	15	5			
3402909100	---- 노닐 옥시벤존 술포산 나트륨을 기제로 한 조제계면활성제	5	5	0			
3402909900	---- 기타	15	15	5			
3403110000	-- 방직용 섬유재료, 가죽, 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15	5	5			c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403190000	- - 기타	15	5	5			c
3403910000	- - 방직용 섬유재료, 가죽, 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15	5	5			c
3403990000	- - 기타	15	5	5			c
3404200000	-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의 것	10	5	0			
3404903000	- -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의 것	10	5	0			
3404904010	- - - - 인조의 것	5	5	0			
3404904020	- - - - 조제된 것	10	5	5			b
3404909000	- - 기타	10	5	0			
3405100000	- 신발 또는 가죽용의 광택제,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	20	15	7			a
3405200000	- 목제가구, 마루 또는 기타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15	15	5			
3405300000	- 자동차 차체용의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15	15	7			
3405400000	- 연마페이스트와 연마분 및 기타 연마조제품	15	15	5			
3405900000	- 기타	15	15	7			
3406000000	양초, 테이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0	15	5			a
3407001000	- 조형용 페이스트	20	10	5			b
3407002000	-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15	5	0			
3407009000	- 플라스틱(소석고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에 한한다)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10	5	0			
35011000	- 카세인	5	5	0			
35019010	- - 카세인 글루	10	10	0			
35019090	- - 기타	5	5	0			
35021100	- - 건조한 것	10	10	10			
35021900	- - 기타	10	10	10			
35022000	-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10	1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포함한다)						
35029010	- - 알부민	10	10	0			
35029090	- - 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5	5	0			
35030010	- 젤라틴과 그 유도체	10	10	0			
35030020	- 아이징글라스, 기타 동물성 글루	10	10	0			
35040010	- 펄톤과 그들의 유도체	10	10	0			
35040090	- 기타	5	5	0			
35051000	-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20	안데스가격밴드	10	부속서 2-다 참조		
35052000	- 글루	20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3506100000	-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5	10	7			b
3506910000	- -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접착제	15	10	7			b
3506990000	- - 기타	15	10	7			b
3507100000	- 레네트와 그들의 농축물	10	5	5			b
3507901300	- - - 웨장효소	10	5	0			
3507901900	- - - 기타	5	5	0			
3507903000	- - 파파인	5	5	0			
3507904000	- - 기타 효소와 그들의 농축물	5	5	0			
3507905000	- - 고기 연화용 효소 조제품	10	5	0			
3507906000	- - 음료 정제용 효소 조제품	10	5	0			
3507909000	- - 기타	5	5	0			
3601000000	화약	10	5	0			
3602001100	- - 다이너마이트	10	5	0			
3602001900	- - 기타	10	5	5			b
3602002000	- 질산암모늄을 기제로 한 것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602009000	- 기타	10	5	0			
3603001000	- 도화선	10	5	0			
3603002000	- 도폭선	10	5	0			
3603003000	- 뇌관(퍼커션 캡)	10	5	0			
3603004000	- 뇌관(데토네이팅 캡)	10	5	0			
3603005000	- 점화기	10	5	0			
3603006000	- 전기뇌관	10	5	0			
3604100000	- 불꽃제품	10	5	0			
3604900000	- 기타	15	5	0			
3605000000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20	15	10			b
3606100000	- 깍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류의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15	15	0			
3606900000	- 기타	5	5	0			
3701100000	- 엑스선용의 것	5	5	0			
3701200000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5	5	0			
3701301000	- - 인쇄제판용 금속 플레이트	5	5	0			
3701309000	- - 기타	5	5	0			
3701910000	- - 천연색 사진용의 것 (폴리크롬)	5	5	0			
3701990000	- - 기타	5	5	0			
3702100000	- 엑스선용의 것	5	5	0			
3702310000	- - 천연색 사진용의 것 (폴리크롬)	5	5	0			
3702320000	- -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전으로 된 것에 한한다)	5	5	0			
3702390000	- - 기타	5	5	0			
3702410000	- -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5	5	0			
3702420000	- -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의 것은 제외한다)						
3702430000	--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 이하인 것	5	5	0			
3702440000	--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5	0			
3702510000	--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4 미터 이하인 것	5	5	0			
3702520000	--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4 미터를 초과하는 것	5	5	0			
3702530000	--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에 한한다)	5	5	0			
3702540000	--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의 것은 제외한다)	5	5	0			
3702550000	--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5	5	0			
3702560000	--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5	0			
3702910000	--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5	0			
3702930000	--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	5	5	0			
3702940000	--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 35 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5	5	0			
3702950000	--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5	0			
3703100000	- 롤상의 것(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5	0			
3703200000	- 기타[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에 한한다]	5	5	0			
3703900000	- 기타	5	5	0			
3704000000	사진플레이트, 필름, 인화지, 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것에 한한다)						
3705100000	- 오프셋 복사용의 것	5	5	0			
3705900000	- 기타	5	5	0			
3706100000	- 폭이 35 밀리미터 이상인 것	5	5	0			
3706900000	- 기타	5	5	0			
3707100000	- 감광유제	10	10	0			
3707900000	- 기타	10	10	5			
3801100000	- 인조흑연	5	5	0			
3801200000	-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5	5	0			
3801300000	-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및 노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5	5	0			
3801900000	- 기타	5	5	0			
3802100000	- 활성탄	5	5	0			
3802901000	- - 규토조(예: 키이젤거어, 트리플라이트, 다이아토마이트)	5	5	0			
3802902000	- -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5	5	0			
3802909000	- - 기타	5	5	0			
3803000000	토울오일(정제여부를 불문한다)	5	5	0			
3804001000	- 아황산 리그닌	5	5	0			
3804009000	- 기타	5	5	0			
3805100000	- 검테레빈유, 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5	5	0			
3805901000	- - 파인유	5	5	0			
3805909000	- - 기타	5	5	0			
3806100000	- 로진과 수지산	5	5	0			
3806200000	- 로진염, 수지산염 또는 로진 또는 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5	5	0			
3806300000	- 에스테르 검	5	5	0			
3806903000	- - 로진스프릿 및 로진유	5	5	0			
3806904000	- - 런검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806909000	-- 기타	5	5	0			
3807000000	목타르, 목타르유, 목크레오소트, 목나프타, 식물성피치, 브루어피치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 수지산 또는 식물성피치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	5	5	0			
3808500011	---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10	5	0			
3808500019	--- 기타	10	5	5			b
3808500021	---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5	5	0			
3808500029	--- 기타	10	5	0			
3808500031	---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5	5	0			
3808500039	--- 기타	10	5	0			
3808500090	-- 기타	10	5	0			
3808911100	----- 퍼메트린 또는 사이퍼메트린 또는 피레트룸의 기타 합성 대용물을 기제로 한 것	10	5	5			b
3808911200	----- 브롬화메틸을 기제로 한 것	10	5	0			
3808911900	----- 기타	10	5	5			b
3808919100	----- 피레트룸을 기제로 한 것	10	5	0			
3808919200	----- 퍼메트린 또는 사이퍼메트린 또는 피레트룸의 기타 합성 대용물을 기제로 한 것	10	5	5			b
3808919300	----- 카보퓨란을 기제로 한 것	0	0	0			
3808919400	----- 디메토에이트를 기제로 한 것	0	0	0			
3808919500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5	5	0			
3808919920	----- 싸이플루트린 또는 옥시디메톤메틸을 기제로 하는 중간 조제품	0	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808919990	----- 기타	5	5	0			
3808921100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5	5	0			
3808921900	----- 기타	5	5	0			
3808929100	----- 구리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	10	5	0			
3808929200	----- 피라조포스 또는 부타클러를 기제로 한 것 또는 아라클러의 것	10	5	5			b
3808929300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10	5	0			
3808929900	----- 기타	10	5	5			b
3808931100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5	5	0			
3808931900	----- 기타	5	5	0			
3808939100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10	5	0			
3808939900	----- 기타	10	5	5			b
3808941100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10	5	0			
3808941900	----- 기타	10	5	5			b
3808949100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10	5	0			
3808949900	----- 기타	10	5	5			b
3808991100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10	5	0			
3808991900	----- 기타	10	5	5			b
3808999100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3808999900	----- 기타	10	5	0			
38091000	-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5	5	0			
3809910000	-- 섬유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0	5	5			b
3809920000	-- 제지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0	5	5			b
3809930000	-- 피혁공업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0	5	5			b
3810101000	--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10	5	0			
3810102000	-- 납붙임, 땀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주석, 납 또는 안티모니 합금을 기제로 한 것에 한한다)	10	5	0			
3810109000	-- 기타	10	5	0			
3810901000	-- 납붙임, 땀질 또는 용접용의 용제와 기타 조제품	10	5	0			
3810902000	-- 용접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되는 종류의 조제품	10	5	0			
3811110000	-- 납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	10	5	0			
3811190000	-- 기타	10	5	0			
3811211000	---- 점도향상제(기타 첨가제와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0	5	0			
3811212000	---- 세제 및 분산제(기타 첨가제와 혼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점도향상제는 제외한다)	10	5	0			
3811219000	---- 기타	10	5	0			
3811290000	-- 기타	10	5	0			
3811900000	- 기타	10	5	0			
3812100000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5	5	0			
3812200000	-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15	5	5			c
3812301000	-- 산화방지 조제품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812309000	-- 기타	15	10	7			b
3813001200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을 함유하는 것	10	5	0			
3813001300	-- 메탄·에탄 또는 프로판을 함유하는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	10	5	0			
3813001400	-- 메탄·에탄 또는 프로판을 함유하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10	5	0			
3813001500	--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10	5	0			
3813001900	-- 기타	10	5	0			
3813002000	- 충전된 소화탄	10	5	0			
3814001000	- 메탄·에탄 또는 프로판을 함유하는 염화불화탄소(CFCs)[수소염화 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10	5	0			
3814002000	- 메탄·에탄 또는 프로판을 함유하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염 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	5	0			
3814003000	- 사염화탄소·브로모클로로메탄 또는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10	5	0			
3814009000	- 기타	10	5	5			b
3815110000	--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5	5	0			
3815120000	-- 활성물질로서 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의 것	5	5	0			
3815191000	--- 활성물질로서 티타늄 또는 그 화합물의 것	5	5	0			
3815199000	--- 기타	10	5	0			
3815900000	- 기타	10	5	5			b
3816000000	내화시멘트, 내화모르타르, 내화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 3801 호의 물품은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제외한다)						
3817001000	- 도데실벤젠	5	5	0			
3817002000	- 알키나프탈렌의 혼합물	5	5	0			
3817009000	- 기타	15	5	0			
3818000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크상, 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화합물	5	5	0			
3819000000	유압제동액과 기타 조제유압전동액(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10	5	5			b
3820000000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10	5	5			b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 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성장 또는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	5	5	0			
3822003000	- 보증된 참조물질	5	5	0			
3822009000	- 기타	5	5	0			
38231100	-- 스테아린산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38231200	-- 올레인산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38231300	-- 톨유 지방산	5	5	0			
38231900	-- 기타	15	안데스가격밴드	15	부속서 2-다 참조		
38237010	-- 라우릴 알코올	5	5	0			
38237020	-- 세틸 알코올	5	5	0			
38237030	-- 스테아릴 알코올	5	5	0			
38237090	-- 기타	5	5	0			
3824100000	-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3824300000	- 응집하지 아니한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5	5	0			
3824400000	- 시멘트용, 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10	5	5			b
3824500000	-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10	5	5			b
38246000	- 솔비톨(소호 제 2905.44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	5	10			
3824710000	- - -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10	5	0			
3824720000	- -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 을 함유하는 것	10	5	0			
3824730000	- - -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 Cs)을 함유하는 것	10	5	0			
3824740000	- -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함유 여부는 불문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	5	0			
3824750000	- - -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10	5	0			
3824760000	- - -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10	5	0			
3824770000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10	5	0			
3824780000	- - -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 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824790000	-- 기타	10	5	0			
3824810000	--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하는 것	10	5	0			
3824820000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10	5	0			
3824830000	-- 트리스(2,3- 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하는 것	10	5	0			
3824901000	-- 석유 술포네이트	10	5	0			
3824902100	---- 클로로파라핀	5	5	0			
3824902200	---- 분자량이 매우 낮은 혼합폴리에틸렌글리콜	5	5	0			
3824903100	---- 스케일방지 조제품	10	5	0			
3824903200	---- 양조조제품, 액체 정제용 조제품	5	5	0			
3824904000	-- 퓨전 원뿔 점화 테스터, 소다석회, 착색된 실리카겔, 알칼리 철 산화물, 그래픽용 젤라틴을 기제로 한 페이스트	5	5	0			
3824905000	-- 나프텐산, 그 수불용성 염 및 그 에스테르	10	5	0			
3824906000	-- 웰보링 유체("로도스")용의 조제품	10	5	0			
3824907000	-- 미네랄 농축용 조제품(크산틴산염을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	5	5	0			
3824908000	-- 동화촉진제, 황산나트륨과 크롬산나트륨의 혼합물	5	5	0			
3824909100	---- 마네브, 지네브, 만코제브	10	5	0			
3824909200	---- 점착성이 있는 페라이트(분상 또는 입상의 것에 한한다)	5	5	0			
3824909300	---- 이온교환체	5	5	0			
3824909400	---- 복합경화제	10	5	5			b
3824909500	---- 오산화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4 퍼센트 이하인 분리하지 아니한 인산(농축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여부를 불문한다)						
3824909600	- - - 소매용으로 포장된 상태의 수정액	10	5	5			b
3824909700	- - - 프로피네브	0	0	0			
3824909800	- - - 축전지판 제조용 납 산화물과 금속 납 조제품("회색 산화물", "검은색 산화물")	10	5	0			
3824909930	- - -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미만으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그들의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으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10	5	0			
3824909990	- - - - 기타	10	5	5			b
3825100000	- 생활폐기물	15	5	5			c
3825200000	- 하수 찌꺼기	15	5	5			c
3825300000	- 임상폐기물	15	5	5			c
3825410000	- -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15	5	5			c
3825490000	- - 기타	15	5	5			c
3825500000	-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15	5	5			c
3825610000	- -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15	5	5			c
3825690000	- - 기타	15	5	5			c
3825900000	- 기타	15	5	5			c
390110000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인 것에 한한다)	0	0	0			
390120000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5	0			
3901300000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5	5	0			
3901901000	- - 에틸렌-기타 올레핀 공중합체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901909000	- - 기타	0	0	0			
3902100000	- 폴리프로필렌	10	5	7			c
3902200000	- 폴리이소부틸렌	5	5	0			
3902300000	- 프로필렌 공중합체	10	5	7			c
3902900000	- 기타	15	5	0			
3903110000	- - 발포성의 것	15	5	5			c
3903190000	- - 기타	15	10	7			b
3903200000	-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	0	0	0			
390330000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스티렌(ABS) 공중합체	0	0	0			
3903900000	- 기타	15	10	7			b
3904101000	- - 유제로 중합하여 얻은 것	15	10	7			b
3904102000	- - 현탁액으로 중합하여 얻은 것	15	10	7			b
3904109000	- - 기타	15	5	3			b
3904210000	- -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15	10	7			b
3904220000	- - 가소화한 것	15	10	7			b
3904301000	- - 어떠한 기타 물질과도 혼합되지 아니한 것	15	10	7			b
3904309000	- - 기타	10	5	5			b
3904400000	- 기타 영화비닐 공중합체	15	5	3			b
3904500000	- 영화비닐리덴 중합체	5	5	0			
3904610000	- -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5	5	0			
3904690000	- - 기타	5	5	0			
3904900000	- 기타	5	5	0			
3905120000	- - 물에 분산된 것	15	10	7			b
3905190000	- - 기타	15	10	7			b
3905210000	- - 물에 분산된 것	15	10	7			b
3905290000	- - 기타	15	5	3			b
3905300000	-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 지 아니한 초산기(基)의 함유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905910000	-- 공중합체	15	5	3			b
3905991000	---- 폴리비닐부티랄	5	5	0			
3905992000	---- 폴리비닐피롤리돈	15	5	0			
3905999000	---- 기타	15	5	0			
3906100000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5	5	0			
3906901000	-- 폴리아크릴로니트릴	15	5	0			
3906902100	---- 폴리아크릴산 나트륨(1 퍼센트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흡수력이 자체 중량의 20 배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5	0			
3906902900	---- 기타	5	5	0			
3906909000	-- 기타	15	10	7			b
3907100000	- 폴리아세탈	5	5	0			
3907201000	-- 폴리에틸렌글리콜	5	5	0			
3907202000	-- 폴리프로필렌글리콜	15	5	0			
3907203000	-- 산화프로필렌에서 유도된 폴리에테르 폴리올	15	10	7			b
3907209000	-- 기타	15	5	3			b
3907301010	---- 용제를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	15	5	0			
3907301090	---- 용제의 내용물이 전중량의 50 퍼센트 이하인 것	15	5	5			c
3907309000	-- 기타	15	10	7			b
3907400000	- 폴리카보네이트	0	0	0			
3907500000	- 알키드수지	15	10	7			b
3907601000	-- 이산화티타늄이 첨가된 것	0	0	0			
3907609000	-- 기타	15	10	7			b
3907700000	- 폴리(락트산)	15	5	0			
3907910000	-- 불포화의 것	15	10	7			b
3907990000	-- 기타	15	10	7			b
3908101000	-- 폴리아미드 -6 (폴리카프로락탐)	15	10	7			b
3908109000	-- 기타	5	5	0			
3908900000	- 기타	15	10	7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909101000	-- 몰딩용 우레아 포름알데히드	15	5	0			
3909109000	-- 기타	15	10	5			a
3909201010	---- 분상의 멜라민 포름알데히드(압축식 또는 사출식의 몰딩용의 것에 한한다)	5	5	0			
3909201090	---- 기타	15	10	5			a
3909209000	-- 기타	15	10	5			a
3909300010	-- 메틸 디페닐 이소시아네이트(중합 MDI)	0	0	0			
3909300090	-- 기타	15	10	5			a
3909400000	- 페놀수지	15	10	5			a
3909500000	- 폴리우레탄	15	5	0			
3910001000	- 분산액(에멀전 또는 서스펜션) 또는 용액	10	5	0			
3910009000	- 기타	5	5	0			
3911101000	-- 쿠마론-인덴수지	5	5	0			
3911109000	-- 기타	5	5	0			
3911900000	- 기타	10	5	5			b
3912110000	-- 가소화하지 아니한 것	5	5	0			
3912120000	-- 가소화한 것	5	5	0			
3912201000	-- 콜로디온 및 기타 용액과 분산액(에멀전 또는 서스펜션)	5	5	0			
3912209000	-- 기타	5	5	0			
3912310000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10	5	7			c
3912390000	-- 기타	5	5	0			
3912900000	- 기타	5	5	0			
3913100000	- 알긴산, 그 염 및 에스테르	5	5	0			
3913901000	-- 염화고무	5	5	0			
3913903000	-- 천연고무의 기타 화학적 유도체	5	5	0			
3913904000	-- 기타 변성된 천연중합체	10	5	0			
3913909000	-- 기타	5	5	0			
3914000000	이온교환수지(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중합체를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기제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15100000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15	10	7			b
3915200000	-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15	5	5			c
3915300000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15	10	7			b
3915900000	- 기타 플라스틱의 것	15	10	7			b
3916100000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15	10	7			b
3916200000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15	10	7			b
3916900000	- 기타 플라스틱의 것	15	10	7			b
3917100000	- 경화 단백질 또는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거트(소시지케이싱)	5	5	0			
3917211000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스프레이 또는 기타의 것	20	5	5			c
3917219000	---- 기타	20	5	5			c
3917220000	--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20	5	5			c
3917231000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스프레이 또는 기타의 것	20	5	5			c
3917239000	---- 기타	20	10	7			c
3917291000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20	5	0			
3917299100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스프레이 또는 기타의 것	20	5	5			c
3917299900	----- 기타	20	10	7			c
3917310000	-- 연질(軟質)의 관, 파이프 및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에 한한다]	20	10	7			c
3917321000	---- 인조거트(소호 제 3917.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	10	7			b
3917329100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스프레이 또는 기타의 것	20	5	5			c
3917329900	---- 기타	20	10	7			c
3917331000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스프레이 또는 기타의 것	20	10	7			c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917339000	- - - 기타	20	10	5			b
3917391000	- -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스프레이 또는 기타의 것	20	5	5			c
3917399000	- - - 기타	20	10	5			b
3917400000	- 연결구류	20	10	7			c
3918101000	- - 바닥 깔개	20	10	5			b
3918109000	- - 기타	20	5	3			b
3918901000	- - 바닥 깔개	20	10	5			b
3918909000	- - 기타	20	5	3			b
3919100000	- 롤상의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	10	5			b
3919901100	- - - 롤상의 것(폭이 1 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	10	5			b
3919901900	- - - 기타	20	10	5			b
3919909000	- - 기타	20	10	5			b
3920100000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20	10	5			b
3920201010	- - - 축전기 제조용의 것	5	5	0			
3920201090	- - - 기타	20	10	5			b
3920209000	- - 기타	20	10	7			c
3920301000	- - 두께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5	5			
3920309000	- - 기타	20	5	5			c
3920430000	- - 가소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6 퍼센트 이상인 것	20	10	7			c
3920490000	- - 기타	20	10	7			c
3920510000	- -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의 것	20	5	5			c
3920590000	- - 기타	20	5	0			
3920610000	- - 폴리카보네이트의 것	20	5	0			
3920620010	- - - 두께가 30 마이크론 미만인 것(양면이 프린트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	5	5			b
3920620090	- - - 기타	20	10	7			c
3920630000	-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것	20	10	5			b
3920690000	- - 기타 폴리에스테르의 것	2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920710000	--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15	5	3			b
3920730000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5	5	0			
3920790000	-- 기타 셀룰로오스 유도체의 것	15	5	0			
3920911000	--- 안전유리 제조용의 것	5	5	0			
3920919000	--- 기타	20	5	0			
3920920000	-- 폴리아미드의 것	20	5	0			
3920930000	-- 아미노수지의 것	20	5	0			
3920940000	-- 페놀수지의 것	20	10	5			b
3920990000	-- 기타 플라스틱의 것	20	10	5			b
3921110000	-- 스티렌의 중합체의 것	20	5	5			c
3921120000	--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것	20	10	7			c
3921130000	-- 폴리우레탄의 것	20	10	5			b
3921140000	--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15	5	3			b
3921191000	----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혼합물로 구성된 쉬트(프로필렌 부직포 직물로 단순 지지한 것에 한한다)	20	5	5			c
3921199000	---- 기타	20	10	7			c
3921901000	-- 지의 층화와 적층에 의해 얻어진 것	20	10	7			c
3921909000	-- 기타	20	10	7			c
3922101000	-- 유리 섬유로 보강된 플라스틱제의 목욕통	20	5	3			b
3922109000	-- 기타	20	10	5			b
3922200000	- 변기용 시트와 커버	20	10	5			b
3922900000	- 기타	20	5	3			b
3923101000	-- 카세트, CD, DVD 및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되는 것	20	15	10			b
3923109000	-- 기타	20	15	10			b
3923210000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20	15	7			a
3923291000	---- 채혈백	20	15	7			a
3923292000	---- 비경구 용액 포장용 백	20	15	7			a
3923299000	---- 기타	20	15	7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3923302000	-- 예비성형품	10	10	5			
3923309100	---- 용량이 18.9 리터(5 갤런) 이상인 것	20	15	10			b
3923309900	---- 기타	20	15	7			a
3923401000	-- 테이프가 없는 카세트	20	15	5			a
3923409000	-- 기타	20	15	7			a
3923501000	-- 실리콘 마개	10	10	0			
3923509000	-- 기타	20	15	7			a
3923900000	- 기타	20	15	7			a
3924101000	-- 젓병	20	15	7			a
3924109000	-- 기타	20	15	7			a
3924900000	- 기타	20	15	7			a
3925100000	- 저장기, 탱크, 배트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0	10	5			b
3925200000	- 문, 창 및 그들의 틀과 문지방	20	5	5			c
3925300000	- 셔터,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들의 부분품	20	10	5			b
3925900000	- 기타	20	10	5			b
3926100000	-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20	15	10			b
3926200000	- 의류 및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20	15	10			b
3926300000	- 가구, 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20	10	5			b
3926400000	- 소상 및 기타 장식용품	20	15	10			b
3926901000	-- 어망용 부표	15	15	0			
3926902000	-- 코르셋, 의류 및 그 악세사리용 웨일 본 및 그 유사품	15	10	5			a
3926903000	-- 스크루, 볼트, 와셔 및 일반사용 부분품	20	10	5			b
3926904000	-- 개스킷, 와셔 및 기타 실	20	10	5			b
3926906000	-- 소음방지 프로텍터	20	15	7			a
3926907000	-- 작업자 보호용 특수 마스크	20	15	7			a
3926909020	---- 제 87 류 모터차량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전기장치의 홀더						
3926909030	--- 소호 제 9612.1000.00 호의 롤링 테이프용 스탠드	10	5	0			
3926909090	--- 기타	20	10	7			c
4001100000	-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 벌커나이즈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4001210000	-- 스모크드 슈트	5	5	0			
4001220000	-- 공업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5	5	0			
4001291000	---- 축유한 것	5	5	0			
4001292000	---- 재응결한 고무 입(粒)	5	5	0			
4001299000	---- 기타	10	5	0			
4001300000	- 발라타, 구타페르카, 구아울, 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경	5	5	0			
4002111000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의 것	5	5	0			
4002112000	---- 카르복시화한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XSBR)의 것	10	5	0			
4002191100	----- 일차제품의 것	5	5	0			
4002191200	----- 판·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5	5	0			
4002192100	----- 일차제품의 것	5	5	0			
4002192200	----- 판·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5	5	0			
4002201000	-- 라텍스	5	5	0			
4002209100	---- 일차제품의 것	5	5	0			
4002209200	---- 판·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5	5	0			
4002311000	---- 라텍스	5	5	0			
4002319100	----- 일차제품의 것	5	5	0			
4002319200	----- 판·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5	5	0			
4002391000	---- 라텍스	5	5	0			
4002399100	----- 일차제품의 것	5	5	0			
4002399200	----- 판·슈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5	5	0			
4002410000	-- 라텍스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4002491000	--- 일차제품의 것	5	5	0			
4002492000	--- 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5	5	0			
4002510000	-- 라텍스	10	5	0			
4002591000	--- 일차제품의 것	5	5	0			
4002592000	--- 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5	5	0			
4002601000	-- 라텍스	5	5	0			
4002609100	--- 일차제품의 것	5	5	0			
4002609200	--- 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5	5	0			
4002701000	-- 라텍스	5	5	0			
4002709100	--- 일차제품의 것	5	5	0			
4002709200	--- 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5	5	0			
4002800000	- 제 4001 호의 물품과 이 호의 물품의 혼합물	10	5	0			
4002910000	-- 라텍스	10	5	0			
4002991000	--- 일차제품의 것	5	5	0			
4002992000	--- 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5	5	0			
4003000000	재생고무(일차제품 또는 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10	5	5			b
4004000000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경질고무의 것은 제외한다)과 그들의 분 및 입	10	5	5			b
4005100000	-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배합한 것	15	10	7			b
4005200000	- 용액,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5	10	7			b
4005911000	--- 추잉검 베이스	15	5	0			
4005919000	--- 기타	15	10	7			b
4005991000	--- 추잉검 베이스	10	5	0			
4005999000	--- 기타	10	5	5			b
4006100000	-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 백" 스트립	10	5	5			b
4006900000	- 기타	10	5	0			
4007000000	가황한 고무사와 고무끈	1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4008111000	--- 기타 재료와 결합하지 아니한 것	15	5	0			
4008112000	--- 기타 재료와 결합한 것	10	5	5			b
4008190000	-- 기타	10	5	5			b
4008211000	--- 기타 재료와 결합하지 아니한 것	15	10	7			b
4008212100	---- 인쇄제판용 블랭킷	5	5	0			
4008212900	---- 기타	15	10	7			b
4008290000	-- 기타	10	5	5			b
4009110000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15	5	0			
40091200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15	5	0			
4009210000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15	5	0			
40092200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15	5	0			
4009310000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10	5	5			b
40093200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10	5	5			b
4009410000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것	10	5	5			b
40094200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15	5	0			
4010110000	--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15	5	0			
4010120000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10	5	5			b
4010191000	---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15	5	0			
4010199000	--- 기타	15	5	0			
4010310000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홀이 패인 것에 한한다)	15	5	0			
4010320000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홀이 패인 것은 제외한다)	1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4010330000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에 한한다)	15	5	0			
4010340000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용 엔드리스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 초과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패인 것은 제외한다)	15	5	0			
4010350000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 초과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15	5	0			
4010360000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 초과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15	5	0			
4010390000	-- 기타	10	5	5			b
4011101000	-- 래디알	15	10	5			a
4011109000	-- 기타	15	10	7			b
4011201000	-- 래디알	15	10	5			a
4011209000	-- 기타	15	10	7			b
4011300000	-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0			
4011400000	- 모터사이클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0			
401150000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5	5	0			
4011610000	--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5	10	7			b
4011620000	--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15	5	0			
4011630000	--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15	5	5			c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4011690000	-- 기타	15	5	0			
4011920000	-- 농경용 또는 임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5	10	7			b
4011930000	--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15	5	0			
4011940000	-- 건설용 또는 산업용의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림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15	10	7			b
4011990000	-- 기타	15	5	5			c
4012110000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5	5	5			c
4012120000	-- 버스 또는 화물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5	10	5			a
4012130000	--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5	5	0			
4012190000	-- 기타	15	5	5			c
4012200000	- 공기타이어 중고품	15	5	5			c
4012901000	-- 타이어 플랩	15	5	5			c
4012902000	-- 솔리드 타이어	15	5	5			c
4012903000	-- 쿠션 타이어	15	5	5			c
4012904100	---- 재생용의 것	15	10	7			b
4012904900	---- 기타	15	5	5			c
4013100000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를 포함한다), 버스 또는 화물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5	10	5			a
401320000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5	5	0			
4013900000	- 기타	15	10	7			b
4014100000	- 콘돔	0	0	0			
4014900000	- 기타	15	15	10			
4015110000	-- 외과용의 것	15	15	10			
4015191000	---- 방사선 차단용의 것	5	5	0			
4015199000	---- 기타	20	15	10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4015901000	-- 방사선 차단용의 것	5	5	0			
4015902000	-- 잠수복	5	5	0			
4015909000	-- 기타	20	15	10			b
4016100000	- 셀룰라 고무의 것	20	15	0			
4016910000	-- 바닥 깔개와 매트	20	15	7			a
4016920000	-- 지우개	15	15	7			
4016930000	-- 개스킷, 워셔 및 기타 실	15	15	7			
4016940000	-- 보트 또는 도크펜더(팽창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15	0			
4016951000	---- 접는 탱크와 용기	5	5	0			
4016952000	---- 공기타이어의 가황처리 및 재생기계용 백	15	15	7			
4016959000	---- 기타	20	15	7			a
4016991000	---- 공업용 기타 물품	15	15	7			
4016992100	----- 베어링 먼지 커버	15	15	7			
4016992900	----- 기타	15	15	7			
4016993000	---- 마개	15	15	7			
4016994000	---- 이너튜브와 공기타이어 보수용 패치	15	15	7			
4016996000	---- 인쇄제판용 블랭킷	5	5	0			
4016999000	---- 기타	20	15	7			a
4017000000	경질고무(예: 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경질고무 제품	15	5	5			c
41012000	- 전신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또는 생 것, 습식염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5	0			
41015000	- 전신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5	0			
41019000	- 기타(버트, 밴드 및 벨리를 포함한다)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41021000	- 탈모하지 아니한 것	5	5	0			
41022100	-- 산처리한 것	5	5	0			
41022900	-- 기타	5	5	0			
41032000	- 파충류의 것	5	5	0			
41033000	- 돼지의 것	5	5	0			
41039000	- 기타	5	5	0			
4104110000	-- 스플릿하지 아니한 폴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5	5	0			
4104190000	-- 기타	5	5	0			
4104410000	-- 스플릿하지 아니한 폴 그레인, 그레인 스플릿	10	5	5			b
4104490000	-- 기타	10	5	5			b
4105100000	-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5	5	0			
4105300000	-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10	5	5			b
4106210000	-- 습윤상태의 것(웨트- 블루를 포함한다)	5	5	0			
4106220000	--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10	5	0			
4106310000	-- 습윤상태의 것(웨트- 블루를 포함한다)	5	5	0			
4106320000	--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10	5	0			
4106400000	- 파충류의 것	5	5	0			
4106910000	-- 습윤상태의 것(웨트- 블루를 포함한다)	5	5	0			
4106920000	--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10	5	5			b
4107110000	-- 스플릿하지 아니한 폴 그레인	10	10	5			
4107120000	-- 그레인 스플릿	15	10	5			a
4107190000	-- 기타	15	10	5			a
4107910000	-- 스플릿하지 아니한 폴 그레인	10	5	5			b
4107920000	-- 그레인 스플릿	15	10	7			b
4107990000	-- 기타	10	5	5			b
41120000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보다 더 가공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여부를 불문하며, 제 4114 호의 가족은 제외한다)						
4113100000	- 산양 또는 어린산양의 것	10	5	5			b
4113200000	- 돼지의 것	5	5	0			
4113300000	- 파충류의 것	10	5	5			b
4113900000	- 기타	5	5	0			
4114100000	- 세무가족(콤비네이션 세무가족을 포함한다)	15	10	7			b
4114200000	- 페이턴트 리더와 적합한 페이턴트 리더, 메탈라이즈드 레더	15	10	7			b
4115100000	- 콤팩지션 리더(가족 또는 가족섬유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상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슬래브상·슈트상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10	5	5			b
4115200000	- 가족이나 콤팩지션 리더의 페어링과 기타의 웨이트(가족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족의 더스트·분	10	5	5			b
4201000000	동물용의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견용 코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15	10	7			b
4202111000	--- 트렁크, 슈트케이스, 화장품케이스	20	15	10			b
4202119000	--- 기타	20	15	10			b
4202121000	--- 트렁크, 슈트케이스, 화장품케이스	20	15	10			b
4202129000	--- 기타	20	15	10			b
4202190000	-- 기타	20	15	10			b
4202210000	-- 외부 표면이 가죽, 콤퍼지션 리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20	15	10			b
4202220000	--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슈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인 것	20	15	10			b
4202290000	-- 기타	20	15	10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4202310000	-- 외부 표면이 가죽, 컴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20	15	10			b
4202320000	--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슈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인 것	20	15	10			b
4202390000	-- 기타	20	15	10			b
4202911000	---- 여행가방 및 배낭	20	15	10			b
4202919000	---- 기타	20	15	10			b
4202920000	--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슈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인 것	20	15	10			b
4202991000	---- 여행가방 및 배낭	20	15	10			b
4202999000	---- 기타	20	15	10			b
4203100000	- 의류	20	15	10			b
4203210000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20	15	10			b
4203290000	-- 기타	20	15	10			b
4203300000	- 벨트와 띠	20	15	10			b
4203400000	- 기타의 의류부속품	20	15	10			b
4205001000	- 전동용 벨트	5	5	0			
4205009000	- 기타	15	10	7			b
4206001000	- 켈거트	15	5	0			
4206002000	- 내장, 골드비터 스킨(소시지용에 한한다)	5	5	0			
4206009000	- 기타	15	10	0			
43011000	- 밍크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5	5	0			
43013000	-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 라쿨·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5	5	0			
43016000	- 여우의 것(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43018000	-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5	5	0			
43019000	-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5	5	0			
4302110000	-- 밍크의 것	10	5	0			
4302190000	-- 기타	10	5	5			b
4302200000	-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	5	0			
4302300000	-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10	5	5			b
4303101000	-- 알파카의 것	20	15	0			
4303109000	-- 기타	20	15	7			a
4303901000	-- 알파카의 것	20	15	7			a
4303909000	-- 기타	20	15	7			a
43040000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20	15	7			a
4401100000	- 땀나무(통나무, 목편, 작은가지, 다발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5	5	0			
4401210000	-- 침엽수류	5	5	0			
4401220000	-- 활엽수류	5	5	0			
4401300000	-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통나무, 브리케트, 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4402100000	- 대나무제의 것	5	5	0			
4402900000	- 기타	5	5	0			
4403100000	-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 또는 기타 방부제로 처리한 것	5	5	0			
4403200000	- 기타(침엽수류의 것에 한한다)	5	5	0			
4403410000	--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메란티바카우						
4403490000	-- 기타	5	5	0			
4403910000	--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5	5	0			
4403920000	--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5	5	0			
4403990000	-- 기타	5	5	0			
4404100000	- 침엽수류	10	5	5			b
4404200000	- 활엽수류	10	5	5			b
4405000000	목모, 목분	10	5	0			
4406100000	- 주약처리하지 아니한 것	10	5	0			
4406900000	- 기타	10	5	0			
4407101000	-- 연필 제조용 스트립	5	5	0			
4407109000	-- 기타	10	5	5			b
4407210000	-- 마호가니(스웨테니아종)	10	5	5			b
4407220000	-- 비올라, 임부아 및 발사	10	5	5			b
4407250000	--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10	5	5			b
4407260000	-- 화이트라왕, 화이트메란티, 화이트세라야, 옐로메란티 및 아란	10	5	5			b
4407270000	-- 사팔리	10	5	5			b
4407280000	-- 이로코	10	5	5			b
4407290000	-- 기타	10	5	5			b
4407910000	-- 참나무(코커스종)의 것	10	5	5			b
4407920000	-- 너도밤나무(파구스종)의 것	10	5	5			b
4407930000	-- 단풍나무(아세르종)의 것	10	5	5			b
4407940000	-- 체리나무(프루누스종)의 것	10	5	5			b
4407950000	--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종)의 것	10	5	5			b
4407990000	-- 기타	10	5	5			b
4408101000	-- 연필 제조용 스트립	5	5	0			
4408109000	-- 기타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4408310000	-- 다크레드메란티, 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10	5	0			
4408390000	-- 기타	10	5	0			
4408900000	- 기타	10	5	5			b
4409101000	-- 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	10	5	5			b
4409102000	-- 주형가공한 목재	10	5	5			b
4409109000	-- 기타	10	5	5			b
4409210000	-- 대나무제의 것	10	5	5			b
4409291000	---- 미조립의 쪽마루판용 스트립과 프리즈	15	10	7			b
4409292000	---- 주형가공한 목재	15	10	7			b
4409299000	---- 기타	15	10	7			b
4410110000	-- 파티클보드	15	10	7			b
4410120000	--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10	5	5			b
4410190000	-- 기타	15	10	7			b
4410900000	- 기타	15	10	7			b
4411120000	--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10	7			b
4411130000	--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9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10	7			b
4411140000	--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5	5	5			c
4411920000	--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	15	5	5			c
4411930000	--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초과 0.8 그램 이하인 것	15	5	5			c
4411940000	--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이하인 것	15	5	5			c
4412100000	- 대나무제의 것	10	5	5			b
4412310000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열거된 열대산 목재인 것	15	10	7			b
4412320000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인 것에 한한다)	15	10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4412390000	- - 기타	15	10	7			b
4412940000	- - 블록보드, 라민보드와 배튼보드	15	5	5			c
4412990000	- - 기타	15	10	7			b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상, 플레이트상, 스트립상 또는 프로파일형상의 것에 한한다)	15	10	7			b
4414000000	목제의 그림틀·사진틀·거울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15	10	7			b
4415100000	-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15	10	7			b
4415200000	- 페렛·박스페렛 및 기타 갈판류, 페렛칼러	10	5	5			b
4416000000	목제의 통·배럴·베트·텡 및 기타의 용기와 그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한다)	15	5	5			c
4417001000	- 공구	15	10	7			b
4417009000	- 기타	15	10	7			b
4418100000	- 창, 프랑스 창 및 그들의 틀	15	10	7			b
4418200000	- 문과 문틀 및 문지방	15	10	7			b
4418400000	-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셋터	15	10	7			b
4418500000	- 지붕널과 지붕이는 판자	15	10	7			b
4418600000	- 기둥 및 들보	15	5	5			c
4418710000	- - 모자이크 마루용의 것	15	10	7			b
4418720000	- - 기타(다층인 것에 한한다)	15	10	7			b
4418790000	- - 기타	15	10	7			b
4418901000	- - 셀룰라 패널	15	5	5			c
4418909000	- - 기타	15	5	5			c
4419000000	목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20	15	10			b
4420100000	- 목제의 조상 및 기타의 장식품	20	15	10			b
4420900000	- 기타	20	15	10			b
4421100000	- 옷걸이	15	10	7			b
4421901000	- - 스폴, 콧, 보빈, 릴 및 이와 유사한 것(선반가공한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것에 한한다)						
4421902000	-- 이썬시개	15	5	5			c
4421903000	-- 아이스크림과 캔디용의 스푼과 스틱	15	5	5			c
4421905000	-- 성냥개비의 나무	15	5	5			c
4421909000	-- 기타	15	10	7			b
4501100000	-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에 한한다)	5	5	0			
4501900000	- 기타	5	5	0			
4502000000	천연코르크[외피를 제거한 것 또는 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상·판상·슈트상이나 스트립상의 것에 한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한다]	5	5	0			
4503100000	- 마개	10	5	0			
4503900000	- 기타	10	5	0			
4504100000	- 블록·판·슈트 및 스트립, 타일(형상을 불문한다), 솔리드실린더(디스크를 포함한다)	10	5	5			b
4504901000	-- 마개	10	5	0			
4504902000	-- 개스킷이나 조인트 및 워셔	10	5	5			b
4504909000	-- 기타	10	5	5			b
4601210000	-- 대나무제의 것	20	15	10			b
4601220000	-- 등나무제의 것	20	15	10			b
4601290000	-- 기타	20	15	10			b
4601920000	-- 대나무제의 것	20	15	10			b
4601930000	-- 등나무제의 것	20	15	10			b
4601940000	-- 기타 식물성 재료의 것	20	15	10			b
4601990000	-- 기타	20	15	10			b
4602110000	-- 대나무제의 것	20	15	10			b
4602120000	-- 등나무제의 것	20	15	10			b
4602190000	-- 기타	20	15	10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4602900000	- 기타	20	15	10			b
4701000000	기계목재펄프	10	5	0			
470200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의 것에 한한다)	5	5	0			
4703110000	-- 침엽수류의 것	10	5	0			
4703190000	-- 활엽수류의 것	10	5	0			
4703210000	-- 침엽수류의 것	10	5	0			
4703290000	-- 활엽수류의 것	10	5	0			
4704110000	-- 침엽수류의 것	5	5	0			
4704190000	-- 활엽수류의 것	5	5	0			
4704210000	-- 침엽수류의 것	5	5	0			
4704290000	-- 활엽수류의 것	5	5	0			
4705000000	기계적 및 화학적 펄핑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10	5	0			
4706100000	- 면린터펄프	5	5	0			
4706200000	-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10	5	0			
4706300010	-- 기계펄프	5	5	0			
4706300020	-- 화학펄프	10	5	0			
4706300090	-- 반화학펄프	5	5	0			
4706910000	-- 기계펄프	5	5	0			
4706920000	-- 화학펄프	10	5	0			
4706930000	-- 반화학펄프	5	5	0			
4707100000	-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판지제	5	5	0			
4707200000	-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기타의 지 또는 판지제(전체를 착색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5	0			
4707300000	- 주로 기계펄프로 된 지 또는 판지제(예: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5	5	0			
4707900000	-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5	5	0			
4801000000	신문용지(롤상 또는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0	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4802100000	- 수제지와 판지	10	5	0			
4802200000	- 사진감광성·열 감응성 또는 전자 감광성 지 또는 판지의 기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지와 판지	10	5	0			
4802400000	- 벽지용의 원지	15	5	0			
48025400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미만인 것	15	10	5			a
4802551000	- - - 은행권용 보안용지	5	5	0			
4802552000	- - - 지폐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보안용지	5	5	0			
4802559000	- - - 기타	15	10	5			a
4802561000	- - - 은행권용 보안용지	20	5	0			
4802562000	- - - 지폐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보안용지	10	5	5			b
4802569000	- - - 기타	20	15	7			a
4802571000	- - - 은행권용 보안용지	5	5	0			
4802572000	- - - 기타 보안용지	5	5	0			
4802579000	- - - 기타	15	10	5			a
4802581000	- - - 코일(롤)상의 것	15	10	5			a
4802589000	- - - 기타	15	10	5			a
4802611000	-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미만인 것(이 류의 주 제 4 호에 있는 기타 열거사항을 만족하는 것에 한한다)	0	0	0			
4802619000	- - - 기타	15	10	5			a
4802620000	- - 슈트상의 것으로서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15	7			a
4802691000	-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미만인 것(이 류의 주 제 4 호에 있는 기타 열거사항을 만족하는 것에 한한다)	15	5	5			c
4802699000	- - - 기타	15	10	5			a
4803001000	-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	15	10	7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4803009000	- 기타	15	10	7			b
48041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15	10	7			b
4804190000	-- 기타	15	10	7			b
48042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15	10	5			a
4804290000	-- 기타	15	10	5			a
48043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15	10	7			b
4804390000	-- 기타	15	10	7			b
4804411000	---- 탈지의 것(적층된 장식 플라스틱의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5	5	0			
4804419000	---- 기타	15	10	5			a
4804420000	--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15	10	5			a
4804490000	-- 기타	15	10	5			a
48045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15	10	7			b
4804520000	--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15	10	5			a
4804590000	-- 기타	15	10	5			a
4805110000	-- 반화학 후로팅지	15	10	7			b
4805120000	-- 스트로 후로팅지	15	5	0			
4805190000	-- 기타	15	10	7			b
48052400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15	10	7			b
48052500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15	10	7			b
4805300000	- 아황산포장지	15	10	5			a
4805401000	-- 면 또는 아바카 섬유 중량이 전중량의 100 퍼센트이고, 사이즈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광물성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5	0			
4805402000	-- 면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70 퍼센트 초과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100 퍼센트 이하인 것						
4805409000	- - 기타	5	5	0			
4805500000	- 펄트지와 판지	15	5	0			
4805911000	- - - 탈지의 것(적층된 장식 플라스틱의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0	0	0			
4805912000	- - - 전기 절연용의 것	5	5	0			
4805913000	- - - 다층의 지와 판지(소호 제 4805.12 호, 제 4805.19 호, 제 4805.24 호 또는 제 4805.25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	10	5			a
4805919000	- - - 기타	15	10	5			a
4805921000	- - - 전기 절연용의 것	5	5	0			
4805922000	- - - 다층의 지와 판지(소호 제 4805.12 호, 제 4805.19 호, 제 4805.24 호 또는 제 4805.25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	10	5			a
4805929000	- - - 기타	15	10	5			a
4805931000	- - - 전기 절연용의 것	5	5	0			
4805932000	- - - 다층의 지와 판지(소호 제 4805.12 호, 제 4805.19 호, 제 4805.24 호 또는 제 4805.25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	10	5			a
4805933000	- - - 비중이 1 을 초과하는 경질의 판지	15	10	5			a
4805939000	- - - 기타	15	10	5			a
4806100000	- 황산지	5	5	0			
4806200000	- 내지지	10	5	0			
4806300000	- 트래싱지	5	5	0			
4806400000	- 그라신지와 기타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광택지	5	5	0			
4807000000	겹붙인 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상 또는 슈트상의 것에 한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4808100000	- 파형의 지와 판지(천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10	5			a
4808200000	- 지대용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10	5			a
4808300000	- 기타 크라프트지(축유한 것으로서 압형 또는 천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10	5			a
4808900000	- 기타	15	10	5			a
4809200000	- 셀프복사지	15	5	0			
4809900000	- 기타	15	5	0			
4810131100	- -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0 그램 이하인 것	15	5	0			
4810131900	- - - - 기타	15	10	5			a
4810132000	- -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15	10	5			a
4810141000	- - -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변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20	5	0			
4810149000	- - - 기타	20	10	5			b
4810190000	- - 기타	15	10	5			a
4810220000	- - 경량(輕量)의 도포한 지	15	5	0			
4810290000	- - 기타	15	10	5			a
4810310000	- -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5	5	5			c
4810320000	- - 소지상태에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섬유중량의 9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5	10	5			a
4810390000	- - 기타	15	10	5			a
4810920000	- - 여러 겹의 것	15	10	5			a
4810990000	- - 기타	15	10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4811101000	-- 타르를 전체에 입힌 것(비중이 1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광이나는 것, 바니시한 것 또는 체크무늬의 것을 포함한다)	15	5	0			
4811109000	-- 기타	15	5	0			
4811411000	--- 폭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슈트상의 것	15	10	5			a
4811419000	--- 기타	15	10	5			a
4811491000	--- 폭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롤상의 것, 또는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슈트상의 것	15	5	5			c
4811499000	--- 기타	15	5	5			c
4811511000	--- 중간 알루미늄 박이 있는 것(식품산업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쇄된 것을 포함한다)	5	5	0			
4811512000	---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것(식품산업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인쇄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4811519000	--- 기타	15	5	5			c
4811591000	--- 물사포를 만들기 위한 것	15	5	5			c
4811592000	--- 중간 알루미늄 판이 있는 것(식품산업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인쇄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4811593000	--- 멜라민 수지가 침투된 지(장식 또는 인쇄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10	7			b
4811594000	--- 전기절연용의 것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4811595000	---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것(식품산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인쇄된 것을 포함한다)	5	5	0			
4811596000	--- 여과지	5	5	0			
4811599000	--- 기타	15	10	7			b
4811601000	-- 전기절연용의 것	5	5	0			
4811609000	-- 기타	15	10	5			a
4811901000	-- 광택처리한 것(비중이 1을 초과하는 것으로, 축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0	5	0			
4811902000	-- 개스킷용의 것	10	5	0			
4811905000	-- 껍선, 선 또는 방안선을 그은 것	15	5	5			c
4811908000	-- 흡수지(적층된 장식 플라스틱의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장식 또는 인쇄, 침투된 것에 한한다)	5	5	0			
4811909000	-- 기타	10	5	5			b
4812000000	제지용 펄프제의 필터블록·필터슬래브 및 필터플레이트	15	5	0			
4813100000	- 소책자 또는 튜브 형태의 것	15	15	0			
4813200000	-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15	15	7			
4813900000	- 기타	15	15	7			
4814100000	- «인그레인»지	15	5	0			
4814200000	-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 것·압형한 것·착색한 것·디자인인쇄한 것 또는 기타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으로 도포 또는 피복한 지로 된 것에 한한다)	15	5	0			
4814900000	- 기타	15	5	0			
4816200000	- 셀프복사지	15	15	5			
4816900000	- 기타	15	15	10			
4817100000	- 봉투	20	15	10			b
4817200000	- 봉합엽서, 우편엽서 및	20	15	10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통신용카드						
4817300000	- 지 또는 판지제의 상자·낭대 및 필기첩(안에 지제 문구류가 있는 것에 한한다)	20	15	10			b
4818100000	- 화장지	20	15	10			b
4818200000	- 손수건, 크렌싱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 및 타올	20	15	10			b
4818300000	- 책상보 및 서비에트	20	15	10			b
4818401000	- - 아기 기저귀	20	15	10			b
4818402000	- - 위생 타올과 탐폰	20	15	10			b
4818409000	- - 기타	20	15	10			b
4818500000	- 의류 및 의류부속품	20	15	10			b
4818900000	- 기타	20	15	10			b
4819100000	- 지제 또는 판지제의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에 한한다)	15	10	7			b
4819200000	- 지제 또는 판지제의 접는 상자류(골판지제의 것은 제외한다)	15	10	7			b
4819301000	- - 여러 번 접은 것	15	10	7			b
4819309000	- - 기타	15	10	7			b
4819400000	- 기타 포장대(콘을 포함한다)	15	10	7			b
4819500000	- 기타 포장용기(레코드 스리브를 포함한다)	15	10	7			b
4819600000	- 서류상자, 서류받침, 보관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상점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15	10	7			b
4820100000	- 장부, 회계부, 노트북, 주문장, 영수장, 편지지철, 메모철, 일기장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0	15	10			b
4820200000	- 연습장	20	15	10			b
4820300000	-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 홀더 및 서류철표지	20	15	10			b
4820401000	- - "컨티뉴오스"로 알려진 양식	20	15	10			b
4820409000	- - 기타	20	15	10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4820500000	-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	20	15	10			b
4820901000	- - 연속 용지(인쇄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	15	10			b
4820909000	- - 기타	20	15	10			b
4821100000	- 인쇄한 것	15	10	7			b
4821900000	- 기타	15	10	7			b
4822100000	-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데 사용되는 종류의 것	15	10	7			b
4822900000	- 기타	15	10	7			b
4823200000	- 여과지와 판지	5	5	0			
4823400000	-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쉬트 및 다이알	15	5	0			
4823610000	- - 대나무제의 것	20	5	0			
4823690000	- - 기타	20	15	7			a
4823700000	- 제지용 펄프제의 몰드 또는 압형한 제품	15	5	0			
4823902000	- - 전기절연용 지	5	5	0			
4823904000	- - 개스킷 또는 조인트	5	5	0			
4823905000	- - 자카드 및 이와 유사한 기계용 판지	5	5	0			
4823906000	- - 양재 패턴, 모델과 견본	5	5	0			
4823909000	- - 기타	15	10	7			b
4901101000	- - 운세, 사진 로맨스 소설과 만화	20	15	7			a
4901109000	- - 기타	0	0	0			
4901910000	- - 사전과 백과사전 및 그들의 분할 연속물	0	0	0			
4901991000	- - - 운세, 사진 로맨스 소설과 만화	20	15	7			a
4901999000	- - - 기타	0	0	0			
4902100000	- 1 주에 4 회 이상 간행되는 것	0	0	0			
4902901000	- - 운세, 사진 로맨스 소설과 만화	20	15	7			a
4902909000	- - 기타	0	0	0			
4903000000	아동용의 그림책, 습화책	20	15	10			b
4904000000	약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0	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불문한다)						
4905100000	- 지구의	0	0	0			
4905910000	-- 책자로 된 것	0	0	0			
4905990000	-- 기타	0	0	0			
49060000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 업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 복사의 것	0	0	0			
4907001000	-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에 한한다), 스탬프를 압인한 지	20	15	10			b
4907002000	- 지폐	0	0	0			
4907003000	- 외국 신용 점포의 여행자 수표책	20	15	7			a
4907009000	- 기타	20	15	7			a
4908100000	- 전사지(디칼커매니어)로서 유리화 할 수 있는 것	20	15	10			b
4908901000	-- 섬유에 연속 전사하기 위한 것	5	5	0			
4908909000	-- 기타	20	15	10			b
49090000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 전언용 또는 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 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10			b
4910000000	각종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20	15	10			b
4911100000	- 광고선전물, 상업용 카다로그 및 이와 유사한 것	20	15	10			b
4911910000	-- 서화, 디자인 및 사진	20	15	10			b
4911990000	-- 기타	20	15	10			b
5001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데 적합한 것에 한한다)	5	5	0			
50020000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5	5	0			
50030000	견웨이스트(생사를 뽑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누에고치,	10	1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사웨이스트 및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0040000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5	5	0			
5005000000	견방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10	5	0			
5006000000	견사와 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누에의 거트	10	10	0			
5007100000	- 견 노일직물	20	5	0			
5007200000	- 기타 직물[견 또는 견웨이스트(견 노일은 제외한다)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20	5	0			
5007900000	- 기타 직물	20	5	0			
51011100	-- 깎은 양모	10	10	0			
51011900	-- 기타	10	10	0			
51012100	-- 깎은 양모	10	10	0			
51012900	-- 기타	10	10	0			
51013000	- 탄화처리한 것	10	10	0			
51021100	-- 캐시미어 산양의 것	10	10	0			
51021910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10	10	0			
51021920	---- 토끼 또는 라마의 것	10	10	0			
51021990	---- 기타	10	10	0			
51022000	- 조수모	10	10	0			
5103100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노일	10	10	0			
5103200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기타 웨이스트	10	10	0			
51033000	- 조수모의 웨이스트	10	10	0			
5104000000	양모 또는 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10	5	0			
5105100000	- 카드한 양모	10	5	0			
5105210000	-- 코웁한 양모(단편상의 것에 한한다)	10	5	0			
5105291000	---- 톱	10	5	0			
5105299000	---- 기타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105310000	- - 캐시미어 산양의 것	10	5	0			
5105391000	- -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10	5	0			
5105392000	- - - 비쿠냐의 것	10	5	0			
5105399000	- - - 기타	10	5	0			
5105400000	- 조수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한다)	10	5	0			
5106100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15	5	0			
5106200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	15	5	0			
5107100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15	5	0			
5107200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	15	5	0			
5108100000	- 카드한 것	15	5	0			
5108200000	- 코옴한 것	15	5	0			
510910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15	15	0			
5109900000	- 기타	15	15	0			
5110001000	- 소매용이 아닌 것	15	5	0			
5110009000	- 기타	15	5	0			
5111111000	- - - 양모의 것	20	10	0			
5111112000	- - - 비쿠냐의 것	20	5	0			
5111114000	- -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20	5	0			
5111119000	- - - 기타	20	5	0			
5111191000	- - - 양모의 것	20	5	0			
5111192000	- - - 비쿠냐의 것	20	5	0			
5111194000	- -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20	5	0			
5111199000	- - - 기타	20	5	0			
5111201000	- - 양모의 것	20	5	0			
5111202000	- - 비쿠냐의 것	20	5	0			
5111204000	-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20	5	0			
5111209000	- - 기타	20	5	0			
5111301000	- - 양모의 것	20	5	0			
5111302000	- - 비쿠냐의 것	2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111304000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20	5	0			
5111309000	-- 기타	20	5	0			
5111901000	-- 양모의 것	20	5	0			
5111902000	-- 비쿠냐의 것	20	5	0			
5111904000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20	5	0			
5111909000	-- 기타	20	5	0			
5112111000	---- 양모의 것	20	10	5			b
5112112000	---- 비쿠냐의 것	20	5	0			
5112114000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20	5	0			
5112119000	---- 기타	20	5	0			
5112191000	---- 양모의 것	20	10	5			b
5112192000	---- 비쿠냐의 것	20	5	0			
5112194000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20	5	0			
5112199000	---- 기타	20	5	0			
5112201000	-- 양모의 것	20	5	0			
5112202000	-- 비쿠냐의 것	20	5	0			
5112204000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20	5	0			
5112209000	-- 기타	20	5	0			
5112301000	-- 양모의 것	20	10	5			b
5112302000	-- 비쿠냐의 것	20	5	0			
5112304000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20	5	0			
5112309000	-- 기타	20	5	0			
5112901000	-- 양모의 것	20	10	7			c
5112902000	-- 비쿠냐의 것	20	5	0			
5112904000	-- 알파카 또는 라마의 것	20	5	0			
5112909000	-- 기타	20	5	0			
5113000000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20	5	0			
52010010	- 섬유길이가 34.92 밀리미터(1⅜인치)를 초과하는 것	5	5	0			
52010020	- 섬유길이가 28.57 밀리미터(1⅜인치) 초과 34.92 밀리미터(1⅜인치)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이하인 것						
52010030	- 섬유길이가 22.22 밀리미터($\frac{7}{8}$ 인치) 초과 28.57 밀리미터($1\frac{1}{8}$ 인치) 이하인 것	5	5	0			
52010090	- 섬유길이가 22.22 밀리미터($\frac{7}{8}$ 인치) 이하인 것	5	5	0			
52021000	- 사웨이트(실의 웨이트를 포함한다)	5	5	0			
52029100	-- 가아넷스톡	5	5	0			
52029900	-- 기타	5	5	0			
52030000	면(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한다)	5	5	0			
5204110000	--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15	10	5			a
5204190000	-- 기타	15	5	0			
5204200000	- 소매용의 것	15	15	5			
5205110000	--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15	10	5			a
5205120000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15	10	5			a
5205130000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15	10	5			a
5205140000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15	10	5			a
5205150000	-- 125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15	5	0			
5205210000	--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15	10	5			a
5205220000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15	10	5			a
5205230000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15	10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205240000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15	10	5			a
5205260000	--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15	10	5			a
5205270000	--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15	5	0			
5205280000	-- 83.33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120 수 초과)	15	5	0			
52053100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15	10	5			a
52053200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15	10	5			a
52053300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15	10	0			
52053400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15	10	0			
52053500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15	10	0			
52054100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15	10	5			a
52054200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15	10	5			a
5205430000	-- 구성하는 단사가	15	10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2054400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15	10	0			
52054600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15	10	0			
5205470000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15	10	0			
5205480000	--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20 수 초과)	15	5	0			
5206110000	--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15	5	0			
5206120000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15	5	0			
5206130000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15	5	0			
5206140000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15	5	0			
5206150000	-- 125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15	5	0			
5206210000	-- 714.29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15	5	0			
5206220000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15	10	5			a
5206230000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의	15	10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것(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206240000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15	10	5			a
5206250000	-- 125 데시텍스 미만의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15	5	0			
52063100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15	10	5			a
52063200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15	5	0			
52063300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15	5	0			
52063400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15	5	0			
52063500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15	5	0			
52064100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이하)	15	10	0			
52064200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15	5	0			
52064300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15	5	0			
52064400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1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2064500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 수 초과)	15	10	0			
5207100000	-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15	15	5			
5207900000	- 기타	15	15	0			
5208110000	--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	10	5			b
5208120000	--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0	10	5			b
5208130000	--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20	10	5			b
52081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082110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5 그램 이하인 것	20	5	0			
5208219000	---- 기타	20	10	5			b
5208220000	--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0	10	5			b
5208230000	--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20	10	5			b
52082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08310000	--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	10	5			b
5208320000	--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0	10	5			b
5208330000	--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20	10	5			b
52083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08410000	--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	10	5			b
5208420000	--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0	10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2084300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20	10	5			b
52084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08510000	--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	10	5			b
5208520000	-- 평직물(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0	10	5			b
52085910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20	10	5			b
5208599000	---- 기타	20	10	5			b
5209110000	-- 평직물	20	10	5			b
52091200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20	10	5			b
52091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09210000	-- 평직물	20	10	5			b
52092200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20	10	5			b
52092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09310000	-- 평직물	20	10	5			b
52093200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20	10	5			b
52093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09410000	-- 평직물	20	10	5			b
5209420000	-- 데님	20	10	5			b
5209430000	-- 3올 또는 4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20	10	5			b
52094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09510000	-- 평직물	20	10	5			b
5209520000	--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20	10	5			b
52095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210110000	-- 평직물	20	10	5			b
52101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10210000	-- 평직물	20	10	5			b
52102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10310000	-- 평직물	20	10	5			b
5210320000	--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20	10	5			b
52103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10410000	-- 평직물	20	10	5			b
52104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10510000	-- 평직물	20	10	5			b
52105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11110000	-- 평직물	20	10	5			b
5211120000	--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20	10	5			b
52111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11200000	- 표백한 것	20	10	5			b
5211310000	-- 평직물	20	10	5			b
5211320000	--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20	10	5			b
52113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11410000	-- 평직물	20	10	5			b
5211420000	-- 데님	20	10	5			b
5211430000	-- 3 올 또는 4 올의 기타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20	10	5			b
52114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11510000	-- 평직물	20	10	5			b
5211520000	-- 3 올 또는 4 올의 능직물(파사문직의 것을 포함한다)	20	10	5			b
52115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2121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2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212120000	-- 표백한 것	20	5	0			
5212130000	-- 염색한 것	20	5	0			
521214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5	0			
5212150000	-- 날염한 것	20	5	0			
52122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20	5	0			
5212220000	-- 표백한 것	20	5	5			c
5212230000	-- 염색한 것	20	10	5			b
521224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5	0			
5212250000	-- 날염한 것	20	5	0			
53011000	- 생아마 또는 침지아마	10	10	0			
53012100	-- 쇠경 또는 타마한 것	10	10	0			
53012900	-- 기타	10	10	0			
53013000	- 아마의 토우와 웨이스트	10	10	0			
53021000	- 생대마 또는 침지대마	10	10	0			
53029000	- 기타	10	10	0			
5303100000	- 황마와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생 것 또는 침지한 것에 한한다)	10	10	10			
5303903000	-- 황마	10	10	10			
5303909000	-- 기타	10	10	10			
5305001100	-- 생 것	10	5	5			b
5305001900	-- 기타	10	5	5			b
5305009000	- 기타	10	5	5			b
5306100000	- 단사	15	5	0			
5306201000	-- 소매용의 것	15	5	0			
5306209000	-- 기타	15	5	0			
5307100000	- 단사	15	5	5			c
5307200000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15	5	5			c
5308100000	- 코이어사	15	5	0			
5308200000	- 대마사	15	5	0			
5308900000	- 기타	15	10	7			b
53091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309190000	-- 기타	20	5	0			
53092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5	0			
5309290000	-- 기타	20	5	0			
531010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20	5	5			c
5310900000	- 기타	20	5	5			c
5311000000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의 직물, 지사의 직물	20	10	5			b
5401101000	-- 소매용의 것	15	15	5			
5401109000	-- 기타	15	10	5			a
5401201000	-- 소매용의 것	15	15	0			
5401209000	-- 기타	15	5	0			
5402110000	-- 아라미드의 것	15	5	0			
5402191000	---- 나일론 6.6의 것	5	5	0			
5402199000	---- 기타	15	10	5			a
540220000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15	10	0			
540231000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이하인 것에 한한다)	15	10	5			a
540232000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5	5	3			b
5402330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15	10	5			a
5402340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15	10	5			a
5402390000	-- 기타	15	5	3			b
5402440010	---- 폴리우레탄의 것	5	5	0			
5402440090	---- 기타	15	5	0			
5402450000	-- 기타(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에 한한다)	15	10	5			a
5402460000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15	10	5			a
5402470000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15	10	5			a
5402480000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15	10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402491000	--- 폴리우레탄의 것	5	5	0			
5402499000	--- 기타	15	10	0			
540251000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5	10	7			b
5402520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15	10	7			b
5402590000	-- 기타	15	5	3			b
540261000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5	10	7			b
5402620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15	10	7			b
5402690000	-- 기타	15	5	0			
5403100000	- 강력사(비스코스 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15	5	0			
5403310000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없거나 또는 꼬임이 미터당 120 회 이하의 것)	15	5	0			
5403320000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 회를 초과하는 것)	15	5	0			
5403330000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5	5	0			
5403390000	-- 기타	15	5	0			
5403410000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15	5	0			
5403420000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5	5	0			
5403490000	-- 기타	15	5	0			
5404111000	--- 폴리우레탄의 것	5	5	0			
5404119000	--- 기타	15	5	3			b
5404120000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에 한한다)	15	5	0			
5404191000	--- 폴리우레탄의 것	5	5	0			
5404199000	--- 기타	15	5	0			
5404900000	- 기타	15	5	0			
5405000000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 스 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재생 또는 반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시폭이	1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406001000	- 합성필라멘트사	15	15	5			
5406009000	-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15	15	5			
5407101000	-- 타이어 제조용의 것	20	5	3			b
5407109000	-- 기타	20	10	5			b
5407200000	-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20	10	5			b
5407300000	- 제 11 부의 주 제 9 호에 열거된 직물	20	5	0			
54074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10	5			b
5407420000	-- 염색한 것	20	10	5			b
54074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5	0			
5407440000	-- 날염한 것	20	10	5			b
54075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10	7			c
5407520000	-- 염색한 것	20	10	7			c
54075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10	7			c
5407540000	-- 날염한 것	20	10	7			c
5407610000	--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	20	10	7			c
5407690000	-- 기타	20	10	7			c
5407711000	--- 폴리비닐 알코올사의 타이어코드직물	5	5	0			
5407719000	--- 기타	20	10	5			b
5407720000	-- 염색한 것	20	10	5			b
54077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10	5			b
5407740000	-- 날염한 것	20	10	5			b
54078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10	5			b
5407820000	-- 염색한 것	20	10	5			b
54078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10	5			b
5407840000	-- 날염한 것	20	10	5			b
54079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10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407920000	-- 염색한 것	20	10	5			b
54079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10	5			b
5407940000	-- 날염한 것	20	10	5			b
5408100000	- 비스코스레이온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20	5	0			
54082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5	0			
5408220000	-- 염색한 것	20	5	0			
54082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5	0			
5408240000	-- 날염한 것	20	5	0			
54083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5	0			
5408320000	-- 염색한 것	20	5	0			
54083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5	0			
5408340000	-- 날염한 것	20	5	0			
550110000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5	5	0			
5501200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15	10	5			a
5501301000	-- 습식압출에 의해 얻어진 것	5	5	0			
5501309000	-- 기타	15	5	0			
5501400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15	5	0			
5501900010	-- 비닐	5	5	0			
5501900090	-- 기타	15	5	0			
5502001000	- 담배필터 제조용 초산셀룰로오스 로빙	15	5	0			
5502002000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5	5	0			
5502009000	- 기타	15	5	0			
5503110000	-- 아라미드의 것	15	5	0			
5503190000	-- 기타	15	5	0			
5503200010	-- 코어 보다 낮은 온도에서 용해되는 공중합체 외부표면의 생섬유(섬유를 결속하는데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15	5	5			c
5503200020	-- 2.2 데시텍스 미만인 섬유	15	10	5			a
5503200030	-- 2.2 데시텍스 이상인	15	10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섬유						
5503301000	-- 습식압출에 의해 얻어진 것	5	5	0			
5503309000	-- 기타	15	5	0			
5503400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15	10	5			a
5503901000	-- 비닐	5	5	0			
5503909000	-- 기타	15	5	0			
5504100000	-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0	0	0			
5504900000	- 기타	15	5	0			
5505100000	- 합성 섬유의 것	15	5	0			
5505200000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것	15	5	0			
550610000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5	5	0			
5506200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15	10	5			a
5506300000	-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15	5	0			
5506900000	- 기타	15	5	0			
5507000000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15	5	0			
5508101000	-- 소매용의 것	15	10	5			a
5508109000	-- 기타	15	10	5			a
5508201000	-- 소매용의 것	15	5	0			
5508209000	-- 기타	15	5	0			
5509110000	-- 단사	15	5	0			
5509120000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15	5	0			
5509210000	-- 단사	15	10	5			a
5509220000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15	10	5			a
5509310000	-- 단사	15	10	5			a
5509320000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15	10	5			a
5509410000	-- 단사	15	5	0			
5509420000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1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5095100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인플섬유와 혼방한 것	15	10	5			a
55095200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유모와 혼방한 것	15	5	0			
55095300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15	10	5			a
5509590000	-- 기타	15	10	5			a
55096100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유모와 혼방한 것	15	10	5			a
55096200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15	5	0			
5509690000	-- 기타	15	10	5			a
55099100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유모와 혼방한 것	15	5	0			
55099200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15	10	0			
5509990000	-- 기타	15	5	0			
5510110000	-- 단사	15	10	5			a
5510120000	--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15	5	0			
5510200000	- 기타의 사(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유모와 혼방한 것에 한한다)	15	5	0			
5510300000	- 기타의 사(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에 한한다)	15	10	0			
5510900000	- 기타의 사	15	10	5			a
5511100000	- 합성스테인플섬유의 것(합성스테인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15	15	5			
5511200000	- 합성스테인플섬유의 것(합성스테인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15	15	0			
5511300000	-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15	15	0			
55121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10	5			b
5512190000	-- 기타	20	10	5			b
55122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5	0			
5512290000	-- 기타	2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5129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5	0			
5512990000	-- 기타	20	5	0			
5513110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20	10	5			b
5513120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20	10	5			b
5513130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20	10	5			b
5513190000	-- 기타 직물	20	5	0			
5513210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20	10	5			b
5513231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20	10	5			b
5513239000	---- 기타	20	10	5			b
5513290000	-- 기타 직물	20	5	0			
5513310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20	10	5			b
5513391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20	10	5			b
5513392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20	10	5			b
5513399000	---- 기타	20	5	0			
5513410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20	10	5			b
5513491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20	10	5			b
5513492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20	10	5			b
5513499000	---- 기타	20	5	0			
5514110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20	10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한한다)						
5514120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20	10	5			b
5514191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20	10	5			b
5514199000	---- 기타	20	5	0			
5514210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20	10	5			b
5514220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20	10	5			b
5514230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20	10	5			b
55142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514301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20	10	5			b
5514302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20	10	5			b
5514303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20	10	5			b
5514309000	-- 기타 직물	20	5	0			
5514410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에 한한다)	20	10	0			
5514420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3 올 또는 4 올의 능직에 한하며, 파사문직을 포함한다)	20	10	0			
55144300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20	10	0			
5514490000	-- 기타 직물	20	10	5			b
55151100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20	10	5			b
55151200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20	10	5			b
55151300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20	10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515190000	-- 기타	20	5	0			
55152100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20	5	0			
55152200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20	5	0			
5515290000	-- 기타	20	5	0			
5515910000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20	5	0			
5515990000	-- 기타	20	5	0			
55161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10	0			
5516120000	-- 염색한 것	20	10	0			
55161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5	0			
5516140000	-- 날염한 것	20	10	0			
55162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5	0			
5516220000	-- 염색한 것	20	5	0			
55162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5	0			
5516240000	-- 날염한 것	20	5	0			
55163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5	0			
5516320000	-- 염색한 것	20	5	0			
55163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10	0			
5516340000	-- 날염한 것	20	5	0			
55164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5	0			
5516420000	-- 염색한 것	20	5	0			
55164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5	0			
5516440000	-- 날염한 것	20	5	0			
55169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10	0			
5516920000	-- 염색한 것	20	5	0			
55169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10	0			
5516940000	-- 날염한 것	20	5	0			
5601100000	- 워딩제의 위생타올 및 탐폰·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1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601210000	-- 면제의 것	15	10	5			a
56012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15	10	5			a
5601290000	-- 기타	15	10	5			a
5601300000	- 섬유의 플록과 더스트 및 밀네프	15	5	0			
5602100000	- 니들룸펠트와 스티치 본드 섬유직물	15	10	5			a
560221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15	5	0			
56022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15	10	5			a
5602900000	- 기타	15	10	5			a
56031100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15	10	5			a
5603121000	---- 폴리에스테르제의 것(스티렌-부타디엔 고무가 1 제곱미터당 43 그램 이상 침투된 것으로서, 폭이 75 밀리미터 이하로 잘라진 것에 한한다)	15	5	3			b
5603129000	---- 기타	15	10	5			a
56031300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15	10	5			a
56031400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15	10	5			a
56039100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15	10	3			
56039200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 70 그램 이하인 것	15	10	5			a
56039300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 150 그램 이하인 것	15	10	5			a
56039400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15	10	5			a
5604100000	- 고무사와 고무코드(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15	5	0			
5604902000	-- 강력사(타이어 제조용 비가황 고무로 침투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15	5	0			
5604909000	-- 기타	15	5	0			
5605000000	금속드리사(징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사 또는 제 5404 호 또는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제 5405 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스트립 또는 분상의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으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5606000000	짐프사와 제 5404 호 또는 제 5405 호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 것에 한하며, 제 5605 호의 것 및 짐프한 마모사는 제외한다), 셔닐사(플록상의 셔닐사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	15	10	5			a
5607210000	-- 포장용 끈	15	10	5			a
5607290000	-- 기타	15	5	3			b
5607410000	-- 포장용 끈	15	10	5			a
5607490000	-- 기타	15	10	5			a
5607500000	- 기타 합성섬유제의 것	15	5	5			c
5607900000	- 기타	15	10	5			a
5608110000	-- 제품으로 된 어망	15	5	0			
5608190000	-- 기타	15	5	0			
5608900000	- 기타	15	5	0			
5609000000	제 5404 호 또는 제 5405 호의 사·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끈, 코디지, 로프 또는 케이블의 물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5	5	3			b
570110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5701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20	15	5			a
5702100000	- "켈렘(Kelem)", "슈맥(Schumacks)", "카라마니(Karamanie)" 및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	20	15	5			a
5702200000	- 코코넛 섬유(코이어)제의 바닥깔개	20	15	5			a
570231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57023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57023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570241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7024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57024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5702500000	- 기타(파일직물의 것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	15	5			a
570291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57029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57029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570310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5703200000	-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20	15	5			a
5703300000	- 기타 인조 섬유제의 것	20	15	5			a
5703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5704100000	- 타일(표면적이 최대 0.3 제곱미터인 것에 한한다)	20	15	5			a
5704900000	- 기타	20	15	5			a
5705000000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5			a
580110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5	0			
5801210000	-- 절단하지 아니한 위(緯)파일 직물	20	5	0			
5801220000	-- 절단한 코르덴	20	5	0			
5801230000	-- 기타 위(緯)파일 직물	20	5	0			
5801240000	-- 절단하지 아니한 경파일 직물(에핑글)	20	5	0			
5801250000	-- 절단한 경파일 직물	20	5	0			
5801260000	-- 셔닐 직물	20	5	0			
5801310000	-- 절단하지 아니한 위(緯)파일 직물	20	5	0			
5801320000	-- 절단한 코르덴	20	5	0			
5801330000	-- 기타 위파일 직물	20	5	0			
5801340000	-- 절단하지 아니한 경파일 직물(에핑글)	20	5	0			
5801350000	-- 절단한 경파일 직물	20	10	5			b
5801360000	-- 셔닐직물	20	10	5			b
5801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802110000	- - 표백하지 아니한 것	20	5	0			
5802190000	- - 기타	20	10	5			b
58022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20	5	0			
5802300000	- 터후트 직물	20	5	0			
5803001000	- 면제의 것	20	5	0			
5803009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0	3			a
5804100000	- 튜올 및 기타 망직물	20	10	5			b
580421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20	10	5			b
58042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5	5			c
5804300000	- 수제의 레이스	20	5	5			c
5805000000	고우벌린직·플란더스직·오버션 직·뉴바이스직 및 이와 유사한 수직의 태피스트리 및 자수의 태피스트리(예: 퍼티포인트, 십자수) (제품으로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5			a
5806100000	- 파일직물(테리타올지와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을 포함한다)과 셔닐직물	20	5	5			c
5806200000	- 기타 직물(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20	10	5			b
5806310010	- - - 폭이 13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리본 제조용의 것	5	5	0			
5806310090	- - - 기타	20	10	5			b
5806321000	- - - 폭이 4.1 센티미터 이하인 것	5	5	0			
5806329000	- - - 기타	20	10	5			b
58063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0	5			b
5806400000	-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의 세폭직물(볼덕)	20	5	0			
5807100000	- 직조한 것	20	10	5			b
5807900000	- 기타	20	10	5			b
5808100000	- 브레이드(원단상의 것에 한한다)	20	5	0			
5808900000	- 기타	20	10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80900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의 금속드리사의 직물(의류·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	5	0			
5810100000	- 자수포(기포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20	5	5			c
5810910000	-- 면제의 것	20	10	5			b
58109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0	5			b
58109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0	5			b
58110000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 5810 호의 자수포는 제외한다)	20	10	5			b
5901100000	-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검 또는 전분질의 물질로 도포한 것으로, 서적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20	5	0			
5901900000	- 기타	20	5	0			
5902101000	-- 고무를 입힌 것	15	10	5			a
5902109000	-- 기타	15	10	3			
5902201000	-- 고무를 입힌 것	5	5	0			
5902209000	-- 기타	15	10	5			a
5902900000	- 기타	15	5	0			
5903100000	- 폴리(염화비닐)의 것	20	10	5			b
5903200000	- 폴리우레탄의 것	20	10	5			b
5903900000	- 기타	20	10	5			b
5904100000	- 리놀륨	20	5	0			
5904900000	- 기타	20	5	0			
5905000000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5	5	0			
5906100000	-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 테이프	20	5	0			
5906910000	--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	2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906991000	--- 강력사(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로 직조한 직물	20	10	5			b
5906999000	--- 기타	20	5	5			c
5907000000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직물류, 극장용·스튜디오용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20	10	5			b
5908000000	램프용, 스토브용, 라이터용, 양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 편조 또는 편직한 것에 한한다), 백열가스 맨틀 및 백열가스 맨틀용 관상편물(침투여부를 불문한다)	15	5	0			
5909000000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의 관상의 물품(기타 재료제의 내장·보강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5	0			
5910000000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하며,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 또는 기타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5	0			
5911100000	- 침포로 사용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및 펠트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 가죽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및 기타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직물을 포함한다]	15	5	0			
5911200000	- 볼팅클로스(제품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5	0			
59113100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591132000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5	5	0			
5911400000	- 착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여과포(인모제의 것을 포함한다)	15	10	5			a
5911901000	-- 개스킷	15	5	3			b
5911909000	-- 기타	15	5	3			b
6001100000	- "롱 파일" 직물	20	10	5			b
6001210000	-- 면제의 것	20	10	5			b
60012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0	5			b
60012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5	0			
6001910000	-- 면제의 것	20	10	5			b
60019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0	5			b
60019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5	0			
600240000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이며, 고무사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20	10	5			b
6002900000	- 기타	20	5	0			
600310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5	0			
6003200000	- 면제의 것	20	10	5			b
600330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0	5			b
6003400000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20	5	0			
6003900000	- 기타	20	5	0			
600410000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5 퍼센트 이상이며, 고무사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20	10	5			b
6004900000	- 기타	20	5	0			
60052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5	0			
6005220000	-- 염색한 것	20	5	0			
60052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5	0			
6005240000	-- 날염한 것	20	5	0			
60053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10	5			b
6005320000	-- 염색한 것	20	10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0053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10	5			b
6005340000	-- 날염한 것	20	10	5			b
60054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5	0			
6005420000	-- 염색한 것	20	5	0			
60054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5	0			
6005440000	-- 날염한 것	20	5	0			
6005900000	- 기타	20	5	0			
600610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5	0			
60062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10	5			b
6006220000	-- 염색한 것	20	10	5			b
60062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10	5			b
6006240000	-- 날염한 것	20	10	5			b
60063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10	5			b
6006320000	-- 염색한 것	20	10	5			b
60063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10	5			b
6006340000	-- 날염한 것	20	10	5			b
6006410000	--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	20	10	5			b
6006420000	-- 염색한 것	20	10	5			b
6006430000	-- 서로 다른 색사로 된 것	20	10	5			b
6006440000	-- 날염한 것	20	10	5			b
6006900000	- 기타	20	5	0			
610120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130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1901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101909000	-- 기타	20	15	5			a
610210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10220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230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2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3101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103102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3109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32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32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3291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0			
6103299000	---- 기타	20	15	0			
61033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1033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33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33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34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1034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34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34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41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4191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0			
6104192000	---- 면제의 것	20	15	0			
6104199000	---- 기타	20	15	0			
61042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42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4291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104299000	---- 기타	20	15	5			a
61043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1043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43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43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44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1044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44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4440000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20	15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1044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451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61045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45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45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461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61046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46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46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510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5201000	--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5209000	-- 기타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5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610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620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6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71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71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71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72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72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72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0			
61079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7991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7999000	--- 기타	20	15	5			a
610811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81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82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82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82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83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1083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83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89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89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89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910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09901000	--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09909000	-- 기타	20	15	5			a
6110111000	----- 스웨터(풀오버)	20	15	5			a
6110112000	----- 웨이스트코트	20	15	5			a
6110113000	----- 카디건	20	15	5			a
6110119000	----- 기타	20	15	5			a
6110120000	-- 캐시미어 산양의 것	20	15	0			
6110191000	----- 스웨터(풀오버)	20	15	5			a
6110192000	----- 웨이스트코트	20	15	5			a
6110193000	----- 카디건	20	15	5			a
6110199000	----- 기타	20	15	5			a
6110201000	----- 스웨터(풀오버)	20	15	5			a
6110202000	-- 웨이스트코트	20	15	5			a
6110203000	-- 카디건	20	15	5			a
6110209000	--- 기타	20	15	5			a
6110301000	--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10309000	-- 기타	20	15	10			b
6110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1120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1130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11901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6111909000	-- 기타	20	15	5			a
61121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1212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121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112200000	- 스키슈트	20	15	5			a
611231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123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1241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124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13000000	의류(제 5903 호, 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의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로 만든 것에 한한다)	20	15	5			a
611420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1430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114901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6114909000	-- 기타	20	15	5			a
6115101000	-- 단계압박 양말류	20	15	5			a
6115109000	-- 기타	20	15	5			a
6115210000	--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에 한한다)	20	15	5			a
6115220000	-- 합성섬유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에 한한다)	20	15	5			a
61152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15301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15309000	-- 기타	20	15	5			a
611594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611595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1596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159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16100000	-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	20	15	5			a
611691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61169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1169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1169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117100000	- 쇼울, 스카프, 머플러, 만틸라, 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0	15	5			a
6117801000	-- 무릎 및 발목 패드	20	15	5			a
6117802000	-- 벅타이류	20	15	5			a
6117809000	-- 기타	20	15	5			a
6117901000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20	15	5			a
6117909000	-- 기타	20	15	5			a
620111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62011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113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11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191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62019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193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19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211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62021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213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21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291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62029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293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29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311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620312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31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32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32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3291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6203299000	---- 기타	20	15	5			a
6203310000	-- 양모 또는 섬유모제의 것	20	15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2033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33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33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34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203421000	---- "청바지 또는 데님"으로 불리우는 조직의 것	20	15	10			b
6203422000	---- 줄무늬가 있는 벨벳의 것("코르덴")	20	15	5			a
6203429000	---- 기타	20	15	5			a
62034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10			b
62034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41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2041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41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41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42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2042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42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42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43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2043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43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43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44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2044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44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4440000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44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45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20452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45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45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20461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204620000	-- 면제의 것	20	15	10			b
620463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46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520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530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5901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205909000	-- 기타	20	15	5			a
620610000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20	15	5			a
620620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20630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640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6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71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71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72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72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72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79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7991000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7999000	--- 기타	20	15	5			a
620811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81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82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82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82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89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89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89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0920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0930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209901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209909000	- - 기타	20	15	5			a
6210100000	- 제 5602 호 또는 제 5603 호의 직물제의 것	20	15	5			a
6210200000	- 기타 의류(소호 제 6201.11 호부터 제 6201.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에 한한다)	20	15	5			a
6210300000	- 기타 의류(소호 제 6202.11 호부터 제 6202.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에 한한다)	20	15	5			a
6210400000	- 남자 또는 소년용의 기타 의류	20	15	5			a
6210500000	-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20	15	5			a
6211110000	- - 남자 또는 소년용의 것	20	15	5			a
6211120000	- - 여자 또는 소녀용의 것	20	15	5			a
6211200000	- 스키슈트	20	15	5			a
6211320000	- - 면제의 것	20	15	5			a
621133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211391000	-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211399000	- - - 기타	20	15	5			a
6211410000	-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6211420000	- - 면제의 것	20	15	5			a
6211430000	-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2114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12100000	- 브래지어	20	15	5			a
6212200000	- 거들 및 팬티거들	20	15	5			a
6212300000	- 콜세렛	20	15	5			a
6212900000	- 기타	20	15	5			a
621320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213901000	-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20	15	0			
6213909000	- - 기타	20	15	5			a
621410000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20	15	5			a
6214200000	-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20	15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21430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214400000	-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14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15100000	-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	20	15	5			a
621520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21590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216001000	- 특히 작업자 보호용의 것	20	15	5			a
6216009000	- 기타	20	15	5			a
6217100000	- 부속품	20	15	5			a
6217900000	- 부분품	20	15	5			a
6301100000	- 전기모포	20	15	5			a
6301201000	-- 양모제의 것	20	15	5			a
6301202000	-- 비쿠냐 모제의 것	20	15	5			a
6301209000	-- 기타	20	15	5			a
6301300000	- 면제의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20	15	5			a
6301400000	- 합성섬유제의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20	15	5			a
6301900000	- 기타 모포와 여행용 러그	20	15	5			a
6302101000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20	15	5			a
6302109000	-- 기타	20	15	5			a
63022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3022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3022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3023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30232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3023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302401000	-- 합성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의 것	20	15	5			a
6302409000	-- 기타	20	15	5			a
63025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30253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302591000	--- 린넨제의 것	20	15	5			a
6302599000	--- 기타	20	15	5			a
6302600000	- 면제의 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테리타올지 또는 기타 유사한 테리직물의 것에 한한다)	20	15	5			a
63029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302930000	-- 인조섬유제의 것	20	15	5			a
6302991000	--- 린넨제의 것	20	15	5			a
6302999000	--- 기타	20	15	5			a
630312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303191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303199000	--- 기타	20	15	5			a
6303910000	-- 면제의 것	20	15	5			a
6303920000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3039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304110000	--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의 것	20	15	5			a
6304190000	-- 기타	20	15	5			a
6304910000	--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의 것	20	15	5			a
6304920000	-- 면제의 것(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의 것은 제외한다)	20	15	5			a
6304930000	-- 합성섬유제의 것(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의 것은 제외한다)	20	15	5			a
6304990000	--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의 것은 제외한다)	20	15	5			a
6305101000	-- 황마제의 것	20	5	3			b
6305109000	-- 기타	20	10	5			b
6305200000	- 면제의 것	20	10	5			b
6305320000	-- 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20	10	5			b
6305331000	--- 폴리에틸렌제의 것	20	5	3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305332000	- - - 폴리프로필렌제의 것	20	10	5			b
6305390000	- - 기타	20	10	5			b
6305901000	- - 피타 섬유(까부야, 피께)제의 것	20	10	5			b
6305909000	- - 기타	20	10	5			b
630612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306191000	- - - 면제의 것	20	15	5			a
6306199000	- - - 기타	20	15	5			a
6306220000	- - 합성섬유제의 것	20	15	5			a
63062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306300000	- 돛	20	15	0			
6306400000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20	15	0			
6306910000	- - 면제의 것	20	15	5			a
6306990000	- -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	20	15	5			a
6307100000	- 마루닦이포, 접시닦이포,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20	15	5			a
6307200000	- 구멍재킷 및 구멍벨트	20	15	5			a
6307901000	- - 드레스 패턴	20	15	5			a
6307902000	- - 안전벨트	20	15	5			a
6307903000	- - 안면 보호구	20	15	5			a
6307909000	- - 기타	20	15	5			a
6308000000	러그, 태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물 및사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 한한다)	20	5	3			b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20	5	3			b
6310101000	- - 직물 조각, 트리밍	20	5	3			b
6310109000	- - 기타	20	5	3			b
6310900000	- 기타	20	5	3			b
6401100000	-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20	15	10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401920000	-- 발목을 덮는 것으로서 무릎을 덮지 아니하는 것	20	15	10			b
6401990000	-- 기타	20	15	10			b
6402120000	-- 스키부츠,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20	15	0			
6402190000	-- 기타	20	15	10			b
6402200000	- 신발류(갑피끈을 플렉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에 한한다)	20	15	10			b
6402910000	-- 발목을 덮는 것	20	15	10			b
6402991000	----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	20	15	10			b
6402999000	---- 기타	20	15	10			b
6403120000	-- 스키부츠, 크로스컨트리 스키화 및 스노보드 부츠	20	15	0			
6403190000	-- 기타	20	15	10			b
640320000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20	15	10			b
6403400000	-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한다)	20	15	10			b
6403510000	-- 발목을 덮는 것	20	15	10			b
6403590000	-- 기타	20	15	10			b
6403911000	---- 목제창 신발류(안창과 보호용 금속 토캡이 없는 것에 한한다)	20	15	10			b
6403919000	---- 기타	20	15	10			b
6403991000	---- 목제창 신발류(안창과 보호용 금속 토캡이 없는 것에 한한다)	20	15	10			b
6403999000	---- 기타	20	15	10			b
6404111000	---- 스포츠용 신발류	20	15	10			b
6404112000	---- 정구화, 농구화, 체조화, 훈련화 및 이와 유사한 것	20	15	10			b
6404190000	-- 기타	20	15	10			b
6404200000	- 신발류(바깥 바닥이 가죽 또는 컴퍼지션 레더제인 것에 한한다)	20	15	10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405100000	- 갑피가 가죽 또는 컴퍼지션 레더인 것	20	15	10			b
6405200000	-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것	20	15	10			b
6405900000	- 기타	20	15	10			b
6406100000	-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15	10	7			b
6406200000	- 바깥바닥 및 뒷굽(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에 한한다)	15	10	7			b
6406910000	- - 목재의 것	15	5	0			
6406993000	- - -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	15	10	7			b
6406999000	- - - 기타	15	10	7			b
6501000000	펠트제의 모체(성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펠트제의 플래도우 및 망송(슬릿망송을 포함한다)	15	10	5			a
6502001000	- 토킨라 짚 또는 모코라 짚의 것	15	5	0			
6502009000	- 기타	15	5	0			
6504000000	모자(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5			a
6505100000	- 헤어네트	20	15	5			a
6505901000	- - 펠트제의 모자 또는 제 6501 호의 모체(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5			a
6505909000	- - 기타	20	15	5			a
6506100000	- 안전모자	20	15	5			a
6506910000	- -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20	15	5			a
6506990000	- - 기타 재료제의 것	20	15	5			a
6507000000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 이션·해트프레임·챙 및 턱끈	15	10	5			a
6601100000	- 정원용 또는 이와 유사한 산류	20	15	5			a
6601910000	- - 대가 절첩식의 것	20	15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601990000	- - 기타	20	15	5			a
6602000000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승마용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	20	15	5			a
6603200000	- 산류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15	5	0			
6603900000	- 기타	15	5	0			
6701000000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와 기타 부분, 우모, 우모의 부분, 솜털 및 그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우축 및 우경은 제외한다)	15	5	0			
6702100000	- 플라스틱제의 것	20	15	5			a
6702900000	- 기타 재료제의 것	20	15	5			a
6703000000	인모(정돈, 표백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 가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제조용으로 제조한 양모나 기타의 수모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	15	10	5			a
6704110000	- - 전체가발	20	15	5			a
6704190000	- - 기타	20	15	5			a
6704200000	- 인모제의 것	20	15	5			a
6704900000	- 기타 재료제의 것	20	15	5			a
6801000000	천연 석재의 포석·연석 및 판석(슬레이트는 제외한다)	15	5	0			
6802100000	- 타일, 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입(粒)·세편 및 분	15	5	0			
6802210000	- - 대리석, 트래버틴 및 앨러바스터	15	10	7			b
6802230000	- - 화강암	15	5	0			
6802291000	- - - 석회질 암석	15	10	7			b
6802299000	- - - 기타	15	10	7			b
6802910000	- - 대리석, 트래버틴 및 앨러바스터	15	10	7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802920000	- - 기타 석회질 암석	15	10	7			b
6802930000	- - 화강암	15	10	7			b
6802990000	- - 기타 석	15	10	7			b
6803000000	가공한 슬레이트 및 슬레이트 제품 또는 응결 슬레이트의 제품	15	5	0			
6804100000	-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밀링용, 그라인딩용 또는 펄핑용의 것에 한한다)	15	5	0			
6804210000	- - 합성 또는 천연 다이아몬드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15	10	5			a
6804220000	- - 기타 연마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또는 도자제의 것	15	10	7			b
6804230000	- - 천연석제의 것	15	5	0			
6804300000	- 수지석(手砥石)	15	10	7			b
6805100000	- 방직용 섬유적 직물만을 기제로 한 것	15	10	7			b
6805200000	- 지 또는 판지만을 기제로 한 것	15	10	7			b
6805300000	- 기타 재료를 기제로 한 것	15	10	7			b
6806100000	- 슬랙울, 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그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상, 슈트상 또는 롤상의 것에 한한다)	15	10	5			a
6806200000	- 박리한 버미큐라이트, 팽창점토, 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한 팽창 광물성재료(그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10	5	0			
6806900000	- 기타	15	5	0			
6807100000	- 롤상의 것	15	10	7			b
6807900000	- 기타	15	5	0			
6808000000	패널, 보드, 타일, 블록 및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짚 또는 목재의 대패밥·칩·파티클·톱밥 또는 기타 웨이스트를 시멘트, 플라스터 또는 기타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에	15	10	7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한한다)						
6809110000	-- 지 또는 판지만으로 입혔거나 보강한 것	15	10	7			b
6809190000	-- 기타	15	5	0			
6809900000	- 기타 제품	15	10	7			b
6810110000	-- 건축용 블록 및 벽돌	15	10	7			b
6810190000	-- 기타	15	10	7			b
6810910000	--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 또는 토목 공사용의 것에 한한다)	15	10	5			a
6810990000	-- 기타	15	10	0			
6811400000	- 석면을 함유하는 것	15	10	7			b
6811810000	-- 파형의 쉬트	15	10	7			b
6811820000	-- 기타 쉬트, 패널,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15	10	7			b
6811830000	-- 관 및 관 연결구류	15	5	0			
6811890000	-- 기타 제품	15	10	7			b
6812800000	- 청석면의 것	15	5	0			
6812910000	-- 의류, 의류부속품, 신발 및 모자류	15	5	0			
6812920000	-- 지, 표지용의 판지 및 펠트	15	5	0			
6812930000	-- 압축가공한 쉬트상 또는 롤상의 석면섬유 조인팅	15	5	0			
6812991000	----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제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마그네슘을 기제로 한 혼합물	5	5	0			
6812992000	---- 사	15	5	0			
6812993000	---- 로프와 코드(엮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5	0			
6812994000	---- 직물(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5	0			
6812995000	---- 개스킷	15	5	0			
6812999000	---- 기타	15	5	0			
6813200000	- 석면을 함유하는 것	15	5	5			c
6813810000	--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15	10	7			b
6813890000	-- 기타	15	5	5			c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814100000	- 판, 쉬트 및 스트립(응결 또는 재생한 운모의 것에 한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6814900000	- 기타	5	5	0			
6815100000	- 비전기용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품	15	5	0			
6815200000	- 이탄 제품	15	5	0			
6815910000	- - 마그네사이트, 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하는 것	15	5	0			
6815990000	- - 기타	15	10	7			b
6901000000	벽돌·블록·타일 및 기타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예: 규조토, 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아토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15	5	0			
6902100000	- 마그네슘, 칼슘 또는 크로뮴원소(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시하기도 한다)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15	5	0			
6902201000	- - 실리카(SiO ₂)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15	5	0			
6902209000	- - 기타	15	10	5			a
6902900000	- 기타	15	10	5			a
6903101000	- - 레토트 및 도가니	5	5	0			
6903109000	- - 기타	15	5	0			
6903201000	- - 레토트 및 도가니	5	5	0			
6903209000	- - 기타	15	5	0			
6903901000	- - 레토트 및 도가니	5	5	0			
6903909000	- - 기타	15	5	0			
6904100000	- 건축용 벽돌	15	10	5			a
6904900000	- 기타	15	10	5			a
6905100000	- 기와(지붕타일)	15	10	5			a
6905900000	- 기타	15	10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6906000000	도자제의 관·도관·흙통 및 관의 연결구류	15	10	7			b
6907100000	- 타일, 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의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에 한한다)	15	10	5			a
6907900000	- 기타	15	10	7			b
6908100000	- 타일, 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의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표면적이 일변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에 한한다)	15	10	5			a
6908900000	- 기타	15	10	7			b
6909110000	-- 자기제의 것	15	5	0			
6909120000	--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15	5	0			
6909190000	-- 기타	15	5	0			
6909900000	- 기타	15	5	0			
6910100000	- 자기제의 것	15	10	7			b
6910900000	- 기타	15	5	5			c
6911100000	-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20	15	7			a
6911900000	- 기타	20	15	7			a
69120000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20	15	7			a
6913100000	- 자기제의 것	20	15	5			a
6913900000	- 기타	20	15	5			a
6914100000	- 자기제의 것	15	10	5			a
6914900000	- 기타	15	10	5			a
7001001000	-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7001003000	- 유리괴	10	5	0			
7002100000	- 구	5	5	0			
7002200000	- 봉	5	5	0			
7002310000	-- 용융석영 또는 기타 용융실리카제의 것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002320000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섭씨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기타 유리제의 것	5	5	0			
7002390000	-- 기타	5	5	0			
7003121000	--- 평평한 것	10	5	5			b
7003122000	---- 골진 것, 파형의 것, 압착된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	10	5	5			b
7003191000	--- 평평한 것	10	5	5			b
7003192000	---- 골진 것, 파형의 것, 압착된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	10	5	5			b
7003200000	- 망입 슈트	10	5	0			
7003300000	- 프로파일	15	5	0			
7004200000	- 유리[전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에 한한다]	15	10	7			b
7004900000	- 기타 유리	15	10	10			c
7005100000	-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에 한한다)	15	5	5			c
7005211100	----- 플로트	5	5	5			
7005211900	----- 기타	15	5	5			c
7005219000	---- 기타	15	5	5			c
7005291000	---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것	15	10	7			b
7005299000	--- 기타	15	5	5			c
7005300000	- 망입유리	15	5	5			c
7006000000	제 7003호·제 7004호 또는 제 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 가장자리 가공한 것, 조각한 것, 천공한 것, 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 한 것으로서, 틀을 씌운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007110000	--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15	10	7			b
7007190000	-- 기타	15	10	7			b
7007210000	--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15	10	7			b
7007290000	-- 기타	15	10	7			b
7008000000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	15	5	0			
7009100000	- 백미러(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15	5	5			c
7009910000	-- 틀을 씌우지 아니한 것	15	10	7			b
7009920000	-- 틀을 씌운 것	15	10	7			b
7010100000	- 앰플	15	10	7			b
7010200000	- 마개, 뚜껑 및 기타 마개류	15	10	0			
7010901000	-- 1 리터를 초과하는 것	15	10	7			b
7010902000	-- 0.33 리터 초과 1 리터 이하인 것	15	10	7			b
7010903000	-- 0.15 리터 초과 0.33 리터 이하인 것	15	10	7			b
7010904000	-- 0.15 리터 이하인 것	15	10	7			b
7011100000	- 전등용의 것	15	10	0			
7011200000	- 음극선관용의 것	5	5	0			
7011900000	- 기타	15	5	0			
7013100000	- 유리 도자제의 것	20	15	0			
7013220000	-- 납 크리스탈제의 것	20	15	0			
7013280000	-- 기타	20	15	7			a
7013330000	-- 납 크리스탈제의 것	20	15	0			
7013370000	-- 기타	20	15	7			a
7013410000	-- 납 크리스탈제의 것	20	15	0			
7013420000	-- 선팅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섭씨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유리제의 것	20	15	0			
7013490000	-- 기타	20	15	7			a
7013910000	-- 납 크리스탈제의 것	20	15	7			a
7013990000	-- 기타	20	15	7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014000000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광학용품(제 7015 호의 것은 제외하고,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	5	0			
701510000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10	5	0			
7015900000	- 기타	5	5	0			
7016100000	- 유리제의 입방체 및 기타 유리세공품(뒷면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모자이크용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용의 것에 한한다)	5	5	0			
7016901000	- - 레드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스테인그라스에 한하며, 무색 유리제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0	5			b
7016902000	- - 다공 또는 다포유리(블록, 패널, 플레이트, 셀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15	5	0			
7016909000	- - 기타	15	10	7			b
7017100000	- 용융석영 또는 기타 용융실리카제의 것	15	5	0			
7017200000	- 선팅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섭씨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기타 유리제의 것	15	5	0			
7017900000	- 기타	15	5	0			
7018100000	- 유리제의 비드, 모조진주, 모조귀석 또는 반귀석 및 이와 유사한 유리세공품	5	5	0			
7018200000	- 지름이 1 밀리미터 이하인 유리제의 마이크로스피어	15	10	7			b
7018900000	- 기타	15	5	0			
7019110000	- -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5	0			
7019120000	- - 로빙	10	5	0			
7019190000	- - 기타	10	5	0			
7019310000	- - 매트	15	5	0			
7019320000	- - 얇은 쉬트(보일)	15	5	0			
7019390000	- - 기타	15	5	5			c
7019400000	- 로빙직물	1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019510000	--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15	5	0			
7019520000	--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인 필라멘트의 것에 한한다)	15	5	0			
7019590010	-- 페놀수지가 침투된 유리성유 직물(정사각형의 크기가 최대 7x7 인치인 것에 한한다)	5	5	0			
7019590090	--- 기타	15	5	0			
7019901000	-- 글라스 울(벌크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15	5	0			
7019909010	--- 여과망	5	5	0			
7019909090	--- 기타	15	10	7			b
7020001000	- 유리 외피(진공절연처리된 플라스크용의 것에 한한다)	5	5	0			
7020009000	- 기타	15	5	5			c
7101100000	- 천연진주	10	5	0			
7101210000	-- 가공하지 아니한 것	10	5	0			
7101220000	-- 가공한 것	10	5	0			
7102100000	- 선별하지 아니한 것	10	5	0			
7102210000	--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5	5	0			
7102290000	-- 기타	5	5	0			
7102310000	--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10	5	0			
7102390000	-- 기타	15	5	0			
7103101000	-- 에메랄드	10	5	0			
7103109000	-- 기타	10	5	0			
7103911000	--- 루비 및 사파이어	15	5	0			
7103912000	--- 에메랄드	15	5	0			
7103990000	-- 기타	15	5	0			
7104100000	- 압전기용 석영	5	5	0			
7104200000	- 기타(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또는 거칠게 성형한 것에 한한다)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104900000	- 기타	10	5	0			
7105100000	- 다이아몬드의 것	10	5	0			
7105900000	- 기타	10	5	0			
7106100000	- 분	10	5	0			
7106911000	- - - 합금하지 아니한 것	10	5	0			
7106912000	- - - 합금한 것	10	5	0			
7106920000	- - 반제품의 것	10	5	0			
7107000000	은을 입힌 비(卑)금속(반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	5	0			
7108110000	- - 분	10	5	0			
7108120000	- -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10	5	0			
7108130000	- - 기타 반제품 형상의 것	10	5	0			
7108200000	- 화폐용의 것	10	5	0			
7109000000	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은(반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	5	0			
7110110000	- -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5	5	0			
7110190000	- - 기타	5	5	0			
7110210000	- -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5	5	0			
7110290000	- - 기타	5	5	0			
7110310000	- -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5	5	0			
7110390000	- - 기타	5	5	0			
7110410000	- -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5	5	0			
7110490000	- - 기타	5	5	0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卑)금속, 은 또는 금(반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	5	0			
7112300000	-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는 회	10	5	0			
7112910000	- -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하는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7112920000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하는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10	5	0			
7112990000	-- 기타	10	5	0			
7113110000	--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10			b
7113190000	--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10			b
7113200000	-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20	15	10			b
7114111000	---- 순도 0.925 인 것	20	15	10			b
7114119000	---- 기타	20	15	10			b
7114190000	-- 기타 귀금속제의 것(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10			b
7114200000	-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20	15	10			b
7115100000	- 촉매제(백금제의 와이어 클로스 또는 그릴상의 것에 한한다)	5	5	0			
7115900000	- 기타	15	10	7			b
7116100000	- 천연 또는 양식진주제의 것	20	15	7			a
7116200000	-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의 것	20	15	7			a
7117110000	-- 커프링크 및 장식용 단추	15	15	5			
7117190000	-- 기타	20	15	7			a
7117900000	- 기타	20	15	7			a
7118100000	- 주화(금화는 제외하며, 법정통화가 아닌 것에 한한다)	5	5	0			
7118900000	- 기타	5	5	0			
7201100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5 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5	0			
7201200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5 퍼센트를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201500000	합금선철, 스피그라이즌	5	5	0			
7202110000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5	0			
7202190000	-- 기타	5	5	0			
7202210000	--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5	0			
7202290000	-- 기타	5	5	0			
7202300000	- 페로실리코망간	5	5	0			
7202410000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5	0			
7202490000	-- 기타	5	5	0			
7202500000	- 페로실리코크로뮴	5	5	0			
7202600000	- 페로니켈	5	5	0			
7202700000	- 페로몰리브데늄	5	5	0			
7202800000	-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텅스텐	5	5	0			
7202910000	-- 페로티타늄 및 페로실리코티타늄	5	5	0			
7202920000	-- 페로바나듐	5	5	0			
7202930000	-- 페로니오븀	5	5	0			
7202990000	-- 기타	5	5	0			
7203100000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5	5	0			
7203900000	- 기타	5	5	0			
7204100000	-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0			
7204210000	-- 스테인리스강의 것	0	0	0			
7204290000	-- 기타	0	0	0			
7204300000	-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0			
7204410000	-- 선삭, 세이빙, 칩, 밀링웨이스트, 톱밥, 파일링, 트리밍 및 스탬핑(번들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0			
7204490000	-- 기타	0	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204500000	-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0	0	0			
7205100000	- 입(粒)	5	5	0			
7205210000	-- 합금강의 것	5	5	0			
7205290000	-- 기타	5	5	0			
7206100000	- 잉곳	5	5	0			
7206900000	- 기타	5	5	0			
7207110000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	5	0			
7207120000	-- 기타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5	5	0			
7207190000	-- 기타	5	5	0			
7207200000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5 퍼센트 이상인 것	5	5	0			
7208101000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5	0			
7208102000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0			
7208103000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5	0			
7208104000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5	0			
7208251000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5	0			
7208252000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0			
7208260000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5	0			
7208270000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5	0			
7208360000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5	0			
7208371000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12 퍼센트 이상인 것	5	5	0			
7208379000	--- 기타	10	5	0			
7208381000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12 퍼센트 이상인 것	5	5	0			
7208389000	--- 기타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208391000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12 퍼센트 이상인 것	5	5	0			
7208399100	---- 두께가 1.8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0			
7208399900	---- 기타	10	5	0			
7208401010	--- 두께가 1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5	0			
7208401090	--- 기타	10	5	0			
7208402000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0			
7208403000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5	0			
7208404000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5	0			
7208511000	--- 두께가 12.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5	0			
7208512000	--- 두께가 10 밀리미터 초과 12.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0			
7208521000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6 퍼센트 이상인 것	5	5	0			
7208529000	---- 기타	10	5	0			
7208530000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5	0			
7208540000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5	0			
7208900000	- 기타	10	5	0			
7209150000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5	5			b
7209160010	--- ASTM의 A 424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 것	0	0	0			
7209160090	--- 기타	10	5	5			b
7209170010	--- ASTM의 A 424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 것	0	0	0			
7209170090	--- 기타	10	5	5			b
7209181010	----- ASTM의 A 623 또는 A623M JIS G 3303에 따라 제조된 흑색 슈트	0	0	0			
7209181020	----- ASTM의 A424 또는 이와 동등한 것에 따라 제조된 슈트	0	0	0			
7209181090	----- 기타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209182010	----- ASTM 의 A 623 또는 A623M JIS G 3303 에 따라 제조된 흑색 슈트	5	5	0			
7209182090	----- 기타	5	5	0			
7209250000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5	0			
7209260010	---- ASTM 의 A424 또는 이와 동등한 것에 따라 제조된 슈트	10	5	0			
7209260090	---- 기타	10	5	5			b
7209270010	---- ASTM 의 A 424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 것	10	5	0			
7209270090	---- 기타	10	5	5			b
7209280010	---- ASTM 의 A 424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 것	10	5	0			
7209280090	---- 기타	10	5	5			b
7209900000	- 기타	10	5	0			
7210110000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5	0			
7210120000	--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5	5			b
7210200000	- 납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10	5	5			b
7210300000	- 아연으로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10	5	0			
7210410000	-- 파형의 것	15	10	7			b
7210490000	-- 기타	15	10	7			b
7210500000	- 산화크로뮴 또는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10	5	5			b
7210610000	-- 알루미늄-아연 합금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10	5	0			
7210690000	-- 기타	10	5	0			
7210701000	-- 알루미늄-아연 합금으로 사전 도포한 것	10	5	5			b
7210709000	-- 기타	10	5	5			b
7210900000	- 기타	10	5	5			b
7211130000	-- 4 면을 압연한 것 또는 크로스드박스패스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하며,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코일상의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7211140000	- - 기타(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10	5	0			
721119100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6 퍼센트 이상인 것	5	5	0			
7211199000	- - - 기타	10	5	5			b
72112300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25 퍼센트 미만인 것	10	5	0			
7211290000	- - 기타	10	5	5			b
7211900000	- 기타	10	5	0			
7212100000	- 주석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10	5	5			b
7212200000	- 아연으로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것	10	5	5			b
7212300000	- 기타의 방법으로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10	5	5			b
7212400000	- 페인트한 것, 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10	5	5			b
7212500000	- 기타의 방법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10	5	5			b
7212600000	- 클래드한 것	10	5	5			b
72131000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리브, 홈 또는 기타 변형을 포함하는 것	15	10	7			b
7213200000	- 기타(괘삭강의 것에 한한다)	10	5	5			b
7213911000	- - - 크로뮴, 니켈, □□□□□□동 및 몰리브데늄의 총 함유량이 0.12 퍼센트 미만인 것	10	5	5			b
7213919000	- - - 기타	10	5	5			b
7213990010	- - - 크로뮴, 니켈, 동 및 몰리브데늄의 총 함유량이 0.12 퍼센트 미만인 것	5	5	5			
7213990090	- - - 기타	10	5	5			b
7214100000	- 단조한 것	10	5	5			b
72142000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리브, 홈 또는 기타 변형을 포함하는	15	10	7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7214301000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5			b
7214309000	-- 기타	5	5	5			
7214911000	----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5			b
7214919000	---- 기타	5	5	5			
7214991000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5			b
7214999000	---- 기타	5	5	5			
7215101000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5			b
7215109000	-- 기타	5	5	0			
7215501000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5			b
7215509000	-- 기타	5	5	5			
7215901000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5			b
7215909000	-- 기타	5	5	5			
7216100000	- 유·아이 또는 에이치형강(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0	5	5			b
7216210000	-- 엘형강	10	5	5			b
7216220000	-- 티형강	10	5	5			b
7216310000	-- 유형강	10	5	5			b
7216320000	-- 아이형강	10	5	5			b
7216330000	-- 에이치형강	10	5	5			b
7216400000	- 엘 또는 티형강(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21650000	- 기타 형강(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	5	5			b
7216610000	-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10	5	5			b
7216690000	- - 기타	10	5	5			b
7216910000	-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	10	5	5			b
7216990000	- - 기타	10	5	5			b
7217100000	- 도금 또는 도포하지 아니한 것(연마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10	7			b
7217200000	-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15	10	7			b
7217300000	- 기타 비(卑)금속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15	10	7			b
7217900000	- 기타	15	10	7			b
7218100000	- 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것	5	5	0			
7218910000	-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5	5	0			
7218990000	- - 기타	5	5	0			
7219110000	-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5	0			
7219120000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5	0			
72191300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5	0			
72191400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5	0			
7219210000	-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5	0			
7219220000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5	0			
72192300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5	0			
72192400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5	0			
7219310000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5	5	0			
72193200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219330000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5	0			
7219340000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7219350000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7219900000	- 기타	5	5	0			
7220110000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5	5	0			
7220120000	--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5	0			
722020000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5	5	0			
7220900000	- 기타	5	5	0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5	5	0			
7222111000	--- 지름이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0			
7222119000	--- 기타	5	5	0			
7222191000	--- 횡단면이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7222199000	--- 기타	5	5	0			
7222201000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7222209000	-- 기타	5	5	0			
7222301000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0			
7222309000	-- 기타	5	5	0			
7222400000	- 형강	5	5	0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	10	5	0			
7224100010	-- 봉소 합금강	5	5	0			
7224100090	-- 기타	5	5	0			
7224900010	-- 봉소 합금강	5	5	0			
7224900090	-- 기타	5	5	0			
7225110000	-- 방향성의 것	5	5	0			
7225190000	-- 기타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225300000	- 기타(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5	0			
7225400000	- 기타(코일상의 것은 제외하며,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5	0			
7225500010	-- 고속도강의 것	5	5	0			
7225500090	-- 기타	10	5	5			b
7225910010	--- 고속도강의 것	5	5	0			
7225910090	--- 기타	10	5	0			
7225920010	--- 고속도강의 것	5	5	0			
7225920090	--- 기타	10	5	5			b
7225990010	--- 고속도강의 것	5	5	0			
7225990090	--- 기타	10	5	0			
7226110000	-- 방향성의 것	5	5	0			
7226190000	-- 기타	5	5	0			
7226200000	- 고속도강의 것	5	5	0			
7226910000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5	5	0			
722692000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10	5	5			b
7226990000	-- 기타	10	5	5			b
7227100000	- 고속도강의 것	5	5	0			
72272000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5	5	0			
7227900010	-- 붕소 합금강	5	5	0			
7227900090	-- 기타	5	5	0			
7228100000	- 고속도강의 봉	5	5	0			
7228201000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0			
7228209000	-- 기타	5	5	0			
7228300000	- 기타의 봉(열간압연, 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	5	0			
7228401000	-- 횡단면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228409000	-- 기타	5	5	0			
7228501000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0			
7228509000	-- 기타	10	5	0			
7228601000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0			
7228609000	-- 기타	5	5	0			
7228700000	- 형강	5	5	0			
7228800000	- 중공드릴봉	5	5	0			
7229200000	- 실리콘망간강의 것	5	5	0			
7229900000	- 기타	5	5	0			
7301100000	- 강시판	10	5	5			b
7301200000	- 형강	15	5	0			
7302100000	- 케조	10	5	0			
7302300000	- 첨단케조, 교차구류, 전철봉과 기타 크로스피스	10	5	0			
7302400000	- 계육판과 저판	10	5	0			
7302901000	-- 침목	10	5	0			
7302909000	-- 기타	10	5	0			
7303000000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15	5	0			
7304110000	--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15	5	0			
7304190000	-- 기타	15	5	5			c
7304220000	-- 스테인리스강제의 드릴파이프	15	5	5			c
7304230000	-- 기타 드릴파이프	15	5	5			c
7304240000	-- 기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15	5	5			c
7304290000	-- 기타	15	10	10			c
7304310000	--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5	5	0			
7304390000	-- 기타	15	5	0			
7304410000	--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5	5	0			
7304490000	-- 기타	5	5	0			
7304510000	-- 냉간인발 또는	1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7304590000	-- 기타	15	5	0			
7304900000	- 기타	15	5	5			c
7305110000	--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15	5	5			c
7305120000	--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에 한한다)	15	5	5			c
7305190000	-- 기타	15	5	5			c
7305200000	-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케이싱	15	5	5			c
7305310000	--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15	5	0			
7305390000	-- 기타	15	5	0			
7305900000	- 기타	15	5	0			
7306110000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15	5	5			c
7306190000	-- 기타	15	10	7			b
7306210000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15	5	5			c
7306290000	-- 기타	15	10	10			c
7306301000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6 퍼센트 이상인 것	15	10	7			b
7306309100	---- 이중벽의 강제 튜브(바깥지름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5	0			
7306309200	---- 단일벽의 강제 튜브(지름이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5	0			
7306309900	---- 기타	15	10	7			b
7306400010	-- 지름이 12.7 밀리미터 이상 70.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5	0			
7306400090	-- 기타	5	5	0			
7306500000	-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기타 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5	5	0			
7306610000	--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15	10	7			b
7306690000	-- 기타	15	5	5			c
7306900000	- 기타	15	5	5			c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307110000	-- 비가단주철제의 것	15	5	5			c
7307190000	-- 기타	15	5	5			c
7307210000	-- 플랜지	10	5	5			b
7307220000	-- 나선가공한 엘보, 벤드와 슬리브	15	5	0			
7307230000	-- 바트용접한 연결구	15	5	0			
7307290000	-- 기타	15	5	0			
7307910000	-- 플랜지	15	5	5			c
7307920000	-- 나선가공한 엘보, 벤드와 슬리브	15	5	5			c
7307930000	-- 바트용접한 연결구	15	5	0			
7307990000	-- 기타	15	5	5			c
7308100000	- 다리와 교량	15	5	0			
7308200000	- 탑과 격자주	15	10	7			b
7308300000	- 문, 창 및 그들의 틀과 문지방	15	10	7			b
7308400000	- 비계·차단기·지주 또는 괘도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15	5	0			
7308901000	--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판·봉·형강·관 및 이와 유사한 것	15	10	7			b
7308902000	-- 수문	15	5	0			
7308909000	-- 기타	15	10	7			b
7309000000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각종 재료(압축 또는 액화가스는 제외한다)용의 것으로, 철강제의 것이며,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기계장치 또는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5	5	5			c
7310100000	-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15	5	5			c
7310210000	-- 납땜 또는 크림핑으로 봉합되는 캔	15	10	7			b
7310291000	---- 정액의 운반용 또는 공급용 이중벽 용기	5	5	0			
7310299000	---- 기타	15	10	7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311001010	-- 천연가스만으로 작동하기 위해 제조된 것	5	5	0			
7311001090	-- 기타	5	5	0			
7311009000	- 기타	15	10	7			b
7312101000	-- 타이어 아머용의 것	5	5	0			
7312109000	-- 기타	15	10	7			b
7312900000	- 기타	15	5	5			c
7313001000	- 유사선	15	10	7			b
7313009000	- 기타	15	10	7			b
7314120000	-- 기계류용 엔드리스밴드(스테인리스강제 의 것에 한한다)	10	5	0			
7314140000	-- 기타 직조한 클로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10	5	0			
7314191000	---- 기계류용 엔드리스밴드	15	10	7			b
7314199000	---- 기타	15	5	0			
7314200000	- 그릴, 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15	10	7			b
7314310000	--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15	5	0			
7314390000	-- 기타	15	10	0			
7314410000	-- 아연으로 도금 또는 도포한 것	15	10	7			b
7314420000	--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15	10	7			b
7314490000	-- 기타	15	10	7			b
7314500000	- 익스팬디드메탈	15	10	0			
7315110000	-- 롤러체인	15	5	5			c
7315120000	-- 기타체인	15	5	5			c
7315190000	-- 부분품	15	5	5			c
7315200000	- 스키드체인	15	10	7			b
7315810000	-- 스테드링크	15	5	0			
7315820000	-- 기타(용접한 링크에 한한다)	15	10	7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315890000	- - 기타	15	5	5			c
7315900000	- 기타 부분품	15	5	5			c
7316000000	철강제의 닳과 그 부분품	15	5	0			
7317000000	철강제의 못, 압정, 제도용 핀, 파형 못, 스태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가 기타 재료제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두부가 동인 물품은 제외한다)	15	10	7			b
7318110000	- - 코치스크루	15	5	5			c
7318120000	- - 기타 목재 스크루	15	5	0			
7318130000	- - 스크루축과 스크루링	15	5	5			c
7318140000	- - 셀프태핑 스크루	15	5	0			
7318151000	- - - 콘크리트용의 익스팬시블 앵커 볼트	15	5	5			c
7318159000	- - - 기타	15	10	7			b
7318160000	- - 너트	15	5	5			c
7318190000	- - 기타	15	5	5			c
7318210000	- - 스프링와셔와 기타 록와셔	15	5	5			c
7318220000	- - 기타 와셔	15	5	5			c
7318230000	- - 리벳	15	5	5			c
7318240000	- - 코터와 코터핀	15	5	5			c
7318290000	- - 기타	15	5	5			c
7319200000	- 안전핀	20	15	0			
7319300000	- 기타 핀	20	15	10			b
7319901000	- - 수봉침, 수편침 및 자수용 천공수침	5	5	0			
7319909000	- - 기타	5	5	0			
7320100000	- 판상 스프링과 그 판	15	10	7			b
7320201000	- - 차량 서스펜션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	15	5	5			c
7320209000	- - 기타	15	5	5			c
7320900000	- 기타	15	5	5			c
7321111100	- - - - 내장 쿠키	20	15	10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32111200	----- 테이블 쿠커	20	15	10			b
732111900	----- 기타	20	15	10			b
732119000	---- 기타	20	15	10			b
732120000	-- 액체연료용의 것	20	15	10			b
732191000	---- 고체연료용의 것	20	15	0			
732199000	---- 기타	20	15	0			
732181000	--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20	15	10			b
732182000	-- 액체연료용의 것	20	15	10			b
732189100	---- 고체연료용의 것	20	15	10			b
732189900	---- 기타	20	15	10			b
732190100	-- 탱크가 없는 물가열기용 가스 노 버너	0	0	0			
732190900	-- 기타	20	15	7			a
732211000	-- 주철제의 것	15	5	0			
732219000	-- 기타	15	5	0			
732290000	- 기타	15	10	0			
732310000	-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 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20	15	10			b
732391100	---- 제품	20	15	10			b
732391200	---- 부분품	20	15	10			b
732392100	---- 제품	20	15	10			b
732392200	---- 부분품	20	15	10			b
732393100	---- 제품	20	15	10			b
732393200	---- 부분품	20	15	10			b
732394100	---- 제품	20	15	10			b
732394900	---- 부분품	20	15	10			b
732399100	---- 제품	20	15	10			b
732399900	---- 부분품	20	15	10			b
732410000	-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15	10	7			b
732421000	-- 주철제의 것(법량제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324290000	- - 기타	15	10	0			
7324900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15	10	7			b
7325100000	- 비가단주철제의 것	15	5	5			c
7325910000	- -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5	10	7			b
7325990000	- - 기타	15	5	5			c
7326110000	- -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5	5	0			
7326190000	- - 기타	15	5	5			c
7326200000	- 철강선제의 제품	15	5	5			c
7326901000	- - 가변 단면의 부재(部材)	5	5	0			
7326909000	- - 기타	15	5	5			c
7401001000	- 동의 매트	5	5	0			
7401002000	- 시멘트동(침전동)	5	5	0			
7402001000	- 조동	5	5	0			
7402002000	- 기타 정제하지 아니한 것	5	5	0			
7402003000	- 전해정제용 동 양극	5	5	0			
7403110000	- - 음극과 음극의 형재	5	5	0			
7403120000	- - 와이어바	5	5	0			
7403130000	- - 빌렛	5	5	0			
7403190000	- - 기타	5	5	0			
7403210000	- - 동-아연의 합금(황동)	5	5	0			
7403220000	- - 동-주석의 합금(청동)	5	5	0			
7403291000	- - - 동-니켈의 합금(백동) 또는 동-니켈-아연의 합금(양백)	5	5	0			
7403299000	- - - 기타	5	5	0			
7404000010	-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4 퍼센트 이상인 것	5	5	0			
7404000090	- 기타	5	5	0			
7405000000	동의 마스터알로이	5	5	0			
7406100000	- 비충상조직의 분	5	5	0			
7406200000	- 충상조직의 분, 플레이크	5	5	0			
7407100000	- 정제한 동의 것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407210000	--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10	5	5			b
7407290000	-- 기타	10	5	5			b
7408110000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5	0			
7408190000	-- 기타	15	5	0			
7408210000	-- 동-아연 합금의 것(황동)	15	10	7			b
7408220000	--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15	10	0			
7408290000	-- 기타	15	5	0			
7409110000	-- 코일상의 것	10	5	0			
7409190000	-- 기타	10	5	0			
7409210000	-- 코일상의 것	10	5	0			
7409290000	-- 기타	10	5	0			
7409310000	-- 코일상의 것	10	5	0			
7409390000	-- 기타	10	5	0			
7409400000	- 동-니켈 합금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의 것(양백)	10	5	0			
7409900000	- 기타 동 합금의 것	10	5	0			
7410110000	-- 정제한 동의 것	10	5	0			
7410120000	-- 동합금의 것	10	5	0			
7410210000	-- 정제한 동의 것	10	5	0			
7410220000	-- 동합금의 것	10	5	0			
7411100000	- 정제한 동제의 것	15	10	0			
7411210000	-- 동-아연 합금제의 것(황동)	15	5	0			
7411220000	-- 동-니켈 합금제의 것(백동) 또는 동-니켈-아연 합금제의 것(양백)	15	5	0			
7411290000	-- 기타	15	5	0			
7412100000	- 정제한 동제의 것	15	5	0			
7412200000	- 동합금제의 것	15	5	5			c
7413000000	동제의 연선, 케이블, 엮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5	5	5			c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415100000	- 못과 압정, 제도용 핀, 스테인플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5	5	5			c
7415210000	-- 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15	5	0			
7415290000	-- 기타	15	5	5			c
7415330000	-- 스크루, 볼트와 너트	15	5	0			
7415390000	-- 기타	15	5	0			
7418110000	--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20	15	10			b
7418191000	--- 비전기식 조리용기구 또는 가열기구와 그 부분품	20	15	5			a
7418199000	--- 기타	20	15	5			a
741820000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20	15	10			b
7419100000	- 체인과 그 부분품	15	5	0			
7419910000	-- 주소, 주형, 압착 또는 단조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5	10	7			b
7419991000	--- 클로드(엔드리스밴드를 포함한다)	5	5	0			
7419992000	--- 동제의 스프링	5	5	0			
7419999000	--- 기타	15	10	5			a
7501100000	- 니켈의 매트	5	5	0			
7501200000	- 소결한 산화니켈 및 니켈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5	5	0			
7502100000	-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	0	0	0			
7502200000	- 니켈 합금	5	5	0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7504000000	니켈의 분과 플레이크	5	5	0			
7505110000	--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5	5	0			
7505120000	-- 니켈 합금의 것	5	5	0			
7505210000	--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5	5	0			
7505220000	-- 니켈 합금의 것	5	5	0			
7506100000	-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5	5	0			
7506200000	- 니켈 합금의 것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507110000	--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제의 것	5	5	0			
7507120000	-- 니켈 합금제의 것	5	5	0			
7507200000	- 관연결구류	5	5	0			
7508100000	- 니켈선제의 클로드, 그릴 및 망	5	5	0			
7508901000	-- 전기도금용 양극(전기분해를 통해 생성된 것을 포함한다)	5	5	0			
7508909000	-- 기타	5	5	0			
7601100000	-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5	5	0			
7601200000	- 알루미늄 합금	5	5	0			
760200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7603100000	- 비충상조직의 분	5	5	0			
7603200000	- 충상조직의 분, 플레이크	5	5	0			
7604101000	-- 봉	10	5	0			
7604102000	-- 프로파일(중공프로파일을 포함한다)	10	5	0			
7604210000	-- 중공프로파일	10	5	5			b
7604291000	---- 봉	10	5	5			b
7604292000	---- 기타 프로파일	10	5	5			b
7605110000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5	5			b
7605190000	-- 기타	15	10	7			b
7605210000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5	5			b
7605290000	-- 기타	15	10	5			a
7606110000	--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	10	5	0			
7606122000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5 퍼센트 이상인 것(두랄루민)	10	5	0			
7606129000	---- 기타	10	5	0			
7606911000	---- 관형 용기 제조용 디스크	10	5	0			
7606919000	---- 기타	10	5	5			b
7606922000	---- 관형 용기 제조용 디스크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606923000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0.5 퍼센트 이상인 것(두랄루민)	10	5	5			b
7606929000	--- 기타	10	5	5			b
7607110000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10	5	5			b
7607190000	-- 기타	10	5	5			b
7607200000	- 뒷면을 붙인 것	15	10	7			b
7608101000	-- 바깥지름이 9.52 밀리미터 이하이고, 벽의 두께가 0.9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7608109000	-- 기타	15	5	5			c
7608200000	- 알루미늄 합금제의 것	15	10	7			b
7609000000	알루미늄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15	5	5			c
7610100000	- 문, 창 및 그들의 틀과 문지방	15	10	7			b
7610900000	- 기타	15	10	7			b
7611000000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5	0			
7612100000	- 연질의 튜브형 용기	15	10	0			
7612901000	-- 우유 운송용 용기	15	10	5			a
7612903000	-- 극저온 용기	5	5	0			
7612904000	-- 통, 드럼 및 캔	15	5	0			
7612909000	-- 기타	15	10	7			b
7613000000	알루미늄제의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에 한한다)	15	5	0			
7614100000	-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15	10	7			b
7614900000	- 기타	15	10	7			b
7615110000	--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 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20	1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615191100	- - - - 압력 쿠커	20	15	10			b
7615191900	- - - - 기타	20	15	10			b
7615192000	- - - 식탁용품, 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의 부분품	20	15	10			b
761520000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20	15	10			b
7616100000	- 못, 압정, 스테인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크루, 볼트, 너트, 스크루축, 리벳, 코터, 코터핀,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5	5	5			c
7616910000	- - 알루미늄선제의 클로드, 그릴, 망 및 울타리	15	5	0			
7616991000	- - - 익스팬디드메탈	15	5	0			
7616999000	- - - 기타	15	5	5			c
7801100000	- 정제한 연	5	5	0			
7801910000	- -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	5	5	0			
7801990000	- - 기타	5	5	0			
7802000000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7804110000	- - 쉬트, 스트립 및 박[두께(보강재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5	0			
7804190000	- - 기타	10	5	5			b
7804200000	- 분과 플레이크	5	5	0			
7806001000	- 방사성 제품용 차폐 용기	5	5	0			
7806002000	- 봉, 프로파일과 선	10	5	0			
7806003000	- 관과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15	5	0			
7806009000	- 기타	10	5	5			b
79011100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5	5	0			
79011200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99 퍼센트 미만인 것	5	5	0			
7901200000	- 아연 합금	5	5	0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7903100000	- 아연더스트	5	5	0			
7903900000	- 기타	5	5	0			
7904001000	- 선	5	5	0			
7904009000	- 기타	5	5	0			
7905000000	- 아연의 판, 쉬트, 스트립 및 박	10	5	0			
7907001000	- 홍통, 지붕덮개, 채광 창틀 및 기타 가공한 건축용 재료	5	5	0			
7907002000	- 관과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5	5	0			
7907009000	- 기타	15	10	7			b
8001100000	- 합금하지 아니한 주석	5	5	0			
8001200000	- 주석 합금	5	5	0			
8002000000	주석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8003001000	- 주석합금의 봉 및 선(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15	5	0			
8003009000	- 기타	10	5	0			
8007001000	- 판, 쉬트, 스트립 및 박(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5	0			
8007002000	-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분과 플레이크	5	5	0			
8007003000	- 관과 관연결구류(예: 커플링, 엘보, 슬리브)	5	5	0			
8007009000	- 기타	15	15	5			
8101100000	- 분	5	5	0			
8101940000	- - 텅스텐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5	5	0			
8101960000	- - 선	5	5	0			
8101970000	- -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8101990000	- - 기타	5	5	0			
8102100000	- 분	5	5	0			
8102940000	- - 몰리브데늄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포함한다)						
8102950000	-- 봉(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 판, 쉬트, 스트립 및 박	5	5	0			
8102960000	-- 선	5	5	0			
810297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8102990000	-- 기타	5	5	0			
8103200000	- 탄탈륨의 괴(단순히 소결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분	5	5	0			
810330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8103900000	- 기타	5	5	0			
8104110000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9.8 퍼센트 이상인 것	5	5	0			
8104190000	-- 기타	5	5	0			
810420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8104300000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연삭설 및 입, 분	5	5	0			
8104900000	- 기타	5	5	0			
8105200000	- 코발트의 매트와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간생산물, 코발트의 괴, 분	5	5	0			
810530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8105900000	- 기타	5	5	0			
8106001100	-- 바늘모양의 것	5	5	0			
8106001900	-- 기타	5	5	0			
8106002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8106009000	- 기타	5	5	0			
8107200000	- 카드뮴의 괴, 분	5	5	0			
810730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8107900000	- 기타	5	5	0			
8108200000	- 티타늄의 괴, 분	5	5	0			
810830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8108900000	- 기타	5	5	0			
8109200000	- 지르코늄의 괴, 분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10930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8109900000	- 기타	5	5	0			
8110100000	- 안티모니의 과, 분	5	5	0			
811020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8110900000	- 기타	5	5	0			
8111001100	-- 망간의 과, 분	5	5	0			
81110012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8111009000	- 기타	5	5	0			
8112120000	-- 과, 분	5	5	0			
811213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8112190000	-- 기타	5	5	0			
8112210000	-- 과, 분	5	5	0			
811222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8112290000	-- 기타	5	5	0			
8112510000	-- 과, 분	5	5	0			
8112520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8112590000	-- 기타	5	5	0			
8112921000	--- 과, 분	5	5	0			
8112922000	--- 웨이스트와 스크랩	5	5	0			
8112990000	-- 기타	5	5	0			
8113000000	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5	5	0			
8201100000	- 가래 및 삽	15	10	7			b
8201200000	- 포크	15	5	0			
8201300000	- 곡괭이, 픽스, 괭이와 쇠스랑	15	10	7			b
8201401000	-- 마체테 칼	15	10	7			b
8201409000	-- 기타	15	10	7			b
8201500000	-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용 가위를 포함한다)	15	5	0			
8201601000	-- 양손용 전지가위	15	5	0			
8201609000	-- 기타	15	5	0			
8201901000	-- 낫, 초절기 또는 짚용 칼	15	1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201909000	-- 기타	15	10	7			b
8202101000	-- 수동식 톱	15	5	0			
8202109000	-- 기타	15	10	7			b
8202200000	- 띠톱의 날	15	5	0			
8202310000	-- 작동하는 부분이 강제 의 것	5	5	0			
8202390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5	0			
8202400000	- 체인톱의 날	5	5	0			
8202910000	--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15	5	0			
8202990000	-- 기타	15	5	0			
8203100000	-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15	10	7			b
8203200000	- 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 집게, 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15	5	5			c
8203300000	- 금속 절단용의 가위 및 이와 유사한 공구	15	5	0			
8203400000	- 파이프 커터, 볼트 크로퍼, 천공펀치 및 이와 유사한 공구	5	5	0			
8204110000	-- 조정할 수 없는 것	15	5	5			c
8204120000	-- 조정할 수 있는 것	15	5	0			
8204200000	- 호환성 스패너소켓(손잡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5	0			
8205100000	- 드릴링, 드레딩 또는 태핑용 공구	5	5	0			
8205200000	- 해머와 슬레즈해머	15	5	5			c
8205300000	- 목재가공용의 대패, 끌, 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15	5	0			
8205401000	-- 일자형 나사용의 것	15	10	0			
8205409000	-- 기타	15	5	0			
8205510000	-- 가정용 공구	20	10	5			b
8205591000	---- 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	5	5	0			
8205592000	---- 끌	15	5	0			
8205593000	---- 조각칼과 끌	15	5	0			
8205596000	---- 기름 통 및 주유기, 그리스 건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205599100	----- 특수공구(시계제조자용 및 보석상용의 것에 한한다)	5	5	0			
8205599200	----- 석공, 주형공, 미장공, 도장공용 공구(모종삼, 스무더, 서버, 스크레이퍼 등)	15	10	7			b
8205599900	----- 기타	15	5	5			c
8205601000	-- 블로램프	5	5	0			
8205609000	-- 기타	15	5	0			
8205700000	- 바이스, 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15	10	0			
8205800000	- 모루, 가반식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라인딩휠	15	5	0			
8205900000	-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15	5	0			
82060000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15	5	0			
8207131000	--- 트레판 및 크라운	15	5	0			
8207132000	--- 드릴	15	5	0			
8207133000	--- 일체 나사송곳	15	5	0			
8207139000	--- 기타 공구	15	5	0			
8207191000	--- 트레판 및 크라운	15	5	0			
8207192100	----- 다이아몬드 모양의 것	15	10	5			a
8207192900	----- 기타	15	5	0			
8207193000	--- 일체 나사송곳	15	5	0			
8207198000	--- 기타 공구	15	5	0			
8207200000	- 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	5	5	0			
8207300000	- 프레스, 스탬핑 또는 편칭용의 공구	15	10	7			b
8207400000	- 태핑 또는 드레딩용의 공구	5	5	0			
8207500000	- 드릴링용의 공구(착암용의 것은 제외한다)	15	10	7			b
8207600000	- 보링 또는 브로칭용의 공구	5	5	0			
8207700000	- 밀링용의 공구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207800000	- 터닝용의 공구	15	5	0			
8207900000	- 기타 호완성 공구	15	10	7			b
8208100000	- 금속 가공용의 것	15	10	7			b
8208200000	- 목재 가공용의 것	15	5	0			
8208300000	- 주방 기구 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의 것	15	5	0			
8208400000	- 농업, 원예 또는 임업 기계용의 것	15	10	7			b
8208900000	- 기타	5	5	0			
8209001000	- 텅스텐 카바이드제(볼프람)의 것	15	5	0			
8209009000	- 기타	15	5	0			
8210001000	- 분쇄기	20	15	7			a
8210009000	- 기타	20	15	7			a
82111000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20	15	7			a
8211910000	- -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20	15	7			a
8211920000	- - 칼날이 고정된 기타의 칼	15	15	7			
8211931000	- - - 달구질 및 접목용 칼	5	5	0			
8211939000	- - - 기타	5	5	0			
8211941000	- - - 식탁용 칼용의 것	15	5	0			
8211949000	- - - 기타	10	5	0			
8211950000	- - 비(卑)금속제의 손잡이	20	5	0			
8212101000	- - 면도기	20	15	5			a
8212102000	- - 안전 면도기	20	15	5			a
8212200000	-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	20	15	0			
8212900000	- 기타의 부분품	20	15	0			
8213000000	가위, 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그 날	15	15	5			
8214100000	- 종이용 칼, 편지개봉기, 지우개용 칼, 연필깎기와 그 날	15	10	7			b
8214200000	-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5	5	0			
8214901000	- - 이발기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214909000	- - 기타	15	10	7			b
82151000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하나의 물품은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에 한한다)	20	15	10			b
8215200000	- 위 물품이 조합된 기타의 세트	20	15	10			b
8215910000	-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20	15	10			b
8215990000	- - 기타	20	15	10			b
8301100000	- 자물쇠	15	10	7			b
8301200000	-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자물쇠	15	10	7			b
8301300000	- 가구에 사용되는 종류의 자물쇠	15	10	7			b
8301401000	- - 장감한 또는 보강한 금고용의 것	15	5	0			
8301409000	- - 기타	15	10	7			b
8301500000	-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15	5	0			
8301600000	- 부분품	10	5	5			b
8301700000	-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15	10	7			b
8302101000	- - 자동차용의 것	15	5	0			
8302109000	- - 기타	15	5	5			c
8302200000	- 카스터	15	5	5			c
8302300000	- 자동차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5	5	5			c
8302410000	- -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15	10	7			b
8302420000	- - 기타(가구용으로 적합한 것에 한한다)	15	10	7			b
8302490000	- - 기타	15	5	5			c
8302500000	- 모자걸이, 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15	10	7			b
8302600000	- 자동차용 폐지기	15	5	0			
8303001000	- 장감한 또는 보강한 금고	20	5	0			
8303002000	- 스트롱박스와 스트롱룸용의 문과 저장실	15	10	7			b
8303009000	- 기타	2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304000000	비(卑)금속제의 서류정리함, 카드인덱스함, 페이퍼트레이, 페이퍼레스트, 펜트레이,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 또는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20	10	5			b
8305100000	- 서류철용 피팅	15	10	7			b
8305200000	- 스트립상의 스테이플	15	10	7			b
8305900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15	10	7			b
8306100000	- 벨, 징 및 이와 유사한 것	15	10	7			b
8306210000	-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20	15	7			a
8306290000	- - 기타	20	15	7			a
8306300000	- 사진틀·그림틀 또는 이와 유사한 틀, 거울	20	15	7			a
8307100000	- 철강제의 것	15	5	5			c
8307900000	- 기타 비(卑)금속제의 것	15	5	0			
8308101100	- - - 철강제의 것	15	10	7			b
8308101200	- - - 알루미늄제의 것	15	5	0			
8308101900	- - - 기타	15	10	7			b
8308109000	- - 기타	15	10	7			b
8308200000	- 관리벳 또는 이고(二股)리벳	15	10	7			b
8308900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15	10	7			b
8309100000	- 크라운코르크	15	10	7			b
8309900000	- 기타	15	10	5			a
8310000000	비(卑)금속제의 사인판, 명판, 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 숫자, 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	5	5			c
8311100000	- 비(卑)금속제의 용접봉(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15	10	5			a
8311200000	- 비(卑)금속제의 선(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의 것에 한한다)	1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311300000	- 비(卑)금속제의 도포된 봉과 심(芯)이 충전된 선(불로 납땜, 납접 또는 용접하는 것에 한한다)	15	5	5			c
8311900000	- 기타	15	10	5			a
8401100000	- 원자로	5	5	0			
8401200000	-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계류와 기기 및 그 부분품	5	5	0			
8401300000	-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아니한 연료체(카트리지)	5	5	0			
8401400000	- 원자로의 부분품	5	5	0			
8402110000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보일러	15	10	7			b
8402120000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보일러	15	10	5			a
8402190000	- 기타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15	10	7			b
8402200000	- 과열수보일러	15	5	0			
8402900000	- 부분품	15	10	7			b
8403100000	- 보일러	15	10	7			b
8403900000	- 부분품	15	5	0			
8404100000	- 제 8402 호 또는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15	10	0			
8404200000	- 스팀 또는 기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15	5	0			
8404900000	- 부분품	15	5	0			
8405100000	-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5	0			
8405900000	- 부분품	10	5	0			
8406100000	- 선박추진용 터빈	5	5	0			
8406810000	-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5	0			
8406820000	-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5	5	0			
8406900000	- 부분품	5	5	0			
8407100000	- 항공기용 엔진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07210000	-- 아웃보드 모터	5	5	0			
8407290000	-- 기타	5	5	0			
8407310000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것	5	5	0			
8407320000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것	5	5	0			
8407330000	--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1,000 시시 이하인 것	5	5	0			
8407340010	---- 천연가스만으로 작동하기 위해 제조된 것	10	5	0			
8407340090	---- 기타	10	5	0			
8407900010	-- 천연가스만으로 작동하기 위해 제조된 것	5	5	0			
8407900090	-- 기타	5	5	0			
8408100000	- 선박추진용 엔진	5	5	0			
8408201000	-- 실린더 용량이 4,000 시시 이하인 것	10	5	0			
8408209000	-- 기타	10	5	0			
8408901000	-- 출력이 130 킬로와트(174 마력) 이하인 것	10	5	0			
8408902000	-- 출력이 130 킬로와트(174 마력) 초과인 것	5	5	0			
8409100000	- 항공기 엔진용의 것	5	5	0			
8409911000	---- 블록 및 실린더 헤드	5	5	0			
8409912000	---- 실린더 라이너	15	10	7			b
8409913000	---- 커넥팅 로드	5	5	0			
8409914000	---- 피스톤	15	5	0			
8409915000	---- 링	5	5	0			
8409916000	---- 카뷰레이터 및 그 부분품	5	5	5			
8409917000	---- 밸브	15	5	0			
8409918000	---- 크랭크케이스	5	5	0			
8409919100	----- 연료가스로 작동하기 위한 자동차 카뷰레이션 시스템 전환용 장비	15	5	0			
8409919900	----- 기타	15	5	5			c
8409991000	---- 피스톤	1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09992000	--- 링	5	5	0			
8409993000	--- 연료 시스템용 인젝터 및 기타 부분품	5	5	0			
8409994000	--- 블록 및 실린더 헤드	5	5	0			
8409995000	--- 실린더 라이너	5	5	0			
8409996000	--- 커넥팅 로드	5	5	0			
8409997000	--- 밸브	5	5	0			
8409998000	--- 크랭크케이스	5	5	0			
8409999100	----- 밸브 가이드	5	5	0			
8409999200	----- 피스톤 핀	5	5	0			
8409999900	----- 기타	5	5	5			
8410110000	--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15	5	0			
8410120000	--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15	5	0			
8410130000	--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15	5	0			
841090000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5	5	0			
8411110000	-- 추진력이 25 킬로뉴턴 이하인 것	5	5	0			
8411120000	-- 추진력이 25 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5	5	0			
8411210000	--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5	5	0			
8411220000	--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5	0			
8411810000	--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5	5	0			
8411820000	--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5	0			
8411910000	--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의 것	5	5	0			
8411990000	-- 기타	5	5	0			
8412100000	- 반동 엔진(터보제트는 제외한다)	5	5	0			
8412210000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5	5	0			
8412290000	-- 기타	5	5	0			
8412310000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12390000	-- 기타	5	5	0			
8412801000	-- 풍력엔진	5	5	0			
8412809000	-- 기타	5	5	0			
8412901000	-- 항공기 엔진의 것	5	5	0			
8412909000	-- 기타	5	5	0			
8413110000	-- 연료 또는 윤활유 급유용의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것에 한한다)	5	5	0			
8413190000	-- 기타	15	5	0			
8413200000	- 수직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 또는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	10	7			b
8413301000	-- 항공기 엔진용의 것	5	5	0			
8413302000	-- 기타(분사 펌프에 한한다)	5	5	0			
8413309100	---- 연료의 것	5	5	0			
8413309200	---- 기름의 것	5	5	0			
8413309900	---- 기타	15	5	0			
8413400000	- 콘크리트 펌프	5	5	0			
8413500000	- 기타의 용적형 왕복 펌프	15	5	0			
8413601000	-- 더블스크루 펌프(축류의 것에 한한다)	15	5	0			
8413609000	-- 기타	15	5	0			
8413701100	---- 출력 지름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5			b
8413701900	---- 기타	10	5	5			b
8413702100	---- 출력 지름이 3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5	5			b
8413702900	---- 기타	15	5	0			
8413811000	---- 분사 펌프	15	10	0			
8413819000	---- 기타	15	5	0			
8413820000	-- 액체 엘리베이터	5	5	0			
8413911000	---- 연료 보급소 펌프	5	5	0			
8413912000	---- 항공기 엔진용의 것	5	5	0			
8413913000	---- 기타 엔진의 연료용,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윤활유용 또는 냉각제용의 것						
8413919000	-- 기타	10	5	5			b
8413920000	-- 액체 엘리베이터의 것	5	5	0			
8414100000	- 진공펌프	15	5	0			
8414200000	- 손 또는 발작동식의 기체펌프	15	5	0			
8414304000	-- 화물운송용 자동차용의 것	5	5	0			
8414309100	----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동력이 0.37 킬로와트(1/2 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0	0	0			
8414309200	----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동력이 0.37 킬로와트(1/2 마력)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5	0			
8414309900	---- 기타	15	5	0			
8414401000	-- 동력이 30 킬로와트(40 마력) 미만인 것	15	5	0			
8414409000	-- 기타	15	5	0			
8414510000	-- 테이블, 바닥, 벽, 창문, 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출력이 125 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	20	15	10			b
8414590000	-- 기타	15	5	5			c
8414600000	-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	10	7			c
8414801000	-- 자동차용 압축기	5	5	0			
8414802100	---- 동력이 30 킬로와트(40 마력) 미만인 것	15	5	0			
8414802210	----- 천연가스만으로 작동하기 위해 제조된 것	15	5	0			
8414802290	----- 기타	10	5	5			b
8414802310	----- 천연가스만으로 작동하기 위해 제조된 것	15	5	0			
8414802390	----- 기타	15	5	0			
8414809000	-- 기타	15	10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14901000	-- 압축기의 것	10	5	5			b
8414909000	-- 기타	10	5	5			b
8415101000	-- 시간당 30,000 비티유 이하인 냉장 유닛을 장착한 것	15	5	5			c
8415109000	-- 기타	15	5	5			c
8415200000	- 자동차용의 것(탑승자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15	10	5			a
8415811000	---- 시간당 30,000 비티유 이하인 냉장 유닛을 장착한 것	15	5	0			
8415819000	---- 기타	15	5	0			
8415822000	---- 시간당 30,000 비티유 이하인 것	15	5	5			c
8415823000	---- 시간당 30,000 비티유 초과 240,000 비티유 이하인 것	15	5	5			c
8415824000	---- 시간당 240,000 비티유를 초과하는 것	15	5	0			
8415831000	---- 시간당 30,000 비티유 이하인 것	15	5	0			
8415839000	---- 기타	15	5	5			c
8415900000	- 부분품	10	5	5			b
8416100000	- 액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15	5	0			
8416201000	-- 분쇄한 고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15	5	0			
8416202000	-- 기체연료용의 노용 버너	15	5	0			
8416203000	-- 콤비네이션 버너	15	5	0			
8416300000	- 기계식 스토커(그들의 기계식 불판, 기계식 회배출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15	5	0			
8416900000	- 부분품	10	5	0			
8417100000	- 배소,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용의 노와 오븐(광석, 황철강 또는 금속 처리용의 것에 한한다)	15	5	0			
8417201000	-- 터널오븐	15	10	7			b
8417209000	-- 기타	15	10	7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17802000	-- 도자제품용 노	15	5	0			
8417803000	-- 이화학용 노	15	5	0			
8417809000	-- 기타	10	5	5			b
8417900000	- 부분품	10	5	5			b
8418101000	-- 용량이 184 리터 이하인 것	20	15	12			c
8418102000	-- 용량이 184 리터 이상 269 리터 이하인 것	20	15	12			c
8418103000	-- 용량이 269 리터 이상 382 리터 이하인 것	20	15	12			c
8418109000	-- 기타	20	15	12			c
8418211000	---- 용량이 184 리터 이하인 것	20	15	12			c
8418212000	---- 용량이 184 리터 이상 269 리터 이하인 것	20	15	12			c
8418213000	---- 용량이 269 리터 이상 382 리터 이하인 것	20	15	12			c
8418219000	---- 기타	20	15	10			b
8418291000	---- 흡수식의 것(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20	15	10			b
8418299000	---- 기타	20	15	10			b
8418300000	- 체스트형의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	15	12			c
8418400000	- 직립형의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0	15	12			c
8418500000	- 냉장 또는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목적의 기타 가구(체스트, 캐비닛, 전시용카운터, 쇼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15	10	7			b
8418610000	--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15	10	7			b
8418691110	----- 시간당 산출량이 1,0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15	5	0			
8418691190	----- 기타	15	10	0			
8418691200	----- 흡수식	5	5	0			
8418699100	----- 제빙기	15	5	0			
8418699200	----- 분수식 식수대	15	10	5			a
8418699300	----- 분해될 수 있는 패널로 구성된 챔버 또는	15	10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터널(냉장 장치를 포함한다)						
8418699400	----- 화물운송 차량용 냉장 유닛	5	5	0			
8418699900	----- 기타	15	10	5			a
8418910000	-- 냉장 또는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가구	15	10	10			c
8418991000	---- 플레이트 증발기	10	5	5			b
8418992000	---- 응축기	15	5	0			
8418999000	---- 기타	15	10	5 (단, 핀증발기는 7)			a (단, 핀증 발기 는 b)
8419110000	--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	20	15	10			b
8419191000	---- 용량이 120 리터 이하인 것	20	15	10			b
8419199000	---- 기타	20	15	10			b
8419200000	- 내과용, 외과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5	5	0			
8419310000	-- 농산물용의 것	10	5	5			b
8419320000	-- 목재,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용의 것	10	5	0			
8419391000	---- 이화학용 동결건조 장치 또는 동결건조기	5	5	0			
8419392000	---- 스프레이 드라이 유닛	15	10	5			a
8419399100	----- 광물용의 것	0	0	0			
8419399900	----- 기타	10	5	5			b
8419400000	- 증류기 또는 정류기	15	10	0			
8419501000	-- 저온 살균기	15	5	0			
8419509000	-- 기타	15	5	5			c
8419600000	- 기체 액화용의 기계류	10	5	0			
8419810000	--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	15	10	7			b
8419891000	---- 가압처리기	15	10	5			a
8419899110	----- 간접 접촉식 기화기(REX 기술을 통해 작동되는 것에 한한다)(Enhanced Reynolds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Crystallizer)						
8419899190	----- 기타	10	5	5			b
8419899200	----- 배소기	10	5	5			b
8419899300	----- 살균기	10	5	5			b
8419899910	----- 산업 종합 반응기(연속가공용의 것에 한한다)	0	0	0			
8419899990	----- 기타	10	5	5			b
8419901000	-- 물가열기의 것	10	10	5			
8419909000	-- 기타	10	5	5			b
8420101000	-- 제빵, 제과 및 비스킷 산업용의 것	10	5	0			
8420109000	-- 기타	5	5	0			
8420910000	-- 실린더	5	5	0			
8420990000	-- 기타	5	5	0			
8421110000	-- 크림분리기	5	5	0			
8421120000	-- 의류탈수기	15	5	0			
8421191000	---- 이화학용의 것	5	5	0			
8421192000	---- 제당산업용의 것	10	5	0			
8421193000	---- 종이 및 셀룰로오스 산업용의 것	5	5	0			
8421199000	---- 기타	10	5	0			
8421211000	---- 가정용	20	10	5			b
8421219000	---- 기타	15	5	5			c
8421220000	-- 물 외의 음료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15	10	7			b
8421230000	--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15	10	7			b
8421291000	---- 압착식 여과기	15	5	5			c
8421292000	---- 자기(磁氣)식 및 전자식 여과기	5	5	0			
8421293000	---- 제 9018 호의 의학 장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여과기	5	5	0			
8421294000	---- 격자형의 관형 여과기(추출 샤프트용의 것에 한한다)	15	5	0			
8421299000	---- 기타	15	10	7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21310000	-- 내연기관용의 공기여과기	15	5	5			c
8421391000	---- 사이클론형	15	5	5			c
8421392000	---- 공기 또는 기타 가스용 정전기식 여과기	5	5	0			
8421399000	---- 기타	15	10	5			a
8421910000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10	5	0			
8421991000	---- 엔진 필터용 필터링 부품	15	5	0			
8421999000	---- 기타	10	5	5			b
8422110000	-- 가정형의 것	15	15	0			
8422190000	-- 기타	15	5	0			
8422200000	-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류	10	5	5			b
8422301000	-- 수직 충전기(생산량이 1분당 40개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5	5			b
8422309010	---- 라벨용의 것	5	5	0			
8422309020	---- 액체 포장용의 것	5	5	0			
8422309090	---- 기타	5	5	0			
8422401000	-- 사전 포장 상품용 포장 기계류	5	5	0			
8422402000	-- 진공 포장 기계	5	5	0			
8422403000	-- 담배 포장 기계	0	0	0			
8422409010	---- 캔디 및 초콜릿 포장용 기계	10	5	0			
8422409090	---- 기타	10	5	5			b
8422900000	- 부분품	10	5	0			
8423100000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의 저울	15	5	0			
8423200000	-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5	5	0			
8423301000	-- 시멘트, 아스팔트 및 이와 유사한 물질용 저울	15	5	0			
8423309000	-- 기타	10	5	5			b
8423810000	--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10	5	5			b
8423821000	---- 차량무게 측정용의 것	15	10	0			
8423829000	---- 기타	15	10	7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23891000	- - - 차량무게 측정용의 것	15	10	7			b
8423899000	- - - 기타	15	10	0			
8423900000	- 각종의 저울 추, 저울 부분품	15	10	7			b
842410000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10	7			b
8424200000	- 스프레이 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10	5	5			b
8424300000	-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10	5	5			b
8424812000	- - - - 휴대용 기기(중량이 20 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5	5			b
8424813100	- - - - - 드립 또는 분무기	10	5	5			b
8424813900	- - - - - 기타	10	5	0			
8424819000	- - - - 기타	10	5	0			
8424890010	- - - - 목재 페인팅 기구	0	0	0			
8424890090	- - - - 기타	15	5	5			c
8424901000	- - 스프링클러 및 점적기(관개용의 것에 한한다)	10	5	5			b
8424909000	- - 기타	10	5	5			b
8425110000	- - 전통식의 것	10	5	0			
8425190000	- - 기타	10	5	0			
8425311000	- - - - 갱도에서 들어올리고 내리기 위해 사용되는 호이스트 윈치, 지하 광산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윈치	10	5	0			
8425319000	- - - - 기타	15	5	5			c
8425391000	- - - - 갱도에서 들어올리고 내리기 위해 사용되는 호이스트 윈치, 지하 광산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윈치	10	5	0			
8425399000	- - - - 기타	15	5	0			
8425410000	- - 차고용의 재킹시스템에 내장된 것	15	5	0			
8425422000	- - - - 휴대용 카잭	15	5	0			
8425429000	- - - - 기타	15	5	0			
8425491000	- - - - 휴대용 카잭	15	10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25499000	- - - 기타	15	5	5			c
8426110000	- - 고정식의 천장주행 크레인	10	5	5			b
8426121000	- - -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10	5	0			
8426122000	- - - 스트래들 캐리어	10	5	0			
8426190000	- - 기타	15	5	0			
8426200000	- 타워크레인	15	5	0			
8426300000	- 문형 또는 정지형 지브 크레인	15	5	0			
8426411000	- - -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 트럭	5	5	0			
8426419000	- - - 기타	15	5	0			
8426490000	- - 기타	15	5	0			
8426910000	- - 도로주행차량에 장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	15	5	0			
8426991000	- - - 크레인 및 공기 케이블	15	5	0			
8426992000	- - - 데릭 크레인	15	5	0			
8426999000	- - - 기타	15	5	0			
8427100000	-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	5	5	0			
8427200000	- 기타의 자주식 트럭	5	5	0			
8427900000	- 기타의 트럭	15	5	0			
8428101000	- - 케이지 또는 균형추가 없는 것	10	5	5			b
8428109000	- - 기타	15	10	7			b
8428200000	- 뉴매틱식의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15	10	5			a
8428310000	- -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것	15	5	0			
8428320000	- - 기타 버킷형의 것	15	10	5			a
8428330000	- - 기타 벨트형의 것	15	10	5			a
8428390000	- - 기타	15	10	5			a
8428400000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	5	5	0			
8428600000	- 텔레페릭·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 퓨니쿨러용의 견인장치	5	5	0			
8428901000	- 광산용 왜건푸셔, 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 화차	1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경사기 및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8428909010	--- 밸브 조작용의 전자동 시스템	15	5	0			
8428909090	--- 기타	15	5	0			
8429110000	-- 무한 궤도식의 것	5	5	0			
8429190000	-- 기타	5	5	0			
8429200000	- 그레이더와 레벨러	5	5	0			
8429300000	- 스크레이퍼	5	5	0			
8429400000	-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5	5	0			
8429510000	--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5	5	0			
8429520000	--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류	5	5	0			
8429590000	-- 기타	5	5	0			
8430100000	- 향타기와 향받기	5	5	0			
8430200000	-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어	5	5	0			
8430310000	-- 자주식	5	5	0			
8430390000	-- 기타	5	5	0			
8430410000	-- 자주식	5	5	0			
8430490000	-- 기타	5	5	0			
8430500000	- 기타의 기계류(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5	5	0			
8430611000	--- 로드롤러	10	5	0			
8430619000	--- 기타	10	5	0			
8430691000	--- 스크레이퍼	5	5	0			
8430699000	--- 기타	5	5	0			
8431101000	-- 폴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는 제외한다), 윈치 및 캡스톤의 것	10	5	0			
8431109000	-- 기타	10	5	5			b
8431200000	- 제 8427 호의 기계류의 것	5	5	0			
8431310000	-- 리프트, 스킵호이스트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10	5	5			b
8431390000	-- 기타	15	5	5			c
8431410000	-- 버킷, 셔블, 그랩과 그립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31420000	-- 불도저 또는 앵글도저의 블레이드	5	5	0			
8431431000	---- 로커 암	10	5	0			
8431439000	---- 기타	10	5	0			
8431490000	-- 기타	5	5	0			
8432100000	- 플라우(쟁기)	10	5	5			b
8432210000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10	5	5			b
8432291000	---- 기타 하로우 및 스카리파이어	10	5	5			b
8432292000	---- 컬티베이터(중경기), 제초기와 호우	10	5	5			b
8432300000	- 파종기, 식부기와 이식기	10	5	0			
8432400000	- 퇴비살포기와 비료살포기	10	5	5			b
8432800000	- 기타의 기계류	10	5	5			b
8432901000	-- 코울터와 디스크	15	10	5			a
8432909000	-- 기타	15	10	5			a
8433111000	---- 자주식	15	5	0			
8433119000	---- 기타	15	10	5			a
8433191000	---- 자주식	15	5	0			
8433199000	---- 기타	15	10	0			
8433200000	- 기타의 풀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의 커터바를 포함한다)	10	5	5			b
8433300000	기타의 건조제조용 기계류	10	5	0			
8433400000	- 짚 또는 건조용의 결속기(픽업결속기를 포함한다)	10	5	0			
8433510000	-- 수확-탈곡 겸용기	10	5	0			
8433520000	-- 기타의 탈곡기	10	5	0			
8433530000	-- 구경 또는 괴경의 수확기(근채 수확기)	5	5	0			
8433591000	---- 수확기	0	0	0			
8433592000	---- 옥수수 탈곡기	10	5	5			b
8433599000	---- 기타	10	5	0			
8433601000	-- 조란용의 것	5	5	0			
8433609000	-- 기타	10	5	5			b
8433901000	-- 공원 또는 운동장의 잔디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깎는 기계의 것						
8433909000	-- 기타	5	5	0			
8434100000	- 착유기	10	5	0			
8434200000	- 낙농기계류	10	5	0			
8434901000	-- 착유기의 것	5	5	0			
8434909000	-- 기타	10	5	0			
8435100000	- 기계류	5	5	0			
8435900000	- 부분품	5	5	0			
8436100000	-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류	10	5	5			b
8436210000	--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	10	5	0			
8436291000	---- 자동 급이기(給餌器), 자동 급수기	15	10	7			b
8436292000	----- 산란 및 채란 시스템	0	0	0			
8436299000	---- 기타	15	10	7			b
8436801000	-- 비료 배합기 및 파쇄기	5	5	0			
8436809000	-- 기타	10	5	0			
8436910000	-- 가금 사육용 기계류 또는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5	5	0			
8436990000	-- 기타	5	5	0			
8437101100	---- 색 분류기	0	0	0			
8437101900	---- 기타	15	10	0			
8437109000	-- 기타	15	5	0			
8437801100	---- 곡물용의 것	10	5	5			b
8437801900	---- 기타	10	5	0			
8437809100	---- 쌀 가공용의 것	10	5	5			b
8437809200	---- 밀가루 및 기타 제분제품 분류 및 분리용의 것	10	5	0			
8437809300	---- 곡물 연마용의 것	10	5	0			
8437809900	---- 기타	10	5	0			
8437900000	- 부분품	10	5	0			
8438101000	-- 베이커리 기계류	10	5	5			b
8438102000	-- 마카로니, 스파게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제조용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기계류						
8438201000	- - 과자 제조용의 것	0	0	0			
8438202000	- - 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의 것	5	5	0			
8438300000	- 설탕 제조용 기계류	15	10	7			b
8438400000	- 양조용 기계류	5	5	0			
8438501000	- - 가공용 자동가공장치	15	5	0			
8438509000	- - 기타	15	10	7			b
8438600000	- 과일, 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류	15	10	7			b
8438801000	- - 커피용 허스킹머신 및 펄핑머신	10	5	5			b
8438802000	-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갑각무척추동물 가공용 기계	10	5	0			
8438809000	- - 기타	10	5	5			b
8438900000	- 부분품	10	5	5			b
8439100000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류	5	5	0			
8439200000	- 지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류	5	5	0			
8439300000	- 지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류	5	5	0			
8439910000	- -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류의 것	5	5	0			
8439990000	- - 기타	5	5	0			
8440100000	- 기계류	5	5	0			
8440900000	- 부분품	5	5	0			
8441100000	- 절단기	10	5	0			
8441200000	- 종이백, 봉지 또는 봉투 제조용 기계	5	5	0			
8441300000	- 카톤, 박스, 케이스, 튜브, 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5	0			
8441400000	-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 제품의 몰딩용 기계	5	5	0			
8441800000	- 기타의 기계류	5	5	0			
8441900000	- 부분품	5	5	0			
8442301000	- - 사진 식자기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42302000	-- 기타 공정에 의한 식자용의 기계류, 장치 및 장비(활자 주조용 장치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8442309000	-- 기타	5	5	0			
8442400000	- 상기한 기계류, 장치 또는 장비의 부분품	5	5	0			
8442501000	-- 인쇄용 활자	15	5	0			
8442509000	-- 기타	5	5	0			
8443110000	-- 오프셋 인쇄기계류(릴식의 것에 한한다)	5	5	0			
8443120000	-- 오프셋 인쇄기계류(슈이트식 사무실용의 것으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아니한 상태의 슈이트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5	5	0			
8443130000	-- 기타 오프셋 인쇄기계류	5	5	0			
8443140000	-- 활판인쇄용 기계류(릴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5	5	0			
8443150000	-- 활판인쇄용 기계류(릴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의 것은 제외한다)	5	5	0			
8443160000	-- 곡면인쇄용 기계류	5	5	0			
8443170000	-- 그라비아인쇄용 기계류	5	5	0			
8443191000	---- 스탬핑용의 것	5	5	0			
8443199000	---- 기타	5	5	0			
8443310000	--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인쇄, 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5	5	0			
8443321100	----- CD 프린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0			
8443321900	----- 기타	5	5	0			
8443322000	---- 텔레팩스	5	5	0			
8443329000	---- 기타	5	5	0			
8443391000	---- 잉크젯방식 인쇄기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43399000	- - - 기타	5	5	0			
8443910000	- - 제 8442 호의 플레이트, 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8443990000	- - 기타	5	5	0			
8444000000	인조 방직용 섬유재료의 방사, 연신, 텍스처 또는 절단용의 기계	5	5	0			
8445110000	- - 카드기	5	5	0			
8445120000	- - 코밍기	5	5	0			
8445130000	- - 연조기 또는 조방기	5	5	0			
8445191000	- - - 조면기	5	5	0			
8445199000	- - - 기타	5	5	0			
8445200000	- 방직기계	5	5	0			
8445300000	- 합사기 또는 연사기	5	5	0			
8445400000	- 권사기(위권기를 포함한다)	5	5	0			
8445900000	- 기타	5	5	0			
8446100000	-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직물 직조용	5	5	0			
8446210000	- - 직조기(동력구동식의 것에 한한다)	5	5	0			
8446290000	- - 기타	5	5	0			
8446300000	-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물 직조용(셔틀리스형의 것에 한한다)	5	5	0			
8447110000	- -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5	0			
8447120000	- -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5	0			
8447201000	- - 횡편기(가정용의 것에 한한다)	5	5	0			
8447202000	- - 기타 횡편기	5	5	0			
8447203000	- - 스티치 본딩기	5	5	0			
8447900000	- 기타	10	5	0			
8448110000	- - 도비기와 자카드기, 이들과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복사·천공 또는 조립용 기계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48190000	-- 기타	5	5	0			
8448200000	- 제 8444 호에 규정한 기계 또는 그들의 보조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8448310000	-- 침포	5	5	0			
8448321000	---- 조면기의 것	5	5	0			
8448329000	---- 기타	5	5	0			
8448330000	-- 스피들, 스피들플라이어, 스피닝링 및 링트래블러	5	5	0			
8448390000	-- 기타	5	5	0			
8448420000	-- 직조기용의 바디, 종광과 종광 프레임	10	5	5			b
8448490000	-- 기타	10	5	0			
8448510000	-- 스티치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 바늘과 기타의 물품	5	5	0			
8448590000	-- 기타	10	5	0			
8449001000	- 기계류, 블록으로서 모자제조용	5	5	0			
8449009000	- 부분품	5	5	0			
8450110000	-- 완전자동식 기계	20	15	5			a
8450120000	-- 기타 기계(원심 탈수기를 내장한 것에 한한다)	20	15	10			b
8450190000	-- 기타	20	15	10			b
8450200000	- 기계(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5	10	12			d
8450900000	- 부분품	15	10	7			b
8451100000	- 드라이클리닝기	15	5	0			
8451210000	-- 1 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20	5	0			
8451290000	-- 기타	5	5	0			
8451300000	-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10	5	5			b
8451401000	-- 세척기	15	10	0			
8451409000	-- 기타	5	5	0			
8451500000	- 권취기, 재권취기, 접음기, 절단기 또는 핑킹기(방직용)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직물용의 것에 한한다)						
8451800000	- 기타의 기계류	5	5	0			
8451900000	- 부분품	5	5	0			
8452101000	- - 재봉기의 머리 부분품	15	15	0			
8452102000	- - 재봉기	15	15	0			
8452210000	- - 자동식의 유닛	5	5	0			
8452290000	- - 기타	5	5	0			
8452300000	- 재봉기용 바늘	5	5	0			
8452400000	- 재봉기용의 가구, 밀판과 덮개 및 그 부분품	15	10	7			b
8452900000	- 재봉기의 기타 부분품	5	5	0			
8453100000	- 원피, 모피 또는 피혁의 유피준비기, 유피기 또는 가공 기계류	5	5	0			
8453200000	- 신발의 제조 또는 수선용 기계류	5	5	0			
8453800000	- 기타의 기계류	5	5	0			
8453900000	- 부분품	5	5	0			
8454100000	- 전로	10	5	0			
8454200000	- 잉곳용 주형과 레이들	5	5	0			
8454300000	- 주조기	5	5	0			
8454900000	- 부분품	5	5	0			
8455100000	- 관 압연기	5	5	0			
8455210000	- - 열간 또는 열·냉간 겸용	5	5	0			
8455220000	- - 냉간	5	5	0			
8455300000	- 압연기용의 롤	5	5	0			
8455900000	- 기타 부분품	5	5	0			
8456100000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5	5	0			
8456200000	- 초음파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5	5	0			
8456300000	- 방전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5	5	0			
8456900000	- 기타	5	5	0			
8457100000	- 머시닝센터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57200000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	5	5	0			
8457300000	-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5	5	0			
8458111000	- - - 만능 슬라이드 선반	5	5	0			
8458112000	- - - 터릿 선반	5	5	0			
8458119000	- - - 기타	5	5	0			
8458191000	- - - 만능 슬라이드 선반	5	5	0			
8458192000	- - - 터릿 선반	5	5	0			
8458193000	- - - 기타(자동식의 것에 한한다)	5	5	0			
8458199000	- - - 기타	5	5	0			
84589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5	5	0			
8458990000	- - 기타	5	5	0			
8459101000	- - 드릴링용의 것	5	5	0			
8459102000	- - 보링용의 것	5	5	0			
8459103000	- - 밀링용의 것	5	5	0			
8459104000	- - 드레딩 또는 태핑용의 것	5	5	0			
84592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5	5	0			
8459290000	- - 기타	5	5	0			
84593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5	5	0			
8459390000	- - 기타	5	5	0			
8459400000	- 기타의 보링 머신	5	5	0			
84595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5	5	0			
8459590000	- - 기타	5	5	0			
84596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5	5	0			
8459690000	- - 기타	5	5	0			
8459700000	- 기타의 드레딩 또는 태핑머신	5	5	0			
84601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5	5	0			
8460190000	- - 기타	5	5	0			
84602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5	5	0			
8460290000	- - 기타	5	5	0			
8460310000	- - 수치제어식의 것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60390000	-- 기타	5	5	0			
8460400000	- 호닝 또는 래핑머신	5	5	0			
8460901000	-- 연삭기	5	5	0			
8460909010	---- 동 또는 크롬 실린더 프린팅용 광택기	10	5	0			
8460909090	---- 기타	10	5	0			
8461200000	- 웨이핑머신 또는 슬로팅머신	5	5	0			
8461300000	- 부로칭머신	5	5	0			
8461400000	- 기어절삭기,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5	5	0			
8461500000	- 톱기계 또는 절단기	5	5	0			
8461901000	-- 평삭기	5	5	0			
8461909000	-- 기타	5	5	0			
8462101000	-- 해머	5	5	0			
8462102100	---- 프레스	5	5	0			
8462102900	---- 기타	5	5	0			
8462210000	-- 수치제어식의 것	5	5	0			
8462291000	---- 프레스	10	5	0			
8462299000	---- 기타	10	5	5			b
8462310000	-- 수치제어식의 것	5	5	0			
8462391000	---- 프레스	15	5	0			
8462399000	---- 기타	5	5	0			
8462410000	-- 수치제어식의 것	5	5	0			
8462491000	---- 프레스	15	5	0			
8462499000	---- 기타	5	5	0			
8462910000	-- 유압식 프레스	10	5	5			b
8462990000	-- 기타	10	5	0			
8463101000	-- 철사 제조기	5	5	0			
8463109000	-- 기타	5	5	0			
8463200000	- 나사 전조기	5	5	0			
8463300000	- 선가공기	5	5	0			
8463901000	-- 리베팅 기계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63909000	-- 기타	5	5	0			
8464100000	- 톱기계	5	5	0			
8464200000	- 연마기 또는 광택기	5	5	0			
8464900000	- 기타	5	5	0			
8465100010	-- 목재용의 것	0	0	0			
8465100090	-- 기타	5	5	0			
8465911010	----- 목재용의 것	0	0	0			
8465911090	----- 기타	10	5	0			
8465919100	----- 원형톱	10	5	5			b
8465919200	----- 띠톱	10	5	5			b
8465919900	----- 기타	10	5	0			
8465921010	----- 목재 주형용의 것	0	0	0			
8465921090	----- 기타	15	5	0			
8465929010	----- 목재 평삭용의 것	0	0	0			
8465929090	----- 기타	15	10	0			
8465931000	---- 수치제어식의 것	15	5	0			
8465939000	---- 기타	15	10	0			
8465941010	----- 목재 조립용의 것	0	0	0			
8465941090	----- 기타	10	5	0			
8465949010	----- 목재 조립용의 것	0	0	0			
8465949090	----- 기타	10	5	0			
8465951000	---- 수치제어식의 것	15	5	0			
8465959010	----- 목재용의 것	0	0	0			
8465959090	----- 기타	15	5	0			
8465960000	-- 스플리팅기, 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	15	5	0			
8465991010	----- 목재 전단용의 것	0	0	0			
8465991020	----- 목재 선반	0	0	0			
8465991090	----- 기타	10	5	0			
8465999010	----- 목재 선반	0	0	0			
8465999090	----- 기타	10	5	0			
8466100000	- 톨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66200000	- 가공 홀더	5	5	0			
8466300000	- 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5	5	0			
8466910000	-- 제 8464 호의 기계용의 것	5	5	0			
8466920000	-- 제 8465 호의 기계용의 것	10	5	0			
8466930000	--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용의 것	5	5	0			
8466940000	-- 제 8462 호 또는 제 8463 호에 해당하는 기계용의 것	10	5	5			b
8467111000	---- 드릴, 보어 및 이와 유사한 것	5	5	0			
8467112000	---- 렌치, 스크루드라이버, 넛트 세트 및 이와 유사한 것	10	5	0			
8467119000	---- 기타	15	10	0			
8467191000	---- 컴팩팅 래머	15	5	0			
8467192000	---- 콘크리트 진동기	15	5	0			
8467199000	---- 기타	15	5	0			
8467210000	-- 각종의 드릴	15	5	0			
8467220000	-- 톱	15	5	0			
8467290000	-- 기타	15	5	0			
8467810000	-- 체인톱	5	5	0			
8467891000	---- 톱(체인톱은 제외한다)	5	5	0			
8467899000	---- 기타	5	5	0			
8467910000	-- 체인톱의 것	5	5	0			
8467920000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10	5	0			
8467990000	-- 기타	5	5	0			
8468100000	- 수지식 취관	15	5	0			
8468201000	-- 납땜용 또는 용접용의 것(절단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15	5	0			
8468209000	-- 기타	5	5	0			
8468800000	- 기타의 기계류 및 기기	5	5	0			
8468900000	- 부분품	15	5	0			
8469001000	- 전동식 타자기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69009000	- 기타	5	5	0			
8470100000	-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없이 작동되는 것에 한한다)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데이터 녹음, 재생 및 표시기	5	5	0			
8470210000	-- 인쇄 장치를 갖춘 것	5	5	0			
8470290000	-- 기타	5	5	0			
8470300000	- 기타 계산기	5	5	0			
8470500000	- 금전 등록기	5	5	0			
8470901000	-- 우편요금계기	5	5	0			
8470902000	-- 표권 발행기	5	5	0			
8470909000	-- 기타	5	5	0			
847130000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5	5	0			
8471410000	--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 및 입출력 장치를 내장한 것(그들의 상호결합여부를 불문한다)	5	5	0			
8471490000	-- 기타(시스템의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한다)	5	5	0			
8471500000	- 처리장치(소호 제 8471.41 호 또는 제 8471.49 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8471602000	-- 키보드, 엑스-와이 좌표장치	5	5	0			
8471609000	-- 기타	5	5	0			
8471700000	- 기억장치	5	5	0			
8471800000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5	5	0			
8471900000	- 기타	5	5	0			
8472100000	- 등사기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72300000	- 우편물의 분류기 또는 접음기 또는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와 우편물의 개봉, 봉함 또는 실링기 및 우표의 첨부 또는 소인기	5	5	0			
8472901000	-- 동전 또는 지폐 계산기 또는 분류기	5	5	0			
8472902000	-- 현금자동지불기	5	5	0			
8472903000	-- 수표 확인기	5	5	0			
8472904000	-- 천공기 또는 스테이플기	15	10	7			b
8472905000	-- 현금지불기	5	5	0			
8472909010	---- 주소인쇄기 또는 주소판 엠보싱기	5	5	0			
8472909090	---- 기타	15	5	0			
8473100000	- 제 8469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8473210000	-- 소호 제 8470.10 호, 제 8470.21 호 또는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5	5	0			
8473290000	-- 기타	5	5	0			
8473300000	- 제 8471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8473401000	-- 등사기의 것	5	5	0			
8473409000	-- 기타	5	5	0			
8473500000	-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8474101000	-- 주조용의 스트리퍼 스크리닝기	5	5	0			
8474102000	-- 진동식 체	0	0	0			
8474109000	-- 기타	15	5	5			c
8474201000	-- 회전식 콘 파쇄기	0	0	0			
8474202000	-- 충격 파쇄기	0	0	0			
8474203000	-- 링 파쇄기	0	0	0			
8474209010	---- 볼 분쇄기	0	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74209090	- - - 기타	15	5	0			
8474311000	- - - 최대 용량이 3 세제곱미터인 것	15	5	0			
8474319000	- - - 기타	15	5	0			
8474320000	-- 역청질과 광물성재료의 혼합기	10	5	0			
8474391000	- - - 도자기 산업용 특수 기계	10	5	0			
8474392000	- - - 주물사 혼합기	15	5	0			
8474399000	- - - 기타	10	5	0			
8474801000	-- 도자기 페이스트의 조괴기, 형입기 또는 성형기	10	5	0			
8474802000	-- 주물사 성형기	5	5	0			
8474803000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성형기	10	5	0			
8474809000	-- 기타	10	5	5			b
8474900000	- 부분품	10	5	5			b
8475100000	- 전기 또는 전자램프, 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밸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5	5	0			
8475210000	-- 광섬유 및 광섬유예비 성형품 제조용의 기계	5	5	0			
8475290000	-- 기타	5	5	0			
8475900000	- 부분품	5	5	0			
8476210000	--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5	5	0			
8476290000	-- 기타	5	5	0			
8476810000	-- 가열장치 또는 냉장장치를 갖춘 것	5	5	0			
8476890000	-- 기타	5	5	0			
8476900000	- 부분품	5	5	0			
8477100000	- 사출 성형기	5	5	0			
8477200000	- 압출기	5	5	0			
8477300000	- 취입 성형기	5	5	0			
8477400000	- 진공성형기 및 기타 열성형기	5	5	0			
8477510000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 또는 재생기 또는 기타 이너튜브 성형기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77591000	--- 압축 성형 유압식 프레스	5	5	0			
8477599000	--- 기타	5	5	0			
8477800000	- 기타의 기계류	5	5	0			
8477900000	- 부분품	10	5	0			
8478101000	-- 담배 필터 부착 기계	5	5	0			
8478109000	-- 기타	5	5	0			
8478900000	- 부분품	5	5	0			
8479100000	- 토목공사, 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15	10	5			a
8479201000	-- 추출용 기계류	10	5	5			b
8479209000	-- 기타	10	5	5			b
8479300000	- 파티클보드 또는 건축용의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 또는 코르크 처리용의 기타의 기계류	5	5	0			
8479400000	- 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5	5	0			
8479500000	-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5	0			
8479600000	- 증발식 에어컨	5	5	0			
8479810000	-- 금속처리용의 것(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5	5	0			
8479820000	-- 혼합기, 반죽기, 파쇄기, 분쇄기, 기계식체, 시프팅기, 균질기, 유화기 또는 교반기	10	5	5			b
8479891000	--- 비누 산업용 기계류	5	5	0			
8479892000	--- 가습기 또는 제습기(제 8415 호 또는 제 8424 호의 것은 제외한다)	5	5	0			
8479893000	--- 기계용 자동 펌프 유회 시스템	5	5	0			
8479894000	--- 파이프라인 또는 기타 비유연 파이프 유지용의 것	5	5	0			
8479895000	--- 모터를 갖춘 윈드실드 와이핑 장치	5	5	0			
8479898000	--- 프레스	10	5	0			
8479899000	--- 기타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79900000	- 부분품	10	5	0			
8480100000	- 금속주조용의 주형틀	10	5	0			
8480200000	- 주형 베이스	10	5	0			
8480300000	- 주형 제조용의 모형	10	5	0			
8480410000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10	5	5			b
8480490000	-- 기타	10	5	0			
8480500000	- 유리 성형용의 주형	10	5	5			b
8480600000	- 광물성물질 성형용의 주형	10	5	5			b
8480711000	---- 면도기 부분품의 것	5	5	0			
8480719000	---- 기타	5	5	0			
8480790000	-- 기타	10	5	5			b
8481100000	- 감압 밸브	15	10	7			b
8481200000	- 유압 전송용 또는 공기압 전송용의 밸브	15	5	0			
8481300000	- 체크(논리턴) 밸브	15	5	5			c
8481400010	-- 관개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것	0	0	0			
8481400090	-- 기타	15	10	7			b
8481801000	-- 가정용 수도꼭지	15	10	7			b
8481802000	-- “크리스마스 트리” 밸브	15	10	5			a
8481803000	-- 타이어 밸브	15	5	0			
8481804000	-- 볼 밸브	15	5	5			c
8481805100	---- 작동압력이 13.8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5	5	0			
8481805900	---- 기타	15	10	5			a
8481806000	-- 기타 게이트 밸브	15	5	5			c
8481807000	-- 공칭 지름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구형 밸브	15	5	0			
8481808000	-- 기타 솔레노이드 밸브	5	5	5			
8481809100	---- 디스펜서 밸브	15	10	7			b
8481809900	---- 기타	15	5	5			c
8481901000	-- “크리스마스 트리” 밸브의 바디	10	5	0			
8481909000	-- 기타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82100000	- 볼베어링	5	5	0			
8482200000	- 원추형 롤러베어링(콘 및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을 포함한다)	5	5	0			
8482300000	- 구형 롤러베어링	5	5	0			
8482400000	- 니들 롤러베어링	5	5	0			
8482500000	- 기타의 원통형 롤러베어링	5	5	0			
8482800000	- 기타(볼/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5	5	0			
8482910000	-- 볼, 니들 및 롤러	5	5	0			
8482990000	-- 기타	5	5	0			
8483101000	-- 항공기용 엔진의 것	5	5	0			
8483109100	---- 크랭크 샤프트	5	5	5			
8483109200	---- 캠 샤프트	10	5	0			
8483109300	---- 플렉시블 샤프트	15	5	0			
8483109900	---- 기타	5	5	0			
8483200000	- 베어링하우징(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을 갖춘 것에 한한다)	5	5	0			
8483301000	-- 항공기용 엔진의 것	5	5	0			
8483309000	-- 기타	10	5	5			b
8483403000	-- 항공기용 엔진의 것	5	5	0			
8483409100	---- 기어박스 및 기타 변속기	15	5	5			c
8483409200	----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및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15	10	7			b
8483409900	---- 기타	5	5	0			
8483500000	- 플라이휠과 폴리(폴리블록을 포함한다)	15	5	5			c
8483601000	-- 클러치	5	5	0			
8483609000	-- 기타	10	5	0			
8483904000	--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및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	10	5	5			b
8483909000	-- 부분품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484100000	-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기타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재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	15	5	5			c
8484200000	- 메커니컬 실	15	5	0			
8484900000	- 기타	15	5	5			c
8486100000	-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5	5	0			
8486200000	-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5	5	0			
848630000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5	5	0			
8486400000	-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 명시된 기계와 기기	5	5	0			
8486900000	- 부분품 및 부속품	5	5	0			
8487100000	-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	5	5	0			
8487901000	-- 비자동식의 윤활 포트	15	5	5			c
8487902000	-- 오일 실링	15	5	5			c
8487909000	-- 기타	15	5	5			c
8501101000	-- 장난감용 모터	5	5	0			
8501102000	-- 교류·직류 겸용 모터	15	5	0			
8501109100	---- 직류	10	5	0			
8501109200	---- 교류(단상의 것에 한한다)	0	0	0			
8501109300	---- 교류(다상의 것에 한한다)	5	5	0			
8501201100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15	5	0			
8501201900	---- 기타	15	5	0			
8501202100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10	5	0			
8501202900	---- 기타	10	5	0			
8501311000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5	5	0			
8501312000	---- 기타 모터	5	5	0			
8501313000	---- 직류발전기	5	5	0			
8501321000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501322100	----- 출력이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5	5	0			
8501322900	----- 기타	5	5	0			
8501324000	---- 직류발전기	5	5	0			
8501331000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5	5	0			
8501332000	---- 기타 모터	5	5	0			
8501333000	---- 직류발전기	5	5	0			
8501341000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5	5	0			
8501342000	---- 기타 모터	5	5	0			
8501343000	---- 직류발전기	5	5	0			
8501401110	----- 일체형 클러치를 갖춘 모터	5	5	0			
8501401190	----- 기타	15	5	0			
8501401900	---- 기타	15	10	0			
8501402110	----- 일체형 클러치를 갖춘 모터	5	5	0			
8501402190	----- 기타	15	5	0			
8501402900	---- 기타	15	5	0			
8501403110	----- 출력이 1.5 킬로와트 이하인 일체형 클러치를 가진 모터	5	5	0			
8501403190	----- 기타	15	5	0			
8501403900	---- 기타	15	10	0			
8501404100	----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를 결합한 것	15	5	0			
8501404900	---- 기타	15	5	0			
8501511010	----- 출력이 180 와트를 초과하는 일체형 클러치를 가진 모터	5	5	0			
8501511090	----- 기타	15	5	0			
8501519000	---- 기타	15	5	0			
8501521010	----- 출력 1.5 킬로와트 이하인 일체형 클러치를 가진 모터	5	5	0			
8501521090	----- 기타	15	10	0			
8501522000	---- 출력이 7.5 킬로와트 초과 18.5 킬로와트 이하인 것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501523000	--- 출력이 18.5킬로와트 초과 30킬로와트 이하인 것	10	5	5			b
8501524000	--- 출력이 30킬로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10	5	5			b
8501530000	--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10	5	0			
8501611000	--- 출력이 18.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5	0			
8501612000	--- 출력이 18.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0	5	0			
8501619000	--- 기타	10	5	0			
8501620000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0	5	0			
8501630000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0	5	0			
8501640000	--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인 것	10	5	0			
8502111000	--- 교류의 것	15	5	5			c
8502119000	--- 기타	10	5	0			
8502121000	--- 교류의 것	15	5	5			c
8502129000	--- 기타	10	5	5			b
8502131000	--- 교류의 것	15	5	5			c
8502139000	--- 기타	10	5	0			
8502201000	-- 교류의 것	15	5	5			c
8502209000	-- 기타	10	5	0			
8502310000	-- 풍력의 것	10	5	0			
8502391000	--- 교류의 것	15	5	0			
8502399000	--- 기타	10	5	0			
8502400000	- 전기 회전변환기	10	5	0			
8503000000	부분품(제 8501 호 또는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504100000	-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	15	10	0			
8504211100	- - -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5	5	0			
8504211900	- - - - 기타	15	10	5			a
8504219000	- - - - 기타	15	10	5			a
8504221000	- -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5	10	5			a
8504229000	- - - - 기타	15	10	5			a
8504230000	- -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15	10	5			a
8504311010	- - - - 전압이 35킬로볼트 이하인 장난감용의 것(주파수가 10에서 20킬로헤르츠 사이이고, 전류가 2밀리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8504311090	- - - - - 기타	15	5	0			
8504319000	- - - - 기타	15	10	5			a
8504321000	- -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5	5	0			
8504329000	- - - - 기타	15	5	0			
8504330000	- -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5	10	5			a
8504341000	- - - 용량이 1,6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5	5	0			
8504342000	- - - - 용량이 1,6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5	5	0			
8504343000	- - - -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15	5	0			
8504401000	- - 파워서플라이유닛(UPS)	10	5	5			b
8504402000	- - 전기 시동 장치	15	5	0			
8504409000	- - 기타	15	1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504501000	-- 전압 260 볼트 이하용의 것 및 공칭 전류 30 암페어 이하용의 것	15	5	0			
8504509000	-- 기타	10	5	0			
8504900000	- 부분품	10	5	0			
8505110000	-- 금속제의 것	10	5	0			
8505191000	--- 플라스틱 또는 고무 자석 개스킷	15	5	0			
8505199000	--- 기타	10	5	0			
8505200000	- 전자석 커플링, 클러치와 브레이크	10	5	5			b
8505901000	-- 전자석	5	5	0			
8505902000	-- 척, 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홀딩 장치	5	5	0			
8505903000	-- 전자석 리프팅 헤드	5	5	0			
8505909000	-- 부분품	5	5	0			
8506101100	--- 원통 형태인 것	5	5	5			
8506101200	--- 버튼 형태의 전지	5	5	0			
8506101900	--- 기타	5	5	0			
8506109110	----- 염화아연 또는 암모늄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것	15	10	7			b
8506109190	----- 기타	15	5	5			c
8506109200	--- 버튼 형태의 전지	15	5	0			
8506109900	--- 기타	15	5	5			c
8506301000	-- 원통 형태인 것	5	5	0			
8506302000	-- 버튼 형태의 전지	5	5	0			
8506309000	-- 기타	5	5	0			
8506401000	-- 원통 형태인 것	5	5	0			
8506402000	-- 버튼 형태의 전지	5	5	0			
8506409000	-- 기타	5	5	0			
8506501000	-- 원통 형태인 것	5	5	0			
8506502000	-- 버튼 형태의 전지	5	5	0			
8506509000	-- 기타	5	5	0			
8506601000	-- 원통 형태인 것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506602000	-- 버튼 형태의 전지	5	5	0			
8506609000	-- 기타	5	5	0			
8506801000	-- 원통 형태인 것	5	5	0			
8506802000	-- 버튼 형태의 전지	5	5	0			
8506809000	-- 기타	5	5	0			
8506900000	- 부분품	5	5	0			
8507100000	- 피스톤식 엔진 시동에 사용되는 종류의 연산(鉛酸)	15	10	7			b
8507200000	- 기타의 연산(鉛酸) 축전지	15	5	5			c
8507300000	- 니켈-카드뮴	5	5	0			
8507400000	- 니켈-철	5	5	0			
8507800010	-- 리튬이온의 것	15	5	0			
8507800020	-- 니켈-수소 합금의 것	15	5	0			
8507800090	-- 기타	15	5	0			
8507901000	-- 상자 및 덮개	15	10	7			b
8507902000	-- 격리판	15	10	7			b
8507903000	-- 판	15	5	5			c
8507909000	-- 기타	15	5	5			c
8508110000	--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백 또는 용량이 20 리터 이하인 기타 저장조를 갖춘 것	20	15	0			
8508190000	-- 기타	20	15	5			a
8508600000	- 기타의 진공청소기	20	15	0			
8508700000	- 부분품	10	10	0			
8509401000	-- 블렌더	20	15	10			b
8509409000	-- 기타	20	15	10			b
8509801000	-- 바닥광택기	20	15	5			a
8509802000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20	15	5			a
8509809000	-- 기타	20	15	10			b
8509900000	- 부분품	10	10	5			
8510100000	- 면도기	5	5	0			
8510201000	-- 이발기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510202000	-- 동물용 이발기	5	5	0			
8510300000	- 모발제거기	5	5	0			
8510901000	-- 커터 헤드, 커터날, 칼날 및 빗날	5	5	0			
8510909000	-- 기타	5	5	0			
8511101000	-- 항공기용 엔진의 것	5	5	0			
8511109000	-- 기타	15	5	5			c
8511201000	-- 항공기용 엔진의 것	5	5	0			
8511209000	-- 기타	15	5	0			
8511301000	-- 항공기용 엔진의 것	5	5	0			
8511309100	---- 배전기	5	5	0			
8511309200	---- 점화코일	15	10	5			a
8511401000	-- 항공기용 엔진의 것	5	5	0			
8511409000	-- 기타	15	5	0			
8511501000	-- 항공기용 엔진의 것	5	5	0			
8511509000	-- 기타	15	5	0			
8511801000	-- 항공기용 엔진의 것	5	5	0			
8511809000	-- 기타	15	5	0			
8511901000	-- 항공기용 엔진 장비의 것	5	5	0			
8511902100	---- 브레이크 플레이트	15	10	7			b
8511902900	---- 기타	5	5	5			
8511903000	-- 점화 플러그(항공기 엔진용의 것은 제외한다)의 것	5	5	5			
8511909000	-- 기타	5	5	0			
851210000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종류의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5	5	0			
8512201000	-- 도로의 헤드램프(소호 제 8539.10 호의 실드빔 램프는 제외한다)	5	5	0			
8512209000	-- 기타	5	5	0			
8512301000	-- 경음기	15	10	5			a
8512309000	-- 기타	5	5	5			
8512400000	- 윈드스크린 와이퍼, 제상기와 제무기	15	1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512901000	-- 자동차용 윈드스크린 와이퍼 암 및 블레이드	10	5	5			b
8512909000	-- 기타	5	5	0			
8513101000	-- 안전 램프	5	5	0			
8513109000	-- 기타	20	15	5			a
8513900000	- 부분품	10	10	0			
8514100000	- 저항가열식 노와 오븐	10	5	5			b
8514200000	-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5	5	0			
8514301000	-- 아크의 것	5	5	0			
8514309000	-- 기타	10	5	5			b
8514400000	- 기타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	5	5	0			
8514900000	- 부분품	5	5	0			
8515110000	-- 납땀용의 인두와 건	15	5	0			
8515190000	-- 기타	15	5	0			
8515210000	--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5	5	0			
8515290000	-- 기타	10	5	0			
8515310000	--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10	5	0			
8515390000	-- 기타	10	5	0			
8515801000	-- 초음파 기기	5	5	0			
8515809000	-- 기타	10	5	5			b
8515900000	- 부분품	10	5	0			
8516100000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20	15	10			b
8516210000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20	15	10			b
8516291000	---- 스토브	20	15	10			b
8516299000	---- 기타	20	15	10			b
8516310000	-- 헤어드라이어	20	15	0			
8516320000	-- 기타 이용기기	20	15	0			
8516330000	-- 손 건조기	20	15	0			
8516400000	- 전기다리미	20	15	10			b
851650000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516601000	-- 오븐	20	15	10			b
8516602000	-- 쿠키	20	15	7			a
8516603000	-- 조리판, 보일링링, 그릴러와 로스터	20	15	10			b
8516710000	-- 커피 또는 차 끓이는 기기	20	15	10			b
8516720000	-- 토스터	20	15	10			b
8516790000	-- 기타	20	15	10			b
8516800000	- 전열용 저항체	15	15	10			
8516900000	- 부분품	10	10	5			
8517110000	-- 유선전화기 세트(코드리스 핸드셋을 갖춘 것에 한한다)	15	5	0			
8517120000	--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	5	0			
8517180000	-- 기타	15	10	7			b
8517610000	-- 기지국	5	5	0			
8517621000	---- 전화 및 전신 교환기	5	5	0			
8517622000	---- 반송전류라인시스템 또는 디지털라인시스템용의 통신기기	5	5	0			
8517629000	---- 기타	10	5	0			
8517691000	---- 영상전화기	5	5	0			
8517692000	---- 전화 및 전신 수신기기	5	5	0			
8517699010	----- 텔레타이프	5	5	0			
8517699090	----- 기타	15	5	0			
8517700000	- 부분품	5	5	0			
8518100000	- 마이크론과 그 스탠드	5	5	0			
8518210000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15	5	0			
8518220000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한한다)	15	10	7			b
8518290000	-- 기타	15	5	0			
851830000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1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8518400000	- 전기 가청주파증폭기	15	5	0			
8518500000	- 전기 음향증폭세트	15	10	5			a
8518901000	-- 콘, 진동판, 요크	0	0	0			
8518909000	-- 기타	5	5	0			
8519200000	- 동전, 지폐, 은행카드, 토큰 또는 기타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20	15	0			
8519301000	--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20	15	0			
8519309000	-- 기타	20	15	0			
8519500000	- 전화응답기	5	5	0			
8519811000	--- 카세트 플레이어	20	15	0			
8519812000	--- 광학식 판독 시스템을 갖춘 재생 기기	5	5	0			
8519819000	--- 기타	5	5	0			
8519891000	---- 레코드 플레이어	20	15	0			
8519899000	---- 기타	5	5	0			
8521100000	-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것	5	5	0			
8521901000	-- 콤팩트 디스크 기록에 사용하는 유형의 것	5	5	0			
8521909000	-- 기타	5	5	0			
8522100000	- 픽업 카트리지	15	10	0			
8522902000	-- 가구 또는 박스	10	5	0			
8522903000	--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 스타일리(장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5	0			
8522904000	-- 광학식 판독 시스템을 갖춘 재생 장치	0	0	0			
8522905000	-- 카세트 재생 장치	0	0	0			
8522909000	-- 기타	10	5	5			b
8523210000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자장한 카드(기록 여부를 불문한다)	15	15	7			
8523291000	---- 마그네틱 디스크	5	5	0			
8523292110	----- 음성 기록용의 것(2,100 미터를 초과하는	10	10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롤상의 것에 한한다)						
8523292190	----- 기타	15	15	0			
8523292210	----- 음성 또는 영상 이외의 현상 기록용의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5	5	0			
8523292220	----- 음성 기록용의 것(2,100 미터를 초과하는 롤상의 것에 한한다)	5	5	0			
8523292290	----- 기타	15	15	0			
8523292300	----- 폭이 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5	0			
8523293110	----- 음성 또는 영상 이외의 현상 재생용의 것	5	5	0			
8523293190	----- 기타	15	15	0			
8523293210	----- 음성 또는 영상 이외의 현상 재생용의 것	5	5	0			
8523293290	----- 기타	10	10	0			
8523293310	----- 음성 또는 영상 이외의 현상 재생용의 것	5	5	0			
8523293390	----- 기타	10	10	0			
8523299000	---- 기타	15	15	0			
8523401000	-- 기록이 안된 것	15	15	0			
8523402100	----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15	15	0			
8523402200	---- 영상 또는 영상 및 음성을 재생하는 것	5	5	0			
8523402900	---- 기타	15	15	0			
8523510000	-- 교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0	0	0			
8523520000	-- “스마트카드”	5	5	0			
8523591000	---- 프록시미티 카드 및 태그	10	5	0			
8523599000	---- 기타	15	5	0			
8523801000	-- 디스크와 왁스 블랭크, 스트립 또는 필름 및 기타 매트릭스와 마스터	5	5	0			
8523802100	----교육용의 것	5	5	0			
8523802900	---- 기타	15	15	0			
8523803000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523809000	-- 기타	15	15	0			
8525501000	-- 라디오방송용의 것	5	5	0			
8525502000	-- 텔레비전용의 것	5	5	0			
8525601000	-- 라디오방송용의 것	5	5	0			
8525602000	-- 텔레비전용의 것	5	5	0			
8525801000	-- 텔레비전 카메라	5	5	0			
8525802000	--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5	5	0			
8526100000	-- 레이더기기	5	5	0			
8526910000	-- 항행용 무선기기	5	5	0			
8526920000	-- 무선원격조절기기	5	5	0			
8527120000	--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20	15	0			
8527130000	-- 기타의 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에 한한다)	20	15	0			
8527190000	-- 기타	20	15	0			
8527210000	--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20	15	5			a
8527290000	-- 기타	20	15	7			a
8527910000	--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20	15	5			a
8527920000	--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20	15	10			b
8527990000	-- 기타	5	5	0			
8528410000	--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0			
8528490000	-- 기타	20	15	0			
8528510000	--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0			
8528590000	-- 기타	20	15	0			
8528610000	--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0	1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528690000	-- 기타	20	15	0			
8528710000	-- 비디오 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제작되지 아니한 것	20	15	0			
8528720010	---- 음극선관의 것	20	15	10			b
8528720020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것	20	15	10			b
8528720030	---- 액정디스플레이의 것	20	15	10			b
8528720090	---- 기타	20	15	5			a
8528730000	-- 기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에 한한다)	20	15	5			a
8529101000	-- 페라이트 안테나	5	5	0			
8529102000	-- 파라볼라 안테나	15	5	0			
8529109000	-- 기타, 부분품	15	5	0			
8529901000	-- 가구 또는 박스	15	5	0			
8529902000	-- 인쇄된 구성품이 있는 판	0	0	0			
8529909010	---- 액정디스플레이(LCD) 패널 또는 플라즈마	0	0	0			
8529909090	---- 기타	10	5	0			
8530100000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구	15	5	0			
8530801000	-- 교통신호 및 그 컨트롤 케이스	15	10	0			
8530809000	-- 기타	15	5	0			
8530900000	- 부분품	10	5	5			b
8531100000	-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15	10	5			a
8531200000	-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	15	10	5			a
8531800000	- 기타의 기기	10	5	5			b
8531900000	- 부분품	10	5	0			
8532100000	-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무효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10	5	0			
8532210000	-- 탄탈륨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532220000	-- 알루미늄 전해	5	5	0			
8532230000	-- 세라믹 유전체(단층)	5	5	0			
8532240000	-- 세라믹 유전체(다층)	5	5	0			
8532250000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유전체	15	5	0			
8532290000	-- 기타	10	5	0			
8532300000	- 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셋) 축전기	5	5	0			
8532900000	- 부분품	5	5	0			
8533100000	-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 또는 필름형의 것에 한한다)	5	5	0			
8533210000	--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5	5	0			
8533290000	-- 기타	5	5	0			
8533311000	---- 전압 260 볼트 이하 전류 30 암페어 이하인 가감저항기	5	5	0			
8533312000	---- 전위차계	5	5	0			
8533319000	---- 기타	10	5	0			
8533391000	---- 전압 260 볼트 이하 전류 30 암페어 이하인 가감저항기	5	5	0			
8533392000	---- 기타 가감저항기	5	5	0			
8533393000	---- 전위차계	5	5	0			
8533399000	---- 기타	5	5	0			
8533401000	-- 전압 260 볼트 이하 전류 30 암페어 이하인 가감저항기	5	5	0			
8533402000	-- 기타 가감저항기	5	5	0			
8533403000	-- 탄소 전위차계	5	5	0			
8533404000	---- 기타 전위차계	5	5	0			
8533409000	-- 기타	5	5	0			
8533900000	- 부분품	10	5	0			
8534000000	인쇄회로	10	5	0			
8535100000	- 퓨즈	15	5	5			c
8535210000	-- 전압이 72.5 키로볼트 미만인 것	15	5	0			
8535290000	-- 기타	1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535300000	-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15	5	5			c
8535401000	-- 피뢰기 및 전압제한기	10	5	5			b
8535402000	-- 서지역제기	5	5	0			
8535901000	-- 스위치	5	5	0			
8535909000	-- 기타	15	10	5			a
8536101000	-- 제 87 류의 차량용 퓨즈	5	5	0			
8536102000	-- 전압 260 볼트 이하 전류 30 암페어 이하인 기타의 것	15	5	5			c
8536109000	-- 기타	15	5	0			
8536202000	-- 전압 260 볼트 이하 전류 30 암페어 이하인 것	15	5	0			
8536209000	-- 기타	15	5	0			
8536301100	---- 전화선 보호용 전극 가스 튜브 피뢰기	10	5	0			
8536301900	---- 기타	15	10	0			
8536309000	-- 기타	15	5	0			
8536411000	---- 전류가 30 암페어 이하인 것	5	5	0			
8536419000	---- 기타	15	5	0			
8536491100	----- 접촉기	15	10	5			a
8536491900	----- 기타	5	5	0			
8536499000	---- 기타	15	5	5			c
8536501100	---- 제 87 류의 차량용의 것	5	5	5			
8536501900	---- 기타	5	5	0			
8536509000	-- 기타	15	5	5			c
8536610000	-- 램프홀더	15	5	5			c
8536690000	-- 기타	15	5	5			c
8536700000	- 광섬유, 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15	5	0			
8536901000	-- 전압 260 볼트 이하 전류 30 암페어 이하인 연결기기	15	10	5			a
8536902000	-- 전압이 24 볼트 이하인 단말기	5	5	0			
8536909000	-- 기타	15	5	5			c
8537101000	--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	15	10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537109000	- - 기타	15	10	5			a
8537200000	-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15	10	5			a
8538100000	-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 8537 호의 물품용에 한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15	10	5			a
8538900000	- 기타	10	5	5			b
8539100000	- 실드빔 램프유닛	5	5	0			
8539210000	- - 텅스텐 할로겐	5	5	0			
8539221000	- - - - 미니어처형	5	5	0			
8539229000	- - - 기타	20	15	5			a
8539291000	- - - 제 8512 호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 기구용의 것(실내 조명 또는 신호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	5	5	0			
8539292000	- - - - 미니어처형	5	5	0			
8539299000	- - - 기타	20	15	0			
8539311000	- - - 관형의 것(일직선 모양에 한한다)	20	15	5			a
8539312000	- - - 관형의 것(원형에 한한다)	20	15	5			a
8539313000	- - - 콤팩트(통합한 것과 통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	15	0			
8539319000	- - - 기타	20	15	5			a
8539320000	- - 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20	15	0			
8539392000	- - - 플래시벌브	5	5	0			
8539399000	- - - 기타	5	5	0			
8539410000	- - 아크 램프	5	5	0			
8539490000	- - 기타	5	5	0			
8539901000	- - 나사 이음쇠	10	10	0			
8539909000	- - 기타	5	5	0			
8540110000	- - 천연색의 것	0	0	0			
8540120000	- - 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것						
8540200000	- 텔레비전용 촬상관, 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 기타의 광전관	5	5	0			
854040000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천연색의 것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	5	0			
854050000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흑백 또는 기타 단색의 것에 한한다)	5	5	0			
8540600000	- 기타 음극선관	5	5	0			
8540710000	-- 자전관	5	5	0			
8540720000	-- 속도변조관	5	5	0			
8540790000	-- 기타	5	5	0			
8540810000	-- 수신관 또는 증폭관	5	5	0			
8540890000	-- 기타	5	5	0			
8540910000	-- 음극선관의 것	5	5	0			
8540990000	-- 기타	5	5	0			
8541100000	-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 또는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5	5	0			
8541210000	-- 전력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5	5	0			
8541290000	-- 기타	5	5	0			
8541300000	- 사이리스터, 다이액 및 트라이액(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5	5	0			
8541401000	-- 광전지(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8541409000	-- 기타	5	5	0			
8541500000	- 기타의 반도체 디바이스	5	5	0			
8541600000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5	5	0			
8541900000	- 부분품	5	5	0			
8542310000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변환기, 논리회로, 증폭기, 클록과 타이밍 회로 또는 기타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회로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542320000	-- 메모리	5	5	0			
8542330000	-- 증폭기	5	5	0			
8542390000	-- 기타	5	5	0			
8542900000	- 부분품	5	5	0			
8543100000	- 입자가속기	5	5	0			
8543200000	- 신호발생기	10	5	0			
8543300010	-- 전기분해식의 것	10	5	0			
8543300090	-- 기타	10	5	0			
8543701000	-- 일렉트릭 펜스	10	5	5			b
8543702000	-- 금속 감지기	5	5	0			
8543703000	-- 원격조절기	10	5	0			
8543709000	-- 기타	10	5	0			
8543900000	- 부분품	5	5	0			
8544110000	-- 동제의 것	15	10	7			b
8544190000	-- 기타	15	5	0			
8544200000	- 동축케이블과 기타 동축 전기도체	15	5	0			
8544300000	- 접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15	10	7			b
8544421000	--- 전기통신의 것	15	5	5			c
8544422000	--- 기타(동제의 것에 한한다)	15	5	5			c
8544429000	--- 기타	15	5	0			
8544491000	--- 동제의 것	15	10	7			b
8544499000	--- 기타	15	5	5			c
8544601000	-- 동제의 것	15	10	7			b
8544609000	-- 기타	15	5	5			c
8544700000	- 광섬유 케이블	5	5	0			
8545110000	-- 노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5	0			
8545190000	-- 기타	5	5	0			
8545200000	- 브러시	10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545902000	- - 전지용 탄소	5	5	0			
8545909000	- - 기타	5	5	0			
8546100000	- 유리제의 것	5	5	0			
8546200000	- 도자제의 것	15	10	7			b
8546901000	- - 실리콘제의 것	15	5	0			
8546909000	- - 기타	15	5	5			c
8547101000	- - 점화 플러그 본체	5	5	0			
8547109000	- - 기타	15	5	5			c
8547200000	-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	5	5	0			
8547901000	- - 도관과 그 조인트[절연재료로 속을 댄 비(卑)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5	5	0			
8547909000	- - 기타	5	5	0			
8548100000	- 일차전지·일차배터리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일차배터리 및 축전지	5	5	0			
8548900010	- - 압전기세트, 드라이버, 센서 및 제어 장치	0	0	0			
8548900090	- - 기타	5	5	0			
8601100000	-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5	0			
8601200000	-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5	5	0			
8602100000	- 디젤 전기기관차	5	5	0			
8602900000	- 기타	5	5	0			
8603100000	- 외부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5	0			
8603900000	- 기타	5	5	0			
8604001000	- 자주식의 것	5	5	0			
8604009000	- 기타	5	5	0			
8605000000	철도 또는 궤도용의 객차(자주식의 것을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 및 기타의 철도 또는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의 것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5	5	0			
8606100000	- 탱크차 및 이와 유사한 것	10	5	5			b
8606300000	- 자기양하식의 화차(소호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6910000	- -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20	5	0			
8606920000	- -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5	5			b
8606990000	- - 기타	10	5	5			b
8607110000	- - 구동식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5	5	0			
8607120000	- - 기타의 보우기와 비셀보우기	5	5	0			
86071900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5	0			
8607210000	-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5	0			
8607290000	- - 기타	5	5	0			
8607300000	- 축과 기타의 연결장치, 완충장치 및 그들의 부분품	5	5	0			
8607910000	- - 기관차용의 것	5	5	0			
8607990000	- - 기타	5	5	0			
8608000000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 장·항만 또는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용의 기기, 그들의 부분품	10	5	5			b
86090000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제작되고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	15	5	0			
8701100000	- 보행운전형 트랙터	5	5	0			
8701200000	-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15	15	10			
8701300000	- 무한궤도식 트랙터	5	5	0			
8701900000	- 기타	0	0	0			
8702101000	- - 16 인 이하(운전자 포함한다) 수송용의 것	35	35	10			
8702109000	- - 기타	15	15	1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702901000	-- 트롤리 버스	15	15	0			
8702909100	---- 최대 16 인(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으로 설계제작 제작된 것	35	35	10			
8702909920	----- 천연가스로 작동하는 모터를 갖춘 것	10	5	7			c
8702909990	----- 기타	15	15	10			
8703100000	- 설상주행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20	15	5			a
8703210000	--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35	35	10			
8703221000	---- 사륜구동(4 x 4)인 것	35	35	10			
8703229000	---- 기타	35	35	10			
8703231000	---- 사륜구동(4 x 4)인 것	35	35	10			
8703239000	---- 기타	35	35	10			
8703241000	---- 사륜구동(4 x 4)인 것	35	35	10			
8703249000	---- 기타	35	35	10			
8703311000	---- 사륜구동(4 x 4)인 것	35	35	10			
8703319000	---- 기타	35	35	10			
8703321000	---- 사륜구동(4 x 4)인 것	35	35	9			
8703329000	---- 기타	35	35	10			
8703331000	---- 사륜구동(4 x 4)인 것	35	35	10			
8703339000	---- 기타	35	35	10			
8703900010	-- 전동기를 갖춘 것	35	35	10			
8703900090	-- 기타	35	35	10			
8704100010	-- 천연가스로 작동하는 모터를 갖춘 것	15	5	0			
8704100090	-- 기타	15	5	0			
8704211000	---- 4.537 톤 이하인 것	35	35	10			
8704219000	---- 기타	15	15	10			
8704221000	---- 6.2 톤 이하인 것	15	15	10			
8704222000	---- 6.2 톤 초과 9.3 톤 이하인 것	15	15	10			
8704229000	---- 9.3 톤을 초과하는 것	15	15	10			
8704230000	--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는 것	15	15	1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704311010	----- 조립된 픽업트럭	35	35	10			
8704311090	----- 기타	35	35	10			
8704319010	----- 천연가스로 작동하는 모터를 갖춘 것	10	5	7			c
8704319090	----- 기타	15	15	10			
8704321010	----- 천연가스로 작동하는 모터를 갖춘 것	10	5	7			c
8704321090	----- 기타	15	15	10			
8704322010	----- 천연가스로 작동하는 모터를 갖춘 것	10	5	7			c
8704322090	----- 기타	15	15	10			
8704329010	----- 천연가스로 작동하는 모터를 갖춘 것	10	5	7			c
8704329090	----- 기타	15	15	10			
8704900010	-- 총 적재중량이 4537 톤(1,000 미국 파운드) 미만의 것	35	35	10			
8704900090	-- 기타	15	15	10			
8705100000	- 기중기차	15	15	10			
8705200000	- 이동식 시추용의 데릭차	15	15	0			
8705300000	- 소방차	15	15	10			
8705400000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15	15	10			
8705901100	---- 청소차	5	5	0			
8705901900	---- 기타	15	15	10			
8705902000	-- 이동방사선차	15	5	0			
8705909000	-- 기타	15	15	10			
8706001000	- 제 8703 호의 차량용의 것	35	35	12			
8706002130	---- 소호 제 8704311010 호의 것	35	35	10			
8706002190	---- 기타	35	35	10			
8706002930	---- 소호 제 8704319010 호의 것	35	35	10			
8706002990	---- 기타	35	35	10			
8706009140	---- 소호 제 8704321010 호의 것	15	15	10			
8706009190	---- 기타	15	15	10			
8706009220	---- 소호 제 8704322010 호 및 제 8704329010 호의 것	15	15	1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706009290	- - - 기타	15	15	10			
8706009910	- - - 소호 제 8702909920 호의 것	15	15	10			
8706009990	- - - 기타	15	15	10			
8707100000	- 제 8703 호의 차량용의 것	15	5	5			c
8707901000	- - 제 8702 호의 차량용의 것	15	10	7			b
8707909000	- - 기타	15	10	7			b
8708100000	- 완충기와 그 부분품	15	10	5			a
8708210000	- - 안전벨트	15	5	5			c
8708291000	- - - 보닛/테코(카포타)	15	5	5			c
8708292000	- - - - 흡받이, 보닛, 사이드, 문 및 그 부분품	15	10	5			a
8708293000	- - - - 앞면 그릴	15	10	5			a
8708294000	- - - - 대쉬보드	15	10	5			a
8708295000	- - - - 프레임이 있는 창문, 발열 저항체와 전기 커넥터를 갖춘 창문(프레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15	10	5			a
8708299000	- - - - 기타	15	10	5			a
8708301000	- -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15	10	5			a
8708302100	- - - - 드럼	15	10	5			a
8708302210	- - - - - 시스템	15	10	5			a
8708302290	- - - - - 부분품	5	5	5			
8708302310	- - - - - 시스템	15	10	5			a
8708302390	- - - - - 부분품	5	5	5			
8708302400	- - - 서보 브레이크	5	5	5			
8708302500	- - - 디스크	15	10	5			a
8708302900	- - - 기타 부분품	15	10	5			a
8708401000	- - 기계식의 것	5	5	0			
8708409000	- - 기타	5	5	0			
8708501100	- - - 구동 차축	15	10	5			a
8708501900	- - - 부분품	5	5	5			
8708502100	- - - 비구동 차축	15	5	5			c
8708502900	- - - 부분품	15	10	5			a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708701000	-- 로드휠 및 부분품	15	10	5			a
8708702000	-- 림, 허브 캡 및 기타 부속품	15	10	5			a
8708801010	---- 구형의 것	15	10	5			a
8708801090	---- 부분품	5	5	5			
8708802010	---- 쇼크 “업소버”	15	10	5			a
8708802090	---- 부분품	5	5	5			
8708809010	---- 자동차 서스펜션용 안전바	10	5	5			b
8708809090	---- 기타	10	5	5			b
8708910010	---- 방열기	15	10	0			
8708910090	---- 부분품	10	5	5			b
8708920000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15	10	5			a
8708931000	---- 클러치	15	10	5			a
8708939100	----- 플레이트 및 디스크	15	5	5			c
8708939900	----- 기타	5	5	5			
8708940010	---- 운전대, 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	5	5	5			
8708940090	---- 부분품	10	5	5			b
8708950000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그 부분품	10	5	5			b
8708991100	----- 새시 프레임	15	10	5			a
8708991900	----- 부분품	5	5	5			
8708992100	----- 카아던 변속기	15	5	5			c
8708992900	----- 부분품	5	5	5			
8708993100	----- 기계식 시스템	15	10	5			a
8708993200	----- 유압식 시스템	5	5	5			
8708993300	----- 엔드 피팅	15	10	5			a
8708993900	----- 기타 부분품	5	5	5			
8708994000	---- 트랙 및 그 부분품	15	5	5			c
8708995000	---- 연료 탱크	15	10	5			a
8708999600	----- 안전벨트용 디토타네이터 및 센서 록	5	5	0			
8708999900	----- 기타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709110000	- - 전기식의 것	15	5	5			c
8709190000	- - 기타	15	5	5			c
8709900000	- 부분품	15	5	0			
8710000000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자주식의 것에 한하며, 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 및 그들의 부분품	5	5	0			
8711100000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20	15	10			b
8711200000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초과 25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35	30	10			a
8711300000	-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 초과 50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35	30	10			a
8711400000	-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 초과 800 시시 이하인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35	30	10			a
8711500000	- 실린더용량이 800 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20	15	10			b
8711900010	- - 전동기를 갖춘 자전거	20	15	10			b
8711900090	- - 기타	20	15	10			b
8712000000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이륜자전거와 기타의 자전거(배달용 3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20	15	10			b
8713100000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15	10	7			b
8713900000	- 기타	15	10	7			b
8714110000	- - 안장	15	10	7			b
8714190000	- - 기타	15	10	7			b
8714200000	- 신체장애이용 차량의 것	10	5	0			
8714910000	- - 프레임과 포크 및 그 부분품	15	10	7			b
8714921000	- - - - 휠 림	10	5	5			b
8714929000	- - - - 스포크	10	5	5			b
8714930000	- -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15	10	7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허브브레이크는 제외한다) 및 프리휠 스프로킷 휠						
8714940000	--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와 허브브레이크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	10	5	5			b
8714950000	-- 안장	10	5	5			b
8714960000	-- 페달과 크랭크기어 및 그들의 부분품	10	5	5			b
8714990000	-- 기타	15	10	7			b
8715001000	- 유모차	20	15	10			b
8715009000	- 부분품	15	10	7			b
871610000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의 것으로서 주거 또는 캠핑용의 것에 한한다)	20	15	10			b
8716200000	- 농업용의 자동 적재식 또는 자동 양하식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20	15	10			b
8716310000	--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러	20	5	5			c
8716390010	--- 냉장유닛을 갖춘 세미트레일러	20	5	5			c
8716390090	--- 기타	20	15	7			a
8716400000	- 기타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20	15	10			b
8716801000	-- 손수레	20	15	10			b
8716809000	-- 기타	20	15	10			b
8716900000	- 부분품	10	5	5			b
8801000000	기구와 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기타의 무동력 항공기	10	5	0			
8802110000	-- 자중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8802120000	-- 자중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8802201000	-- 최대 이륙 중량이 5,7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군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10	5	0			
8802209000	-- 기타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802301000	-- 최대 이륙 중량이 5,7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군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10	5	0			
8802309000	-- 기타	0	0	0			
8802400000	- 자중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	0	0	0			
8802600000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서보비틀 및 우주선 발진로켓	5	5	0			
8803100000	- 프로펠러와 로터 및 그들의 부분품	5	5	0			
8803200000	-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5	5	0			
8803300000	-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5	5	0			
8803900000	- 기타	5	5	0			
8804000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 그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8805100000	- 항공기 발진기어와 그 부분품,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어와 그 부분품	5	5	0			
8805210000	-- 모의 공중전장장치와 그 부분품	5	5	0			
8805290000	-- 기타	5	5	0			
8901101100	--- 50 톤 이하인 것	10	5	0			
8901101900	---- 기타	10	5	0			
8901102000	-- 레지스터가 1,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8901201100	--- 50 톤 이하인 것	10	5	0			
8901201900	---- 기타	10	5	0			
8901202000	-- 레지스터가 1,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8901301100	--- 50 톤 이하인 것	10	5	0			
8901301900	---- 기타	10	5	0			
8901302000	-- 레지스터가 1,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8901901100	--- 50 톤 이하인 것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8901901900	- - - 기타	10	5	0			
8901902000	- - 레지스터가 1,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8902001100	- - 50 톤 이하인 것	10	5	5			b
8902001900	- - 기타	10	5	0			
8902002000	- 레지스터가 1,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8903100000	- 인플랫터블식의 것	20	5	0			
8903910000	- -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5	0			
8903920000	- -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는 제외한다)	20	10	5			b
8903991000	- - - 제트 스키	20	10	5			b
8903999000	- - - 기타	20	10	5			b
8904001000	- 50 톤 이하의 것	10	5	0			
8904009000	- 기타	10	5	0			
8905100000	- 준설선	0	0	0			
8905200000	- 시추대 또는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5	5	0			
8905900000	- 기타	5	5	0			
8906100000	- 군함	5	5	0			
8906901000	- - 레지스터가 1,000 톤 이하인 것	10	5	5			b
8906909000	- - 기타	5	5	0			
8907100000	- 인플랫터블식의 부교	10	5	0			
8907901000	- - 등부표	10	5	0			
8907909000	- - 기타	10	5	0			
8908000000	선박과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의 것에 한한다)	0	0	0			
9001100000	- 광섬유, 광섬유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5	5	0			
9001200000	- 편광재료제의 쉬트와 판	5	5	0			
9001300000	- 콘택트렌즈	10	5	0			
9001400000	- 유리제의 안경렌즈	10	5	0			
9001500000	- 기타 재료제의 안경렌즈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9001900000	- 기타	5	5	0			
9002110000	- - 카메라용, 영사기용 또는 사진 확대기 또는 사진축소기용의 것	5	5	0			
9002190000	- - 기타	5	5	0			
9002200000	- 필터	5	5	0			
9002900000	- 기타	5	5	0			
9003110000	- - 플라스틱제의 것	15	10	7			b
9003191000	- - -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제의 것	15	5	0			
9003199000	- - - 기타	15	10	7			b
9003900000	- 부분품	5	5	0			
9004100000	- 선글라스	20	15	10			b
9004901000	- - 작업용 보호 안경	20	15	10			b
9004909000	- - 기타	20	15	5			a
9005100000	- 쌍안경	5	5	0			
9005800000	- 기타의 기기	10	5	0			
9005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10	5	0			
9006100000	- 인쇄제판에 사용되는 종류의 사진기	5	5	0			
9006300000	-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 또는 내과용 또는 외과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사진기, 법정비교용 사진기	5	5	0			
9006400000	- 즉석인화사진기	5	5	0			
9006510000	- -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파인더[싱글렌즈레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의 것에 한한다)	5	5	0			
9006521000	- - - 고정초점식의 것	5	5	0			
9006529000	- - - 기타	5	5	0			
9006531000	- - - 고정초점식의 것	5	5	0			
9006539000	- - - 기타	5	5	0			
9006591000	- - - 고정초점식의 것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9006599000	- - - 기타	5	5	0			
9006610000	-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에 한한다)	5	5	0			
9006690000	- - 기타	5	5	0			
9006910000	- - 촬영기용의 것	5	5	0			
9006990000	- - 기타	5	5	0			
9007110000	- - 폭이 16 밀리미터 미만인 필름용 또는 더블 8 밀리미터 필름용의 것	5	5	0			
9007190000	- - 기타	5	5	0			
9007201000	- - 폭이 35 밀리미터 이상인 필름용의 것	5	5	0			
9007209000	- - 기타	5	5	0			
9007910000	- - 촬영기용의 것	5	5	0			
9007920000	- - 영사기용의 것	5	5	0			
9008100000	- 환등기	5	5	0			
9008200000	-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세 또는 기타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를 불문한다)	5	5	0			
9008300000	- 기타 투영기	5	5	0			
9008400000	- 사진확대기와 사진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5	5	0			
9008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9010100000	- 롤상의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5	5	0			
9010500000	-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타 기기, 네가토스코우프	5	5	0			
9010600000	- 영사용 스크린	5	5	0			
9010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9011100000	- 입체현미경	5	5	0			
9011200000	- 기타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의 것에 한한다)						
9011800000	- 기타 현미경	5	5	0			
9011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9012100000	- 광학 현미경을 제외한 현미경, 회절기	5	5	0			
9012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9013100000	- 무기용의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 또는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의 망원경	5	5	0			
9013200000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는 제외한다)	5	5	0			
9013801000	- - 확대경	5	5	0			
9013809000	- - 기타	5	5	0			
9013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9014100000	- 방향탐지용 컴퍼스	5	5	0			
9014200000	-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는 제외한다)	5	5	0			
9014800000	- 기타의 기기	5	5	0			
9014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9015100000	- 거리측정기	5	5	0			
9015201000	- - 경위의	5	5	0			
9015202000	- - 시거의	5	5	0			
9015300000	- 수준기	5	5	0			
9015401000	- - 전기식 및 전자식의 것	5	5	0			
9015409000	- - 기타	5	5	0			
9015801000	- - 전기식 또는 전자식의 것	5	5	0			
9015809000	- - 기타	5	5	0			
9015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9016001100	- - 전기식의 것	5	5	0			
9016001200	- - 전자식의 것	10	5	0			
9016001900	- - 기타	5	5	0			
901600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9017100000	-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의 것인지	1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여부를 불문한다)						
9017201000	-- 축소확대기	5	5	0			
9017202000	-- 제도 세트(수학 상자)와 그들의 구성품(케이스에 들어있는 것인지 또는 별개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9017203000	-- 계산척, 계산반 및 실린더형 계산기	5	5	0			
9017209000	-- 기타	10	5	5			b
9017300000	-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 와 게이지류	5	5	0			
9017801000	-- 직선 측정용의 것	10	5	5			b
9017809000	-- 기타	10	5	0			
9017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9018110000	-- 심전계	5	5	0			
9018120000	--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	5	5	0			
9018130000	-- 자기공명 촬영기기	5	5	0			
9018140000	--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5	5	0			
9018190000	-- 기타	5	5	0			
9018200000	-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기기	5	5	0			
9018312000	---- 플라스틱제의 것	15	10	7			b
9018319000	---- 기타	15	10	7			b
9018320000	-- 관 모양의 금속제 바늘 및 봉합용 바늘	5	5	0			
9018390000	-- 기타	5	5	0			
9018410000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기타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10	5	5			b
9018491000	---- 치과용 바아, 디스크, 드릴 및 브러쉬	5	5	0			
9018499000	---- 기타	10	5	5			b
9018500000	- 기타 안과용 기기	5	5	0			
9018901000	-- 전기식 의료용의 것	5	5	0			
9018909000	-- 기타	5	5	0			
9019100000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기기						
9019200000	- 오존 흡입기, 산소 흡입기, 에어로졸 치료기, 인공 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	5	5	0			
9020000000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10	5	5			b
9021101000	-- 정형외과용 기기	5	5	0			
9021102000	-- 골절치료용 기기	5	5	0			
9021210000	-- 의치	15	15	10			
9021290000	-- 기타	5	5	0			
9021310000	-- 인조관절	5	5	0			
9021391000	---- 심장판막	5	5	0			
9021399000	---- 기타	5	5	0			
9021400000	-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5	5	0			
9021500000	-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5	5	0			
9021900000	- 기타	5	5	0			
9022120000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5	5	0			
9022130000	-- 기타(치과용의 것에 한한다)	10	5	0			
9022140000	-- 기타(내과용, 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에 한한다)	5	5	0			
9022190010	---- 공항용 비침투식 이동 검사장비	5	5	0			
9022190090	---- 기타	5	5	0			
9022210000	--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것	5	5	0			
9022290000	-- 기타 용도의 것	5	5	0			
9022300000	- 엑스선관	5	5	0			
9022900000	-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15	10	7			b
9023001000	- 사람 또는 동물 해부 모형	5	5	0			
9023002000	- 현미경 표본	5	5	0			
9023009000	- 기타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9024100000	- 금속 시험용 기기	5	5	0			
9024800000	- 기타의 기기	5	5	0			
9024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9025111000	- - - 의료용의 것	10	5	0			
9025119000	- - - 기타	10	5	0			
9025191100	- - - - 고온계	5	5	0			
9025191200	- - - - 제 87 류의 차량용 온도계	5	5	0			
9025191900	- - - - 기타	10	5	0			
9025199000	- - - 기타	5	5	0			
9025803000	- - 액체 비중계 및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5	5	0			
9025804100	- - - 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	5	5	0			
9025804900	- - - 기타	10	5	0			
9025809000	- - 기타	5	5	0			
9025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9026101100	- - - 제 87 류의 차량용 연료 측정기	15	5	0			
9026101200	- - - 수평계	5	5	0			
9026101900	- - - 기타	5	5	0			
9026109000	- - 기타	10	5	5			b
9026200000	-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10	5	5			b
9026801100	- - - 열전대 열측정계	5	5	0			
9026801900	- - - 기타	10	5	0			
9026809000	- - 기타	10	5	0			
9026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9027101000	- - 전기식 또는 전자식의 것	5	5	0			
9027109000	- - 기타	5	5	0			
9027200000	-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5	5	0			
9027300000	- 분광계, 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5	5	0			
9027500000	- 기타의 기기(자외선,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가시광선,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9027802000	-- 편광계, 피에이치 미터, 탁도계, 검염계 및 팽창계	5	5	0			
9027803000	-- 연기 탐지기	5	5	0			
9027809000	-- 기타	5	5	0			
9027901000	-- 마이크로튠	5	5	0			
902790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9028100010	-- 가스 차량 연료(천연가스)용 적산계	15	5	0			
9028100090	-- 기타	15	10	5			a
9028201000	-- 수도 계량기	15	10	5			a
9028209000	-- 기타	5	5	0			
9028301000	-- 단상의 것	15	5	0			
9028309000	-- 기타	15	5	0			
9028901000	-- 전기 계기의 것	10	5	0			
9028909000	-- 기타	10	5	5			b
9029101000	-- 택시미터	15	10	7			b
9029102000	-- 생산량계(전자식의 것에 한한다)	10	5	0			
9029109000	-- 기타	5	5	0			
9029201000	-- 속도계(전기식 또는 전자식의 것은 제외한다)	5	5	0			
9029202000	-- 회전속도계	10	5	0			
9029209000	-- 기타	5	5	0			
9029901000	-- 속도계의 것	5	5	0			
9029909000	-- 기타	5	5	0			
9030100000	-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 기기	5	5	0			
9030200000	- 오실로스코우프와 오실로그래프	5	5	0			
9030310000	--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5	5	0			
9030320000	--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5	5	0			
9030330000	--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5	5	0			
9030390000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9030400000	- 전기통신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예: 누화계, 계인측정계, 만곡률계, 잡음전압계)	5	5	0			
9030820000	- -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5	5	0			
9030840000	-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5	5	0			
9030890000	- - 기타	5	5	0			
9030901000	- - 전기량 측정용 기기의 것	5	5	0			
9030909000	- - 기타	5	5	0			
9031101000	- - 전자식의 것	5	5	0			
9031109000	- - 기타	5	5	0			
9031200000	- 테스트벤치	5	5	0			
9031410000	- -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 검사용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또는 레티클 검사용의 것	5	5	0			
9031491000	- - - 광학식 비교기, 비교벤치, 측정벤치, 간섭계, 광학식 표면 테스터, 차동필러를 갖춘 장치, 얼라인먼트 망원경, 광학식 자, 마이크로미터 판독 장치, 광학식 각도계와 포시미터	5	5	0			
9031492000	- - - 윤곽투영기	5	5	0			
9031499000	- - - 기타	5	5	0			
9031802000	- - 제 87 류의 차량의 엔진 조절용 기기(싱크로스코프)	5	5	0			
9031803000	- - 면적계	5	5	0			
9031809000	- - 기타	5	5	0			
9031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9032100000	-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0	0	0			
9032200000	- 매노우스타트	5	5	0			
9032810000	- - 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것	15	10	5			a
9032891100	- - - - 전압이 260 볼트 이하이며 전류가 30 암페어 이하인 것	10	5	5			b
9032891900	- - - - 기타	10	5	5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9032899000	- - - 기타	5	5	0			
9032901000	- -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의 것	10	5	0			
9032902000	- - 전압조정기의 것	10	5	0			
9032909000	- - 기타	5	5	0			
9033000000	제 90 류의 기계, 기기, 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5	0			
91011100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5	0			
9101190000	- - 기타	5	5	0			
9101210000	- - 자동권식의 것	5	5	0			
9101290000	- - 기타	5	5	0			
9101910000	- - 전기구동식의 것	5	5	0			
9101990000	- - 기타	5	5	0			
91021100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5	0			
9102120000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5	0			
9102190000	- - 기타	5	5	0			
9102210000	- - 자동권식의 것	5	5	0			
9102290000	- - 기타	5	5	0			
9102910000	- - 전기구동식의 것	5	5	0			
9102990000	- - 기타	5	5	0			
9103100000	- 전기구동식의 것	20	15	5			a
9103900000	- 기타	5	5	0			
9104001000	- 제 87 류의 차량용의 것	5	5	0			
9104009000	- 기타	5	5	0			
9105110000	- - 전기구동식의 것	20	15	5			a
9105190000	- - 기타	20	15	5			a
9105210000	- - 전기구동식의 것	20	15	10			b
9105290000	- - 기타	20	15	10			b
9105911000	- - - 전기시계시스템용 클록(어미 시계 및 자시계)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9105919000	- - - 기타	20	15	10			b
9105990000	- - 기타	20	15	10			b
9106100000	- 타임레지스터, 타임레코더	10	5	0			
9106901000	- - 주차시간 기록계	5	5	0			
9106909000	- - 기타	10	5	0			
91070000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	0	0	0			
91081100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5	5	0			
9108120000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5	0			
9108190000	- - 기타	5	5	0			
9108200000	- 자동권식의 것	10	5	0			
9108900000	- 기타	5	5	0			
9109110000	- - 자명종 시계의 것	5	5	0			
9109190000	- - 기타	5	5	0			
9109900000	- 기타	5	5	0			
9110110000	- - 완전한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에 한한다)(무브먼트 세트)	5	5	0			
9110120000	- - 불완전한 무브먼트(조립된 것에 한한다)	5	5	0			
9110190000	- - 러프 무브먼트	5	5	0			
9110900000	- 기타	5	5	0			
9111100000	-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케이스	5	5	0			
9111200000	- 비(卑)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5	5	0			
9111800000	- 기타의 케이스	5	5	0			
9111900000	- 부분품	5	5	0			
9112200000	- 케이스	15	5	0			
9112900000	- 부분품	5	5	0			
9113100000	-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	20	1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9113200000	- 비(卑)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 도금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0			
9113901000	-- 플라스틱제의 것	20	15	5			a
9113902000	-- 가죽제의 것	20	15	5			a
9113909000	-- 기타	20	15	5			a
911410000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5	5	0			
9114200000	- 보석	5	5	0			
9114300000	- 문자판	5	5	0			
9114400000	- 지판과 브리지	5	5	0			
9114900000	- 기타	5	5	0			
9201100000	- 업라이트 피아노	5	5	0			
9201200000	- 그랜드 피아노	5	5	0			
9201900000	- 기타	5	5	0			
9202100000	- 활을 사용하는 것	5	5	0			
9202900000	- 기타	10	10	5			
9205100000	- 금관악기	5	5	0			
9205901000	-- 건반이 있는 파이프오르간, 하모늄과 이와 유사한 프리메탈 리드식의 건반악기	5	5	0			
9205902000	-- 아코디언 및 이와 유사한 악기	5	5	0			
9205903000	-- 하모니카	5	5	0			
9205909000	-- 기타	10	10	5			
9206000000	타악기(예: 북, 목금, 심벌, 캐스터넬트, 마라카스)	10	10	5			
9207100000	- 건반악기(아코디온은 제외한다)	5	5	0			
9207900000	- 기타	5	5	0			
9208100000	- 뮤지컬박스	5	5	0			
9208900000	- 기타	5	5	0			
9209300000	- 악기의 현	5	5	0			
9209910000	--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9209920000	--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9209940000	-- 제 9207 호 약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5	5	0			
9209990000	-- 기타	5	5	0			
9301110000	-- 자주식의 것	20	15	0			
9301190000	-- 기타	20	15	0			
9301200000	-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 및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20	15	0			
9301901000	-- 완전 자동식 산탄총	20	15	0			
9301902100	---- 노리쇠 작동식의 것	20	15	0			
9301902200	---- 반자동식의 것	20	15	0			
9301902300	---- 완전 자동식의 것	20	15	0			
9301902900	---- 기타	20	15	0			
9301903000	-- 기관총	20	15	0			
9301904100	---- 완전 자동식의 것	20	15	0			
9301904900	---- 기타	20	15	0			
9301909000	-- 기타	20	15	0			
9302001000	- 리볼버	20	15	10			b
9302002100	-- 반자동식의 것	20	15	10			b
9302002900	-- 기타	20	15	10			b
9302003000	- 다열 총열 피스톨	20	15	10			b
9303100000	- 총구장전화기	20	15	0			
9303201100	---- 펌프 작동식의 것	20	15	0			
9303201200	---- 반자동식의 것	20	15	0			
9303201900	---- 기타	20	15	0			
9303202000	--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것	20	15	0			
9303209000	-- 기타	20	15	0			
9303301000	-- 단발	20	15	0			
9303302000	-- 반자동식의 것	20	15	0			
9303309000	-- 기타	20	15	0			
9303900000	- 기타	20	15	0			
9304001000	- 압축 공기식의 것	20	15	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9304009000	- 기타	10	10	0			
9305101000	-- 방아쇠 장치	15	15	0			
9305102000	-- 프레임과 총몸	15	15	0			
9305103000	-- 총열	15	15	0			
9305104000	-- 피스톤, 핀 및 반동 완충기(총구 브레이크)	15	15	0			
9305105000	-- 탄창 및 그 부분품	15	15	0			
9305106000	-- 소음기 및 그 부분품	15	15	0			
9305107000	-- 개머리판, 권총 손잡이 및 락플레이트	15	15	0			
9305108000	-- 블록(피스톨용의 것에 한한다) 및 실린더(리볼버용의 것에 한한다)	15	15	0			
9305109000	-- 기타	15	15	0			
9305210000	-- 산탄총의 총열	15	15	0			
9305291000	---- 방아쇠 장치	15	15	0			
9305292000	---- 프레임과 총몸	15	15	0			
9305293000	---- 라이플 총열	15	15	0			
9305294000	---- 피스톤, 핀 및 반동 완충기(총구 브레이크)	15	15	0			
9305295000	---- 탄창 및 그 부분품	15	15	0			
9305296000	---- 소음기 및 그 부분품	15	15	0			
9305297000	---- 소음기 및 그 부분품	15	15	0			
9305298000	---- 브리치, 노리쇠 및 노리쇠집	15	15	0			
9305299000	---- 기타	15	15	0			
9305911100	----- 방아쇠 장치	15	15	10			
9305911200	----- 프레임과 총몸	15	15	10			
9305911300	----- 총열	15	15	10			
9305911400	----- 피스톤, 핀 및 반동 완충기(총구 브레이크)	15	15	10			
9305911500	----- 탄창 및 그 부분품	15	15	10			
9305911600	----- 소음기 및 그 부분품	15	15	10			
9305911700	----- 소음기 및 그 부분품	15	15	10			
9305911800	----- 브리치, 노리쇠 및 노리쇠집	15	15	1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9305911900	- - - - 기타	15	15	10			
9305919000	- - - 기타	15	15	10			
9305990000	- - 기타	15	15	0			
9306210000	- - 탄약	20	15	0			
9306291000	- - - 탄환	20	15	0			
9306299000	- - - 부분품	15	15	0			
9306302000	- - 피스톨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용, 무통 도살기용 공포탄	20	15	0			
9306303000	- - 기타 탄약	20	15	0			
9306309000	- - 부분품	15	15	0			
9306901100	- - - 전쟁 무기용의 것	20	15	5			a
9306901200	- - - 작살총용 작살	20	15	10			b
9306901900	- - - 기타	20	15	10			b
9306909000	- - 부분품	15	15	10			
9307000000	검류,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그들의 부분품과 집	20	15	10			b
9401100000	- 항공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의자	5	5	0			
9401200000	- 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의자	20	10	5			b
9401300000	- 회전 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20	15	10			b
9401400000	- 침대겸용 의자(가든시트 또는 캠핑용 장비는 제외한다)	20	15	10			b
9401510000	- -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20	15	10			b
9401590000	- - 기타	20	15	10			b
9401610000	- - 의자의 속, 용수철, 카바 등을 댄 것	20	15	10			b
9401690000	- - 기타	20	15	10			b
9401710000	- - 의자의 속, 용수철, 카바 등을 댄 것	20	15	10			b
9401790000	- - 기타	20	15	10			b
9401800000	- 기타의 의자	20	15	10			b
9401901000	- - 뒤로 젖히는 의자용 장치	5	5	5			
9401909000	- - 기타	15	15	10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9402101000	- - 치과용 의자	15	5	5			c
9402109000	- - 기타	15	5	5			c
9402901000	- - 수술대와 그 부분품	15	10	7			b
9402909000	- - 기타의 것과 그 부분품	15	10	7			b
9403100000	-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금속제가구	20	15	10			b
9403200000	- 기타 금속제가구	20	15	10			b
9403300000	-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목제가구	20	15	10			b
9403400000	- 주방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목제가구	20	15	10			b
9403500000	- 침실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목제가구	20	15	10			b
9403600000	- 기타의 목제가구	20	15	10			b
9403700000	- 플라스틱제의 가구	20	15	10			b
9403810000	- - 대나무 또는 등나무의 것	20	15	10			b
9403890000	- - 기타	20	15	10			b
9403900000	- 부분품	15	15	10			
9404100000	- 매트리스 서포트	20	15	10			b
9404210000	- - 셀룰로오스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10			b
9404290000	- - 기타 재료의 것	20	15	10			b
9404300000	- 슬리핑 백	20	15	10			b
9404900000	- 기타	20	15	10			b
9405101000	- - 수술실 또는 치과실용의 특수한 것(무영등)	10	5	5			b
9405109000	- - 기타	20	15	10			b
9405200000	- 전기식의 테이블, 책상, 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	20	15	10			b
9405300000	- 크리스마스 트리 사용되는 종류의 조명세트	20	15	10			b
9405401000	- - 공공 조명용의 것	20	15	10			b
9405402000	- - 투광기	15	15	10			
9405409000	- - 기타	15	15	10			
9405501000	- - 압축된 액체 연료의 것	20	15	10			b
9405509000	- - 기타	20	15	10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9405600000	-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것	20	10	5			b
9405910000	-- 유리제의 것	10	5	5			b
9405920000	-- 플라스틱제의 것	15	15	10			
9405990000	-- 기타	15	15	10			
9406000000	조립식 건축물	15	10	7			b
9503001000	- 삼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20	15	10			b
9503002200	--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10			b
9503002800	--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20	15	10			b
9503002900	-- 기타	20	15	10			b
9503003000	-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10			b
9503004000	- 각종의 퍼즐	20	15	10			b
9503009100	-- 전기식 기차(궤도, 신호기와 기타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20	15	10			b
9503009200	-- 조립식 완구	20	15	10			b
9503009300	-- 동물 또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 모형의 완구	20	15	10			b
9503009400	-- 완구용 악기류	20	15	10			b
9503009500	-- 세트 또는 모음으로 되어있는 것	20	15	10			b
9503009600	-- 기타(모터를 갖춘 것에 한한다)	20	15	10			b
9503009910	---- 천연고무라텍스제의 지구의	20	15	10			b
9503009990	---- 기타	20	15	10			b
9504100000	-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5	5	0			
9504200000	- 각종의 당구용구와 부속품	20	15	10			b
9504301010	---- 단일 위치용의 것(1 인용의 것)	20	15	10			b
9504301090	---- 기타	20	15	10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9504309000	-- 기타	20	15	10			b
9504400000	- 유희용 카드	20	15	10			b
9504901000	-- 체스 및 체커 게임	20	15	10			b
9504902000	-- 볼링 필수품(자동식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10			b
9504909100	---- 확률의 것	20	15	10			b
9504909900	---- 기타	20	15	10			b
9505100000	-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20	15	10			b
9505900000	- 기타	20	15	10			b
9506110000	-- 스키	20	15	0			
9506120000	--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	20	15	0			
9506190000	-- 기타	20	15	0			
9506210000	-- 세일보드	20	15	0			
9506290000	-- 기타	20	15	0			
9506310000	-- 골프채(완제품의 것에 한한다)	20	15	0			
9506320000	-- 골프공	20	15	0			
9506390000	-- 기타	20	15	5			a
9506400000	- 탁구용구	20	15	5			a
9506510000	-- 로온테니스 라켓(줄을 맨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0			
9506590000	-- 기타	20	15	0			
9506610000	-- 로온테니스 공	20	15	0			
9506620010	---- 축구(미식 축구를 포함한다)의 것	20	15	10			b
9506620020	---- 농구의 것	20	15	10			b
9506620030	---- 배구의 것	20	15	10			b
9506620090	---- 기타	20	15	10			b
9506690000	-- 기타	20	15	10			b
9506700000	-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20	15	10			b
9506910000	--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체조 또는 육상경기 용구	20	15	10			b
9506991000	---- 야구 및 소프트볼 용구(공은 제외한다)	20	15	10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9506999000	- - - 기타	20	15	10			b
9507100000	- 낚싯대	5	5	0			
9507200000	-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9507300000	- 낚시 릴	5	5	0			
9507901000	- - 낚시용의 것	20	15	0			
9507909000	- - 기타	20	15	0			
9508100000	- 순회서커스용과 순회동물원용의 용품	15	5	0			
9508900000	- 기타	10	5	5			b
9601100000	- 가공한 아이보리와 그 제품	20	15	0			
9601900000	- 기타	20	15	10			b
9602001000	- 제약품용 젤라틴 캡슐	20	15	10			b
9602009000	- 기타	5	5	0			
9603100000	- 비와 브러쉬(작은 가지 또는 기타의 식물성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에 한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15	10			b
9603210000	- - 칫솔(덴탈플레이트 브러쉬를 포함한다)	20	15	10			b
9603290000	- - 기타	20	15	10			b
9603301000	- - 회화용의 브러쉬	20	15	10			b
9603309000	- - 기타	20	15	10			b
9603400000	- 페인트용, 디스토퍼용, 바니시용 또는 이와 유사한 브러쉬(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쉬는 제외한다),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20	15	10			b
9603500000	- 기타의 브러쉬(기계, 기구 또는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5	5	0			
9603901000	- - 비 또는 브러쉬 제조용으로 묶고 술 모양으로 정돈된 것	15	15	10			
9603909000	- - 기타	15	15	10			
9604000000	수동식의 체 및 어레미	15	10	7			b
9605000000	여행세트(개인 화장용, 바느질용 또는 신발 또는	20	15	10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9606100000	- 프레스파스너, 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 및 그들의 부분품	15	10	7			b
9606210000	-- 플라스틱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15	10	7			b
9606220000	-- 비(卑)금속제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아니한 것	15	10	7			b
9606291000	---- 타구아(식물성 아이보리)제의 것	15	10	7			b
9606299000	---- 기타	15	10	7			b
9606301000	-- 플라스틱제 또는 타구아(식물성 아이보리)제의 것	15	10	7			b
9606309000	-- 기타	10	5	5			b
9607110000	-- 비(卑)금속제의 체인스쿠프가 부착된 것	15	10	7			b
9607190000	-- 기타	15	10	7			b
9607200000	- 부분품	15	10	7			b
9608101000	-- 볼펜	20	15	10			b
9608102100	---- 볼포인트용 홀더(볼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5	0			
9608102900	---- 기타	20	15	10			b
9608201000	-- 팁이 펠트로 된 것과 마커	20	15	10			b
9608209000	-- 부분품	20	15	10			b
9608310000	-- 인디언 잉크용 드로잉 펜	20	15	0			
9608390000	-- 기타	20	15	0			
9608400000	-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20	15	0			
9608500000	-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20	15	0			
9608600000	- 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에 한한다)	20	15	0			
9608910000	-- 펜촉과 님포인트	5	5	0			
9608990000	-- 기타	15	15	5			
9609100000	-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20	15	10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 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속에 심을 넣은 것에 한한다)						
9609200000	- 연필심(검은색 또는 색깔이 있는 것에 한한다)	20	15	10			b
9609900000	- 기타	20	15	10			b
9610000000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	20	15	10			b
9611000000	일부인·봉합용 또는 넘버링용 스탬프 및 이와 유사한 것(레이블에 날인 또는 양각하는 장치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수동식의 컴포징 스틱 및 그러한 컴포징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	10	5	5			b
9612100000	- 리본	20	10	5			b
9612200000	- 잉크 패드	15	10	7			b
9613100000	-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의 것으로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에 한한다)	20	15	0			
9613200000	-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의 것으로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에 한한다)	20	15	0			
9613800000	- 기타의ライター	20	15	0			
9613900000	- 부분품	20	15	0			
9614000000	깍연용 파이프(파이프 볼을 포함한다)와 시가 또는 시가렛홀더 및 그들의 부분품	20	15	0			
9615110000	- - 경화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	20	15	10			b
9615190000	- - 기타	20	15	10			b
9615900000	- 기타	20	15	10			b
9616100000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그들의 마운트와 두부	20	15	10			b
9616200000	- 화장용 분침과 패드	20	15	10			b
9617000000	보온병과 기타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에 한한다), 그 부분품(유리제의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20	15	10			b

HTSC 2007	품목명	기준 세율	2012년 8월 13일 현재 최혜국실행관세율	양허유형	안데스 가격 밴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비고
9618000000	마네킹 인형과 기타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기타 쇼윈도 장식용의 움직이는 전시용품	15	10	7			b
9701100000	- 회화, 데생과 파스텔	20	15	10			b
9701900000	- 기타	20	15	10			b
9702000000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20	15	10			b
97030000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20	15	10			b
9704000000	우표 또는 수입인지, 우편요금 별납증서, 초일봉투, 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제 49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20	15	0			
970500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해부학, 사학, 고고학, 고생물학, 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에 한한다]	20	15	0			
9706000000	골동품(제작 후 100 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0	15	0			

제 3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3.1 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은 다음의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상품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1) 제3.2조의 의미 내에서 상품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2) 상품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절차의 결과로서 부속서 3-가에 규정된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 3)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그리고

나. 상품이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 3.2 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가호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나.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된 식물성 상품

- 다.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마.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토에서 수렵 또는 낚사냥에 의하거나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해 획득된 상품¹
- 바. 한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 사. 마호에 언급된 어류, 패류 또는 그 밖의 해양생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아. 어류·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을 제외하고,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그러한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1)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 2)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 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한다. 그리고
- 카. 이 조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¹ 마호에도 불구하고, 비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비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양 당사국의 영역 내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은 제3.2조에 따라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3.3 조 역내가치포함비율

1. 부속서 3-가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산정된다.

가. 공제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조정가치(AV)}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조정가치(AV)}} \times 100$$

나. 집적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조정가치(AV)}}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조정가치(AV)는 상품의 조정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제3.4조에서 결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2.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고려된 모든 비용은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합치되게 기록되고 유지된다.

3.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상 모든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이 목적상, 관세평가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국내 거래에 적용된다.

4. 부속서 3-가에서 자동차 상품²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에 규정된 대로 또는 다음의 방법에 기초하여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자동차 제품을 위한) 순원가법

$$\text{역내가치 포함비율 (RVC)} = \frac{\text{순원가(NC)}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순원가(NC)}}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순원가(NC)는 상품의 순원가이다. 그리고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은 제4항의 역내가치포함비율 방법의 목적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의 범주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그 범주 내의 모든 자동차를 기초로 또는 그 범주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만을 기초로,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을 내는 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차량류에서 동일 모델라인의 자동차

나.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자동차류, 또는

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동일 모델라인의 자동차

제 3.4 조

² 제 4 항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다음 호와 소호로 분류된 상품에만 적용된다. 제 8701 호 내지 8705 호(자동차) 및 제 8706 호(샤시)

재료의 가치

1. 제2항 및 제3항을 조건으로, 제3.3조에 언급된 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 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직접 수입된 재료의 경우, 재료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
- 나.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된 재료의 경우, 관세평가협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 그리고 해당 주해에 따라 결정되는 가치, 즉 생산자에 의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요구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정을 가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는 가치, 또는
- 다. 자가생산된 재료의 경우,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및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추가된 이윤과 동등한 이윤 금액

2. 제1항의 목적상, 제1항에 포함된 경우, 다음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다.

- 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 생산자의 소재지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서 발생한 화물운송비³ · 보험료 ·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나. 납부되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 환급 · 환급가능하거나 달리 회수가 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 ·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 다.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그리고
- 라.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가공 비용

3. 제1항의 목적상,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은 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추가될 수 있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 3.4 조제 2 항가호 및 제 3.4 조제 3 항가호의 목적상, “화물운송비”는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국내 화물운송비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화물운송비를 포함한다.

- 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 데서 발생한 화물운송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나.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환급·환급가능하거나 달리 회수가 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조세 및 통관 증개수수료, 그리고
- 다.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제 3.5 조 중간재

- 1.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⁴
- 2. 비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그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제 3.6 조 누적

-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 2.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다만, 그 상품은 제3.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⁴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요건은 상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상품이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고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다른 상품에 적용가능한 요건은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된 그러한 상품에 결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3.7 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가에 따른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이다. 다만,

가.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모든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해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은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고 있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은 HS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은 HS 제1501호부터 제1508호까지 또는 제1511호부터 제1515호까지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HS 제15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은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은, 그 상품의 세번 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그 상품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 3.8 조 대체가능 상품

1.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모든 대체가능 상품은 다음에 의해 구별된다.

가. 상품의 물리적 분리,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LIFO”) 또는 선입선출법(“FIFO”)과 같은 재고관리 기법

2. 특정 대체가능 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제 3.9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수입 시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원산지는,

가. 그 상품이 세번변경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확인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제 3.10 조 상품의 세트

부속서 3-가에 규정된 규칙에도 불구하고, HS 일반규칙 3에 언급된 대로 상품의 세트 또는 소포장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가. 포장재료 및 용기를 포함한 모든 구성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어야 한다.
또는

- 나. 상품의 세트 또는 소포장이 포장재료 및 용기를 포함한 비원산지 구성 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상품의 세트 또는 소포장의 비원산지 포장재료 및 용기를 포함한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상품의 세트 또는 소포장의 조정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3.11 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1.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3.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이 제3.2조의 의미 내에서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3.12 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3.13 조 간접재료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3.14 조 불인정 공정

이 장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 또는 처리 중 하나 또는 그의

조합을 거친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공정
- 나. 포장의 변경 또는 포장물의 해체 또는 조립
- 다.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마. 단순한⁵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사. 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아.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의 부착
- 자.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사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 차. 완전한 상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카. 동물의 도살
- 타.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파.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또는

⁵ 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반응이란(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을 말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다음은 화학반응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 가. 물 또는 그 밖의 용제에 용해
- 나. 용매물을 포함한 용제의 제거, 또는
-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하.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제 3.15 조 직접 운송

1.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이 증명될 수 없는 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이 하역, 운송 이유로 한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이외에,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떠한 추가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다는 것

나.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세관 통제 하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한다는 것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함으로써 제공된다.

가. 비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상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또는

나. 비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고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적시하는 서류

제 3.16 조 영역 원칙

1. 제3.1조부터 제3.15조까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이 해당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으로부터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은 재반입될 경우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3-나에 열거된 상품은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공정 및 처리를 거친 경우에도 부속서 3-나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 3.17 조 협의 및 수정

1. 양 당사국은 이 장이 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이 협정의 정신 및 목적과 합치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이 장의 운영에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진전을 고려하여, 제19.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이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한 가능한 개정 또는 수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제 2 절 원산지 절차

제 3.18 조 원산지 증명서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고 특혜관세를 받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신청은 원산지 증명서로 뒷받침된다.

2.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하며,

가. 그에 기술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나. 인쇄본 또는 전자본을 포함한 그러한 기타 수단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다. 양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부속서 3-다에 규정된 견본 및 그에 포함된 지침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10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따른 재심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자국의 법이 요구하는 언어로 된 원산지 증명서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는 다음에 기초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다.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나. 생산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 또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서

4. 제3항의 어떠한 규정도 상품의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또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수입, 또는

나.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그에 기술된 상품의 복수 수입

6.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서명일 후 1년 동안,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해당 원산지 증명서의 만기일 전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원산지 증명서를 수락할 수 있다.

8. 수입 신고서가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작성된 원산지 상품의 경우, 각 당사국은 협정 발효일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락한다.

제 3.19 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자국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원산지 상품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요청할 것
- 나.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서를 작성할 것
- 다. 가호에 언급된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할 것, 그리고
- 라. 그 당사국의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사본 및 상품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그러한 서류를 제공할 것

2. 수입자가 신청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신고서를 정정하고 납부해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제 3.20 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상품이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이내에, 수입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한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원산지 증명서 및 적절한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 밖의 증거, 그리고
- 나. 수입 당사국이 요청할 수 있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그러한 서류

제 3.21 조 원산지 증명서 면제

제3.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요건을 면제한 경우

다만, 수입이 제3.18조 및 제3.19조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3.22 조 수출에 관한 의무

1.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서 사본, 또는 그 밖의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모든 인에게 그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명시하는 허위 증명서를 작성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허위 증명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자국의 관세법과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정황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 3.23 조 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 후 5년 동안 또는 수출 당사국이 명시할 수 있는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그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특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자국의

영역에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공급자가 수행한 가공의 직접적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 또는 내부장부에 포함된 것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다. 당사국에서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들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그리고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로서, 당사국에서 작성된 것

2.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요청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포함한 그러한 서류를 상품 수입일 후 5년 동안 또는 그 당사국이 명시할 수 있는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서면의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매체에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3.24 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품의 수입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상응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무효화되지는 아니한다.

2. 원산지 증명서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 3.25 조 원산지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상품의 원산지 검증 지원 요청

라. 시설 및 상품의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한 원산지를 언급하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수입 당사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무원은 검증 방문의 참관인으로 동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는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절차

2. 제1항가호 및 제1항나호의 목적상,

가. 수입 당사국이 작성한,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서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요청된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기한이 서면 요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더 긴 기간이라는 것을 적시할 것이다. 그리고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호에 언급된 기한 내에 요청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검증 완료 전에 고려될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최소 30일의 서면 통보를 제공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3. 제1항다호의 목적상,

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공한다.

1) 그러한 검증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

2)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그 사본, 그리고

3) 그러한 요청의 목적상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및 서류

- 나.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조사결과 및 사실을 포함한 영문 서면진술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이용가능하게 된 증빙서류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당사국은 위에 언급된 서면진술을 영어 및 자국법이 요구하는 언어로 발행할 수 있다. 이 진술은 문서가 정보인지 여부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한다.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진술은 그 상품이 어떻게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 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청일부터 150일 이내에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진술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4. 제1항라호의 목적상,

- 가. 검증 방문 수행 이전에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 1)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방문 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통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 2)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얻는다.
-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호에 따라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된 검증 방문에 대한 서면동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통보 당사국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 다. 가호에 따른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그러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만큼, 제안된 검증 방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가진다. 이 연장은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통보된다. 그리고
- 라. 검증 방문 종료 후, 검증 수행 당사국은 검증된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관련 법과 사실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제공한다.

5. 제1항나호 및 제1항다호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고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응답한 모든 정보는 영어로 전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위에서 언급된 정보를 영어 및 자국 법이 요구하는 언어로 발행할 수 있다.

제 3.26 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 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나.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제 3.27 조 비당사국 송장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회사에 의하여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그 회사의 계정으로 송장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 3.28 조 통일규정

- 1. 양 당사국은 양국 각자의 법, 규정 또는 행정 정책을 통하여, 이 장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규정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다.
- 2. 양 당사국은 양국 각자의 국내 절차에 따라, 합의된 통일규정을 동시에 이행한다.

제 3.29 조 벌칙

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된 자국 법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제 3.3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조정가치란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하여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를 말한다.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가 없거나 알지 못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가치.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연체동물·갑각류·그 밖의 수생 무척추 동물 및 수생 식물을 포함한 수생 생물을 알·치어·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운송수단이란 항공, 해상 또는 육로 운송을 위한 모든 수송 수단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 상품이 수입 항구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될 때, 지정된 목적 항구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상품, 보험 및 화물비용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하는 가격을 말한다. 평가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시한다.

자동차류란 자동차의 다음 범주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HS 소호 제8701.20호에 분류된 자동차, 소호 제8702.10호 또는 제8702.90호에 분류된 16인승 이상의 수송차량, 그리고 소호 제8704.10호, 제8704.22호, 제8704.23호, 제8704.32호, 제8704.90호 또는 제8705호 또는 제8706호에 분류된 자동차

나. 소호 제8701.10호 또는 제8701.30호부터 제8701.90호까지에 분류된 자동차

다. 소호 제8702.10호 또는 제8702.90호에 분류된 15인승 이하의 수송차량, 그리고 소호 제8704.21호 또는 제8704.31호에 분류된 자동차, 또는

라. 소호 제8703.21호부터 제8703.90호까지에 분류된 자동차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이란 상품이 지정된 수출 항구에서 운송선에 적재될 때, 상품의 비용 및 운송선에 상품을 적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상품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불되거나 지불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평가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시한다.

대체가능 상품이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도 아니하고 그 일부를 구성하지도 아니하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공구, 금형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사. 촉매제 및 용제, 그리고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재료란 부품 또는 원료를 포함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자가생산된 재료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모델라인이란 같은 차대나 모델명을 가진 일군의 자동차를 말한다.

순원가란 총비용에서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마케팅 및 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상품의 순원가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순원가를 말한다.

가.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을 계산하여, 그러한 모든 상품의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마케팅 및 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후, 이렇게 도출된 그러한 상품들의 순원가를 그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한 것

나.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을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그 상품에 총비용을 할당한 후, 그 상품에 할당된 총비용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마케팅 및 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것, 또는

다. 그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의 부분을 구성하는 각 비용을 합리적으로 할당하여, 이러한 비용들의 총합이 판촉·마케팅 및 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다만, 모든 그러한 비용의 할당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규정된 합리적인 비용할당과 관련된 규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비허용 이자비용이란 생산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생산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채무증권 수익률보다 700 베이스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란 수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용으로 포장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채굴·수확·어로·번식·사육·덫사냥·수렵·제조 또는 조립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합리적 할당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총비용이란 한쪽 이상의 당사국 영역에서 발생한 상품에 대한 모든 제품비용, 기간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제품비용은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며, 재료의 가치, 직접 노무비, 그리고 직접 경비를 포함한다. 기간비용은 제품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같이, 발생한 기간 중에 소요된 비용이다. 그 밖의 비용은 이자와 같이 생산자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것으로서, 제품비용 또는 기간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다. 총비용은, 생산자가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배당금으로 지불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자에 의하여 취득된 이윤이나, 자산 취득세를 포함하여 그 이윤에 대하여 납부된 세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가치란 관세 산정 또는 이 장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또는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1 부
일반 주해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

가.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 또는 특정 규정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명시된다.

나. 세번변경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

다. 특정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된 경우, 그 규정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을 거친 경우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은 제외하도록 기재된 경우, 그 원산지 규정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마. 호 또는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그러한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류란 HS의 류를 말한다.

호란 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부란 HS의 부를 말한다. 그리고

소호란 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HS	원산지 기준
제1부	산 동물, 동물성 생산품(제1류-제5류)
제1류	산 동물
010121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129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130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190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221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229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231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239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290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310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391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392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410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420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511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512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513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514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515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594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599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611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612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613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614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619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620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HS	원산지 기준
010631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632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633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639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641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649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010690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2류	육과 식용설육
02011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12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13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21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22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23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311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312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319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321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322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329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41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421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422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423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43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441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442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443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45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50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61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HS	원산지 기준
020621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622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629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63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641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649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68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69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11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12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13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14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24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25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26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27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41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42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43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44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45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51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52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53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54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55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76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81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83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84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85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86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89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HS	원산지 기준
02091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099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1011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1012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1019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1020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1091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1092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1093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21099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3류	어류 및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제3류 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¹ 또는 자어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
	주 ¹ : 치어란 후기자어기에 있는 덜 자란 물고기를 말하며, 핑거링스(fingerlings), 파(parr), 스몰트(smolts) 및 엘버(elvers)를 포함한다.
030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1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1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1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1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19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19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1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03022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2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3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3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3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4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4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4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4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4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4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5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5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5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5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5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7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7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7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7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7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8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8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8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8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03028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8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2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2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2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2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3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4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4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4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4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4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5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5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5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5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5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6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6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03036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6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6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6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8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8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8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8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8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4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4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4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4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4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5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5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5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5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6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6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6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7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03047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7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7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7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7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8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8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8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8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8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8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8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8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9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9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4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4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4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4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6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6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03056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6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7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7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57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611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612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614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615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616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617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HS	원산지 기준
030619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621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622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624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625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626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627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HS	원산지 기준
030629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7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19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7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29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7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39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7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49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7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759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훈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훈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HS	원산지 기준
030760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혼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혼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771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030779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혼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혼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781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030789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혼제한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혼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791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030799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혼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혼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811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030819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혼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혼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821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030829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혼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혼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HS	원산지 기준
030830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혼제한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혼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030890	<p>다른 물품(제16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혼제한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혼제가공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것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제4류	<p>낙농품, 조란(鳥卵), 천연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p>
04011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12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14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15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21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221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229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291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299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31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39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41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HS	원산지 기준
	다.
04049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51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52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59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61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62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63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64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690	제4류와 소호 제1901.90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711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719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721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729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790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811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819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891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899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0900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41000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5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50100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50210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HS	원산지 기준
050290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50400	제1류, 제2류와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50510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50590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50610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50690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50710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50790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50800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51000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51110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51191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51199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2부	식물성 생산품(제6류-제14류)
제2부 주(제6류-제14류)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한 농산물 및 원예상품은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지, 접복, 싹, 봉오리 또는 기타 산 식물의 일부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의 잎
060110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60120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60210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60220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60230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60240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60290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60311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60312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60313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HS	원산지 기준
060314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60315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60319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60390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60420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60490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7류	식용의 채소와 뿌리 및 괴경
07011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19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20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31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32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39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41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42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49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511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519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521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529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61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69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70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81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82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89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92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93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94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951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959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HS	원산지 기준
07096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97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991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992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993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0999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01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021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022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029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03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04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08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09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12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14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151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159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19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22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231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232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233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239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29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31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32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331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332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333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334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335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339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HS	원산지 기준
07134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35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36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39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41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42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43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44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45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71490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11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112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119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121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122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131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132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211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212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221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222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231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232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241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242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251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252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261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262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27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HS	원산지 기준
08028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29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31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39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41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42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43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44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45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51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52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54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55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59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61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62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711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719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72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81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83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84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91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921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929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93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094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01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02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03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04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05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06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HS	원산지 기준
08107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09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11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12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19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21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29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31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32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33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34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35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81400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9류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090111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112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121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122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190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210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220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230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240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300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411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412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421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422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510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520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611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HS	원산지 기준
090619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620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710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720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811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812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821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822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831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832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921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922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931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932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961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0962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1011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1012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1020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1030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1091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091099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10류	곡물
100111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119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191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199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21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29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31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39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HS	원산지 기준
10041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49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51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59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61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62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63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64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71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79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81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821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829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83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84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85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86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00890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101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3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3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3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1104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4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4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42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4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4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6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7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8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8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8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8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 또는 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8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 또는 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1109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 또는 제1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 각종의 곡물·종자와 과일,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1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19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23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241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242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30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40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51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59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60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71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721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729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73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74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75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76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77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791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799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81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89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91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921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922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923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924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925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929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HS	원산지 기준
12093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991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0999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101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102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112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113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114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119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1221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1229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1291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1292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1293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1294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1299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130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141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121490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하게 획득된다.
제13류	락, 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3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3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30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30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3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3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30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302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302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4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4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404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4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제15류)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15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3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 된 것
15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 된 것
150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 된 것
1505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6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7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8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8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09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1509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0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2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2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3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3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3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4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4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4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4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51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7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8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20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2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522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제4부	조제식료품, 음료·알코올 및 식초,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제16류-제24류)
제16류	육류,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6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602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602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602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24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2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1602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류 또는 제2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603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1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4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5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5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5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5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5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5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5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6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6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6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1701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1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1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1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1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2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2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2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2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4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7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2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3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4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5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18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806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806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8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19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4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 된 것
19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4류 물품, 제1006호 물품 또는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변 경된 것
1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4류 물품, 제1006호 물품 또는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변 경된 것
19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9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9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90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90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903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9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904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1904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9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 물품 또는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의 쌀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9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9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905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905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905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9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20류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0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702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5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5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5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5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57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58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5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00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6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7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 물품 또는 소호 제 2007.99호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구아버, 파파야, 멜론 또는 수박의 페이스트 또는 푸레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7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7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8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8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8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8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8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8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87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88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8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1212.9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8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89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 또는 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8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류 또는 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0805.20호, 제0805.50호 또는 제0805.9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0805.20호, 제0805.50호 또는 제0805.9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009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0804.3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0804.3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6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6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7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7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8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 물품 또는 소호 제2007.99호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구아버, 파파야, 멜론 또는 수박의 페이스트 또는 푸레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 물품 또는 소호 제2007.99호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구아버, 파파야, 멜론 또는 수박의 페이스트 또는 푸레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류 물품 또는 소호 제2007.99호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구아버, 파파야, 멜론 또는 수박의 페이스트 또는 푸레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9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101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9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1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390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1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1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5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4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1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6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2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된 당시 럽과 당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또는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106.90호의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2류	음료, 알코올 및 식초
22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류, 소호 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2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5호, 제1703호 또는 소호 제2106.9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207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5호, 제1703호 또는 소호 제 2106.9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208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2106.9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208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2106.9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208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2106.9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208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2106.9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208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2106.9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2087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2106.9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5호, 제1703호 또는 소호 제 2106.9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 조제사료
23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2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2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2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3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3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4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5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306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6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6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6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6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6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7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8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류 또는 소호 제1901.90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4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1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3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3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5부	광물성 생산물(제25류-제27류)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석고·석회와 시멘트
250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8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8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0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7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7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51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3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8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9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9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29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3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3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26류	광, 슬랙 및 회

HS	원산지 기준
260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8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0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8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1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0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0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0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0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620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6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제27류 주	<p>이 류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p> <p>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p> <p>제2710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의 지위를 부여한다.</p> <p>가.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나.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만큼 낮지 않지만,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p>
270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1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7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화학반응 결과로 인해 변경된 물품에 한한다)
27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화학반응 결과로 인해 변경된 물품에 한한다)
270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화학반응 결과로 인해 변경된 물품에 한한다)
2707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화학반응 결과로 인해 변경된 물품에 한한다)
2707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화학반응 결과로 인해 변경된 물품에 한한다)
270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화학반응 결과로 인해 변경된 물품에 한한다)
270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화학반응 결과로 인해 변경된 물품에 한한다)
27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0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71012	<p>소호 제2710.12호부터 제2710.99호까지에 해당하는 다른 상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물품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207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271019	<p>소호 제2710.12호부터 제2710.99호까지에 해당하는 다른 상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물품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207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271020	<p>소호 제2710.12호부터 제2710.99호까지에 해당하는 다른 상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물품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207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271091	<p>소호 제2710.12호부터 제2710.99호까지에 해당하는 다른 상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물품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207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271099	<p>소호 제2710.12호부터 제2710.99호까지에 해당하는 다른 상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물품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207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271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1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1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1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7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3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제28류-제38류)
제6부 주 (제28류 - 제 38류):	<p>주 1: 제6부의 규칙 1부터 규칙 7까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는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p>주 2: 주 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p> <p>규칙 1: 화학반응 원산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제382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p>주: 이 부의 목적상, "화학 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에서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p>

HS	원산지 기준
	<p>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다음의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p> <p>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p> <p>규칙 2: 정제 정제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p> <p>가.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물품이 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약용,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4) 특수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 <p>규칙 3: 혼합 및 배합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제3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HS	원산지 기준
	<p>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p>규칙 5: 표준 물질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표준 물질의 생산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표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품을 말한다.</p> <p>규칙 6: 이성체 분리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p>규칙 7: 분리 금지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은 유리된 물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p>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8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8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5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8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9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1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1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1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1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8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8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8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1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826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7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7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73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7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7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7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7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7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7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3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3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32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3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833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3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5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52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52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52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5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5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5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6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6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3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0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84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1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1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1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3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4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4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8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4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5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5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5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5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29류	유기화합품

HS	원산지 기준
290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1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1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12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2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2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24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24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24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2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2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2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1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1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7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7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9037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7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7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7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7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7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7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8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8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9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3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1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1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1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4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4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4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4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905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55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6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6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6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6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6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6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7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7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7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71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7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7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7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7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7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8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8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8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89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8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9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9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9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9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9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94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94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9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9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09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91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0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0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0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1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2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2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2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2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24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2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2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2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3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4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4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4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4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4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4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4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4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4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4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4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46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46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4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5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5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915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5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52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5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5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5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53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53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5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5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5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5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5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6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6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6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61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61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61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6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6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6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6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63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6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7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7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7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71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7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7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7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9173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73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73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73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73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7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8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8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8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81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81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81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81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8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8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8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8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8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8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8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8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1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0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0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1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1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1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1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1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9214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14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14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14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14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1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1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15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2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2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21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2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2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2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2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2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24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24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24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2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2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4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4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4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4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4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42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4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925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5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5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5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5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6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6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7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8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2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0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0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0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0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1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2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2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2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29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29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29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29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2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2933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3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5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5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5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5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5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6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6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7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7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7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3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4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4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4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5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936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29362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62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624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625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626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6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29362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2937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71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7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7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72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29372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2937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2937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2937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8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2938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2939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2939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293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9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94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94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94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9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9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9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9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96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29396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29396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29396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293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39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400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41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41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294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4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4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29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294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30류	의료용품
30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3003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3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3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4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30043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3004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3004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3004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3005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3005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3006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3006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3006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6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6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6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00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31류	비료
310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5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5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5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5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1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잉크
320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1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3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4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32041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1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1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1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5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6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3206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6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6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64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6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6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2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7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32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2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품품류
330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1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1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12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1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3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4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4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7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7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3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제34류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조제세제, 조제윤활제, 인조왁스, 조제왁스, 광택 또는 연마조제품,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형용 페이스트, "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401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3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3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5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HS	원산지 기준
35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407호 또는 제0408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5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407호 또는 제0408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5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5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6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6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6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6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6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6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6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701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702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3701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702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37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701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3702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3702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5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5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5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5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5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9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9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29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7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3806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6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8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8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8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8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89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8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9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9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1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1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1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8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381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382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3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3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3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7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7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7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7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7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7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7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7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7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8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8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8류, 제37류, 제40류 또는 제 9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82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8류, 제37류, 제40류 또는 제 9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3825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8류, 제37류, 제40류 또는 제 9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825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8류, 제37류, 제40류 또는 제 9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825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8류, 제37류, 제40류 또는 제 9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825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8류, 제37류, 제40류 또는 제 9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8256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8류, 제37류, 제40류 또는 제 9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825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8류, 제37류, 제40류 또는 제 9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82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8류, 제37류, 제40류 또는 제 90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826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5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제39류-제40류)
제7부 주 (제39류 - 제 40류):	<p>주 1: 제7부의 규칙 1부터 규칙 5까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은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p>주 2: 주 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p> <p>규칙 1: 화학반응 원산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39류 및 제40류의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p>주:</p>

HS	원산지 기준
	<p>이 부의 목적상, "화학 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에서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p> <p>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p> <p>규칙 2: 정제 정제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p> <p>가.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물품이 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약용,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4) 특수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 <p>규칙 3: 혼합 및 배합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p>규칙 4: 입자 크기의 변화</p>

HS	원산지 기준
	<p>제39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p>규칙 5: 이성체 분리</p> <p>제39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3904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5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9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9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09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391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2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2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5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7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3920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3920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39204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3920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392051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392059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392061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392062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392063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392069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392071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392073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392079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392091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392092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392093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392094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3920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392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1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3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3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3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9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1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1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1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4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5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400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8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8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09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9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09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9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09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09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09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0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3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03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0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6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6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19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401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6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40169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69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1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제43류)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1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2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41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4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7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7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HS	원산지 기준
420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3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3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2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43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1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43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 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제44류-제46류)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1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1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1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1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3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3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3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3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3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2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44072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9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9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8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8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9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09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0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1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1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19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2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2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2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29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441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7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7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7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1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2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2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2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4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45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5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5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5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5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5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46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 세공물
4601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4601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601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601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601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6019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60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6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60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6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6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10부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제 47류-제49류)
제47류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470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3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4706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4801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5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5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5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5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5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6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6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2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3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4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5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4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4805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2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2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5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6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6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7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8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8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8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9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09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0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1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4811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1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1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공제법으로 역 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811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공제법으로 역 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817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공제법으로 역 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817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공제법으로 역 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81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481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481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481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HS	원산지 기준
	변경된 것
48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481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9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공제법으로 역 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819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9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9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19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0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공제법으로 역 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820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공제법으로 역 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820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공제법으로 역 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820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공제법으로 역 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820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공제법으로 역 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820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공제법으로 역내가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82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3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3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3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다만, 공제법으로 역내가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한다)
4823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8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49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01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01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03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04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05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05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06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07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08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08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09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4910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1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11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911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제63류)
제50류	견
5001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002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003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0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0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0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0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0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0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51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 마모사 및 직물
510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1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1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1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1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1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3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3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4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5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5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5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5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5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1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

HS	원산지 기준
	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11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52류	면
5201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2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202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202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203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20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HS	원산지 기준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205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2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3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HS	원산지 기준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4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4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54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206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2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HS	원산지 기준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3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64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2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208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5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209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5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9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21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0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21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15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211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122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지사 및 지사의 직물
53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301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1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1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5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9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09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1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또는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3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또는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31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또는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54류	인조필라멘트
54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3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4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4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4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4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4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5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6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6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2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3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것
5403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3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3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3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3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3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4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4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4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5405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것
54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402호 또는 제5404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402호 또는 제5404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5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5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4075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7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7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7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7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8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4078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8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79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8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8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408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8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8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8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8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408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55류	인조스테인플섬유
55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1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1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2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50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3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3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3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3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6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6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7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또는 제5401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50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5095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5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6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0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51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0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0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 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부터 제5503호까지 또는 제5505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512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513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3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514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51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516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5169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류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56류	워딩·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1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601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1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2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2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3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

HS	원산지 기준
	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3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3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3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3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3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39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6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5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6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7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7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7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7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7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

HS	원산지 기준
	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7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8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8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9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 제5501호, 제5503호, 제5506호 또는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갈래
57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7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4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702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2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3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3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7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705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 자수포
58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2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2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2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801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3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3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802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3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7호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4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4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4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5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806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6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6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6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7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8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8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09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810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10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10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10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811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59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59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9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3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5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906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6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7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8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09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10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1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1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11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5911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11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1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60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60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1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1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1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1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001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1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2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3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3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3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0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2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2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0053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4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4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4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2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2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3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0064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4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4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006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또는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61류	의류 및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제61류 주:	<p>주 1: 이 류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의 결정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 기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p> <p>주 2: 그 상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되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p>
61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

HS	원산지 기준
	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1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2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103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32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3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3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3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3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3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3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

HS	원산지 기준
	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34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34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3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2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104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4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4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

HS	원산지 기준
	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4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5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5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6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1046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6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4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

HS	원산지 기준
	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6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7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7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7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7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7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7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107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7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8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8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8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8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8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8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8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8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8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8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9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09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110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0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0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0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0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0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1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

HS	원산지 기준
	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2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112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2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3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4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4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5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115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5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5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59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59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59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5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116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6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6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6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78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117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62류	의류 및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HS	원산지 기준
제62류 주:	<p>주 1: 이 류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의 결정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 기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p> <p>주 2: 그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되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p>
620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1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1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1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1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201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1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1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2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

HS	원산지 기준
	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2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2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2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3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3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3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3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2032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3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3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3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3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3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3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34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

HS	원산지 기준
	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34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3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204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2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4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

HS	원산지 기준
	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4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4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4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5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5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204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6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6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6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4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5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

HS	원산지 기준
	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6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6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6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7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7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207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7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7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7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7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8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8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

HS	원산지 기준
	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8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8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8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8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8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9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09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209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0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602호부터 제5603호까지, 제5903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0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602호부터 제5603호까지, 제5903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0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602호부터 제5603호까지, 제5903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0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602호부터 제5603호까지, 제5903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0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602호부터 제5603호까지, 제5903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

HS	원산지 기준
	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1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1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1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1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14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14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211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21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2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3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4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

HS	원산지 기준
	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4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4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6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21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217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63류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및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냅마
제63류 주:	<p>주 1: 이 류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의 결정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 기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p> <p>주 2: 그 상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되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p>
63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1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1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2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2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2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302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2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2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25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25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2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2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2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

HS	원산지 기준
	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2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2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3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3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3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3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3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304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4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4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4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4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4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3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5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5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5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6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6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

HS	원산지 기준
	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6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6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6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6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6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7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307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8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9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607호부터 제5609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10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607호부터 제5609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10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607호부터 제5609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또는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제64류-제67류)
제64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HS	원산지 기준
6401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64019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6401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64021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6402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6402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64029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6402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64031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64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3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3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3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3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3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406호 갑피의 것은 제외한다)

HS	원산지 기준
	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4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4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4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5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5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5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5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5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5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5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66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6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60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60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6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6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6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67류	조제우모와 새의 솜털 및 우모 또는 새의 솜털로 만들어진 제품, 조화, 인모제품
670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7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7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7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70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7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7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7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13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제68류-제70류)
제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2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2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2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2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4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4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8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8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18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1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1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2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2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38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3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8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8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5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81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69류	도자제품
6901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3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6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7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8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8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9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9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09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10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10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1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1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120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691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1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1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691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2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2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2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3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7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7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7008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00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9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3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32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3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33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3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3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3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3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3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701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9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9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9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9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9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9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95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9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2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14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제71류)
제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1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1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2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2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2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3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3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71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8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8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2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711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15부	비(卑)금속 및 비금속 제품들(제72류-제83류)
제72류	철강
72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720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4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4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7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2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3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3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3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5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5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5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2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7209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2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1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1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1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2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2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3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3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7214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4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5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8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1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19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19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19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19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19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19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19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19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19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19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19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193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2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20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2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2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22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722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5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5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5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5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6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8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8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8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2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73류	철강의 제품
73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730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5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5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6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6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6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6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73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7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7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7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7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7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7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0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0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4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4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4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4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7314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4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58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5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5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60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731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8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8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8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8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8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8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8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8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8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8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9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732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1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18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1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1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7322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7322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7322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732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3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3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3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39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3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73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5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6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74류	동과 그 제품
740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3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3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3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3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7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7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8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8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8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740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9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9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9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9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9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0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0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0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1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1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1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5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5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75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75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7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760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78류	연(鉛)과 그 제품
78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HS	원산지 기준
790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80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0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0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0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0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81류	기타 비(卑)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19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1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19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1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29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29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2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29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2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8103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4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4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4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5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5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6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7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7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8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8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9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9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0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0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1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2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2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2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2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2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25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25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81129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2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113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82류	비(卑)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비(卑)금속제의 이들의 부분품
82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1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2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2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3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4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0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1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1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19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19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5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21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83류	비(卑)금속제의 각종 제품
83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1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1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2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1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1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1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3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16부	기계류, 전기기기,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4류-제85류)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84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1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01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02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2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0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84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6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068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68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6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07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7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8407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73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4073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4073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40734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407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8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 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0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0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0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0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1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1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8411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18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18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1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1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2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2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2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2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2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3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3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13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3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3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38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38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39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13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1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4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4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4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4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4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15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58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58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58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6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6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7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7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8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8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1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841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86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86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8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1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 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19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9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841939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19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9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9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98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9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1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1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1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1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12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2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13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21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1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1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211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2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2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2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23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3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23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238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238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23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23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2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4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48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424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4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425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HS	원산지 기준
8425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53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53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54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54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p>

HS	원산지 기준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5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2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6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6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264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264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269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2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7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7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7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8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2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28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283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28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283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28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286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28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2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29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29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29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29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29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295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29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3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8430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303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303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304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304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30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306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306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31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31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313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313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314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31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314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314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3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8433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5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5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5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6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3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6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6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7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8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8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8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8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8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8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9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9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8439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9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1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1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1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2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2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3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3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31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31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31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317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3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3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3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3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39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399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4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5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51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51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5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5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6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46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46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46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4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71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7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7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8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8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8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8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83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83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83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84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8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8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8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845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0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5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1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1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1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 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845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2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2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2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3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3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4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4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8455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5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5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5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6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6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6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8456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57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7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7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8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8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89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8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9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9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9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9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9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8459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95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95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96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596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597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0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0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0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0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03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03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0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1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1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1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1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2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23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23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24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24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2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3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3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3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8465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59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59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59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594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595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596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5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6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6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6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69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69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66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694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7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7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7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7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7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78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7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79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79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8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0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0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0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0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8470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1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714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714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71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716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717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718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71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72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72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72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73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7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3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3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3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3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3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5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5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6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7629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7681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7689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76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77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8477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7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7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7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75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7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8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9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9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9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9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9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97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797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798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98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98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479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80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0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80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804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804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80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06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07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07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1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1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1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2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2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8483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483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3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3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3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4836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48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48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86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86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86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86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8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87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제85류	<p>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p>
8501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01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13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13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13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1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1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15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15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1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16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16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164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2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21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21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2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23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2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2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4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42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42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43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43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4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4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4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0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8505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6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6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6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6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66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68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06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850710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720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730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740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750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7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0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08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08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09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9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0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HS	원산지 기준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4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4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5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5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5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5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85158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5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16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16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6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63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163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163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16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16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6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7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7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 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67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17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7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71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76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76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85176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77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1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8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8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8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18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8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8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8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19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8519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19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198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198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1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21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22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22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23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3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234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234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235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235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35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38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5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56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71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271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27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27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27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2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79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7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84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84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8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8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8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8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85287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87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87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29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29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3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0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0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3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1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1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3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2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2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2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22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22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2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3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3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8533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3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3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 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5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5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64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6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6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6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6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6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3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3921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3922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3929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3931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393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3939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3941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3949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39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40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0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0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06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407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407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408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40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09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0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1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1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1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85416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1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23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23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23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423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42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43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43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543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437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43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8544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4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4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4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44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44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4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544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45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46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46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46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47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47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547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8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8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17부	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제86류-제89류)
제86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기기
8601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1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602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602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603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6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40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50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6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6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71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607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607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607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60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79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7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80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90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10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120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130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190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210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290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310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321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870322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323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324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331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332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333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390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410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421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422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p> <p>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p>
870423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p> <p>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p>
870431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p> <p>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p>
870432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p> <p>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p>
870490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510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520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530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540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590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600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7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08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8708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0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0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0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08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08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08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08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08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870894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70895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708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709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09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09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871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7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집적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1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집적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1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집적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1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집적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1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집적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집적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1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 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3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4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8714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49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49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49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494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495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496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4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6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16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871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7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88류	항공기,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80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802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8021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802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802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2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8026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803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803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8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3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40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805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8805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80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9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9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9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9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9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903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9039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903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9040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905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9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905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906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906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907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9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908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제92류)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9001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1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1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1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001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2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2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2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2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3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3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3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4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5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58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5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5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5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65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66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66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6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7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7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79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7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9010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06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0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1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1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118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11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12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12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3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13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138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13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4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48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4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5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5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5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160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17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17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17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78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7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1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018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01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90183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0183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3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4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84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18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9018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9019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19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00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21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21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21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21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13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021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1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1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2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02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2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22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22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22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2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4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48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4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5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9026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68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6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7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7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27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27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278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27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8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28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2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8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29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HS	원산지 기준
9029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9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3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303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303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303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9030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308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8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3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14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314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318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31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3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2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28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28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9032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30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1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1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1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2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102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102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1029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10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3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3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40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9105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5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5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5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59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5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81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108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108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108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1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09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0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01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0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9111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2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2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3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3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113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114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114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114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114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제92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9201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9201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9202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9202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92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2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2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2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2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2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209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209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209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2099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20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19부	무기 및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3류)
제93류	무기 및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3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3040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305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305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305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5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62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6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6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30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20부	잡품(제94류-제96류)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1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1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15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15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94016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16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17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17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402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2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3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3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3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3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3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3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38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38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HS	원산지 기준
940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510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40520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40530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405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9405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4056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4059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4059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405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4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95류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5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4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4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4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5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5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61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HS	원산지 기준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6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HS	원산지 기준
95063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63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63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6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65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5065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5066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5066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506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5067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50691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p>

HS	원산지 기준
	<p>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506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507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507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5073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HS	원산지 기준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7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508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508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p>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p> <p>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제96류	잡품
9601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p>
96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3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3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3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3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6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1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3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7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18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619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21부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제97류)
제97류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97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7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702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703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HS	원산지 기준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704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705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9706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는 세 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공정 및 과정의 취급

1. 이 부속서 제9항의 목록에 포함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함에 있어, 한국으로부터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로 수출되고 이후 한국으로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그곳에서 수행된 공정 및 과정은 한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⁶는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최종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원산지 부여

2.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부속서에 포함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품이 제3.1조부터 제3.15조까지 그리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원산지 절차

3. 상품이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고 신고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서에 그러한 사항을 언급한다.

4. 제2절(원산지 절차)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이 부속서에 포함된 상품의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검토

5. 한쪽 당사국이 이 부속서에 포함된 상품 목록의 개정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협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고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상품 목록을 개정 또는 수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양

⁶ 부속서3-나의 목적상,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란 운송비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및 누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당사국에서 이미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비원산지 재료는 비원산지 투입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서 그 목록을 개정하는 공동 결정을 내릴 수 있다.

6.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에 대하여 검토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서 이 부속서를 개정 또는 수정하는 공동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부속서의 적용 정지

7. 한쪽 당사국이 이 부속서에 포함된 원산지 상품이 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특혜관세대우에 따라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국내 산업에 대한 그러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그 상품에 대해 이 부속서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8. 제7항에 따라 이 부속서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2개월 전에 통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안된 정지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상품 목록

9. 다음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목록이다.

상품 목록

번호	HS 6	품목명
1	500400	견사(견 웨이스트로 만든 방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2	5501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것
3	55152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것
4	621600	장갑류
5	ex650500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과 원단상(스트립상의 것은 제외한다)의 레이스·펠트 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직물류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번호	HS 6	품목명
6	650700	모자용의 밴드·내장재·커버·해트파운데이션·해트프레임·챙 및 턱끈
7	660199	기타
8	700991	틀을 씌우지 아니한 것
9	701590	기타
10	711311	은제의 것(기타의 귀금속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1	711719	기타
12	731815	기타 스크루 및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13	731819	기타
14	732393	스테인리스강의 것
15	732599	기타
16	820551	가정용 공구
17	82059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18	821300	가위, 재단용의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그들의 날
19	83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20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류
21	844313	기타 오프셋 인쇄기계류
22	844319	기타
23	844399	기타
24	844519	기타
25	844530	합사기 또는 연사기
26	844790	기타
27	844839	기타
28	845190	부분품
29	845210	재봉기(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30	845229	기타

번호	HS 6	품목명
31	ex845290	재봉기의 기타 부분품
32	845430	주조기
33	845899	기타
34	845969	기타
35	846039	기타
36	846299	기타
37	846820	가스를 사용하는 기타의 기계류 및 기기
38	846880	기타의 기계류 및 기기
3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40	847141	동일 하우징 속에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및 입력 및 출력 장치를 내장한 것(그들의 상호결합여부를 불문한다)
41	847510	전기 또는 전자램프, 튜브 또는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외피가 유리제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기계
42	847710	사출 성형기
43	848079	기타
44	850110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45	850133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46	850300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47	850440	정지형 변환기
48	851511	납땀용의 인두와 건
49	851529	기타
50	851770	부분품
51	851890	부분품
52	852190	기타
53	852290	기타
54	852329	기타

번호	HS 6	품목명
55	852849	기타
56	852859	기타
57	852869	기타
58	852990	기타
59	853120	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
60	853190	부분품
61	853340	기타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
62	853400	인쇄회로
63	853670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64	853890	기타
65	853931	형광램프(열 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66	853939	기타
67	853990	부분품
68	854091	음극선관의 것
69	854390	부분품
70	854470	광섬유 케이블
71	854890	기타
72	8804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 그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73	900190	기타
74	900211	카메라용·영사기용 또는 사진 확대기 또는 축소기용의 것
75	900490	기타
76	901390	부분품과 부속품
77	901819	기타
78	902000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79	902221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번호	HS 6	품목명
80	902830	전기 계기
81	903031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82	903032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83	903180	기타의 기기
84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5	911120	비금속제의 케이스(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6	911320	비금속제의 것(금 또는 은의 도금여부를 불문한다)
87	940130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88	940169	기타
89	940210	치과용 의자, 이발용 의자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자 및 그들의 부분품
90	940290	기타
91	940310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금속제가구
92	940320	기타의 금속제가구
93	940490	기타
94	940510	산데리아와 기타 천장 또는 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
95	940591	유리제의 것
96	940592	플라스틱제의 것
97	940599	기타
98	960820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팁으로 된 펜과 마커
99	96091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속에 심을 넣은 것에 한한다)
100	960990	기타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2. 포괄증명기간: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 / /부터 / / /까지				
3.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선택): 이메일(선택):	4.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5. 물품명세:	6. HS 품목번호 #	7. 원산지 기준	8. 생산자	9. 가치 평가	10. 원산지 국가
11. 비고: 본인은 다음을 보증한다. - 이 문서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이 문서상 또는 문서와 관련한 모든 허위진술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한다. -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이 증명서를 받은 모든 인에게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한다. - 그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며 그 상품에 대해 한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한다. 이 증명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____ 쪽으로 구성된다.					
12. 서명권자의 서명:			회사:		
이름:			직책:		
날짜: 연도 월 일 / / /			전화번호: 팩스: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

특혜관세대우 획득의 목적상, 이 문서는 수출자가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해야 하고 신고서 작성 시 수입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문서는 또한 수출자의 사용을 위해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친다. 추가 기재가 필요할 경우, 별지를 사용한다.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선택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신분증명번호를 기재한다.

제2란: 이 증명서가 12개월(포괄증명기간)까지의 특정 기간 동안 한국 또는 콜롬비아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바와 같은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을 다룰 경우, 이 란을 작성한다. “부터”는 증명서가 포괄 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다(이 날은 이 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 상품의 수입은 이 날짜 사이에 발생해야 한다.

제3란: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선택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신분증명번호를 기재한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수”로 기재하고, 제5란에 기술된 상품(들)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선택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신분증명번호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한다. 수출자가 이 정보를 비밀로 간주하는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에 제공 가능”이라고 기재한다.

제4란: 제1란에 정의된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제5란: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에 대한 송품장의 물품명세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증명서가 상품의 단일 선적만을 적용하는 경우, 각 상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 및 송장 번호,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고유의 참조 번호를 열거한다.

제6란: 제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해,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7란: 제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해, 아래 기준(A부터 D까지)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기재한다. 원산지 규정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특혜 기준

- A 그 상품이 제3.1조가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 B 그 상품이 제3.1조나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 C 그 상품이 제3.1조다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 D 그 상품이 제3.16조(영역 원칙의 예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8란: 제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해,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예”를 기재한다.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니오”를 기재하고 이 증명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1), (2) 또는 (3)을 기재한다.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본인의 인지,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 증명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또는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해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 제9란: 제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 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 를 명기한다(참조: 제3.3조).
- 제10란: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콜롬비아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KR” ,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CO”를 기재한다).
- 제11란: 이 란은 제5란에 기술된 상품 또는 상품들이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와 같이,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이 증명서에 관하여 다른 주시가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발급 당국,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신분증명번호 및 발급일을 기재한다.
- 제12란: 이 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수출자의 사용을 위해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어야 한다.

제 4 장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1절 무역 원활화

제 4.1 조 목적 및 원칙

이 협정상 무역의 원활화 및 양 당사국 간 무역 원활화 이니셔티브의 추진 협력을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이 협정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를 운영하는 것에 합의한다.

- 가. 절차는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세수 확보 및 사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준수 및 원활화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국제 기준에 기초하여 간소화되고 조화된다.
- 나. 반입 절차는 수입자와 수출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관되고 투명하도록 한다.
- 다. 당사국은 절차에 대한 중요한 수정을 채택하기 전에 자국의 무역업계 대표들과 협의를 갖는다.
- 라. 절차는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증진함으로써 준수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위험평가 원칙에 기초한다. 그리고
- 마.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된 무역 원활화 조치의 적용 및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협력, 기술지원 및 모범사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 교환을 장려한다.

제 4.2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관절차와 관행이 예측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수출, 수입 또는 통과와 관련하여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모든 관세법 및 모든 행정절차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3. 각 관세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관세 사안에 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질의처를 지정한다.

그러한 질의를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3 조 조화 및 원활화

1. 각 당사국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라고 한다)의 관세데이터모델과 WCO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른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 개발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자국 각 기관의 요구사항이 기관이나 그 기관을 대신하는 관세당국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집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조정되도록 보장한다. 이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가 하나의 기관에 모든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목적으로 자국 각 기관의 데이터 요구사항을 조화시키는 조치를 한다.

제 4.4 조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

1. 각 관세당국은 WCO 내 이 분야에서의 진전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종이없는 무역의 맥락에서, 통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 및 통신기술을 적용한다.

2. 각 관세당국은 위험관리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적의 도착 전 정보와 자료의 제출 및 처리를 포함하여 상품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 및 통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4.5 조 위험관리

통관 절차를 운영함에 있어, 각 관세당국은 고위험 상품 선적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위험 상품의, 반출을 포함한, 통관을 촉진한다. 이에 더하여, 관세당국은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면서 위험관리에 관한 응용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제 4.6 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양 당사국은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이하 “AEO” 라고 한다) 개념의 이행을 증진한다. 양 당사국은 국제무역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AEO 안전 지위의 인정을 고려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관세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어떠한 당사국이든 그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AEO 지위를 가진 업체에 대하여 무역

원활화의 혜택을 제공한다.

제 4.7 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는 절차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물리적 도착 전에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 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적용가능한 관세·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차. 상품 반출 이전에 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수입자에게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조세 또는 수수료의 최종 지급액을 충당하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긴급 통관을 요하는 상품이 공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 절차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통제 및 실사에 참여하는 모든 권한 있는 행정 당국이 동시에, 그리고 단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4.8 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WCO 탁송물 즉시반출 지침을 활용한다.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 그 특송 화물의 반출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전자적 제출 및 처리를 규정한다.

다.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라. 자국 법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신속하게 특송화물을 반출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마.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100달러 이하 특송화물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

제 4.9 조 사전심사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하여 서면 사전심사 결정을 내린다.

가. 품목분류

나.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다.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심사 결정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전심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신속하게 그리고 요청 후 90일 또는 자국의 법에 이례적으로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이내에 사전심사 결정을 내린다. 다만, 요청인은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을 신청하는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였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사전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정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 결정의 거부 결정에 대한 관련 사실과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4.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 결정이 내려진 날 또는 사전심사 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부터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제1항 및 제5항을 조건으로, 사전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판정에 명시된 기간 동안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5. 발급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다음의 경우 이 협정과 합치하게 사전심사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가. 관련 법 또는 규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거나 관련 정보가 보류된 경우, 또는

다. 과학, 기술 및 생산방법의 발전에 따른 상품의 주요기능의 변화를 포함하여 결정의 근거가 된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

6. 발급 당사국은 신청인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거나 관련 정보를 보류한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을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7. 자국의 법과 규정상의 모든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품목분류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한 자국의 사전심사 결정을 인터넷상에 공개한다.

제 4.10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재심 중에 있는 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최소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 그리고

나. 최종단계의 행정적 재심에서 내려진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다음의 인에게, 자국의 관세당국이 내린 원산지 결정 및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 및 불복청구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부여한다.

가. 원산지 결정 대상이었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인, 또는

나. 제4.9조에 따라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인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고 그 당사국이 그 정보를 제4.20조에 따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2 절 관세 협력 및 상호 지원

제 4.11 조 관세 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각 당사국의 법 및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가. 수입 또는 수출을 규율하는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운영

나. 특혜관세대우 및 신청 절차

다. 검증절차

라. 상품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그리고

마. 수입 및/또는 수출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양 당사국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규정과 관련된 훈련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조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가. 양 당사국 간 기관 협력 증진

나. 관세법령을 발전시키고 집행하기 위한 입법 및 기술적 사안에 관한 전문지식 제공 및 역량강화

다. 최신 통관 기술의 적용, 그리고

라. 통관절차의 간소화, 조화 및 자동화

3. 양 당사국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문서가 권한있는 행정당국이 규정한 것 외에 그 이상의 증명, 인증, 공증 또는 다른 종류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정본으로 간주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 4.12 조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 지원

1. 양 당사국은 특히 관세법 위반행위의 방지, 조사 및 대응을 통하여 관세법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권한 내에 있는 분야에서 이 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2. 이 절에 규정된 관세 사안에서의 지원은 형사 사안에서의 상호 지원을 규율하는 규칙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사법당국의 요청에 의해 행사된 권한에 따라 획득된 정보를 다루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의 전달이 그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관세, 조세 또는 벌금을 회수하기 위한 지원은 이 절에서 다루지 아니한다.

3. 신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다음을 알린다.

가. 신청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적절한 경우 그 상품에 적용된 통관절차를 명시하여 피요청 당사국의 영역으로 적절하게 수입되었는지 여부, 또는

나. 신청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적절한 경우 그 상품에 적용된 통관절차를 명시하여 피요청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적절하게 수출되었는지 여부

4. 신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자국의 법령 또는 규제의 규정의 틀 내에서 다음에 대한 특별 감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해왔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인

나. 관세법 위반행위에 사용될 의도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다량의 상품이 조립 또는 변형되어 왔거나 조립 또는 변형될 수 있는 장소

다. 관세법 위반행위에 사용될 의도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운송되거나 운송 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라. 관세법 위반행위에 사용될 의도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운송 수단

5. 양 당사국은 관세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획득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체 발의로 그리고 자국의 법, 규칙 및 그 밖의 법률문서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가. 관세법 위반행위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행위로서,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행위

나. 관세법 위반행위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

다. 관세법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품

라. 관세법 위반행위에 연루되거나 연루되어왔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인, 그리고

마. 관세법 위반행위에 사용되어 왔거나,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운송수단

6. 신청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당국은 자국 영역 내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수령인에게 신청 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이 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달하거나 결정을 통보하기 위하여, 피요청 당국에 적용 가능한 법령 또는 규제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문서의 전달 또는 결정의 통보에 대한 요청은 영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한다.

제 4.13 조 지원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제4.12조에 따른 지원 요청은 서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의 당국이 자국의 법에 따라 합의한 공식적인 안전한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요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문서가 그 요청에 첨부된다. 긴급 상황에서는, 구두 요청이 수용될 수 있으나,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지원요청은 피요청 당사국의 법령 또는 규제의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신청 당국

나. 요청되는 조치

다. 요청의 목적과 이유

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제의 규정과 그 밖의 법률문서

마. 조사의 대상인 인에 관한 가능한 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설명, 그리고

바. 관련 사실과 이미 수행된 조사의 요약

4. 요청은 영어로 제출한다. 서류가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피요청 당국은 신청 당국에게 서류의 영어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요청이 위에 규정된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14 조 지원요청의 수행

1. 피요청 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자국의 그 밖의 당국의 요청을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 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준비를 한다. 이 항은 또한 피요청 당국이 스스로 수행할 수 없어 피요청 당국에 의해 그 요청이 전달된 그 밖의 모든 당국에도 적용된다.

2.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국 공무원은 제1항에 언급된 사건에 대한 조사 목적상 신청 당국이 필요로 하는, 관세법 위반행위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제1항 및 피요청 당국이 제시한 조건, 법, 규칙 및 그 밖의 법률문서에 따라 피요청 당국 또는 그 밖의 모든 관계 당국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3.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관련 당사국 공무원은, 관련된 다른 쪽 당사국의 합의와 그 당사국이 제시한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

제 4.15 조 지원 제공 의무에 대한 예외

1. 당사국이 이 절에 따른 지원이 다음에 해당한다는 의견일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거나 특정 조건 또는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가. 이 절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당사국의 주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특히 제4.16조제2항에 언급된 사례에서, 공공정책, 안보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라. 헌법에 위배되거나, 자국의 법·규칙 또는 그 밖의 법률문서에 위배되는 경우

2. 지원은 진행 중인 조사, 기소 또는 소송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근거로 피요청 당국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피요청 당국은 자국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 당국과 협의한다.

3. 신청 당국이 그렇게 요청받을 경우 그 자신도 제공할 수 없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 당국은 요청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그 다음 그러한 요청에 어떻게 응할지는 피요청 당국이 결정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사례의 경우, 피요청 당국의 결정과 그 이유는 지체없이 신청 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 4.16 조 정보교환 및 비밀유지

1. 이 절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전달되는 모든 정보는 각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규칙에 따라 비밀 또는 제한적 성격의 것이 된다. 이는 공식적인 비밀엄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고, 정보를 받은 당사국의 관련 법에 따라 유사한 정보에 주어지는 보호를 향유한다.
2. 개인 자료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당사국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당사국에서 그 특정한 사례에 적용가능한 것과 최소한 동등한 방식으로 그러한 자료를 보호하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
3.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시된 사법 또는 행정 소송 절차에서, 이 절에 따라 획득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이 절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양 당사국은 증거의 기록, 보고 및 증언, 그리고 법원에 제기된 소송 및 고소에서, 이 절에 따라 획득된 정보와 참조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그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사용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4. 획득된 정보는 오로지 이 절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 양 당사국 중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정보를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는다. 그러한 사용은 그 당국이 제시한 모든 제한의 대상이 된다.

제 4.17 조 전문가 및 증인

피요청 당국의 공무원은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적용대상인 사안과 관련하여 요청 당사국의 사법 또는 행정 소송 절차에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고 그 소송에 필요할 수 있는 물품, 문서 또는 그 인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허가될 수 있다. 출석요청은 해당 공무원이 어느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출석해야 할 것인지와 어떠한 직위 또는 자격으로 신문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제 4.18 조 지원비용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전문가 및 증인,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통역사 및

번역사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이 절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서로에 대한 모든 상환청구를 포기한다.

제 4.19 조 양자 관세협약

1. 제4.21조를 저해함이 없이, 각 관세 당국은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원산지 결정을 포함하여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당국과의 협의를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수행되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이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4.21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 위원회에 검토를 위하여 회부할 수 있다.

3. 각 관세당국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목적상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그러한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자국 접촉선의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개정사항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

4. 협의 요청 및 그에 대한 모든 응답은 영어로 작성하고 전자적 수단으로 송부한다. 협의 요청 또는 응답의 물리적 사본은 쿠리어 또는 팩스로 송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영어 및 자국 법이 요구하는 언어로, 위에 언급된 협의를 요청하거나 이에 응답할 수 있다.

제 4.20 조 비밀유지

1. 당사국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비밀유지의 모든 위반은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취급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법 집행 목적상 또는 사법 소송 절차에서 공개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한도 외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 또는 정부의 명시적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아니한다.

제 4.21 조 관세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과,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으로 구성된 관세위원회를 설립한다. 관세위원회는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 무역원활화 및 관세 사안을 다루는 일을 담당한다.

2. 관세위원회는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그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3. 관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운영 보장

나. HS의 변경에 기초한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다. 공동위원회에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해결 방안 권고

- 1)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
- 2)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 3)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그리고
- 4) 양 당사국 간 교역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운영 관행을 어느 한쪽 당사국이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라. 국제 표준에 따라 양 당사국 간 상업적 교류를 원활히 하는 통관 관행 및 표준 채택

마. 품목분류를 포함하여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해석, 적용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 관세위원회가 품목 분류에 대한 결정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WCO에서 적절한 협의를 개최한다. WCO HS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권고는 양 당사국 간 구속력을 가진다.

바. 양 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제3.17조(협약 및 수정)에 따른 수정에 대한 제안을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 그리고

사. 전자 증명 및 검증 시스템 개발 작업

4. 관세위원회는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수립된 메커니즘의 공동의 목적과 기능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결의, 권고 또는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5. 관세위원회는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양국 간 교대로 회합한다.
6. 관세위원회는 각 회의 결과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4.22 조 이행

1. 양 당사국은 이 장에 언급된 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장의 틀 하에서 더 많은 이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특히 정보보호 분야에서 발효 중인 규칙을 고려하여 이 장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실제적인 조치와 방안에 대하여 결정한다. 그들은 이 장의 적용을 위한 보충적 제도의 개발을 권한있는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는 세부이행규칙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추후 서로 통보한다.

제 3 절 정의

제 4.23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신청 당국이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의해 지정된 권한있는 행정당국을 말한다.

관세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국립 조세 및 관세 이사회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된 그 승계기관

관세법이란 관세·부과금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금지·제한 및 각 당사국 관세영역의 경계를 넘어 통제된 물품의 이동에 대한 그 밖의 유사한 통제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수출 및 통과/환적에 관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집행하는 법과 규정을 말한다.

통관 절차란 각 관세행정기관이 통관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 수단에 적용하는 취급을 말한다.

상품이란 이 협정의 범위와 관계없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운송 수단이란 인, 상품 또는 물품을 운송하여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영역에서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차량, 항공기 및 짐 싣는 동물을 말한다.

관세법 위반행위란 양 당사국 중 어느 당사국의 관세법령에 대한 모든 위반 또는 위반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개인정보란 확인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피요청 당국이란 지원 요청을 받기 위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권한있는 행정당국을 말한다.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5.1 조 목적

이 장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 5.3조 권리 및 의무

양 당사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물보호협약」 및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지침, 절차 및 정보를 고려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5.4 조 위험평가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위험평가는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된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위험평가 요청을 적절히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5.5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점검한다.

나.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다.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한다.

라.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절차 또는 위생지위의 모든 변경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

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투명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 작업장 승인에 대한 신속한 통보를 장려한다.

바.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 체제하에 운영되는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 그리고 식품안전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한 그 밖의 국제 및 지역 포럼의 회의를 위한 문제, 입장 및 의제에 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사. 상호 수용가능한 의견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과 이 장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45일 이내에 위원회의 각 당사국 수석대표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4.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2년에 한번 회합한다. 위원회는 직접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회합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다음의 기관이 조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 기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농업축산국과 보건사회보호부 산하 국립식품의약품감독청 또는 그 각각의 승계 기관

제 6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 6.1 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 가. TBT 협정의 이행 개선을 통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증대하고 촉진하며,
-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 다. 양 당사국 간 공동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제 6.2 조 일반 규정

양 당사국은 TBT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TBT 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6.3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또는 제14장(정부조달)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규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6.4 조 국제 표준

1. 각 당사국은 TBT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한도에서,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

2. TBT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TBT 위원회"라 한다)가 1995년 1월 1일 이래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¹을 적용한다.

제 6.5 조 기술규정의 동등성

1.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제 6.6 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의 수용

나. 특정 기술 규정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의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

다.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은 자신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과 자발적 인정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의 채택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사용되는 메커니즘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2.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¹ G/TBT/1/Rev.9, 8 September 2008 Annex B to part I

평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만족스럽게 보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3.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 이전에, 그리고 개별 적합성 평가결과의 영구적인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관련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자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4. 한쪽 당사국은 각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한쪽 당사국이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상호인정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제 6.7 조 투명성

1. 한쪽 당사국은 TBT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중앙통보등록처에 통보문을 제출함과 동시에, 부속서 6-가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조정자에게 동일한 통보를 전자적으로 한다.

2. 가능한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의 문서와 함께 부속서 6-가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조정자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가. 관련 국제표준에 기초한 새로운 기술규정 및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본

나. 관련 국제표준에 기초한 새로운 적합성 평가절차 및 기존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정본

다.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새로운 기술규정안 및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안, 그리고

라.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새로운 적합성 평가절차안 및 기존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정안

3.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는 통보된 문서 전체에 대한 온라인 링크나 사본을 포함한다. 가능한 경우, 양 당사국은 통보된 문서의 전체 또는 요약본에 대한 온라인 링크나 사본을 영어로 제공한다.

4.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술규정안 및 적합성 평가절차안의 통보일 후 최소 60일을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은 의견제시 기간의 연장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5.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에 대한 답변 또는 그 요약물 자국이 최종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표하는 날보다 늦지 않은 때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6.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7. 한쪽 당사국은 기술규정의 채택과 그 발효 간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규정안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접수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8.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양 당사국은 수출당사국의 생산자가 수입당사국의 요구사항에 맞게 생산품 또는 생산방식을 조정할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공표와 그 발효 간 합리적인 시간 간격²을 허용한다.
9. 양 당사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유롭게 접근가능하고 공개된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제 6.8 조 공동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투명성, 우수 규제 관행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조화, 그리고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의 사용과 같은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

² 합리적인 시간 간격이란 2001년 11월 14일 결정(WT/MIN(01)/17)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 및 우려 제 5항에 따라,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나. 이 장 및 TBT 협정에서 발생하는 도량형 요구의 효과적이고 충분한 준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지원
- 다. 투명성, 동등성의 활용, 그리고 규제 영향 평가와 같은 우수 규제 관행에 대한 공통의 관점을 개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그리고
-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사용

3. 이 조에 기술된 협력은 1) 자동차 부품, 2) 섬유, 의류 및 디자인, 3) 화장품 및 위생품, 그리고 4)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같은 분야에 특히 중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협력 확대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제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6.9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의 이행 및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
 - 나. 이 장의 이행, 집행 및 운영의 점검
 - 다.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채택·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의 신속한 처리
 - 라. 제6.8조에 규정된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 공동협력의 제고
 - 마. 상호인정협정의 교섭을 위한 절차의 촉진
 - 바.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당사자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 각각의 견해를 포함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의 교환
 - 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의 교환

- 아.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
- 자. TBT 위원회상의 모든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의 개발
- 차.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 또는 특정 분야를 위한 임시작업반의 설치
- 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 위원회에 보고, 그리고
- 타.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의 이행

3. 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제2항아호에 따른 협의를 이용한 경우,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제20.4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구성한다.

5. 부속서 6-가의 제1항에 규정된 당국은 각국의 영역에 있는 관련 기관 및 인과의 조율과 그러한 기관 및 인이 관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연락채널을 통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이 연락채널은 전자우편,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제 6.10 조 정보교환

1.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일반 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수용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서면으로 전달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1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TBT 협정 부속서 1의 용어 및 정의가 적용된다.

제 6.12 조
국경 통제 및 시장 감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 가. 문서가 기밀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의 국경 통제 및 시장 감시 활동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교환한다. 그리고
- 나. 국경 통제 및 시장 감시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행해지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당국이 인정·지정 또는 위임된 기관과 통제 또는 감시의 대상인 경제 주체간의 이해 충돌을 피하면서, 이들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도록 보장한다.

부속서 6-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및 조정자

1. 제6.9조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는 다음이 주관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통상산업관광부 또는 그 승계기관

사안에 따라, 책임 부처 또는 규제기관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2. 제6.7조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TBT 협정에 따른 중앙통보등록처의 문의처

제 7 장 무역구제

제 1 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7.1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그 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제 7.2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기준

1. 한쪽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3조 및 제4.2조에 따라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3조 및 제4.2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모든 그러한 조사를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과도기간의 만료 이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그 적용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7.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 7.3 조 잠정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권한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 공고를 자국의 관보에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공고를 공표한 날 후 최소한 2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7.2조제2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그 당사국은 제7.2조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7.1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2조제4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7.4 조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조치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행해지고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 경우, 제2항에 언급된 정지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년간은 행사되지 아니한다.

제 7.5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라 행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른 조치

3. 제2항을 제외하고, 이 조의 규정은 제20장(분쟁해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7.6 조 정의

제1절의 목적상,

권한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무역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통상산업관광부, 또는 그 승계기관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1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아니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 후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가(관세 철폐)의 양허표가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은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을 말한다.

제 2 절 반덤핑 및 상계 조치

제 7.7 조 반덤핑 및 상계 조치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 간 반덤핑 또는 상계 조치 사안에 있어 다음의 관행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반덤핑협정」 제2.4조제2항상의 비교 기준과 관계없이, 「반덤핑협정」 제2조, 제9.3조, 제9.5조 및 제11조에 따라 반덤핑 마진을 산정, 평가, 또는 검토하는 경우, 모든 개별 마진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반덤핑협정」 제9.1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최소 관세’가 적절할 경우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 7.8 조 통보 및 협의

1. 가. 한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그러한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기회는 당사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나.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2. 가. 한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나.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 7.9조 분쟁해결

제7.7조제2항 및 제7.8조를 제외하고 이 절의 규정은 제20장(분쟁해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8 장 투자

제 1 절 투자

제 8.1 조 적용범위¹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다. 제8.9조 및 제8.11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 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4. 이 장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8.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에 자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투자를 민영화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국의 독점 지정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한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를 기탁하여야 한다는 한쪽 당사국의 요건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이 그러한 국경 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투자가 되는 한도에서, 그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 8.3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 8.4 조 최혜국 대우²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 8.5 조 대우의 최소기준³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8.4 조는 제 2 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규정된 것과 같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³ 제 8.5 조는 부속서 8-가에 따라 해석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가.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률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제 8.6 조 손실 및 보상

1. 제8.13조제5항나호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무력충돌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전투 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한다. 모든 보상은 제8.7조제2항부터 제8.7조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하도록 한다.

3. 제1항은 제8.13조제5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8.3조에 불합치하였을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7 조

수용 및 보상⁴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수용)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⁵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세계의 주요 법적 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를 것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가. 부당한 지체 없이 지불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이하 “수용일”이라 한다)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지 아니하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지 아니한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언급된,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보상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지 아니하다.

가.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그리고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이 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⁴ 제 8.7 조는 부속서 8-가 및 8-나에 따라 해석된다.

⁵ “공공목적”이라는 용어는 국제공법의 개념으로 국제법에 따라 해석된다. 국내법에서는 “사회적 이익”, “공공의 필요” 또는 “공공의 이용” 등과 같이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이 개념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을 표현하기도 한다.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식재산권의 취소·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그러한 발동·취소·제한 또는 생성이 제15장(지식재산권)과 합치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

제 8.8 조 송금⁶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부당한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이윤, 배당, 자본이득, 그리고 적용대상투자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다. 이자, 로얄티 지불, 관리 수수료,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8.6조제1항,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8-다는 제 8.8 조에 적용된다.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8.9 조 이행요건

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⁷을 강요할 수 없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하는 것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는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

2.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2 항에 언급된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한 조건은 제 1 항의 목적상 “약속 또는 의무부담” 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또는
 -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3. 가.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와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⁸
- 나. 제1항바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 2) 당사국의 경쟁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판정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재판소 또는 경쟁당국에 의하여 요건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이 강제되는 경우⁹
- 다.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나호·다호 및 바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당사국이 환경조치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1)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 또는 강제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제 1 항바호에 합치하여야 한다.

⁹ 양 당사국은 특허가 반드시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3)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 조치

- 라. 제1항가호·나호 및 다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수출진흥 및 외국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마. 제1항나호·다호·바호 및 사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정부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바. 제2항가호 및 나호는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약속·의무부담 또는 요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조는, 당사국이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민간 당사자 간 어떠한 약속·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강제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이 위임된 정부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민간 당사자는 그러한 실체를 포함한다.

제 8.10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1.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 8.11 조 투자와 환경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 투자활동이 환경적 고려에 민감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달리 이 장에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 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12 조

혜택의 부인

1. 다음의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비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리고

나.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8.13 조 비합치 조치

1. 제8.3조, 제8.4조, 제8.9조 및 제8.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규정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2) 지방정부^{10 11}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8.3조, 제8.4조, 제8.9조 또는 제8.10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¹⁰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¹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콜롬비아의 경우, 데파르타멘토(*Departamento*)는 지방정부에 속한다.

2. 제8.3조, 제8.4조, 제8.9조 및 제8.10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제8.3조 및 제8.4조는 제15.4조(기본 원칙)제2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로 그 조항에 따른 의무의 예외 또는 이탈인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8.3조·제8.4조 및 제8.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제 8.14 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8.3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가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자와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8.3조 및 제8.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을 위하여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가 그 투자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15 조 대위변제

1. 한쪽 당사국이나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 비상업적 위험에 대비하여 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 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형식의 보장에 따라 그의 투자자들 중 누구에게라도 지불을 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투자에 관한 모든 권리 또는 청구의 대위변제를 인정한다.

2. 한쪽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그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지불을 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제 8.16조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분쟁해결

1. 이 절은 한쪽 당사국이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그러한 위반이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그러한 위반 주장에 관한 그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분쟁에 적용된다.

2.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제8.2조, 제8.11조 그리고 제8.14조제1항상의 다른 쪽 당사국의 의무 위반에 관하여 이 절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양 당사국은 분쟁당사자 중 한쪽이 각각의 법원 결정 또는 중재 판정에서 설정된 조건에 따라 결정이나 중재 판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의 규정에 따라 법원 절차 또는 국제 중재에 회부된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분쟁과 관련한 사안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추구하는 것을 자제한다.

제 8.17조 협의 및 교섭

1. 제8.1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도에서,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해결되며, 투자자가 투자를 받는 당사국에 사실적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그 분쟁의 통보(분쟁 통보)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통보된다. 청구인은 분쟁 통보와 함께 자신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전달해야 한다.

2.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 전 또는 도중에 그들의 분쟁을 상호동의 하에 임시 또는 기관 중재나 조정 회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18 조 청구 제기

1. 분쟁 통보일부터 8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의 재량에 따라 다음에 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

가. 분쟁당사국의 권한있는 법원이나 행정재판소, 또는

나. 이 절에 따른 다음에 따른 중재

- 1)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 이용가능한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 2)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 이용가능한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 3)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 4) 양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그 밖의 모든 중재기관 또는 그 밖의 모든 중재규칙

2. 피청구국은 청구인에게 제1항나호에 따른 해결을 위하여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피청구국의 적용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내의 비사법적 행정 검토 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¹²

3. 청구인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였고,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자신의 의사에 관한 서면 통보(의사통보)를 청구인이 피청구국에 전달한 경우에만,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과 그 투자의 명칭과 주소

나.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장의 규정과 그 밖의 모든 관련 규정

다.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청구하는 모든 손해의 대략적 금액을 포함하여, 구하는 구제조치

4. 일단 투자자가 투자가 허용된 영역 당사국의 권한있는 법원이나 행정재판소 또는 제1항에 규정된 중재 메커니즘에 분쟁을 제기하였으면, 그 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며 투자자는 동일한 분쟁을 다른 포럼에 제기하지 아니한다.

¹² 이러한 절차는 통상적으로 청구인에 의한 개시일부터 3 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국내 행정검토 절차에서 내려지는 어떠한 결정도 청구인이 투자 분쟁을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에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 8.19 조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8.18조제1항나호에 따라 설치된 국제 중재에 분쟁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러한 동의는 번복될 수 없다. 이 동의와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 제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대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그리고

나. “서면 합의” 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

제 8.20 조 각 당사국의 동의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분쟁을 야기한 사건 및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의 투자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주장되는 손실 및 손해를 청구인이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 6개월을 초과하여 경과하였을 경우,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청구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시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제8.18조제4항의 목적상 해결을 위하여 분쟁을 제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제8.18조제1항나호의 모든 규정에 따른 중재에서 허용가능하다.

제 8.21 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청구가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날부터 적용가능한 중재 규칙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사무총장은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에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2. 중재인은,

가. 국제공법, 국제투자규칙, 또는 국제투자협정에서 파생된 분쟁해결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과 청구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이들 중 누구와도 연계되거나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3. 사무총장은 분쟁당사자의 중재인 자격 박탈의 모든 제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자격 박탈 제안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중재인은 대체된다.

4. 분쟁당사자들은 중재인들에게 지급될 보수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인들에게 지급될 보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중재인들에 대하여 정해진 보수가 적용된다.

제 8.22 조 중재의 수행

1. 분쟁당사자들은 제8.18조제1항나호에 따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한다.

2. 본안판정 이전에, 중재판정부는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한 또는 관할권 내에 있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제8.2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본안전 문제를 다루고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이의의 인용 여부를 고려하여 중재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과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가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근거가 없는 청구 또는 이의제기일 경우, 중재판정부는 승소한 분쟁당사자에게 비용 및 변호사 보수가 지불되도록 판정한다.

3. 피청구국은, 제8.15조에 규정된 모든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항변·반소 또는 상계권이나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4. 이 절에 따라 수행된 모든 중재에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배상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당사자들에게 결정문 또는 판정문의 초안을 제공한다. 그 후 60일 이내에, 분쟁당사자들은 결정문 또는 판정문 초안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도 중재판정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60일의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후 45일 이내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린다.

제 8.23 조

준거법

이 절에 규정된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이 협정의 규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기초할 것이다.

제 8.24 조 전문가 보고서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그 밖의 종류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한쪽 분쟁당사자가 절차에서 제기한 환경·보건·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하도록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 8.25 조 병합

1. 이 절에 따라 둘 이상의 청구가 각각 중재에 제기되어 있고 그 제기된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병합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동의 또는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사무총장과 그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다음을 명시한 요청을 송달한다.

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3. 사무총장이 제2항과 합치하는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그 요청이 명백히 근거 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4. 병합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청구인들의 합의로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나. 피청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그리고

다.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의장중재인. 다만, 그 의장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다.

5.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피청구국 또는 청구인들이 제4항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피청구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피청구국의 국민을 임명하고, 청구인들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비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한다.

6.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8.18조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둘 이상의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나. 중재판정부가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그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다. 제8.21조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1) 이전에 그 중재판정부의 분쟁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들을 위한 중재인이 제4항가호 및 제5항에 따라 임명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 중재판정부는 원래의 구성원들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2) 그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심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7.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8.18조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였고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은 제6항에 따라 내려진 명령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중재판정부에 다음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청구인은 자신의 요청 사본을 사무총장과 피청구국에게 제공한다.

8.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9. 제8.21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시받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0. 한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8.21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제6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8.26 조 판정

1. 중재판정부는 그 판정에서 판정의 사유와 함께 법령적용 및 사실인정 결과를 제시하고,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형태의 구제조치를 판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국이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선언

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이 이루어진 때까지의 적용가능한 이자를 포함하는 금전적 보상

다. 적절한 현물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원상회복이 실현가능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보상을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그리고

라. 분쟁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구제조치

2.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없다.

3. 중재판정부는 국내법상의 문제로서 조치의 합법성에 대하여 판정할 권한이 없다.

4. 중재판정부는 문제가 된 조치와 이 협정 및 국제법과의 합치성에 대하여 판정할 권한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분쟁당사자가 국내법상 조치의 합법성에 관련된 증거를 사실상의 문제로서 제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5.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분쟁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적이며,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 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6.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판정의 집행을 요청할 수 없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라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경우

-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제8.18조제1항나호4목에 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라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제 8.27 조 문서의 송달

당사국에 대한 의사통보와 그 밖의 문서 송달은 부속서 8-라에서 그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제 3 절 정의

제 8.28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청구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자들이란 청구인과 피청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란 청구인 또는 피청구국을 말한다.

기업이란 제1.3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협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 및 기업에 대한 그 밖의 형태의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¹³

라. 선물, 옵션 및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여,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바. 지식재산권

사. 면허, 인가, 허가 및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이와 유사한 권리^{14,15}, 그리고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¹³ 채권, 회사채 및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¹⁴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한도에서, 양여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그러한 요소에 달려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단 중에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 내용은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¹⁵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투자는 다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가. 공채 운영¹⁷

나. 다음으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

- 1) 한쪽 당사국 영역 내의 국민 또는 기업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의 기업에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 2) 무역금융과 같은 상업적 거래와 관련한 신용의 기한연장, 또는
- 3) 사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에 들어있는 명령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¹⁸,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피청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을 말한다.

사무총장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¹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익,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채운영은 제 8.3 조 및 제 8.4 조의 적용을 받는다. 청구인이 공채 운영의 채무불이행 또는 미지급이 제 8.3 조 또는 제 8.4 조상 의무 위반을 구성한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미지급과 관련한 제 8.18 조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어떠한 판정도 내려질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채 운영의 채무불이행 또는 미지급과 관련한 제 8.3조 또는 제 8.4조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 8.18조에 따른 청구는 오직 그러한 조항에 따른 의무 위반에만 기초하며, 제 8.7조와 같은 제 1절의 그 밖의 어떠한 조항에 따른 의무 위반에도 기초하지 아니한다.

¹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투자하는 데 요구되는 허가 또는 면허를 적절히 신청하였거나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용자를 받은 때와 같이, 투자자가 앞서 언급된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절차들을 취했을 때에만 그 투자자가 “투자하려고 시도한다” 는 것으로 양해된다.

부속서 8-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8.5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8.5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8-나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8.7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요구한다.

-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한다.
-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¹⁹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불균형적인 부담²⁰을 투자자가 지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예를 들어,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 공중보건, 안전, 환경, 그리고 부동산 가격안정화(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¹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부분적으로 관련 부문에서의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인 가능성이 더욱 낮거나,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에 투자유치국이 관련 부문에 대하여 특정 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²⁰ 한국이 행한 정부 행위의 경우, 특별한 희생이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과되었는지 여부가 고려될 것이다.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²¹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²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호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

부속서 8-다 송금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 당사국이 지급 및 자본 이동에 대하여 자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의 적용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구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연장을 사전에 통보한다.

나.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한다.

다.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 일시적이며, 제1항에 기술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마. 몰수적이지 아니한다.

바.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지된다.

사. 내국민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아. 다른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만큼 유리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한다.

자.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차.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한,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카.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해외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아니한다.²²

3. 이 부속서의 목적상, **외국인직접투자**란 다음을 위한 한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하며, 대외채권은 제외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에 기업 설립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존 기업의 증자,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의 기존의 기업의 지분 취득. 단, 순전히 금융적 성격을 지니며,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시장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투자는 제외한다.

²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라 국제 자본 이동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자본 유입 송금에 대한 모든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거래 금액의 일부를 예치하는 의무와 같은 통제를 포함할 수 있다.

부속서 8-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한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한국에 송달된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427-720, 한국

콜롬비아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콜롬비아에 송달된다.

통상산업관광부
해외투자서비스국
Calle 28 #13 A-15
보고타 디씨, 콜롬비아

제 9 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 9.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생산·유통·마케팅·판매 및 배달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그리고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4조, 제9.7조 및 제9.8조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¹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9.13조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다만, 금융서비스가 당사국 영역내 제1.3조(정의)에 정의된 금융기관에 대한 적용대상투자가 아닌 적용대상투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제3항이 적용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한 제 9.4 조, 제 9.7 조 및 제 9.8 조의 적용범위는, 적용가능한 모든 비합치 조치와 예외를 조건으로, 제 9.1 조에 명시된 적용범위로 제한된다. 제 3 항을 포함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 8 장(투자)의 제 2 절에 따른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정부조달

다.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 서비스, 그리고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 1)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 아니하는 기간 중 그 항공기의 보수 및 유지 서비스
-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CRS) 서비스, 또는

라.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5. 이 장은 당사국에게 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 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접근 또는 고용에 대하여 그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6.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9.2 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9.3 조 최혜국 대우²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9.4 조 시장접근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9.3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³,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9.5 조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제 9.6 조 비합치 조치

1.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 2) 지방정부^{4 5}

³ 3 목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⁴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콜롬비아의 경우 데파르타멘토(*Departamento*)는 지방 정부에 속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9.2조·제9.3조·제9.4조 또는 제9.5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9.7 조 국내 규제

1.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법 및 규정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의무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승인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개별 분야에 적절한 경우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3. GATS 제6조제4항과 관련된 교섭의 결과(또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포럼에서 수행된 유사한 교섭의 결과)가 발효하는 경우, 그 결과가 이 협정에 따라 발효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의 협의 후에 적절한 경우 이 조는 수정된다.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러한 교섭에 대하여 조율한다.

제 9.8 조

규정⁶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제18장(투명성)에 대하여

- 가.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한 자국의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 나. 당사국이 제18.1조(공표)에 합치되게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규정에 대하여 사전공고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능한 한도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 다.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된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둔다.

제 9.9 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제5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자국 또는 자국 영역내 관련 기관이 체결한 모든 인정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포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4.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경험·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면허의 승인 또는 기준을 제정하거나 이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할 수 없다.

6. 부속서 9-가는 그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 9.10 조 지불 및 송금⁷

1.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그러한 송금과 지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 또는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거래 또는 취급

다.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라. 형사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9.11 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기업인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8-다(송금)는 제 9.10 조에 적용된다.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인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9.12 조 금융 서비스 작업 계획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 후에 회합하여 이 협정에 금융서비스를 통합시키는 것의 가능성 및 편의성을 논의할 것이다.

제 9.13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소위 비행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국경 간 서비스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

그러나 이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업이란 제1.3조(정의)에 정의된 “기업” 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거나 구성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금융 서비스란 GATS 금융서비스 부속서 제5항가호에 정의된 것들을 포함하여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직 서비스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고등교육이나 동등한 수준의 훈련 또는 경력 또는 시험이 요구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숙련기능인 또는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⁸

⁸ 제 9.2 조 및 제 9.3 조의 목적상, “서비스 공급자” 는 GATS 제 2 조 및 제 17 조에 사용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부속서 9-가 전문직 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표준 개발

1.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에 관하여 상호 수용가능한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고, 상호 인정에 관한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2. 제 1항에 언급된 표준 및 기준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개발될 수 있다.

가. 교육 - 학교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나. 시험 - 구술시험 및 면접과 같은 대안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면허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다. 경력 -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력의 기간과 내용

라. 행동 및 윤리 - 직업행동표준과 그러한 표준과의 비합치에 대한 징계조치의 성격

마. 전문성 개발 및 자격증의 갱신 - 전문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 교육 및 지속적 요건

바. 업무 범위 -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 또는 한계

사. 현지 지식 - 해당 지역의 법, 규정, 언어, 지리 또는 기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지식 요건, 또는

아. 소비자 보호 -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담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및 고객보상기금과 같은 거주 요건에 대한 대안을 포함

3. 제1항에 언급된 권고가 접수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그 권고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권고를 검토한다. 공동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적절한 경우 상호 합의한 기한 내에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임시 면허

4. 상호 합의한 개인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임시면허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인정

5. 전문직 서비스 일반에 대하여, 그리고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 사안들을 적절히 고려한다.

가. 관련 전문직 기관간의 상호인정협정 또는 약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나. 전문직 서비스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절차 개발의 타당성, 그리고

다.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그 밖의 상호관심사

검토

6. 공동위원회는 이 부속서의 이행을 매 3년마다 최소 1회 검토한다.

디아즈-그라나도스 귀다
통상산업관광부장관
통상산업관광부
콜롬비아 보고타

디아즈-그라나도스 장관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의 제8장(투자)과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콜롬비아 공화국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8.1조(적용범위) 또는 제9.1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도박 및 베팅 서비스¹의 국경 간 무역은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도박 및 베팅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제8장(투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박 태 호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 서비스”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대한민국 서울

박태호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의 제8장(투자)과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콜롬비아 공화국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8.1조(적용범위) 또는 제9.1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도박 및 베팅 서비스¹의 국경 간 무역은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도박 및 베팅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제8장(투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디아즈-그라나도스 귀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 서비스”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디아즈-그라나도스 귀다
통상산업관광부장관
통상산업관광부
콜롬비아 보고타

디아즈-그라나도스 장관 귀하,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의 제8장(투자)과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콜롬비아 공화국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1)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자원재활용과 저공해 자동차 배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한 일정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1)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 2) 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 3) 적용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 4) 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 그리고 5) 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제 8.9 조(이행 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2)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기업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영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제한이 제 9.4 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3)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증설 또는 이전에 적용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 10599 호, 2011 년 4 월 14 일)의 기존의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 9.4 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4)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제 8.3 조(내국민 대우) 및 제 9.2 조(내국민 대우)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5)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주세법」(법률 제 11134 호, 2011 년 12 월 31 일)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 8.9 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6)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철도운송 회사가 회사 폐쇄 또는 청산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능력을 통제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 9.4 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7)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는 제 9.4 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박 태 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대한민국 서울

박태호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금일 서명되는 우리 양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의 제8장(투자)과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콜롬비아 공화국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1)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자원재활용과 저공해 자동차 배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한 일정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1) 제품과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의무, 2) 재활용 이행계획과 그 결과의 제출, 3) 적용가능한 재활용 부과금의 납부, 4) 일정 비율의 저공해 자동차 배급 의무, 그리고 5) 저공해 자동차를 배급할 계획의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제 8.9 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2)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기업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영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제한이 제 9.4 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3)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증설 또는 이전에 적용가능한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 10599 호, 2011 년 4 월 14 일)의 기존의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 9.4 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4)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나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제 8.3 조(내국민 대우) 및 제 9.2 조(내국민 대우)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 (5)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주세법」(법률 제 11134 호, 2011 년 12 월 31 일)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주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제 8.9 조(이행요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6)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철도운송 회사가 회사 폐쇄 또는 청산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능력을 통제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제 9.4 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7) 교섭과정에서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는 제 9.4 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양해를 공유하였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디아즈-그라나도스 귀다

제 10 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 10.1 조 일반원칙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특혜 무역 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촉진하고 부속서 10-가에 따라 일시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 공동의 희망, 그리고 국경 안전을 보장하며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 및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2.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시민권, 국적, 영구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2 조 일반적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10.1조에 따라 이 장의 규정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하도록 동 조치를 신속히 적용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기업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으로 기업인이 입국하거나 그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을 무효화, 지연 또는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게는 비자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을 무효화, 지연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0.3 조 일시입국의 허용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10-가 및 부록 10-가-2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라 공중보건과 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과 같은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는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허용한다.

2. 이 장에 따라 허용되는 일시입국은 그 일시입국을 허가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중인 구체적 법과 규정에 따라 직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3. 기업인의 일시입국이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 인의 고용을 허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가. 고용의 장소 또는 고용이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의 해결, 또는

나.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인의 고용

4. 제3항에 따라 당사국이 고용을 허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해당 기업인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다. 그리고

나. 신속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게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5.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 신청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으로 제한한다.

제 10.4 조 정보의 제공

1. 제18.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관련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6개월 이내에,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요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그 요건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공표하거나 달리 그 당사국의 영역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입국서류를 발급받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 대해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을 허용한 것에 관한 자료를 자국 법에 따라 수집·보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이 자료에는 각 직업, 직종 또는 활동 별 해당 자료도 포함된다.

제 10.5 조 작업반

1. 양 당사국은 출입국 공무원과 접촉선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업인의 일시입국 작업반을 설치한다.

2. 작업반은 필요한 경우, 이 장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회합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나.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공통의 기준 및 해석의 개발 및 채택

다.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라. 상호 관심이 있는 그 밖의 모든 조치

제 10.6 조 접촉선

1. 양 당사국은 제10.4조에 기술된 대로 정보를 교환하고 제10.5조에 언급된 정보를 접수하고 분석하는 접촉선을 설치한다.

2. 접촉선은

가. 한국의 경우,
조정자
출입국심사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또는 그 승계기관

나. 콜롬비아의 경우,
조정자
비자 및 출입국 조정과

외교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 10.7 조 분쟁해결

1.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허용의 거절에 대해 제20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해 이용가능한 행정적 구제절차들을 완료하였을 경우

2. 권한있는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나호에 언급된 구제조치들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0.8 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 제1장(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19장(제도 규정), 제20장(분쟁해결) 및 제22장(최종규정)과 제18.1조(공표), 제18.2조(정보의 통지 및 제공) 및 제18.3조(행정절차)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대해 당사국에 어떠한 의무¹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그 밖의 장과 관련하여 당사국에 어떠한 의무나 약속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9 조 규정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1. 제18장(투명성)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0.8 조의 “어떠한 의무”는 제 9.2 조(내국민 대우), 제 9.3 조(최혜국 대우) 및 제 9.4 조(시장 접근)를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일시입국을 요청하는 신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 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그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10.1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무역, 서비스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국민² 을 말한다.

출입국 조치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법, 규칙, 규정, 결정, 절차 또는 그 밖의 모든 행정적 조치를 말한다.

국민은 제1장(최초 규정 및 일반적 정의)에 정의된 “국민”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반복된 관행이란 해당 관행의 집행 직전에 대표성이 있는 기간 동안 당사국의 출입국 당국에 의해 반복적인 방식으로 수행된 관행을 말한다. 그리고

일시입국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영구적 거주 의도 없이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민” 은 영주권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0-가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 1 절 상용 방문자

1. 각 당사국은 부록 10-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하려는 기업인에게는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취업 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시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 국적의 증명

나. 그 기업인이 부록 10-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기술하는 문서, 그리고

다. 제안된 상용 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그 기업인이 현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증거

2. 각 당사국은 기업인이 다음 사항을 입증함으로써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규정한다.

가. 제안된 상용 활동의 주된 수입원이 일시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 기업인의 주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일시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

나호에 언급된 사안을 입증하기 위해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증명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제10.4조제1항나호에 기술된 설명자료에 그러한 증명의 비한정적인 예시 목록을 포함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2 절 무역업자 및 투자자

1. 각 당사국은 감독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다음 활동을 하려는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가. 주로 해당 기업인이 국민인 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사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당한 무역을 수행하는 것, 또는

나. 해당 기업인 또는 그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금액의 자본 투자를 약정했거나, 약정하는 과정에 있는 투자를 설립, 개발, 운영하거나 투자의 운용에 자문이나 핵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어떠한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3 절 기업 내 전근자

1. 각 당사국은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는 기업 내 전근자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2. 기업 내 전근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일시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고위급 임원·이사회 또는 회사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임원은 실제 서비스의 공급이나 조직의 서비스와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

나.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감독하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해고 또는 다른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수행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이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주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전문가란 지속적인 전문성의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해 독점적 지식을 보유한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4 절 계약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부록 10-가-3에 규정된 직업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그 기업인이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고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 국적의 증명

나. 그 기업인이 그렇게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기술하는 문서, 그리고

다.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 요건 또는 대체적인 자격증명서의 취득을 입증하는 문서

2.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당사국의 기업인으로서 다음을 충족한다.

가. 전문적 지식의 이론적 및 실질적 적용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직업에 종사할 것

나. 해당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을 것

다. 다른 쪽 당사국에 상업적 주제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한편, 그 법인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하였을 것. 그 계약은 그러한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라. 승인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피고용인이었어야 할 것, 그리고

마. 다른 쪽 당사국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아니할 것

3. 각 당사국은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제 5 절 배우자 및 부양가족

1. 각 당사국은 제2절, 제3절, 또는 제4절에 따른 일시입국의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각각의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고용 자격을 충족하면 일시입국과 고용허가를 허용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6 절 경영 연수생

1.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법인에 의하여 적어도 1년간 고용되었고, 학사 학위를 소지하며, 회사 내 고위 간부직의 준비를 위해 피고용인의 회사³ 내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확대하도록 의도된 일시적 직무 과제를 맡고 있는, 직업 개발 중에 있는 경영 연수생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다만, 그 경영 연수생은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각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경영연수생의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사” 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로 한정된다.

부록 10-가-1
상용 방문자

다음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당사국의 기업인:
시장·기술·통계 및 과학 연구, 사업상 연락, 현장 방문, 회의 및 협의, 계약 협상,
수출입된 기계류의 설치 또는 보수, 세미나 또는 학회 참석, 상품이나 사람의 적재
및 운송, 그리고 그 밖의 유사한 사업 목적.

부록 10-가-2 체류 기간

한국의 경우,

1. 부속서 10-가의 제1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상용 방문자는 90일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2. 부속서 10-가의 제2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무역업자 및 투자자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입국의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연장될 수 있다.
3. 부속서 10-가의 제3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기업 내 전근자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입국의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연장될 수 있다.
4. 부속서 10-가의 제4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계약 서비스 공급자는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5. 부속서 10-가의 제6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경영 연수생은 1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6.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서 체류하려는 콜롬비아의 기업인은 권한있는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으로 등록한다.

콜롬비아의 경우,

1. 부속서 10-가의 제1절에 따라 콜롬비아에 입국하는 상용 방문자는 90일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2. 부속서 10-가의 제2절에 따라 콜롬비아에 입국하는 무역업자 및 투자자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입국의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연장될 수 있다.
3. 부속서 10-가의 제3절에 따라 콜롬비아에 입국하는 기업 내 전근자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입국의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연장될 수 있다.
4. 부속서 10-가의 제4절에 따라 콜롬비아에 입국하는 계약 서비스 공급자는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5. 부속서 10-가의 제6절에 따라 콜롬비아에 입국하는 경영 연수생은 1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6.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자를 받았으며, 비자기간보다 15일의 영업일을 초과하여 콜롬비아에서 체류하려는 한국의 기업인은 권한있는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으로 등록한다.

부록 10-가-3
계약서비스 공급자⁴

- 1 컴퓨터 하드웨어⁵ 설계기술자
- 2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개발자
- 3 기록장치 개발자
- 4 하드디스크 개발자
- 5 콘트롤러 개발자
- 6 컴퓨터 기기 기술자
- 7 컴퓨터 제어시스템 개발자
- 8 디스크드라이브 개발자
- 9 컴퓨터메인보드 개발자
- 10 입·출력장치 개발자
- 11 통신기기 기술자 및 연구원
- 12 통신장비 기술자 및 연구원
- 13 통신기술 기술자 및 연구원
- 14 통신망운영 기술자 및 연구원
- 15 핸드폰회로 개발자
- 16 모뎀개발 설계 기술자
- 17 인터폰 또는 전화기 개발자
- 18 DMB수신기 개발자
- 19 HFC망 운영 기술자
- 20 SMS장비 운용원
- 21 무선통신망 관리자
- 22 회선 관리자
- 23 교환기 개발자
- 24 광단국장치 개발자
- 25 VMS장비 개발자
- 26 RF통신연구 개발자
- 27 유선통신망 기획자
- 28 통신선로 설계 기술자
- 29 인공위성TV수신기개발설계 기술자
- 30 광통신기기 설계 개발자
- 31 문자서비스 장비 운용원
- 32 전송기 개발자
- 33 무선전화기 개발자

⁴ 이 목록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및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기초한다.

⁵ “컴퓨터 하드웨어”는 컴퓨터 칩, 회로기판, 컴퓨터 시스템 및 키보드, 모뎀 및 프린터와 같은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 34 디지털수신기 개발자
- 35 DMB폰 개발자
- 36 ADSL 장비 개발자
- 37 VMS 장비 운용원
- 38 통신망운용 기술자
- 39 인터넷통신망운영 기술자
- 40 통신공사 감리원
- 41 무선중계장치개발 설계 기술자
- 42 통신응용서비스장비 개발자
- 43 CDMA기술연구 개발자
- 44 무선데이터망 개발자
- 45 통신지능망연구 개발자
- 46 네트워크통신기기개발 설계 기술자
- 47 통신기기개발 설계 기술자
- 48 교환기개발 설계 기술자
- 49 디지털방송 장비 개발자
- 50 통신망 설계 기술자
- 51 정보통신 컨설턴트
- 52 컴퓨터시스템 감리 전문가
- 53 컴퓨터시스템 설계·분석가
- 54 네트워크 컨설턴트
- 55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 56 정보보안 컨설턴트
- 57 정보시스템 컨설턴트
- 58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 59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 60 EMBEDDED프로그램 개발자
- 61 리눅스 개발자
- 62 MICOM제어 기술자
- 63 운영체제소프트웨어 개발자
- 64 FIRMWARE 개발자
- 65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 66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 67 그 외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 68 자료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 69 재무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 70 정보처리 응용 프로그래머
- 71 프로토콜 개발자
- 72 데이터베이스 설계·분석가
- 73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 74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 75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 76 네트워크 기술자
- 77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
- 78 인트라넷 기술자
- 79 LAN 기술자
- 80 VAN 기술자
- 81 WAN 기술자
- 82 네트워크서버구축운영 기술자
- 83 웹 마스터
- 84 웹 기술자 및 웹프로그래머
- 85 정보 시스템 운영자
- 86 일반 관리 컨설턴트⁶
- 87 재무 관리 컨설턴트
- 88 마케팅 관리 컨설턴트
- 89 인사 관리 컨설턴트⁷
- 90 생산 관리 컨설턴트
- 91 홍보 컨설턴트
- 92 송·배전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 93 전기계측제어 기술자 및 연구원
- 94 전기감리 기술자 및 연구원
- 95 시멘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96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 97 플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 98 주조금형 설계기술자
- 99 항공기 기술자
- 100 디젤기계 기술자
- 101 가스터빈 기술자
- 102 항공기기계 기술자
- 103 인공위성 기술자
- 104 사출금형 설계기술자
- 105 환기장치 기술자
- 106 환풍기계 기술자
- 107 냉장기계 기술자
- 108 열 교환기 설계사
- 109 클린룸공조설비 설계기술자
- 110 GHP 개발자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분야와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⁷ 한국의 경우,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포함된 컨설팅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공인노무사의 직무는 노사관계 및 급여계획에 관한 컨설팅을 포함한다.

- 111 열 교환기 개발자
- 112 공기정화 설계기술자
- 113 토공용 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 114 도로포장용 기계설계개발 기술자
- 115 운반용 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 116 쇄석기, 천공기, 향타 및 향받기 설계개발 기술자
- 117 농업기계(설계) 기술자
- 118 광업용기계(설계) 기술자
- 119 섬유기계(설계) 기술자
- 120 식품기계(설계) 기술자
- 121 공작기계(설계) 기술자
- 122 유압기계(설계) 기술자
- 123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 124 자동차 관련 특수엔지니어링 디자인서비스(자동차 설계사)
- 125 항공기 설계사
- 126 자동차기계 기술자
- 127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자
- 128 자동차엔진설계 기술자
- 129 석유화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30 고무 및 플라스틱 기술자 및 연구원
- 131 농약 및 비료 기술자 및 연구원
- 132 도료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
- 133 화장품 및 비누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
- 134 천연가스화학 엔지니어
- 135 타이어생산 기술자
- 136 가솔린 기술자
- 137 천연 가스 생산·유통 기술자
- 138 양조생산 기술자
- 139 금속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40 전기제품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 141 발전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 142 전자장비 기술자
- 143 금형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44 플랜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45 냉·난방 및 공조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46 건설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47 산업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48 자동차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49 조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0 비행기 및 철도차량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1 조선 공학 기술자
- 152 탐사 기술자
- 153 석유 기술자
- 154 시장 및 여론 조사 관리자
- 155 조사 전문가
- 156 생물학자⁸
- 157 생화학자⁹
- 158 건축 시공 기술자
- 159 토목 시공 기술자
- 160 광고 전문가
- 161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머
- 162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 163 건축사¹⁰

⁸ 박사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⁹ 박사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¹⁰ 한국의 경우, 건축 서비스는 한국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공동 계약 형태로의 공동 작업을 조건으로 한다.

부록 10-가-4 주요 출입국 조치

한국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사증 발급 등에 관한 지침」, 또는 만일 있는 경우, 이들을 수정하는 법 및 규정.

콜롬비아의 경우,

- 2004년 법령 제4000호, 2009년 법령 제2622호 그리고 2008년 결의안 제5707호 및 2009년 결의안 제4700호, 또는 이들을 수정하는 법 및 규정.

제 11 장 통신

제 11.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된다.

- 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 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 다.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그리고
- 라.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2. 제1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장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망 및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기업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전송 망으로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 다.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승인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 라. 자가망을 운영하는 인이 제3자에게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자신의 망을 이용하는 것을 당사국이 금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

제 1 절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제 11.2 조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¹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그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바를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전송 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 또는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 나.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 다.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그 당사국의 영역 내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나 다른 기업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
 - 라. 교환, 신호 및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 마. 통신 망 및 서비스를 공중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업이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그러한 기업의 사내통신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국경을 넘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달리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1.2 조는 당사국이 기업에게 자국의 영역 내에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면허, 양여 또는 다른 유형의 승인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 11.2 조의 목적상, “기업”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 라고 해석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이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터페이스 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또는

라. 통보, 등록 및 면허

제 2 절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

제 11.3 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자회사,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가. 동종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공급, 효율 또는 품질,
그리고

나. 상호접속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제 11.4 조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국 영역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²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제 11.5 조 상호접속

일반조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효율에 따라 제공된다.

나. 자신의 동종 서비스,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신의 자회사 또는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된다.

² 콜롬비아의 경우, “반경쟁적 교차보조” 라는 용어는 이윤압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시의 적절하게 제공된다. 그리고

라.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중단점에 추가된 지점에서 제공된다.

상호접속 교섭을 위한 절차의 공개적 이용가능성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교섭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상호접속협정의 투명성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이나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제 11.6 조 재판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자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³

제 11.7 조 망 요소 세분화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부여한다.

³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에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요구되는 망 요소와 그러한 요소를 획득할 수 있는 공급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 절 그 밖의 조치

제 11.8 조 부가서비스의 공급조건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이 부가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 자국 영역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소유하지 아니한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나. 그러한 서비스 효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다. 그러한 서비스의 효율표를 제출할 것

라.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또는

마. 공중 통신 전송 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 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기술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1.9 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제 11.10 조 보편적 서비스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갖는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⁴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11.11 조 면허 절차

1. 당사국이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면허, 양여, 허가, 등록 또는 다른 유형의 승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면허 또는 승인의 기준 및 절차
 - 나. 면허, 양여, 허가, 등록 또는 다른 유형의 승인을 위한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간, 그리고
 - 다. 모든 면허나 승인의 조건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면허, 양여, 허가, 등록 또는 다른 유형의 승인에 대한 거부 사유를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1.12 조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주파수, 번호 및 선로 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 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⁴ 콜롬비아의 경우, “경쟁중립적”이라는 용어는 경쟁적 및 기술적 중립성을 둘다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3.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9.4조(시장접근)가 제8장(투자)에 적용되든지 또는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든지 간에, 제9.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 11.13 조 통신 분쟁의 해결⁵

제18.3조(행정절차) 및 제18.4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구제신청

- 가. 1)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은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다른 관련 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 2)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다른 쪽 당사국의 부가서비스⁶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⁵ 양 당사국은 제 11.13 조의 목적상, “기업”이라는 용어가 오직 자연인 또는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⁶ 부가서비스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재검토⁷

-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그 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⁸ 어떠한 당사국도, 적절한 당국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청원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⁹ 그리고

사법적 재심

- 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그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적 재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 11.14 조 투명성

제18.1조(공표)와 제18.2조(통지 및 정보 제공)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규범제정의 근거를 포함하여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범 제정과 자국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요율표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도록 할 것
- 나. 이해관계인이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규범 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공고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 그리고
- 다. 다음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또는

⁷ 한국의 경우, 나호는 통신서비스 공급자 간, 또는 통신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⁸ 콜롬비아의 경우, 나호에 관하여 기업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 11.17 조에 정의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결정의 재검토를 청원할 수 없다.

⁹ 이 호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경우, 만약 재검토 청원이 제출되면, 재검토 결과가 계류중인 동안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재검토 청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진다.

부가서비스¹⁰ 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 1) 서비스의 효율 및 그 밖의 조건
- 2) 사법적 및 그 밖의 심판진행에 관한 절차
- 3)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4) 표준 관련 조치의 준비, 개정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
- 5)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부착하는 데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
- 6)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요건

제 11.15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제 11.16 조 기술적 협력

부가서비스뿐만 아니라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민간분야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기술적 정보의 교환, 정부 대 정부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밖의 관련 활동에 있어 협력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양 당사국은 통신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기존의 교환 및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에 특별한 중점을 둔다.

제 11.17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¹⁰ 부가서비스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 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기업이란 제1.3조(정의)에 정의된 “기업”을 말하며, 그 기업의 지점을 포함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 둘 다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해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내통신이란 그것을 통해 회사가 그 회사 내에서 또는 자신의 자회사, 지점, 및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계열사와, 또는 이러한 자회사, 지점 및 계열사 간에 하는 통신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상 “자회사”, “지점”,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계열사”는 각 당사국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다. “사내통신”에는 관련 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가 아닌 회사에게 공급되거나 고객 또는 잠재적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용회선이란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해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을 말한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

-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공중통신 전송 망이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고, 부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표준상호접속제안이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제시되고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되거나 통신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된 상호접속제안으로서, 상호접속을 위한 약관, 요율 및 조건이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이를 수락할 용의가 있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가 이에 기초하여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으로서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구를 말한다.

이용자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서비스란 제고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추가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당사국의 관련된 법 또는 규정에 각각 정의된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부가서비스인지 분류할 수 있다.

제 12 장 전자상거래

제 12.1 조 목적과 원칙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무역 기회, 그 이용 및 발전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 무역기구협정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특히 이 장에 따른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협력함으로써 양 당사국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자료 보호의 국제기준과 충분히 양립가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 12.2 조 관세

1.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적용할 수 없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제품에 대해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세 또는 부과금은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제 12.3 조 온라인 개인 자료 보호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 자료의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 자료 보호 기준의 개발에 있어,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기준 및 표준을 고려한다.

제 12.4 조 종이없는 무역 행정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12.5 조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 사기적이고 오도하는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 12.6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특히 다음을 다룰 협력 메커니즘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가. 대중에게 발급되는 전자 서명 인증서의 인정과 국경 간 인증 서비스의 원활화
 - 나. 개인 자료의 보호
 - 다. 정보의 전송 또는 저장에 관한 제공자의 책임
 - 라.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의 취급
 - 마. 전자상거래의 보안
 - 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 사.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2.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소 및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서 겪는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협력한다.
3. 전자상거래의 전지구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및 다자 협의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그러한 협의체의 틀 내에서 필요한 경우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제 12.7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이 협정의 다른 장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제 12.8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개인 자료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해 또는 그를 위해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이란 인터넷 운반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령인의 동의 없이 또는 수령인의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송부되는 음성 또는 팩스 서신을 포함한 전자 서신을 말한다.

제 13 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 13.1 조 목적

무역관계에 있어 자유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 금지, 경쟁정책의 이행 및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협력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양해한다.

제 13.2 조 이행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3. 양 당사국 경쟁당국의 집행 정책은 투명성, 시의 적절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에 규정된 모든 면제가 투명하고 공공정책 또는 공익을 근거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제 13.3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자국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경쟁당국 간 협력 및 조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각각의 경쟁법 및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보, 협의, 기술지원 및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해 협력한다.
3.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그 당사국의 중요한 이해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관련 경쟁당국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3.4 조 통보

1.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집행 활동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대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집행 활동을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해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게 영어로 통보한다.
2. 양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통보는 집행 활동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제 13.5 조 협의를

1.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해, 그리고 각 당사국이 자국 경쟁법 및 정책을 개발, 유지 및 집행할 자율권을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제기한 사안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2.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 13.6 조 기술지원

양 당사국은 경험 교환, 자국 경쟁법 및 정책의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경쟁 문화의 촉진을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분야에서 기술지원을 서로 제공할 수 있다.

제 13.7 조 비밀유지

1.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양 당사국 각각의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이는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각 당사국의 비밀유지 규칙 및 기준과 양립가능해야 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경쟁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떠한

실체에게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3.8 조 소비자 보호에 관한 협력

1.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과 조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해 협의, 기술지원 및 자국의 소비자보호법의 집행과 관련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어느 한쪽 당사국의 중대한 이해가 영향을 받는 적절한 사안에 대해 협력한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대응하여 조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재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당국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것을 배제하지도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자국의 중요 이해관계에 합치되게, 자국 소비자보호법의 집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과의 효과적인 협력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3.9 조 공기업과 지정독점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 및/또는 지정 독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공기업과 지정독점이 그들 각각의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양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반경쟁적 관행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은 공기업 및 지정독점에 부여된 특정 공공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13.10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13.1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및 그 개정사항,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1959년의 법률 제155호, 2009년의 법률 제1340호 및 1992년의 포고령 제2153호 및 그들의 이행 규정과 그 개정사항

소비자보호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들의 이행 규정과 그 개정사항,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헌법 제78조와 제333조, 1982년의 포고령 제3466호(소비자보호법) 및 그들의 이행 규정과 그 개정사항

반경쟁적 관행이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영업 행위 또는 거래를 말한다.

가. 경쟁의 방해, 제한 또는 왜곡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효과를 유발하는 기업 간 합의 및 기업단체의 결정

나. 하나 이상의 기업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 그리고

다. 특히 독점적 지위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서 효과적인 경쟁을 현저히 방해하는 기업 합병 또는 다른 구조적 결합, 그리고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상공업감독원, 금융감독원 및 특정 사안의 경우 민간항공 특별행정단,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제 14 장 정부조달

제 14.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당사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란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의 정부조달로 다음을 말한다.
 - 가.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조달하지 아니하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해 조달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구매, 리스,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아니하는 임차 또는 할부 구매와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 다. 제14.5조에 따른 공고의 공표 당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정된 조달금액이 부속서 14-가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 마. 이 장 또는 부속서 14-가의 적용범위로부터 달리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토지, 기존 건물 또는 다른 부동산 또는 이들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무상교부, 융자, 지분참여, 보증, 재정적 유인 및 보조금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 다. 재무 대리 또는 위탁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서비스, 또는 융자,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 부채와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다음 활동과 관련된 은행, 금융 또는 특화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공적부채 발생, 또는

2) 공적부채 관리

라. 공공고용계약 및 관련 조치

마. 군대 주둔 또는 사업 서명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 협정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 또는 국제기구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수행되거나, 국제적 공여, 차관 또는 그 밖의 지원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적용가능한 절차나 조건이 이 장과 불합치하는 조달

바. 해외원조 제공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조달, 그리고

사. 조달기관을 위해 다른 조달기관으로부터의 구매

4.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있어, 조달기관이 부속서 14-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인에게 특정 요건에 따라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4.3조를 그러한 요건에 준용한다.

가액산정

5. 협정 적용대상 조달인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달의 가액을 추산할 때, 조달기관은

가. 조달을 이 장의 적용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할 의도로 해당 조달을 별개의 조달로 나누지 아니하며, 조달가액 추산을 위한 특정 가액평가 방법을 선택하거나 사용하지도 아니한다.

나. 다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한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다.

1) 그 조달에서 규정될 수 있는 할증료, 요금, 수수료, 이자와 그 밖의 수입 흐름, 그리고

2) 그 조달이 선택 조항의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택 구매를 포함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 그리고

다. 조달이 동시에 또는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으로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되는 경우, 전 기간에 걸친 최대 총 조달가액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6.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이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그 조달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 14.2 조 예외

1. 그러한 조치가 같은 조건하에 있는 양 당사국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교도소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2. 양 당사국은 제1항나호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 14.3 조 일반원칙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1.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치에 대해, 각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와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한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가. 외국인과의 연계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에 근거하여,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또는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청약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전자적 수단 이용

3.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조달기관은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접수 시간의 설정과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하여,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조달에 특정되지 아니하는 조치

4. 제1항과 제2항은 관세 및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그 밖의 수입규정 또는 절차, 그리고 적용대상조달을 규율하는 조치 외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응구매의 금지

5.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적용대상 조달의 모든 단계에서 대응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원산지 규정

6. 적용대상조달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해 통상적인 무역거래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조달의 수행

7. 조달기관은 적용대상조달을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가. 공개입찰, 선택입찰 및 제한입찰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이 장에 합치하는 방식

나. 이해 상충을 피하는 방식, 그리고

다. 부패 관행을 방지하는 방식

제 14.4 조 조달제도에 관한 정보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조달 법률, 규정, 절차, 정책지침, 사법 결정 및 행정 판정, 그리고 이들에 대한 모든 변동 또는 추가사항을, 널리 유포되고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로 신속하게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조달 법률, 규정, 절차, 정책지침, 사법적 결정 및 행정 판정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답한다.

제 14.5 조 공고의 공표

예정된 조달의 공고

1. 각 적용대상 조달에 대해, 조달기관은 제14.10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관심있는 공급자들에게 입찰서 또는, 적절한 경우, 해당 조달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그러한 공고는 조달 입찰을 위해 설정된 전체 기간 동안, 널리 유포되고 대중이 무료로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또는 종이 매체로 공표한다. 각 당사국은 조달기관이 인터넷 또는 비슷한 망을 통해 접근 가능한 하나의 창구에 전자적 수단으로 예정된 조달의 공고를 공표하도록 장려한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달예정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조달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해당 조달 기관에 접촉하고 조달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정보, 그리고 이들의 비용과 지불조건이 있다면 그 비용과 지불조건

나.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한 조달에 대한 설명

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기간 또는 계약 기간

라. 사용될 조달 방법과 그 방법이 교섭 또는 전자 경매를 수반하는지 여부

마. 적용 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바. 입찰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사. 공급자가 제출해야 할 특정 서류 또는 증명서에 대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 및 간단한 설명. 다만, 그러한 요건이 예정된 조달의 공고와 동시에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수할 수 있게 된 입찰서류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조달기관이 제14.7조에 따라 제한된 숫자의 유자격 공급자를 입찰 참가 권유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과, 적용 가능한 경우,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모든 제한, 그리고

자. 해당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의 적시

계획된 조달의 공고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매 회계연도 조달 계획에 관한 공고를 매 회계연도 전에 또는 매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권장한다. 그 공고는 최소한 조달의 대상 및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대한 공표 계획일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제 14.6 조 참가조건

1. 조달기관은 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관련 조달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상업적,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능력을 갖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가. 해당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안과 밖 모두에서의 공급자의 영업활동에 기초하여 그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을 평가한다.

나.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 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근거하여 평가한다.

다.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조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전의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3.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가. 파산

나. 허위 신고

다. 중전의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상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마. 공급자의 상업상 무결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 행위 또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바. 세금 미납

제 14.7 조 공급자의 등록 및 자격심사

등록제도와 자격심사 절차

1.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에 참가하도록 허락되기 전에 등록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공급자에게 등록 또는 사전자격심사에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공지가 관심있는 공급자가 지원에 착수할 수 있고, 조달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립가능한 한도에서, 등록 및/또는 자격심사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 내에 공표되도록 보장한다.

선택입찰

2. 당사국의 법이 선택입찰절차의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각각의 예정된 조달에 대해,

가. 관심있는 공급자가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조달기관이 그러한 신청서를 기초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조달 참가를 신청하도록 공급자에게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그리고

- 나. 조달기관이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또는, 공개된 경우, 그 입찰 서류에 입찰에 허용될 공급자 수의 제한 및 그러한 제한 기준을 기술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한 모든 국내 공급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유자격자 명부

3. 관심 있는 공급자들에게 해당 명부에 포함될 것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공고가 연간 발행되거나, 달리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조달기관은 유자격자 명부를 설립할 수 있다. 그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이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

- 나.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기 위하여 공급자가 만족시켜야 하는 참가 조건과 공급자가 해당 조건을 만족시켰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이 사용할 방법

- 다.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해당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유자격자 명부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정보

- 라. 유자격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이를 갱신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유자격자 명부 사용의 종료를 통보할 방법의 적시, 그리고

- 마. 유자격자 명부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적시

4. 조달기관은 공급자에게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될 것을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유자격 공급자를 해당 명부에 포함시킨다.

제 14.8 조 기간

1. 조달기관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2. 선택입찰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입찰참가 신청서의 제출 마감일이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일부터 원칙적으로 25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조달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이러한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단축될 수 있다.

3.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자를 다음의 날부터 4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가. 공개입찰의 경우,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공표된 날, 또는

나. 선택입찰의 경우, 조달기관이 유자격자 명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라고 조달기관이 그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날

4.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제3항에 규정된 입찰기간을 10일 이상이 되게 단축할 수 있다.

가. 조달기관이 부속서 14-가 제11절에 열거된 전자적 수단으로 제14.5조제3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 공고를 최소 40일, 그리고 최대 12개월을 넘지 않을 만큼 미리 공표한 경우

나.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에 대한 공고를 2차 또는 후속 공표하는 경우, 또는

다. 조달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그러한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5. 조달기관은 제3항에 규정된 입찰기간을 다음의 상황 중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5일씩 단축할 수 있다.

가.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나. 모든 입찰에 관한 서류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일부터 전자적 수단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다. 입찰서가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기관에 의해 접수될 수 있는 경우

6. 제4항과 연계하여 제5항의 원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이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미만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어떠한 다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을 13일 이상이 되게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 조달기관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모두 동시에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입찰서를 전자적 수단으로 접수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을 10일 이상이 되게 단축할 수 있다.

8. 부속서 14-가의 조달기관이 모든 또는 제한된 숫자의 유자격 공급자를 선정한 경우, 입찰 기간은 조달기관과 선정된 공급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기간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제 14.9 조 예정된 조달에 관한 정보

입찰 서류

1. 조달기관은 조달에 참여하는 데 관심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한다.

2.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이미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 사항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포함한다.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비롯해 기술규격, 적합성평가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사용설명서 자료를 포함한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요건

나. 공급자가 제출해야 하는 재정적 보증, 정보 및 서류를 포함한 공급자의 모든 참가조건

다. 계약 낙찰에서 고려될 모든 평가 기준, 그리고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

라. 조달기관이 전자 경매를 실시할 경우, 평가 기준과 관련된 입찰 요소의 확인을 포함한 경매 수행의 근거가 되는 규칙

마. 공개 개찰이 있을 경우,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 권한이 있는 인물

바. 지불조건 및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과 같은 입찰서 제출 수단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조건, 그리고

사.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일자

3. 조달기관은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의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신속하게 답변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그 공급자에게 다른 공급자보다 유리한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조달기관이 입찰 절차에서 복수의 언어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언어 중 하나는 영어이다.

기술규격

5. 조달기관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6.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규격을 명시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의 사용이 조달 기관의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정된 국가표준의 사용보다 더 큰 부담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표준이 존재하고 조달기관에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기술규격을 국제표준에 기초한다.

7. 기술규격에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이 사용되는 경우,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 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 조달의 요건을 실증적으로 충족시키는 동등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서를 고려할 것임을 적시한다.

8. 조달기관은, 조달의 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 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9.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을 위한 기술규격의 준비 또는 채택에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을 해당 조달에 상업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인으로부터, 경쟁을 미리 배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방식으로 구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은 천연자원의 보존을 증진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다.

수정

11. 조달기관이 입찰에 참가하는 공급자에게 제공한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기준 또는 기술요건을 낙찰 전에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 또는 재발행하는 경우, 해당 조달기관은 그러한 모든 수정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행된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서면으로 전달한다.

가. 수정, 개정 또는 재발행 당시 참가한 모든 공급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다른 모든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전달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공급자가 적절하게 개정 입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만한 충분한 시간 내에 전달한다.

제 14.10 조 제한입찰

1. 조달기관이 공급자 간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자국의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조항을 원용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상황에서만 제한입찰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11조 및 제14.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요건이 상당 부분 수정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경우

- 1)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입찰참가를 요청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 2) 입찰에 관한 서류상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3) 입찰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경우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음 이유 중의 하나로 합리적인 대안 또는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요건이 예술품에 대한 것인 경우
- 2) 특허, 저작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인 권리 보호, 또는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

다. 최초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가 추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 변경이

1) 경제적 이유 또는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최초 조달에 따라 조달된 설비와의 상호호환성 또는 상호운용성 요건과 같은 기술적 이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2) 조달기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 중복을 초래하는 경우

라. 엄밀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을 이용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마. 원자재 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경우

바.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그 계약과정에서 조달기관의 요청으로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이 이행된 경우, 그 후의 상품 또는 서비스 조달은 이 장과 합치되는 절차의 적용대상이 된다.

사. 청산, 법정관리 또는 파산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처분의 경우에 매우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만, 정상적인 공급자로부터 일상적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디자인 경연대회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경우

1) 경연대회가 특히,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와 관련하여 이 장의 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을 경우, 그리고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되게 할 목적으로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해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자. 최초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입찰에 관한 서류 원본의 목적 내에 있는 추가적인 건설 서비스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그 서류에 기술된 건설 서비스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그러한 경우, 추가 건설 서비스에 낙찰된 계약의 총 가액은 최초 계약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라 낙찰된 각 계약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준비한다.

가. 조달기관의 명칭

나.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그리고

다.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한 제1항에 기술된 상황과 조건을 적시하는 문안

제 14.11 조 전자 경매

조달기관이 전자 경매를 이용하여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각 참가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입찰서류에 규정된 평가 기준에 기초하고 경매 과정에서 자동 순위 또는 순위 재조정에 사용될 수학적 공식을 포함한 자동 평가 방법

나.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기준으로 계약이 낙찰될 경우, 그 입찰서의 요소에 대한 모든 최초 평가 결과, 그리고

다. 경매 수행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

제 14.12 조 입찰서 취급 및 낙찰

입찰서 접수 및 개찰

1. 조달기관은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입찰서를 접수, 개찰 및 취급한다.

2. 조달기관은 최소한 입찰서 개찰 전까지 모든 입찰서를 비밀로 취급한다. 특히, 조달기관은 특정 공급자에게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조달기관은 입찰서의 접수가 오로지 해당 조달기관의 잘못된 취급 때문에 지체된 경우, 입찰서 접수에 명시된 시각 후에 접수된 입찰서의 공급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4. 조달기관이 입찰서의 개찰과 낙찰 사이에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형식상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낙찰

5. 조달기관은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 입찰서가 서면으로 제출되고, 개찰 시 입찰서가 공고 및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준수하며, 참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공급자가 제출하는 것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6. 조달기관이 낙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달기관은,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조달기관이 판단한 공급자로서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기준에만 근거하여 다음을 제출한 자에게 낙찰한다.

가. 가장 유리한 입찰서, 또는

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최저가 입찰서

7. 조달기관이 제출된 그 밖의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해당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및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다.

8. 조달기관은 이 장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약을 해지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 14.13 조 낙찰 후 정보

1.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낙찰 결정을 신속히 통지한다. 조달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되지 아니한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해당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아니한 이유 및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을 제공한다.

2. 조달기관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각 계약의 낙찰 후 72일 이내에 부속서 14-가 제11절에 열거된 적절한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공고를 공표한다. 그 조달기관이 그 공고를 전자적 수단으로만 공표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공고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나.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다. 낙찰자의 이름 및 주소

라. 낙찰금액

마. 낙찰일 또는 계약일, 그리고

바. 사용된 조달방법의 종류 및 제14.10조에 따라 제한입찰이 이용된 경우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3. 각 조달기관은 계약 낙찰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다음을 보존한다.

가. 제14.1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입찰 절차 및 낙찰의 서류와 보고서, 그리고

나.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적용대상조달 행위의 적절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제 14.14 조 국내 심의 절차

1. 각 당사국은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에 있어 발생하는 다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를 제공한다.

가. 이 장의 위반, 또는

나. 공급자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이 장의 위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지 아니하는 경우,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국 조치의 준수 실패

2. 공급자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었던 적용대상조달에 있어 발생하는 제1항에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는 공급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조달을 수행하는 조달기관의 당사국은 조달기관과 공급자가 협의를 통해 이의제기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장려한다. 그 조달기관은 해당 공급자의 진행 중인 또는 향후의 조달 참가, 또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상 시정 조치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이의제기를 공평하고 시의적절하게 검토한다.

3. 각 공급자는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부여받으며, 이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이의제기의 근거가 알려지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알려졌어야 했던 때부터 10일 이상이다.

4.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한 당사국의 법에 따라, 당사국의 공급자가 제출하는 이의제기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기 위해 자국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 하나의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을 유지한다.

5. 제4항에 언급된 당국 이외의 기구가 이의 신청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 당사국은 공급자가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조달을 집행한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최초 결정을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법원이 아닌 심사기구의 결정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가. 조달기관은 이의제기에 서면으로 응답하고 심사기구에 모든 관련 서류를 공개한다.

나. 심사절차 참가자(이하 “참가자” 라 한다)는 이의제기에 관한 심사기구의 결정 전에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다. 참가자는 대표되고 동반될 권리를 갖는다.

라. 참가자는 모든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

마. 참가자는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바. 공급자 이의제기에 관한 심사기구의 결정 또는 권고는 각 결정 또는 권고의 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시의적절하게 제공된다.

7.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공급자의 기회를 보존하는 신속한 잠정조치. 그러한 잠정조치는 조달 절차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을 포함하여 관련 이해에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나. 심사기구가 제1항에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입찰 준비 비용 또는 이의제기와 관련된 비용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로 제한될 수 있는,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정정 행위 또는 보상

적용범위의 정정 및 수정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에 대해 순수하게 형식적인 성질의 정정 또는 부속서 14-가의 양허표에 사소한 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쪽 당사국이 통보의 접수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한 수정 또는 사소한 정정을 하는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를 달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 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전에 존재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수용 가능한 보상조정을 동시에 제안한다. 그리고
 - 나. 다른 쪽 당사국은 통보의 접수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국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제거한 조달기관을 수정제안의 대상으로 한다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한쪽 당사국은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당사국이 그러한 정부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주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국은 정부 통제 또는 영향력의 성질을 명료하게 하고 이 장에 따른 조달기관의 지속된 적용범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정보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4.16 조 미소 및 중소기업의 참여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미소 및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입찰 절차에 공동 참여를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급자 간, 특히 미소 및 중소기업 간 사업 협력의 중요성 또한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그리고 중소기업의 특수한 필요성에 집중하여 정부조달 절차, 방법 및 계약요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14.17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각자의 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더불어

각자의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규제 틀, 우수 관행 및 통계와 같은 경험 및 정보의 교환

나. 정부조달제도에 있어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개발 및 이용

다.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대해 공급자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그리고

라. 공무원 연수를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강화

제 14.18 조 정부조달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조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적용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평가하고, 양 당사국에게 적절한 활동을 권고한다.

나. 협력활동을 조정한다.

다. 양 당사국이 제시하는 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그리고

라.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교섭을 고려한다.

3. 위원회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따라 회합한다. 회합은 필요에 따라 전화,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다른 수단을 통해 개최될 수 있다.

제 14.19 조 추가 교섭

이 협정 발효 후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합의된 자신의 정부조달 시장접근 적용범위에 대해 비당사국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섭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 14.2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규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란 비정부적 목적을 위해 비정부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상업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한 청약의 대상이 되고, 비정부 구매자에 의해 관례적으로 구매되는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참가조건이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모든 등록, 자격심사 또는 그 밖의 선행조건을 말한다.

전자 경매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 기준과 관련된 계량화가 가능한 입찰의 비가격 요소에 대한 새로운 가액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공급자가 제시하기 위해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수반하고, 그 결과로 입찰 순위 또는 순위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복적 과정을 말한다.

서면으로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며, 그리고 사후에 통지 가능한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이는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들에게 접촉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조치란 모든 법, 규정, 절차, 행정 지침이나 관행, 또는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조달기관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유자격자 명부란 조달기관이 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결정하여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공급자들의 명부를 말한다.

예정된 조달의 공고란 조달기관이 관심있는 공급자에게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공표하는 공고를 말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부품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입찰이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조달기관이란 당사국의 부속서 14-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

적격 공급자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만족한다고 인정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선택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적격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권유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란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표준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아니한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다룰 수 있다.

공급자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 또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가.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기술한 것, 또는

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

부속서 14-가

제 1 절 중앙정부기관

상품

기준가: 70,000 특별인출권(이하 "SDR"이라 한다)

서비스

기준가: 70,000 SDR

건설서비스

기준가: 5,000,000 SDR

콜롬비아 양허표

1. 대통령실
2. 내무부
3. 법무부
4. 외교부
5. 재무부
6. 국방부(주해2)
7. 농업농촌개발부(주해3)
8. 보건사회보장부(주해4)
9. 광물에너지부(주해5)
10. 상공관광부
11. 교육부
12. 환경지속가능개발부
13. 정보통신부
14. 교통부(주해6)
15. 문화부
16. 주택도시국토부
17. 노동부
18. 국가기획처

19. 국가정보처
20. 인사행정처
21. 통계청
22. 연대경제처
23. 과학기술혁신처
24. 감사원
25. 체육청
26. 국가회계감사원
27. 공직감찰원
28. 감찰원

콜롬비아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모든 부와 행정부처에 적용된다. 여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이 절에 열거된 기관들의 “감독원”, “특별행정청” 및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2. 국방부: 이 장은 합동군사령부, 육군, 해군, 공군 및 경찰청의 유엔 중앙상품분류(이하 “CPC”라 한다) 1.0버전 제2절(식료품·음료 및 담배, 섬유·의류 및 가죽제품)에 분류된 상품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농업농촌개발부: 이 장은 농업 지원 프로그램 및 식량 원조와 관련된 식량, 농업 원료 또는 투입요소 및 산 동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보건사회보장부: 이 장은 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콜롬비아 가족복지공사의 CPC 1.0버전 제2절(식료품·음료 및 담배, 섬유·의류 및 가죽제품)에 분류된 상품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광물에너지부: 이 장은 콜롬비아 지질국의 핵 물질 및 핵 기술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교통부: 이 장은 민간항공청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국 양허표

1. 감사원
2. 국무총리실

3. 여성가족부
4. 기획재정부
5. 금융위원회
6. 통일부
7. 행정안전부
8. 교육과학기술부
9. 법제처
10. 국가보훈처
11. 외교통상부
12. 법무부
13. 국방부(주해3)
14. 문화체육관광부
15. 문화재청
16. 농림수산식품부
17. 지식경제부
18. 보건복지부
19. 식품의약품안전청
20. 고용노동부
21. 국토해양부
22. 환경부
23. 조달청(주해4)
24. 국세청
25. 관세청
26. 통계청
27. 기상청
28. 경찰청(주해5)
29. 대검찰청
30. 병무청
31. 농촌진흥청
32. 산림청
33. 특허청
34. 중소기업청
35. 해양경찰청(주해5)
36. 소방방재청
37. 방위사업청(주해3)
38. 방송통신위원회
39. 공정거래위원회
40. 국가인권위원회
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상기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그들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2. 이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대통령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과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21.2조(필수적 안보)에 따른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구매에 대해서, 이 장은 다음의 군급번호 분류품목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제5절 및 제6절에 열거된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이다.

군급번호 2510	차량의 운전실, 차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군급번호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군급번호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군급번호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군급번호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군급번호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군급번호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 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군급번호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 부수품
군급번호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군급번호 3416	선반
군급번호 3417	절삭기
군급번호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군급번호 4110	냉장장비
군급번호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군급번호 4520	공간 난방장치 및 가정용 온수기
군급번호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군급번호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수공구
군급번호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군급번호 5530	합판 및 단판
군급번호 5660	울타리재료, 울타리 및 문
군급번호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군급번호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군급번호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군급번호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
군급번호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군급번호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군급번호 6840	살충소독제

군급번호 6850	각종 특수화학물
군급번호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군급번호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군급번호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군급번호 7350	식탁용 식기
군급번호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군급번호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군급번호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군급번호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군급번호 8110	드럼 및 깡통
군급번호 9150	기름 및 윤활유: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군급번호 9310	종이와 판지

4. 조달청: 이 장은 이 절에 열거된 조달기관을 위해 조달청에 의해 수행되는 조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2절 및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을 위한 조달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가가 적용된다.

5.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이 장은 이 장의 제14.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지방정부기관

상품

기준가: 200,000 SDR

서비스

기준가: 200,000 SDR

건설서비스

기준가: 15,000,000 SDR

콜롬비아 양허표

1. 아마조나스 주정부
2. 안티오키아 주정부
3. 아라우카 주정부
4. 아틀란티코 주정부
5. 볼리바르 주정부
6. 보야카 주정부
7. 칼다스 주정부
8. 카케타 주정부
9. 카사나레 주정부
10. 카우카 주정부
11. 세사르 주정부
12. 초코 주정부
13. 코르도바 주정부
14. 쿤디나마르카 주정부
15. 파이니아 주정부
16. 과비아레 주정부
17. 우일라 주정부
18. 라 과히라 주정부
19. 막달레나 주정부
20. 메타 주정부
21. 나리뇨 주정부
22. 노르테 데 산탄데르 주정부
23. 푸투마요 주정부
24. 킨디오 주정부
25. 리사랄다 주정부
26. 산안드레스 이 프로비덴시아 주정부
27. 산탄데르 주정부

28. 수크레 주정부
29. 톨리마 주정부
30. 바예 델 카우카 주정부
31. 바우페스 주정부
32. 비차다 주정부

콜롬비아 양허표에 대한 주해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농업 지원 프로그램 및 식량 원조와 관련된 식량, 농산물 원재료/투입요소와 산 동물의 조달, 그리고
- 나. 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CPC 1.0버전 제2절(식료품·음료 및 담배, 섬유·의류 및 가죽제품)에 분류된 상품의 조달

한국 양허표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경기도
8. 강원도
9. 충청북도
10. 충청남도
11. 경상북도
12. 경상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제주특별자치도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상기 지방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절은 「지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대통령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과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그 밖의 적용대상기관

상품

기준가: 400,000 SDR

서비스

기준가: 400,000 SDR

이 절에 따른 서비스 적용범위¹는 개정된 정부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이하 “GPA” 라 한다)이 한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에 양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개정 GPA의 부록 I에 대한 한국 부속서 3의 주해 2와 3은 이 절의 한국 양허표에 열거된 조달기관에 의해 조달되는 서비스에 신속하게 적용된다.

건설서비스

기준가: 15,000,000 SDR

콜롬비아 양허표

1. 국방군수청(주해 1)
2. 국립경찰기금(주해 1)
3. 군인주택청
4. 국립관세청
5. 콜롬비아고등교육진흥청
6. 국립교도소
7. 교도행정관리청
8. 국립직업훈련원

콜롬비아 양허표에 대한 주해

국방군수청과 국립경찰기금: 이 장은 합동군사령부, 육군, 해군, 공군 및 경찰청에 열거된 기관의 CPC 1.0 버전 제2절(식료품·음료 및 담배, 섬유·의류 및 가죽제품)에 분류된 상품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국 양허표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절의 서비스의 기준가는 개정 GPA가 한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에 양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질 것이다.

1. 한국산업은행
2. 기업은행
3. 한국조폐공사
4. 한국전력공사(HS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 범주에 해당되는
 상품의 구매는 제외)
5. 대한석탄공사
6. 대한광물자원공사
7. 한국석유공사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한국도로공사
10. 한국수자원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
12.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한국관광공사
14. 근로복지공단
15. 한국가스공사
16. 한국철도공사
17.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이 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과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 절 상품

각 절에 대한 주해 및 제7절의 일반 주해를 조건으로, 이 장은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열거된 기관에 의해 조달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제 5 절 서비스

콜롬비아 양허표

이 장은 각 절에 대한 주해 및 제7절의 일반 주해를 조건으로, CPC 1.0버전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다음의 서비스를 제외하고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열거된 기관에 의해 조달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CPC 1.0버전의 전체 목록에 대해서는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t.asp? C1=3](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t.asp?C1=3)을 참조할 것)

1. 연구개발 서비스

대분류 81 연구개발 서비스
중분류 835 과학 및 그 밖의 기술 서비스
소분류 8596 데이터 처리 서비스(단, 과학 및 기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에만 해당한다)
소분류 8597 무역박람회 및 전시조직 서비스(단, 과학 및 기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에만 해당한다)

2. 공익사업

대분류 69 전기공급서비스, 본관을 통한 가스 및 수도공급서비스
대분류 94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기타 환경보호서비스
기본 통신 서비스(부가통신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사회서비스

대분류 91 행정 및 일반 공중을 위한 기타 서비스, 강제적 사회보장서비스
대분류 92 교육 서비스
중분류 931 보건의료 서비스

4.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세분류 96121 영화, 비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서비스

한국 양허표

이 장의 목적상, 그리고 제14.1조를 저해함이 없이, 제1절 및 제2절의 서비스의 경우, 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는 MTN.GNS/W/120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일반 목록의 어떠한 서비스도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3절의 서비스의 경우, 개정 GPA에 열거된 서비스는 포함된다(그 밖의 서비스는 배제된다).

제 6 절 건설서비스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열거된 조달기관에 의해 조달되는 잠정 CPC 51에 분류된 모든 건설서비스 조달에 적용된다.

제 7 절 일반 주해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 양허표의 다음 일반 주해는 이 부속서의 모든 절을 포함하여 이 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콜롬비아 양허표

1.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비밀보장이 요구되는 국방 분야 및 국가정보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

나. 미소 및 중소 기업을 위한 130,000 SDR 미만 조달 할당분. 할당분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타적인 권리 및 기술이전과 하청계약 촉진에 이바지하는 조치와 같은 모든 형태의 특혜를 포함한다.

다. 폭력으로 인해 거처를 상실한 인을 구호하고 분쟁지역에 거주하는 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화 협상의 결과로서 시민 생활에 재통합하는 프로그램과 무력 충돌의 해결에서 기인한 일반 프로그램에 따른 조달

라. 콜롬비아 외교단의 활동 및 관리만을 위한 외교공관의 조달, 그리고

마. 연구개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품의 취득

2. 이 장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조달기관은 도로 및 고속도로의 건설, 유지 또는 재건을 위한 건설 서비스의 조달에서 시골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러한 지역에서 현지인의 채용과 관련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 양허표

1.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 절
제14.14조의 목적상 콜롬비아 당국

콜롬비아의 경우, 고등행정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이 제14.14조제4항의 목적상 공정한 당국이다. 이러한 공정한 당국은 제14.14조제7항에 언급된 잠정 조치를 제공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직감찰원에 이용가능한 구제가 그 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공직감찰원은 조달을 담당하는 정부요원에 대하여 제기된 징계절차 과정에서 입찰절차 및 낙찰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독립기관이다.

제 9 절 비적용대상 기관

2007년 법률 제1150호에 따라, 콜롬비아는 다음에 열거된 각 콜롬비아 기관이 상업적 고려에 따라 투명한 방식으로 조달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한국 공급자에게 조달의 조건, 요건, 절차 및 낙찰 규칙을 포함한 조달의 모든 측면에 관하여 국내 및 그 밖의 해외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최소한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목록

1. 에너지가스 규제위원회
2. 광업에너지기획단
3. 통신사회보장기금관리공단
4. 국립사회보장기금관리공단
5. 복권관리공단
6. 국립인쇄공사
7. 방위산업공사
8. 사회보장공단
9. 콜롬비아방송공사
10. 국영항공운수공사
11. 콜롬비아 석유공사
12. ISA
13. ISAGEN

제 10 절 기준가 조정 공식

1. 각 당사국은 국제통화기금이 월별 “국제금융통계”에 공표하는 환산 비율을 사용하여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가액을 자국 통화로 계산하여 환산한다.
2. 환산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원의 기준가가 유효하게 되기 전 해의 10월 1일 또는 11월 1일부터 역산한 2년 동안의 SDR에 대한 한국 원의 일일 가치 평균, 그리고
 - 나. 콜롬비아의 경우, 콜롬비아 페소의 기준가가 유효하게 되기 전 해의 10월 1일 또는 11월 1일부터 역산한 2년 동안의 SDR에 대한 콜롬비아 페소의 일일 가치 평균
3. 당사국은 자국 통화의 기준가액을 다음과 같이 버릴 수 있다.
 - 가. 한국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는 일백만원 아래, 그리고 건설서비스는 일천만원 아래, 그리고
 - 나. 콜롬비아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는 일백만 콜롬비아 페소 아래, 그리고 건설서비스는 일천만 콜롬비아 페소 아래
4. 자국의 통화로 표시된 기준가액은 역년으로 2년 동안 고정된다.
5. 각 당사국은 기준가액의 자국 통화 환산액을 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그리고 이후에 새롭게 계산된 기준가액을 적시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6. 양 당사국은 SDR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주요한 변화가 이 장의 적용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협의한다.

제 11 절
공표수단

한국의 경우,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된다.

법령 및 법제: www.pps.go.kr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달기회: www.koneps.go.kr

건설 · 운영 · 이전 방식 계약에 대한 조달 기회: www.pimac.org

콜롬비아의 경우,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된다.

법령 및 조달 기회: www.contratos.gov.co

제 15 장 지식재산권

제 15.1 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무역과 투자로부터 이익을 증대하는 것
- 나. 혁신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것
- 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과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 라. 사회적 및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기술 이전과 전파 및 권리자의 권리와 공익 간의 균형에 기여하는 것

제 15.2 조 국제의무의 준수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뿐 아니라 양 당사국 간 유효한 그 밖의 모든 지식재산 관련 다자 협정 및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라 한다)가 관장하는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제 15.3 조 더 광범위한 보호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15.4 조 기본원칙

1.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그러한 권리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2.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식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¹ 및 향유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²에게 부여한다.

제 15.5 조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권리자의 권리와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WT/MIN(01)/DEC/2) 및 2003년 8월 30일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제6항의 이행」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결정에서 수립된 원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2008년 5월 24일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공중보건, 혁신 및 지식재산에 관한 세계 전략 및 실천방안」 WHA 61.21의 이행과 완전한 이용의 촉진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데 있어, 공중보건 및 영양을 보호하고 자국 사회 경제 및 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고 예외와 융통성을 이용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문학 및 예술작품, 예술 공연, 음반제작 및 방송의 사용에 대한 정보 및 통신기술의 영향을 인정하고,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충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5. 양 당사국은 권리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남용 또는 무역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기술의 국제적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행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양 당사국은 기술이전이 건전하고 실행가능한 기술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7.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소진에 대한 자국의 제도를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다.

¹ 제2항의 목적상, **보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구체적으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이용가능성·취득·범위·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2) 제15.7조에 규정된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 금지, 그리고 (3) 제15.7조에 규정된 권리관리정보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에 관한 권리 및 의무

² 제 2 항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민**은 관련 권리에 대하여 제 15.7 조제 1 항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열거된 합의사항에 규정된 그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게 될 당사국의 [제 1.3 조(정의)에서 정의된] 모든 인을 포함한다.

제 15.6 조 상표

상표 보호

1.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조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한다.³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표권의 예외

4.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명 상표

5.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표장이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표장이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가. 등록

나. 유명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다. 표장의 유명성에 대한 사전 인식

6.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 (1967)(파리협약) 제6조의2는, 등록

³ 당사국은 도표로 표시될 수 있는 표지의 충분한 기술을 요구할 수 있다.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⁴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7.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상표의 등록 및 출원

8.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출원인은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9. 각 당사국은 또한 상표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한다.

10. 각 당사국은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11.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사법 및 행정 수단

12. 각 당사국은 소유자가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해당사자가 상표에 대한 그러한 권리에 행정적 또는 사법적 수단, 또는 두 수단 모두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규정한다.

제 15.7 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부여되는 보호

⁴ 표장이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의 명성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분야의 일반공중의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할 수 없다.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71) (베른협약)

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1961)
(로마협약)

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1996), 그리고

라.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 조약」 (1996)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

2. 각 당사국은 자국법령에 따라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용에 대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집중관리단체

3. 양 당사국은 집중관리단체에 위임된 권리의 효과적인 관리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에 비례하여 징수된 보상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투명성과 우수 관리 관행의 맥락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⁵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다. 고정물의 복제, 그리고

⁵ 방송의 보호에 대하여,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의 본사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위치해 있고 그 방송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한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경우에만 방송을 보호할 수 있다.

라.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그 당사국의 법에 대한 사안이다.

기술조치의 보호

5.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인이 행하는 자신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에 관하여 허락되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소지하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수행되는 것

7. 이 장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각 당사국의 법령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기술조치는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이,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암호화, 스크램블링이나 그 밖의 변형과 같은 접근통제나 보호절차, 또는 복제통제 메커니즘의 적용을 통하여 권리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경우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8.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령과 자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제5항과 제6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9.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모든 인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 권한 없이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이 장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당사국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이 장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장에 언급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 실연이나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11. 제10항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이 장에 언급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의 보호

12. 각 당사국은 다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유형 또는 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 조립, 변경, 수입, 수출, 판매, 리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 그리고

나. 암호화된 위성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⁶ 하거나 재배포하는 것

제 15.8 조 집행

일반적 의무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수신⁶이 사적 또는 상업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호를 시청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할 수 있다.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에 규정된 것과 같은 수준의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자국법에 제정한다.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추정

2.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인터넷 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특별 조치

3. 각 당사국은 인터넷 상에서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 15.9 조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⁷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반출되어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있는 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이 상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국은 탁송인, 수입업자 및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및 해당 물품의 수량을 권리자에게 알릴 권한을 권한있는 당국에 부여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수입, 수출 또는 통과중인 물품에 대해서 사인(私人)이나 권리자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의 필요 없이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물품이 위조 또는 불법

⁷ 제 15.9 조의 목적상,

가. **위조된 상표 상품**이란 포장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구별되지 아니하는 상표를 허락 없이 부착하여, 수입국의 법에 따른 해당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나.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이란 권리자 또는 제작 국가에서 권리자가 정당하게 허락한 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복제물로서, 그 복제가 수입국 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구성하였을 물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모든 상품을 말한다.

복제되었다고 믿거나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제 15.10 조 기술이전 및 협력

기술이전

1. 양 당사국은 기술 개발자와 이용자의 상호이익을 위해 기술이전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의 보급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과학, 기술 및 혁신에서의 협력을 통해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양 당사국은 연구, 혁신 및 기술이전에 대한 협력 활동을 장려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에 서명된, 양 당사국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개발된 협력 사안과 활동을 고려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각의 영역 내에서와 제3국과의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관행 및 정책에 관하여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이는 특히 정보의 흐름, 사업 합작, 이용허락 및 하도급 계약을 촉진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특히 인적 자본 및 법적 체계의 개발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유치국에서 기술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3.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국가 간 기술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권리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구성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라이선싱 관행 또는 조건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협력

4. 양 당사국은 각자의 법령, 규칙, 규정 및 정부정책을 조건으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의 방지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조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 간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정보 교환

나.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 및 자국민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제도의 기능에 관한 대중의 인식 장려

다. 지식재산 보호 제도와 그 제도 운영 향상, 또는

라. 집행기관, 교육기관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이해가 있는 그 밖의 기관을 포함하여 각각의 기관 간 접촉 및 협력의 개발 증진

5. 한쪽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협력 제안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 16 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 16.1 조 배경과 목적

1. 양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 목적이 양 당사국의 무역관계의 모든 수준에 통합되고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양 당사국은 경제발전,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강화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지구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무역 관련 사회 및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한다.
3.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환경이나 노동의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이 장에서의 그들의 의도가 아니며, 제1항과 제2항의 문맥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무역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임을 인정한다.
4.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 가. 각 당사국의 환경 및 노동 법령의 준수 및 효과적 이행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인정한다.
 - 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존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 다. 제16.6조에 포함된 노동 원칙과 권리에 대한 약속을 인정한다.

제 16.2 조 적용범위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제16.1조제1항 및 제16.1조제2항의 문맥상 환경 및 노동¹ 문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양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 적용된다.

¹ 노동이 이 장에서 언급될 때에는 국제노동기구 및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년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각료선언」에서 합의한 「양질의 일자리 의제」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제 1 절 환경

제 16.3 조 일반 원칙

1.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 및 일반적인 모든 천연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과 무역 정책이 상호 지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천연 자원에 대한 상대국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고, 자국의 환경 보호 수준과 환경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자의 주권적 권리를 재차 표명한다.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역량을 염두에 두고, 이 장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제 16.4 조 구체적 약속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와 자국의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사안에 대한 자국의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및 정책이 자국이 당사국인 다자 간 환경협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합치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증진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그러한 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는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및 정책을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양 당사국 간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또는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4.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법령이 공정하고 투명한 대중 참여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따라서 양 당사국은 그러한 목표를 위해 자국 법령에 따라 환경 사업, 정책 및 프로그램을 설계, 이행 및 평가하는 전 과정에 걸쳐

대중의 참여를 증진할 것이다.

제 16.5 조 생물다양성

1.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그리고 유전자원, 전통지식²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각료 선언(WT/MIN/(01)DEC/1) 제19항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 전통지식, 그리고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혁신 및 관행이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바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한다.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며, 각 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투명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자국 법령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을 보유한 자의 참여와 승인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증진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관련 정보를 담고 있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나. 적절한 심사기관에 서면으로 선행기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5.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 간 위원회, 세계무역기구 지식재산권이사회 및 그 밖의 모든 적절한 포럼에서의 논의에 대한 견해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다.

6.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을 인정하고, 다자 협정 또는 자국 법령의 향후 발전에 따라 유전자원에 관한 관련 사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전통지식”은 유전 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지식을 말한다.

제 2 절 노동

제 16.6 조 일반 원칙

양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자국의 의무와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이하 “국제노동기구선언”이라 한다)와 관련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관행에서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기술된 대로 다음의 권리를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 나. 모든 형태의 강요에 의한 또는 강제적 노동의 철폐
- 다.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 라.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제 16.7 조 구체적 약속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 법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노동법 및 정책을 채택하고 수정할 수 있는 상대국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 법령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자국의 노동 법령 및 국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국의 노동법과 규정을 제정, 운영 및 집행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된다.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 법령에서 부여된 보호 수준을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증진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제 3 절 일반 규정

제 16.8 조 1390

법의 집행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환경 및/또는 노동 법령의 집행을 지향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6.9 조 절차적 보장

1.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자국의 환경법 및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재판소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행정, 준사법, 사법 또는 그 밖의 관련 재판소를 포함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 및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그러한 재판소의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들이 자국법상 자신의 권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16.10 조 투명성

양 당사국은, 각자의 법에 따라, 적절한 공지 및 공공 협의, 그리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와의 적절하고 적시적인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 도입 및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 16.11 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1. 양 당사국은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설치한다.
2.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는 환경 및 노동 사안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협의회가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환경 및 노동 사안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은 협의될 문제를 고려하여 별도의 협의회 회의에서 회합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하여 공동의 관심 사항을 논의한다.
4. 협의회는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어떠한 다른 문제도 고려할 수 있고, 가능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할 수 있으며,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임무상의 어떠한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다.

5. 협의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첫 번째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되는 적절한 기간 내에 이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달성된 진전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과 효과성을 검토한다. 그 후, 협의회는 그러한 검토를 위한 새로운 기간을 설정할 것이다.

6. 양 당사국은 양측 간 대화 및 협의 절차가 소진될 때까지 이 장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6.12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전달할 접촉선³을 관련 부처에 지정한다.

2. 접촉선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가. 협력 프로그램 및 그 밖의 활동의 조율

나. 양 당사국 간의 연락 담당

다. 다른 쪽 당사국,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일반 대중에 정보 제공, 그리고

라. 양 당사국 또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임무

제 16.13 조 협의를

1. 이 장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도 양 당사국 간 직접적인 대화, 협의 및 협력을 통하여 우호적이고 신의성실하게 해결된다.

2. 한쪽 당사국은 제16.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이 자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그러한 문제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제 4 절

³ 접촉선은 환경 및 노동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관련 정부 부처가 된다.

협력

제 16.14 조 협력

1. 환경 및 노동 사안에 대한 준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부속서 16-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호 관심 있는 협력 활동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협력 활동이 다음과 같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가. 각 당사국의 프로그램, 개발 전략 및 국가적 우선순위와 합치할 것
 - 나. 그러한 활동의 개발과 이행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 그리고
 - 다. 각 당사국의 경제, 문화 및 법적 체계를 고려할 것

부속서 16-가 협력

1. 이 장과 관련된 양 당사국 간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환경

- 가. 환경 규정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나. 국제 기후변화체제의 무역 관련 측면
- 다. 무역 관련 환경 문제, 그리고
- 라. 생물다양성의 무역 관련 측면

노동

- 가. 노사 관계
- 나. 근로 조건
- 다.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
- 라. 직업 훈련 및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 마. 노동시장 통계

2.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환경

- 가.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측면을 담당하는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특히, 세계무역기구,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다자 간 환경협정을 포함한다.
- 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침의 효과적 이행과 후속조치, 공정하고 윤리적인 무역, 에코 라벨부착을 포함한 민간과 공공의 인증 및 라벨부착제도 및

녹색 공공조달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책무에 관한 정보 교환과 공동 작업

다.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의 교환

라. 세관 협력을 포함하여 다자 간 환경협정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공동 작업, 그리고

마. 다자 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범 간의 관계, 그리고 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견해의 교환

노동

가. 정보교환, 특히 다른 쪽 당사국의 노동법과 정책, 노동시장 통계 및 우수 작업 관행에 관한 것

나. 공공 기관, 대학교, 민간 기업 및 노동 문제 전담 조직을 통한 공무원, 전문가, 기술자 및/또는 숙련자로 구성된 대표단 교환

다. 학회, 세미나, 워크샵, 회의 및 대외접촉활동 프로그램 및 훈련의 조직과 참여

라. 공동 연구 및 출판

마.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기술된 대로 작업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의 증진에 관한 활동

바. 노동 보호의 수준과 기준, 그리고 그러한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그리고

사. 이 장의 적절한 이행에 기여하는 다른 모든 활동

제 17 장 협력

제 17.1 조 적용범위 및 목적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 목표에 따라, 이 협정의 결과를 최적화하고 기회를 확대하며 양 당사국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이행 및 이용 제고에 기여하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른 형태의 양자 협력과 상승효과를 발생시킨다.
3.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을 목표로 하는 협력 이니셔티브에 특히 주목하기로 합의한다.

가. 생산적 상승효과를 제고하는 것, 무역 및 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경쟁력 및 혁신을 증진하는 것

나. 중소기업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

다. 이 협정의 이행과 이용 제고를 위한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라. 이 협정의 다른 장에서 확인된 협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제 17.2 조 방법 및 수단

1. 양 당사국 간 협력은 협력 관계의 수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기존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도구, 자원 및 메커니즘으로 이행될 것이다.
2. 특히, 양 당사국은 사업의 선별, 개발 및 이행을 위하여 정보,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교환, 기술 지원 그리고 특히 3자 간 협력을 포함하는 상환·비상환 재정적 협력과 같은 수단 및 세부원칙을 이용할 수 있다.

제 17.3 조 농업 협력

양 당사국은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특히

가. 플랜테이션 작물에 관한 농업연구를 비롯하여, 특히 소규모 농업 개발, 농업용 수자원의 보존 및 관리,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및 우수농업관행의 적용 등을 포함하는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의 구축을 증진한다.

나. 양 당사국 간 농산물 교역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 그리고

다. 축산물 및 농업 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선도 생산자, 기술자 및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제 17.4 조 수산업 및 양식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어류와 수산물의 사회적 및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수산업 및 양식업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인간의 직접 소비를 증대할 목적으로 종자의 개발 및 수생생물 어업 및 양식 종의 가공을 위한 연구 및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나. 책임 있는 어업이라는 접근 방식에 따라 정보교환 및 천연자원의 보전을 촉진하는 것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해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

가. 수산업 및 양식업 개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을 강화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는 것

나. 식량안보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수산 및 양식 자원의 소비와 더불어 인간의 직접 소비를 위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증진하는 것

다. 불법·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을 방지하는 것

라. 양식업 분야에서 호혜적 개발을 촉진하는 것

마. 수산업, 양식업 및 어업 자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 목적상, 양 당사국의 해당 기관은 적절한 접촉선을 설치할 것이다.

- 바. 수산협력약정¹을 통해,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양 당사국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최적화된 활용을 증진하는 것
- 사. 양 당사국 간 수산업 및 양식업 개발 증진을 위해 공무원, 과학자, 기술자 및 연수생을 교환하는 것
- 아. 공동으로 조직된 과정, 방문, 세미나 및 워크숍에의 참여를 통해 양 당사국의 국가공무원과 수산업 및 양식업계 구성원의 훈련을 증진하는 것
- 자. 양 당사국의 연구기관 간 파트너십 및 교류 구축, 그리고
- 차.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 17.5 조 임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임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활동에서의 협력을 적절하게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 가. 관련 지표의 개발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이행
 - 나. 산림자원의 관리·개발 및 이용
 - 다. 산불 및 병충해 방지 및 통제를 포함한 산림보호
 - 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제한 또는 감소하기 위한 공동조치 증진
 - 마. 조림 및 목재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
 - 바. 임산물의 가공과 공급 및 무역
 - 사. 친환경임업 기술 개발 및 산림 생태계 보전
 - 아. 연구·개발, 교육 및 훈련, 그리고
 - 자.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¹ 수산협력약정은 특히, 수산자원, 수생생물종 및 양식업 분야에서의 양 당사국의 무역원활화 및 연구 증진에 관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7.6 조 해상 운송 협력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해상 운송에 있어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가. 해상 운송, 항만 기술 및 물류 서비스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선의 설치
- 나. 항만 운영·관리 및 항만 기술과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과 기술적 협력 마련
- 다. 상선 학생들의 훈련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 라. 해상교통관리 서비스를 포함하여, 해상 운송과 관련된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활동 마련

제 17.7 조 정보 및 통신기술 협력

1. 양 당사국은, 국내적 및 국제적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라 한다) 및 ICT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업 관행이 민간 부문의 주도로 급속히 발전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이 ICT 이용의 혜택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해 ICT 및 ICT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정책 사안에 대한 대화 증진
- 나. 양 당사국의 민간 부문 간 협력 증진
- 다. ICT 관련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제고, 그리고
- 라. 그 밖의 적절한 협력활동의 수행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 가. 전자정부에 관한 사이버 기반시설 및 정책 사안
- 나. 공개 키 기반 구조의 상호 운용성

- 다.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처리, 관리, 유통 및 무역
- 라. 양 당사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과학·기술 협력
- 마. 정보기술단지의 연구·개발 및 관리
- 바.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정보기술 서비스의 연구·개발
- 사. 양 당사국이 그 활동의 필요성에 합의하는 경우, 네트워크와 통신의 연구·개발 및 배치
- 아. 국제시장에서의 사업 기회
- 자.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그리고
- 차.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제 17.8 조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

1.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에서의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2.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원유와 가스의 탐사, 채굴 및 생산과 같은 상류부분 활동
- 나. 원유 정제, 석유화학 공정, 가스의 액화 그리고 가스·원유 및 석유 제품의 운송 및 유통과 같은 하류부분 활동
- 다. 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생산, 제련, 정제, 가공, 운송 및 유통과 같은 활동
- 라. 광업 활동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 영역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측량, 채굴, 환경 및 지질학적 활동에 적용되는 지도 제작 활동(측지학, 위성사진, 원격 감지 및 지리정보 시스템)
- 마. 광업 관련 환경적 책임의 복원을 위한 광업 기술의 교환
- 바. 광업에 있어서 환경적 문제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

사. 양 당사국 간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력에 대한 사업 관계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3.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에서 다음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공개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

가. 국내 및 외국 기업을 위한 투자 현황 자료

나. 입찰 및 채굴사업과 같은 투자 기회

다. 지질 자료/정보

라. 관련 법, 규정 및 정책

마. 광해방지기술 및 광산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와 지역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 그리고

바.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이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정보

4. 각 당사국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 대한 자국의 법과 규정이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5. 1994년도 GATT 제11조와 제20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수출이나 판매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은

가. 금지 또는 제한의 도입에 앞서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통보를 하는 동시에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6. 양 당사국은

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에 관여하는 자국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업을 통해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증진한다.

나.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양자관계를 위해, 각 당사국의 규정을 인정하며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에서의 투자를 포함해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사업 기회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다. 협정 및 이미 조직된 협력체와 관련된 활동을 인정하고 촉진한다.

7. 양 당사국은 연구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방문 및 교류를 촉진하며 공동 포럼, 세미나, 학술 토론회, 학회, 전시회 및 연구 사업을 증진한다.

제 17.9 조 중소기업 협력

양 당사국은 관련 민간 및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협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가. 파트너십을 조성하고 생산망을 개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고안하고 개발하는 것

나. 상호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무역, 투자 및 중소기업의 가능한 최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양 당사국의 경제 주체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다. 의무적 절차, 무역 진흥 네트워크에의 향상된 접근, 비즈니스 포럼, 사업 협력 수단에 대한 정보 및 중소기업 수출자를 위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의 교환 및 대화를 촉진하는 것

라.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수출자를 위한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증진하는 것

마. 중소기업에 특히 초점을 둔 기업의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 및 정책 수단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공기관 간 경험의 교환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바. 환경 관리, ICT,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생가능 에너지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대상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

제 17.10 조 산업 및 상업 협력

양 당사국은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산업 협력 공동 위원회*를 통해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무역, 투자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가.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 나. 화장품 및 세면용품
- 다. 섬유, 의류, 디자인 및 패션
- 라. 전기, 그리고 관련 상품 및 서비스
- 마.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 바. 의료 관광, 그리고
- 사. 가전 제품

제 17.11 조 과학·기술 협력

1. 양 당사국은, 양국 각각의 경제에서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활동에서의 협력을 적절하게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가. 필요한 경우, 설비 공유, 비밀이 아닌 과학·기술자료의 교환 및 제공, 그리고 가능한 경우 과학 표본의 교환을 포함하는 공동 연구·개발 및 고등교육

나.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다. 해당 활동에 있어서의 전문가 참여를 포함해, 세미나, 학술토론회, 학회 및 그 밖의 과학·기술 관련 회의의 공동 주최

라. 양 당사국이 그 활동의 필요성에 합의하는 경우, 기존의 국가 계획 또는 정책에 따른 공동 과학·기술 연구 활동의 증진

마. 과학·기술과 관련된 관행, 정책, 법, 규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바. 공동 과학·기술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화에 있어서의 협력,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과학·기술 협력

3.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첨단 과학

또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 가. 생명공학(생물정보학 포함)
- 나. 나노기술
- 다. 극소전자공학
- 라. 신소재
- 마. 전자정부
- 바. 제조기술
- 사. ICT
- 아. 환경기술, 그리고
- 자.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시스템

제 17.12 조 관광 협력

양 당사국은 관광이 그들 간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고 양국 경제를 위한 중요한 산업임을 인정하면서, 다음을 위해 노력한다.

- 가. 각 당사국으로의 입국 방문자 증가를 위해 관광 개발 및 증진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 모색
- 나. 양 당사국의 웹사이트 간 연결 및 네트워크 구축 고려
- 다. 양 당사국의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 및 기관이 관광 훈련 및 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
- 라.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 및 기관 간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해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관광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에 있어서의 협력
- 마. 양 당사국 영역에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 바. 관광 및 관련 분야에서의 관련 통계, 홍보자료, 정책 및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 교환, 그리고

사. 관광 및 교통 당국과 기관이 양 당사국 간 항공 연결을 개선하도록 장려

제 17.13 조 문화 협력

1. 문화 협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문화 협력을 위해 이미 발효중인 기존의 협정이나 약정을 존중한다.
2. 영화, 애니메이션 및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청각 공동제작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양 당사국 간 문화적·경제적 교류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시청각 분야의 공동제작협정을 고려하고 교섭하는 데 동의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공동제작협정은, 일단 체결되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될 것이다. 공동제작협정의 세부사항은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간 교섭될 것이며, 그것은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이며, 콜롬비아의 경우 *문화부(Ministerio de Cultura)*이다.
4. 제3항에 언급된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공동제작 사업은 각 당사국 영역에서 국내 제작물로 간주되며 따라서 각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정부지원을 포함한 모든 혜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5. 양 당사국은 양국 각각의 법령과 합치되게 그리고 이 협정의 그 밖의 장에서의 자국 약속에 포함된 유보를 저해함이 없이, 주변 환경 및 문화 경관을 포함한 문화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우수 관행의 교환을 장려한다.
6. 양 당사국은 양국 문화유산에 대한 불법거래를 확인하고, 원상태로 복원하며,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할 것을 약속한다.

제 17.14 조 협력의 확인·개발·후속 조치 및 점검 이니셔티브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상 혜택의 최적 집행 및 이용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이행되는 협력 활동의 후속 조치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2. 이 장의 이행을 위해 다음의 접촉선이 지정된다.

가. 한국의 경우, *외교통상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통상산업관광부(*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3. 접촉선은 다음을 담당한다.

가. 양 당사국이 제시하는 사업 제안의 접수와 전달

나. 사업 상황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

다. 사업의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에 통지

라. 무역과 관련된 협력 이니셔티브의 이행 경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임무

4. 접촉선은 정기적으로 이 장의 이행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간 조율기관으로서 활동한다.

제 18 장 투명성

제 18.1 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관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모든 그러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제 18.2 조 통보 및 정보의 제공

1. 가능한 최대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 협정상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익에 달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제안된 혹은 현행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그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조치를 사전에 통보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현행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된 모든 통보 또는 정보는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 지 여부와 무관하다.

제 18.3 조 행정 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18.1조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보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그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그러한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다. 자국의 절차는 자국 법에 따를 것

제 18.4 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국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재심을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고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 18.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한 판정

제 19 장 제도 규정

제 19.1 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콜롬비아의 통상산업관광부 장관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나. 부속서 19-가에 언급된,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다. 양 당사국 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추구한다.

마. 이 협정의 적용 결과를 평가한다.

바. 이 협정의 추가적인 구체화를 감독한다. 그리고

사.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비정부 인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상 권리 및 의무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마.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바. 다음을 수정할 수 있다.

- 1) 당사국의 양허표에서 제외된 하나 이상의 상품을 추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속서 2-가(관세철폐)의 양허표
- 2) 관세 감축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관세 철폐 일정에 설정된 단계적 철폐 기간
- 3)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설정된 특정 원산지 규정
- 4) 부속서 14-가에 열거된 조달기관
- 5) 양 당사국이 발전시킬 수 있는 원산지 절차에 관한 모든 단일한 규정, 그리고
- 6) 패널에 대한 모범절차규칙,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한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제 19.2 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그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한다.

**부속서 19-가
위원회, 작업반 및 협의회**

1. 위원회

- 가. 상품무역위원회(제2.16조)
- 나. 관세위원회(제4.21조)
- 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제5.5조)
- 라. 무역기술장벽위원회(제6.9조)
- 마. 통신협력위원회(제11.16조), 그리고
- 바. 정부조달위원회(제14.18조)

2. 작업반

- 가. 농산물 무역 임시 작업반(제2.16조), 그리고
- 나. 일시적 입국 작업반(제10.5조)

3. 협의회

-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제16.11조)

제 20 장 분쟁해결

제 20.1 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20.2 조 적용범위

1.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13장(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6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7장(협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또는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4장(정부조달)상 당사국이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2. 당사국은 제21.1조(일반적 예외)상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제1항다호를 원용할 수 없다.

제 20.3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 20.4 조 협의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20.2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하고 협의를 개시한다.

2. 각 당사국은

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3. 협의는 비밀로 하며, 이 장에 따른 절차상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20.5 조 공동위원회 회부

1. 양 당사국이 제20.4조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¹,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에 관한 사안의 경우 2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협의 요청 당사국만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요청서를 전달하며, 그 요청서에는 문제가 되는 조치의 적시와 제소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의 표시를 포함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요청의 전달로부터 10일 이내에 회합하고,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4. 공동위원회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그 밖의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해 회합할 수 있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패성 상품**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 1 류부터 제 24 류까지에 분류된 부패성 농수산물을 말한다.

제 20.6 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이후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어느 쪽 당사국에 의하여도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위한 절차가 양 당사국 간 합의없이 종결되면, 제소 당사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0.7 조 패널의 설치

1. 사안이 다음 경우 중 어느 경우에서도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요청 당사국은 분쟁해결패널을 설치하는 서면요청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할 수 있다.
 - 가. 공동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토록 하는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혹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다른 기간 내에, 또는 회의가 제20.5조제3항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양 당사국이 제20.4조에 규정된 45일 기간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에 관한 사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협의 중에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내에 협의 중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 다.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한 요청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기간이 만료하면, 제20.5조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간주하는 경우
2.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의 적시와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은 포함하여 요청의 사유를 명시한다.
3. 패널은 제1항에 언급된 요청서의 접수일에 설치된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패널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 각 당사국은 패널 설치에 대한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1인의 패널위원을 지명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다.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은 두 번째 패널 위원이 지명된 날 후 30일 이내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패널 의장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음 10일 이내에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4명의 지명 후보자로 구성된 양 당사국 각각의 명부를 교환한다. 패널 의장은 이 명부의 교환일부터 10일 이내에 명부로부터 추첨에 의해 임명된다.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4명의 지명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미 제출한 명부로부터 추첨에 의해 임명된다.

5. 이 조에 따라 임명된 패널위원이 패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후임자가 원래의 패널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되고, 그 후임자는 원래의 패널위원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경우, 패널 절차에 적용가능한 모든 기간은 원래의 패널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날부터 새로운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정지된다.

6. 패널위원은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나. 법, 국제 무역,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해 전문성 또는 경험을 보유한다.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후 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부속서 20-가에 제정된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7. 한쪽 당사국이 패널위원이 행동규범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면, 그 패널위원은 해임되고 새로운 패널위원이 이 조에 따라 선정된다.

제 20.8 조 절차 규칙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부속서 20-나에 제정된 모범절차규칙을 따르며, 이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나. 마호를 조건으로, 패널에서의 모든 심리가 대중에 공개될 것

다. 각 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라. 각 당사국의 서면입장, 구두진술의 서면본 및 패널로부터의 요청이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가 공개되도록 할 것, 그리고

마.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비공개로 취급하도록 지정된 정보의 보호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모범 절차규칙을 준수하고,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 모범 절차규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3. 패널 설치의 요청을 전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20.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조사·판정 및 권고를 하며, 제20.9조제1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4. 패널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다.

5. 보고서의 채택을 포함하여 패널의 결정은 그 구성원들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어떠한 패널도 어느 패널위원이 다수 또는 소수의 의견에 참여하였는지를 공개할 수 없다.

제 20.9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의장이 임명된 후 90일 이내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다음에 대한 판정을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2)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또는

3) 문제가 되는 조치가 제20.2조제1항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나. 패널이 다루도록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사안 및 그 조사결과와 판정에 대한 사유

2. 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에 규정된 것과 같은,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한다. 양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제 20.10 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패널의 판정과 권고가 있을 경우, 그 판정과 권고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쟁해결에 합의한다.

2. 패널이 최종보고서에서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거나 당사국의 조치가 제20.2조제1항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제 20.11 조 불이행 및 혜택의 정지

1. 패널이 제20.10조제2항에 기술된 유형의 판정을 내렸고, 양 당사국이 최종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내에 제20.10조제1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상호 수용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교섭을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이

가. 그러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나. 보상 또는 제20.10조제1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합의하였으나, 피소당사국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시된다. 제소 당사국은, 각 경우에 맞게, 이 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거나 패널이 제5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후 15일 이후에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어떤 혜택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제20.2조제1항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분야나 분야들과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혜택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도록 우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혜택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제소 당사국은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4.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며,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한다고 판정되거나 제20.2조제1항다호상의 혜택을 달리 무효화하거나 침해한다고 판정된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되게 된 때까지, 또는 양 당사국이 그 분쟁의 해결에 달리 합의한 그러한 때까지 한정하여 적용된다.

5. 피소 당사국이

가.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하거나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원심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그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하고, 가호 또는 나호 중 하나에 따른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한 후 90일 이내에, 또는 가호 및 나호 모두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는 120일 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정지하겠다고 제안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패널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는 혜택의 수준을 판정한다.

6.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 당사국은 제5항에 따라 패널이 판정한 수준, 또는 패널이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수준까지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제 20.12 조 이행 검토

1. 제20.11조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그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소집하여 피소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6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제20.11조에 따라 정지하였던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한다.

부속서 20-가 행동규범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보조인이란 패널위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패널위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20.7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직원이란 패널위원에 관해서는, 보조인 외에 패널위원의 지시 및 통제 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절차에 대한 책임

2. 모든 패널위원은 분쟁해결절차의 완전무결성과 공정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공개 의무

3. 이 협정에 따라 패널위원으로서 그의 선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4. 일단 선정되면, 패널위원은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해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이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패널위원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패널위원의 임무수행

5. 패널위원은 이 장의 규정들과 적용가능한 절차규칙을 준수한다.

6. 선정되는 경우, 패널위원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정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히 신속하게 수행한다.
7. 패널위원은 그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문제들만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8. 패널위원은 자신의 보조인과 직원이 제2항, 제3항, 제4항, 제18항, 제19항 및 제20항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10. 패널위원은 이 부속서의 실질적 혹은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항을, 패널위원이 이 부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양 당사국 모두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달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11.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다. 패널위원은 공정하게 행동하고, 부정 또는 편향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12. 패널위원은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3.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14. 패널위원은 어떠한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5. 패널위원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사업적·직업적·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그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16. 패널위원은 그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특정 상황에서의 임무

17.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그 패널위원이 패널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비밀의 유지

18.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

19.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공표에 앞서 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20.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널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중개인

21. 이 행동규범에 기술된 조항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중개인에게 적용된다.

부속서 20-나 모범절차규칙

적용

1. 다음 절차규칙은 제20.8조에 따라 제정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정의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패널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보조인이란 패널위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패널위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20.7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법정 서기란 지정된 기록원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법정 휴일이란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과 당사국이 공식 휴일로 지정한 그 밖의 모든 날을 말한다.

패널이란 제20.7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란 제20.7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20.7조에 따라 패널 설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절차란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대표란 당사국의 정부 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밖의 모든 정부 실체의 피고용인을 말한다.

3. 이 절차 규칙에서 이루어진 조에 대한 언급은 이 장 내 적절한 조에 대한 언급이다.

서면진술서 및 그 밖의 문서

4. 각 당사국은 서면진술서의 원본 및 4부 이상의 사본을 패널에, 그리고 사본 1부를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에 전달한다.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서면진술서 및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문서는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전자적 전송 수단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당사국이 서면진술서 또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의 인쇄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서면진술서 또는 그 밖의 문서의 전자본도 동시에 전달한다.
5. 마감시한은 그러한 서면진술서 또는 문서의 접수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제소 당사국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 후 10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에게 완전한 최초 서면 진술서를 전달한다. 그 다음에는 피소당사국이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진술서의 접수일 후 20일 이내에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6.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양 당사국의 후속 반박서면입장 및 패널과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서면진술서의 전달을 위한 날짜를 설정한다.
7. 당사국은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를 전달함으로써 서면진술서 또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경미한 오류를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다.
8. 문서 전달을 위한 마지막 날이 당사국에 의해 준수되는 법정 휴일 또는 그 당사국의 정부 부서가 정부 명령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휴업인 그 밖의 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문서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입증책임

9.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그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른 그 당사국의 의무를 달리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그 당사국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무효화되고 있거나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쪽 당사국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10.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의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패널의 운영

11. 패널의 의장은 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절차와 관련한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패널의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2. 패널은 전화·모사전송 및 비디오 또는 컴퓨터 연결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포함하는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3.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절차에 요구될 수 있는 수만큼의 보조원, 통역사 또는 번역사, 또는 법정 서기를 고용하고 그들이 패널 심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4. 이 규칙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이 협정과 합치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5. 패널절차에 적용가능한 기간은 어느 패널위원이라도 활동할 수 없게 되는 날부터 그 승계인이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16.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절차에 적용가능한 기간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할 수 있다.

심리

17.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 및 패널위원과 협의하여 최초 및 모든 후속 심리의 일자 및 시간을 정하고, 그 일자 및 시간을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8.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19.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추가적인 심리를 열 수 있다.

20. 모든 패널위원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

21. 심리일 5일 전까지,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을 대신하여 심리에 참석할 인 및 심리에 참석할 그 밖의 대표 또는 자문인의 명부를 다른 쪽 당사국 및 패널에 전달한다.

22. 각각의 심리는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주장, 항변 및 재항변을 위한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패널에 의해 수행된다.

23.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비밀 취급되도록 지정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심리가 대중의 참석으로 인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과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24. 패널은 심리 속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준비하며, 그러한 속기록이 준비된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사본을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일방적 접촉

25.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패널과 의사소통할 수 없다.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이 부재한 상황에서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한쪽 당사국과 의사소통하지 아니한다.

26. 어느 패널위원도 그 밖의 패널위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패널절차의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양 당사국과 논의할 수 없다.

정보의 이용가능성

27. 양 당사국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패널의 심리·심의 및 최초 보고서와 패널에 제출한 모든 서면입장 및 패널과의 의사소통의 비밀을 유지한다.

가. 당사국은 언제라도 자국의 서면입장을 공개할 수 있다.

나. 개인 사생활 또는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필수적인 비밀유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입장에 포함되거나 또는 패널 심리에 제출한 특정 정보를 비밀유지 취급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나호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다른 쪽 당사국이 패널에게 제출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한다. 그리고

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전문가, 통역사, 번역사, 법정 서기(지정된 기록원) 및 패널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개인이 패널절차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보수 및 비용의 지불

28.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경비, 패널위원 및 그들의 보조원의 보수, 그들의 교통비·숙박비, 그리고 모든 일반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29. 각 패널위원은 본인 및 그 보조인의 시간 및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하며, 패널은 모든 일반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한다.

언어

30. 패널 절차동안, 양 당사국은 자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서면입장 및 구두 변론은 영어 번역과 함께 한국어로 또는 영어 번역과 함께

스페인어로 제출될 수 있다.

서면질의

31. 패널은 절차동안 언제든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패널이 제시한 모든 질의서 사본을 받는다.

32. 각 당사국은 패널의 질의에 대한 자신의 서면 답변서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또한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전달일부터 5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의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진다.

전문가의 역할

33.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패널은 제34항 및 제35항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러한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0.8조에 규정된 요건은 전문가 또는 기관에 적절히 적용된다.

34. 패널은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전에,

가. 양 당사국에 제33항에 따라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할 의사를 통지하고, 양 당사국에 의견을 제출하기에 적절한 기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에 제33항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의 사본을 제공하고, 양 당사국에 의견을 제출하기에 적절한 기간을 제공한다.

35. 패널이 자신의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제33항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고려하는 경우, 패널은 그러한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에 대해 양 분쟁 당사국이 제출한 모든 의견 또는 견해도 고려한다.

제 21 장 예외

제 21.1 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무역구제) 및 제12장(전자상거래)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2. 제8장(투자),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0장(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1장(통신) 및 제12장(전자상거래)의 목적상¹, GATS 제14조(그 주석을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가호에 언급된 조치가 국내 공공질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제 21.2 조 필수적 안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당사국이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²

제 21.3 조 과세

¹ 제21.1조는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제8장(투자) 또는 제20장(분쟁해결)에 따라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제21.2조를 원용하는 경우, 그 사안을 심리하는 중재판정부 또는 패널은 그 예외가 적용됨을 판정한다.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양 당사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제2.2조(내국민 대우)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한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리고

나. 제2.11조(수출관세)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제2항을 조건으로

가. 제9.2조(내국민 대우)는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제8.3조(내국민 대우) 및 제8.4조(최혜국 대우)와 제9.2조(내국민 대우) 및 제9.3조(최혜국 대우)는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나 상속, 유산취득과 증여, 그리고 세대를 건너뛴 이전에 대한 세금 이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가호 및 나호에서 언급된 조들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조세 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최혜국 대우 의무

라.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

마.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바.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위의 어떠한 조들에 대해서도 그 개정 시점에서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개정

사. (GATS 제14조라호에서 허용된 대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든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 또는

아.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

5. 제2항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3항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제8.9조(이행 요건)는 과세 조치에 적용된다.

6. 가. 제8.7조(수용 및 보상) 및 제8.17조(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분쟁해결)는 수용 또는 투자 계약이나 투자 승인의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과세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호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8.7조(수용 및 보상)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³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8.7조(수용 및 보상)를 원용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제8.17조(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분쟁해결)에 따른 의사 통보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권한 있는 당국에 우선 회부하여야 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검토에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로부터 180일의 기간 이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8.17조(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이 항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그리고

2) 콜롬비아의 경우, 재무부 법률자문국

³ 과세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8-나(수용)에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세금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조치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세금 정책·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한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라.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목적상,

가. “세금” 및 “과세 조치” 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3조(정의)에 정의된 관세, 또는

2) 그 정의 중 예외 나호, 다호, 라호 및 마호에 열거된 조치,
그리고

나. 조세협약이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제 21.4 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2 장 최종규정

제 22.1 조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22.2 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 22.3 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제22.2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22.4 조 발효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최종 서면통보의 접수 3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 22.5 조 종료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제 22.6 조 잠정적용

1. 제22.4조를 저해함이 없이, 한국이 제22.4조에 따른 자국의 비준 절차의

완료통보를 통보한 반면 콜롬비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 이 협정은 콜롬비아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과 콜롬비아 헌법에 따라 잠정적으로 이 협정을 적용한다는 자국의 결정을 한국에 통보한 날의 다음 첫째 달의 첫째 날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2. 발효되기 전 제1항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해 이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 협정의 조항에서 이 협정의 발효일에 대한 언급은 제1항에 따른 잠정적용일을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을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에 의해 잠정적용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통보 후 첫째 달의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7 조 정본

이 협정의 한국어본, 스페인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2월 21일 서울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콜롬비아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부속서 I 주 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 8.13 조(비합치 조치) 및 제 9.6 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그 당사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 8.3 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 9.2 조(내국민 대우)

나.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9.3 조(최혜국 대우)

다. 제 9.5 조(현지주재)

라. 제 8.9 조(이행요건)

마. 제 8.10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바. 제 9.4 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 3 항에 규정된 대로, 제 8.13 조제 1 항가호 및 제 9.6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다. **조치**¹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라.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 8.13 조제 1 항 및 제 9.6 조제 1 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한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 8.13 조제 1 항가호 및 제 9.6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 8.13 조제 1 항다호 및 제 9.6 조제 1 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 9.2 조(내국민 대우), 제 9.3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9.5 조(현지주재)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 8.3 조(내국민 대우),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8.9 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지주재(제 9.5 조)와 내국민 대우(제 9.2 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 9.5 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 9.2 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분 야	건설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1015호, 2011.8.4) 동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3583호, 2012.2.2)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국토해양부령 제397호, 2011.11.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법률 제10250호, 2010.4.1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1036호, 2011.8.4) 동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동법 시행규칙 제2조(행정안전부령 제282호, 2012.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 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대여·정비·수리·판매 및 폐기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법률 제11361호, 2012.2.22)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동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국토해양부령 제266호, 2010.7.2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대여·정비·수리·판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 야	운송서비스 - 자동차 정비·수리·판매·폐기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3조(법률 제11190호, 2012.1.17)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111조(국토해양부령 제222호, 2010.2.1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판매·정비·해체 및 재활용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각 경우에 맞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정비사업자” 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및 봉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 야	유통 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법률 제9932호, 2010.1.18)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대통령령 제23349호, 2011.12.6)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3.3) 주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법률 제11134호, 2011.12.31) 동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3598호, 2012.2.2) 국세청 고시 제2010-13호(2010.4.1) 및 제2011-24호(2011.12.3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류 도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분 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조 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10801호, 2011.6.15) 동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3297호, 2011.11.16)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부록1(지식경제부공고 제2012-220호, 2012.4.26)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1) 벼 또는 보리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2) 육우사육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분 야	사업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11102호, 2011.11.22)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보건복지부령 제124호, 2012.5.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분 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p>약사법 제42조 및 제45조(법률 제10788호, 2011.6.7)</p> <p>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6조 및 제7조(대통령령 제23248호, 2011.10.25)</p> <p>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제4조 및 제13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8호, 2011.9.28)</p> <p>의료기기법 제15조(법률 제10564호, 2011.4.7)</p> <p>동법 시행규칙 제19조(보건복지부령 제85호, 2011.11.25)</p>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0219호, 2010.3.31)</p> <p>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보건복지부령 제48호, 2011.4.1)</p> <p>식품위생법 제24조,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0787호, 2011.6.7)</p> <p>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대통령령 제23619호, 2012.2.3)</p> <p>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 36조(별표14)(보건복지부령 제125호, 2012.5.31)</p> <p>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0786호, 2011.6.7)</p>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나. 의료기기, 또는

다.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 포함)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매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나. 식품공급 서비스

다. 식품검사 서비스, 또는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업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 야	의약품 소매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약사법 제20조 및 제21조(법률 제10788호, 2011.6.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의약품 소매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 은 한국 내에 약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인은 약국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다.

분 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조 치	<p>철도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2조 및 제13조(법률 제 10722호, 2011.5.24)</p> <p>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법률 제10580호, 2011.4.12)</p> <p>철도건설법 제8조(법률 제10599호, 2011.4.14)</p> <p>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0조, 제26조 및 제38조 (법률 제9772호, 2009.6.9)</p> <p>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법률 제9391호, 2009.1.30)</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철도 운송서비스 사업을 하는 인이 합작투자 또는 운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분 야	운송서비스 - 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는 제외하는 도로여객운송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법률 제10599호, 2011.4.14) 동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3743호, 2012.4.20)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국토해양부령 제425호, 2011.12.30) 궤도운송법 제4조(법률 제11060호, 2011.9.16) 동법 시행규칙 제3조(국토해양부령 제208호, 2010.1.1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택시와 정기여객운송서비스는 제외하는 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 야	운송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2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해운법 제24조 및 제33조(법률 제10219호, 2010.3.31)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7.1) 도선법 제6조(법률 제10801호, 2011.6.15)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및 제31조(법률 제9707호, 2009.5.22)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와 해운중개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도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분 야	운송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조 치	항공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29조 및 제132조(법률 제11244호, 2012.1.26)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5조, 제278조, 제278조의3, 제296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국토해양부령 제436호, 2012.1.18)
유보내용	<p><u>투자</u></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국내운송의 정기항공운송서비스 또는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한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p> <p style="padding-left: 40px;">가. 외국 국민</p> <p style="padding-left: 40px;">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p> <p style="padding-left: 40px;">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p> <p style="padding-left: 40px;">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언급된 인이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p> <p style="padding-left: 40px;">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p> <p>항공기를 소유한 인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인은 해당 항공기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열거된 인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부정기 항공운송 서비스는 지점 간 운항 서비스, 관광비행 서비스 및 전세 비행기 서비스를 포함한다.</p>

분 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 사용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조 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및 제134조(법률 제11244호, 2012.1.26)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2(국토해양부령 제436호, 2012.1.18)
유보내용	<p><u>투자</u></p> <p>항공기 사용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p> <p style="padding-left: 40px;">가. 외국 국민</p> <p style="padding-left: 40px;">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p> <p style="padding-left: 40px;">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p> <p style="padding-left: 40px;">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p> <p style="padding-left: 40px;">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 사용 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재진압·산림화재관리·항공광고·비행훈련·항공지도제작·항공조사·항공샷포·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항공순찰 및 관측,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및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채를 포함한다.</p>

분 야	운송서비스 - 도로운송지원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0599호, 2011.4.14) 동법 시행규칙 제73조(국토해양부령 제425호, 2011.12.30) 주차장법 제12조(법률 제10599호, 2011.4.14) 도로교통법 제36조(법률 제10790호, 2011.6.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주차장 서비스, 버스터미널 운영 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인 및 보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경우에 맞게, 국토해양부장관, 지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및 군수의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 야	쿠리어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항공법 제139조(법률 제11116호, 2012.12.2) 동법 시행규칙 제306조(국토해양부령 제436호, 2012.1.1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법률 제11064호, 2011.9.16)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4조 및 제41조의2(국토해양부령 제430호, 2011.12.3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 국제쿠리어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화물운송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분 야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21조 및 제87조 (법률 제10656호, 2011.5.19)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8.28) 전과법 제13조 및 제20조(법률 제10393호, 2010.7.23)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p> <p>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아니한다.</p> <p>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에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p> <p>외국인은 한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는 제외하고 한국으로 공중통신 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할 수 없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p> <p style="padding-left: 40px;">가.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관련 한국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p>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법률 제10656호, 2011.5.19)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법률 제10656호, 2011.5.19)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라. 전기통신기본법 제2.3조(법률 제10139호, 2010.3.17)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분 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법률 제10580호, 2011.4.12) 동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3086호, 2011.8.19) 동법 시행규칙 제4조(국토해양부령 제399호, 2011.11.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법률 제10136호, 2010.3.17)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4.1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 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리스·임대 그리고 수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0564호, 2011.4.7)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4조(보건복지부령 제85호, 2011.11.25)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리스·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 야	대여서비스 - 자동차
관련의무	현지주재 (제9.5조)
조 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법률 제10599호, 2011.4.14) 동법 시행규칙 제60조(국토해양부령 제425호, 2011.12.3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 야	과학조사 서비스와 해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조 치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법률 제8852호, 2008.2.29)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법률 제10524호, 2011.4.4)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한국 기업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변호사법 제4조, 제7조, 제21조, 제34조, 제45조, 제58조의6, 제58조의22 및 제109조(법률 제10922호, 2011.7.25) 법무사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법률 제8920호, 2008.3.21) 공증인법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1154호, 2012.1.1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해당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유보항목에서 준수되는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분 야	전문직서비스 - 노무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공인노무사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법률 제10321호, 2010.5.25)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2.9)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만이 공인노무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분 야	전문직서비스 - 변리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법률 제 10706호, 2011.5.24)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변리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 변리사 1인은 1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

분 야	전문직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8조 및 제23조 (법률 제10812호, 2011.6.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감사 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한국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분 야	전문직서비스 -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및 제20조(법률 제11209호, 2012.1.26)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대통령령 제23724호, 2012.4.15)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기획재정부령 제283호, 2012.4.19)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및 제2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Ⅱ 한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분 야	전문직서비스 - 통관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관세사법 제3조, 제7조 및 제9조(법률 제10570호, 2011.4.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하여 설립된 관세사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의해 통관업 허가를 받은 통관취급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 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p>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52조의4(법률 제10968호, 2011.7.25)</p> <p>동법 시행령 제15조의3(대통령령 제23845호, 2012.6.7)</p> <p>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136조의8(고용노동부령 제47호, 2012.1.26)</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만이 작업 공정에서의 안전에 대한 평가 및 지침 제공 등과 같은 산업안전 및 산업위생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분 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p>건축사법 제23조(법률 제10719호, 2011.5.24)</p> <p>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p> <p>동법 시행규칙 제13조(국토해양부령 제349호, 2011.4.7)</p> <p>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법률 제11235호, 2012.1.26)</p> <p>기술사법 제6조(법률 제10771호, 2011.6.7)</p> <p>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법률 제10719호, 2011.5.24)</p> <p>동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23299호, 2011.11.16)</p> <p>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제28조(법률 제11056호, 2011.9.16)</p> <p>동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108조(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p> <p>동법 시행규칙 제48조(국토해양부령 제450호, 2012.3.16)</p> <p>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법률 제11062호, 2011.9.16)</p> <p>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p> <p>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률 제10615호, 2011.4.28)</p> <p>온천법 제7조(법률 제10732호, 2011.5.30)</p> <p>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법률 제11036호, 2011.8.4)</p>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또는 측량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한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사업서비스 - 전광판방송서비스 및 옥외광고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 (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8.10조) 현지주재 (제9.5조)
조 치	방송법 제13조 및 제73조(법률 제10856호, 2011.7.14)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법률 제10466호, 2011.3.29)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44조(대통령령 제23215호, 2011.10.10)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전 광판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실을 개설하여야 한다.

분 야	사업서비스 - 직업알선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서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33조(법률 제10339호, 2010.6.4)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3조(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6조(고용노동부령 제55호, 2012.6.5)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1024호, 2011.8.4) 동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2.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법률 제10599호, 2011.4.14) 선원법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42조 및 제143조(법률 제11188호, 2012.1.17)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4(국토해양부령 465호, 2012.5.1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법률 제9453호, 2009.2.6)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 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09년 4월 17일 현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대통령령에 의해 32개 사업으로 한

정되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관리사업자, 한국해운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만이 선원인력공급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상법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분 야	조사 및 경비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경비업법 제3조 및 제4조(법률 제9579호, 2009.4.1)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동법 시행규칙 제3조(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5.3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 5가지 종류의 경비서비스만이 허용된다. 가. 시설경비 나. 호송경비 다. 신변보호 라. 기계경비, 그리고 마. 특수경비

분 야	간행물 관련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2조)
조 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법률 제10108호, 2010.3.17) 동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22783호, 2011.3.30) 동법 시행규칙 제7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호, 2010.6.2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다음 종류의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가.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 또는 나.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 및 잡지 국내간행물 배포자는 배포 후에 필요 시 사후 심의의 대상이 된다.

분 야	운송서비스 -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 (제9.5조)
조 치	항공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법률 제 11244호, 2012.1.26)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04조 및 제305조(국토해양부령 제436호, 2012.1.1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 야	교육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시장접근(제9.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조 치	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제32조, 제42조 및 제43조(법 률 제11212호, 2012.1.26) 동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23650호, 2012.3.2) 사립학교법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1조(법률 제 11216호, 2012.1.26) 동법 시행령 제9조의3(대통령령 제22971호, 2011.6.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조 및 제2조(대통령령 제 21709호, 2009.9.3)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50퍼센트 이상은 한국 국 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50퍼센 트 이상을 외국인이 출연하는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 사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 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기본재산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 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 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계잉여 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서II 에 열거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의료인·약사·수의사·한약사· 의료기사 및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 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 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분 야	교육서비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 (제9.5조)
조 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32조 및 제36조 (법률 제11272호, 2012.2.1)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 (대통령령 제23839호, 2012.6.5)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고용노동부령 제57호, 2012.6.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 야	수의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수의사법 제17조(법률 제11354호, 2012.2.22)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4조(법률 제11005호, 2011.8.4)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수의 서비스 또는 수산질병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 야	환경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 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p>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법률 제 10599호, 2011.4.14)</p> <p>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법률 제10615호, 2011.4.28)</p> <p>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법률 제10551호, 2011.4.5)</p> <p>지하수법 제29조의2(법률 제10599호, 2011.4.14)</p> <p>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법률 제11256호, 2012.2.1)</p> <p>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법률 제9037호, 2008.3.28)</p> <p>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법률 제11014호, 2011.8.4)</p> <p>폐기물관리법 제25조(법률 제10615호, 2011.4.28)</p> <p>동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분야란에 열거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p>

분 야	공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2조)
조 치	공연법 제6조 및 제7조(법률 제10723호, 2011.5.25)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대통령령 제23317호, 2011.11.25) 동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94호, 2011.11.2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법무부령 제764호, 2012.2.29)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한국 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분 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 5, 제16조 및 제28조(법률 제10585호, 2011.4.14)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대통령령 제22424호, 2010.10.1) 전과법 제20조(법률 제11037호, 2011.8.4)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한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한국 내 설립은 기사 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분 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 (제8.9조)
조 치	약사법 제42조(법률 제10788호, 2011.6.7)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보건복지부령 제127호, 2012.6.15)
유보내용	<u>투자</u> 혈액제제 제조자는 한국의 혈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혈액 물질을 조달하여야 한다.

분 야	정기간행물의 발행(신문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9조(법률 제9098호, 2008.6.5)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대통령령 제23351호, 2011.12.6)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한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나. 한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다. 외국인이 50퍼센트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한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협정 발효일로부터 그러한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한국 내에서 인쇄 및 배포할 수 있다.

분 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시장접근(제9.4조)
조 치	양곡관리법 제12조(법률 제10932호, 2011.7.25) 축산법 제30조 및 제34조(법률 제11005호, 2011.8.4) 종자산업법 제142조(법률 제10842호, 2011.7.14) 사료관리법 제6조(법률 제10219호, 2010.3.31) 인삼산업법 제20조(법률 제10948호, 2011.7.2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10801호, 2011.6.15) 동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3297호, 2011.11.16)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부록1(지식경제부공고 제2012-220호, 2012.4.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및 제43조(법률 제10522호, 2011.3.31)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 14조 및 제20조의2(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01호, 2011.12.31)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 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9.2조(내국민 대우) 및 제9.4조(시장접근)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분 야	에너지산업 -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²
조 치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1040호, 2011.8.4)</p> <p>동법 시행령 제187조(대통령령 제23496호, 2012.1.6)</p> <p>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0801호, 2011.6.15)</p> <p>동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3297호, 2011.11.16)</p> <p>외국인투자 통합공고 부록 1(지식경제부공고 제2012-220호, 2012.4.26)</p> <p>기획재정부 고시(제2000-17호, 2000.9.28.)</p> <p>금융투자업 규정 제6-2편(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17호, 2009.2.4)</p>
유보내용	<p><u>투자</u></p> <p>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p> <p>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p>

² 부속서 II 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일곱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³
조 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 제9401호, 2009.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1040호, 2011.8.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0801호, 2011.6.15) 한국가스공사정관 제11조(2009.3.27)
유보내용	<u>투자</u>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³ 부속서Ⅱ에 기재된 한국 유보목록의 일곱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상영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8.9조) 시장접근(제9.4조)
조 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10219호, 2010.3.31) 동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2781호, 2011.3.30)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부속서I
콜롬비아의 유보목록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1971년 *Código de Comercio, Arts. 469, 471 및 47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타국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되고 주된 주소가 타국에 있는 법인은 콜롬비아가 제공한 영업허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 내에 지점을 개설한다.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내국민 대우(제9.2조)

조 치

1993년 Código Sustantivo del Trabajo, Arts. 74 및 75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10인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일반 노동인력의 일부로서 콜롬비아인을 일반적 근로자의 90 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그리고 숙련직, 특수직 또는 관리직 인력 또는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80 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고용한다.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비율은 필수적이며 극히 전문적인 근로자가 관련된 경우로서 콜롬비아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낮출 수 있다.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조 치	<i>2000년 Decreto 2080, Art. 26</i>
유보내용	<u>투자</u> 외국 투자자는 콜롬비아에서 오직 관리자(<i>Administrador</i>)를 통해서만 증권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조치	1995년 Ley 226, Arts. 3 및 11을 포함하여, 유보내용에 명시된 대로
유보내용	<u>투자</u>

콜롬비아는 기존의 공기업 또는 기존의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한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의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권 및 그러한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자가 그 결과인 기업을 통제하는 능력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 콜롬비아는 고위경영진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이 비합치조치에 관한 기존의 관련 법령은 1995년 Ley 226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콜롬비아가 자신의 기업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콜롬비아 공기업이나 그 밖의 콜롬비아 정부기관이 아닌 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지분을 배타적으로, 그리고 1995년 Ley 226 제11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다음에게 먼저 제공한다.

가. 그 기업 및 그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그 밖의 기업의 현직, 퇴직 및(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종전의 피고용인은 제외한) 종전의 피고용인

나. 그 기업의 피고용인 및 종전 고용인 협회

다. 피고용인 조합

라. 노동 조합의 연합 및 연맹

마. 피고용인 기금(“fondos de empleados”)

바. 연금 및 퇴직 기금, 그리고

사. 조합 단체¹

그러나, 일단 그러한 지분이 이전되거나 매각되면, 콜롬비아는 그러한 지분의 어떠한 후속 이전 또는 기타 후속 처분도 통제할 권리를 유보하지 아니한다.

이 유보의 목적상,

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 시점에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권에 금지 또는 제한을 부과하거나 이 유보안에 기술된 국적 요건을 부과하는 조치로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유지되거나 채택되는 모든 조치는 기존의 조치로 간주된다. 그리고

나. “공기업”이란 콜롬비아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지분을 통해 통제하는 기업을 말하며, 기존의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만을 목적으로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설립된 기업을 포함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8년 Ley 454는 특히 “저축 및 신용 조합(cooperativas de ahorro y crédito)”, “금융 조합(cooperativas financieras)” 및 “다기능 또는 종합 조합(cooperativas multiactivas o integrales)”을 포함하여, 콜롬비아에 존재하는 조합 단체의 유형을 규정한다.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 (제9.5조)

조 치

2004년 *Ley 915, Art. 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주된 사무소가 산 안드레스(San Andrés), 프로비덴시아(Providencia) 및 산타 까탈리나(Santa Catalina) 자유항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동 지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치는 제9.13조에 정의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분 야

회계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2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1990년 Ley 43, Art. 3 Par.1
2004년 Resolución No. 160, Art. 2 Par. 및 Art. 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Junta Central de Contadores*에 등록된 인만이 회계사로서 개업할 수 있다. 외국 국민은 등록 요청 이전에 최소한 3년간 지속적으로 콜롬비아에 주소를 두었어야 하며, 콜롬비아의 영역 내에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행한 회계 경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력은 공공회계학 연구에 종사하는 도중 또는 그 이후에 획득될 수 있다.

자연인의 경우, “주소를 두다” 라는 용어는 콜롬비아의 거주자이며 콜롬비아 내에 체류할 의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분 야 연구 및 개발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2조)

조 치 2000년 Decreto 309, Art. 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의 영역 내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과학 연구에 착수하려고 계획하는 외국인은 연구 또는 그러한 연구 결과 분석에 최소한 1인의 콜롬비아 연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치는 외국인과 콜롬비아 연구자가 과학 연구 또는 분석과 관련한 권리에 대해 합의에 이르는 것을 요구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한다.

분 야 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 대우(제9.3조)
시장 접근(제9.4조)

조 치 *1991년 Decreto 2256, Arts. 27, 28 및 67*
2003년 Acuerdo 005 Sección II 및 VII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 국민만이 영세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

외국 국적 선박은 허가를 보유한 콜롬비아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서만 허가를 획득하고 콜롬비아의 영해에서 상업적 어업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국적 선박의 허가 및 어업 면허를 위한 비용은 콜롬비아 국적 선박보다 더 높다.

외국 국적 선박의 기국이 콜롬비아가 체결한 다른 양자 협정의 당사국인 경우, 허가를 보유한 콜롬비아 기업과의 제휴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다른 양자 협정상의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분 야 광물 및 탄화수소의 탐사 및 채굴에 직접적으로 부수되는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 (제9.5조)

조 치 *2001년 Ley 685, Art. 19 및 20*
1953년 Decreto legislativo, 1056 Art. 10
1971년 Código de Comercio, Arts. 471 및 47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에서 광물 및 탄화수소의 탐사 및 채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콜롬비아 내에 지점, 계열사 또는 자회사를 개설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그러한 서비스에 1년 미만으로 종사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사설 경비 및 감시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9.2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1994년 *Decreto 356, Arts. 8, 12, 23 및 25*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사설 경비 및 감시 서비스 협동조합²으로 설립된 기업만이 콜롬비아에서 사설 경비 및 감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기업의 파트너 또는 조합원은 콜롬비아 국민이어야 한다.

1994년 2월 11일 이전에 외국 조합원 또는 외국 자본을 포함하여 설립된 기업은 외국 조합원의 참여를 증가시킬 수 없다. 그 날짜 이전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그 법적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² 1994년 *Decreto 356 제 23 조*는 “사설 경비 및 감시 서비스 협동조합”을 보수를 목적으로 사설 경비 및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설되어, 조합원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비영리 연합 기업으로 정의한다.

분 야

저널리즘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조 치

1944년 *Ley 29, Art. 13*

유보내용

투자

콜롬비아 정치에 주안점을 두고 콜롬비아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대표이사 또는 총책임자는 콜롬비아 국민이어야
한다.

분 야	여행 및 관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2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i>1990년 Ley 32, Art. 5</i> <i>1997년 Decreto 502, Art. 1부터 7까지</i>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 국민이 콜롬비아의 영역 내에서 여행 및 관광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관광 가이드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제9.13조에 정의된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분 야	공증 및 등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2조) 시장 접근(제9.4조)
조 치	<i>1970년 Decreto Ley 960, Art. 123, 124, 126, 127 및 132</i> <i>1970년 Decreto Ley 1250, Art. 60</i>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콜롬비아 국민만이 공증인 및/또는 등기인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공증인 지정은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관심 지역의 인구, 서비스의 필요성 및 통신수단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분 야 주거 공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1994년 Ley 142, Arts. 1, 17, 18, 19 및 23
1971년 Código de Comercio, Arts. 471 및 472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주거 공공 서비스 기업은 공공서비스 기업 (*Empresas de Servicios Públicos, E.S.P.*) 제도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고, 콜롬비아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콜롬비아 법에 따라 기명 주식회사(*sociedad por acciones*)로 설립되어야 한다. 기명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국가의 상업적 및 산업적 기업의 형태를 취하는 분권화된 실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주거 공공 서비스는 수도, 하수, 쓰레기 처리, 전력, 가연 가스 배급 및 기본 공중 회선 교환 전화 서비스(PSTN)와 그에 대한 보충적 활동을 포함한다. 기본 공중 회선 교환 전화 서비스에 대한 보충적 활동이란 장거리 공중 전화 및 벽지의 고정 무선 가입자회선 전화 서비스를 의미하나, 상업용 이동 전화 서비스는 의미하지 아니한다.

지역적으로 조직된 공동체가 지배지분을 갖는 기업은 그 공동체에 주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업허가 또는 면허 부여에 있어 이 경우가 아니었다라면 입찰가가 동등했을 기업에 비해 우대된다.

분 야

전력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조 치

1994년 *Ley 143, Art. 7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1994년 7월 12일 이전에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만이 전력의 마케팅(*comercialización*) 및 송전에 종사하거나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활동에 동시에 종사할 수 있다: 발전, 배전, 또는 송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콜롬비아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은 마케팅과 송전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분 야	통관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1999년 Decreto 2685, Arts. 74 및 76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통관 중개, 우편 서비스 중개(“<i>intermediación para servicios postales</i>”) 및 특별 운송 3 (“<i>mensajería especializada</i>”) (특급배달 포함), 상품의 유치, 통관 통제하에 있는 상품의 운송, 또는 국제 화물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상시 통관 이용자(“<i>Usuarios Aduaneros Permanentes</i>”) 또는 다량 수출 이용자(“<i>Usuarios Altamente Exportadores</i>”)로서 활동하려는 인은 콜롬비아 내에 주소를 두거나, 콜롬비아 내에 주소를 두며 그 활동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p>

3 “특별 운송 서비스(*Servicio de mensajería especializada*)”란 공인된 국내 및 국제 우편망과는 별도로 공급되고 콜롬비아의 영역 내에서 또는 콜롬비아의 영역으로부터 육상 또는 항공으로 운송되는 우편물 및 기타 우편 대상물의 수취, 수집 그리고 개인 배달을 위해 특별 절차의 적용과 채택을 필요로 하는 우편 서비스의 종류를 말한다.

분 야 우편 및 특별 운송 (*Mensajería Especializada*)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 (제9.5조)

조 치 2009년 *Ley 1369, Art. 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콜롬비아에서 우편 서비스 및 “특별 운송 (*mensajería especializada*)” (직전 유보항목의 각주에 정의된 대로)을 공급할 수 있다.

분 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2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i>2001년 Ley 671</i> <i>2003년 Decreto 1616, Arts. 13 및 16</i> <i>1997년 Decreto 2542, Art. 2</i> <i>2005년 Decreto 2926, Art. 2</i> <i>2007년 Decreto 2870, Título II (Arts. 3부터 7까지)</i>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만이 콜롬비아 내에서 통신 서비스 공급을 위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콜롬비아는 기업에게, <i>1997년 Decreto 2542 제2조</i> , <i>2003년 Decreto 1616 제13조 및 제16조</i> , 그리고 <i>2005년 Decreto 2926</i> 에 따라 장거리 기본 교환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면허를 <i>Colombia Telecomunicaciones S.A. E.S.P.</i> 에 제공한 것 보다 지불 및 기간에 관해서만 불리한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분 야

영화

관련의무

이행요건(제8.9조)
내국민대우(제9.2조)

조 치

2003년 Ley 814, Arts. 5, 14, 15, 18 및 19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 영화의 상영 및 배급은 그러한 상영 및 배급으로부터 파생되는 월 순수익의 8.5 퍼센트로 정해진 영화 발전 수수료의 적용을 받는다.

상영자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외국 영화가 콜롬비아 단편 영화와 함께 상영되는 경우에는 2.25 퍼센트로 감면된다.

배급자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그 배급자가 직전 해 동안 영화관 및 기타 상영자에게 배급한 콜롬비아 장편 영화의 비율이 정부가 정한 목표 비율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2012년까지 5.5 퍼센트로 감면된다.

분 야 라디오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1993년 Ley 80, Art. 35
1966년 Ley 74, Art. 7
1995년 Decreto 1447, Arts. 7, 9 및 18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영업허가는 콜롬비아 국민 또는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제공될 수 있다.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영업허가의 수는 법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정보성 프로그램 또는 언론 보도 프로그램의 감독은 콜롬비아 국민이어야 한다.

분 야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시청각 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1991년 Ley 014, Art. 37
2001년 Ley 680, Arts. 1 및 4
1996년 Ley 335, Arts. 13 및 24
1995년 Ley 182, Arts. 37 numeral 3, 47 및 48
1995년 Acuerdo 002, Art. 10 Parágrafo
1997년 Acuerdo 023, Art. 8 Parágrafo
1997년 Acuerdo 024, Arts. 6 및 9
1997년 Acuerdo 020, Arts. 3 및 4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 국민 또는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영 전국 텔레비전 채널의 영업허가를 보유하기 위하여, 법인은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공중파 전국 텔레비전 방송 및 지방 영리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영업허가의 수는 법에 규정된 기준을 따르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영업허가를 보유한 모든 기업의 외국인 지분은 40 퍼센트로 제한된다.

전국 텔레비전 방송

공중파 전국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의 공급자(운영자 및/또는 프로그램 편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인)는 각 채널에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방송해야 한다.

- 가. 19:00시부터 22:30시까지 최소한 70퍼센트
- 나. 22:30시부터 24:00시까지 최소한 50퍼센트

다. 10:00시부터 19:00시까지 최소한 50퍼센트, 그리고
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가호, 나호 및 다호에
기술된 시간 동안 최소한 50퍼센트

지역 및 지방 텔레비전 방송

지역 텔레비전 방송은 국가 소유 기관만이 공급할 수 있다.

지역 및 지방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공급자는 각
채널에 최소한 50퍼센트를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분 야 유료 텔레비전 방송
시청각 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8.9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2001년 Ley 680, Arts. 4 및 11*
1995년 Ley 182, Art. 42
1997년 Acuerdo 014, Arts. 14, 16 및 30
1996년 Ley 335, Art. 8
1998년 Acuerdo 032, Arts. 7 및 9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유료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법인은 승인 받은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콜롬비아의 공중파 전국, 지역 및 지방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가입자들이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역 및 지방 채널의 전송은 유료 텔레비전 방송 운영자의 기술적 능력에 따를 것이다.

위성 유료 텔레비전 방송의 공급자는 기본 프로그램에 콜롬비아 정부의 공익 채널의 전송을 포함하는 의무만을 부담한다. 국내 콘텐츠 쿼터에 따라 공중파 프로그램을 재방송 하는 경우, 유료 텔레비전 방송 제공자는 원래 신호의 콘텐츠를 변경할 수 없다.

위성은 제외한 유료 텔레비전 방송

원래의 것과 다른 광고를 전송하는 유료 텔레비전 방송 영업허가 보유자는 이 부속서의 22페이지 및 23페이지의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및 시청각 제작 서비스에 대한 유보항목에 기술된, 공중파 전국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최소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광고가 콜롬비아의 영역 외부에서 프로그램에 삽입되는 경우, 콜롬비아는 *1997년 Acuerdo 014 제16조*를 유료 텔레비전 방송 공급자에게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최소 비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콜롬비아는 제9.6조제1항다호(비합치조치)에 따라, 이 해석을 계속하여 적용할 것이다.

구역, 읍 및 지구 단위의 현재 영업허가가 일단 만료되면 이러한 단위의 유료 텔레비전 방송 영업허가의 수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며, 2011년 10월 31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이 없을 것이다.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공급자는 콜롬비아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매일 18:00시부터 24:00시까지 최소한 한 시간 방송하여야 한다.

분 야 공동체 텔레비전 방송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1995년 Ley 182, Art. 37 numeral 4*
1999년 Acuerdo 006, Arts. 3 및 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동체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는 콜롬비아 법에 따라 재단, 협동조합, 협회 또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설립되고 법적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서비스는 서비스 지역 및 채널의 수와 유형에 관하여 제한되고, 60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협회원 또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폐쇄 네트워크 지역 접근 채널의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분 야 폐기물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조 치 *2000년 Decreto 2080, Art. 6*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 투자는 콜롬비아에서 배출되지 아니한 유독성, 유해성, 또는 방사성 폐기물의 가공, 처리 및 처분과 관련된 활동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운송

관련의무

현지주재 (제9.5조)

조 치

1996년 Ley 336, Arts. 9 및 10
1999년 Decreto 149, Art. 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 영역 내에서의 대중 교통 서비스 공급자는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되고 콜롬비아 내에 주소를 둔 기업이어야 한다.

콜롬비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콜롬비아 내의 활동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둔 외국 기업만이 콜롬비아 영역 내에서 그리고 콜롬비아 영역으로부터의 복합 화물 운송을 공급할 수 있다.

분 야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

관련의무 이행요건 (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제8.10조)
내국민대우 (제9.2조)
현지주재 (제9.5조)

조 치 *2001년 Decreto 804, Arts. 2 및 4 inciso 4*
1971년 Código de Comercio, Art. 1455
1984년 Decreto Ley 2324, Arts. 99, 101 및 124
2001년 Ley 658, Art. 11
1988년 Decreto 1597, Art. 23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되고 콜롬비아 국적 선박을 사용하는 기업만이 콜롬비아의 영역 내 두 지점 간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 서비스(카보타지)를 공급할 수 있다.

콜롬비아의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 국적 선박은 콜롬비아 내에 그 활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고 콜롬비아 내에 주소를 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콜롬비아 영해에서의 해상 및 내륙수로 공공 도선 서비스는 콜롬비아 국민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콜롬비아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서 각 허가의 발급일로부터, 지속적으로 또는 단속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운영하는 콜롬비아 국적 및 외국 국적 선박(어업 관련 선박은 제외한다)의 선장, 임원, 그리고 나머지 선원의 최소한 80퍼센트는 콜롬비아인이어야 한다.

분 야	항만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2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조 치	<i>1991년 Ley 1, Arts. 5.20 및 6</i> <i>1989년 Decreto 1423, Art. 38</i>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항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영업허가 보유자는 콜롬비아 법에 따라 항만의 건설, 유지 및 관리를 기업의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i>sociedad anónima</i>)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콜롬비아 국적 선박만이 콜롬비아 수역에서 항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콜롬비아 해양청(<i>Dirección General Marítima</i>)은 어떠한 콜롬비아 선박도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외국 국적 선박이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발급되는 허가는 6개월간 유효할 것이나,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분 야	항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이행요건(제8.9조)
조 치	1971년 <i>Código de Comercio, Arts. 1795, 1803</i> 및1804
유보내용	<u>투자</u> 콜롬비아 국민 또는 콜롬비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콜롬비아에서 상업적 항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항공기를 소유하고, 실질적이며 실효적인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콜롬비아에서 대리점 또는 지점으로 설립된 모든 항공 서비스 회사는 콜롬비아에서의 운영을 위해 콜롬비아 근로자를 9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고용한다.

부속서 II 주 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 8.13 조(비합치 조치) 및 제 9.6 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 8.3 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 9.2 조(내국민 대우)

나. 제 8.4 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 9.3 조(최혜국 대우)

다. 제 9.5 조(현지주재)

라. 제 8.9 조(이행요건)

마. 제 8.10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바. 제 9.4 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8.13조(비합치 조치)제2항 및 제9.6조(비합치 조치)제2항에 따라 유보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그리고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3. 제 8.13 조(비합치 조치) 제 2 항 및 제 9.6 조(비합치 조치)제 2 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동등하게 고려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지주재(제 9.5 조)와 내국민 대우(제 9.2 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 9.5 조)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 9.2 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u> 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18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상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한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된다.

1. 외국인토지법 제2조상의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2. 다음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나.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다.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공의 제조·사용·판매·보관·운반·수입·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공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현지주재(제9.5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정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현지주재(제9.5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기술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가. “모든 분야” 로 기술된 유보항목은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 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고 기재한다.

나. “모든 분야” 로 기술된 유보항목은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상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다. 부록 II-가에 열거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바호 관련 어떠한 제한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9.6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9.5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오디오 방송 서비스와 관련,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 야	운송 서비스 - 철도 운송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철도운송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 야 환경서비스 - 음용수 처리 및 공급 서비스, 생활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서비스, 위생 및 유사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 및 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에너지 서비스 - 원자력 발전은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발전·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전력)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p> <p>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8.9조제1항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p>

분 야	에너지서비스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가스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p>

분 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미가공 농산물, 산 동물 및 식음료에 대한 중개서비스 나. 곡물·육류·가금·곡분·홍삼 및 비료에 대한 도매업 서비스, 그리고 다. 쌀, 인삼 및 홍삼에 대한 소매서비스

분 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운송 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p data-bbox="612 564 1007 595"><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 data-bbox="612 647 1445 808">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카보타지는 제외한다)과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는 제외하고, 한국은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 야	운송 서비스 -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인이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하는 차량 정수의 결정과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함에 있어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우정당국은 국내법에 따라 서장의 수집, 구분 및 배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보한다. 이 독점적 권한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여 어떠한 방식 또는 형태로도 영향 받지 아니한다. 한국 우정당국의 그러한 배타적 권리는 그 우편망에 대한 접근과 이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다.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한국은 방송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음과 같이 보장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국 콘텐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그리고

다.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방송시간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가. 영화: 채널별로 연간 방송시간의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이하

나. 애니메이션: 채널별로 연간 방송시간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그리고

다. 대중음악: 채널별로 연간 방송시간의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장르별 1개국 외국 콘텐츠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매 분기 방송시간은 채널별로 장르별 전체 외국 콘텐츠에 대한 매 분기 방송시간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개국 콘텐츠 한도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위성방송사업자"는 외국에 등록된 위성의 설비를 이용 또는 임차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분 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란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IPTV와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p>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분 야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사업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p data-bbox="612 521 1010 560"><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 data-bbox="612 604 1445 723">한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 부동산 개발, 공급, 관리, 판매 및 임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 야	사업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의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할 때, 한국은 한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위 문단에 의거하여 채택되는 어떠한 조치도 제18장(투명성)의 규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제9.8조(규정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에 따라 시행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며, 필요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기타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 협정 발효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부속서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분 야	사업서비스 -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분 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및 등급판정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인증 및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사업서비스 -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신문 발행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교육서비스 -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성인 및 기타 교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 및 보건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성인교육,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 그리고 기타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유보내용

투자

한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법률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¹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승인·등록·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²

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법무회사(로펌)·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상사연합·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콜롬비아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콜롬비아에서 자격을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시입국을 위해서는 상업적 주재가 요구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한"은 그러한 유형의 법률서비스를 한국에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포함한다.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한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콜롬비아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3. 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콜롬비아 법무회사(로펌)란 콜롬비아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콜롬비아 내에 있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란 외국에서 한국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모든 인을 말한다.

분 야	전문직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회계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내에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국내적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국공인회계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분 야 전문직서비스 - 외국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현지주재(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및 서비스 제공 범위를 포함하여 세무사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세무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국내적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국 세무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분 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2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 야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이행요건(제8.9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한국은 아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한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p> <p>연안해상운송은 한국선박을 위해 유보된다. 연안해상운송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간 해상운송을 포함한다. 한국 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한국 정부, 공기업 또는 국토해양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 소유한 선박 나. 한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다.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라.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가 한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부록 II-가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연구개발 서비스: 가.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나.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다. 학제 간 연구개발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광업 부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포장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컨벤션 대행 서비스 이외의 컨벤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 (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p>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p> <p>가.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p> <p>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제외</p> <p>나. 여행 대행 서비스</p> <p>다. 관광객 안내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

부속서 II
콜롬비아의 유보목록

분 야	특정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콜롬비아는 다음 분야에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조사 및 경비 서비스</p> <p>나.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다. 보편적 서비스 보장을 위해 에너지 유통 부수 서비스에 적용되는 배타적 영역의 설정</p> <p>라. <i>Constitución Política de Colombia</i> 제336조에 따라 그 수익이 공공 또는 사회 서비스에 전적으로 활용되는, 정부가 독점을 설정한 분야의 유통, 도매 및 소매 서비스.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콜롬비아는 오직 주류 및 도박과 관련하여서만 독점을 가진다.</p> <p>마. 초등 및 중등 교육 서비스, 그리고 고등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실체의 구체적 유형에 관한 요건</p> <p>바. 공공 목적을 위해 설립 또는 유지되는 환경 서비스</p> <p>사. 보건관련 및 사회 서비스, 그리고 보건관련 전문직 서비스</p> <p>아. 도서관, 기록 보관소 및 박물관</p> <p>자.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p> <p>차. 도로여객운송서비스,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파이프라인 운송 서비스, 모든 형태의 운송 보조 서비스, 그리고 기타 운송 서비스를 위한 영업허가의 수 및 총 영업의 수</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GATS 제16조에 따른 콜롬비아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유보내용

투자

콜롬비아는 콜롬비아의 국경 지역, 국내 해안 또는 도서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의 목적상,

가. 국경 지역이란 국경선과 평행한 2킬로미터 너비의 구역을 말한다.

나. 국내 해안이란 최고만조선과 평행한 2킬로미터 너비의 구역을 말한다. 그리고

다. 도서 지역이란 콜롬비아 영역의 일부인 섬, 아주 작은 섬, 산호초, 갯 그리고 여울을 말한다.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콜롬비아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콜롬비아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그리고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분 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콜롬비아는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사회 재적응,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사회 복지, 공공 훈련 및 공교육, 보건, 그리고 보육.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콜롬비아의 사회 보장 제도(*Sistema de Seguridad Social Integral*)는 현재 다음의 의무적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Sistema General de Pensiones*), 의료보험(*Sistema General de Seguridad Social en Salud*), 산업재해보상(*Sistema General de Riesgos Profesionales*), 그리고 퇴직금(*Régimen de Cesantía y Auxilio de Cesantía*).

분 야 소수 집단 및 소수 민족 집단 관련 사안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콜롬비아는 *Constitución Política de Colombia* 제 63조에 따라 소수 민족 집단이 보유한 공유지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 집단 및 소수 민족 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콜롬비아의 소수 민족 집단은: 토착민 및 집시(*gypsy*), 아프리카-콜롬비아인 공동체, 그리고 산 안드레스, 프로비덴시아 및 산따 까탈리나 군도의 라이잘 공동체이다.

분 야

문화 산업 및 활동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문화 산업 및 활동”이란 용어는 다음을 말한다.

가. 도서, 잡지, 정기 간행물, 또는 인쇄된 신문이나 전자 신문의 발행, 배포 또는 판매. 다만, 전술된 것들의 인쇄 및 조판은 제외한다.

나. 영화 또는 비디오 녹화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상영

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 형식의 음악 녹음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상영

라. 공연 예술의 제작 및 상연

마. 시각 예술의 제작 및 전시

바. 인쇄된 악보 또는 기계가 판독 가능한 악보의 제작, 배포, 또는 판매

사. 수공예품의 디자인, 제작, 배포 및 판매

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 뿐만 아니라 모든 라디오·텔레비전 및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관련 활동, 위성 프로그램 서비스, 그리고 방송망, 또는

자. 광고 콘텐츠의 디자인 및 제작

콜롬비아는 문화 협력 또는 문화 산업 및 활동에서의 공동제작에 관한 구체적 약속을 담고 있는 콜롬비아와 다른 국가 간 협정에 따라 그 다른 국가의 인을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콜롬비아는 시청각, 출판 또는 음악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콜롬비아 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그 당사국의 인에게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분 야

보석 디자인
공연 예술
음악
시각 예술
시청각
출판

관련의무

이행요건 (제8.9조)
내국민대우 (제9.2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콜롬비아는 보석 디자인, 공연 예술, 음악, 시각 예술, 시청각 및 출판의 발전 및 제작을 위한 정부 지원¹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해, 수령인이 국내 창작 콘텐츠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을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광고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행요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과 합치한다.

¹ 이 유보안의 목적상, “정부 지원”이란, 민간 단체가 정부 지원의 관리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책임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 혜택, 의무기여금 경감 혜택, 정부 보조금, 정부 지원 용자,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보증, 신탁 또는 보증을 말한다.

분 야

수공예 산업

관련의무

이행요건(제8.9조)
내국민대우(제9.2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콜롬비아는 콜롬비아산 수공예품으로 확인되는 수공예품의 디자인, 유통, 소매 또는 전시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요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과 합치한다.

분 야

시청각서비스
광고

관련의무

이행요건 (제8.9조)
내국민대우 (제9.2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영상저작물

가. 콜롬비아는 연간 기준으로 콜롬비아 내에 있는 영화상영관 또는 상영실에서 상영되는 총영상저작물의 특정 비율(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이 콜롬비아산 영상저작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비율을 설정할 때, 콜롬비아는 국내 영상저작물 제작 여건, 국내의 기존 상영 시설 여건 및 평균 관객 수를 고려한다.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상의 영상저작물

나. 콜롬비아는 연간 기준으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채널에서 상영되는 총영상저작물의 특정 비율(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이 콜롬비아산 영상저작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비율을 설정할 때, 콜롬비아는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국내 영상저작물이 확보가능한지를 고려한다. 그러한 작품은 부속서I의 22 및 23페이지상 5번째 문단의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및 시청각 제작 서비스에 관한 유보항목에 기술된 대로 채널에 적용되는 국산 콘텐츠 요건의 계산에 포함될 것이다.

공동체 텔레비전 방송²

다. 콜롬비아는 공동체 텔레비전 방송의 주간 프로그램의 특정 비율(주당 5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이 공동체 텔레비전 방송 운영자에 의해 제작된 국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중채널 공중파 상업 텔레비전 방송

² 1999 년 Acuerdo 006 에 정의된 대로.

라. 콜롬비아는 부속서 I의 22 및 23페이지상 5번째 문단의 공중과 텔레비전 방송 및 시청각 제작 서비스에 관한 유보항목에 기재된 최소 프로그램 요건을 다중채널 공중과 상업 텔레비전 방송에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요건은 개별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2개 채널 또는 총 채널 수의 25 퍼센트(둘 중 더 큰 쪽)를 초과하여 부과될 수 없다.

광고

마. 콜롬비아는 본부가 콜롬비아 외부에 있는 신문, 일간지 및 구독 서비스는 제외하고, 콜롬비아에 설립된 미디어 서비스 회사가 매년 수주하는 총 광고의 특정 비율(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이 콜롬비아에서 제작되고 만들어질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1) 개봉 예정인 영화에 대한 영화상영관 및 상영실에서의 광고, 그리고 (2)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콜롬비아 외부에서 유래하는 모든 미디어 또는 콜롬비아 내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의 재방송 또는 재전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전통적 표현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는 2005년 *Resolución No. 0168*에 따라 공표된 무형 문화 유산과 관련된 표현의 지원 및 개발에 관하여 지역 공동체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어떠한 조치도 제15장(지식재산권)과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분 야 양방향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8.9조)
내국민대우(제9.2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 시청각 콘텐츠가 콜롬비아 소비자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콜롬비아 정부가 판단할 때,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소비자들이 양방향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서비스를 통해 콜롬비아 시청각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위 문단에 의거하여 채택되는 모든 조치는 제18장(투명성)의 규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제9.8조(규정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에 따라 시행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며, 필요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여야 한다.

분 야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2조)
최혜국대우(제9.3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인 전문직 종사자가 주로 영업하는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전문직을 영업하기 위한 관련 허가, 면허 또는 인증 요건을 달리 만족하는 콜롬비아 국민에게 이 유보항목에 언급된 의무와 합치하는 대우를 부여하는 한도 내에서만,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콜롬비아의 영역에서 콜롬비아 법에 따라 영업을 한 전문직 종사자에게 기존의 법에 따라 계속 영업하도록 허용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전문직 종사자가 주로 영업하는 당사국은 그 전문직 종사자가 영업 면허를 받았고 직전 12개월간 가장 빈번하게 실제로 영업하였던 영역이다.

이 조치는 전문직 학위 상호 인정에 관하여 시행 중에 있는 양자협정을 콜롬비아와 체결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도로 및 하천 운송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9.3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콜롬비아는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서명되는 도로 및 하천 운송 서비스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콜롬비아는 운송업자가 여행사 및 중개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커미션 및/또는 지불금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